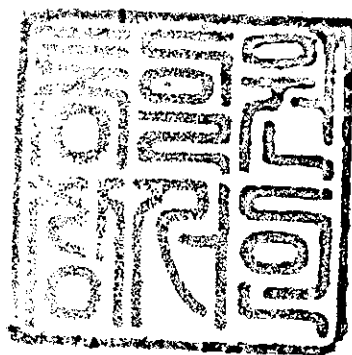


東西獨關係資料Ⅲ

內獨關係發展史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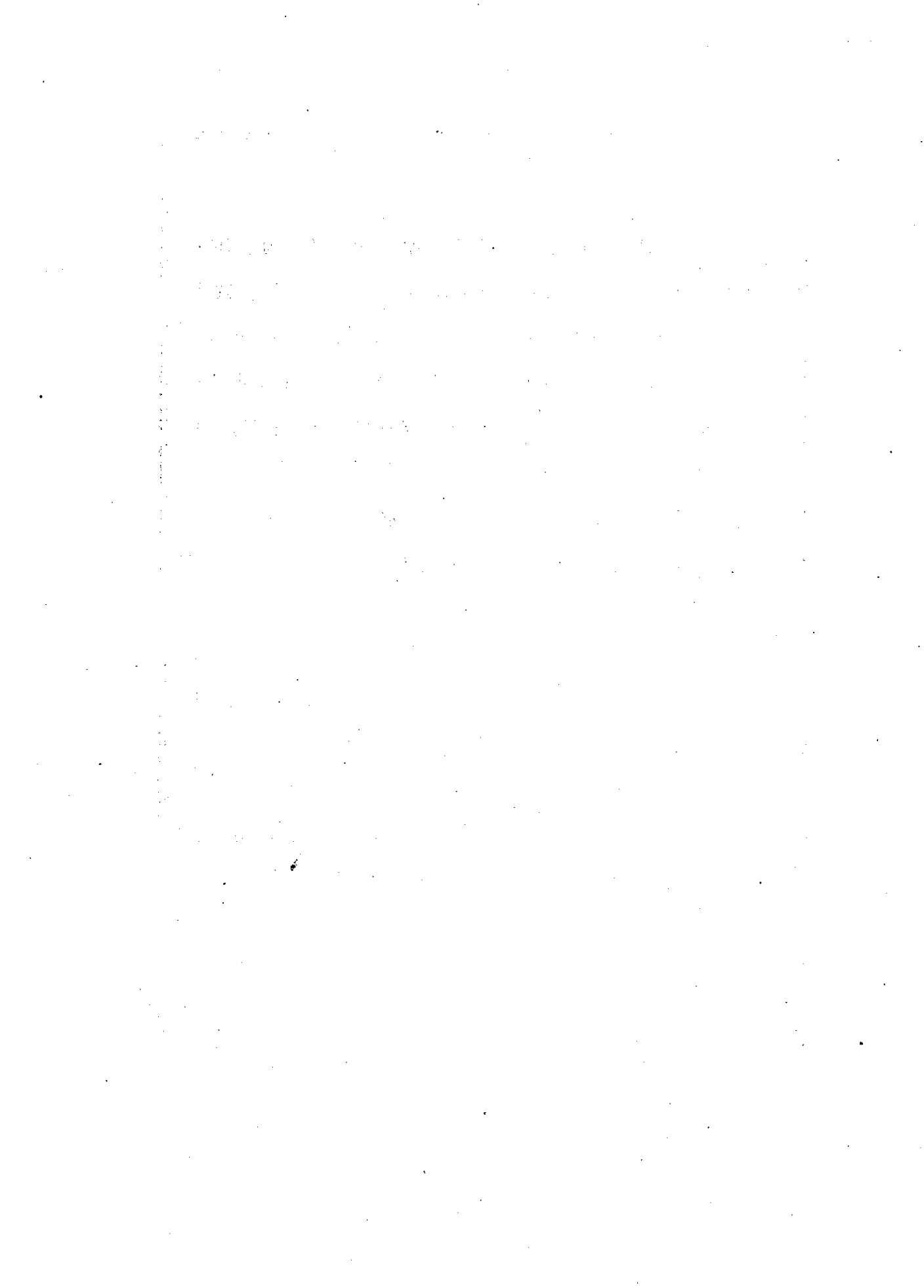
統一院

本 資料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內獨關係省」이 發刊한 1987 年度版 『內獨關係發展：1980~86年間 東西獨 關係發展에 關한 資料』 (Innerdeutsche Beziehungen ;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80~86) 中에서 選別·拔萃·翻譯한 것입니다.

當院은 內獨關係省이 發刊한 『東西獨 關係發展에 關한 報告 및 文書』, 『10年間の 獨逸政策』을 翻譯·出版하여 이미 配布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本 資料에는 이미 翻譯·發刊된 上記 冊子에 包含된 內容을 除外한 1980年~86年 期間中 東西獨間의 協商과 實質的인 關係改善에 關한 主要內容을 翻譯·收錄하였습니다.

獨逸統一의 完成('90. 10. 3)에는 이같은 兩獨間의 不斷한 接觸과 끝없는 協力이 뒷받침되었다는 事實을 다시 한번 이 冊子를 통해서 確認하면서, 아무쪼록 우리의 統一努力에 좋은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목 차

◆ 1980년 이후의 내독관계 발전에 관하여

1. 독일민주공화국의 여행규정 신설에 대한 내독성의 보고 (1980. 1. 3)	63
2. 서베를린 남부지역 교통시설 개축에 관한 독일민주공화국 교통성 산하 독일제국철도 철도시설 관리본부와 서베를린 건설국과의 교환공한 (1980. 1. 24)	65
3. 여행교통에서의 처리 교역(1980. 2. 5)	72
4. 「서베를린에서 유출되는 폐수의 전송과 취급에 관한 서베를린 건설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교통성과의 협정」(1980. 3. 18)	75
5. 연방수상 헬무트 슈미트, 국가상황에 관한 의회 보고(1980. 3. 20) ...	76
6. 국경위원회의 번호 56a와 66기록의 기재(1980. 3. 20)	100
7. 교통개선과 해양보호 문제에 관한 독일민주공화국과의 협상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1980. 4. 30)	100
8. 파리의 조약 효력 발생 25주년 기념일의 서신왕래(1980. 5. 5)	128
9. 67번째 국경위원회의 조약의정서에 대한 기록(1980. 6. 17)	131
10. 독일의회에 앞서 연방수상 헬무트 슈미트의 통치에 대한 해석(1980. 6. 17)	132
11. 독일민주공화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률에서 발췌(1980. 7. 3)	144
12. 수의협정의 효력발생(1980. 8. 14)	150
13. 연방수상 슈미트의 동독방문연기에 대한 클라우스 빌링차관의 해명(1980. 8. 22)	151

14. 경계위원회의 의정서 부록 제68호(1980. 9. 25)	153
15. 1980년 10월 9일자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액 시행에 관한 규정(1980. 10. 9)	153
16. 의무교환액 인상에 관한 클라우스 빌링 차관의 성명(1980. 10. 10)	155
17. 게라의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당정연수회 개막에 즈음한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의 연설(1980. 10. 13)	156
18.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의 게라연설과 의무교환액의 인상에 관한 클라우스 빌링차관의 성명(1980. 10. 15)	169
19. 독일연방의회에 앞서 연방수상 헬무트 슈미트의 정부성명(1980. 11. 24)	171
20. 의무교환액의 예외(1981. 2. 10)	175
21. 동베를린의 독일사회주의 통일당(SED)-구대표자회의에서 독일사회주의 통일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의 연설(1981. 2. 16)	176
22. 경계위원회의 의정서 부록 제69호(1981. 2. 26)	179
23. 동베를린에서의 인민의회 직접선거(1981. 3. 16)	179
24. 베를린에서 문화 상품 교역(1981. 3. 31)	181
25. 연방수상 헬무트 슈미트의 민족상황에 대한 보고(1981. 4. 9)	182
26. 동베를린에서 있었던 독일사회당의 10차당대회에서의 에리히 호네커 당서기장의 보고(1981. 4. 11)	207

27. 70, 71번의정서 메모와 경계위원회(1981. 5. 27)	211
28. 인민의회 선거에 대한 서방의 3강대국의 성명(1981. 6. 14)	212
29. 독일사회당 서기장 및 동독의 국가평의회 의장인 에리히 호네커와 연방수상 헬무트 슈미트의 만남에 관한 공동성명 (1981. 12. 13)	213
30. 뮐렌호수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연방수상 헬무트 슈미트의 테이블 연설(1981. 12. 12)	221
31. 뮐렌호수의 한 음식점에서의 독일사회당의 중앙위원회 당서기장겸, 동독의 국가평의회 의장 에리히 호네커의 테이블 연설 (1981. 12. 12)	230
32. 독일의회에서 연방 수상 헬무트 슈미트를 통한 폴란드에서의 발전 및 양독간 접촉에 대한 연방정부의 성명 (1981. 12. 18)	237
33. 서독 연방수상 헬무트 슈미트의 동독방문에 대한 동독의 당과 국가지도부의 의견 발표(1981. 12. 23)	250
34. 내독 상업에서의 신용 연장에 관한 협정(1984.12. 17)	253
35. 경계위원회의 의정서 각서 74번(1982. 6. 28)	255
36. 절실한 가족문제에서 여행자 왕래에 관한 동독의 규정(1982. 2. 15)	255
37. 선물휴대를 위한 무료한계 강화(1982. 2. 23)	258
38. 긴급한 가정문제로 인한 동독 시민에 대한 여행 완화 (1982. 2. 25)	259
39. 동독의 경계법과 경계규정(1982. 3. 25)	261

40. 내독교역에서 무이자의 속행과 증대에 관한 신용교역 및 동독 대외협력성간의 협정(1982. 6. 18)	310
41. 비상업성 지불거래와 청산거래에서 동독의 계약속행과 증대를 위한 서독 상임대표지도자와 동독 재무성차관간의 서한교환 (1982. 6. 198)	312
42. 1981년 1월1일 이전에 승인없이 떠났던 사람의 사면에 관해 동독이 서독연방정부에게 보낸 통지(1982. 6. 18)	314
43. 1일 입국할 경우 서베를린인을 위한 체류기간 변경에 관해 동독이 베를린시 의회에서 보낸 통지(1982. 6. 18)	315
44. 통과지점 슈틀페도르프에 관한 동독외무성과 베를린시 의회와의 서한 교환(1982. 1. 18)	315
45. 본의 신문발표에 앞서 동독정부와의 회담에 관한 에곤 프랑케 내독성장관의 성명(1982. 6. 21)	317
46. 전시회 교환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에 대한 내독성의 통지 (1982. 6. 23)	321
47. 1982년 6월 12일자 동독국적문제에 관한 규정(1982. 6. 12)	322
48. 독일연방의회에 앞서 정상회담과 세계정치적 지위에 관한 연방수상 헬무트 슈미트의 정부성명(1982. 6. 245) (발췌)	323
49. 동독국적 해제 규정에 관한 내독성의 통지 (1982. 6. 30)	324
50. 독일연방의회에 앞서 연방수상 헬무트 슈미트의 국가 지위에 관한 연방정부 성명(1982. 9. 9)	326
51. 청소년 관광에 관한 FDJ중앙위원회와 독일연방 청소년연맹 의장	

의 공동언론성명(1982. 9. 20)	344
52. 동독과 환경보호영역에서의 규정에 관한 내독성의 통지 (1982. 9. 29)	347
53. 베를린 통과 도로상의 상업상 탈출원조에 대한 성명	352
54. 독일연방의회에 앞서 연방수상 헬무트 콜박사의 정부성명(1982. 10. 13)	353
55. 신연방정부의 독일정책에 관한 내독성 정관 라이너 바르젤의 논문(1982. 11. 5)	357
56. 베를린-함부르크간의 통과 고속도로(1982. 11. 20)	371
57. 기본조약 10주년 기념일에 즈음한 연방정부의 성명 (1982. 12. 22)	373
58.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중앙위원회 서기장 겸 동독국가평의회 의장 에리히 호네커가 연방수상 헬무트 콜 박사에게 보낸 서한	374
59. 연방수상 헬무트콜박사가 독일사회주의 통일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겸 동독국가평의회 의장 에리히 호네커 에게 보낸 회신 (1983. 2. 16)	375
60. 소련의 천연가스를 서베를린에 공급하는데 관한 연방정부의 성명(1983.3. 30)	378
61. 국경을 넘어가다 사망하는 경우 (1983. 4. 10)	379
62. 연방정부 대변인 디터 슈틀체 차관의 성명 : 호네커 방문의 거부에 관하여	381
63. "신독일" 양독간의 관계에 대하여(1983. 5. 3)	382
64. 국경위원회의 75번 의정서각서 (1983. 6. 9)	395

65. 1953년의 6월봉기 30주년을 기념하는 연방대통령 칼 카르스텐스 박사의 경축사 (1983. 7. 17)	396
66. 베를린에서의 문화유산 교환 (1983. 6. 21)	409
67. 분단 독일의 국가 정세에 관한 연방정부의 보고, 연방수상 헬무트 콜박사(1983. 6. 23) >	410
68. 연방이 동독측에 10억 마르크의 대출을 보증해 주다 (1983. 6. 29)	428
69. 베를린 시장과 독일통일사회당 서기장의 대답(1983. 9. 15)	430
70.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동독의 규정(1983. 9. 15)	433
74. 자동발사 총기시설의 철거통고(1983. 10.9)	435
75. 하천정화 범위의 내독규정(1983. 10. 12)	438
76. 미사일 배치에 관한 독일통일사회당(SED)의 중앙위원회의 당의장인 에리히 호네커의 서신에 대한 연방수상 헬무트 콜박사의 답신(1983. 10. 24)	446
77. 우편교류의 개선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1983. 11. 15)	452
78. 동독과의 선물교류에 있어 지불에 대한 동독의 보고(1983. 11. 22)	459
79. 서독의 미사일 배치에 대한 독일통일사회당 중앙위원회의 당서기장인 에리히 호네커의 연설	461
80. 선물용 소포와 소화물 교류에 관한 동독 규정의 변경 (1983. 11. 29)	467
81. 베를린의 시가전철(S-Bahn)에 관한 규정(1983. 12. 30)	468
82. 동독으로의 약제운송(1984. 11)	476

83. 독일문제에 대한 내독성 장관 하인리히 빈델텐의 성명	477
84. 독일정책과 국제정세 보고에 대한 독일 연방의회의 의결	493
85. 경계위원회의 78~80번 의정서 각서(1984. 2. 29)	497
86. 경계위원회의 81번 의정서 각서(1984. 3. 1)	497
87. 분단독일에 있어서 국가정세에 대한 연방수상 헬무트 콜 박사의 보고(1984. 3. 15)	497
88. 청소년 관광여행을 위한 자유독일청년단(FDJ) -관광조사(1984. 4. 25)	522
89. 슈타켄(Staaken)을 국경통과지점으로 개방하는데 관한 동독의 통고	523
90. 내독관계의 발전에 대한 국무장관 필립 예닝거 박사의 성명(1984. 6. 25)	523
91. 소련의 시각에서 본 미사일기지의 전략배치와 독일정책	531
92. 동독의 시각에서의 미사일기지화와 독일정책(1984. 8. 1)	543
93. 소련의 시각에서의 준비중감 및 독일정책(1984. 8. 2)	550
94. 동독의 시각에서 준비중감 및 독일정책(1984. 8. 2)	555
95. 동독국가평의회 의장의 방문연기(1984. 9. 4)	567
96. 국민권 문제에 대해(1984. 9. 19)	569
97. 경계위원회의 82, 83, 56번 의정서 각서 (1984. 9. 27)	575
98. 내독간의 무역-자동차 지사(1984. 11. 12)	576
99. 동서정책의 긴장지역에서의 독일정책-연방장관 하인리히 빈델텐의 성명	578

100. 국경근처 가정칼리 채굴에 관한 내독간의 규정 (1984. 11. 13)	595
101. 베를린의 교량복구	611
102. 동독의 통행규정 (1985. 1. 8)	612
103. 베를린의 쓰레기 처리(1985. 1. 10)	620
104. 독일민주공화국의 관점에서 본 국민권의 문제(1985. 1. 30)	621
105. 베를린의 폐수처리(1985. 2. 15)	633
106. 경계위원회 84, 85번 및 62/85번 의정서각서 (1985. 2. 27)	635
107. 독일연방공화국 수상 헬무트 콜 : 분단 독일의 국가정세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보고	635
108. 연방수상 헬무트 콜박사와 SED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의 공동성명	661
109. 서베를린쪽의 새로운 통신망에 대한 협정(1985. 3. 15)	663
110. 독일민주공화국과 동베를린 여행시의 신용카드(1985. 5. 6)	674
112. 독일내의 청소년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청년단 (FDJ) (연설의 발췌문) (1985. 5. 21)	676
113. 경계위원회의 85번 32a 의정서각서 (1985. 6. 12)	677
114. 비상업적인 지불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신용한도 규정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 (1985. 7. 5)	678
115. 통과무역의 개선에 관한 협정(1985. 8. 15)	683
116. 화학무기 방지지역에 관한 연방수상 헬무트 콜과 독일민주공화국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의 서신	691
117. 국경위원회의 82 a번 의정서각서(1985. 9. 26)	694
118. 독일통일사회당 서기장인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의 서신에 대한	

연방수상 헬무트 콜의 답신(1985. 9. 27)	694
119. 평화를 위한 독일의 공동작업(1985. 11. 3)	695
120. 문화재의 교류 : 법률수행인법-청산법의 변경과 논증 (1985. 12. 19)	706
121. 국경위원회의 86번에서 88번까지의 의정서각서 와 66a 의정서각서(1985. 12. 5)	708
122. 양독관계에 대한 독일통일사회당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와의 인터뷰 (1986. 1. 30)	709
123. 동독인민의회 의장의 본 방문(1986. 2. 19)	751
124. 연방수상 헬무트 콜박사에 의해 행해진 분단 독일의 국제정세에 관한 연방정부의 보고(1986. 3. 14)	752
125. 독일민주공화국의 연해 확장 (1986. 4. 3)	778
126. 베를린에서의 문화재 교환(1986. 4. 3)	787
127. 독일의 통일과 인간의 편의(1986. 4. 17)	790
128. 독일통일사회당 서기장 호네커 : 양독관계에 대하여 (1986. 4. 17)	820
129. 독일통일사회당 지도부와 소비에트공산당 대표의 동베를린에서의 만남(1986. 4. 22)	823
130. 도시 자매결연 : 자아르루이스-아이젠취텐슈타트 (1986. 4. 25)	824
131. 의회담당차관 오토 폰 헤니히박사 : 본의 독일정책에 대하여	829
132. 문화협정(1986. 5. 6)	845)

133. 국경위원회 89번 및 90번 의정서 각서	860
134. 내독간의 교역-용역업무협정의 새 텍스트	861
135. 연방장관 하인리히 빈델렌 : 내독간 도시자매결연 관계에 대해(1986. 6. 11)	874
136. 비상업적인 지불거래 및 청산거래(1986. 7. 1)	882

1980년 이후의 내독관계 발전에 관하여

내독성장관 하인리히 빈델른

(Heinrich Windeln)

본서에서는 「10년간의 독일정책」이라는 제목하에 1980년대에 독일연방공화국 내독성이 이루어낸 내독관계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들이 6년도 더 지난 후에 이렇게 공개되는 것은 다만 하나의 중간평가로서의 기록이며, 바로 독일정책에서, 그리고 내독관계에서 특별하면서도 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실행되고 있는 하나의 발전과정에서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평화정세에 영향을 끼치고 독일민족이 자유로운 자결(自決)상태에서 그들의 통일을 되찾고자 하는 독일정책의 목표는 오로지 오랜 시간에 걸친 변화의 시각에서만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내독관계에 관한 작업에 있어서는 분단된 조국의 국민들의 실정을 지속적이면서도 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인내와 끈기가 요구된다.

최근에 들어 내독관계는 긍정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 진보는 많은 사람들이 내독관계가 냉각될 것이라고 예견하였으나 정부가 바뀐 후 나타난 것은 보다 더 훨씬 진보된 상태였다. 원칙적인 면에서의 명확성, 계산 가능성, 현실주의, 확고부동성이, 또한 일상정치에 있어서는 실용주의가 하나의 고무적인 평가를 가능케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I. 독일정책의 목표, 토대 및 과제들

독일정책은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은 그러한 독일 문제들의 해결에 좀더 접근하려는 모든 노력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서 독일정책은 현존하는 분단상황이 지속되는 한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을 지속 유지케 하고 또한 평화를 위한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포함한다. 독일정책의 목표는 유럽의 분열을 극복하고 모든 관련국가들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영속적인 유럽의 평화 질서를 이끌어 낸다는 테두리 속에서 모든 독일인들을 위한 자결권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독일정책의 일상적 업무는 독일국민들에게 있어서 분단이 낳은 결과를 철폐화시키지 아니하고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정책은 바로 유럽의 정책으로 연결되며, 유럽의 평화와 자유, 인권에 기여하는 것이다.

독일정책의 과제는 세가지 분야에 있다. 첫번째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든 정책은 독일의 자유민주주의적 질서 안에서, 그 안보와 안정 안에서, 그 경제적 안녕과 사회적 정의 안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자유로운 국민 공동체로서의 편입 안에서 독일이 지니고 있는 자유부문을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범위 내에서 독일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서방연합이 확고하게 결속해야만 우리 조국은 유럽권내의 경계를 넘어선 대화정책 및 협력정책을 위한

비중 및 자유로운 공간을 얻게 된다.

그러나 독일이 안고 있는 문제의 서방정책적 측면과 유럽정책적 측면이 단지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조국의 분단과 유럽 대륙의 분단은 동일한 기원을 갖고 있다. 자결권의 실현에 대한 요구의 측면에서 동독에 있는 우리 동포와 동유럽 및 동중부유럽국가 국민들은 서로 분리된다. 우리는 역사발전의 테두리 속에서는 자유의 이념이 예속과 억압의 현실에 대항하여 승리하리라는 점에 의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정책을 가지고서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적 자유, 그리고 인권과 자결권을 끈기있게 옹호할 때 우리는 오랜 시간을 두고 독일의 통일 -그리고 유럽의 통일- 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이 전유럽에서 관철되면 될수록 또한 우리는 독일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좀더 접근하게 될 것이다.

자유는 단지 독일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유럽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미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럽의 분할은 무엇보다도 각 민족들의 인권과 자결권의 문제이다. 유럽의 분할은 동중부유럽권의 민족들과 동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있어 자결권이 억류되어 있다는, 말하자면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억류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독일이 안고 있는 문제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또 민족적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그것이 개념적인 면에서 극우와 극좌로 이리저리 표류했던 20세기초의 사상세계로 헛되이 후퇴하는 결과가 될 것이

다. 자유는 우리 독일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없다. 이것은 통일이라는 목표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동시에 통일을 위한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설정한 이러한 목표에 주목해 볼 때 이를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독일통일의 문제가 세계정치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의사 일정속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알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문제와 유럽의 문제는 서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민족이 그들의 통일에 보다 접근하면 할수록 유럽은 자신의 분열을 점차로 극복할 수 있으며, 마침내 독일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가서야 비로소 유럽은 자신의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독일정책의 두번째 과제는 독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제를 보존하려는 노력에 있다. 독일정책과 우리의 동맹국들이 의존하는 기본토대를 보존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와 동시에 국가가 분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단결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후 40년이 지나도록, 또한 베를린장벽이 생긴지 25년이 넘도록 우리는 독일인이며 여전히 한 국민, 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공통언어, 공통문화, 공통역사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 물론 동독의 독일통일사회당(SED)이 진보적으로 자기 지역 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해 독일의 역사로부터 자기네 정책을 증명하려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 또한 한 국가가 되려는 우리의 의지를 볼 때도

그렇다는 것이다. 동독인들에게 있어서도 이점은 명백한 것 같다. 왜냐하면 동독인들은 분단이 낳은 결과로 인해서 서독인들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며 그들은 우리의 공동의 역사적 유산중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독과 동베를린에 경계가 그어지고 난 후에 성장해온 바로 그 세대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경계가 어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통으로 느껴지는 분단의 벽으로서 여겨진다는 점을 알고 있다. 또한 자유독일에서 자라난 세대들에게 이러한 경계 너머에서, 즉 동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계속해서 알려 주고 그들에게 전체독일과 동독국민들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책임에 관한 인식을 전해주는 것이 독일정책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 우리들 자신은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또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독일땅에서 내독간의 경계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체험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젊은 세대에서도 내독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작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다. 동독을 방문하고 돌아온 학생들의 학습 보고를 볼 때 가서 직접 보고 같은 나이 또래의 이들과 만나는 것이, 또한 사람들의 사상이나 감정면에서의 협력이 더욱 더 지속된다는 체험에 대해 솔직해지자는 것이 얼마나 당혹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지 우리는 명백히 추측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통일은 공허한 수사학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실제 현실인 것이다.

독일정책의 세번째 과제분야는 내독관계이다. 이 내독관계는 그 첫 번째 노선에 있어서는 양독사이를 보다 친밀한 이웃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가능한 한 많은 생활영역에서 서로 필요로 하는 협력에 대해 이성적으로 합의하여 독일 국민들이 안정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양독사이에 일상적으로 우호적인 이웃관계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과 상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독일에서의 보다 나은 정상화는 경계선(국경선)을 통과하게 되고 만남이 가능해지며 접촉관계를 회복하여 심화시킬 정도가 돼야만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나은 정상화 상태를 얻으려는 우리의 노력은 - 국가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한층 더 개인적인 의미에서 - 동시에 실질적인 긴장상태의 현실 정치에 대해 기여하는 것이다. 특히 양독에 있어선 진짜 긴장상황이라는 책임적야 할 과제에 대해 서로 협력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점에 대해 양독이 특별히 나은 전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양독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볼 때 이점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양독은 기본조약이나 전유럽안보회의(KSZE)결의 속에 들어 있는 그 정신과 조항에 일치하는 그들의 관계를 창출해냄으로써 모범을 보여줄 수 있으며, 또한 모범을 보여야만 한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동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걸음 한걸음 경계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정치에 있어서 우리는 동독사람들과 우리의 희망이나 견해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대화와 협력은 양측에서 인식할 수 있는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한편 여기서 우리는 또한 동독이 지니는 책임과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동독 또한 주민들의 기대를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출되지 않은 의미 - 예를 들면 주변 세계 정책과 같은 - 의 적지 않은 문제들에 있어서도 양국은 서로 얽혀 있다. 원래부터 이해가 일치하지 않았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절충을 통해 이해를 조정할 수 있다. 동독정부는 내독간의 조약정책에 있어 그들에게 적절하면서도 필요한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성과란 바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고 주민들에게서 더 많은 동의를 얻는 것이다. 동독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들도 급진적인 입장에서 양독관계를 양독자신들에 의해서 규정지으려 한다는, 말하자면 대화와 협력을 통해 규정지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독정부의 태도를 그들이 양측의 이해를 만족시키고 서로간에 이해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협력의 장을 건설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려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방정부가 펴는 독일정책은 평화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통일된 유럽에 있어서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독일국민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전문(前文)의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모든 정치세력들은 오로지 평화적인 과정위에서 우리 독일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한다. 무력을 포기한다는 원칙은 「피난민헌장」에 관한 우리의 「기본법」(1950), 에어하르트

(Erhard, 1966) 정부의 「평화의 필요성에 관한 독일조약」(Deutschlandvertrag, 1955),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 및 「동방조약」(Ostverträge) 에서부터 1984년 「연방의회의결」(Bundestagesentschliessung)에 이르기까지, 논쟁의 여지도 없이 승인되어 누구도 의심치 않는 우리 독일정책의 기본토대가 된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유럽평화에 대한 요구와 일치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평화는 무기의 침묵 이상의 것이다. 평화는 정의와 자결권이 지배하는 곳에서 또 인간과 정보 및 의사표현이 방해받지 않고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곳에서 성취될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베를린 장벽은 부자유와 무력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절대의 상징이요, 동시에 그 도구인 것이다.

우리의 정책은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불신을 없애고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관계를 가져오게 하는 한걸음 한걸음이 이미 그 자체로 긴장상황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작고한 알로이스 매르테스(Alois Mertes) 국무장관(Staatsminister)이 지적한 다음과 같은 구분은 이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평화정책은 평화를 조성하고 평화를 보존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평화를 보존한다는 것은 방위능력을 보존하고 군사적인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는 하나의 과제이며 또 앞으로도 그러한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과제는 동맹의 테두리내에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양국이 그때 그때마다의 동맹상의 특별히 중요한 파트너라는 바로 그점 때문에 독일의 모든 특별한 역할은 숙명적인 것이 될 것

이다. 협력적인 내독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하나의 전제가 성실한 동맹관계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그와 더불어 우리의 동맹국들로부터 우리의 안보와 독일정책에 대한 지지가 보장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이다. 동독정부 역시 이점에 대해 아주 명백히 하고 있다. 즉 우리가 추진하는 안보정책과 동맹정책이 내독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안보정책에 상반되는 방향으로 내독관계를 마감지으려는 모든 시도는 비생산적인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도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며 긴장상황이 발전되는 위험을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시 직접적으로 독일과 관련이 없는 주제나 논쟁으로 내독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며 심지어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화학무기사용 금지지역 및 핵무기사용 금지지역에 관한 협상, 전략무기 및 중거리 핵미사일에 관한 협상, 전략방위계획(SDI)에 관한 협상등, 이러한 협상들은 미소 양대국 내지는 동맹국들 사이의 협상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양국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려는 사람은 우리의 가능성을 위협한 방식으로 과대평가하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독간의 이해를 해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평화를 조성한다는 것은 양국이 긴장의 원인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그들의 책임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여기에서 양국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만남을 조성하며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 말하자면 서로 교류하고 또한 정보를 교환하며 언제나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협력속에서, 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 등의 모든 것이 평화에 기여한다는 그러한 원칙에서 방향을 설정하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전망은 긴장의 원인을 제거할 때만이 효과적으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는 목표를 향해야만 한다.

독일정책과 평화정책에 관해 이러한 견해를 갖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서방 동맹국들과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독일정책의 철학은 일반적인 서방정책의 기본토대와 일치하는데 이러한 독일정책의 철학은 1967년의 「하멜-보고」(Hamel-Bericht)속에 들어 있으며, 또한 1984년에 있는 나토(NATO)외무장관의 워싱턴 연설에서 확인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동맹파트너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정당하고도 항구적인 정책은 충분한 군사력과 정치적인 연대를 보존하고 이러한 기초위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동서 양진영사이의 보다 안정된 관계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서로 보존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군사력만이 평화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국민들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고 또한 정통성에 관한 이해문제를 달리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맹파트너들은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과 보다 조직적인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그들의 노력, 다시 말해서 진정한 긴장

완화를 얻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단호히 수행할 것을 천명한다. 또한 그들은 우리 독일정책의 목표를 지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결권이 우리의 공동정책의 기본가치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은 자유로운 자결을 요구하고 있는 전체 독일민족이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그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파트너들은 앞으로 더욱 더 모든 유럽민족의 공동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의식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계속되고 있는 유럽의 분단, 특히 독일의 분단에 직면하여 동맹국들은 독일민족이 자유로운 자결속에서 그들의 통일을 되찾음으로써 유럽에서의 평화적 상황을 향해 노력하고자 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적 목표에 대해 예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지지를 보낼 것이다” 미합중국의 외무장관은 유럽에 있어서의 신뢰회복조치와 군비축소문제를 다룬 회담(1984년 2월)에서, 유럽을 가르고 있는 경계는 인공적인 경계이며, 미합중국은 인공적으로 그어진 유럽분합의 정당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연방정부의 독일정책은 분명히 올바른 정치적 토대에 기초하고 있다. 즉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공동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자유로운 자결상태에서 독일의 통일을 완성하고 3대 서유럽 강국이 그들의 조약상의 의무를 강화한 독일조약(1955)을 공동으로 실현시킨다는 의무를 그 전문(前文)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들의 공동목표란 바로 독일의 재통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통일된 조국이란 공화국과 비슷하게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고 유럽공동체에서, 즉 1970년의 「모스크바-바르샤바조약」, 1971년의 「4대국협정」(Vier-machte Vereinbarung), 「독일의 통일에 관한 서한」, 1972년 5월 17일의 「독일연방의회(Deutsche Bundestag)의 공동의결」, 1973년 7월 독일민주공화국과의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 1975년 7월 서독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의 의결 등과 같은 유럽공동체에서의 하나의 통합된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1944년 2월 9일 독일연방의회의 공동의결은 독일연방의회에 있어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정당들이 그 법률적 토대에 대해 승인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밝혀 준다.

즉 “우리나라는 분단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민족은 계속 존속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힘으로써 독일의 분단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독일의 분단상황을 보다 견딜만하고 보다 덜 위험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독일의 분단상황은 유럽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평화질서의 테두리 내에서만이 변화될 것이다.(...) 독일연방의회는 독일민족의 자결권(Selbstbestimmungsrecht)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독일민족의 권리를 강화한다.(...) 독일연방의회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용한 성과를 심화시키고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목표를 갖고서 조약에 충실하고 균형있게 현명한 계산을 한다는 기초위에 독일민주공화국과의 관계 및 그들에 대한 준비를 강화한다. 내륙간의 조약정책(Vertragspolitik)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단이라는 결과를 좀더 견딜만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민족의 통일을 보존해야만 한다”

따라서 동독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독간의 기본조약이 규범이 되고 또 그것을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것이 공동의 과제이며 또한 앞으로 계속 그러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고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내독정책이 독일과 유럽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오랜 노력속에 포함된다는 점 또한 명백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독일정책의 토대와 거기에 입각한 정당들의 동의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그점에 있어 1984년 2월 독일연방의회 의결의 원칙과는 반대로, 또한 그 원칙에 대한 승인을 고수하려 했던 야당들로부터의 경고의 소리와는 반대로 독일의 문제는 더이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분단 속에서 역사적 기회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명제가 제기되었다.

나는 이러한 진술이 잘못된 것이며 해를 미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진술에 모순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 독일인들은 우리 자신을 한 민족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독일이라는 국가는 분단되었지만 그러나 독일민족은 우리 자신을 오로지 같은 혈족으로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쪽에서 본다면 우리는 정치적 분단을 심화시키고 보다 나은 공동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짓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독일인들은 서로간에 보다 강력하게 결속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국토를 가르고 있는 경계를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동독의 독일통일사회당 정부가 베를린 장벽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

에 이 장벽이 우리의 그런 희망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장벽에서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문이 닫혀있는 한 독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참된 명제가 나타난다. 우리 독일은 역사적 기회를 분단속에서가 아니라 분단의 극복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독일의 문제를 포기하려는 것 또한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그것이 우익이든 좌익이든 간에 다른 세력에게 통일의 희망을 남겨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서기장이 1981년 2월 동베를린(Ost-Berlin)에서 있었던 독일통일사회당 지방대표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기억한다. 그 자리에서 그는 사회주의가 연방공화국의 문을 두드릴 때 양독의 통일문제가 새로이 제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는 이러한 기대가 현실적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호네커가 자기 시대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산주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어떤 목표를 가져왔는가를 보여 준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이름을 빌어 행해지는 부당한 조치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자결(自決)을 상실한 모든 민족과 우리 국민들 앞에서 모든 유럽인들이 자유로운 자결 속에서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 민족이 평화 속에서 우리의 통일을 재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유럽의 평화질서라는 목표를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모든 민족에게 의무를 지우고 굳건하게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자유로운 질서에 기반을 둔 힘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러는 우리의 신념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II. 1980년에서 1982년까지의 내독관계의 발견

80년대초에 독일정책은 명백히 동서 관계의 악화라는 그늘 속에 있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보고 많은 서방정치가들은 70년대의 「긴장완화정책(Entspannungspolitik)」이 잘못된 기대와 가정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품게 되었다. 즉 1981년 12월 폴란드에서 이루어진 전시국제법(戰時國際法, Kriegsrecht) 제정 당시 동서의 협력정책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양대 사건은 70년대 중반이후 신종 SS-20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유럽에서의 세력 균형을 깨뜨리려는 소련의 군비무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다는 데 대한 명백한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소련의 무장은 소련이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부가적으로 서유럽에 대해 잠재적인 위협을 하는 한편, 대서양연합기구에 하나의 쐬기를 박기 위해 상대적인 동서 긴장완화에 무기를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낳게 했다. 나토(NATO)는 1979년 12월 이중결의(二重決議, Doppelbeschluss)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응했다. 즉 한편으로는 소련과의 교섭을 통해 그들의 무기를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만약 소련이 그럴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토는 가능한 한 최저수준에서 소련에 의해 깨진 세력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1983년에 108기의 퍼싱 II 미사

일과 464기의 크루즈미사일을 추가배치함으로써 재무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 10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소간의 유럽 전략무기 제한에 관한 회담은 성과없이 끝났다. 그 대신에 소련은 동구 동맹국들과 더불어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나토의 의결”을 실천하는데 반대하는 서유럽의 여론을 동원하려고 시도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소련이 서독수상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가 공동서명한 이중결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추가무장 반대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이였다.

내독관계에 있어서 독일민주공화국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전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동독측에서는 이러한 내독관계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동독정부는 한편으로는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이 1980년 라이프찌히(Leipzig) 가을미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럽에서의 긴장완화과정을 요구하고 그와 더불어 결속을 통해 양국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것에 계속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정부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안보이해에 상반하는 내독관계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은밀히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나토의 군비증강을 나서서 고무하고 핵무기로서 유럽의 군사전략적 세력균형을 침해하는 것은 양국사이의 보다 지속적인 관계정상화에 상반되는 효과를 초래하며, 이미 이루어진 기존과제마저 위협하게 만드는 사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부대법안을 거부했다. 당시의 내독성 장관인 에곤 프랑케(Egon Franke)는 1981년 6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독이 내독관계를 기본적인 안보문제 및 동맹문제에 관한 서독의 안보문제 및 동맹문제에 관해 서독의 태도와 연관시키려는 것은 양독사이의 협력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또한 하나의 협력적인 친선관계는 쌍방이 상대측에 동맹국들에 대해 모든 그들의 요건상 문제시하지 않을 때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관계수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동독은 알아야만 한다.”

동독의 실질적인 조치를 보면 경계를 그으려는 정책에로의 경향이 지배적이다. 한편 1980년 연방의회 선거가 끝난 후 나흘 동안 동독정부는 “비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오는 여행자들을 위한 최저교환원칙(Mindestumtauschsätze)을 갑자기 올리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이미 1973년에 동독정부는 한번 이와 비슷하게 급작스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엔 신용한도(Swing)의 새로운 확정과의 연관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철회하였다. 지금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즉 동독 및 동베를린을 방문하는 사람은 15세 이하 청소년과 노약자를 포함해서 일인당 하루에 평균 25마르크(DM, Mark)를 교환할 수 있다. 예전에 동베를린에 체류하는데 있어 하루에 6마르크 50페니히(Pfennig), 동독은 13페니히를 교환할 수 있었던 것과는 상대적이다. 또 어린이와 15세 이하 청소년에 있어선 최저교환액이 하루 평균 6마르크 50페니히로 규정되어 있었다. 동서교류에 있어서의 이러한 증가는 방문자수의 갑작스런 감소를 가져오게 되었다. 1980년

11월에 방문자 수는 그 전해 11월과 비교해 볼 때 동독에로의 여행자는 24%, 국경근처의 왕래가 30%, 서베를린으로부터 동베를린이나 동독으로의 여행에 있어선 60%가 감소하였다. 또한 그 다음해에도 방문자 수는 교환액이 증가하기전의 숫자보다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독마르크의 서베를린 루자”를 억제하려 한다면 소위 최저교환액을 올린데 대한 이유는 납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연방수상 슈미트는 10월 12일자 어느 연설에서 그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동독에 대해 양독사이의 여행왕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이 승인한 의무규정을 엄수하라고 경고하였다. 에리히 호네커는 “우리의 동맹에 의해 결정된 정책”에 대한 대답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브뤼셀에서 열린 미사일배치 결정회의를 제안하고 원내총무를 맡았던 슈미트 수상이 동독과 여행제한 완화조치에 대해서 대화할 필요를 느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대서방정책을 보면 폴란드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강화된 경계 설정에의 필요와 더불어 내독간 조약정책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리히 호네커가 1980년 10월 13일 게라(Gera)에서 행한 연설에서 제기한 일련의 요구들은 내독관계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내용들이었다. 그는 양독사이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전제로서 다음과 같은 요구들을 제시하였다.

- 동독의 국권에 대한 인정

- 잘쯔기터(Salzgitter)에 있는 「중앙잡시기구」(Zentralerfassungsstelle)의 해체
- 동베를린과 본(Bonn)에 있는 상주대표부를 대사관으로 바꿀 것
- 국제법에 상응한 엘베(Elbe)강으로의 경계 연장의 확정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은 그 핵심에 있어서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과는 다르게 내독관계의 토대를 합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그러한 목표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연방수상 슈미트는 국가정세에 관한 보고에서 연방정부는 변함없이 독일의 국민은 공동소속(국민공속성)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모든 독일인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독일연방공화국의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동독이 오늘날까지 그때 그때마다 내독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의 전제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위한 계획으로서 내놓고 있는, 이 게라(Gera)에서 제기한 요구들을 볼 때 내독관계상황에 대해 연방정부와 동독정부 사이에 근본적인 의견대립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동독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러한 요구들은 양독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해소시키고 양국 사이에 국제법상의 관계를 확정짓는데 기여하는 것이나, 이것은 연방정부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즉 “정상화”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간적 만남의 정상화, 기본조약에 입각한 쌍방간 교류의 정상화로 의미한다. 나는 이점에 대해 이미 이전에 기회가 있었을 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게라에서 제기한 요구들은 실현시키기 어려운 것이며 그 법률적인 핵심에 있

어서도 실현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한 요구제기는 그 요구가 실현된다고 해서 어떤 실질적인 유용성도 얻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을 실천함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나는 한 우리는 그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이성적인 해결에 도달할 수는 없다. 이러한 태도는 이성과 현실주의라는 기준에 상응하는 것이다. 연방정부로서는 민족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방향으로서는 어떠한 시각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동독의 대내외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독립과 자주성을 존중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것은 기본조약에 들어 있으며 우리는 그 점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독일내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로 남아 있다. 이 두개의 국가는 이미 서로 타국이 될 수는 없다. 이성과 현실주의적 견지에서 본다면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양국이 상이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조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 독일의 현안문제가 독일인의 자유로운 자결권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근본적인 긴장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물론 양국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서로의 관계진행에 있어서의 장애물로서 고착화시키거나 아니면 이 장애물을 한쪽으로 제거함으로써 이 장애물이 실질적인 협력을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알고 있다.

어쨌거나 우리에게 있어 양독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결정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독일의 법적 상황은 연방정부나 동독정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독일에 대해서는 2차대전에서 승리한 4대 강국의 책임이 있다. 소련 또한 (예를 들면 1975년에 체결된 동독과의 「우호조약」에서) 승전국으로서 전체독일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법적 지위를 조심스레 손에 쥐고 있다. 내독관계의 구조적인 계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이 수행가능한 분야에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실현될 수 있는 상황조건들이 제기되는 것이 필요하다.

베를린(Berlin)정세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독은 동베를린을 자신의 완전한 소속지역으로 선언하고 그 지역을 4대 강국의 책임권으로부터 끌어내려는 그들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981년 3월 동베를린의 국민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기 위한 국가평의회 의결은 중요한 발전이었다. 이미 3대 서방강국들은 그전부터 동독은 4대 강국의 권리와 책임 및 베를린정세에 관계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었다. 1981년 12월 베르벨리엔 호수(Werbellensee)에 대한 연방수상 헬무트 슈미트의 노력은 양독관계에 있어 다만 약간의 진전을 가져 오게 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즉 그 노력은 이런 증대한 사건으로부터 기대된 현안타개물 가져오지는 않았다. 특히 연방수상이 귀스트로프(Gustrow)를 방문한 것은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이 귀스트로프는 동독이 막대한 경찰력을 동원해서 방문자와 주민들 사이의 접촉을 미리 저지했던 곳이었고 시민들은 완전히 외출이 금지되었다. 이것은 전체적인 개방주의에 직면하여 자기 주민들의 불안정과 약점을 공인한 것이었다.

올해 동독이 내독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것을 보면 그 발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성과가 완전히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즉 전화교류와 전신교류에 있어서도 1980년에서 1982년까지 1977년의 연간 120전에서 총 702전이 증가된 전화교류가 있었다. 1980년 8월 14일에는 수의협정이 실현되었다. 동독으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오는 연금생활자들의 여행횟수는 1980년의 137만회로부터 1981년에는 157만3천회로 늘어났으나, 1982년에는 다시 155만회로 감소했다. 1980년에서 1981년사이 후퇴했던 동독으로의 여행교류는 1982년에는 다시 증가했다. 1982년에는 총 11,000명의 젊은이들이 동독을 여행했다. 1982년 9월에는 연방청년연합(Bundesjugendring)과 자유독일청년단(FDJ) 중앙위원회 사이에 내독간의 청소년교류에 관한 하나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비상업성 지불거래(Zahlungsverkehr) 및 청산거래(Verrechnungsverkehr)의 증가(1982년 6월 18일), 서베를린 사람들이 동독이나 동베를린에 하루당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오후 2시까지 2시간 연장된 것, 1982년 11월 20일 베를린-함부르크(Hamburg)간의 고속도로가 개방된 것, 그리고 1982년 2월 위급한 가족문제가 있을 때 신청가능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기회가 늘어난 것, 이런 내용들이 바로 내독간의 협상에서 얻은 수확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전에는 여러 해동안 뒷걸음질쳤던, 위급한 가족문제로 여행하는 사람의 수는 1982년에 45,000명 이상으로 25%나 증가했다.

내독간의 이해조정에 있어서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마르크

화 수입에 대한 동독의 이해로 인해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하나의 협정가액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연방정부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맞추는 원칙에 대한 이해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개별적 조치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협정과 연관될 때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점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개선은 그것이 어려운 문제인 만큼 비중있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연방정부와 베를린정부의 현재 연간 지불액은 - 양국의 최대의 우편 통화총액 5억2천5백만 마르크와 우편총액 2억마르크와 더불어 - 총계 100만 마르크를 넘는다. 이렇게 볼 때 인도주의적인 노력에 대한 성과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소득이 분단독일의 국민들로 하여금 측정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안정을 시키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정책원칙이다.

그러나 동독정부에 대해 걸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대는 사회진보 연합정부시대가 막을 내릴 때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여행교류에서 중요한 것이었다. - 더욱이 양쪽이 인적 교류 및 정보, 의견의 자유로운 교류에서 훨씬 멀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동독정부의 조치를 통한 독일인들의 만남의 가능성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독일연방공화국이 실천한 고무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독관계는 정체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원인은 동독의 독일통일사회당이 경계를 긋자고 요구한 것 이외에도 내독관계를 안보문제에 관한 독

일연방공화국의 호의적 태도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들의 시도였다. 그러므로 사회진보연합에서 중도연합으로 정부가 교체되었을 때 내독관계에 급격하면서도 필요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Ⅲ. 1982년에서 1986년까지의 내독관계

중도연합정부가 중앙에 들어 서자 당시 연방내독성장관 라이너 바르젤(Rainer Barzel)은 연방정부가 그들의 독일정책에 있어 밀접한 연관성(연속성)(Kontinuitat)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밝혔다. 즉 “밀접한 연관이란 빨간색의 가는실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밀접한 연관이란 민주주의 독일의 전통에 대한 인정이다. 독일정책에 있어서 밀접한 연관은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신들의 통일을 완성하려는 전체 독일민족에 환기시키는 헌법 전문에 대한 인정이다. 말하자면 연관성이란 독일민족이 자유로운 자결 속에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 결정하는 그러한 유럽의 평화상황을 실현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연관성이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음 사실, 즉 우리가 헌법속에서 지지하고 있는 독일국민의 의지를 매우 진지하게 수용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독일국민의 의지는 끊임없이 생생하게 고수되어야 하며 우리의 목표로 향하는 하나의 힘으로서 느껴져야만 한다. 독일의 역사를 새로이 창조하는 우리 민족의 통일은 현재의 분단상태 속에서

보존되면서 또한 우리 민족의 장래를 규정지어야 하는 그런 통일이다”

내독관계는 양국이 경계를 얼마만큼 극복하는지 아니면 더욱 고착화시키는지, 또 민족의 단결을 얼마만큼 촉진시키는지 아니면 방해하는지에 의해서 측정되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독일민족에 대해 관심을 돌리며 과거 속에서 생겨난 독일민족의 통일이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의 우리의 과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일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나라나 우리의 동맹국들을 향하여 우리의 독일정책이 유럽의 평화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유럽의 경제체제를 넘어서는 협력정책은 이러한 경계를 사실상 극복하는데 기여해야만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독일인의 희망과 유럽평화의 요구가 만나지게 될 것이다.

내독관계가 이러한 테두리 속에 있기 때문에 동독과의 조약정책은 조정될 수 있다. 연방수상 콜(Kohl)은 이점을 자신의 첫 정부연설에서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동독과의 협조방식은 합의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협정들에 있어서 협조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협정들을 능동적인 평화정책의 도구로서 사용할 것이다. 동독은 우리가 떠맡은 모든 의무들에 대해 협조적일 것이라는 점을 믿어도 좋다. 또한 우리는 내용에 있어서나 정신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협정들을 고수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협정들이란 정치적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폭력이란 있을 수 없으며 서로 분단된 사람들의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점을 통해서 중부유럽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의 협력은 인접한 유럽 제국가들의 이해를 보다 증진시켜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현행의 교섭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친 광범위한 협정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가치가 있는 협정의 토대 위에 이해관계를 갖는다. 연방정부는 조약에 성실한 자세를 갖는다면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국사이에 무엇에 관해 합의를 봐야 하는지가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기본조약과의 연관관계에서 특정한 원칙적 문제들이 미해결인 채로 있다는 사실에 대한 합의 또한 여기에 속하나 이것은 오늘날에도 조정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 조정이 내륙관계의 보다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전제가 된다면 그것은 조약에 충실하려는 우리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고위층에서의 일련의 개인적 만남에서 연방정부는 내륙관계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분명히 밝혔다. 연방대통령 칼 카르스텐스(Karl Carstens)와 호네커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이 1982년 11월 소련의 국가원수 겸 당서기장 브레즈네프(Breshnev)의 장례식때 서로 만난 이후 며칠 안가 마그데부르크(Magdeburg)에서 열린 「도시공원 - 공원도시(stadt park-park stadt)박람회」 개막식에서 연방건설성 오스카 슈나이더(Oscar Schneider)장관과 동독건설성 볼프강 융커(Wolfgang Junker)장관사이에 접촉이 있었고, 또한 베를린과 함부르크 사이를 잇는 고속도로 개통식에서 연방교통성 돌링거(Dollinger)장관과 동독교통성 아르트(Arndt)장관 사이에 접촉이 있게 되었다. 1982년 12월에는 연방수상실 국무장관 예닝거(Jenninger)가 동베를린으로 여행을 떠났으며

그 곳에서 문화교류에 관한 협의를 다시 수용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연방수상은 이미 정부교류 이후 직접 전화대화에서 그의 선임자가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에 대해 서독을 방문해 주도록 요청한 초대를 재확인했다.

정부교류 이후 내독관계의 범위에는 결정적인 단계에 들어선 군비 추가무장(무기추가배치)에 관한 협의도 포함된다. 1982년에서 1983년에 걸쳐 동독정부는 내독관계에 있어서 추가무장이 가져올 위험한 결과에 대해 계속 경고했다. - 여기에 대한 협의는 미국의 미사일 그늘에 가려 성사될 수 없었거나, 다만 된다해도 어렵게 성사될 수 있었다. - 그러나 동독정부는 다른 측면에서 양국 사이의 관계구성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대답했다. 여기에 관련하여 당시의 내독성 장관 바르젤(R. Barzel)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즉 "양독간의 협력은 독일과 독일인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과 대화는 계속될 것이다.(...) 최근 동독이 암시했듯이 양국사이의 관계는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설치로 인해 손상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진지하게 소련이 유럽의 중거리 핵미사일권에 먼저 무장을 하거나 과잉무장을 하는 단계에서 실천적인 내독정책의 지속적인 수행이나, 가치있는 협정의 고수가 지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해 왔다. 소련의 과잉무장이 양독간의 관계에 기초가 될 수는 없다. 독일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연방정부가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들이 신뢰의 원리를 통해서 실권의 원리를 보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분명한 표시는 동독이 한 은행조합으로부터 빌린 백만 마르크에 달하는 차관에 대한 보증을 연방정부가 선 것이었다. 동독국민에게 세금을 부과시키지 않고자 하는 이러한 한 걸음의 진보는 연방정부가 1983년에 동독정부에 대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시한 바로 그 문제에서, 또한 내독관계의 안정성과 그 구축가능성이 의심되는 시점에서 연방정부가 협력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연방수상 콜(Kohl)은 1984년의 국가정세를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연방정부는 백만 마르크에 달하는 서독은행의 대출에 합의함으로써 작년 여름 동독정부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이러한 결정은 동독국민에 대한 하나의 통지였고 또 그들로부터 좋게 이해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안보와 동맹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내독관계에 있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얼마전 1983년 봄에 내독국경에서는 여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한 사람의 사망사건이 있었다. 루돌프 부르케르트(Rudolf Burkert)라는 한 서독여행자가 소위 통과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동독의 국경감시소에서 심문을 받았는데 심문받던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여론은 동독의 조사기관들이 서독여행자들에 대해 때로는 거칠고 또 종종 악의에 찬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 새로이 날카롭게 주목하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동독대표들과의 회담에서 국경감시는 명백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에 따라 얼마 안가서 동독조사기관의 태도가 바뀌었다.

1983년 9월에 최저교환원칙이 부분적으로 개선된 것은 (여기에서 6세부터 16세까지의 어린이는 교환원칙에서 면제되었다) 이러한 내독간의 이해조정 맥락속에 있다. 동시에 1983년 7월 유럽의회(Das Europäische Parlament)가 통계적인 교류의 폐지를 요구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유럽의 견해는 명백해졌다. "동독을 방문하는데 있어서 최저교환액이 하루 평균 25마르크로 오른 것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려는 독일적인 취미가 아니라 이것은 유럽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자유이주권과 인권, 그리고 헬싱키결의(Schlussakte von Helsinki)의 정신과 조문에 대한 위반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1983년 봄의 상황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즉 안보정책을 잘 수행하라는 동독요구의 기각, 백만 마르크의 차관과 친절한 국경검사를 위한 성공적인 노력(예를 들면 내독 관계에 있어서의 연방정부의 노선)이 그것이다. 이와 동시에 동독의 계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1983년 여름에 있어서와 같은 이해관계는 1년후 서독정부가 두번째로 대출보증(약 9억5천만 마르크 상당)에 대한 책임을 졌을 때 확증되었다. 동독은 서독정부에 대해 내독간 여행교류에 있어서의 일련의 완화조치를 통보했다. 이때 서독측의 연금수혜자들을 위한 최저교환원칙의 적용제외, 동독측의 연금수혜자들을 위한 가능성 확장,

또한 국경근처의 여행교류를 개선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통보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었다.

동독정부는 자신들이 유연하면서도 현실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연방 정부의 정책기반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했다. 연방의회선거가 끝난 후 1983년 3월 6일 동독국가평의회 의장 호네커는 라이프찌히의 봄미사를 열기 위한 순시에서 연방대통령 카르스텐스와 연방수상에 대한 자신의 초청이 1983년 안에는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그는 그러한 만남이 앞으로 하나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양국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핏 보기에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독일의 - 독일적 관계를 부분적으로나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상황들을 논박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배경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983년 가을, 동독국가평의회 의장은 내독관계에 대해 하나의 긍정적인 중간평가를 했다 -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중간결산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 서독수상 헬무트 슈미트가 호네커 서기장을 방문한 사실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는 서독 정부의 교체가 내독관계에 해를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983년 10월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은 연방수상에게 한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에서 그는 연방수상에게 추가무장하겠다는 태도를 바꿀 것과 "독일민족의 이름으로" 유럽을 비핵지대화할 것을 요구하는데 찬성할 것을 요청했다. 연방수상은 자신의 회답에서 바로 소련이

먼저 무장한데서 비롯된 유럽의 세력균형 및 안보의 위협에 대해 언급했고 1982년 6월 10일에 나온 나토(NATO)의 발표에 대해 언급했다. 연방수상에 의하면 “우리들의 무기중 어떤 것도 먼저 배치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격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나토의 발표에 의하면 “그러나 독일국민들은 우리가 유럽의 평화정세에 영향을 미치도록 기대했다. 이런 평화정세 속에서만이 자유로운 자결에 의한 그들의 통일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수상에 따르면 “유럽의 평화는 경직된 독일의 분단을 허물고 유럽의 평화질서라는 테두리 속에서 분단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만이 보다 확고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끄는 연방정부가 그전과 마찬가지로 교섭에 있어서 모든 가능성을 활용하고 독일국민과 모든 민족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평화의 상태, 협력의 상황을 조성하는데서 비롯된다. 상황을 참여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이르면 양독은 관계의 결속, 협력의 결속을 구축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양독이 그들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로부터 유럽정세를 위한 긍정적인 자극이 비롯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노력할 때만이 독일국민과 평화를 위한 그들 공동의 책임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연방의회선거가 끝난지 이틀 후 독일통일사회당(SED) 의장은 독일 통일사회당 중앙위원회 7차 대회 연설에서 추가무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동독과 서독사이의 관계

에 관한 기본조약을 포함한 유럽의 협정체계는 심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이 손상을 줄이는데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얻은 것들이 보존되고 그것들의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 속에서 확장될 때 현존의 협정체계는 더욱 나아가 양국사이의 평화적 관계발전을 위한 좋은 토대가 될 것입니다.” 즉, 동독은 분명히 서독이나 다른 서방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국제적 환경조건 하에서도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고자 애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4년이 경과하는 동안 협력적인 내독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독 자신의 고유한 이해는 소련의 서방정책노선과 또 그들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을 배경으로 삼고자 하는 독일 통일사회당 자신의 중요한 필요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독일 역사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작년에 취했던 노력이 동독에 있어서의 가장 현저한 발전에 속한다. 1983년 마틴 루터(Martin Lutuer)탄생 500주년 기념식이 에리히 호네커가 이끄는 한 축제위원회의 주관하에 교회쪽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거행되었는데, 그 축제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고 기뻐하면서, 동독 주민 뿐 아니라 서독사람들 또한 예전에는 동독에서 공식적으로 “군주의 종북”이라고 또 “독일의 자유를 매장시킨 자”라고 혹평당했던 그 종교개혁자가 이제는 “독일민족의 가장 위대한 아들”이라고 평가받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루터기념축제가 동독복음교회와 정부사이의 관계를 위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루터기념축제는 부분적으로는 당에 의해 주장되는 역사

상(歷史像)을 널리 새롭게 강조한 것이다.

역사는 전체적으로 달리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독일역사 전반이 “진보적”으로 평가되고 또한 예전에는 소원화되었던 주요한 역사적 인물들—프리드리히대제 [Friedrich der Grosse]나 비스마르크 [Bismarck]같은—이 여러가지 관점에서 하나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히틀러(Hitler) 암살계획 40주년 기념일에 즈음하여 7월 20일의 저항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에게 훨씬 더 정당한 평가를 내리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다른 공산주의 정권국가들에서도 정당화 되었다.

물론 동독은 그들 자신이 독일역사의 “휴머니즘적”인 전통을 인종으로 내세워 제기하는 요구를 얼마 만큼이나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문해 보아야 한다. 훔볼트(Humboldt)를 증거로 끌어낼 수 없으며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금지할 수 없다. 또 루터를 칭송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교양이나 사명면에서 그리스도를 손상시킬 수 없다. 물론 독일의 역사로부터 “좋은”전통과 “나쁜”전통을 가려 내기는 어렵다. 여기서 “좋은”전통은 동독의 승인에 관련된 것이고 “나쁜”전통은 연방공화국의 판결에 관련된 것이다. 그럼으로써 역사에 대한 동독의 변화요구는 어느 정도까지는 전체 독일민족을 위해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이해에서 우리가 반길만한 하나의 변화가 완성된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현실적인 역사 고찰에로의 일보전진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 변화가 이데올로기적인 경련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의 노력은 변함없이 동독에 있어서의 인권실현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탈출기도 - 즉 1984년 봄, 동베를
린에서 연방공화국 상주대표부(standige Vertretungen)로의 탈출기도,
또한 동구국가에서 독일연방대사관으로의 탈출기도 같은 - 혹은 여행
희망은 여기서 나아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동독의 정책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독관계에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다.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시킨다는 것은 동독이 전유럽안보협력회의
(KSZE)의 영역내에서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헌법에 받아들여 의무로 삼은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비중을
두어야 할 점은 동독에 의해 비준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독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독에 있어서의 인권침해중 가장 본질적
인 부분들, 즉 자유이주권의 거부, 및 동독의 국경에 관한 법률들,
말하자면 “불법적인 관계설립”, “공개적인 비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적인 인신매매(Menschenhandel)”등과 같은 범행요건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서방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범죄시하는 것 등 이러한
부분들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교류와 내독간 경계지역에서의 정보 및
의견교류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 연방수상 클은
1985년의 국가정세에 관한 보고에서 독일연방공화국정책의 주 노선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혔다. “우리의 독일정책은 명확하고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정에서 많은 것을 성취해 왔습
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을 잃지 않고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의사일정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

첫째, 우리는 독일의 중앙을 가르는 국경에 있어서의 휴머니즘과 평화를 요구합니다. 장벽과 가시철조망 및 탈출자에 대한 발포명령은 없어져야만 합니다.

둘째, 우리는 독일에 있어서의 자유민주권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을 위한 여행의 자유, 정보나 의견의 방해받지 않는 교류 등, 이런 것들이 결국 양쪽사이에서도 실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서적들이나 신문, 영화등도 자유롭게 교류되어야 하며 학자들의 발표 및 예술가의 작품등도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인권의 보호와 동독 동포들의 기본권의 보존을 요구합니다. 동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하며 또한 자신들의 신앙으로 인해 배척당하지 않을 분명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이해되어져서도 안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작지만 많은 일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가지 요구사항들이 우리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대표와 공산주의독재체제의 담당자 사이에 근본적인 견해차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연방정부로서는 동독정부가 내적인 안정자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1985년 3월 소련의 국가원수 체르넨코(Tschernenko)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모스크바에서 연방수상과 동독국가평의회 의장이 발표한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 즉 “양자관계에 있어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노력은 정치풍토를 개선하고 동서관계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그런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공동성명을 이해하고 있다.

독일정책은 서독의 정책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에 속하며 그래서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히 민주주의 세력의 승인에 의존하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독일정책에 대한 승인에 문제를 제기하고 독일정책의 본질적인 토대를 수정함으로써 내독관계에 새로운 발전과 진보를 가져오려는 시도를 그만큼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사이에 게라(Gera)에서 제기한 동독정부의 요구가 서독에서 다시금 계속 토의가 되고 새로이 논란이 된다면 연방정부로서는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 해가 되고 우리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내독간 협상에 있어서 우리의 가능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여론이나 우리의 동맹국들에게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 헌법 전문을 수정하자는 제안까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 즉 그러한 제안은 독일정책에 대한 우리의 승인이나 우리견해의 기본토대를 문제삼자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오랜 기간에 걸친 독일정책의 전제들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정책에 있어서 예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 하고 독일정책을 위해서라는 개념에서 볼 때 이러한 종류의 제안은 비생산적이고 해가 될 뿐이다.

IV. 내독관계의 개별적인 문제들

내독관계의 구체적인 사업분야를 살펴보면 작년에 국민들을 위한 적지 않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의미있는 것은 내독간의 여행교류이다. 더욱이 우리는 아직까지는 “정상화”에서 거리가 멀다. 동독이 승인한 여행완화조치는 독일인들, 무엇보다도 동독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교환원칙의 부분적인 수정과 내독간 여행교류에 있어서의 다른 개선책들은 유익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구체적으로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 마찰을 없애고 트집을 잡지 않는 쪽으로의 긍정적 영향이 여기에 속한다. 즉 경계설정에서 트집에 대한 불만은 1983년 여름이후 1년에 약 1,000회에서 한달에 2회 내지 3회로 경감되었다. 베를린왕래에 있어서의 의혹조정의 횟수도 줄어 들고 있다.

동독기관의 이러한 태도에서 비롯된 성과로 동서로의 여행교류가 증가해온 것이 사실이다. 1981년 이후로 - 서베를린을 제외한 - 연방영토로부터 동독으로 또는 동독을 통해서 나가는 여행자의 숫자는 해

마다 계속해서 증가했다. 즉 여행자수는 1981년에 약 2,088,000명에서 1982년에 약 2,218,000명, 1983년에 약 2,219,000명, 1984년에 2,499,000명에 이르고 1985년에 약 2,640,000명까지 증가했다. 국경근처의 왕래에 있어 1일 체류하는 사람의 숫자는 약 280,000명(1981)에서 약 299,000명(1982)을 넘어 약 340,000명(1984)으로 증가했다; 작년에 약 318,000명이 여행에서 돌아간 것은 1984년 8월 이후 이틀간 체류가 가능해진 사실과 연관이 있다.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동독으로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만나러 가는 사람의 숫자는 두배로 증가되었다; 장려된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여행횟수도 1982년부터 1985년(약 68,000명)까지 거의 10배가 증가했다.

동독의 자유독일 청년단(FDJ)과 연방정부 사이에 합의된 청년교류는 1984년 봄에 동서방향에서 동독에 의해 단절되었었는데 1983년 8월에 다시 계속되었다. 그래서 약 1,000명의 청년들이 작년에 자유독일청년단 - 여행팀과 함께 연방정부를 방문할 수 있었다. 올해는 이 숫자가 세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우리는 계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행스럽게도 동서로의 여행자수도 비례적으로 증가하여 이제 동독에서 체류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가끔씩 나타날 정도이다.

동서방향에 있어서도 여행왕래는 현저하게 증가해왔다. 1981년의 1,563,000명에서 1983년에 1,462,000명으로 줄었던 연금수혜자들의 여행은 지난 두해에 걸쳐 1,546,000명과 1,609,000명으로 10%이상 증가했다. 위급한 가족문제로 여행하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한 것은 더욱 반가

운 일이다. 동독으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비연금수혜자 여행자수는 1980년에 약 40,400명에서 1981년에 약 36,600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다음해부터는 현저하게 증가했다. (1982년 : 약45,000명, 1983년 : 약 64,000명, 1984년에는 약 61,000명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1985년에 약 66,000명으로 증가했다) 1986년에는 일곱달 동안 이미 100,000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발전은 환영할 만한 현상이며 동독정부로서도 동독인들에 대한 여행허가를 보다 덜 엄격하게 허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동독이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들의 기대를 받아 들이도록 좋은 조언을 받고 있다는 이러한 확신을 더욱 더 갖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독간의 여행교류에 있어서는 해결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즉 동독은 독일사람들의 만남의 가능성을 정상화시키는데 대한 논의에 있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단지 엄격한 최저교환원칙만이 철폐되어야 하는 장애물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1,000,000명 이상의 동독사람들로 하여금 독일연방공화국에 있는 그들의 친척이나 친구와 접촉하는 것을 막고 있는 접촉금지령을 철폐하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제한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작년에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동독으로의 여행금지조치도 커다란 인도주의적 문제로 남아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노인여행자 숫자가 감소한 것은 불가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 위급한 가족문제로 여행하는데 대해 대대적인 허가를 내준 것은 확실히 일보 전진한 것이다. 허가처리문제가 법적으로 확

정되고 그럼으로써 가능한 규정에 대해 자의적으로 집행한다는 인상이 불식된다면 사람들간의 만남을 허가하는 문제에 있어 독일민주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커질 것이다. 연방공화국을 여행하는 연금생활자들에게 교환액이 단지 15마르크만 허용된다는 점, 또 서베를린 사람들이 동베를린이나 동독을 방문함에 있어서 국경근처를 왕래하는 여행자들과는 달리 이를 동안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 - 이러한 점들이 해결되어야만 될 문제이다. 결국 양쪽으로의 관광여행은 좋은 이웃관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고 또 정상화될 것이다. 최근에 있어서의 향상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정상화되고 좋은 이웃관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직도 요원하다.

내륙간의 경계는 최근에 여행자들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다 덜 위협적인 것이 되었다. 1983년 9월 동독이 이에 상응하는 약속을 한 이후로 보덴기뢰(Bodenminen)같은 54,000개의 자기폐쇄시설들이 철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는 실질적인 면에서 아직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이 경계는 허가를 받지 않고 넘나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국경지역에서의 발포명령도 폐지되어야만 한다.

연방정부의 인도주의적 노력은 계속해서 계속, 수행되어 왔다. 연방정부는 정치적 관계 때문에 제약을 받아 곤경에 빠진 수천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여행을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허가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많아진 것도 최근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수확이다. 1984년에만 35,000명의 사람들이 연방공화국으로의 여행허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는 그전에 평화운동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 다음 해에도 여행허가 횟수는 18,000회를 넘어 그 전해에 비해 두배이상 많았다. 동독 스스로가 여행을 원하는 많은 수의 주민들로 하여금 연방공화국으로의 이주를 허용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인도주의적인 의미에서 일보 전진이다. 그러나 여행허가신청이 보다 덜 제기되도록 그렇게 동독의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그들 자신의 이해 관심사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내독간의 무역은 양독사이의 중요한 결속을 제공해 준다. 즉 내독간의 무역은 협력의 확고한 요인인 동시에 일상정책의 변동을 넘어서 양독관계에 있어서의 불변의 요소로서 확증된다. 내독간의 무역은 사람이나 그들의 욕구에 이바지하며 또한 내독간의 화물교류에 관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바지한다. 동시에 내독간의 무역에는 이점에 관한 한 동독정부에 의해 심각한 문제로서 제기되지 않는 내독관계의 특별한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 외국환을 발행하지 않고 서방의 화물을 수입하도록 동독에서 승인된 내독간 무역의 계산방식이나 계산의 균형을 위해 승인된 무이자 신용대출, 그리고 유럽공동체(Europäische Gemeinschaft)시장에 대한 면세거래 등은 동독에게 결정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독일연방공화국은 동독의 무역과

트너들로부터 전체 양의 8.3%를 수입함으로써 소련의 38.8%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독의 대서방 전체 무역량 중 내독간 무역이 약 40%의 몫을 차지하고 있다.(OECD:통계)

양독사이의 무역과 경제관계는 최근들어 양측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줄만큼 발전해 왔다. 독일연방공화국의 공급액은 1980년에서 1985년 사이에 58억7천 마르크에서 85억9천 마르크로 늘어났다. (1981: 61억 3천 마르크, 1982: 70억5천 마르크); 같은 시기에 동독으로 부터의 수입액도 58억5천 마르크에서 81억6천 마르크로 늘어났다. (1981: 63억5천 마르크, 1982: 69억9천 마르크, 1983: 75억6천 마르크, 1984: 82억 4천 마르크)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무역에 있어서의 상품구조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1985년에 있어서도 석유생산물(17억 마르크)과 섬유 및 의류생산품(10억 마르크)은 독일연방공화국이 동독으로 부터 수입하는 물품중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두가지 물품이다. 그 뒤를 화학제품과 농업생산물이 따르고 있다. 동독에로의 수출에 있어서는 지난 5년간 이후로 1985년에 처음으로 루자상품 판매곡선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내독간의 무역에 있어서 루자상품량이 너무 미미하고 고도로 기술화된 산업국가들 사이의 무역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국경을 넘어선 가성칼리 채굴에 관한 협정(1984년 12월) 및 동독과 폭스파젠 AG사 사이의 계약 (1984년 11월) 들은 작년에 있어

서 보다 진척된 경제협정들이었다. 이러한 협정의 토대 위에 동독에서는 매년 300,000대의 폭스바겐모터가 리첸쯔(Lizenz)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1990년부터는 해마다 100,000대의 모터가 독일연방공화국의 폭스바겐 AG사에 공급될 것이라고 한다. 1985년 7월에는 동독과 하나의 새로운 신용한도 규정(Swing-Regelung)이 체결되었다. 신용한도의 상한선은 이후로 5년간 8억5천만 마르크로 확정되었다. 동독은 비상업적인 지불거래 및 청산거래에서의 보다 나은 개선을 허용했다. 1979년 이후로 동독은 독일연방공화국으로부터의 대체주문(Tranferauftrag)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5천만 마르크의 돈을 써 왔다. 이러한 액수는 너무 적은 것으로서 판명되었다. 왜냐하면 동독이나 동베를린에 있어서 대형화물을 소유한 사람의 숫자가 그후로 사람들의 이주로 인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1982년에 독일연방공화국과 동독 사이에는 동독에 의한 투자액이 6천만 마르크로 높아져 협정이 이루어졌고 1985년에는 연간 7천만 마르크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대체주문을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85년까지 전체적으로 약 43억8천8백만 마르크의 돈이 대형화물 소유주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에 위탁되었다.

여행왕래 이외에도 우편왕래는 양독국민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며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로서는 우편왕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1983년 11월에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즉 동독은 우편교류의 총액을 늘린다는 맥락에서 연간 8천5백만 마르크에서 2억 마르크로 늘

리려는 일련의 개선책을 승인했다. 의약품 수입의 완화, 연방정부 영토중 스스로 선택해서 보내기 위한 240개의 보다 많은 지역망의 연결 - 그 당시엔 아직도 연방영토로부터 오는 모든 전화통화의 9%, 서베를린으로부터 오는 모든 전화통화의 2%가 동독이나 동베를린으로 수동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 또한 우편 손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 그리고 우편전달시간의 단축을 위한 조치등이 이러한 일련의 개선책에 속한다. 1985년 3월 본(Bonn)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 사이에 광섬유케이블 가설 및 디지털 장거리 방향무선통신망(지향성 방송체계) 설립을 골자로 하는 두개의 협정이 비준되었다. 약 60,000회선의 무선 전화관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광섬유케이블과 20,000회선의 전화관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이 무선전화구간은 머지않은 장래에 베를린으로의 장거리 송신왕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며 증가하는 욕구에 적합하다고 한다.

환경보호문제는 양쪽에 있어 점점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정치적 관심사이며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데 또한 이 문제가 해결가능한 정치적 관심사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983년 10월에는 동독과의 사이에 경계하천인 로덴(Rodenz)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1984년에는 웨라(Werra)와 웨저(Weser)지역에서 소금채굴을 하는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 졌다. 1984년에는 동독과의 사이에 삼림훼손방지를 위한 조치들에 관해 전문가들의 회담이 시작되었다. 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선 어떠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 동독정부는 연

방정부보다는 회담의 필요성을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 대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합의를 보았다. 1983년, 1985년, 그리고 계속해서 1986년 5월에 원자로 안전과 방사선 보호에 관한 전문가들의 회담이 있었다. 1985년 7월에는 환경보호지역협정에 관한 회담이 새로이 재개되었다. 이 협정의 사안별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합의가 이루어 졌었다. 모든 환경문제(하천, 대기, 삼림훼손, 자연보호,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포괄적인 정보교환과 경험의 교환이 고려되었고 국경을 넘어서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문화적인 교류에 있어서는 비록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분단독일의 문화적 공속성(公屬性)이 분명하고도 생태적인 것임에 견주어 볼 때 문화교류가 아직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문화적 교류가 신장되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상업적인 초청공연의 교류를 계속해서 확대될 여지가 있다. 최근에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일련의 문화행사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1983년 봄의 라이프찌히 토마너 합창단(Thomanerchors)과 라이프찌히의 게완트하우스 오케스트라(gewandhausorchestra), 1984년 할레 필하모니(Halleschen Philharmonie) 라이프찌히의 바하 연주단(Bachkollegium)의 객원연주여행이 주목되었다. 1985년에는 그 중에서도 함부르크 국립오페라단(Hamburgische staatsoper), 뮌헨 필하모니(muenchener philharmomiker), 게칭거 교회합창단(Gaechinger kantorei)등이 동독에서 초청공연을 했고 드레스덴 필하모니(Dresdener Philhar-

nonie), 라이프찌히 극단(Schauspielhaus), 그리고 베를린의 막심 고리극단(Maxim-Gorki-Theater Berlin)이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객원공연을 했다. 최근에 들어 양국정부 사이의 합의의 토대 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행사들이 있었다. 1984년 동베를린과 1985년 라이프찌히에서는 20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디자인-인간을 위해 미리 생각해 봄”이라는 제목의 전람회를 관광했다. 1985년 11월에는 한네스-제르베-블레히-밴드(Hannes-Zerbe-Blech-Band)가 당대의 동독의 재즈 악단과 함께 독일연방공화국의 5대 도시를 객원공연했다. 많은 주목을 받았고 레코드조차도 출판된 만프레드-슈프-오케스트라(Manfred-Schoof-Orchestra)의 연주여행(1983년 1월)이 있는 이후 이 연주여행은 성공적인 것으로서 평가될 수 있었다.

1986년 6월 빌라 휘겔(Villa Huegel)에서 열린 “드레스덴의 바로크(Barock in Dresden)”전시회는 현재 진행중인 행사에 속하는데 이 전시회는 첫 두달 동안에 이미 10만이 넘는 관람객들이 관람을 했다. 특히 성공을 거둔 뒤셀도르프 극단(Duesseldorf Schauspielhaus)의 드레스덴, 라이프찌히로의 객원공연여행, 그리고 반대로 1986년 뒤셀도르프, 함부르크(Hamburg), 쾰른(Koln)에서 열린 드레스덴 국립극단(Dresden Staatstheater)의 객원공연등은 문화협정의 체결과 연관이 있다. 1986년 10월말 동베를린의 고대박물관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온 회화작품들의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 전시회는 이어서 「상황들(Position)」이라는 제목하에 드레스덴의 알베르티눔(Albertinum)에서도 전시될 것이다.

1986년 5월 6일에 체결된 문화협정은 내독간 협상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수확을 보여 준다. 프로이센 문화유산보존재단에 의해 운영된, 당시 프로이센제국 박물관 존속에 여러가지 법적 해석들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협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다. 또 베를린을 문화교류 속에 완전히 포함시키는 것도 협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 두가지 부문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 공동의정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문화협정에서 전쟁으로 인해 옮겨진 문화유산들의 문제에 대해 구구한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 프로이센의 문화유산보존에 관련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 볼 때 올해 4월 베를린 시위원회와 동독 사이에 이루어진 문화유산교류는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주었다. 베를린을 문화교류 속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단지 협정에서 분명하게 참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최초의 실천적인 계획마련에서도 현실화 되었다.

문화협정은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보다는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포함한다. 말하자면 음악, 연극, 조형예술, 문학, 영화사업 외에도 교육, 학문, 문서사업, 도서관사업, 박물관사업, 기념물 보호사업 등의 분야까지 포함한다. 또한 라디오나 텔레비전 부문에서의 협력을 위해서, 또 스포츠교류 및 청소년교류에 있어서의 관계를 위한 장려책도 고려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문화협력이 단지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각 기구들이나 조직단체, 연맹들 및 개개인의 차원에서도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그런

으로써 협력이 국가적 경쟁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억지로 강행되는 사태를 피하게 될 것이다. 협정의 실천이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영향을 덜 미치는 요소들에 달려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양국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증거 토대를 제시해 준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일차에서 독일국민의 공존을 위한 하나의 주요 수단을 보는 것이다. 이제는 분단되지 않았던 본래의 독일의 문화적 통일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협정을 채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스포츠교류 역시 최근에 내독관계를 눈에 띄게 공고히 해줄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속한다. 다음과 같은 숫자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해준다. 1981년에는 단지 63건의 스포츠교류가 있었다. (원래 계획되었던 70건 중에서 7건은 취소되었다); 1982년에는 78건이 있었고(그리고 2건은 취소되었다); 1983년에는 75건(계획된 것은 79건이었다); 1984년에는 73건(계획된 것은 75건); 1985년에는 71건(계획된 것은 73건), 1986년에 대해서는 84건의 교류가 합의되었다. 이러한 숫자는 사회에 있어서 스포츠의 중요성이나 양독국민들의 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한 스포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또 스포츠연맹의 규모나 독일인들 자신이 그때 그때의 다른 국가의 스포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여전히 적은 것이다. 동독의 관련자들이 분데스리가 축구의 유럽컵게임을 보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든지, 또는 1986년 슈투트가르트(Stuttgart) 선수권대회에서 동독

의 육상선수들이 친절한 환영을 받은 사실 등은 교류에 대한 희망이 지금까지 보다 훨씬 크며 그만큼 만남의 가능성도 크다는 증거를 보여 주는 것이다.

결국 베를린의 정세 역시 최근에 들어서는 분명히 개선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내륙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두가지의 특별한 관심사항이 있다. 1983-1984년 사이 해가 바뀌는 동안에 서베를린에 있는 시가철도(S-Bahn)노선망을 담당하는 국영기업 교류에 관한 합의가 동독과의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전에 현대적이고 애용되는 교통수단이었던 시가철도는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이후에는 사양길에 접어든 사업이 되었으나, 1983년 말의 협정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베를린의 교통협회는 145 km의 노선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그 절반 가량이 운행되고 있다. 또한 90년대 까지 더 많은 노선이 건설되어 연장된다면 여기에 완전한 개방을 준비하기 위한 베를린의 근거리 교통망의 중요한 보충요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통과교통을 위한 보다 나은 개선책들은 1985년에 얻어질 수 있었다. 즉 베를린에서 히르쉬베르그(Hirschberg)를 잇는 자동차 통행도로는 양국의 교통장관들이 합의한 이후 부분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통과여행의 횡수는 최근에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1986년 1월에서 5월까지 사이에만 해도 통과여행의 횡수는 882만회였는데 이것은 그 전해의 다섯달 동안의 횡수보다 37만회나 많은

것이였다. 그러나 베를린이 내독간 관계에 있어서도 시금석이 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할 만큼 분명하게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시와 모든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로서 당면한 753회 베를린 축제는 공동체의식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동베를린 당국에게 제공해 준다. 도시가 있은지 750년이 되는 현재의 2차 대전이 끝난 후 40년이 되는 오늘날 베를린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독일문제의 상징이며 독일분단의 상징이고 그 고통의 상징이다. 그리고 또한 국민의 번영을 위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상징이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다시 종합하여 살펴보면:

현재의 내독관계를 중간결산해 볼 때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과 현실주의 정책은 분단된 독일의 국민들에게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개선을 가져다 주었다. 달성해야 할 결정적인 문제들은 아직 남아 있다. 종종 그들의 주권, 그들정책의 인도적, 평화기여적 성격을 강조하는 동독은 국민들이 제한받지 않고 만나고 의견이나 정보를 자유로이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통해 이런 엄숙한 요구를 정당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독간의 기본조약을 실현하기 위해 청산해야 할 일련의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법률성의 공조(共助)에 관한 협정은 지금까지는 동독이 국적문제를 전면내 내세움으로 해서 좌초되어 왔다. 오랜 시간동안 성공적으로 협의해온 환경정책이나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은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해 보이는 상태에 이르러 있다.

민간인들간의 접촉을 위한 광범위한 개선책들은 이미 실제하고 있

다. 정치에 있어 현실주의란 분단된 독일사람들의 희망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동독정부는 그들의 국민들로 하여금 국경을 통행할 수 있게 해서 자신들이 감금되지 않은 존재라는 감정을 더욱 더 갖게 하는 것이 그들이 잘 이해하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나아가 자유와 자유민주권의 건설을 통해 사람들을 위한 평화정책을 제일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불가결의 조치들을 힘자라는 데까지 할 것이다. 갈라진 경계는 극복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내독관계의 본질적인 목표이다.



1. 독일민주공화국의 여행규정 신설에 대한 내독성의 보고

1980. 1. 3.

내독성은 휴가여행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독일민주공화국으로의 여행교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항을 언급하였다.

1979년 12월 15일 이후, 경계선 근접지역에 거주하는 약 120만명의 독일연방공화국 주민들은 경계선 근역의 일정범위 내에서 독일민주공화국으로의 여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다음의 지역에 적용된다.

- 하노버란트(Hannover-Land)
- 홀쯔민덴(Holzminde)
- 마인·킨저히(Main-Kinzig)
- 마르부르크-비덴코프(Marburg-Biedenkopf)
- 졸타우·활링보스텔(Soltau-Fallingb.ostel)

이미 1980년 1월 1일부터 독일민주공화국은 독일연방공화국과 체결한 합의금규정을 적용하고, 또한 개인승용차에 대하여는 도로사용료를 면제하였다.

다음의 사항은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979년 11월 1일부터 독일민주공화국내의 도심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의 차량최고속은 80km 이하로 제한되며, 고속도로에서의 최고 시속은 100km 미만이다. 도로상에서의 속도위반은 엄중히 통제하며 위반시 벌금형 (300마

르크까지)이 부과된다. 또한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되어진다.

1980년 1월 1일부터 앞좌석 탑승자 모두에게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독일민주공화국의 관세규정과 외환규정의 엄수는 독일민주공화국 세관원들에 의하여 경계선에서 철저히 이루어지므로 여행자는 사전에 이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독일민주공화국 측에서 제시하는 「휴대물품 및 지불수단 명세서」는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입국시, 독일민주공화국 체류를 위한 모든 특정 물품 및 휴대한 화폐를 기재하여야 하며, 출국시에는 독일민주공화국 내에서 선물을 받았거나, 혹은 구입한 물품, 그리고 소지한 화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사항을 해태한 경우, 물품은 압류되며, 이에 상응한 벌금이 부과되어진다. 또한 독일민주공화국내로의 반입내지 반출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제재규정은 적용된다.

특히 녹음테이프(녹음, 비녹음 불문)의 반입, 반출은 전면금지이며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도자기, 납결정, 사진기, 육류제품 및 육가공제품은 반출이 금지되어 있다.

홍보책자 「독일민주공화국으로의 여행」은 여행사와 독일연방철도(Deutsche Bundesbahn)의 안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홍보책자 「선물 발송안내서」는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고, 이러한 책자들은 전독연구소(Gesammtdeutscher Institut)에 청구할 수도 있다.

2. 서베를린 남부지역 교통시설 개축에 관한 독일민주공화국
교통성 산하 독일제국철도 철도시설 관리본부와 서베를린
건설국과의 교환공한

1980. 1. 24.

i) 교통성의 서한

수신: 서베를린 건설국

건설국장 뷔르거씨

서베를린

뷔르템베르기슈 슈트라쎬 6-10

1086 베를린 1980년 1월 24일

포슈트라쎬 33

친애하는 뷔르거씨께,

독일민주공화국 교통상은 1974년 2월 24일에 체결된 교통시설
개·변축에 관한 기본협정 제6조에 의거하여 양측대표사이에서 논의,
합의된 결정에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상은 이 결정사항의
서명을 제국철도과장 흥크씨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 교통성이 1980년 1월 24일 이 결정사항에 서명하
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심을 가지며

제국철도부장

아놀드 박사

ii) 건설국의 서한

수신:독일민주공화국 교통성

제국철도 철도시설중앙관리본부장

아놀드 박사

1086 베를린

포슈트라쎄 33

1980년 1월 24일

친애하는 아놀드 박사께,

1980년 1월 24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으며 그 내용이 충분히 인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국은 1974년 2월 21일 기본협정 제6조에 의거한 이 결정사항의 서명을 기계과장 볼프씨에게 위임하였으며 볼프씨도 이 결정사항에 동의하였습니다.

존경심을 가지며

국장 뷔르거(위임)

[교통시설변형에 관한 기본협정 제6조에 의거하여 임명된 위임권자의 결정사항]

1. 건설국은 설계도면 부록 1에 나타난 지역에서의 철도시설 변형을 수행한다.

a) 신축

-남부 화물역내 조차장과 화물적재시설.

-서부 부부켄마이스터라이 (West Brueckenmeistereil)

b) 개축.

-템펠 호프링역

-템펠호프 조차장 구간 3.4km

포스트역까지의 1.4km

-프리스텍백 5.1km 와 파퍼슈트라쎄 3.4Km 사이의 국철구간
(파퍼슈트라쎄역 포함)

-쇠네베르크 7.7km 와 안할터역사이의 국철구간

-그로스피르센 슈트라쎄역을 포함한 5.7km와 링반 24.2km(지
하선로)

C) 파쇄 및 제거

-템펠호프 조차역

-쇠네베르크 3.7km 구간과 포츠담 화물역까지의 1.5Km 구간

-포츠담 화물역

-요르크슈트라쎄 북부 안할터역

설계도면 부록 2의 계획수행을 건축내역표에 의거하여 부록 3의
수행비용을 제외하고 그 비용을 산출한다. 또한 건설국은 비유용
시설 및 폐기된 철도시설을 제거하여야만 한다.

2. 독일제국철도는 부록 1 에 명시된 지역 내에서의 교통시설 변
형에 함께 참여하며 또한 부록 3의 사업을 진행시키고 그 비
용을 부담한다.

3.

a) 독일제국철도 시설변형 및 도로건설, 도시건설의 새로운 질서
에 관하여, 건설국은 부록 1에 붉게 표시된 부분과 A, B,

C, D, E, F, G, H, I로 표시된 부분을 제1조에 의거하여 철도시설 변형을 위하여 추후, 이용가능한 대지로 사용케 하고 W로 표시된 대지는 차후 필요에 따라 화물적재장 및 창고로 이용케 한다.

건설국은 부록 1에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k, L, M, N, O, P, Q, R, S, T, U, V로 표시된 부분을 10조에 의하여 도로건설에 사용케 하며, 도시건설의 새로운 질서를 위하여 부록 5의 건설계획에 필요한 대지를 공급한다.

b) 그 외에도 건설국은 이에 상응하는 결정을 통하여 철도시설의 항구적인 발전의 차원에서 계속되는 대지수요 신청을 보증한다.

c) 부록 1에 특별히 표시된 지역들은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결정에 따라서, 제3자, 혹은 용익권자에게 사용권을 위임한다.

4. 독일제국철도는 적정지역의 건설현장 설치계획 및 시공기간을 서베틀린 건설국에 일임한다.

5. 설계도면 부록 5는 철도시설 변형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포함한다. 건설국은 독일제국철도와 함께, 이 시공계획에 상응하는 임무수행과 시공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계속 수행되어질 것을 발표하였다.

6. 교통시설 변형중, 설계도 변형, 측량, 계획기간, 건설수행, 판로, 작업경과 등에 관한 사항은 양측의 논의에 의하여 결정된

다. 이들은 합의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접촉하거나, 상대측의 요구에 의하여 단기 접촉한다.

독일제국철도는 공사기간중 그 지역에 기술지도부처를 설치한다.

7. 서베를린 건설국은 독일제국철도 승인하에서 철거시설의 유용한 부분을 철도시설 변경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처분한다.

독일제국철도는 이 결정사항에 따라 변형된 철도시설로부터 그 어떠한 재료도 입수할 수 없으며 또한 그 폐기물도 가져갈 수 없다.

8. 독일제국철도는 설계도면 부록 5의 건설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새로운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변형된 철도시설에서 차량을 운행한다.

건설국은 철도시설의 변형시, 도로건설 및 도시건축의 새로운 질서에 대하여는 독일제국철도와의 합의사항 내에서 부록 1에 표기된 지역의 안전운행을 가능케 하는 건설시공에 관여한다. 독일제국철도는 철도운행 장애에 대한 배상금을 포기하며 또한 운행상의 필요규범을 적정도입, 실행한다.

건설국에 의해 설치되거나, 개축된 시설은 독일제국철도에 소속되어 운행되며, 이러한 인수는 규정상 시설 종료 후 12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설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 인수 인계 조정시까지 시설인수는 거부되어질 수 있다.

9. 건설국은 각 건축부분의 보증기간을 독일제국철도에 문서로 통지, 확인케 하며, 또한 독일제국철도는 보증기간내에 발생하는 수리요구가 가능한 결함은 건설국에 통보한다.

보증기간 발효 전의 보증권 보장에 관하여는 건설국이 독일제국철도와 협의, 결정하여 수행한다.

10. 독일제국철도는 부록 4에 의한 다음 같은 건설국의 도로건설 계획에 동의한다.

-A10: 전(前) 서부우회도로

-A13: 전(前) 남부슈타트링

-프렐러백

-요르크스 슈트라세

-벨로우-오버트라우트 슈트라세

또한 건설국은 이에 따른 철도기술상의 요구도 포용한다.

11. 건설국은 건축물의 건립, 변경, 시설보중, 혹은 다른 부대시설에 관련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철도시설수용부지의 사용에 따른 독일제국철도 및 철도종사원에 대한 제3자의 요구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국이 책임진다. 이에 대하여 독일제국철도는 제국철도 종사원이나, 혹은 그들을 통하여 발생한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건설국에 책임을 진다. 독일제국철도의 책임은 건설국이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을 인지는 것을 해태하거나, 혹은 손해방지, 감소에 노력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된다.

12. 독일제국철도는 설계도면 부록 3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계획
과 측량을 토대로 필요한 인원과 경과 수행을 건설국에 위임
한다.

13. 다음 서류들은 이 결정사항의 세부자료들이다.

부록1: 전체계획도

부록2: 철도시설 변형에 대한 건설국의 이행임무

부록3: 교통시설 변형에 대한 독일제국철도의 이행임무

부록4: 도로건설 설계도

부록5: 건설진행 계획표

베를린, 1980년 1월 24일

위임권자

홍크

독일제국철도 중앙위원회

블프

기술과장

출처 : 1980년도 독일민주공화국 외교문서, 28권, 1984년판.

3. 여행교통에서의 처리 교역

1980. 2. 5

[1980년 2월 5일자로 국제여행중인 외국인에 대한 운송권 판매규정]

해당국가 담당기관의 기관장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되었다.

#1

이 규정은 다음 장소에서의 외국인(국제여행중)에 대한 운송권 판매에 적용된다.

- 독일제국철도 승차권 판매소
- 독일민주공화국 여행사의 지사
- 중앙유럽 침대식당열차 주식회사(Mitropa)의 종사원을 통한 이용권 교부
- 국제항공회사(Interflug) 항공권 판매소
- 자동차 운송산업의 물품교부처
- 항만, 운하수송의 수하물 발송소

#2

1)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운송권은 다음과 같다.

- a) 기차승차권
- b) 침대 및 좌석지정권
- c) 선박의 객실지정권

d) 스웨덴 및 덴마크 행 선박에서의 차량적재를 위한 독일제국 철도의 운송권

e) 철도여행 중 여행화물 운송중

f) 장거리여객열차에서의 자동차수하물중

g) 항공권

h) 선박탑승권

i) 공공교통수단의 승차권

2) 상기 규정은 국내 및 국제협약을 거쳐, 협약에 참여한 다른 국가의 철도, 역, 공항, 항구 및 공공버스 정류장에서 발급된 운송권에 적용된다.

#3

1) 타 국가로의 여행을 위한 국제여행 운송권 교부에 대한 외국인의 발급신청은 합당한 여행증명서의 제시를 필요로 한다.

2) 합당한 여행증명서는 1979년 6월 28일자의 독일민주공화국 여권법과 여권 및 체류허가규정에 따른 것이다.

#4

1) RGW 회원국가의 시민들에 대한 회원국내 교통에 대한 운송권 판매가격은 독일민주공화국 화폐인 마르크에 준한다. 또한 철도여행에서는 단지 RGW 회원국을 경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또한 RGW 회원국이며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인 유고슬라비아 시민에 대한 운송권 판매는 그들이 독일민주공화국내에 존재하는 정류장에 법적인 소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판매가격은 독일민주공화

국 마르크에 준하여 결정되나 독일민주공화국의 경계를 한번 이상 여러번 통과할 수 있는 통과비자의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또한 항공여행에서는 사회주의국가 항공교통기업의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1), 2)항에 언급된 상황이 없을 경우, 다른 국가와의 교통에 관계된 운송권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화폐에 한한다. 항공운송권의 구입은 외국항공기업과의 합의규정에 준한다.

#5

이 시행규정은 교통에 관여하는 내각기관에 의하여 승인되며, 공고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다.

#6

1) 이 규정은 1980년 4월 1일에 발효한다.

2) 동시에 국제교통에서의 운송권 판매에 관한 1975년 3월 26일의 규정들은 서베를린에 영구히 체류코자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치 아니한다.

베를린, 1980년 2월 5일

교통성 장관

아른트(Arudt)

출처: GBI, I, DDR, 1980. 3. 12.

4. 「서베를린에서 유출되는 폐수의 전송과 취급에 관한 서베를린 건설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교통성과의 협정(1974. 12. 12)」의 변경을 위한 협정

1980. 3. 18

1) 협정규정 1의 2조에 상응하는 보상은 1980년 1월 1일부터 공장폐수 1000m³ 당 250마르크에 준한다. 이러한 보상과 규정 3의 2조에 따른 최저량의 보증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추후 변경된 비용에 상응하는 보상 및 인상액, 아울러 규정 3의 2조에 따라서 조정된 최저량의 인하에 대하여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절한 협상을 시작한다.

2) 협정의 유효기간은 198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이 유효기간은 일년전에 그 해약을 통고하지 않는 한 5조 규정에 따라 그때 그때 연장된다.

서베를린 건설국

멜스하이머 박사(Dr. Melsheimer)

독일민주공화국

교통성

마쿨라(Machulla)

출처 : 「건설국 활동사항」 중에서 발췌.

5. 연방수상 헬무트 슈미트(Schmidt), 국가상황에 관한 의회 보고

1980. 3. 20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조국의 분단은 조국의 대외발전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前文은 - 국민으로서 국가의 통일을 지키고, 동시에 권리가 같은 구성원으로서 하나로 합일된 유럽에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도록 의지를 고무시킨다. - 고 상기하고 있습니다.

독일, 유럽 그리고 세계평화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1, 2월의 연방의회에서 좀 더 명확하게 토론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미합중국의 카터 대통령(Carter)과 기타 다른 국가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우방국가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

나는 뉴욕 국제연합경찰과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공언하였습니다.:

나는 독일, 그 자체는 항상 우리 독일국민의 운명이며 또한 여러분들의 희망 즉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숙지하고 있으며, 우리 독일국민은 세계 전체를 향한 돌격의 창날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지금 2월 28일, 독일연방정부 성명문의 다음과 같은 2가지 원칙을 상기합니다.

첫째, 전세계 어느 국민도 분단상황하의 독일국민들보다 세계정책의

균형적 발전과 긴장완화책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둘째, 우리는 현재 존재하는 위기의 수습을 위하여 정치적 의무를 지며 동시에 개방된 기회를 통하여 평화를 유지키 위한 우리의 기여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10년전 어제, 즉 1970년 3월 19일,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빌리 브란트 (Willy Brandt) 와 독일민주공화국 내각수상과의 회합이 에어푸르트(Erfurt)에서 개최되었습니다. 7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에어푸르트 공한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양 공화국간의 내각수상 사이의 이 첫번째 회합에서 분단된 국토의 새로운 시대가 전후의 역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기하였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독일민주공화국에서, 혹은 둘로 나뉘어진 베를린에서 우리 독일국민 모두는 에어푸르트에서의 날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과 절망이 점철되었던 그 당시의 심정을 잊지 못하며, 에어푸르트에서의 회합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문제에 다가갔습니다. 빌리 브란트는 8주 후 카셀(Kassel)에서 이루어진 슈토프(Stoph)와의 2차 회합에서 다음 해 정책을 위한 20개 항목의 합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바로 이 20개 항목의 내용이 우리가 추구해 왔으며 도달하고자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야당에 의하여 여러번 지적된 것처럼 지나친 환상적인 관념의 표상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독일정책 10년"이라는 표제하에 내독관계에 대하여, 특히 카셀 20개 항목에 대한 연방수상으로서의 견해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 20개 항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권하며 또한 이 20개 항목들이 통일로 나아가는 오늘에 있어서 중간대차대조표의 척도로 존재함을 숙지합니다.

항목1에서 빌리 브란트는 국민의 관심사 속에서 한가지 조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공화국 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 사이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초협정은 집요하고도 어려운 토의끝에 2년후 서명되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양국 독일인들의 결합은 새롭게 강화되었으며, 통일정책에 대한 전제조건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셀 목록 중 항목 2에 부응하여, 연방의회는 1973년 6월의 조약 비준에서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상례에 알맞는 토론을 통하여 찬성동의를 얻어내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1973년 7월 31일자로 기초적인 기본조약이 독일기본법에 역행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카셀 항목 3에서 빌리 브란트는 양쪽 두 국가들의 관계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평화적인 공동생활에 대한 인권의 기초위에서 규정되어지도록 기본협약을 맺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본요소들은 오늘날 독일-독일인 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이 기본조약은 인권존중에 대한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에는 근본적으로 자유가 결여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저(Jager, CDU/CSU): 이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저동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들은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발걸음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카셀 항목 4는 권리의 포기 및 양보, 분쟁의 평화적인 수습, 영토권의 존중 및 국경선의 존중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기본조약에서 수용되었으며 또한 우리 연방정부의 평화정책의 핵심입니다. 그 당시 연방정부는 항목5에서 이미 독일민주공화국의 독립 및 자립, 그리고 내정문제에 유의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양 공화국 중 어느 나라도 다른 편을 위해서 행동하거나 다른 나라를 대표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항목6에 해당됩니다. 빌리 브란트는 전쟁이 두번 다시 독일영토 내에서 전개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항목 7에서 천명하였으며 항목 8에서는 양 공화국 모두가 각 상대방의 국민들의 안녕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여야 할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전문의 정신에 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독일민주공화국 통일사회당 서기장인 에리히 호네커 (Erich Honecker)와 나는 베를린에서 회합을 가지고 독일땅에서 다시는 결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항목 9에서 브란트는 군비축소를 둘러싼 우리의 의지를, 그리고 유럽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기본조약 항목 5에서 더욱 진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양 공화국은 체결 비준되지 않은 조약에서 핵무기의 획득을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빈(Wien) 협상에서 병력의 동등한 감축을 결정하였으며, 국제연합의 테두리안에

서 전세계 군축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항목 10은 그 당시 양독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민족의 구성원인 독일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조약체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독일민주공화국과의 근본적인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자신의 신념을 철저히 수호하여 결국 “독일통일로의 서한”에서 공시함으로써 법률상의 구속력있는 문서로 확정되었습니다.

항목 11은 그 당시 베를린과 독일 전체에 존재하는 권리와 4개국 책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기본조약 체결에 있어서 독일문제가 어느정도 가깝게 다가섰음을 명백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카셀 항목 12는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 사이의 4개국협정과 의무존중, 그리고 베를린에서의 상황을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4개국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를린에 대한 최후의 4개국협정에 대한 준비공작이었습니다. 이러한 4개국 협정으로 그후 베를린의 생활력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베를린으로의 진입로(Transit)를 안전하게 하였으며, 독일연방공화국 도시로의 연결강화 및 베를린 주민의 활동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베를린 주민의 경제는 새로운 추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1978년 이후, 베를린의 경제는 국민총생산 증가율에서, 산업상의 투자에서 연방정부의 평균적 발전성장율에 다다랐으며,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피고용자들의 이주가 증가하였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은 베

물린에의 투자를 결정하였고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영역을 넘어서 도시의 경직된 정치상황의 유화에 기여하고, 또한 풍부하고 다채로운 여러가지 문화적 상황을 보충적으로 고무하는 신호였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발전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건을 조성하는데 법률상 허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것들을 항상 고려하였습니다.

진지하면서도 체계적인 발전은 냉철함과 극기를 필요로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베를린의 상황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현존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문제를 주의깊게 숙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카셀 항목 13은 양측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독 법률사이의 충돌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최근에 있었던 신규 교역세법의 유효문제에 대한 논쟁을 기억합니다. 이 논쟁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법률이 독일민주공화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독일민주공화국 영토 및 오늘날 폴란드에 속해 있는 예전 독일영토의 동쪽영역에서는 물론 입법에 관계된 모든 논쟁이 조정되어질 수는 없으므로, 연방정부는 기본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적문제를 위한 유보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연방정부는 독일국적에 대하여 기본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치적, 도덕적 의무가 존재함을 주장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2년전 연방의회에서 보고되었던 국가상황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피력하고자 합니다. 모든 독일인은 이들의

출신지가 어디이든 불문하고 우리에게 환영되어질 것이며, 또한 국제법에 합당한 우리의 시민권은 마찬가지로 독일민주공화국 내에서 고유한 권리로 공포된 시민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민은 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자유로운 결정권인 것입니다. 항목14에서 브란트는 상호관광교통을 확대하고, 임의이주권(주소선택권)의 척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즉 독일민주공화국으로의 관광교통시, 계속 남아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개개의 경우, 본질적인 임의이주권이 적용되도록 구체화시켰습니다. 10년전의 2백만 내지 5백만의 여행객에 비하여, 해마다 7-8백만의 여행객이 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서베를린의 3백만 주민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서베를린의 주민들은 1966년 이후 1972년까지 동베를린 혹은 독일민주공화국에 있는 친지 및 친구들을 방문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또한 관광교통 역시 아주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 우리 연방 정부는 매년 천사백만의 독일민주공화국 연금생활자들이 독일연방공화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단히 기뻐하고 있으며, 60-65세의 정년미만 일지라도 약 4만명의 사람들이 해마다 절실한 가정문제로 독일연방공화국을 방문함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1972년 이전에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으나 현재에 이르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금의 규정 역시도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항목 15는 이산가족의 만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970년 이래, 우리의 노력으로 이미 2만 6천 5백명의 독일인들이 독일민주공화국으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이주하였음을 나는 확증합니다. 이중에

는 다수의 정치범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역시 우리 연방정부의 도움으로 독일민주공화국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항목 16에서는 인접국경선에서의 분쟁이 해소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내용은 이후 기본조약을 통해 국경선위원회에 위임되었으나, 이 항목을 기반으로 국경선의 재검사와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지난해 국경선 분쟁사건의 숫자가 명백히 격감하는 것에 기여하였습니다. 물론 국경선 분쟁이 완전히 종식되었던 것은 아니나, 거의 1,300km에 이르는 국경선이 조사·확증되었으며, 엘베강 국경에서는 95km에 상당하는 거리에서 종전에는 없었던 국경선 상호 일치룰 이루었습니다. 국경선위원회는 이 측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급수(상수도), 국경선 영역 및 관개수리시설문제의 실제적인 해결점을 찾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항목 17은 교통, 체신, 통신, 정보교환 및 학문교류, 교육, 문화, 스포츠 교류에 관한 협정이었습니다. 나는 몇개의 예증을 제시함으로써, 무엇이 달성되었고, 종래 무엇이 달성되지 못하였던 것인가를 명백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베를린으로의 진입로(중계로)는 개선되었고, 또한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를린과 함부르크사이의 고속도로 건설, 베를린 지역의 철도건널목의 개방, 베를린에서 텔토브(Teltow)운하까지의 개방, 헬름슈테트(Helmstedt)의 고속도로 복구 및 경유운하에서의 개선사항 등입니다. 이러한 모든 개선사항을 위한 예산 및 경비지출은 막대하지만, 이 경비지출은 베를린의 생활력과 경제력을 강화시키고 독일국가와 독일국민과의 관계에서, 장

기적 측면에서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전화연결도 확대하였습니다.

10년전 오늘, 1970년 독일연방공화국으로부터 독일민주공화국으로 약 7백만 회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3배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즉 2천만 통화, 하루 평균 두지역 사이의 통화량은 5만5천 통화이며, 베를린의 두 지역사이에는 지난 18년 동안 전화선 연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베를린은 동베를린과 독일민주공화국에 약 500의 회선을 가지고 있으며 두 공화국 사이에는 공개적인 정보교환 역시 본질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독일민주공화국 내에서의 우리 기자들의 활약은 오늘날 독일연방공화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독일민주공화국의 모습을 받아들이는데 기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선입견은 철폐되었습니다. 6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몇몇 함부르크의 기자들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인상에 대하여 “낮선 나라에서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보고하였으나, 오늘날은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표제로 독일민주공화국을 추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독일공화국의 우리 기자들에 대한 태도에는 여러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추방, 취재제한 또는 독일민주공화국을 경유할 때 가해지는 위첩 등은 1972년의 조약과 1975년 헬싱키(Helsinki)협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물론 독일민주공화국 및 다른 공산주의국가에서는 언론에 대하여 우리와는 다른 척도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과 다른 바르샤바조약 가입국가들이 서방

기자들을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할 때에 그들의 국제적인 관계에 서방기자들이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에서 이루어낸 업적은 독일문화 공간발전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에 상응하지 못했으며, 이것은 또한 일반적인 유럽의 수준에도 상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학문 및 기술 역시도 수준이 미치지 못하며, 스포츠에서는 체육연맹사이의 협정이 존재하나, 오히려 많은 희망사항을 기입하도록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 그다지 없으며 오히려 문제들이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락(Worra)의 철거입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의 회합 초기부터 독일민주공화국과의 협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담이 곧 이루어질 것을 희망합니다.

카셀 항목 18은 분쟁의 제거이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함없이 이루어낸 합법적인 기초 위에서 양측의 무역거래는 10년전에 비하여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무역 총거래액은 거의 100억 마르크에 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장기간에 걸친 협력의 발전에 기뻐하였습니다. 연방정부는 동시에 지불거래 및 청산거래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 부당해위를 제지하는 등, 필요 불가피한 것들을 기본조약에 추가기록으로 기재하기를 언급하였습니다.

항목 19에서 빌리. 브란트는 양측 정부가 전권사절을 장관서열에 임명하고, 전권사절의 위임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직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두 국가는 1974년 공적인 직무상의 관계를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정부 사이의 연속적인 의견교환과 정보교환등을 통하여 매년 독일의 수천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요구되어지는 원조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10년 전에는 거의 생각할 수조차도 없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자명한 것입니다.

카셀 항목 20은 국제연합과 그 밖의 다른 국제적인 모임단체에 대한 양 공화국의 회원자격 및 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1973년 이래로 현실화되었으며 4개국 권력 역시 이러한 회원자격 획득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어떠한 방향으로든 침해하지 않는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나는 10년전 오늘 카셀에서 20개의 항목이 아주 작렬하는 강령처럼 포효하던 것을 명백하게 기억합니다. 초안을 제시하고, 또한 이에 따른 구성을 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현실가능한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계획하였던 것들 중의 수많은 것들이 오늘날 구체화되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지리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독일이라는 목표에 도달코자 하는 목적을 세워 왔습니다.

첫째, 우리는 분단된 독일에서 국민상황을 유화시키고, 분단의 냉혹함을 완화시켰습니다.

둘째, 우리는 기본법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독일의 문제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독일의 염원 및 목적을 상대측 및 주변국가에 강력히 시사하였습니다.

셋째, 10년동안 우리는 동유럽과의 관계에서 조약을 통해, 또 서로의 공동노력을 통해 과거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전에 이미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 놓은 화해와 노력의 성과를 소련과의 관계, 폴란드와의 관계 그리고 동부유럽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달성하게 되었고 동유럽 및 독일민주공화국의 많은 국민들도 이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네째, 우리는 60년대말 이래로 긴장완화의 한 과정으로서 서방우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하나의 유럽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여 각자의 지정한 역할을 부담하는 것을 독일연방공화국에서도 가능케 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분단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의 위치가 국제적으로 격리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세계정책상 행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동유럽과 서유럽의 공동협력의 새로운 형태를 가능케 하였고, 이것은 유럽의 평화강화와 안전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독일을 가로지르는 경계선과 강권발동이 남아 있는 한, 양 공화국 사이의 긴장의 원인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정치체계의 대립, 정치적 자유의 기본적 결여, 독일민주공화국의 임의이주권 제한 등에는 문제점이 존재하나, 총체적으로 볼 때에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개선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성급함과 촉박한 서두름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며, 이러한 면에서 통일독일로의 정책에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 카스텐스(Carstens)는 이 점을 이해하였고, 나 또한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카터 대통령과 내가 이달 초 공동성명에서 언급했듯이 20년 이상 동맹관계인 동서의 틀을 유지하고 서로 협조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독일정책의 속행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CSU의 의장인 슈트라우스(Strauss)씨는 독일정책에서 대외 정책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젤 박사(Dr. Barzel: CDU/CSU)]

그 당시와 오늘날, 그러나 나는 1962년의 바르젤씨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는 현재 바르젤씨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변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CSU의 의장인 슈트라우스씨도 물론 독일문네에 있어서 세계정책상의 관계를 완전히 인식하였던 상태인 18년전, 1962년에 말했던 것처럼, 독일의 재통일에 있어서 우리는 동서대화의 화해시기를 고대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4년 후 그는 우리영토가 세계정책상 격리의 위협 앞에 있을 때, 이러한 격리는 프랑스의 도움으로 타파될 수 있으며, 미국과 독일의 동맹에 관하여는 아주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당시 격리의 위협은 철저하

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위협을 추방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사회자유주의 연맹과 SPD은 새로운 독일정책과 독일연방공화국의 동방정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이 계획을 현실화하려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프랑스의 도움으로 하나의 돌파구로서 계획된 것도 아니고, 또한 미국에 대한 회의로 생긴 것도 아니며, 이것은 독일국민의 관심으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합은, 그 자체로서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프랑스, 그리고 대영제국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또한 동부유럽국민과 국가의 관심상태를 고려한 것입니다. 지난 주에 슈트라우스씨가 위태로운 국제적 상황 속에서 공통성과 화합의 새롭고 기본적인 기록, 즉 2월 15일의 프랑스와의, 그리고 3월 5일의 미국과 서로 맺은 공동성명을 “어리석음의 경계선에서”라고 격하시키면서 첫번째 기록을 비난한다면, 또한 미국에서의 두번째 기록을 선거전의 산물로서 옆으로 치워놓으려고 한다면 그러한 시도는 우리 독일연방공화국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내각수반과 국가수상으로서의 성명에서 3가지를 모욕하였고 또한 논쟁의 장본인까지도 침해하였습니다. 독일정책과 독일통일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지 수사학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소련의 진입은 또 하나의 첨예한 국제적 위기를 창출하는 것이며, 이 위기는 또한 유럽에서의 동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동맹국과 더불어 공동으로 유럽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기를 희망합니다. 아프가

니스탄에서의 소련군대의 철수요구는 최우선으로 요청되며, 이에 대하여 또한 소련의 팽창에 대한 공통적인 서방의 대답 및 적절한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연방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면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진보를 거듭해 왔으며 나는 이 자리에서 워싱턴(Washington)의 공동성명을 인용하고자 합니다.:여러분들은 아프가니스탄에의 소련침공의 평가를 만족스럽게 가지고, 전세계 많은 국가들을 소련의 행동에 대한 답변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에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였습니다. 나는 주말에 프랑스 대통령 지스카르(Giscard)씨와의 단 둘이 가진 우정어린 깊은 담화에서 두 정부의 영속적인 의견교환과 경험지식의 상호교환을 깊게 하고자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동부유럽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그의 여행은 워싱턴에서의 나의 담화와 경험처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유럽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2주 후 브뤼셀(Brussel)에서 이루어지는 유럽 평의회 새수상 선출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당시 우리의 대화의 요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유럽의 힘은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즉 공통적인 서방정책의 틀안에서 유럽활동력의 중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중심적인 문제에 대한 토의에 대하여 즉, 비동맹국가이며 중립국인 아프가니스탄에 대하여 유럽공동체 연합국 및 아시아 국가들에 의하여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둘째, 유럽공동체와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의 아시아국가 의

무부 장관들의 공동성명은 독일연방공화국내의 두 지방당과의 협력의 협정을 초월하여, 제3세계 국가들, 포괄적인 동업자조합들과 함께 경제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을 강화시키는 아주 새로운 발전이었습니다. 독일의 시작을 토대로 하여 유럽공동체는 걸프국가(Gulf-Staaten)들과의 협정체결을 검사하였습니다. 로마협정과 유럽공동체는 산업국가와 발전도상국들의 공동작업에 대한 방향지시의 모델을 소개하였습니다.

세계, 동부유럽 근역과 중심지에서 정치적인 평형복구에 대한 노력은 그 지역에 적합하고 포괄적이며 영속적인 평화를 점점 더 절실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유럽인들은 유럽과 아라비아의 대화를 고무시키고자 노력하면서 또한 주어진 시간에 신중한 방법으로 근동의 갈등들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에도 우리 정책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남아 있습니다. 즉 안전한 자국 영토 내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국가의, 영역권리, 영토권,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민족에게도 적용되는 민족자결권의 의미는 근동을 여행한 프랑스 대통령에 의하여 다시금 강조되었습니다.

세계, 아프리카에서 우리의 우방, 영국은 짐바브웨(Simbabwe)에서의 선거로 세계의 정치적 안정에 확실한 기여를 하면서, 더구나 대륙에서 우리 유럽인들을 특히 독일인들을 밀접하게 결합시켰습니다. 우리는 내각수상 무가베(Mugabe)에게 파트너로서의 공동작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유럽공동체의 구성국가들은 현재 세계적인 위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즉 10년 전 1969년 12월에 있었던

덴하그(Den Haag)정상회담에서 표명했었던 목표들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통일된 유럽에로의 길을 닦으며 유럽의 아픔과 의무에 상응하는 미래 세계로의 책임을 이어받는다.

나는 현재의 위기 속에서 국제적인 공동작업의 망을 유지하고 우리의 우방과 유럽공동체 국가, 그리고 더 확대하여 제3세계의 국가들과의 공동협력을 이루어내는 것이 진실임을 증명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틀 안에서 우리 자신의 고유한 국제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서유럽과 아메리카의 우방을 이끄는 미국과의 동맹 속에 우리의 안전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번째 우리는 동맹의 통일에 관한 것입니다. 밀접하고 포괄적인 동맹국들의 연합, 특히 우리와 미국과의 연합입니다. 나는 이 점에서 독일과 미국 사이의 성명 내용 중 다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 국가는 서로의 공통적인 안전에 대하여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그들의 공통된 원칙과 기본적인 가치, 그리고 그들의 민주적인 삶의 형태와 신뢰 역시 또한 양도할 수 없는 인권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들 국가가 본질적으로 서방의 공동방위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우리 독일군대 역시 필수적인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해 동일한 정도로 방위능력이 단지 예산소비에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적인 방위공동체에 대한 이해력을 기반으로 국민개개인의 의무에 기초한

하나의 잘 교육되고 근대적으로 무장된 연방방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우리의 방어능력과 평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방위력 보유가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동맹의 틀 안에서 그러나 기본법 법규 한계 내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다른 과업, 즉 이것이 독일에 불가결하게 작용하는 관계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면 동맹관계를 해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터키와 그의 동맹국들을 돕고자 올 봄에 이미 포괄적이고 국제적인 원조에 대한 발기를 제안하였고, 이미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는 우리의 안전협상과의 관계를 다시금 재고, 회복하여야만 하였습니다. 특히 소련에 대비하여,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의 현대화를 위한 1979년 12월 나토 이중체결로서 준비하였고, 또 우방들과 공동으로 중거리미사일 군비통제협상에 참가함으로써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양방 대응책은 아주 신중하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마침내 어지럽혀진 평형을 다시 되찾는 것이 문제임을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우월자, 혹은 단지 서방의 이익만을 위하여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평형을 유지시키며, 더욱이 최저수준의 평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일과 미국의 성명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소련이 나토의 중거리미사일 영역에서의 군비통제 제안을 한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우리 스스로가 군비제한에서 발전을 찾아 이를 가능케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술상의 군비축소협상

(SALT)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는 소련이 SALT III에서 그들의 지금까지의 주장을 비슷하게나마 명백한 방법으로 표시한다면 비록 그 주장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국의 대통령처럼 그것을 환영할 것이며 이것은 또한 유럽의 안전과 공동대책에 관한 회의에서의 회의목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의는 마드리드에서 가을에 기일에 맞추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방들과 협력하여 이에 준비하고 있으며, 유럽과 KSZE의 안전과 공동대책 회담으로써 35개국으로 구성된 학자들의 함부르크 학문토론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 공동대책에의 진전을 보여준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MBFR 협상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유럽에서의 군축회담에서 프랑스의 제안을 지지하였고, 그리고 신뢰를 형성하는 영역에서 앞장설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동부유럽과의 관계에서도 우방들과 일치하여 얻은 성과를 보전코자 합니다.

그러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공동대책도 존재하지 않으며 통신과 상대방의 정보 없이는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양 진영의 강국들 사이의 회담이 다시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소련공산당 서기장인 브레즈네프(Breschnew)와 나와의 서신교환도 이 긴장된 시기에 중단되어져서는 안되는 동·서간의 통신에 기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동·서의 사이에는 유럽에서의 평형과 긴장완화의 정책에 대하여 양자택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들

의 무장간섭을 통하여 긴장완화를 더욱 더 어렵고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동일한 방법의 새로운 타격과 충격으로 현 상태를 지탱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성명에서 밝혔듯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병력을 철수하여 어지럽혀진 평형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소련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써 힘이 들게 열려진 길을 열린 채로 두고 그리고 세계의 평화가 수호되게 되는 것이다.

카터대통령과 나는 공동으로 아프가니스탄에의 침입은 소련과 서방의 경제적인 관계를 상당히 침해하였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소련과 우리와의 경제관계를 다음과 같이 형성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동맹국의 보호에 있어서 그 어떤 이익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들과 우리의 경제관계는 소련의 군비노력이나 소련의 군축 가능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도 또한 무역과 경제적인 공동대책을 유럽의 안정정책에 관한 확실한 요소로서, 유럽의 모든 국가들과 유지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소련에게 올림픽 경기때 모든 국가들로부터 온 운동선수들을 참가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였습니다. 오늘날은 물론 이러한 조건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의 점령과 전투는 힘을 축소시킨 것이 아니라 유지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림픽 이념은 고대 그리이스의 창시 이래로 국민들 사이에서 평화의 상태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프가

니스탄의 평화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의 언행 일치는 불가피하게 되며 유럽에서 파괴된 공동대책의 요건들도 서유럽 우방의 구성원들이 혹은 연방정부의 구성원들이 분열하게 됨으로써 원 상태로의 회복을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련의 언론이 한번은 연방 외무장관을, 다른 한번은 연방수상을 특히 그들 비판의 표적으로서 선발한다면, 그것은 한편으로 치우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양측 모두 이 연방정부의 모든 구성원들처럼 동일하게 독일의 정책을 대변하는 정치가이기 때문이며 평형의 정책과 공동대책의 정책인 것입니다.

사회자유주의연맹의 10년간 독일정책은 두 독일공화국에서 공동작업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통일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이러한 단결 없이는 내적인 감성을 잃게 됩니다.

국가의 실체, 공통의 역사, 공통의 언어, 공통의 문학, 예술, 음악, 상호간의 지식, 서로에게로의 소망, 공통의 평화의무와 공통적인 의식 또한 명확하게 한 지붕 아래서 집합하는 것—이러한 모든 것들이 독일통일의 전제조건들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자유주의연맹의 독일 정책은 이러한 실체의 보존에 주의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의 의무를 —기본법의 전문에 상응하게—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본법이 우리의 의지를 설명하고 있고, 연합된 유럽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신중함을 포기할 수 없고, 희망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의 자유를 위한 안

전과 방위에 대한 준비를 포기할 수 없고, 신중한 외교정책상의 평가를 포기할 수 없고, 조망과 현명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알아야만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사람은, 이웃과의 타협을 유럽의 평화적인 회복에 대해서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압박하는 정치적인 형태와 위기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 유럽의 정신적인 통합의 회복만이 즉 은 유럽의 경제적인 맥락에서의 복구만이 하나의 공통적인 지붕아래에서 우리 고유 독일민족의 장래 통일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재통일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하여 논의한다면, 독일통일의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우리는 “독일통일에 대한 서신”에서 우리에게서 유럽에서의 평화가 독일의 재통일에 대한 전제조건임을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변함없이 효력을 갖고 있으며 세계 정상의 위기상황에서 연방정부의 의무는 특히 신중하고 주의깊은 정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든 동방국들은 이해하며 특히 카터 대통령과 지스카르 대통령도 이해합니다.

2년전 당시 연방 대통령 쉘(Scheel)은 기본법의 전문에서는 통일과 자유를 회복하는것을 못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그것을 가져오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완성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통일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배후로 향하는 진부한 독일의 낭만은 아닙니다. 통일은 미래로 향하는 유럽 평화의 목적입니다.

나는 특히, 때때로 이러한 문제때문에 불안정이 나타나는 유럽에서의 이웃 국가와 친구들에게, 이 문장을 즉 독일인들 스스로 이러한 노상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분단된 현재, 우리는 수 많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틀러로 인해서 도로 찾았던 현재 독일의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혹독함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영속적인 비난에 의해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결과를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시도는 보충의 위해(危害)를 다시 발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독일민족의 미래에 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냉철하게 두 국가를 이루고 있는 독일의 분단을 극복하는 데에는 세계속에서의 정치적인 상태가 유럽의 현재 상태에 그 어떤 가능성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국가사이의 긴장완화로의 쌍방의 작업이 하나의 새로운 대결을 통해서 늦추어 지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미래에의 가능성은 피해를 입게 되고, 특히 모든 독일인 국민이 가장 큰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독일의 분단은 동시에 유럽의 분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독일의 문제는 단지 유럽에서만 민감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양측에 대해서 유럽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들 사이에 있는 무덤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독일 문제에 유익한 더 많은 결속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사회자유주의연맹의 10년간 독일정책은 분단된 국가에서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시에 Berlin의 상황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이러한 정책은 기본법의 정신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정책은 독일의 단결을 수호하였습니다. 새롭고 강화시켰습니다. 기본법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셋째, 연방 정부는 두 독일 공화국에서 보다 폭넓은 과제의 풍부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칠줄 모르고 근면하게 그의 극복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평의회 의장인 Erich Honecker와 나와의 만남은 우리의 주장이 가능한 한 빨리 독일민주공화국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에 기여 하였습니다.

우리 독일에서, 독일민주공화국에서,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재 세계 정책상 위태로운 상황하에서, 독일땅에서의 맞대결의 회피입니다.

독일국민의 단결과 평화의 유지는, 우리 모두의 숙원인 독일통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전제조건입니다. 평화가 없이 독일의 통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출처 : 208의 기록(외교문서). 1980년 3월 20일의 독일연방의회 회의.

6. 국경위원회의 번호 56a와 66기록의 기재

1980. 3. 20.

Wernigerode에서 수리(水利)시설의 작동에 대하여 그리고 Luebeck 만에서의 보조적인 국경 표시에 대하여 서명한 기록의 기재는 1980년 3월 19, 20일에 있었던 국경위원회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쇄되었다.

국경위원회-내독성에 의해서 출판된 원칙과 활동에 대한 문서 작성.

1985년 Bonn.

7. 교통개선과 해양보호 문제에 관한 동독민주공화국과의 협상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

1980. 4. 30.

A. 일반적인 전망

연방 독일과 동독은 1978년에 Berlin교통의 개선에 대한 협상과 관련하여, 그들의 준비에 대하여 폭넓은 교통개선책을 위한 1980년 토의를 시작할 것을 설명하였다. 연방 정부는, 협정된 규정의 규범과 성과에 자본참가를 아직도 5천만 마르크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규정의 규범과 자본의 참가가 1981년부터 시작해서 5년이라는 기간에 이른다는 것을 전하였다. 교통영역에서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핵양보호의 문제 또한 내용으로 되었던 긴장된 협상에서는 Berlin 상원과의 공동작업에서 그리고 4대국과의 조경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합의를 목적으로 하였다:

1. Berlin과 헬레스하우젠의 경계 사이에서는 고속도로 시설의 신축이나 증축 혹은 개축을 통해서, 직통전차의 연결이 설계되었다. 게다가 베라계곡에 대한 대교량의 건설 또한 우리측의 회사에 속한다.

2. (공업지대를 흐르는) 중부 독일을 흐르는 경계선 지역과 Haldensleben의 공간사이에서 27km의 폭으로 넓혔다.

3. Berlin과 Helmstadt사이의 철도 교통에서는 Potsdam/Werder처럼 Wannsee/Griebnitzsee 직선거리의 증축으로 일차의 도체에 복선의 운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통파(정유) 역행 기차의 안락함은 Rummelsburg의 세탁상태와 클리닝상태의 정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개선되었다.

4. 양측에 부과된 환경문제에 대한 기술자들의 회답은 올해에 시작될 것이다. 특히 베라-베제와 Berlin인들의 핵양 보호문제들이 이 문제들에 속하는 것이다. 이 기술자들의 답화는 또한 경계선을 넘어서는 상인 및 기업인에 대한 새로운 협정과, 경계선 영역에서 광산업의 안전에 대한 증가를 목적으로 하였다.

앞서 이야기한 교통계획에 대한 연방의 비양리자본은 모두 507백만 마르크까지 협정되었다. 이러한 비용의 참여는 1981년에서 1984년까지의 시기에 달한다. 1980년에는 주문의 허용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10백만 마르크까지 교량건설 착수에 허용되었다. 이 금액은 고정된 가격으로서 이해되었다. 이 넘겨받은 지불의무는 입법상의 단체를 통해서, 재정(예산)의 권력수여의 유보아래 있었다. 당지의 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갖가지의 계획에 대한 동독의 기계매대를 통한 베라고량의 건설로 인해서, 우리측의 기업에 대해 지불 면제의 현저한 양이 역류하게 되었다.

연방 정부의 시야로부터, 교통협정에서 서베를린의 관심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제 소기의 성과는, 1975년의 Helmstadt-Berlin간 기차의 복구와 1978년에 Berlin-Hamburg간의 기차, Teltow운하의 개방 등, 추구했던 정책의 협정과 더불어 모순이 없는 연속적인 발전들이다. 연방 정부는 지금 목적으로 했던 결과를 적당히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평가하였다. 이것과 함께 특히 헬레스하우젠-바르타의 거리에서 그리고 Wannsee/Griebnitzsee의 궤도와 Potsdam/Werder에서 존재하는 좁은 길이 드디어 제거되도록 고려하였다. 연방 정부는 실상을 고려하여 이러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오래된 설계도(약도)를 토대로 파악한 해결에서 헬레스하우젠-바르타 국경 통과지점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다고 고집하였다. 그러나 동독정부는 3번의 국경 횡단과 연결해서 이러한 제안에 동의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상원 의원과 연방 정부는 북쪽 통과 철도의 건설은 남쪽 방향으로, 그리고 협상의 문제로 남아 있는 동독정부가 종래(여태까지) 발전하지 못했던 통과(경유)교통에 대한 보류는 다음 기회에 새롭게

협상할 것을 합의하였다. 해양문제에 대해서 약속한 담화에서 연방 정부는 절박한 환경문제에의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였다.

당면한 화해는 여러가지 관심의 조정이다. 양측의 그러한 조정은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 견해와는 관계없이 유래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또한 협상의 결과에 입각한 성명에 나타난다.

「연방 독일의 공식적인 대변인인 키티 가우스의 성명」

연방 정부는 오늘날 문서로 작성된 두 독일 국가사이의 최근 협상 결과를 기뻐한다. 연방 정부는 그 속에서 양쪽 독일 국가의 계획과 능력을 확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에 풍요한 화해(타협)들을 발전시켰고, 사람들의 관심에 상응하는 관계들을 개선시켰다. 교통개선에 대하여 성취된 협정의에도 해양 보호의 문제에 대한 약정(합의)은 특별히 중요함을 가지고 있다. 연방 정부는 기본조약에서 예견했듯이, 좋은 이웃의 단계에 대한 발전으로써, 인내하면서 그들의 정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고집하였다. 연방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준비를, 주어진 시기에 동독과 폭넓고 장기간에 걸쳐, 양측의 관심사이며 그리고 양 국가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규칙과 협정을 얻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그들의 준비를 강화하였다.

「동독의 외무부 장관 대리인 미하엘 콜의 성명」

동독 정부는, 오늘날 서독과 교통문제와 그리고 그밖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규정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점에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1978년 11월에 협정된 규범들을
속행하거나 혹은 그것들에 결핍된 것을 보충하였다. 이것을 초월하여
해양보호의 문제에 대한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규칙과 협정들은 양
측의 장점이 되는 그러한 원칙들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리고 쌍방의
관심사에서 하나의 정선된 조화를 나타낸 것이다. 오늘날에 적절한
규칙과 협정들과 더불어 동독은 그들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이는 통치권 고려의 원칙으로부터, 동등한 권리와 불간섭의 원칙으로
부터 나온 것이다. 평화의 관심속에서 서독과의 관계를 인간의 복지
로 형상화 하기 위해서이다. 본질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 협정된
규범들은 동·서독 사이에서 평화적인 공존의 보통관계로의 발전으로
가는 데에 보다 폭넓은 기여를 하였다. 그들은 현재의 국제적인 상
황에서 이들 두 국가와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긴장완화정책을 촉진하
였다. 이러한 담화와 협상의 성공적인 체결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은
또한 이러한 이유로서 우리에게 감사한다.

B. 협상의 결과

I. 교통개선책

1980년 Berlin교통에서의 교통개선책에 대한 동독과의 협상은 Ber-
lin수상과의 공동작업에서 그리고 3개국의 투표로서 다음과 같은 결
과로 나타났다.

1. 바르타와 엘젠나하에서의 고속도로 중축 내지는 개축.

건축규범과 재정적인 수혜에 대한 서신 교환.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무장관

교통문제에 대한 내각의 각의

Berlin. 1980년 4월 30일.

독일연방공화국의 공식적인 대변자.

Herr Guenter Gaus.

Berlin.

존경하는 가우스씨께

동독과의 조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공지되었습니다.

1. 동독 정부는 -또한 통과무역(제3국간의 무역)의 개선까지도- 아이젠나하 서부 연결(접속)장소와 연방독일 바르타까지 이르는 동독의 국경선 사이의 고속도로 부분의 건설을, 베라계곡을 경유하는 대교량을 포함하여 그리고 필요한 국경 통과지점을, 동부 아이젠나하 서부의 접속장소에 현존하는 고속도로 246.0km와 270.7km사이를 완전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267.0km에서 274.0km간 고속도로의 근본적인 개혁을 오늘날 양도된 성과의 표시에 따라서 행하게 되었다. 준비와 건축 기간은 4년 3개월을 예정하였다. 1980년 9월 15일에 일이 착수되었다.

2. 동독 정부는, 서독 정부가 1에서 서술한 건축규범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에 268백만 마르크의 금액을 부담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고정금액으로 이해되고 있다.

3. 성과 표시의 1단락 번호 2.2.1항의 단락에 따라서 베라계곡을 경유하는 대교량의 건설은, 조약에서 그리고 동독정부의 교통문제에 대한 내각의 임무위치를 기본으로 하여, 그들측의 회사에서 경쟁의

요건 속에서 존재하는 협정의 틀안에서의 용무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을 주었다. 동독정부 측에서는 건축계획에 대해서 재료의 납품과 다른 성과들에 대한 통제적인 요구들을 제출하였고 확정적이고 상업적인 협정의 틀안에서 그 범위와 변상을 규칙으로 하였다.

슈미트 박사

연방 독일의 공식적인 대변자.

Berlin, 1980년 4월 30일

독일민주공화국 교통문제에 대한 내각의 국무장관. 하인츠 슈미트
존경하는 슈미트씨께

나는 오늘에야 당신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독정부의 조약에서 동·서독 정부 및 서Berlin사이의 일반시민들과 화물들의 통과 무역(제3국간의 무역)에 대한 1971년 12월 17일의 협정을 참조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1. 연방 정부는 아이젠나하 서부의 접속(연결)장소와 서독의 바르타로 향하는 동독의 경계선 사이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오늘 당신 서신에 상응하게, 베라계곡을 경유하는 대교량과 필요한 국경 통과지점을 포함하여서, 동부의 현존하는 고속도로 246.0km와 270.7km 사이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아이젠나하 서부 그리고 267.0km에서 274.0km까지의 고속도로 구간의 근본적인 개설에 대하여 268백만 마르크의 총액이 통과무역의 개선과 관련되어서 동독정부에 지불되었다.

2. 268백만 마르크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분할 불입금으로 지불

되었다.

-1980년 9월 15일 예비 규범이 시작되던 시기에 10백만 DM.

-1981년 1월 15일 건축이 시작되던 시기에 16.8백만 DM.

-1981년에 60.3백만 DM에서 1984년까지 4번 똑같이 연부금으로 계속되는 금액.

건축규범의 체결과 새 고속도로 구간의 개설로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연부금은 금년 6월 30일에 은행구좌에 입금되었다. 연방 정부는, 1981년부터 건축의 진척이 적당한 리듬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연합된 할부금은, 서독에서는 Berlin에 있는 독일의 해외무역은행 AG를 위하여, 동독의 일정한 은행의 구좌로 입금시킨다.

3. 연방 정부는, 베라계곡을 경유하는 대교량의 건설이, 명령에 의해서 넘겨진 성과표시의 단락 1의 번호 2.2.1에 따라서, 그리고 동독의 교통문제에 대한 내각의 발송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측 회사들의 경합 요건하에서 교역에 대해 존재하는 협정의 틀 안에서 허용된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권터 가우스

[통과 협정의 적용(응용)]

<외교문서의 기재>

아이젠나하 서부의 접속장소와 서독의 재정적인 부담에 대하여, 동부의 아이젠나하 서부의 접속장소와 서독과 서Berlin사이의 통과무역에 대한 고속도로 구간의 사용에 관한 보다 폭 넓은 건축규범처럼

서신교환을 통하여 행하여진 오늘날의 협정에서.

동독의 교통문제에 대한 내각회의에서 1980년 4월 30일에 국무장관의 편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아울러 동일한 날에 서독의 공식적인 대변자의 이에 관한 편지와 관련해서, 협정내용중 항목 3을 참고로 인용해서 동·서독 사이에서, 서독과 서 Berlin의 시민들과 화물들에 관한 통과무역에 관해서 1971년 12월 17일에, 동독측의 그에 해당하는 외교문서 기재 번호 1의 보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게 되었다. 아이젠나하 서부 연결장소와 양독간의 경계선 바르타 사이의 고속도로 구간의 완성으로, 이 고속도로 구간 및 서독과 서 Berlin사이의 통과무역에 대한 새로운 국경 통과지점 바르타가 계획되었다. 동일한 시점에 종래의 국경 통과지점인 바르타와 장거리 교통로 7/7a는 아이젠나하 서부의 연결장소와 동독 국경선 사이에서는 바르타에서 서독과 서 Berlin사이의 교통무역에 대한 준비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1980년 4월 30일 Berlin.

〈국경 통과지점〉

동독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하였다.:

- 새로운 고속도로 통과장소인 바르타의 개통으로 종래의 국경 통과지점인 바르타는 모든 교통에 대해서 폐쇄되었다.
- 동독의 국경근처 영역에 고착되었던 교통시설을 포함해서, 새로운 고속도로 통과장소인 바르타는 또한 어음유통(流通)에 대해서, 아울러 제3국가의 통과무역에 대해서까지 허용되었다.

〈건축 진행에 대한 설명〉

중부독일 운하의 증축과 철도운수의 개선에 관련되어 있고, 보다 폭넓은 설명에서 동독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경우에 따라서 성취 상태에 필요하게 되는 개선에서, 양측 대리인들의 담화는 미리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계획된 자료의 제출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개선 뿐만 아니라, 건축규범의 실행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증명되는 정확성에도 해당된다.

-연방 교통성은 건축규범에 있어서,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교통의 경과에 관계하는 뉴스와 관련해서 건축의 진척에 대하여, 성취진행의 주요한 상태의 현실화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매해 건설 공사가 체결된 것처럼 그 경과에 따라서, 이러한 통지(보고)는 교통경과에 대해서 생긴 필요(요구)에 상응해서 일어나야만 한다. 동독의 경계선 영역에서 고속도로의 직접적인 관계에 필요한 규범의 조화로서 동독은 이미 실제로 행하였던 방법에 상응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대리인들의 영역에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자들의 담화가 단 기간에 이루어질 것을 발표 하였다.

〈성과의 요약〉

아이젠나하서부 연결장소 경계선 사이의 신축구간 길이는 7.8km, 거기서 베라계곡을 경유하는 대교량에 대해서는 0.8km의 길이이다. 고속도로는 28m 폭의 횡단면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도로는 69cm의 두께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서 24cm의 시멘트 콘크리트의

차도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는 7개의 교량이 건립되었다. 그중, 한 교량은 베라계곡을 경유하고 800m길이, 80-90m의 높이, 27.50m의 너비를 갖고 있다. 6개의 교량들은 고속도로로 인해서 분리된 경작지 평야를 연결하는 시내 진행의 운반을 필요로 하였다. 신축구간 두개 방향의 선로에서 하나의 주차장을 건설했고, (약 170m의 중간 길이) 나아가 휴게시설(Service Komplex)을 건설했다. 고속도로 구간은 보호판, 그리고 2.0-3.0km까지의 간격에서는 비상경보(비상호출)의 기둥이 설치되었다. 연결장소인 아이젠나하 서부는 안락하게 중축되었다. 고속도로 구간의 위치는 구릉이 많은 지대에서는 암석작업과 폭파작업, 그리고 안전공사와 배수공사의 규범들을 필요로 하였다. 아이젠나하의 서부영역에서 이 새로운 국경 통과지점이 건축되었다. 승인에 상응하도록, 서독과 서 Berlin사이의 통과무역에 대한 다른 교통선과, 다른 국가들의 통과무역에서처럼 국경에 가까운 교통을 포함하여 어음유통을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승용차 등 개별적인 탈것의 범주 분리가 계획되었다.

아이젠나하 서부 연결장소의 동부에 현존하는 고속도로는 3.7km의 길이로 보충되었고, 25-28m의 횡단면을 가지고 있고, 도로의 두께와 하부구조는 44cm의 길이로 되었다. 3개 다리의 건축은 15m짜리 2개, 그리고 90m짜리 하나의 교량길이를 설립되었다. 고속도로면은 다리의 영역에서는 보호판과 그리고 교통이 위험한 지역에서는 비상경보(비상호출)시설을 공급하였다. 동부의 아이젠나하 서부 연결장소에는 고속도로 변을 6.5km의 길이로 본질적으로 개선하게 되었고,

모든 구조는 69cm의 두께를 가지게 되었으며 거기서 24cm는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로 되었다. 현존하는 도로의 다리는 개설되었다.

2. 공업지대를 흐르는 중부독일 운하의 개축(중축).

건축규범과 재정적인 성과에 대한 서신 교환.

동독의 교통문제 내각의 평의회 차관

Berlin. 1980년. 4월 30일

동독정부의 공식적인 대변자

귄터 가우스(Guenter Gaus)

Berlin.

존경하는 가우스씨

동독정부의 명령으로, 나는 삼가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1. 동독정부는 서독과 서베를린 사이의 통과무역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중축에 대한 규범들과, 오늘날 양도된 성과표시에 따라서 동독의 중부독일 운하의 중축을 실행하였다. 준비기간과 건축기간은 3년 6개월로 계획되었다. 준비규범이 1981년 1월 15일에 시작되었다.

2. 건축규범에 대하여 동독은 중부독일 운하의 보다 폭 넓은 개축에 대해서, 200백만 마르크의 재정적인 부담이 생겼다. 언급한 총액은 고정금액으로서 이해되었다.

슈미트 박사

서독의 공식적인 대변자.

1980년 4월 30일

동독의 교통문제 내각의 차관

하인쯔 슈미트박사에게

Berlin.

존경하는 슈미트씨

나는 오늘에야 당신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독 정부의 주문에 대하여 동·서독 사이의 1971년 12월 17일에 있었던 협정을 참조해서, 연방 독일과 서 Berlin의 일반 시민들과 화물의 통과무역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1. 서독 정부는 서독과 서 Berlin사이의 통과무역에 대한 폭넓은 개축에 대한 규범들을 사용한 동독의 중부독일 운하에 대해서, 동독 정부에 150백만 DM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 언급한 총액은 고정금액으로서 이해되었다.

2. 서독 정부는 150백만 DM에 이르는 총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려고 한다.:

-준비규범이 시작되는 1981년, 1월 15일에 총 금액의 10%인 15백만 DM.

-건축공사가 시작되는 1982년 1월 15일에 총 금액의 15%인 22.5백만 DM.

-1982년 6월 30일에 총 금액의 25%인 37.5백만 DM.

-1983년 6월 30일에 총 금액의 25%인 37.5백만 DM.

-건축공사가 끝난 후 총 금액의 25%인 37.5백만 DM.

서독 정부는 1982년부터 건축의 진보가 적당한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을 근거로 하였다. 서독은 이 협정된 분할금액을 서독은 Berlin에

있는 독일의 해외무역은행을 통해서 동독의 일정한 은행구좌로 입금 시킨다.

권터 가우스

〈교통 관계〉

동독은 보다 폭 넓은 중부독일 운하가 증축되고 있는 동안에 내륙 항행의 교통이 수직으로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면적에 교통의 제한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전달하였다.

〈성과의 요약〉

중부독일 운하 증축의 목적은 현재 90m의 하역지구틀 토대로 한 횡단면을 약 133m로 확장하려는 데에 있다. 게다가 운하 횡단면의 일면적인 확장은 수직 해안가의 형성이나, 비스듬한 해안가의 안전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약 10km 내지 17km길이의 두 절단면에서 43.25m 내지 48.50m의 수면의 넓이가 제작되었다. 게다가 땅을 고르게 하고, 자갈 깔기 내지는 일시적인 해안가의 안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해안가의 안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벌목과 개간이 이루어졌다. 교대(橋臺)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16개 다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도록 하였다.

3. 철도공사 규범

서Berlin과 경제적인 성과 외에 건축공사 규범에 대한 서신 왕래.

교통문제 내각의 협의회.

동독의 차관,

Berlin. 1980년 4월 30일

서독의 공식적인 대리인.

권터 가우스

Berlin.

존경하는 가우스씨!

동독의 명령에 대하여 나는 삼가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1. 동독 정부는 -서독과 서 Berlin사이의 철도 통과무역의 개선
까지 오늘날 이룩된 성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건축규범을 실행하
려고 합니다.

-Griebnitzsee역과 서Berlin으로 향하는 경계선 사이의 구간에 대한
복선철도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일.

-운행되는 Rummelsburg역의 영역에서 세탁과 정화시설의 재건축.

-Postam거리의 역과 Werder역 사이 구간의 복선 개척.

준비기간과 건축기간은 3년 3개월로 계획되었다. 준비규범은 1980년
9월 15일에 시작되었으며, 건축공사는 1981년 1월 15일에 시작되었
다.

2. 동독 정부는, 서독 정부가 소위 철도공사 규범에 대해서 80백
만 DM의 재정적인 부담을 맡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총 금액은 고정금액으로 이해된다.

슈미트 박사

서독의 공식적인 대변자.

Berlin. 1980년 4월 30일

동독의 교통문제 내각의 차관

하인쯔 슈미트박사에게

베를린

존경하는 슈미트씨!

나는 오늘에야 당신의 서신을 받았으며, 우리 서독정부의 주문에 대하여 동·서독 사이의 1971년 12월 17일에 있었던 협정을 참조로 해서 연방 독일과 서 베를린 사이의 일반 시민들과 통과무역에 관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1. 서독 정부는, 서독과 서 베를린 사이의 철도교통 무역에 대한 개선을 고려해서 오늘 당신들의 서신에 상응하도록 동독의 정부에게 80백만 DM을 지불하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Griebnitzsee역과 서 Berlin으로 향하는 경계선 사이의 구간에 대한 복선철도 건설에 필요한 일.

-운행되고 있는 Rummelsburg역의 영역에서 세탁시설과 정화시설의 재건축.

-Potsdam거리의 역과 Werder역 사이 구간의 복선의 개척.

서독 정부는, 1981년부터 건축공사의 진척이 적당한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을 근거로 하였다. 협정된 할부금액은, 서독정부에서 Berlin에 있는 독일의 해외무역은행을 통해서, 동독의 일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시킨다.

퀸터 가우스

<성과의 요약>

Griebnitzsee / 경계선.

그리브니쯔 호수역과 서베틀린 경계선 사이의 구간에서 복선의 철도 운행 등의 거너설로, 다음과 같은 규범들이 계획되었다. Griebnitzsee역에서, 3개의 전철요소의 내부구조를 포함해서 Wannsee역과 Griebnitzsee사이의 복선의 평행선 교체운행의 실행에 대해서 서 Berlin의 경계선과 Drewitz역 사이의 단선의 화물열차 구간에 이르기까지 2개의 평행선의 참작 ; Griebnitzsee역과 서 Berlin으로 향하는 경계선 16.8km사이에서 2개의 평행선의 설계도에 대한 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지하공사와 기초공사 ; 새로운 운하의 분기점 연결과 새로운 차도의 내부구조 및 Griebnitzsee역의 안전설비와 전신·전화설비의 확장 ; 선로구간에서 새로운 기술적인 요건들에서 Drewitz역의 현존하는 안전기술의 적용 ; 새롭게 설치한 전철에서 전철난방시설의 제작.

<Rummelsburg>

예비적 처리(사전 조치)와 주된 처리의 개선, 특히 통과여행 기차 시설 정확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Rummelsburg 운행역의 영역에서 세탁 및 정확시설의 재건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과가 계획되었다 ; 적어도 330m의 3개 평행선 지구역내의 연장, 모든 시가철도역(330m x 25m 그리고 220m x 25m)의 지붕의 신축. 그리고 역내의 조명과 역구역(5개의 평행선)의 평면에서 역구간내(2개의 평행선)의 증축 ; 교통기관의 전기공사에 대한 폭 넓은 입장에 대한 난방 시설의 확장과 다양화 ; 내부시설 기술의 보충 ; 수많은 전압검사실을 포함하여 장거리여행 열차에 대한 전기시설의 신설 ; 외부 정확시설의 신축 ; 부

양 시설과 휴게시설의 확장 및 적용.

〈Potsdam / Werder〉

Potsdam거리 역과 Werder사이의 구역에서는 복선철도 운행의 복선이, 약 10km의 직선 길이로 다음과 같이 계획되었다: Berlin인의 외부 집단의 제방을 쌓아 올렸고 골름 측면의 방향 전환에 대한 하벨 교량 베더(약 2km) 시공 상면 땅을 고르게 한 평지의 신축 그리고 Potsdam 서부에서 신축한 평행선에 적합한 부설.

하벨 교량: 방향을 바꾼 측면, 포츠담 서부의 영역에서 배수 공사의 위생적인 개선하벨교량 베더;연결로 골름의 새롭게 끼워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의 들출부에 2개의 평행선에 적용하기 위한 개축; 현존하는 안전 기술의 적용; Potsdam에서 Havel을 경유하는 단선의 철도 교량의 신축, 그리고 수렴구에서의 철도 건설.

〈서 Berlin에서의 건축규정〉

동독의 교통문제에 대한 내각의 차관 하인쯔 슈미트박사에게 서독의 공식적인 대변자 쿤터 가우스의 전달.

나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전달할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Berlin-Wannsee역과 서독 정부의 Griebnitzsee 방향에 있는 동독 경계선 사이의 구간에서 복선의 철도 운영을 하기 위한 건축규정에 대하여 결정권이 있는 부서들과의 의견일치에서, 9백만 DM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할 것을 위임하였습니다. 이 총금액은 다음과 같은 할부금으로 예금됩니다:

-1981년 1월 15일에 5백만 DM.

-결정권이 있는 해당 관청사이에서 협정된 성과표시에서 언급된 건축일자의 확정으로 인하여 4백만 DM에 이르는 나머지 금액을 독일 연방철도의 위임자는 건설부 상임위원회의 위임에 대하여, 서 Berlin이 건축규정에 관한 한, 1981년 1월 15일에서 1983년 12월 15일까지의 기간까지 이 금액에 관여(자본 참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부 상임위원회의 위임은 건축규정들이 결정권 있는 관청의 업무 내용에 따라서 통제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업무내용>

Berlin-Wannsee역과 Griebnitzsee 방향의 동독경계 사이 구간의 복선철도 운행을 신축하도록, 통행허가 능력과 운행 가동성을 증가하여야만 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계획되었다. 전철의 2가지 요소의 내부 구조에서, 기존선로의 철도와 16.6km의 Wannsee역 사이에 하나의 새로운 철로 연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전철의 2가지 요소는 선로의 철도사이에 보다 폭넓은 철로 연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Wannsee역의 남부진입로에서 레일 5의 진입구에; Wannsee역과 경계선 사이에 상응하는 전선 설비의 제작과 같은 철로 경보시설의 장치;선로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적인 요소들에의 Wannsee역의 현존하는 안전기술의 적용;새롭게 내부를 설치한 전철에서 전철 난방시설의 설치;새로운 16.6km에서 철로 연결과 Wannsee역 사이의 선로 변에다가 자동적인 선로 구간시설의 장치.

II. 수자원보호 문제.

수자원보호 영역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 양측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수자원보호 문제에 대한 성명〉

특별한 수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독의 현재 문제에 대한 내각의 책임자인 미하엘 콜박사에게 대한 서독의 공식적인 대변자, 쾨터 가우스의 성명.

동·서독 기본조약의 조항 7에 추가적인 기록의 II 9와 일치해서, 그리고 서 Berlin을 포함한 이 조약의 체결에 부가한 성명은 1973년 이래로, 양측 사이에서 환경 보호의 영역에 대한 담화를 목적으로 하였고, 때때로 다른 측에 대해서도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담화들이 아직도 환경문제에 대한 협상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으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몇몇 수자원 문제의 해결이 절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서독은, 앞서 있었던 담화에서 다루어 졌던 몇몇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게다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몇몇 문제에 대해서, 양측의 전문적인 결정권이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의 교환이 지체없이 받아들여졌다. 각개의 관할권 속에서 양측이 임명한 담화 파트너들은 직접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의견 교환의 목적은, 전문적 결정권이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명확해지고, 이러한 성과들은 때때로 요구되었던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거나, 때때로 이러한 목적 규범들이 이용된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측의 성과나 재정적인 관여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그것에 상응하고 규칙에 맞는 목적

에 합당하게 서로 협조한다.

Berlin. 1980년 4월 30일

위의 성명은 동독 외무부 장관의 대변자, 미하엘 콜박사가 발표하였다.

<베를린시민의 수자원보호 문제>

베를린시민의 해양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담화는 즉시 받아 들여졌다.

<베라>

국경통과의 칼리광산처럼 베라의 암염채광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측은 성명을 발표 하였다.

동독 외무부 장관의 대변자인 미하엘 콜박사에게 서독의 영속적인 대변자, 쿤터 가우스의 성명.

양측은 1980년 9월 1일부터 토론을 시작할 것과, 기술자들에게 위임할 것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베라 암염채광을 축소하는 규정의 도입.
- 직접 경계지역의 칼리광산에서 폐광을 축소시키기 위한 규정의 도입.
- 광산업의 안전을 고양시키기 위한 규정들의 협정. 특히 폭파정체에 대한 규정.
- 국경 통과지점인 칼리광산에 대한 규정.

Berlin. 1980년 4월 30일

위의 성명은 동독 외무부 장관의 대변자 미하엘 콜박사가 발표한

것이다.

C. 3개 연합국과의 서신 교환.

3개 연합국의 사절들에게 1980년 4월 29일 Bonn에서 동독과의 협상의 서명에 따라서, 바르타와 아이젠나하에서 고속도로의 신축 내지 증축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을 통지하게 되었다. 미합중국의 입부에 대한 외무부 서신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외무부는 프랑스 대사가 연방 수상에게 보낸 서신을 참고로 인용해서, 1971년 9월 3일 영국의 결정과 미국의 그리고 예전에 행해졌던 미국대사와의 합의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동독 정부와 더불어 서독 정부는, 접속장소인 아이젠나하 서부와 서독의 바르타로 향하는 동독의 경계선 사이에서 고속도로 구간의 건설에 서독의 재정적인 관여에 대한 협정에, 동부의 연결장소인 아이젠나하 서부의 폭넓은 건축규범에 관하여 서명했던 것처럼, 서독과 서 베를린사이의 통과무역에 대한 이러한 고속도로 구간의 이용에 관하여 서명하였다. 이러한 협정의 틀 안에서는, 외교문서의 기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정하였다. 새로운 국경 통과지점인 바르타를 포함한 이 고속도로 구간이 서독 정부와 동독 정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1971년 12월 17일 통과협정의 내용중 통과구역의 부분적 완성과 더불어, 그리고 서독과 서 베를린 사이의 통과교통에 대하여 계획되었다. 동일한 시점에서 종래의 국경 통과지점 바르타와 연결장소 아이젠나하 서부와 서독의 바르타로 향하는 동독의 경계선 사이의 원거리 교통거리 7/7a는 서독과 서베를린 사이의 통과무역에 대해서 더 이상 고려 하지 않았

다. 이에 관해 외교문서 기재의 본문과 이것을 인용한 편지를 첨부하였다. 외무부는, 미합중국의 대사가 다시 그 내용을 확인할 것을 전달하였다. 3개 연합국의 대사는 Bonn에서 답변으로서 동일한 서신을 전달하였다. 이 서신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대영제국 그리고 북아일랜드 및 미국의 사절들은 관련되는 이 외교문서의 기재와 서신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특히 1971년 12월 17일에 서독과 동독사이의 통과협정에서 예견되었던 통과구간, 즉 새로운 경계선 통과지점인 바르타에 대한 규정들, 접속장소인 아이젠나하 서부와 동독의 경계선에서 서독의 바르타사이의 원거리 교통거리 7/7a에 대해서 그리고 종래의 경계선 통과지점인 바르타가 더 이상 통과협정의 의미에서 볼 때, 통과구간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 이들 3개국 정부는, 이러한 규정들이 1971년 9월 3일에 4강대국들의 협정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증하였다. 프랑스, 영국 및 미국의 사절들은, 외무부가 다시 그들의 뛰어난 존중을 확신하는 이 기회를 이용하였다.

D. 주석(Erläuterungen)

1. 바르타와 아이젠나하에서의 고속도로 신축 내지 증축.

경계선 통과지역인 바르타 지역에서의 일시적인 시가지 안내와 이러한 경계선 통과지역에서의 부족한 수하물 발송능력은 점점 늘어나는 문제점들, 특히 동독이 1974년말 여행시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사용을 용인한 이래로,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일정한 휴가기간과 휴가에 절정을 이루는 교통은 경계선 통과지역인 바르타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교통적체가 심해 헬레스하우젠에서 5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Berlin의 통과무역 또한 현저하게 방해되었다. 통과 무역에 있어서 좁은 지역관계 때문에 그리고 동독에서의 어음유통이 분리되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Berlin교통에 대해서 통과협정에 선호되는 수하물 발송의 장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1977/78년 동독과의 교통 개선은 경계선 통과지점 지역에서 행해졌고, 우선 몇 가지의 정밀한 규범들을 통해서 종래 지역인 경계선 통과지점 바르타에서의 통과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않았고 이 잠정적인 제도는 적절하지 않은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때문에 이제 체결된 협상에서는 보다 확실한 해결이 요구되었다. 우리의 경계선 관리 지역인 헬레스하우젠과 동독의 연결 장소인 아이젠나하 사이에서의 고속도로 구간은 8km 길이의 고속도로 구간 건설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게다가 베타계곡을 경유하는 대교량의 건설은 800m의 길이에 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계선 통과지점인 바르타지역을 고속도로에 연결시켰다. 보다 폭 넓은 건축규범을 통해서 동부의 접속장소인 아이젠나하는 총 3.7km 길이의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고속도로 구간을 3개의 다리 건설을 통해서 보충하였다.

6.5km 길이의 이러한 고속도로 구간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Berlin에서 헬레스하우젠의 경계선까지 통과하는 고속도로를 연결하였다. 보덴과 오버스틀사이에서 다시 동독 영역을 가로지르는 이전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서부 헬레스하우젠의 보다 폭 넓은 고속도로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독정부는 2개의 보다 폭 넓은 경계선 횡단을 연결하였다. 동독은 이미 베라게곡을 경유하는 대교량의 건설에 대한 조약을 건설회사에서의 경쟁요건 속에 존속하는 협정의 내용안에서 내륙간 무역에 대해서 양도할 것을 설명하였다. 서독정부는 계획된 건축규정에 따라 1981년에서 1984년까지 10백만 DM 불입금으로서 확정금액 268백만 DM을 1980년에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들은 특히, 베르타에서 존재하는 좁은 길이 수 많은 Berlin과 동독의 여행객들에게 짜증을 내게 한다는 것과, 이 짜증은 대규모의 증축을 통해서만이 제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베라게곡을 경유하는 대교량의 건설에 대한 조약은 우리측의 착수에 양도되어질 수 있고, 따라서 건설지역에 대한 다시 서독정부에 역류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 특별히 중요하다. 동독정부는 이것을 무시하고 갖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기계설비들에 2백만 마르크가 적용될 것이라고 통고하였다. 예산에 적합한 능력 수여의 조건 속에는 서독의 합법적인 단체를 통해서 다른 진출의 경우에 대한 지불의무처럼 똑같이 양도 받은 지불의무도 규정되어 있다. 새로운 경계 통과지역을 포함한 새 고속도로 구간은 통과협정의 의미에서 계획한 통과구간을 확고하게 하였다. 이것은 1971년 9월 3일의 4 강대국의 협정과 일치된다. 새 고속도로 통과는 국경근처의 교통을 포함한 어음유통과, 제3국가에서의 통과무역에 대해서는 적절히 적용되었다.

2. 지중해 운하의 증축.

1978년 이미 내륙 통과무역의 관심사에 있어서 서 Berlen에서는

Berlen을 향한 지중해 운하에서, Elbe-Havel운하에서 그리고 운하용 엘리베이터 로덴호수에서, 아주 큰 손해의 제거를 위해 1979년에서 1981년 사이에 협정하였다. 이러한 복구공사는 진행중에 있다. 이 새로운 협정은 더 이상 운하의 복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 영역과 헬레스레벤의 공간 사이에서 지중해 운하의 27Km 길이의 구간 건설에 해당되는 것이다. 지중해 운하는 예전에는 1000톤 선박의 교통에 맞춰 증축된 것이다. 오늘날 통과무역에서는 1350톤 선박의 대용량으로 운행된다. 때문에 지중해 운하의 횡단면은 1981년에서 1984년까지 확장되었고 새로운 연안보호구역으로서 설치 되었다. 연방 정부는 동독에서 지금 설치된 증축 규범들에 대해서 1981년에서 1984년까지 총 150백만 DM을 지불하게 된다.

3. 철도 건축규범들.

철도교통의 개선에 대해서 1975년 드디어 투자규범이 협정되었다. 그 당시에는 서 Berlin에서 Berlin과 Hamburg사이의 철도교통에 대한 경계선 통과지역의 개방이 문제가 되었고 3개 내부 도시의 장거리 노선 역의 증축이 중요한 문제였다. Berlen교통의 광범위한 발전을 위해 서독정부는 1979년 Berlen교통에서 서독·오스트리아·스위스의 국영철도의 근대화로 이끌었다. 지금 체결된 협상의 결과로서 헬름슈타트와 Berlin사이에서 관통하는 복선의 철도교통과 안락한 승차감의 상승은 보다 나은 손질의가능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로 끝나도록 구체적인 협상이 행하여 졌다.

그리브니쯔호수-뵘호수 구간의 증축, 서Berlin의 뵘호수역과 그리브

니즈호수의 경계역 포츠담 사이에는 종래의 단선 연결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위에는 좁은 길을 통해 가야 한다. 종래의 환호수-드레비쯔화물운수(화물교역)에 대해서 사용되었던 철도의 편입을 통해서, 이 철도는 그리브니즈호수역과 연결되어 있는 2개 철도의 건축을 통해서 복선구간의 통과능력을 현저하게 끌어 올리는 철도 교환운행에 대한 전제조건을 만들었다. 서독정부는 서독-영역에서의 7백만 DM. 그리고 서베를린 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9백만 DM을 부담하였다.

포츠담시-베더 구간의 증축, 포츠담지역과 베더역 사이에서의 베를린-헬름슈테인의 약 10Km 길이의 구간은 지금까지 단선이다. 일반 철도의 부설은 광범위하게 제방을 쌓는 공사와 교량 건설 공사 및 철도전철 장치의 건설을 전제로 하였다. 서독정부는 48백만 DM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Rummelsburg의 배수시설과 정화시설.

Rummelsburg에 존재하고 있는 배수시설과 정화시설은 낡았고, 더 이상 오늘날의 환경에 적용되지 못한다. 시설의 증축과 갱신을 통해서 Berlin 교통의 기차의 청결함과 난방시설이 결정적으로 개선되었다. 서독정부는 1981년에서 1983년까지 25백만 DM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4. 수장원 보호

연방 정부는 동독과의 원칙적인 조약의 체결 이래로, 양 측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협상과 기술자들간 회담을 받아들이고자

아셨다. 긴급한 손해의 경우와 수자원보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계선 위원회의 틀안에서 규칙들을 정하였다. 양측은 이제까지 기술자들의 담화를 받아 들이고, 보다 폭 넓은, 절박한 해결의 필요성이 있는 수자원문제들의 해결에 요구되는 규칙과 규범들을 명백하게 하고자 하는데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게다가 여기에는 특히 베라강과 베저강의 염분화와 Berlin에서의 수자원 적재문제가 속한다. 베라강과 베타강의 염분화는 헛센-튀링엔의 칼리광산 구역으로부터 동독의 칼리광산으로부터 소금운송 화물이 증가한 지역에 있는 칼리광산 하수정화를 통해서 야기되어 진다. 기술자간 실무협상의 논의에서는 모든 적절한 해결 가능성이 검사되고, 소금 적하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합의된 규칙과 규범들을 얻었다. 베를린시민의 수자원 보호문제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큰 문제였다. 슈프레와와 하벨의 탈브운하를 포함한 강 영역에서 특히 자양물이 풍부한 생활 하수물 통해서 적재를 완화시키는 것이 큰 문제였다. 계속되어지는 새로운 구간의 국경을 넘어서는 칼리채존에 대한 협정과 경계 영역에서 채굴의 안정을 높이기 위한 규범들의 협정에서는 경계선 영역에서의 칼리광산 폐광에 대한 논의물 포함한다.

출처: 1980년 4월 20일 연방 정부의 홍보실과 정보국의 공고. Bonn.

8. 파리의 조약 효력 발생 25주년 기념일의 서신 왕래

1980. 5. 5.

Bonn. 1980년 4월 28일

3명의 외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Hans-Dietrich Genscher 연방 외무부 장관의 서신.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25년 전인, 1955년 5월 5일에 파리에서의 조약이 효력을 발하였습니다. 이 조약을 통하여 연방 독일은 북대서양 연맹과 서유럽 동맹 속에서 권리가 같은 동등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독과 3대 강대국 사이에서의 긴밀하고 신임할 만한 공동작업에 대한 기초를 모든 문제에 있어서, Berlin과 독일을 전체로서 보았습니다. 일치된 서구 민주주의의 정치적인 가치 관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공동의 작업은 지난 장해에 근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Berlin의 생활 능력을 보호하며, 독일과 유럽 균열의 결과를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공동의 파리조약 "다시 통일된 독일"에서, 자유로운 민주주의 헌법을 소유하고 그리고 유럽공동체를 포함하는 목표 관념의 구체화는 여태까지 존재하는 힘의 관계면에서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독은 독일민족의 자결로서 그들의 통일을 다시 요구하는 유럽에서의 평화상태에 대해서 훨씬 더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필수적이고 정치적인 목표에 연합국정부의 지지에 감사하는 바입니다.

Hans-Dieterich Genscher 장관에게 프랑스 외무부 장관의 서신.

독일연방 외무부 장관 Genscher에게 보내는 프랑스 외무부 장관의
서신

프랑스의 외무부 장관

독일연방 외무부 장관 Hans-Dietrich Genscher 귀하

친애 하는 동료 장관,

나는 조약 효력 발생의 25주년이 되는 1954년 10월 23일에 파리에서 서명했던 조약이 서독과 3대 강대국 사이에서 밀접하고 신임할 만한 공동작업에 대한 기초가, 베를린과 독일을 전체로 하여 모든 영역에서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형성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의 덕택으로 서독은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그들의 위치를 재발견하였습니다. 독일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안정적 변형을 이루어 그들의 진보와 자유 이상이 보존하는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물론 파리의 조약이 평화의 유지에 근본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강조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실행은 Berlin의 생활능력을 안전하게 하고 독일과 유럽의 균열의 결과를 완화시키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정치적인 부분 극복에의 그 어떤 가능성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파리조약의 목적에 대한 4 강대국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종래처럼, 독일민족에게 자유로운 자결속에서 장래 그들 통일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럽의 평화상태를 회복하려는 독일연방공화국

의 노력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Übersetzung

독일연방 외무부 장관 Hans-Dietrich Genscher에게 보내는 영국 외
무부 장관의 서신

친애하는 장관님께,

저는 본(Bonn)과 파리(Paris)간의 조약이 시행된지 25주년에 즈음하여 당신의 서신에 대해 기꺼이 답하려 합니다. 이와같은 조약은 3개국 열강과 독일연방공화국사이의 밀접하고 지속적인 공동작업과 마찬가지로 북대서양연맹과 서유럽동맹에 속한 우리 국가들의 관계를 베를린과 독일 전체에 관계하는 문제로 삼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이와같은 동반자적 관계와 공동대처가 실제로 유럽의 평화를 보장해 주고 베를린의 생존능력을 보증해 주며 독일과 유럽간의 계속된 불편한 관계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는데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생각한 바대로 그와 같은 것들은 과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독일연방공화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독일민족이 자유스런 자결로 그의 단일성을 회복하고 유럽에서의 평화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앞으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피터 캐링톤

독일연방 외무부 장관 Hans-Dietrich Genscher씨에게 보내는 미국
외무부 장관의 서신

친애하는 장관님께,

본과 파리지간의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지 25주년이 되는 이 시점은 기억할 만한 시기입니다. 베를린과 독일에 전체적으로 관계하는 모든 문제속에서 독일연방공화국과 세 열강간의 공동협력이라든지 동반자적 관계가 이와 같은 조약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본질적으로 유럽에서의 자유의 보장과 베를린의 생존능력의 보증, 그리고 독일과 유럽간의 지속적인 분열을 없애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약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적인 제도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 공동사회로 귀속되는 통일 독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을 지지하고 독일민족이 자유스런 자결로 그의 단일성을 회복하여 유럽에서의 평화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합중국의 금후 정책이 될 것입니다.

Warren Christopher

원전 : 독일연방 외무부 장관의 통지,

Nr. 1020 B/80 1980년 5월 5일부터

9. 67번째 국경위원회의 조약의정서에 대한 기록

1980년 6월 12일 Cuxhaven에서 개최된 국경위원회에서 서명되고 집수구역과 건축에 대한 수의 깊은 감독과 떡갈나무 계곡의 감독에 대한 조약분서의 기록이 인쇄되어졌다.

1980년 6월 17일

10. 독일의회에 앞서 연방수상 헬무트 슈미트의 통치에 대한 해석

1980. 6. 17.

대통령! 신사 숙녀 여러분!

내가 당신에게 베네치아에서 유럽의 평의회에 대해서 보고하기 전 이였고 그리고 내가 독일 통합의 날에 대해 이야기 하기위해 다음의 만남을 준비하기 전이었습니다.

독일의 역사 속에서 사고와 재난의 돌발로인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면서도 확실한 자유와 공평한 법을 얻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1948년 위대한 혁명의 결정은 실패했다. 1919년의 독일 민주주의는 수년동안 훌륭한 묶음으로 사라져갔다. 그러나 인간의 봉기는 결코 무용지물한 것은 아니었다. 1953년 7월 17일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에 대항하는 봉기가 있었다. 처음에는 노동의 충돌이었다. 그러나 그후, 국민으로서 자신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국민의 일원이 되기 위한 것이 독일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의 표명이었다.

우리가 독일 연방 공화국에서 그 봉기에 대한 기억으로 해마다 독일 통합의 날에 대한 행사를 거행할 때면 나는 마음 속으로 달력에 이미 지불된채 표시되어 있는 축제행사의 날이 아니라 그날에 대해 그 이상의 많은 것을 깊게 생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통합에 따르는 죽음을 2년전 이곳에서 Walter Scheel은 한 중요한 연설에서 말했다. "뒤로 향해 돌려진 제국의 낭만은 결코 진부한 것은 아니다."

통합은 미래속에 그 이상으로 준비되어진 평화의 목적이다. 우리는 동등하고 정당한 일원으로 합일화된 유럽에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통합을 원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근본법칙이다.

그러나 우리는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평화에 대한 의무를 지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럽에서의 평화는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자결 속에서 다시 통일을 되찾는다”라는 전제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우리 독일인들은 평화를 필요로 하며 원한다. 또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평화에 대한 의지와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처럼 다만 독일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일치 또한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지난 6개월간의 경제고비속에서 불가피하게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독일인으로서 평화를 위한 특별한 책임으로 당연히 받아들여 진정어린 마음과 사려깊은 사고로써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의 행동을 취했다.

지난해 12월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추필원 의장인 Erich Honecker(에리히 호네커)씨와 나는 동일한 의견으로 상호간에 자주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독일의 땅에서는 결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이 신조는 이미 10년전 오늘날 Kassel(지명)의 20개의 주요항목의 하나였고 독일 정치의 강령으로, 독일 사회의 진보적인 동맹의 강령이었다. 나는 금년 초에 그 강령의 실행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던 금년의 보고에 대한 것을 연방의회의 설명에 답변하였다.

27년전 6월 17일은 자유와 정의와 통합성에 대한 의자가 명백히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나뉘어진 독일에서 우리의 흥정

에 대한 결과로 눈 앞에서 매우 분명하고 고통스럽게 경계선이 그려지고 있음을 보았다.

인간에 대한 경계선과 통치에 대한 경계선이 그곳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동독) 이곳 독일연방공화국간에 행위능력의 한계에서 통찰은 우리를 단념으로 이끌지 않았다. 우리는 더욱 잘 이해하였다.

독일의 판단이 현존 세력관계에 대항한 봉기를 통해 강요되어질 수는 없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의 독일 정치가 근거를 두고 있다. 그 사실로써 오늘날 독일인들의 단결이 보여졌고 그 사실과 더불어 분리의 엄격함이 완화되었고 독일인 사이의 공동작업이 양쪽에서 인정되었고 확장되어갔다. 헌법에서 처럼 독일인의 합일과 자유 그리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그 서명에 수반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역시 그 때문에 독일정치는 중요하다. 즉 젊은이들이 숙달된 전문지식을 전달받는 것은 Elbe(엘베)강과 Werra(베라)강에서 끝나지 않았다.

우리 독일인들은 특별한 동기와 능숙함으로 비판력 있는 일을 해낸다. 그리고 미래와 현대에 대해 아래로 수그러진 순빛이 아닌 깨어있는 눈으로 조화롭게 협정한다. 우리 독일인들은 Gustav Hainemann(구스타프 하이네만)이 말했던 것처럼 “까다로운 조국”에 깊은 관계를 맺고 태어났다. 독일인의 힘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중대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현재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개최된 제17번째 유럽평의회에서 통치자들과 각각의 회원국의 외무부 장관에게 공동단체로서의 결합에 대해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욱 중대한 정치적인 움직임과 경제적인 움직임에 대하여 지나치게 유리한 의견교환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유럽평의회 목적으로 다시 가까이 가고자하는 문제가 되게되었습니다.

죽 긴 기록문서없이 신뢰하는 도의 속에서 공동으로 유럽과 회원국들이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백히 하는데 긴 기록이나 상세한 결정에 대한 압력이 없어야 대통령 Cossiga와 이탈리아의 외무부장관 Colombo에서 감사드립니다. 이 두 분들은 이른바 의장으로서 특별한 노고와 깊은 사려로써, 특히 어려웠던 반년간을 통해 성공적으로 유럽공동체를 그 목표로 향해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베네치아에서 공동으로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나는 올해 봄 2월에 독일과 프랑스의 성명에서 부터 인용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유럽의 힘은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 공동단체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농업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조절과 재정상 부채의 엄밀한 부과를 통해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그 행위능력을 위험한 상태로 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단체의 공동의 문제입니다. 철저한 석유의 중단 이후에 따르는 유가파동과 그에 따르는 현상을 통해서 산업국가와 - 지금의 동쪽국가들 - 석유생산국가 그리고 석유를 생산해 내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의 공동의 노력 속에 새로운 세계 경제의 균형을

찾는다는 것이 세계 경제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Afganistan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소련의 진주이후에 세계정치상의 균형과 평화를 시급한 상황속에서 위협받고 있는 전쟁을 억제하고 극복할수 있도록 세계정치를 위해 공동으로 유럽의 공동체와 회원국들간의 적당하고 알맞은 기여가 바로 세계정치에 대한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유럽의 예산총액 중 영국 기부금의 높은 비율에 대한 쌍무협정은 지난달 더욱 증가되어 이 공동체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단체의 능력자체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싸움의 문제는 아주 긴급한 외교정책상의 과제와 안전이 보장된 정치상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유럽평화의 유지와 세계평화의 수호에서 유럽의 역할에 대한 확인은 대영국제국을 위해서 불가피하게도 상호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과 1981년의 경제상의 토지 가격의 결정과 양고기의 자유로운 교역의 확보가 예산 질의에 대한 답변에 달려 있으며 그 규정은 공동어업을 위한 앞으로의 정치노선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 타협은 그런 이유로 제공되어 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중에서 무엇보다도 첫번째 꼽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외적인 행위능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수반되는 불가피함과 유럽평의회 유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연방정부는 많은 논의를 거쳐 타협안에 찬성하였습니다. 나는 작년에도 계속해서 이 논의에서 반대의견을 내세웠던 지도세력들이 불가피하게도 이 결정에 대해 양보를 보여 주었던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

대 지도세력과 함께 우리는 그 결정을 가볍게 할 수 없었습니다. 1980년과 1981년도 이 공동체에 대한 대영제국의 분담금은 모두 65억DM으로 화폐의 가치를 하락시켰습니다. 이 피치 못할 결과는 그 밖의 회원국의 과도한 적재(積載)가 되어 나타났고 그때 독일의 배당은 자동적으로 9년이래로 쭉 통용되고 있는 공동단체의 금융제도에 따라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참가하고 있는 브뤼셀 회의의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가 이 부과된 재정상의 이행에 따라 1980년도, 1981년도에 영국의 예산 경감을 위해 프랑스는 거의 20억DM, 이탈리아는 10억DM을 단지 큰 분담금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협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공동체의 결정으로 인하여 그 결과 주어지는 부과된 적재(積載)는 미리 알 수 없었습니다.

적재(積載)는 그 이유에서 1980년 연방예산을 통하여 그리고 1981년 이후 평균 유예기간의 금융계획을 통하여 아직도 충분히 그 손실을 거의 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그 때문에 이달 초에 불가피하게도 상황 결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1981년도에 이르러 끝나버린 연방예산의 적재는 오늘날 상황으로 대략 18억DM란 액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5억DM은 1980년부터 1981년 봄에 대영제국에게 지급한 지출금액입니다. 이 부가적인 지출금액은 독일 연방정부의 모든 정치의 관심속에 불가피하게도 1980년도 결정되어진 사실상 3% 정도로 본래의 방어를 위한 지출중액과 똑 같았습니다. 또 터어키와 그리이스를 위한 방어 원조와 그리고 개발원조의 엄청난 증가와 똑 같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국제적인 과업과 의무 그리

고 독일연방공화국의 초국가적인 지출에 비례하여 비용의 지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이 범위 내에 독일 정치의 주변상황에 있어서 지출과 베를린 원조에 대한 특별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빠르게 상승된 이 지출은 독점적으로 정부예산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연방의 각 주와 공동조합단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넘어 정부예산은 구조정치와 그에 따른 상황에 따라 주요 세금을 부담하였습니다. 1969년 이 현상은 1970년 이후로 통용되고 있는 경제제도의 해체 당시에는 미리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각 나라들은 유럽의 행위능력에 대한 확인과 유지를 위해서 신용할 수 있는 독일 분담금의 용자에서 그들의 몫을 얻어야만 합니다. 연방 정부는 그 때문에 이 나라들에게 연방 정부를 위한 소득세의 수입에 적당한 부과를 요구하였고, 1981년 1월1일 이후로 각국가의 승인을 얻어 마침내 법률에 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106가지의 기본법이 채택되었습니다. 신용할 만한 재정관리는 유럽에서 우리의 평화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 모서리의 기둥과 같습니다. 연방과 각 나라 사이에 재정상의 평형에 있어서의 회복은, 신용할 수 있는 재정관리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재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인 CDU(기독교민주동맹당)의 내각수반 계열에서 지도하고 있는 동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정치의 책임이란) 중심 국가로서 주변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 능력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혼합금융과

부과시키는 양의 분할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각 나라들이 그것에 대해 침묵하고자 한다면 연방정부는 새로 선출된 연방 의회의 집회 후에 법률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 법률안은 석유조세와 화주세(火酒稅)의 증가를 통해서 아울러 농업을 위하여 공유기업의 보조를 전환시켜 브뤼셀 회의의 결의로 끝나버리게 해 더욱 커진 적재의 용자에 대해 불이익한 상황을 보다 안전하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CSU[기독교사회주의동맹]과 CDU[기독교민주동맹당]의 구두 투표)

신사 숙녀 여러분!

영국 분담금의 출자에 대한 싸움은 분명하고 명백히 해야합니다. 그 불균형이 공동단체의 예산에.....

-끊임 없는 소란-

나는 이 소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의회의 공무집행일에는 사실 의회의 실제적인 공무에 대해서만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SPD[독일사회민주당]과 FDP[자유민주당]에서의 찬성)

-CSU와 CDU에서 구두투표-

기독교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동맹당, 동지 여러분

나는 장래에 의회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깊게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 늦게 그에 대한 해답을 알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CDU와 CSU의 신사 숙녀 여러분!

영국 분담금출자에 대한 논쟁은 공동체의 예산상의 불균형이 다만 구조상의 조절을 통해서 수정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야 합니다. 이에 대해 유럽평의회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브뤼셀회의의 결정 시기와 더불어 그동안 지속되어온 불균형의 문제를 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브뤼셀에서 위원회는 1981년 중반까지 그에 상응하는 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독일 연방의회와 일치하여 연방정부는 이 제안들을 대해 지지하였습니다. 공동단체의 잉여가치에 대한 기본 감가상각이 앞으로 측정된 기본토대의 1% 내에서 절대로 상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분야의 지출이 머지 않아 공동단체의 소유인 수입의 전체를 요구하고 그후에 더욱 상승되어질 것이며 그것으로 인한 불가피함이 결국은 농업지출의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국가는 1980년, 1981년도에 훨씬 월등하고 큰 공동체의 지출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독일의 국민경제와 재정관리는 1980년 우리가 돌려 받은 것보다 더 많은 43억DM을 기부하였습니다. 1981년도 이 순수한 잔고는 더욱이 50억DM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외에도 대영국제국과 프랑스는 형편이 별로 좋지 않은 순수잔고를 가질 것입니다 나는 베네치아에서 매우 분명히 독일연방공화국의 재정상의 적재에 대해 그 한계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상승하거나 거의 동등하게 상승된 소득 때마다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공동체의 다른 국가들은 높은 정도의 순수한 수취인이었습니다. 몇몇의 회원국들의 새롭고 좋지 않은 순수한 숫자의 내역 출현을 저지하기 위해 추구하는 구조상의 조절이 충분하지 않다면 회원국들의 순수한 적재를 위해 한계이상의 창설이 보편화 되어야 하는지 또 순수한 수취인인 회원국을 위해 유사한 원칙이 정해져야 되는지 하는 물음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밖에 단지 연방정부

에 의해서 징수되고 있는 조세에 대한 상황을 위해서 베네치아에서의 협조를 통해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1982년까지 존재하는 이 공동체의 불균형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래의 파트너인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좀 더 강해지고 확실해질 때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까다롭고 오래가는 조정의 기간이 공동단체의 미해결의 내적인 구조적 문제와 함께 더 이상 지체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유럽의 민주주의 확신을 위한 임무를 떠맡을 것입니다. 그후 연방정부는 어쨌든 2년 후에 브뤼셀회의의 결정을 모범으로 해 다시는 손해를 보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평의회는 우연히도 마찬가지로 베네치아에서 개최된 서방세계의 7개국의 공업국가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문제를 다음 주말에 의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토론의 주요점은 모두 인플레이션·에너지 문제·서방경제의 위치 그리고 특히 남·북의 관계입니다.

새로 입각한 장관들은 최근의 기름값 상승이 시인되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기름값 상승은 어쨌든 세계의 통화팽창추세를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정치적 주제들이 유럽평의회 회의에서보다도 이러한 토론에서 더 현저하게 눈에 띄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말한다면 오는 주말에 베네치아에서도 재차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위기, 미국과 이란의 관계상의 위기, 아라비아인과 이스라엘인들의 유례없는 충돌로 치닫는 위기가 복합하여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 특별한 위험이 존재할 것

이라고 우리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위협이 유럽에서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들,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동맹국들. 특히 미국, 또한 의견이 있는 지역의 국가들, 소련과 소련의 동맹국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정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위험스러운 복합된 위기를 방지하고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집약된 유럽국가들의 평화를 위한 태도는 오늘날에 이르러 복합된 위기의 일단락된 안정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유럽공동체국가들은 이미 2월 19일에 아프가니스탄국민들의 소망과 아프가니스탄의 이웃국가들과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정치적 해결방안을 위해서 또한 독립적이며 자유지역인 아프카니스탄을 위해서 한가지 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이슬라마바드에서 회교국가들의 제11회 외무부장관회의의 결정에 동의하였고, 적절한 해결을 위한 제안들을 지지하기로 이미 언명한 바가 있습니다.

유럽의 입장은 그 이전에 언명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극동에서신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 내용들을 안전을 위한 총고결정사항 248개와 몇몇 공식적으로 발표된 추측에 대하여 유럽공동체국가들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지 않는 338개의 사항들, 또 계속되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교섭과 관련된 것입니다. 또한 팔레스타인민족의 민족자결권을 위하여 유럽공동체국가들은 팔레스타인과 협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안을 동방의 주변국가의 평화를 위한 과정의 중심적인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럽공동체 국가들은 모든 정당들

의 무력포기에 대한 그들의 입장과 제안을 밝힐 것이며 이러한 접촉과 상당한 영향력의 발휘 속에서 그들의 계속적인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유럽과 아라비아 사이의 대화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점에서 나는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인상에 의하면, 돕기 좋아하는 유럽인들의 이러한 정선된 태도의 결정은 동방의 주변국들의 평화를 위하여 복합적인 노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이집트정부가 이러한 노력에 함께 참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이집트대통령과 그의 대표단들이 베네치아 회의에 대하여 나에게 서술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근심과 필요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이해시켜야만 하였으며, 결국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충고에 따르도록 끌어 들였었습니다.

정부 최고책임자들 사이의 의견교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물론 동서의 관계에 가치가 있다. 프랑스의 지스카르대통령은 소련의 당서기장인 프레즈네프와의 토론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했었습니다. 연방장관 겐셔와 내가 오는 주말에 미국의 카터대통령과 외무부장관 무스키와 만난 후인 바로 그다음에 곧 모스크바에서 행하게 될 토론에 앞서 유럽의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나에게서 중요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소련의 주도 아래 단지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은 우리의 친구들과 연맹국들이 근본적으로 토론하고, 서로 더 깊은 관계를 갖게 했던 그러한 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의 지지

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상호방문이라는 명목 하에 소련을 방문할 때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쌍방의 협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견 후에 우리는 벨그라드, 비인, 그리고 바르샤바에서 위기 시대를 맞고 있는 동서가 곧 대화 속에 머무르도록 우리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최근 독일과 소련 간에 있었던 경제적 상호협력에 대한 회의에서 소련의 대표단을 이곳 본으로 이끌고 왔던 소련방 수상인 터시노브와의 훌륭하고 공식적인 대화에서 경제적 협력의 전폭적인 강화에 대한 가능성 또한 국제적인 위기의 뇌관을 제거하는데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 대하여 두 나라는 명백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히 이러한 위기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방도를 취할 수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이루어질 담화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유럽에 있는 다른 민족들처럼, 모든 독일인들은 국제적인 긴장의 악화 속에서 견디어야만 한다는 것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방정부는 그들이 평화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이용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1980년 6월 17일자 독일연방의회의 제222회 회의 기록.

11. 독일민주공화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률에서 발췌

1980. 7. 3.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률에서 발췌.

-문화재보호법-

1980년 7월 3일부터 실시되는 문화재보호을 위한 최초의 실시법령
에 대해서

-보호되는 문화재-

1980년 7월 3일부터

#2

보호되는 문화재

1 이 규정에서 의미하는 문화재란 독일민주공화국의 공동적인 삶과 특히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귀중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재보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의의를 획득했거나 그러한 의의를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다. 문화재에 속하는 범주는 생산력있는 시대의 역사와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는 발굴물들을 포함하여 역사와 선사시대의 증거, 또한 건축양식과 마찬가지로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과 예술의 증거등, 법규들을 통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된다.

2 독일민주공화국의 문화재로서 이러한 법률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특히

- 1.) 박물관, 문서실, 도서관과 다른 보고서들의 현존제품, 기업의 결합 경영과 사회주의적인 조합에 있어서의 현존품, 교회와 종교사회, 시민들의 문화적 소유물과 같은 기념물로서 또는 다른 특성으로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 내에서 항상 가치있는 위치를 획득한 모든 문화재,
- 2.) 독일민주공화국 국민들의 개인적이거나 공동적인 독창력으로

- 이하 여 강조되어진 모든 문화재,
- 3.) 독일민주공화국내에 고정된 주거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들이 그들의 특수한 창작분야에서 창출한 독일민주공화국을 위하여 중요한 모든 문화재,
 - 4.) 독일민주공화국의 국유재산으로서 특수한 분야에서 발견되어지는 모든 문화재,
 - 5.) 독일민주공화국에서 소재를 위하여 정당하게 소개될 수 있는 모든 문화재를 뜻한다.

3 독일민주공화국의 문화재로서 인정되는 것은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문화재의 잘못된 인식이나 문화재의 불법적인 수출, 횡령 또는 탕진과는 관련되지 않는다.

4 독일민주공화국의 문화재로서의, 인정여부에 의심스러운 경우, 문화부장관이 결정한다.

#10

문화재의 수출

1. 문화재의 수출은 이러한 법률을 실시하고자 하는 법규에 다른 어떤 규칙도 세워져 있지 않을 경우, 사전에 국가적인 인가를 필요로 한다.
2. 인가의 수여와 인가절차의 규정에 대해서는 문화부장관이 그 권한을 갖는다. 문화부장관은 인가자격을 위임할 수 있다.
3. 문화재 수출의 인가는 세법에 의하여 의존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4. 문화재의 소유자나 규정 상의 권리자가 그들의 주거나 집을

외국에 가지고 있거나 설립할 경우, 혹은 이 법률이나 다른 법규에 의해서 허용될 경우, 문화재 수출을 위한 인가는 #9에 따라서 문화재의 보호와 유지를 보증하는 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을 위한 최초의 실시법령〉

1980년 7월 3일(GBL INr. 20 페이지 191)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15의 토 대는 권한이 있는 중심적인 국가기관의 장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가운데 확정되었다

#1

제1장, #2에서 의미하는 보호되는 문화재는 특히 다음의 범주들과 사항들이다:

- 1) 기록적 문서들과 독일의 노동운동과 국제적인 노동운동의 역사적인 증거, 또한 다른 나라와 민족들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독일 민족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
- 2) 기념을 위해서 공포된 대상물;
- 3) 예를 들어 과학적, 기술적인 문서와 묘사, 그리고 서류들과 마찬가지로 생산도구, 교통수단과 통신수단, 소비품, 장난감, 측량기와 다른 과학적인 기구, 의학적인 기기, 무기와 장비 그리고 운동기구처럼 학문과 기술수공업, 공예, 소비품생산, 교통관계와 통신관계, 농업, 군제, 체육과 스포츠 그리고 다른 공동적인 영역에서의 발달사에 대해 증거가 되는 사물

들:

4) 학문적이며 가치있는 화석과 광물의 총서 및 단편과 마찬가지로 자연, 특히 원료, 그리고 진귀하고 사멸되거나 위기에 직면한 동물의 종과 식물의 종을 위한 약제의 발전에 대한 증거들:

5) 특히 선사시대와 이전의 역사적 시대에서 유래한 고대의 유물:

6) 민족학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물들:

7) 예술가와 민중예술가에 의한 조각, 부조, 공상적인 화판, 회화, 스케치와 인쇄예술과 같이 조형적이며 응용적인 예술의 결과가 되는 사물들:

8) 오래되어 가치가 있는 예술품과 일용품들, 특히 도기, 도자기, 유리, 가죽, 돌, 광석, 금속, 나무, 상아, 합성물질로 만들어진 오래된 다른 사물들과 가구, 농직물, 양탄자, 자수품, 레이스, 암석가공을 위한 도구 또는 원료의 접합물질과 다른 원료들:

9) 레코드와 다른 음반기기, 포스터, 역사적인 그림엽서, 안내서와 지리학적인 묘사와 같이 수집가의 흥미에 의한 단편들과 필름기록물, 사진기록물, 그리고 표음기록물을 포함한 총서와 기록집:

10) 학자, 문필가, 시인, 작곡가 그리고 공동생활에서의 중요한 다른 인물들이 만들어낸 작품의 원본이나 유인물, 또는 처녀작이나 기념축제일에 간행된 작품, 애서가의 간행물, 유물

로 남겨진 뛰어난 인물의 문고들, 그리고 뛰어난 인물들의
짜임에 따른 특별히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종류의 것들,
오래되어 가치가 있는 인쇄물들:

- 11) 고판본과 인물들의 정치적, 예술적, 학문적 또는 다른 사회
적인 창작과 활동 내지는 그들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
는 유물이나 유일한 유품들;
- 12) 중요했던 인물들의 정치적, 예술적, 학문적 또는 다른 사회
적인 창작과 활동 내지는 그들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
는 유물이나 유일한 유품들;
- 13) 유명한 예술가와 악기제작자의 악기, 또한 중요하고 예술적
이며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기구들;
- 14) 도안으로 묘사되어 있는 설계도와 특별한 의의를 지닌 있
으며 국가의 건축양식 및 도시계획을 목적으로 한 뛰어난
건축과 도시계획을 위한 모형들, 또한 중요한 건축양식의
부분들;
- 15)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동시대의 화폐나 우표의 총서들, 그리
고 유통되고 있는 화폐와 독일민주공화국에서 발행되고 아
직 통용되고 있는 우표들을 제외한 유일품들;
- 16) 훈장, 기장, 메달, 증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도장;

#2

이 실시법령은 1980년 8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된다.

1980년 7월 3일 베를린에서

문화부장관

호프만

출처: GB1. 독일민주공화국I, 1980. 페이지 191과 213

문화재보호법을 위한 실시법령은 1982년 5월 3일에 공포되었다.

출처: GB1. 독일민주공화국I, 1982, 페이지 432

12. 수의협정의 효력발생

1980. 8. 14.

〈수의협정의 효력발생〉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사이에서 체결된 수의관계분야가 1980년 8월 20일에 공시되었다.

수의는 분야에 대해 (BGBL. 1980, II p.845) 1979년 12월 21일,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에 체결된 협정을 위한 1980년 7월 18일자 의 법률 3항 2절에 의하면 7항 2절 둘째문장에 따라서 이 협정이 1980년 8월 14일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공시하고 있다.

1980년 8월 27일 본.

농수산부 장관 위임

로어 .

출처: BGBL. II, 1980, p1220

13. 연방수상 슈미트의 동독방문연기에 대한 클라우스 빌링 차관의 해명

1980. 8. 22.

〈연방수상 슈미트의 동독방문연기에 대한 클라우스 빌링 서기관의 해명〉

유럽의 안전과 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힘의 평형근본에 영향을 미칠 연방정부의 과제와 목적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방수상과 외무부장관은 1980년 6월 30일과 7월 1일에 방문해줄 것을 요청한 소련정부의 초청에 응했었고 소련의 주도하에 대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연방수상은 동독에서 만나자는 독일민주공화국의 평의회 의장의 초청에 응했었다.

연방정부는 독일인들이 유럽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해야만 하고 동독과 서독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양 독일 국가사이의 협력이 굳어져야만 하며 또한 확대되어야만 한다는 필연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적인 과제는 예견되는 조약의 기본원리에 명시된 것처럼, 서로의 경직성으로 발 생한현존의 모든 어려움을 합리적인 이웃의 관계로 재건하는 것입니다.

평의회 의장과의 회담이 쌍방의 관계에 확실히 작용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상황에 유익하게 작용하기를 고대하는 연방수상은 심사숙고한 후, 그에이어 부총리와 권위있는 연방장관들과 토론을 가

진 뒤, 다음 주로 예정된 동독방문은 이번 시기보다는 오히려 보다 더 적절한 시기에 행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동안 이루어졌던 유럽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연방 정부는 다음 주를 부적절한 시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독과의 만남을 위한 우리의 준비는 두 독일국가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진보가 가능하며, 더욱 폭넓은 독일 국제 관계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는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평의회의장 간의 토론을 필요하다고 여기며, 이러한 토론이 두 독일국가사이의 관계를 전폭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관심 속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또한 유럽에서의 협력과 안전을 위한 정책의 이해관계 속에서 동독에 대한 정책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심했으며, 독일인들의 결합에 이바지되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폭넓은 두 독일국가 관계의 정상화가 평화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독일국가의 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와 동독 간에 체결된 수많은 협정을 보강할 수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성취되었으며, 현재에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근본적인 의견차이와 대립에도 불구하고 관계개선을 확실하게 이끌었던 타협에 대해 연방정부의 흥미는 변화하지도 감소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출처: 1980년 8월 22일자 연방정부의 신문사와 정보기관의 신문보고본.

14. 경계위원회의 의정서 부록 제68호

1980. 9. 25.

1980년 9월 25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경계위원회 회의에서 서명된 베르겐가와 잘츠베델가 간을 통과하는 시가 통과도로 정비에 관한 의정서 부록, 경계지역번호 126 은 인쇄되어 있다.

경계위원회-1985년 본의 내독성에 의해 출판된 토대와 행위에 관한 문서

15. 1980년 10월 9일자 지블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액 시행에 관한 규정

1980. 10. 9

#1

본 규정은 비사회주의국가와 서베를린에 영구적 거주지를 갖고 있으며 방문상 체류를 위해 동독으로 여행 입국하는 사람에게 통용된다.

#2

1. 1항에 따른 사람은 동독의 수도를 포함하여 동독에서 체류간 1일당 동독화폐 25마르크를 동독에서 통용되는 환전비의 등가로 해서 외국통화 지블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을 실시해야 한다.

2. 1항에 따른 의무교환액은 교환할 수 있는 통화로 실시되어야 한다.

#3

1.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액에 대한 재환전은 허용하지 않는다.
2. 사용하지 않는 동독마크는 동독 국립은행 모든 지점에 기탁 내지 계좌에 불입될 수 있다. 이 금액은 동독으로 다시 여행입국시 언제나 동독마크의 완전한 금액으로 사용될 수 있다.

#4

여행입국 당시 아직 만 6세가 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어린이에게는 2항에 따른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액이 면제되어 있다. 6세에서 만15세까지의 사람은 동독의 7.50 마르크를 동독에서 통용되는 환전비의 증가로 해서 외국통화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을 실시해야 한다.

#5

1항에 따른 사람은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으로 교환할 수 있는 통화의 지불수단을 동독에서 통용되는 환전비로 해서 동독마크로 바꿀 수 있다.

#6

본 규정은 통과교통에서 동독영토를 계속해서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7

1. 본 규정은 1980년 10월 30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2. 동시에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액 시행에 관한 1974년 11월 5일자 규정(법령집 I 제54호 497면)과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액 시행에 관한 1974년 12월 10일자 규정 Nr. 2

(법령집 I 제61호 565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980년 10월 9일 베를린

재무성장관

슈미트박사

출처: 1980년 동독 법령집 I 291면

16. 의무교환액 인상에 관한 클라우스 빌링차관의 성명

1980. 10. 10

연방정부는 수 많은 분야에서 관계정상화와 협력개선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심한 퇴보를 의미하는 하나의 매우 진지한 사건을 실질적 의무교환액 인상에서 본다. 본 조치는 헬싱키협정의 최종문서에서 동독을 포함하여 서명한 모든 정부가 본 조치를 긍정했던 것처럼 긴장완화 노력에 명확한 이론을 제기한다. 우리는 마드리에서 열리는 차기 전유럽안보협력회의(KSZE)에서 본 조치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문제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본 조치가 각자 다른 체제에 살고 있는 유럽인의 접촉을 향상 개선하려는 목표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여행자유화의 상황이 양국 국가간의 정치적 관계에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양국 국가간의 관계정상화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관계의 중요한 요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자 할 수 없다.

특히 지금까지 본 규정을 제외시켰던 연금수혜자와 어린이에 대한 의무교환액의 의무도입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연방정부는 동독이 이미 이전에, 즉 1973년 12월에 의무교환액을 실질적으로 인상하였다고 생각한다. 연방정부와 상론한 후 동독은 1973년 11월에 의무교환액 인상조치를 지시하였다. 연방정부는 이전에 본 조치의 수정이 지속적 관계정상화와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이번에도 동독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의무교환액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금년 여름 연방수상과 소연방서기장 브레즈네프와의 회담에서 유럽긴장완화의 본질적 요소인 양측 국가간의 관계가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서기장 호네커는 마침내 라이프치히 박람회에서 이 견해를 공공연히 뒷받침하였다.

연방정부는 연방정부가 연기한 협상과 관련해서 인간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항상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할 것이다.

출처 : 1980년 10월 20일자 본의 연방정부 공보성의 공보의 Pressemitteilung

17. 게라(Gera)의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당정연수회 개막에 즈음한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의 연설

1980. 10. 13

(발췌)

우리의 우방인 폴란드공산당이 당면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폴

란드정책에서 지표를 수립할 커다란 과제를 갖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제국주의의 대중매체와 대중매체의 후원자들을 특히 서독에서, 사회주의 폴란드에 대해 독특하게 선동적 운동을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서방의 정치가들이 주장한 것처럼, 의사일정에 설정된 폴란드의 문제 자체를 해결할 폴란드인의 권리가 문제입니다. 오히려 서방의 정치가는 폴란드인민공화국에서 계획적으로 세워진 반사회주의적 반혁명적 힘을 자극합니다. 그 힘은 서방의 정치가에게 폴란드 사회제도 변경과 폴란드 사회제도를 통한「소련식 사회주의 모델」대체를 위해 가장 값다른 협의를 제공함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적에서 또한 폴란드인민공화국으로 가장 다른 채널을 통해 큰 자금을 유출시켰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회주의를 “보다 더 인간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폴란드인민에게 양도 불능의 인권, 즉 노동권, 자유권, 폴란드인민의 생활자체를 형성할 권리를 부여했던 사회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일과 금주에 다시 한번 자본주의자와 폭리주의자 및 폭리주의자의 앞잡이들이 진정한 사회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증명할 것입니다. 성서시대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처럼 그들은 법석통에 사육을 채우려고 시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산은 명료하지 않습니다.

동독과 다른 사회주의 형제국과 마찬가지로 폴란드인민을 위해 소련과의 친 교는 행복과 안녕속의 평화적 미래에 대한 보증인입니다. 폴란드인은 자기의 새로운 생활이 우선 히틀러파시즘에 대항한 공동

투쟁과 히틀러파시즘에 대한 승리를 통해 가능케 되었던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폴란드인은 자기의 조국이 우선 언제나 보장된 경계선안에서 사회주의 형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사회주의 안에서만 폴란드인민이 역사 속에서 이미 많은 희생을 치렀던 독일 군국주의자에 대한 복수심에 앞서 자신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서독의 보수정당은 자신의 활동을 강화하고 자신의 이념적 행위의 집중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중심지를 만드는 것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본(Bonn)에는 슐레지엔의 집이 만들어지고 - "젊은 슐레지엔지방 사람에게 슐레지엔지방으로 가는 정신적 자양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튀백에는 "단치히의 집"이 소위 "고향에 대한 역사적 요구권"을 주장하기 위해 건설됩니다. 트라베텐데 에는 똑같은 목적을 위해 "포메른젠트룸(Pommernzentrum)"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독특한 사실들입니다.

첫번째 사실은 확실합니다. 폴란드인민공화국은 여전히 사회주의나라입니다. 폴란드인민공화국은 불가분하게 사회주의 세계에 속합니다. 역사의 바퀴를 어느 누구도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사회주의국가사회의 강화, 사회주의국가사회의 단일성과 폐쇄성, 세계무대에서의 사회주의국가사회의 일치된 행위는 지속적 평화보장을 달성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인민에게 전쟁의 공포를 없애주는 것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과 협력합니다. 그 경우 사회적 지위, 정치적 견해, 세계관적 확신 혹은 신앙고백에 따라

그때 그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인민과 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이성적 정치가와 공무원들의 주된 관심은 평화와 인류의 최대재산이 보존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한 투쟁은 주지한 바와 같이 보다 날카로운 논쟁에서 나타났습니다. 70년 초경, 즉 긴장완화과정이 시작될 수 있었을 때, 그 후 바로 또한 유럽에서 많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을 시기에 국제적 지위가 현저하게 악화되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개최된 본인과 브레즈네프동지와의 회담에서 우리는 이 지위가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긴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가장 반동주의적 제국주의적 무리와 국제적 긴장을 가열하는 과정에 있는 북경패권주의자는 그들이 추구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상황의 악화에 대한 원인은 명백합니다. 특정한 제국주의적 무리, 특히 미국은 대결과정을 긴장과정보다 우월하다고 보았으며 나토 동맹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그들은 군비경쟁을 의연하게 촉진시키고 사회주의사회보다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것과, 유럽에 있어서 중부 및 동부에 가까운 나라에 대한, 다른 나라의 지속적 내정간섭이 제휴합니다. 그 경우 제국주의 서독이 우선 참가합니다. 미국과 가장 공격적 무리의 가장 친밀한 동맹국으로서 제국주의 서독은 미국이 또한 세계의 어떤 다른 곳에서 인민에 대해 위협정책과 보이코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언제나 새로운 과제를 떠맡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또한 평화와 긴장완화에 대한 아름다운 말로 인해 사정이 달라진다는 것이 대변합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가 공격적 성향을 결코 없애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그들이 이전에 가장 격렬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실현해야 했던 긴장완화에 의해 강력한 독점자본가 무리는 인민의 이익으로 향한 그들의 반사회주의적 견해라는 의미에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것과 다른 것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 다른 사회 질서국가의 평화적 공존의 전 방향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이익추구, 권력추구, 팽창열망에 직접적으로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모험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인민에게 긴장완화과정에서 지금까지 이 정도로 유익하게 평화의 관점을 이루어 왔던 모든 것을 마침내 그들의 대결과정에서 위협스럽게 합니다.

서방의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과 서독출신의 방문객도 또한 세계에 동화를 창조했습니다. 친교를 맺은 혁명적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련의 조력행위는 국제적 지위의 악화에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화는 진실을 똑바로 보아야만 합니다. 국제적 지위 악화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안전보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자본주의세계의 역사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력을 촉진시킨 모든 NATO국가에게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또한 우리는 소위 "동구로부터의 위협"과 소위에 관한 서방의 외침이 어떤 시기에 특히 크게 고조되었던 사실을 긴장완화정책의 기피, NATO의 무장력, 소련의 모험 미국과 미국동맹국의 새로운 공격적 유턴핵무기 전술조치에 관한 제국주의계획이 벌써 오래전에 준비되었을 때 알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1989년 3월 워싱턴에서 열린 NATO회의에 종결되어진 장기간 프로그램(langzeit programm), 지난

해 말 서독에 배치되어지는 것에 논의되어 졌던 브뤼셀의 미사일보유협정, 지금 알려진 새로운 미국 핵전술이 거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한 전술상 군비제한과 전세계적 군비축소의 지속적인 조치를 위해 크게 중요한 1979년 6월의 SALT II 조약의 비인준이 그 증거입니다.

차례차례로 이어진 전술협정들은 지난 날의 과거 제국주의를 많은 노력으로 달성된 긴장완화의 결과에 놓았습니다. 제국주의는 사회주의가 강해지고 사회주의 국제적 영향이 커진다는 사실을 기피할 수 없습니다. 그외에도 인민의 봉기가 제국주의를 민족적 사회적으로 해방시켰습니다.

먼 훗날의 "포함정책 (Kanonenbootpolitik)"은 금일 지배지역과 원료원천지로 제국주의의 침략시의 포함정책의 재생(Herstellung)을 발견합니다. 제국주의는 보이코트, 폭력위협, 억압을 통해 인민을 괴롭히고자 기도합니다. 제국주의는 인민의 주권, 독립권, 자결권을 짓밟고 인민의 권리를 무시합니다. 비록 미국정치가, 서독정치가, 그밖에도 도생키의 최종조약에 NATO국가가 바로 또한 불간섭원칙에 서명했을 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는 혁명적 아프가니스탄과 비공개적으로 교전합니다.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의 국방에 관해 분격합니다. 이란에서 일어난 몹시 혁명적인 군주지배의 몰락과 인민혁명의 승리가 제국주의에게는 처음부터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 무차별, 군사적 침략, 모험적 혼란으로 대답했습니다. 침략국가에서 찾은 것을 아무것도 없지만 이 중요한 석유지

역에서 제국주의영향의 손실을 극복할 수 없는 제국주의는 페르시아만을 자기의 "이익지역"으로 지정함을 공포합니다. 제국주의는 제국주의가 또한 세계의 다른 곳에서 자기의 지위를 다시 얻거나 아니면 유지하고자 하는 신속 기동군의 배치를 강행합니다. 지금 제국주의는 이라크와 이란간의 중무장한 전쟁(Konflikt)과, 평화에 관심이 있고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모든 국가와 힘(Kraefte)의 견해에 따라 양 참가측의 협상을 통해 조정되어야 하는 갈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의 결과는 우리 당의 프로그램에 포함된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공격성의 평가를 강화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평화정책과 안전보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속행시키기 위해 효과적 최종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사실적으로 세계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자명한 것은 우리가 혁명적 감시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바르샤바 조약의 사회주의 군사동맹 속에서 국방력을 언제나 필요한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르샤바조약군의 「기동훈련 80」은 사회주의와 평화가 신뢰할 수 있는 방패를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공격자는 기회가 없습니다.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금일 세계정책의 의사일정에서 평화보장을 위해 무엇보다도 군비경쟁에 중지부를 찍고 군비축소를 통해 정치적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이것은 이전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그것은 바로 80년동안 이 분야에서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서 시간을 잃는다는 것은 인류가 핵지옥 속으로 들어가도록, 제국주의 대결정책과 함께 긴장을 만들어 고조시키고 모험을 거는데 뜻을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만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동독은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 형제국과 함께 우리동맹의 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바르샤바조약의 정치분과위원회 5월 회의 선언에서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제출된 제안은 이성, 현실주의와 함께 서로 다른 사회질서 국가와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 새로운 진보에 관한 국제적 타협에대한 생산력 있는 토대입니다.

동독은 동독의 책임이 특히 독일땅에서 결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대의 기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독의 입장은 자명합니다. 그 이유는 동독이 그것을 서로 다른 활동을 함으로써 바르샤바조약국가의 일치된 정책에 따라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결정책의 제국주의적 제안은 좌절되어야만 하며 긴장완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똑같은 안전보장에서 효과적인 군비축소 규정을 통한 유럽평화질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성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완화와 군비축소에 관한 공동유럽회의 소집은 헬싱키회의 이후, 다시 마드리드 회담에서 협의되고 준비됩니다.

물론 세계평화보장은 더 빠른 속도로 해결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군비축소를 위해, 국제적 안전보장을 위해"가 각서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국제연합기구 앞에서 소련의 새로운 제안

을 아주 환영합니다. 브뤼셀의 NATO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던 협상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소련은 유럽의 중간 사정거리 로켓트무기문제 및 미국핵무기문제 해결에 즉시 착수하기 위해 진력합니다.

이 두개의 문제해결은 동시에 그리고 조직적으로 결부되어 발생해야 합니다. 미확정 협정은 SALT II의 효력발생에 따라 실현되어야 합니다. 소련의 주도권과 그외에 군비제한을 위해 소련이 제기된 제안은 다시 소련의 시종일관된 평화정책의 표현이며 그 실현을 통해 인류의 이익에 아주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초점을 두고 있는 소련의 제안이 조직적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브레즈네프동지가 지금부터 1년 전에 전세계적으로 주목된 자기의 평화제안을 공포했습니다. 그후 소련은 적지 않은 조치들 취했으며 군비축소의 관점에서 NATO가 행동을 통해 초래했던 死點을 극복할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브레즈네프동지가 약속했던 것처럼 소련병력의 2만병사와 1천탱크(Panzer) 및 다른 군사적 병기가 동독에서 철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행위에 의해 평화에 대한 말에 동의한 것처럼 여기서 또한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 집니다.

마침내 중유럽의 상호병력제한과 군비제한에 관한 비인협상을 주도하기 위해 소련은 사회주의 참가국의 이름으로 새로운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소련은 중유럽에 배치된 소련병력과 미국병력의 수자상 크기를 고려해서 첫번째 병참기지에서 2만의 소련 병력과 1만3천의

미국 병력이 상호가 철수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사실로 나타나 2만의 소련병사가 이미 동독에서 철수되었습니다. 소련이 빈에서 제안한 군비축소에 대한 진전된 조치의 긍정적 중요성에 직면하여 명백하게 우리가 서독을 포함한 회의참가국을 통해 그 조치의 지지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최근에 동독과 서독간의 관계발전에 관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서독과의 조약정책이 평화보장을 위한 바르샤바조약국가동맹의 표명된 정책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우리시대의 요구에 상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자기가 서방동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대표할 수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에서 모스크바에서 열린 올림픽경기를 보이콧할 수 있었고, 브뤼셀미사일감축회의의 창시자와 원내총무로서 등장하여 동시에 우리가 서독과 함께 "여행완화"에 관해서만 말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진지하게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인간의 생활문제를 무시합니다. 그 자는 상호관계속에서만 헬싱키의 최종조약에 따라 평화문제, 안전보장문제, 협력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고의로 간과합니다.

일주일 전에 서독에서 새로운 연방의회가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사민당(SPD)/자민당(FDP)동맹은,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앞으로 4년동안 연방정부를 이 사실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서독연방수상 헬무트 슈미트가 암시했던 것처럼 서방동맹을 방패로 삼아 서독 정부는 동방정책을 속행할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양독국가 간의 관계개선과 유럽의 긴장완화정책과 서방측의 동기가

속합니다. 유럽의 지속적인 긴장완화정책이라는 의미에서의 정책은 아주 환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서독정책의 모순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동독은 서독과의 선진관계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서방국가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한 동독정책은 평화적 공존정책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할 경우 우리는 과거에 동독과 서독간의 관계에서 진보의 길을 터주기 위해 많은 것을 떠맡았습니다. 서방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수 많은 조약과 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함없이 상호 유익한 협력에 대한 중요한 전제조건 조성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동독과 서독 간에 계속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포괄적 정상화와 아직도 상당히 떨어져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원인은 동독과의 관계에서 기본조약을 어겨가면서 우리 국가주권의 서로 다른 원칙을 위반하려는 서독의 지속적인 시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러나 무조건 서로 다른 사회질서로 이루어진 두개의 서로 독립된 주권국가의 존재에서 출발할 경우에만 어느정도 진전할 수 있습니다. 유럽전후질서의 개정에 대한 모든 노력은 양독국가 간의 관계정상화를 방해함에 틀림없으며 물론 문제시됨에 틀림없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것은 양측관계와 마찬가지로 양측의 제3국과의 관계에서도 불간섭원칙은 무제한적으로 수용되며 엄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기본조약이 갖고 있습니다. 바로 또한 서독이 헬싱키에서 서명했던 불간섭원칙의 위반은 관계정상화와 결코 일치될 수 없습니다. 동독시민과 서독시민에게 유익한 서로 다른 유

형의 지속적인 규정은 서독 측에 의해 여전히 심한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왕 심한 장애제거를 주장했지만 환대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동독 국적 승인에 적용됩니다. 서독이 국제법 위반개념을 고집하고 동독국적 존중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국가의 인격주권이 부인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2개의 서로 독립된 주권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동독시민과 자본주의 서독시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독이 동독 국적문제에서 마침내 현실을 생각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동독은 그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여행자왕래와 법률구제교류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가장 절실한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른바 소금 결정체의 같이 "핵심적인 현안문제"의 해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독에서 일시적 체류할 경우 동독시민을 위한 서독의 일시적 여행증명서의 교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제3국 주재 서독대사관을 통한 동독시민을 위한 서독여권교부가 결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2개의 서로 독립된 주권 국가간의 관계에 속하는 것과 같은 외교적 영역에서 대사를 교환할 시간, 동독상주대표와 서독상주대표를 국제법에 일치하는 곳으로-대사관으로 이주시킬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중요한 것은 동시에 바르샤바조약국가와 NOTO국가간의 경계분리선을 나타내는 동독과 서독간의 국경선지위입니다. 양독국가의 공동경계위원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협정으로 되었습니다. 평화관계와 선진관계에 지금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서독입장때문에 실패한 엘베강 국경통과의 규정을 국제법에 따라 가능한 빨리 만드는 것이 기여합니다.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통과교통에 관해 말하자면 동독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빠르며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이 교통을 전개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저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1979년에만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2차선 통과도로를 19,688,300명이상과 6,242,500대의 차량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방측에 의해 통과협정의 남용 행위가 있습니다. 동독은 통과협정의 오용과 지속적 위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을 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우리는 또한 다른 측에게서 기대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양자택일이 존재하지 않는 평화적 공존 과정에 놓인 여습니다. 동독과 서독간의 정상적 관계수립은 양측문제를 훨씬 능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평화와 유럽 긴장완화를 위해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독과 서독 간의 주권국가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새로운 긍정적 결과를 주권국가간의 관계를 위해 통용되는 여러가지 원칙을 무제한 존중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관계에서의 진보는 또한 우리 견해로는 좋고 정당합니다. 그러나 제시된 중요성에 의해 우리는 평화보장이 무엇보다도 정치적 문제이라고 부연해야 합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고 군비경쟁을 막으며 군비축소를 하는 그러한 조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로 다른 사회질서 국가간의 가장 견고한 관계수립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보장에 대해 양독국

가는 많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동독은 유럽평화와 유럽안전보장에 적극적이며 조직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1980년 10월 14일자 동베를린의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18.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의 게라(Gera)연설과 의무교환액의 인상에 관한 클라우스 빌링차관의 성명

1980. 10. 15

내각은 연방수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충분히 동독정부를 통한 자의 의무교환액 인상에 유념하여 이 기회에 동독국가평의회 의장의 게라연설도 상론했습니다.

내각은 의무교환액의 인상에 의해 긴장완화정책이 심하게 퇴보하여 동독정부는 그러한 조치가 양국가간의 관계를 현저하게 괴롭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연방수상의 확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내각은 우리 서로가 양독국가와 베를린 시민을 부가적으로 위협할 지 모르는 것을 하고자 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 없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무엇보다도 연방정부는 4개의 역사적 관점이 중요합니다.

첫번째, 우리가 동독이 원한 제한정책을 제한적으로 대할 경우, 우리는 민족단결이 보존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익에 대항하는 정책입니다.

두번째, 연방정부는 미래에도 유럽의 긴장완화정책의 속행에 대한 특별한 책임의식속에서 행동하고 침상정책을 실시하려고 경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연방정부가 의무교환액의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동안에 물론 소위 신용한도, 말하자면 동독에게 보장된 무이자 신용공예제도와 교통, 에너지문제와 관련된 그러한 중요한 계획을 협의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세번째, 그밖에도 연방정부는 독일정책과 동방정책의 전관계속에서 주어진 시간에 현실을 긍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힘이 미치는 모든 것을 행할 것입니다.

네번째, 내각은 동독의 자의의 조치를 마드리드에서 열린 안전보장과 협력에 관한 회의에서 논의했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폴란드인민공화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때문에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이 제기한 비난에 관해 내각은 이 비난이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기피했으며 내적 발전을 논평할 경우에도 우리의 불간섭 정책과 엄격한 자제정책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유럽인과 마찬가지로 폴란드지도부가 현재 직면해 있는 자기 폴란드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폴란드지도부의 요청에 의해 은행신용의 성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정당합니다.

서방동맹의 정책에 관한 동독국가평의회 의장의 폴란드외전에 관해 말하자면 내각은 이 연설문구가 금주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군비관리에 관한 미·소회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였습니다.

연방정부는 회담의 성립을 위해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노력했던 이

회답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불가피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각은 연방장관 프란케와 국무장관 호네커에게 위임했고 금일도 연방내각에서 내독관계를 다루었던 연방의회 당파의장에게 위임했습니다.

그와 무관하게 프란케 장관은 의장과 의장대리인 및 3명의 옵서버에게 보고할 것을 내독위원회에게 제의할 것입니다.

출처:1980년 10월 17일자 본의 연방정부 공보.

19. 독일연방의회에 앞서 연방수상 헬무트 슈미트의 정부성명

1980. 11. 24

(발췌)

신사 숙녀 여러분, 11년전 사회자유주의 동맹이 양독국가간의 조약상 규제된 공존정책을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 부담과 퇴보가 줄지 않고 계속 있을 거라는 것에 관해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연방정부는 결코 그것에 의한 현혹당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또한 우리는 강인하고 끈기있게 우리의 목표를 고집했습니다.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독일인의 지위 개선을 위한 장기간 행해진 우리의 노력에 의해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습니다. 수백만명이 여행했으며 친척이 서로 전화하고,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베를린으로 도의가 건설되었습니다. 쌍방무역은 몇몇개를 지칭하기 위해 눈부시

게 발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독일인이 서로 헤어져 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동서간의 일반적 조정정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마드리드 KSZE 다음 회의에 앞서 몇주 전에 동독의 조치, 예를 들자면 의무교환액 인상을 통해 인간개선에 도달했던 여러조항의 존속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독일인에게 있어 심한 퇴보입니다.

연방정부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연방정부는 동독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독일인 지위를 완화할 연방정부의 목적을 고집할 것입니다.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에도 동독과의 협력확대와 관계확대를 제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측에서 대답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쌍방 독일인간의 간격을 여전히 깊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협력에 대한 의지를 경제구역과 비교합니다.

본인은 현재 특히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인내와 끈기를 불러 일으킬 것을 모든 독일인에게 호소합니다.

양독국가는 공동책임과 공동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독지도부도 또한 멀리할 수 없습니다. 국가평의회 의장 에리히 호네커와 본인, 즉 우리는 모든 독일인을 위해,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결코 다시는 독일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협력정상화와 능동적 유럽평화보장은 양독국가를 포괄할 것입니다.

우리는 양국가의 정치적 목표설정에 근본적 차이점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독일민족이 자결할 수 있는 유럽평화를 목표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동독지도부는 하나의 다른 목표를 설정합니다.

우리는 독일민족의 단일성에 관한 인식을 불러 일으키고자 합니다. 동독지도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정치적 이념적 대립이 실제적 협력을 통해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립은 전혀 혼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대립은 필연적으로 너무나 다른 권리주장을—이미 기본 조약의 체결시처럼—금일도 해결될 수 없는 원칙적인 문제로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경계선의 지뢰와 자동충격장치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본질적 진보는 이 대립이 양측이익을 위해 실제적 협력에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본인은 지난 14년동안의 내통교역이 1980년 대략 10억마르크로 50%가 증가했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물론 우리가 소망하는 지속적 경제관계 확대와 교통관계 확대는 전 관계발전에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독과의 문화적 관계강화를 찬성합니다. 동독지도부는 동독 예술인에게 공연을 위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금지할 경우 우리뿐만 아니라 동독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개개의 환경문제에 관한 첫번째 회담에서 실제적 협상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동독에 있는 우리 저널리스트의 업무는 다시 한번 제한받습니다.

본인은 그러한 행위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독으로부터의 실질

적 보고는 양측 이익에 있습니다. 우리 저널리스트의 업무가능성을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선하는 것에 대한 전제조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미래에도 여기 연방의회와 연방의회위원회에서 독일정책의 상론에 관심이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경우 그것은 연방정부의 독일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해 의심할 수 없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독일인의 운명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독의 독일인이 생각하는 것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독을 감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동독지도부와의 회담을 열망합니다. 현실문제에 직면하여 우리는 동시에 우리관계의 계측면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베를린시와 베를린시민은 우리의 정치적 약속(Engagement), 우리의 인간적 경제적 약속을 중요시합니다. 시의회, 기업가, 피고용인의 덕택으로 또한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덕택으로 베를린은 완전히 우리의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외부로부터 명확하게 조력한다는 권유에 대항해 자신의 업무능력에 대한 생각은 매우 중요시 되었습니다. 최근 시의회의 경제보고는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본인에게 도시의 정신적 생활, 극장과 음악회의 힘과 다양성, 문학과 박물관의 힘과 다양성이 또한 감탄의 마음을 생기게 합니다. 우리는 베를린을 위해 베를린의 권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베를린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제3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4대국협정이 엄수되고 완전히 이용되는 것에서 출발코

자 합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자의 이익에 있습니다.-특히 서방측 지원이 어렵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접경지대주변지역(Zonerandgebiet)의 축진을 속행할 것입니다.

출처: 1980년 11월 25일자 본의 연방정부 공보

20. 의무교환액의 예외

1981. 2. 10.

연방정부는 이전에 동독이 연방정부의 보고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관해 알고 있다. 장차 동베를린과 동독방문시 몇몇의 의무교환액의 제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에 따라 서베를린과 연방지역 출신의 매우 심한 장애자와 맹인의 동행자는 의무교환액이 면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무성 대변인은 원래의 통지와 다르게 장애자" 자신은 의무교환액을 따라야 한다. 동독의 정의에 따르면 그 예외는 장애자 동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써어 있는 원호청의 신분증명서에 기재한 경우에 보장된다. 서베를린에서만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인적범위가 약 1만5천-2만에 달한다.

출처: 1981년 2월 10일자 뮌헨의 남독신문.

21. 동베를린의 독일사회주의 통일당(SED) - 구대표자회의에서 독일사회주의 통일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의 연설

1981. 2. 16.

(발췌)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는, 베를린 공산주의자는 노소 모두 우리민족의 생활문제를 우리행위의 첫번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맑스, 엥겔스, 그리고 레닌의 영원한 교훈이라는 의미에서 에른스트 텔만(Ernst Thaelmann), 빌헬름 피크(Wilhelm Pieck), 오토 그로테볼(Otto Grotewohl) 그리고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속행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일 서방의 특정한 사람이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마치 양독국가의 통일이 그들의 작은 가방에서 보다 그들의 가슴에 더 많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조심하시요! 사회주의는 하루동안 또한 문을 두드립니다(박수) 그리고 연방공화국의 근로자가 서독을 사회주의로 개혁하는 날이 온다면 양독국가의 통일문제가 아주 새롭게 됩니다. (박수) 우리가 결정한 것처럼 아마도 그것에 대해 의심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박수)

우리는 국제적 지위의 복잡성을 상당히 고려하지만 낙관합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로서,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세계관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소련, 동독, 그리고 다른 바르샤바조약 국가의 시종일관된 의

교정책과 강대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수년 내지 수세기동안에
평화를 현저하게 안정시킬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 덕택으
로 유럽은 1세기라는 가장 긴 평화시대를 체험했습니다. 영원히 민
족의 존재로부터 전쟁을 추방하는 것에 공산주의자로서 우리의 가장
큰 이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미래에도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박수)

가장 절실한 것은 군비경쟁을 끝내는 것이고 군비제한과 군비축소
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동독은 바르샤바조약의
참가국이 협의한 초안에 조직적으로 기여합니다. 그 경우 우리는 우
리국가의 전세계적 국제법상 승인에서-현재 우리는 131개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국제적 지위안정에서 생긴 보다 큰 가능
성을 이용합니다. 동독은 유럽평화의 토대로 입증됩니다. 거기에서
동독은 언제나 수행하여야 하는 커다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러한 책임하에서 우리는 다른 독일국가인 서독과의 관계수립을
봅니다.

서로 다른 사회질서 국가의 평화적 공존원칙이 하나의 토대입니
다. 따라서 국제법에 따라 서로 독립된 주권국가 사이에 통용되는
그러한 관계만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경계선과 영토불가침의 완전한
존중과 내정불간섭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동독과 서독간의 관계에서 불편함과 어긋나짐을 국경선의
서쪽에서 소위 "1937년 독일제국이래의 국경선의 실지회복"이라는 북
구주의 선언에 여전히 몰두하는 것을 기인합니다. 역사에 의해 이

모든 것은 오래 전부터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것입니다. 제2차세계대전과 전후발전의 결과에서 2개의 독일국가, 동독과 서독이 생성되었습니다. 우리의 공화국은 사회주의의 길을 걷고 서독은 자본주의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일원. 거기서는 NATO가 입,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또한 지속적 관계 정상화를 가능케 하는 그런 실제적 정책에 대한 최종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국가간의 관계, 유럽평화 그리고 유럽주민의 생활에 무익한 모의전투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양독국가간의 관계가 국제적 전상황의 강경화와 무관한 채로 있다는 것을 자세히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나친 NATO의 무장력에서 지속적 관계정상화에 어떤 장애가 생기지는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유럽이 평화속에서 살고 있다면, 유럽의 평화적 미래가 보장된다면 거기에는 양독국가의 관계가 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양독국가가 평화보장의 상위에 이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사회주의사회의 동등한 외교정책에 따라 동독과 서독간의 관계를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화속에서만 인민의 행복과 안녕이 변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1981년 2월 26일자 동베를린의 노이에스 도이취란트

22. 경계위원회의 의정서 부록 제69호

1981. 2. 26.

1981년 2월 26일 바이마르에서 열린 경계위원회 회의에서 서명된 동독과 서독 간의 기존경계선의 문서에는 이정표에 대한 규정과 정의에 관한 의정서부록이 인쇄되어 있다.

경계위원회-1985년 본의 내독성에 의해 출판된 토대와 행위에 관한 문서

23. 동베를린에서의 인민의회 직접선거

1981. 3. 16.

1981년 3월 16일자 동독 인민의회 선거를 위한 개개의 선거구에서 선거되어야 하는 국회의원의 수와 선거구에 관한 동독의 결의 (발체)

동독인민대표 선거에 관한 1976년 6월 24일자 법률-선거법-(법령집 I 제22호 3321면) 및 선거법개정에 관한 1979년 6월 28일자 법률 8항 2조에 따라 동독인민회의의 선거를 위한 개개의 선거구에서 선거되어야 하는 국회의원의 수와 선거구가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다:

동독의 수도, 베를린

제1선거구

8명의 국회의원

시지역 베를린-트레프트프(Berlin-Treptow)

제2선거구

7명의 국회의원

시지역 베를린 중부(Berlin-Mitte)

베를린-트리드리히스하임(Berlin-Triedrichsham)

제3선거구

11명의 국회의원

시지역 베를린-마르잔(Berlin-Marzahn)

베를린-리히텐베르크(Berlin-Lichtlnberg)

제4선거구

6명의 국회의원

시지역 베를린-플렌즈라우어베르크(Berlin-Plenzlauer Berg)

제5선거구

8명의 국회의원

시지역 베를린-판코브(Berlin-Pankow)

베를린-빈제(Berlin-Weissensee)

1981년 3월 16일 베를린

동독국가평의회 의장

에리히 호네커

동독국가평의회 서기

티슬러

출처: 1981년 3월 26일자 동독의 법령집 I 98면

24. 베를린에서의 문화 상품 교역

1981. 3. 31

이전에 베를린성의 다리 위에 놓였었던 건축사 칼 프리드리히싱켈의 8개의 예술품 중의 6개가 수요일에 동베를린의 베스트나하로부터 수송되었다. 그것들은 현재 마크-앵겔스(Mark-Engels) 교각의 오래된 교량 위에 다시 세워지게 된다. 나머지 2개는 간단하게 동베를린으로 보내졌다. 현직 시장인 한스 요헨 포겔(Hans-Jochen Vogel)이 5월에 이 예술품의 반환을 통고하였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전의 성의 교각을 다시 세우는 것을 통일된 건축작업과 예술작업으로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싱켈의 200주년 기념일에 관련되는 행사로서 평가하였다. 동독은 반대로 아주 가치있는 문서와 왕실에서 사용하던 자기의 제조 모형책을 서베를린에 다시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것은 현재 동베를린에 있는 마르크(Maerk)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출처:1981년 4월 30일자 남독일 신문의 특보, 핀헨

동독과 서베를린 시의회와의 담당 관청 사이에 서로 상응하는 협정을 근거로 하여, 금요일에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 아직도 남아 있는 프로이센왕실의 도자기 제조에 관한 문서의 보관분을 서베를린의 시의회에 넘겨 주었다.

서베를린이 본거지인 도자기제조 사업에 관한 문서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예전의 보관장소의 폐허속의 소련군의 부대로부터 서베를린의 영역인 샤로텐부르크(Charlottenburg)에서 보호되었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파괴와 약탈로부터 보호되었다.

1949년 이래로 그 문서의 보관본은 베를린 가에 있는 메르크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다.

출처:1981년 5월 30일자 베를린 신문의 ADN통지 (동)베를린

25. 연방수상 헬무트 슈미트의 민족상황에 대한 보고

1981. 4. 9

친애하는 대통령,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본인은 급년의 <민족상황에 대한 보고>에 앞서 여류 문필가인 크리스타 볼프(Christa Wolf)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지난 겨울에 출간된 책인 <어린 시절의 견본(Kindheitsmuster)>의 작가로서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타 볼프가 가을에 다름슈타트에서 게오르그 뷔히너(Georg-Buechner) 상을 수상했을 때 그녀는 역사를 통한 독일의 과정에 대해서 괴롭고도 장황하게 그리고 때로는 아주 조잡하게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매우 다양한 지역에 대한 많은 세대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길, 그 민족의 땅은 거의 대부분 인위적인 경계가 지어졌는데, 그것은 이상한 많은 이웃 나라들이 만든 것입니다. 많은 적정과 오해의 역사, 그러나 또한 많은 업적들이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두번째로 본인은 인민 자신이 소유하는 공장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는 32세 된 어느 근로자의 말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는 텔레비전 방송기자에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일상 생활에 대해서, 그

리고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31년 동안의 사회주의와 사회주의국가의 구조를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 “역사에서 그것은 31년이다: 그것은 결코 100분의 1초이거나 또는 1000분의 1초가 아니다.”

역사에 대한, 우리들의 길고, 지루하고 연대기적인 역사로 통하는 과정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에 관해 심사숙고한다면, 역사적 차원에 대한 의식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짧다는 의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전기문을 읽습니다. 사람들은 박물관으로 갑니다.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루덴아멘상>을 보았습니다. <바이에른 고성>, 한 달 동안 베를린에서 「균형으로의 시도」(Versuch einer Bilanz)라는 겸손한 부제목이 붙은 프로이센 전람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역사, 우리들의 문화의 근본으로 향하는 탐색과 시도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우리의 민족과 국가의 역사적인 공통성을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아무도 역사 속으로 몰래 사라져 버리지도 않습니다.

동독에서 이제 당이 공식적으로 종합적인 역사적 유산의 해명에 대한 요구와, 우리의 역사에 차이가 있는 평가에 대한 요구를 제기한다면, 본인은 그것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바람이 어느 곳에서 불고 있는지를 이미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란지쯔(Lansitz)에서 “오래된 널판지”(Zum Alten Fritz)라고 불리는 음식점의 주인은 전쟁 이후에 자신의 술집을 SED의 지시에 따라 고쳐야만 합니

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Alten>이라는 단어를 널빤지에 써서 못질 하여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그 음식점을 <널빤지로서 :Fritz>로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그 주인이 아무런 충격없이 널빤지를 제거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Zum Alten Fritz>에 갔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좀 더 많이 곧 잘 프로이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원컨대 프로이센을 단순히 찬미하기 위해서나 본인이 원하는 바와 똑같이 우리를 프로이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프로이센에 대해 서로 차이가 있는 견해에서부터 흑백논리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역사를 널빤지로 못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1983년 루터(Luther)의 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은 교회가 독일의 양측의 도시에서 동시에 함께 일한다면 그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나는 교회가 양측의 도시에서 동시에 평화사상에 기여한다면 그것 또한 환영합니다.

독일을 위한 우리의 정치는-그것이 지속되고 있고, 더욱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만 합니다.-유럽과 세계의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의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정치의 현재는 대단히 어려운 국제적인 외부 세계에서 입증됨에 틀림없습니다. 세계 정치의 전망은 70년대 말에 어두워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소련이 국제적인 공동생활의 중요한 원칙을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 있어서 전술무기의 분야에 소련의 고도로 발달해가는 준비는 군사 평형원칙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의 무력침공과

전쟁은 국제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와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새로운 군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종속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제 3세계 국가들의 독립과 비동맹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내적인 재창조를 위한 지배권에 대한 토론에 관여하는 시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많은 평화 구축시도가 무효로 될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인가는 유럽의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밖으로부터, 동쪽에서 그렇지 않으면 서방에서 어떤 상황의 모든 개입은 위험합니다. 위험한 국제적인 거부없이 사회적인 개혁들은 가능합니다. 또한, 그것 평화유지에 속합니다. 다만 유럽에서 공동작업의 풍토가 유지된다면, 우리는 서방 진영에서 폴란드에게 앞으로 더욱 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매우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상황에서 우선 우리는 독일 정치가 달성해야 하는 것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서방 진영에서 우리의 우방국의 신뢰, 그러나 어떠한 간에 어떤 부가적인 긴장없이 독일에서 발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한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우리의 이웃들의 신뢰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현재 받고있는 신뢰는 부단한,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정치의, 아무런 애매 모호함이 없는 정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우방에게서 우리의 독일정치에 관한 이해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또한 우리는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과 더불어 한정된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공

동작업, 즉 사회적인 구조에 따라, 그리고 정치적인 목표설정 에 따라 유지되는 국가들 하에서 가능한 공동작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동독에게도 또한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 외교정책의 계속성과 신뢰성은 서방국가들이나 그에 반대되는 동방국가들에도 있으며, 우리 독일정책의 근본 원칙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방공화국은 서쪽에 속하는 것입니다. 단지 서쪽의 동맹으로 우리가 소속되는 것이 우리의 안전, 우리의 자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동 능력을 보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평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둘째, 미국 없이 유럽의 안전은 없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작업으로서 연방 정부가 준비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고, 우리도 또한 그러합니다.

집중적이고 전도 유망한 회담이 진행중입니다. 연방장관 겐서와 아펠이 관장한 회담의 성과에서 이제 막 많은 본질적인 문제들이 일치될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5월 미국을 방문할 때 이러한 긴밀한 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셋째, 아틀라스 동맹과 더불어 유럽공동체가 우리 정치의 주춧돌입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경제적 정치적 주위 세계의 도발을 퇴치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유럽공동체에서 어려운 시대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들과 더불어 동방과 서방 사이의 군사적 평형을 보증하고-필요한 경우-재건할 수 있는 임무를 앞에 놓

고 있습니다. 독·불 2월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약자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 것과 독 같이 군사적으로 우월하고자 하는 노력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본인은 이러한 일과 앞으로 계속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특별히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는 동독이나 동독의 국민들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독에서의 다양한 선전에 직면하여 올바른 상을 정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중거리 무기의 경우 그 평형은 소련의 군비 확장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침해받았습니다. 소련의 핵 중거리 미사일 혹은 전략미사일의 사정거리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1960년 유럽에는 이런 종류의 50기의 미국 무기가 290기의 소련 무기와 대립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1963년 이래로 미국의 미사일은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련 미사일의 숫자는 1970년 610기로 증가했습니다.

다시 10년이 지난 오늘날 소련은 전략상의 미사일을 600기를 훨씬 초과하여 만들었습니다.—그 중에서 모두 3개의 탄두를 가지고 있는 SS20 200기보다도 더 많은—남김없이 1,000기의 핵 미사일 탄두를 만들었습니다. 서유럽에서 는프랑스 미사일 18기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더이상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비행기 또는 함상에 기지를 둔 무기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어야만 하며 이러한 현저한 군사적 우위는 아주 두드러진 정치적 위태로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동맹은 1년반 전에 새로운 성분을 소위 2중의 결정과 함께 안전보장장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군비제한에 대하여 사전에 토의하기 위해 미국의 사후 군비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제일 먼저 새로운 미국의 무기를 먼저 배치하자는 독일의 제안에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군사적 평형의 목표에 대한 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양쪽 긴장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 것은 1969년의 하멜(Harmel) 보고의 원칙에 대응한 것입니다. 즉, 군사적 안전을 통하여 평화를 수호하고 동시에 군비 통제와 협동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연방국내의 가장 최근 회의를 토대로, 그리고 작년 10월에 전략미사일의 양진영간 경계가 시작되었던 양대 강대국 사이의 담화에 근거한 겐서 외무 장관이 모스크바에서 보았던 서류를 토대로 해서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재개할 것입니다.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고 초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협의가 이중 결정의 두 부분의 실현을 행동력 있도록 촉진시키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지금 소련의 군비 강화를 촉진하는 긴장완화 정책이 책임져야 하는 것의 하나를 말한다면, 소련의 군비가 전쟁의 조건 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 문제를 시인하여야만 합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것을 부인합니다. 긴장 완화의 시대에 군사적 평형을 지키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더욱이 연방 정부가 전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자유적인 동맹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부득이한 변화작용을 평형과 서독-동

독 협동작업 사이에서 이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득이한 변화 작용을!

긴장완화와 협동작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이미 지고한 동방의 탁월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아마도 잔혹하게 자신의 환상에서부터 깨어날 것입니다.

여섯째, 아프가니스탄 침공후에 사회자유 연합정부와 소련과의 회담이 우리의 확신에 따라 곧 경제공황기에 중단되었다는 의혹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본인은 며칠전, 즉 3월 30일에 레이전 대통령과 지스카르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다시 의논했습니다. 지난 주 모스크바에서 겐셔 외무장관의 회담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대화를 중단시키지 않으려는 계획에 적합한 것입니다. 겐셔장관의 대화는 군비의 관리영역에서, 그리고 KSZE진행의 연속에서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유럽에서의 군비 축소에 대한 냉정한 회의에 직면하여 소련의 입장에 대하여 중요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소련정부는 중거리 무기에 대한 토의준비를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승인하였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본인이 지난 여름 우리의 모스크바 공동 방문기회에 브레즈네프 서기장을 본으로 답례 방문차 초청했던 일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서기장과 본인은 지금 이러한 실무적인 방문을 금년중 언제 개최할 것인가에 대해 상의중입니다.

우리는 또한 소련의 의도가 의견을 교환하는 데에 강하게 작용하는 것에 환영합니다. 소련 서기장과 본인 사이의 대화가 소련 정상과 미국 정상 사이의 관계를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해서도 안된다

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방의 입장통보에서 그리고 그들과의 밀접한 조정에서, 우리는 우방들이 우리로부터 기대하는 것에 상응하게 동-서 대화에 훌륭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연방정부는 우리가 필수불가결한 대화를 계속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여해야 한다는 것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자국 국민의 관심에서 특히 독일 국민의 관심에서 서독과 동독사이의 관계가 긴밀해 질수록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더 좋아 질수록 우리 독일에게는 더 이익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동시에 서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두번째 석유값 파동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서독에서 우리는 1978년 이후 또 다시 등장한 일정 가격에 기준을 두고 변화하는 석유 가격의 배가를 자동화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우리의 경우 올해의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은 사실상 부진했습니다. 그것은 공업기업에 중요시 되는 것이고 은행에, 그리고 농업에 중요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고용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도 물가가 여기에서처럼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도 실업율이 우리의 경우보다 더 낮지 않습니다. 또한, 유럽을 제외한 개발도상국들은 물론 많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조적 위기가 덮쳤습니다. 단지 폴란드에서만이

이 구조적 위기가 외부세계에서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동독과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늘어나는 실업의 압력 하에서 상업 정책적으로 규칙에 어긋나는 경쟁에서, 보호무역 정책에서 재발의 위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공동체 또는 그들 협력국가들은 그러한 유혹에서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굴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우리 모두는 유럽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유럽보호 조약체계를 통해 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비판적인 시대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아주 신중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경제와 세계정치적인 토대에서.

또한 외부의 자극으로서 현재 일반적인 상황강령은 유용한 수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럽공동체를 확립하고 그러므로써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처럼 동유럽에서도 똑같이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수출입 결산적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자신이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당히 높은 빚을 외국에 갚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석유에 대한 우리의 반입을 계속해서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일반적인 에너지 절약을 의미하고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우리의 생산의 경쟁능력을 다시 한번 개선하는 것입니다.

모든 큰 노력은 이러한 방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그것을 지키고 새로이 창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제의 미래를

안전하게 해줍니다. 본인은 독일 국민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참아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국민경제보다도 더 잘- 그리고 나는 이러한 확신을 기초로 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독일 기업관리는 최근 10년 동안에 -첫번째 유가 파동 이후, 새로 열린 거래시장에 대하여, 불안정한 거래 시장에 대하여, 유럽 공업생산물의 부담으로 인해 불안정한 무역기간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적응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번에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새로운 공업 또는 기술을 통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하여, 혁신을 통하여 즉 신속 정밀함을 통하여 무기정쟁력을 높여 주었습니다.

어제 파리와 본에서 결정된 강령은 중소기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실행에까지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와 우리는 매우 닮은 거의 똑 같은 불가피함에 직면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똑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우리의 고용인과 그들의 경영협의회를 그리고 노동조합들은 그들이 그들의 전환과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여의 필수불가결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경영협의회가 사회적으로 편파적인 성취를 염려하기 때문이며, 그들이 그들의 일자리를 확보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연방정부로부터 통고받은 노동시장에서의 사후-자격 부여방책수립(Nach-Umgualifizierungsmassnahmen)은 어떤 경우에서 고용인의 이러한 전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사회적인 그룹이 그러한 전환과정의 탁월한 안전을 가능케 하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스스로가 자유롭게 자율적인 교섭과 계약 상대자로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낙관적입니다.

부연하자면 우리는 사회적인 보안망이 여기 저기에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정말로 단지 0.1퍼센트를 올리고 내려지는 임금률 교섭이 마치 전신을 병들게 하려고 끝없이 번지는 노균병처럼 우리 모두와 모든 것에 번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5월 1일 적당한 시기에 만들어진 CDU와 CSU에서의 광산공동참여와 이에 관한 의견 대립의 사실에 대한 명료함은 연합의 최종 단계한 여기까지 들어와 도움을 받고자 하며 본인도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코올(Kohl) 박사(CDU/CSU), 모든 생활문제에서 반대의 소리로 생을 영위하는 자는 생활 문제에 대해서 침묵해야 합니다.

코올박사, 그러한 일을 견뎌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어제 기업 대표자 연설을 여기에서 견뎌내야 합니다.

모험이 없는 기업 지도자를 위하지 않는, 그리고 고용자를 위하지 않는 구조적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협력하고 서로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임금률 파트너 모두의 협력없이 더 높은 고용으로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떠한 그룹도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그룹에 부담을 주면서 오랫동안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모든 나라들이 서로 의존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오랫동안 이익을 얻을 수는 없

습니다. 국제적인 공동작업으로써 이러한 세계 경제적 상황에서 어떠한 합리적인 양자택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동독과 동유럽에 대해서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그리고 동독에서도 마찬가지로—경제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걱정, 안전유지에 대한 걱정 등 모든 것이 다가오며 이것은 단지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어느 누구도 젊은 세대들에게 삶의 모두 위협에 대한 안전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어떠한 자동적으로 위협스럽지 않으며 자유롭게 일일이 계획된 삶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아주 공포스럽고 아주 비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문제 특히 그의 걱정이나 고민들을 마치 그 사람처럼 글로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독일 사람들과 교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도 지난 해의 고용이 우리 나라에서 2,580만명으로서 서독 역사상 최고의 위치에 도달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걱정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연합국 즉 우리의 동맹국 및 미국과 같은 우방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절박하게 위협받지 않으려면 어떠한 불안을 조성하는 자, 평화·정치적 불안 조성자, 그리고 경제적 불안 조성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두가지가 부연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80년대 초는 70년대

초보다 더 중요한 의미와 다른 의미, 다른 특성의 요구를 사회에 내놓았습니다. 시민들은 성장사회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방적인 요구의 생각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 생각의 좋은 기회를 사실 어떤 본질적으로 다른 것. 그리고 생활 수준의 끊임없는 상승으로서의 기회보다 더욱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 좋은 기회를 정말로 유용하게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본인은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부담해야 하거나 굴복하고 말았던 소비욕구를 떨쳐버리는 일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또한 대화를 감축시키는 텔레비전의 속박을 떨쳐내는 것을 격려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그것이 노동운동과 사회적 데모에 의해서, 자유로운 시민 계급과 자유주의에 의해서 이해되었고, 이해되는 것 처럼 인간의 모든 개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실현을 위한 기회를 잘 이용하는 자는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친밀함의 기본적인 가치는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서로 단결하여 사회의 약자로서 우리의 종합적인 사회 입법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혼자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몇몇 사람의 경우 저지하는 사회능력(Sozialfaehigkeit)과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는 성장(Auswuchs)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자와 외국에서 일하는 우리 노무자의 태도는 여러 곳에서 말한 예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때로 연대책임에 의해 난폭하게 제명처분당합니다. 물론 때로는 현재 오늘날의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주의깊게 생각치 않고 파괴함으로써 젊은 층과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사람들에게 대한 연대책임이 부족함을 드러내기로 합니다.

또한 때로는 동독 시민들에 대한 연대책임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연방국 시민들은 친밀하게 어깨를 두드리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연방 시민들보다 아주 확실히 히틀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더 많은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건을 수행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려워합니다. 동독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독일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경제적 상황에서 계속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또한 비록 개인적인 상태로 머무르는 정신의 완성을 이룬다 하더라도 위대한 인간적인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동독 시민들과 그리고 동쪽, 서쪽, 남쪽에 있는 다른 나라 국민들과의 연대책임이 없이는 우리는 표면상 동시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표면상 동시대인 점에 있어서 불안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계발하고 형제같이 행동하고, 우리의 의무를 스스로 다한다면 그 근원은 사실상 희망과 용기인 듯 합니다.

우리 독일인들이—특히 젊은 독일인들이—많은 다른 나라 국민들처럼 국가의 구속에서 아주 많은 보호를 받으며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소수 몇몇 사람들은 민족의 개념조차 불편하다고 반항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국가의 개념 또는 이러한 사건들을 스

스로 비껴놓는 아무런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 나중에 국수주의적 반작용의 위험을 덤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여기 국민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반대로 우리가 국수주의자로서 오해받는 위험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업을 바로 이러한 사항에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을 지키지 않고 역사를 망각하고 행동한다면, 국가라는 차에서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독 시민들에 대해서 아주 이기적이고 연대의식없이 행동했습니다. 동독 시민들은 여기 서독에서보다 국가를 더 높은 척도로써 자기 동일화를 생의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본인은 빌리 브란트가 연방 수상으로서 1970년 의회에서 그의 <민족 상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야기 했었던 것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히틀러 제국의 무조건 항복 이후 25년 동안 민족의 개념은 갈라진 독일을 위한 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족의 개념은 역사적 현실과 정치적 의지를 결합한 것입니다. 민족은 공통된 언어와 문화보다도 국가와 사회질서보다도 더 종합적이고 의미있는 것입니다. 민족은 민중의 지속적인 소속의식을 기초로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한 독일 민족은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1970년이었습니다.

본인 자신이 3년전 함부르크 기념일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족의 단일성은 어쨌든 공통된 역사적 과거를 의미하는데 그 속에는 그 동기가 자만으로 된 적도, 그리고 그 동기가 유감이거나 또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여야 하는 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족이란 자신이 스스로 의무를 다하는 우리들이 설 미래에 대한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족이란 우리의 현재에서 현실의 한 토막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부연하자면, 민족은 오로지 민족이고자 하는 모든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은 영원한 국민투표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독일 양쪽의 사람들이 원하는 한 독일 민족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본인은 그 기념일에서 부연했던 것이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독일 민족의 미래에 부합하는 것은, 그러므로 정국이 현재 두 국가로 독일이 분리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가능성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와 긴장완화의 정책을 계속 수행하고 전 유럽의 정신적, 문화적, 경제적 단일성 회복에 기여하는 일을 제외한 완전히 정치적 의미에서의 독일 민족의 통일을 위한 어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이 수백년동안 항상 다양함에서 나온 통일이었습니다.

이미 본인이 인용을 하기 시작했으므로 훨씬 이전으로 되돌아 가려고 합니다.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는 1954년 SED당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인들은 우리 고향인 서쪽에 우리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독일 통일의 회복이 반박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합법성이며 그 법률에 감히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몰락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발터 울브리히트의 1954년!

바로 지난 주에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인 에리히 호네커는 사회주의적 주도 하에서 양 독일 국가의 결합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양 공산주의의 인용은—이데올로기적인 포장에도 불구하고—정치가들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바와 같이 동독에서 또한 독일 통일의 이념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독 시민들이 독일 민족의 동일성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SED지도부와 국가 지도부가 종종 여러 해 동안 언제나 다시 시도했던 바와 같이 이 필수불가결함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동베를린과 본, 그리고 양 독일 국가 사이의 접근은 자주 제3자의 의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독일문제가 유럽 상황을 소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일문제가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예전과 반대입니다.; 세계와 유럽에서의 소요와 불안이 그동안 성취한 양독간 협력작업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정세 하에서 동독 정부에 의해 지난 가을에 규정된 여행자 교류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교환의 증가와 확대가 그것에 대한 예입니다. 동독정부는 양 독일 국가간의 관계에 눈에 띄게 현저

한 후퇴(Ruckschlagy)를 시행하였습니다. 10월까지 정상으로 발전되었던 동독으로의 특히 베를린으로의 여행자 교류는, 따라서 아주 강한 후퇴입니다. 연방 정부는 동독의 지도부가 인간적 접촉이 영속하는 것에 대한 개입을 시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의 후퇴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며 긴장과 관심의 일치를 감소시키는 우리 정치의 방패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일찍 후퇴를 통해 그 궤도에 던져지지 않도록 해야 했으며, 또한 장차 그 경계설정을 우리 쪽에서 유일한 경계로써 대답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협동작업과 동독과의 관계의 기초를 제시해야겠습니다.

본인은 호네커 당서기장에게 주목하여 동독이 양 독일 국가간의 관계를 정상화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한 것을 읽었습니다.

사실상 이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은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우리가 그것을 기본조약에서 하려 했던 것처럼, 아주 좋은 관계의 의미에서 호네커 서기장은 우리가 몇 가지 기본문제에서 동독에 의해서 오랫동안 대표되었던 입장들을 활성화 해야 했던 것을 아주 조금 게라(Gera)에서 실행했습니다. 본인이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의 방향에 있어서 즉, 국적의 문제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새로 대강의 윤곽을 잡으려 합니다. 그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본조약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방정부는 변함없이 분명하게 독일 국적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이든 국가의 권리로서 이익 소유, 국적의 상실등을 규정하는 조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적이 우리 법률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독일 국적을 확실히 하려는 권리를 우리 스스로가 부정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어떤 권리도, 특히 동독의 어떤 권리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는-세계 도처 어느 곳에 서나-모든 독일인들은 기본법의 기본권 보장과 서독 법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존속되어 있습니다.

동독이 1967년 유일한 국가시민법률을 제정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시민법률의 제정이 우리 기본법 의미상의 국적에도 그리고 우리 제정법에도 아무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동독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측은-거기에 따라서 본인은 그 진로를 결정할 것입니다-그들 태도에서 이 두 관점을 실제로 고려할 것입니다.

동독과 서독에서 평화 수호를 위한 특수한 독일인의 의무가 인식되고 있습니다. 양 독일국가는 유럽의 동·서관계에 대한 어떠한 부차적인 부담도 그들 관계로부터 나와서는 안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을 통과하는 경계선에서 더 이상 발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겐서 외무장관은 예전에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KSKE회의의 개최식에서 정정당당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독일 양쪽 국가 사이 경계선에 차단물을 설치한 것이 계속해서 존속되어 있고 더 나아가 완벽히 실행되는 것이 우리에게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에 만족할 수도 없고 만

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본인 자신이 지난 주말에 Luechow-Dannenberg국경선에 더 많은 곳에 실로 믿기 어려운 동독의 기술적·군사적 낭비를 다시 한 번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반감을 일으키는 체험입니다.

그러나 양 독일 국가가 똑 같이 그들의 정치적 태도에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서로 완화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서로 대화하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1980년 전반기에의 일련의 정치적 만남 이후 그리고 벨그라드에서 개최된 호네커서기장과 본인 사이의 아주 유익한 장시간의 대화 이후에 본인이 8월에 준비했던 서기장과의 만남은 연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유럽에서의 경쟁적인 독일 외에서의 발전에,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를 그토록 염려스럽게 하는 발전에 그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이 방문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은 본인에게는 아프가니스탄 군 진입에 따른 동-서 사이의 긴장이 팽배해진 일 때문에 원래는 1980년 1월에 약속된 만남이 한 번 연기되어야 했던 것보다 더욱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본인은 우리 국가 간의 관계에서의 복합적인 것에 대한 그리고 실제적인 국제적 문제에 대한 대화를 양측을 위한 더 유익한 시점으로 인도하는 데에 충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은 명백히 국제적 발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에 사회-자유주의 동맹의 독일 정치와 기본조약과 또 다른 협정과 더불어 양 독일국가 사이의 대화와 접촉의 폭 넓은 그물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정치들 통해서 많은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자명하게 뚜렷한 변화가 없이도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무역이 지난 해에 결정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양측은 지난 해에 달성된 성장률과 총량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측의 무역교류가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 전도 유망한 것입니다. 연방 정부는 또한 내륙간의 무역의 발전과 기초를 더 많이 촉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우리의 많은 연금대상자들이 동독을 방문하였습니다. 수백만통의 전화를 통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본인은 또한 교회와 문화적 영역에서 스포츠 단체, 노동조합 사이의 비국가적 교류, 예를 들어 영화주간과 같은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류를 구축하고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미 여러 해 전에-1968년 3월에 의회에서 개최했었던 <민족의 상황>에 대한 첫번째 논쟁의 경우-본인은 사회민주적 의회의 당파에 관하여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본인은 그때 동독의 젊은이들에게 충점을 맞추었고 깊이 파고 들었는데 동독의 젊은이들은 우리 서독에 비판적으로 맞섰으며, 종종 우리 사회와 사회질서로의 그들의 이해와 감구능력은 마치 그 개념이 낮은 규범이 우리를 종종 실수하게 하는 것처럼 동독에서도 똑같습니다. 본인은 그러한 발전의 위험에 대해 언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측은 서로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이것은 독일내의 평화 정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오늘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정당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본인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서

독을 여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쪽에 친척과 친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친척과 친구를 가려서는 안됩니다-본인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젊은 동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결론 낙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동독으로 여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스스로 말씀하십시오! 리젠산맥과 오스트호수 사이의 독일은 매우 아름다운 마을과 도시들로 꼭 차있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메클렌부르크인 Mecklenburg, 폼메른(Pommern),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작센인(Sachsen), 튀링겐인(Thuerigen), 베를린(Berlin)인, 그들은 대화에서 우리의 애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와 연방정부의 모든 직접적인 정치적·경제적·인간적인 사회참여가 모든 베를린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베를린의 벽은 20년 전에 쌓은 것입니다. 항상 그 벽은 우리 나라에 음침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벽을 바라보아서는 안됩니다.

10년 전인 1971년 가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4대국 협상이 지금처럼 강조되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베를린 안에서와 그 주위에서 현상유지를 고착시키는 일에 기뻐했습니다. 통과여행자의 숫자는 이제 두배가 되었습니다. 동베를린과 동독에서의 방문은 다시 베를린의 평일에 속하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베를린 사람들은 도시의 동쪽 부분과 동독에서 친척과 친구들과 수천통의 전화 통화를 합니

다.

우리 베를린 정치의 규범은 정식으로 허락된 것과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것 사이의 세심한 고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률과 책임감의 토대 위에서 베를린의 안전유지와 자유를 보증하는 3대 강대국과의 긴밀한 일치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안정은 또한 독일을 넘은 저쪽까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베를린시 시장인 포겔박사는 그의 시정부 성명에서 베를린은 무엇보다도 희망, 신념, 자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국민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베를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은 새 연방의 시정부와 그의 대표자인 브룬너(Brunner)시장과 모든 새 의회가 베를린인들에게 희망과 신념 그리고 자의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루이제 슈뢰더(Louise Schroeder)나 에를스트 로이터(Ernst Reuter)나 또는 빌리 브란트처럼 말입니다. 이 세사람은 베를린 태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슈프레강물을 마신 것처럼 베를린인으로 되었습니다.

(바르젤 박사(CDU/CSU); 15년 역사가 면직되었습니다! -CDU/CSU의 지속적인 외침)

-야당의 신사 숙녀 여러분, 본인은 여러분의 불안을 이해하며 그것이 본인을 기쁘게 합니다.

연방정부와 의회는 베를린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방의 협력과 베를린정부의 기구들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은 무엇보다도 개인 가정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는 베를린을 위해서 경제적, 문화적 학문적 기여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베를린에 경제적, 학문적, 문화적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 도시와 이 도시 사람들은 단지 과거의 짐과 현재의 문제들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미래를 위한 우리들의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를린 사람편에 서는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세계의 모든 상황과 독일 민족의 상황은 모두 오늘날 예전보다 훌륭한 말을 잘 견뎌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양측에 대한-완화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신중하게 서로 교제해야 하며 그 업적을 지키고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끈기가 있어야 하며 서로를 위해 계산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동독과 서독에게 똑 같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 계산적이어야 합니다.

완화, 끈기, 계산적인 것이 곧 독일인의 전통적인 도덕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주 특수한 역사적, 지리적 상황에서 존속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독일인의 도덕으로써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히틀러에 의한 아우슈비츠에 의한, 동·서 사이의 접촉점에서, 유럽의 중심에서-우리 독일인들은 유럽 전체를 많은 다른 나라들보다 유익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독일인이 유럽을 많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치욕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 좋은 것이라면 우리 독일도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라면 독일 민족은 많은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리적 상황에서, 역사적 상황에서는 특수하게 평화의 의무가 따릅니다.: 환상적

인 평화주의로서가 아닌 평화를 실패한 같은 상태로도, 또한 묘지의 안락으로도 이해하지 않는 구체적인 정치에 대한 의무로서! 우리는 오히려 국가들 사이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군사적 평형과 유지와 회복을 통하여, 협상과 조약을 통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협동작업-다시 말하면 평화의 공동 형성을 통하여, - 항상 새롭게 준비되어야 하는 상태로써 평화를 인식합니다.

균형이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전제입니다. 균형의 원칙과 동등의 원칙없이 는 무기 한계의 조약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균형만이 평화를 위해 충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균형과 타협에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전진에 방향을 맞춘 지속적인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대서양 연맹이 1967년 채택했던 하멜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절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양 독일국가와 독일 민족에 대해서-적절한 것입니다.

출처: 1981년 4월 9일 독일 의회의 31차 회의의 의정서

26. (동) 베를린에서 있었던 독일사회당의 10차 당대회에서의 에리히 호네커 당서기장의 보고

1881. 4. 11.

(발췌)

우리는 모든 NATO국가들의 관계를 돕는 관계, 즉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보호를 토대로 하는 바르샤바 조약의 국가간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세번째로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마무리하는 일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서독과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오해도 받지 않기 위해서- 독일연방공화국과의 관계가 그 연합 파트너, 특히 미국을 끌어다 댄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소련 사이의 관계가 끊임없는 대결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정치를 통해 악화된다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NATO국가인 서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꿈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평화적인 공존의 원칙을 토대로 하는 동독과 서독의 정상적인 관계의 발전은 양쪽 독일 국가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체 상황을 위해서도 결코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양쪽 독일 국가 사이의 정치에서 전체 독일로 호언 장담하는 것이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인 토론에서 사실상 서로 이미 오랫동안 증명해 온 두 독일국가가 존재하고, 그것이 국제법상 주체(Voelkerrechtssubjekte)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동독의 국제적인 관심에서 뿐만 아니라, 서독의 국제적인 관심에서도, 실제 정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결론을 내리고 서독측의 월권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독일을 위해>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독에 대한 정치에 있어서 우리에게서 평화와 지키고 계속해서 보호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만 평화에 필요한 것은 양독일 국가에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유럽 대

특히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동독의 입장을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러한 생의 중요한 문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본인은 게라에게의 당의 모범적인 근로자 앞에서 연설에서 원칙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대내적 정치와 대외적 정치의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서독의 지금까지의 정치가, 특히 연방 수상인 슈미트는 어떠한 전쟁도 독일 땅에서 시작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차 설명하였고, 또한 그것을 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주 성실히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우리의 정치에서 그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생활에서 그러한 것처럼-평화에 관한 일이 모든 것 이전에 결정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서독은 여느 때와 똑같이 아주 모순되는 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동독과 서독 사이의 정상적이고, 특히 좋은 이웃의 관계를 맺는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 독일 국가 사이의 관계는 국제적인 상황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NATO-최고군비를 축전하는 자, 새로운 핵무기를 가지고 유럽에서 군사적-전술적 평형을 훼손시키는 자, 그러한 자는 양 독일 국가 사이의 관계의 더 나은 정상화에 역행하고 그 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를 몰고 올 것입니다.

<1937년 경계선에서 독일 영토를 지속시킴>에 대한 복수주의자의 독트린을 고수하는 것은, 그것이 마치독일에서 일어날 토론의 과정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약간 그 쪽 영역의 문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이며 위험하고, 또한 오래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과 전

후 발전의 결과로 2개의 서로 전혀 연관이 없는 독립적인 독일 국가-사회주의적인 독일민주공화국과 자본주의적인 독일연방공화국-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동맹들, 즉 바르샤바조약내지 NATO에 속합니다.

이성과 선의 의지는 이러한 사실들이 정치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동독의 국민들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인류의 세계적 과도기의 역사적인 과정과의 조화에서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동자 계급의 인도하에 사회주의적인 독일국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다른 것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개의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독립적인 국가 존재에 대한 모든 조건들을 서로 다른 사회질서에 근거하지 않고 동독과 서독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 사이에는 단지 평화적인 공존의 관계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유럽 동맹작업에, 유엔 헌법 원전에, 그리고 헬싱키의 폐회식에 기록되어 있는 국제법의 원칙이 그 기초입니다. 동독의 당과 정부는 아무 것도 빼놓지 않고 동독과 서독의 협력 작업에 대한 평화적인 토대를 약속하였고, 또한 협정과 목적과 원칙, 특별히 모든 국가의 독립성, 독립성의 존중, 독자성과 영토의 불가침성, 불간섭, 민족 자결권, 인권과 무차별의 보호를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완전하게 고려할 때, 동독과 서독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새로운 실제적인 결과로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 독일 국가가 1971년 9월 3일 서베를린에 대한 네가지의

타협이 그 부담감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도의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독은 서베를린을 활발하고 정상적으로 존속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엄한 제한과 네가지 타협의 완전한 변화, 특히 서베를린이 서독의 일부분이 아니며 또한 더 이상 서독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핵심 규정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베를린에 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비결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의 원칙에서부터 나온 각각의 협정이 서베를린의 고정인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베를린을 네가지 협정에 대한 반항으로 서독의 연방 국가로서 다루고 심지어 NATO-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수 많은 시도는 유해한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관심에서도 그리고 그러한 영역에서의 평온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성을 가지라고 충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베를린 회의의 공동의 관심자에 대해 다루고 양쪽이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출처 : Neues Deutschland, 동베를린 1981년 4월 12일

27. 70, 71번 의정서 메모와 경계위원회(Grenzkommision)

1981. 5. 27.

1981년 5월 27일 오이텐에서 열린 경계위원회에 서명한 두더

(Duder)시와 헤징엔(Heringen)의 식수 공급에 대한 매년 일괄지불의 새로운 결정과 두즈버과 살강에 보조 경계표시의 재검사와 정돈으로의 원칙에 대한 의정서 메모가 인쇄되었다.

경제위원회-원리원칙과 행동에 대한 기록물, 1985년 본에서 연방내각의 내독성에서 나옴

28. 인민의회 선거에 대한 서방 3강대국의 성명

1981. 6. 14.

1981년 6월 14일 동독 정부는 베를린 동부에서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그 국회의원의 경우 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동독인민의 회로 선출되었다. 프랑스와 대영제국, 북아일랜드 그리고 미합중국의 정부는 소련에 있는 그들의 대사관을 통해 이러한 조치때문에 소련 정부에 대해 합법적이고 외교적인 반대를 전개하였다.

이 선거는 1979년 6월 28일 인민의회에서 결정된 동독-선거법규의 변화 원칙에 의해서 거행되었다. 이것은 베를린 동부의 대표자가 직접 선출하지 않고, 그 대신 동베를린의 시의원 모임을 통해 선출되는 그 이전의 실행 방법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실행은 1971년 9월 3일의 4강대국의 협정을 그 예로 인용한 현재 상황의 일부분이다). 동독이 베를린 동부에서 시행했던 이 새로운 시도는 베를린 동부가 동독의 한 지역이었을 때 이 지역에서 행하여졌다. 이것은 베를린의 특수한 한 지역 상황을 규정짓는 전쟁시대와 전후 시대에서 나온 협정과 모순되고, 또한 베를린 전역에 유효한 1971년

9월 3일의 4강대국 협정에도 모순된다.

1977년 5월 9일의 런던 성명에서 프랑스, 영국 및 미국의 정부들은 베를린의 특수한 지역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꿀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들은 또한 미래의 모든 시도, 즉 권력과 책임에 이의할 가지도록 지시하고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 등은 독일에 근거하여 전체로 그리고 베를린을 모두 4구역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였다. 이것은 프랑스, 영국, 미국 그리고 서독의 외무장관들이 1979년 6월 29일 도쿄에서 가진 성명에서, 그리고 1979년 7월 9일 모스크바에서 프랑스, 영국, 미국의 대사관들에 의해 고조된 항의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이 세 동맹국 정부들은 그러므로 그들이 많은 이전의 기회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했었던 입장을 재차 강조하려고 한 것이다. 동독의 기관으로부터 확정한 일방적인 결정은 베를린의 법률 상태와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이 세 정부들은 더 나아가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베를린에서 충분히 이용할 것이다.

출처 : 1981년 6월 14일 서베를린에서의 3강대국의 성명

29. 독일사회당 서기장 및 동독의 국가평의회 의장인 에리히 호네커와 연방 수상 헬무트 슈미트의 만남에 관한 공동 성명

1981. 12. 13.

독일사회당의 중앙위원회의 서기장이며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인 에

리히 호네커의 초청으로 서독의 연방 수상인 헬무트 슈미트가 1981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동독을 방문하였다.

헬무트 슈미트와 에리히 호네커는 두 독일 국가간의 관계의 상태와 발전 가능성에 관한 그리고 유럽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국제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대화는 객관적이고 마음을 탁 털어놓은 분위기에서 개최되었다. 서독에서는 에공 프랑케 내독성장관과 오토 람브스도르트 경제성 장관 및 그 밖의 사람들이, 그리고 동독에서는 돌리부로스의 위원인 독일사회당 중앙 위원회 서기장, 동독의 국가평의회 위원인 군터 미탁박사, 독일사회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외무 장관인 오스카 피셔와 그 밖의 사람들이 회담에 참여하였다.

헬무트 슈미트 에리히 호네커는 독일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그들의 강력한 주장을 확신하였다.

쌍방은 유럽의 평화 보호에 대한 그들의 큰 책임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동-서 관계에 대한 어떠한 부가적인 부담도 양 독일 국가의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양 국가에서는 서로 다른 사회질서가 존립하고, 그들은 서로 다른 동맹국에 속해 있으며, 표명된 양 쪽이 긴장완화의 과정을 활발히 촉진하고 지속적인 평화 보호에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의 확고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잘 알고 있다.

헬무트 슈미트와 에리히 호네커는 국가들간의 정치적인 대화의 큰 중요성에 대하여, 특히 현재 국제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평화 정착과

현존하는 긴장구조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큰 책임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들은 평화적이고 권리가 동등한 국가의 협동작업으로서 어떠한 이성적인 양자택일도 없고, 이러한 협동작업이 국제연합의 헌장에 그리고 헬싱키 폐회에 근거로 하는 목표와 원칙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양방은 1972년 11월 21일 「동독과 서독 사이의 관계의 토대에 대한 조약」을 맺은 후 상호 발전한 것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조약과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후에 체결된 합의와 법적 가능성들, 그리고 양 쪽이 모두 유익하기 위한 전제와 나아가서 더욱 심화된 협동작업을 이룩했다는 것을 확고히 했다.

근본 문제에서 폭넓게 존재하는 의견 차이와는 관계없이 그들은 유럽에 있어서의 평화와 보호에 대한 관심에 그리고 양 독일 국가에 있어서의 인류의 안녕으로서 좋은 관계를 위한 노력을 변함없이 계속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강화하였다.

그들은 협의와 대화를 여러 가지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추진하고 현존하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들 관계들의 더 넓은 평화적인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시도할 생각을 갖고 있다.

양측은 1971년 9월 3일에 합의한 4강대국 협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그들은 이 협정이 10년 이상 본질적으로 유럽의 중앙에서의 상황을 강화하는데 기여했고, 그들의 강한 태도와 완전한 방향 전환은 유럽의 지속적인 긴장 완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였다.

그들은 가정 결합과 운명이나 법으로 시달림을 받는 경우의 완화, 그리고 다른 인간에 적인 문제를 강조하였고 또한 이러한 영역에 대한 노력이 구조적인 정신에서 수행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양측은 여행자 교류와 방문자 교류의 문제와 또한 관광여행의 문제에 대해 마음을 탁 털어놓는 의견교환을 했다.

그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1980년 9월 9일에 개최된 최저 교환의 증가에 대한 그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설명하였다.

양측은 전체 위원회의 일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또한 국경 연장의 개방문제를 설명하려는 노력과 경계선 영역에서의 상황을 더 많이 개선하겠다는 노력에 대한 견해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들은 주변 세계의 안전의 위협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홍수 대비문제에 관한 전문가의 말이 단숨에 아주 구체적인 해결로 인도할 것을 기대한다.

학문과 기술 그리고 교육 제도에서 협동을 하려는 의도가 강화되었다. 그러한 노력은 또한 그 영역에서 평화적인 조약들로 수행되어졌으며 경험의 교환에 관한 테마의 제의는 이러한 영역에서 교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도한다.

양측은 다른 영역에서는 문화의 협동 작업과 교류의 더 많은 발전에 대한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이것이 현존하는 가능성의 테두리에서 서로 강화하려는 의도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따라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반대되는 지식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저널리스트들의 협동작업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들은 양 독일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의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였다.

양측은 서로 반대되는 관심 속에 놓여 있는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협동작업을 장기간에 걸쳐서 발전시키고 쉽게 하고 심화시키는 일에 노력하였다.

현존하는 협의의 토대 위에서 그리고 양측의 가능성에 비례하여 상품의 교환을 확장하고 그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들은 협동작업의 중요성을 어떤 계획이나 계획의 상호 작용, 또는 제3시장에서의 협동작업에서 강조하였다.

양측은 유럽과 전 세계의 테두리에서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호 작용적인 긴장의 필수불가결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에너지문제의 영역에서 그들의 준비와 쌍방의 구체적인 협동작업을 관측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서독과 다른 서유럽 국가들을 위한 소련의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합의의 관계에서 동독은 소련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동독을 통하여 서베를린으로 공급하는 협정을 강화하였다. 관계자들을 필수불가결한 규칙들을 강화하기 위해 회담하였다.

헬무트 슈미트와 에리히 호네커는 보호와 협동작업에 관한 회의를 통하여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발전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그것에 새로운 자극을 줄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으로써 헬싱키 회의의 모든 원칙과 규정들이 완전한 효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류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들의 협동작업의 관심에서—그들은 전력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마드리드의 다음 번에 계속되는 만남의 상황과 의도들이 강조되었다. 그들은 폐회식의 모든 영역에서 진전의 관심속에 있는 더 많은 지속적인 노력에 대하여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다음 번에 만나자고 서로 이야기하였다.

양측은 특별한 고려와 신뢰를 만드는 조치의 계속적인 발전에 모두 바쳤다.

그들은 그들의 결정이 마드리드에서의 다음 번 만남에 대한 신뢰와 보호를 만드는 조치와 유럽에 있어서의 준비 감축에 관한 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표명하였다.

헬무트 슈미트와 에리히 호네커는 실제로 협정된 조치를 준비의 한계와 준비 감축에 둔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들은 그것이 보호의 관심 속에서 필수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통하여 합의 확고한 평형으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영역위에서의 전진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기여를 하는데 적당한 것이다.

양측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전문 기관에서 구체적인 확실한 성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심화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그들은 눈앞에 처한 두번째의 중요성을 이토록 신중하게 준비된 준비 축소와 필수성에 대한 연합 국가들의 국제적인 특별회의 소집

을 헬무트 슈미트와 에리히 호네커는 핵무기 한계의 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그들은 중거리 핵무기의 한계와 축소의 과정의 속행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1981년 9월 23일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합의된 토론이 1981년 11월 30일 겐프에서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표명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그때 그때의 견해와 그들의 동맹국의 관계에서 나왔던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의논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협상이 곧 구체적인 성과를 이룩할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이야기하였다.

헬무트 슈미트와 에리히 호네커는 전부력과 군비의 감축과 중앙 유럽에서의 관계하는 조처에 대한 비인협상의 상황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유럽에서의 보호와 확고함의 이러한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협상의 성과에 기여하는 그들의 의지를 더 심화하였다.

헬무트 슈미트와 에리히 호네커는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들에서의 투쟁 상황들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그들의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인 규정들의 필수적인 것, 즉 모든 관계자로부터 나온 자제심과 절제 그리고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구조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상황은 국제적인 보호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중요성의 발전을 하는 곳에서 강조되어진다. 양측이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에서 발생된 상황의 정치적인 법칙들의 필수성에 대해서 변함이 없고 그럼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서

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연합 국가의 역할과 행동이 국제적인 관계의 법칙들에서 그리고 세계가 서로 직시하는 중요한 문제들의 해결에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하는 최근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모든 성공적인 노력이 그들의 성취로 실행된다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관계와 더불어 산업적으로 발전된 국가와 개발도상국 사이의 관계가 형평, 상호 간의 이익, 동맹과 모든 국가들의 관심에서 착실한 고려등의 토대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들 양측의 의견 교환이 필수적이고 유익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들은 상당히 고조된 정치적인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의 전진과 접촉의 강화에 대한 1972년 12월 21일의 관계의 토대위에서의 계약의 일치를 말하였다. 더욱이 특히 기본 계약의 서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합의의 토대 위에 정치적인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양측은 동독과 서독 사이 관계의 더 넓은 발전이 유럽에의 긴장 완화와 평화 유지의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서독의 연방 수상은 독일사회당의 중앙위원회의 서기장인 동독의 국가평의회 의장을 서독에 초청하였다. 그 초대는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받아들여졌다. 그 날짜는 후에 합의될 것이다.

출처 : 1981년 12월 15일자 본의 연합 정부에서 발간하는 기관지의 고시

30. 뮐렌호수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연방 수상 헬무트 슈미트의 테이블 연설

1981. 12. 12.

매우 존경하는 의장님!

우선 본인은 의장님께, 또한 본인의 동료와 대표단의 이름으로 우리가 작가 테오도로 포타네로 유명해진 지방의 도시 한가운데서 대화를 하며 모든 독일 사람으로부터 동독과 서독에서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관찰되어지는 대화를 위해 만날 수 있다는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그러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감정에서 정해지는 것이지 단순히 이성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은 우리가 우리들의 대화로써 산을 여기에다 옮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실하게-의장님이 정당한 것과 같이, 본인의 의견을 따라 이야기한다면-변함없이 어려운 국제적인 상황에서 우리들 국가간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충만한 과정에서 한 부분을 진척시키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님께 있어서 독일인들은 최대한의 사실주의자로서 되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10년 훨씬 전 에어푸르트와 카셀에서 빌리브란트와 빌리슈토프간의 최초의 만남이래로 인간들 사이에서의 결합에 도움을 주었던 우리의 쌍방 정부들 사이의 많은 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인정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럽에서의 긴장 완화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도 할 수 있습니다.

다.

그 후로 우리가 했던 것, 특히 우리가 서로 서로 우리 관계의 근본에 대한 계약의 서명이래로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많은 것을 아주 자명한 것으로서—지금까지 극복할 수 있었던 장애물을 측정한다면—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보여줍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유럽의 평화정치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는, 실현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 독일 국가들이 그들의 이익의 평형을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도 다른 한 쪽에게 지나치게 많이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서독과 동독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국가적인 질서 사이에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문란해질 수 없고 문란해져서도 안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쌍방에 있어서 우리가—책임감있는 행동을 통하여—전세계 시민에게 증명해야 하는 독일인의 특수한 평화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무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에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초대 당의장인 쿠르트 슈마허(Kurt Schumacher)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과거의 공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쌍방의 사람들이 평화보호를 많은 걱정으로 회의하는 시점에서—우리는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비록 우

리의 능력이 물론 어떤 목적달성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고착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달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부연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양 쪽 국가 사이의 계약들과 합의의 연결에 많은 최초의 후퇴와 실망이 희망을 증대해 주는 그 어떤 것을 결합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기 독일인과 우리의 독일인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다. -본인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단어의 철자법상의 의미에서 그리고 동시에 단어의 비유적인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본인은 여러 차례 본에서의 독일 연방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의장님과 본인은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우리들의 담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담화는 어제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3일 동안에 각각 몰두하거나 걱정하는 모든 것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무총장님과 본인, 우리들은 우리에게 유럽의 평화유지에 대한 중요한 공동책임의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담화가 어떤 절대적인 평화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독일 대 독일의 대화를 우리 양 쪽이 기본계약의 제1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실함과 확고함의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의 담화는 오히려 기본계약의 제1장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서독과 동독은 형평의 원칙위에서 서로 서로 정상적인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간다.”

또한 성실함과 정직함은 우리가 기본계약 제1장에 나오는 이러한 목표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해 줍

니다. 또한 우리는 단순히 합리적인 것에 가까운 관계들로 부터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상적인 좋은 관계로서 대단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의장이신 호네커씨와 본인, 우리는 어린 시절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의장과 본인 자신이 서로가 아무런 얽매임 없이 이미 2년전-의장님께서 또한 그것을 되풀이 하셨습니다.-독일 땅에서 두번 다시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흥금을 열고 확신했습니 다.-똑같은 요소의 방향선의 사실은 약속되지 않은 동시대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는 독일땅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이러한 견해 속에는, 우리들 관계의 기초와 유럽의 평화질서의 기초와 더불어 해야 하는 이러한 견해속에는, 강요되는 논리학과 더불어 미래에서는 더 많은 신뢰와 더 많은 정상, 더 많은 자의식을 서로 서로를 과도기로 만드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들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이익과 인류를 위해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본조약 속에 있는 환상과 능력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가능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미 이러한 조약의 서문에서 우리는 국가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혔습니 다. 의장 자신이 꽤 오래 전에 국가 원칙에 대한 의장님의 인식을 표명하셨습니다. 본인의 깊은 신념에 대한 국가사상은 모든 독일인에게 변함없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기본 문제에 대하여서는 서로 협조할 수 없습니 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1972년 기본조약의 서문에서 국가의 문제가

존재하고-양측 국회가 그것에 동의했던 두 가지 사실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서는 서독의 기본법에 명시된 신념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북부 전서에 있는 본인의 임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본인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본인이 결코 독립국을, 서독의 주권을 의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과 본인은 모두 1975년 8월 1일에 열린, 사람들이 헬싱키 회의라고 불렀던 기록에 서명을 했습니다. 헬싱키는 책임감있는 정치적 지도자가 외교관들의 도움을 받아 시작했던 과정을 끝까지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그 반대로, 모든 조인 국가들은 유럽에 있어서의 안전과 협동작업에 관한 회의인 이 헬싱키 기록을-우리 대부분은 줄여서 KSZE라고 부릅니다-그 모든 부분에서 그의 독자적인, 사실상의 행동 원칙을 만드는 임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현재의 KSZE의 연속회의의 경우-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단순히 많은 형식들 속에서 피폐하게 된 타협을 추구하는 책임은 정부 관리들에게 있고 또한 나머지는 외교관들에게도 있습니다. 단순한 형식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의장님의 국민들에게 이해될 것이며 전 유럽의 시민들도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기본조약의 이종의 비호하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헬싱키의 회의 성명 서하에 있으며, 그것은 다가오는 미래를 위하여, 더욱 좋고 새로운 공동체를 가능케 하는 양 독일국가 정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것은 전 유럽에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독일인들과 우리 독일

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서로 분리된 경계를 오늘날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긴장완화와 진정한 이유의 정신은 양 쪽 독일 국가간의 경계에 신뢰감을 주기에 틀림없습니다.

의장께서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비록 유럽 사람들 사이에 많은 만남과 접촉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독일인을 아주 무시 무시한 파국으로 몰고 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양방 독일국가는 그들이 속해 있는 양대 연방제도 속에서 활발히 서로 협력해야 하고 긴장을 완화해야 하며 대결을 피해야 하며, 가능한 한 투쟁을 합리적인 타협을 통한 준비의 전지 속에서 없애야 합니다.

의장께서는 의장님의 연설에서 당연히 우리들의 만남이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개최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미래 속으로 신뢰는 여기 저기에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양측에 대한 위협함이 있습니다. 본인은 3개의 탄두를 가진 소련의 새 중거리 미사일가 동·서간의 군사적 평형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을 심히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물론 본인이 그것을 적절히 하려고 합니다—평형이 또한 근본적인 사후무장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을—무기의 한계나 무기 감축을 통하여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겐프에서 시작된 협상에서 양측 모두가 중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은—의장님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 모두는 직접 간접

적으로 이러한 협상에 관계합니다. -동독과 서독 양측 모두 이러한 협상들에서 어떠한 특별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악의 제2차 세계대전이 바로 독일 땅에서 발발했기 때문에 우리 독일인들은 흥미있어 하는 관객의 역할만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때 그때의 연맹의 충실한 동료로서, 우리와 의장님은 분명히 그곳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견해를 밝혀야 하며, 양 독일 국가에서의 사람들의 걱정을 밝혀야만 합니다. 연방 정부는 겐프에서 개최된 협상이 이 일을 해야만 하고 또한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들의 정치에도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의장님으로부터 오늘 이야기된 대화물 소련의 당서기장인 브레즈네프씨와 함께 3주전에 했습니다. 브레즈네프씨와 본인 사이의 공통분모는 평화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본인은 겐프에서 열리는 협상이 시작하기 바로 며칠 전에 연방 정부가 이 협상에서 하는 큰 포부를 설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메리카 연합의 훌륭한 동기까지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간에는 필수적으로 서로 서로 대화하며 차례 차례로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본인은 동·서에의 이 담화가 어떤 괄목할 만한 일치를 했다는 것을 만족해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 중에서 대화는 지배적인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독일국가 양방은 평화와 안전에 관한 이러한 대화를 시작했

습니다. 우리의 의무장관들인 겐셔와 피셔 사이의 대화는 우리가 동기와 실제적인 숙고들을 더욱 잘 이해하는 데에 서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본인은 또한 무기한계의 그토록 결정적인 중요한 주제에 대한 의장님과 우리의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 교환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접촉을 효과적으로 하고 최대한 구체적인 임무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세계의 전략상 무기의 한계; 재래식 무기의 한계; 아프가니스탄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중동 등등에 있습니다.

모든 이러한 경우에는 대화와 중용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오늘날 평화를 우리는 서로 서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대립해서는 안됩니다.

연방정부의 목표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보장연맹입니다. 동쪽과 서쪽에 있는 국가와 남쪽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안전보장연맹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서는 베를린에 대한 4강대국의 협정에 찬사를 보낸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찬사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협정은 중앙 유럽의 상황을 안정되게 했습니다. 그 협정은 실질적인 진보이며 연방정부는 강한 통일과 4강대국 협상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의무적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의장님께, 상호 작용과 협동작업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동독을 방문했던 이 시점에서 작년 10월 그러니까 1980년 취했던 조치와 또한 베를린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압박했던 조치를 의장께 비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친구인 헤르베르트 베너(Herbert Wehner)는 지난 주에 오늘의 회동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활발한 대화의 확실한 중단에 따라서 우리 국가들과 국민들 사이의 관계를 양 국가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규정을 실현화 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 시민에 의해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철저하게 현실적인 기대가 표현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사고에서 우리의 연방 대통령인 칼 가스텐(Karl Castens)는 본인에게 의장님께 전하라고 한 안부와 더불어 의장님께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안부를 기꺼이 전했습니다.

테오도르 폰타네(Theodor Fontane)는 본인이 5년동안 항상 다시 읽고 있는 그의 저서 <마르크 브란덴부르크를 통과한 방랑(Wanderungen durch die Mark Brandenbrug)>에서 이러한 구절을 썼습니다.: “<모든 세상이 이미 오래 전에 베르벨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의장님, 우리는 둘 다 이러한 만남에 무리가 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합리성이 밀받침된 이웃에 도달하기 위한, 마침내는 훌륭한 이웃이 되기 위한 더 많은 자아인식과 더 많은 노력에 성공한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베르벨린 호수와 쇼르프하이데(Schorfheide)와 뢰른호수(Doellnsee)는 양 독일국가의 국

민들의 특별한 기억 속에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의장님, 본인은 의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기 테이블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독일인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의 평화를 위해서 축배를 드는 바입니다.

출처 : 1981년 12월 15일 자 본의 연방 정부의 기관지의 고시

31. 뮐렌호수의 한 음식점에서의 독일사회당의 중앙위원회 당서기장 겸 동독의 국가평의회 의장 에리히 호네커의 테이블 연설

1981. 12. 12.

존경하는 슈미트 수상작하!

각하께서 본인에게 허락하신다면 각하와 각하를 수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즐거운 체류가 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국제적 상황이 눈에 띄게 복잡해지고 첨예화되는 시기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점점 더 고조되는 긴장은 인간의 삶에의 근본적인 관심을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올바르게 평가하는 정치적 책임을 감수하고 결심하고 신중히 생각하여 행동하는 그런 모든 일에 달려 있습니다. 평화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서 간의 대화는 곧 모든 잘못된 걸음걸음이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고, 더욱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 대화에

구체적인 업적을 쌓을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몽상가가 아닌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 우리 시대의 기본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입
장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을 열고 의논했습니다. 그 때, 우리
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 합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본인은 무엇보다 어떠한 대표적인 양자택일도 평
화유지와 긴장완화의 정치로 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 생각해 보
았습니다. 그러나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첨예
화된 국제적 긴장의 원인에 대한 문제와 평화 유지로 가는 길에
대한 문제의 해답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세계에서의 현
재 상황이 염려에 대한 그 근원을 제공합니다. 상호작용이 대결로
대치되는 긴장완화의 정치가 일반적으로 거절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서 설명했던 노력들은 국제적 안전보장과 국가들의 평화적인 협동생
활에 대한 위협을 안고 있습니다.

주지의 사실처럼 동독은 1979년 서유럽에서 미국의 신형인 핵의
중거리 미사일의 위치에 대한 나토(NATO)의 브뤼셀의 결정에 앞서
미국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황이 첨예화된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
다. 그러나 사후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대략의 군사적
평형을 깨뜨리고 군비확장 경쟁을 더욱 과열시킬 사전무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이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입니다. 이를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동독 시민의 관심에도 서독
시민의 관심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권리가 무사
태평한 평화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시민들의 권리나 관심에 등을

돌리는 자입니다.

국제사회는 온전한 권리로서 기대에 가득차서 며칠 전 겐프에서 개최된 유럽에서의 원자핵무기의 문제에 대한 소련-미국 협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상의 시작은 좋은 결과를 위한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에는 미국이 제시한 〈원점해결〉을 상세히 관찰해 보면, 소련과 우리의 방위동맹의 부담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해결이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 대륙의 운명에 있어 그토록 중요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럼으로써 양측을 위해 수용할 수 있는 해결, 즉 평형의 원칙과 안전 보장의 원칙에 합당한 해결을 찾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하는 동안에 양측이 유럽에서 중거리 핵미사일의 배치화와 현대화를 포기하지는 소련의 제의가 지금까지 거부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의견이 일치된 한 예로써, 주지하는 바와 같이, 레오니드 브레즈네프는 소련의 선 의지의 표현으로 제의에 대한 실행으로써 본에 더 나은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련은 협상에서 목표로 되어야만 하는 무기의 낮은 수준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에 기여해야 합니다.

모두 다 아는 바와 같이 모라토리움(Moratorium)의 사상은 물론 양측의 지난 시간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존중되어 왔습니다. 또한 특히 핵무기로의 최초의 전향을 국제적으로 존중하자는 제의는 핵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거의 결정된 모든 국가에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본인은 임의의 숫자로서, 말하자면 숫자놀이으로써 핵전쟁의 무시무시한 위험에 대해서 국민들을 기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현존하는 숫자상의 파괴의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수억 인간의 운명이, 문자상의 국민들의 삶 또는 죽음이 더 이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는 장기적 무기의 강령, 중성자 무기에 대한 결정 또는 한정된 핵전쟁의 구상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의식과 결정능력 그리고 구체적인 정신에서 나온 지속적인 평화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인간의 소망에 합당한 방법과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치적 의지에 또한 우리 시대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연방 수상각하!

본인은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다른 국민들의 삶에서 많이 통찰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서로 연관성이 없는 독일 두 국가, 즉 평화적인 좋은 관계에 대응하면서 국제적인 모범을 보존하는 두 독일 국가의 존재가 인류의 주 관심사의 해결을 위해-평화를 위한-크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인식한 것처럼 동독과 서독의 관계가 결코 적지않은 힘으로, 유럽에서의 전체 상황을 결정한다는 사실에 본인은 수상 각하와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평화의 관심은 맨 위에 있습니다.

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또한 인간을 위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웃은 새로운 미국 핵미사일의 그늘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

다. 우리는 세계 정치의 끈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방법을 통하여 국제적인 풍토의 개선을 위한, 무엇보다도 유럽에의 평화 고착화를 위한 본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로서 모두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어제와 오늘 계속 되었고 쌍방 관계의 발전에서 볼 때, 상당히 진척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등한히 하는 자는 10년전에 보았으며, 그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그 성과를 경시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모든 기대들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확장을 방해하는 과거에서 나온 많은 성명서와 주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도달되어야 하는 것을 유지하고 평화적인 조건들 하에서 더 넓은 확장을 할 수 있는 전제들을 만드는 일입니다. 동독과 서독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마치 그것이 독립적이며 서로 연관이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적인 통례인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것은 주권과 독자성의 엄격한 일방적인 주의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수상 각하, 각하와 본인은 독일 땅에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의 고통을 특수한 경험에서 이해하는 세대에 속합니다. 두 번 다시 민족의 이러한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치적 사상도 의견의 차이도 많은 문제들 속에서 최고의 지식과 평화에 대한 양식, 인류의 최고선에 기여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의심의 여지없이 역사적인 전환점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

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을 국민들의 생활에서부터 추방하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평화를 보장하는 일에 성공하거나, 또는 긴장이 더욱 더 팽배해지고 인류가 핵파멸의 신음속으로 넘어가 체이는 위협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에 대한 노력으로부터 나오게 된 책임의식 있는 정치가의 만남은 공동작업과 가치있는 긴장완화로 가는 한걸음 절음입니다. 수상 각하,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우리의 담화를 평화와 이성과 인간성의 근본에 지배받는 정치에의 유일한 기여로서 간주합니다.

유럽의 중앙에 있으며 양대 세계정치의 분리선에 그리고 양대 군사동맹에 놓여있는 동독과 서독은 특히 자유와 긴장완화를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동독과 서독은 역사의 가르침을 잊지않고 다시는 독일땅에서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된다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양국가는 세계 정치의 상황을 건강하게 하고 군비축소 긴장완화의 진행을 80년대의 경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전체의 힘을 모으면서 모든 기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양국가 간의 차이점은 정치적·사회적인 관점에도 또한 있습니다. 유럽의 국민들과 역사 앞에서 이러한 책임이 있으며 이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고 외면해서도 안됩니다. 수상 각하, 각하의 수많은 설명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대화를 통하여 본인은 각하께서 이 견해를 함께 나누고 있다는 확신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어떻게 동독과 서독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평화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고의 교환에 중요한 의미를 두며, 이미 사고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긴장완화가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구축된다면 모든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연방 수상각하!

우리는 평화적인 공존의 원칙에 기초된 동독과 서독간의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배타적인 조약과 협정의 토대에 합의하면서 양방의 관계의 전체적인 정상화를 위한 헬싱키 폐회식과 더불어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의 제안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서독 정부 또한 양측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든 각하측의 적절한 제안과 열망을 선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것입니다.

평화와 평화적 공동작업의 결실들을 잘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결실을 더 많이 거두도록 하는 우리의 노력을 위해 잔을 들시다. 각하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안녕을 위하여! 동독의 시민들과 서독 시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출처 : 1981년 12월 18일자 동베를린에서 출간된 외교 정치의 교환문서

32. 독일 의회에서 연방 수상 헬무트 슈미트를 통한 폴란드에서의 발전 및 양독간 접촉에 대한 연방 정부의 성명

1981. 12. 18.

대통령과 신사 숙녀 여러분!

이번 주에 있는 폴란드에서의 발전과 전시 국제법의 규정은 우리에게 깊은 염려를 하게 합니다. 우리는 수 많은 구금과 큰 수용소들, 충돌, 부상-그리고 죽음에 대해 듣습니다. 군인들은 노동자들에게 총을 쏩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구속됩니다. 자유노조(Solidaritaet)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본인은 온 마음으로 노동자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온 마음으로 폴란드에서의 전쟁 상태가 빨리 끝나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하네스 폴2세(Johannes Paul II)는 이미 너무 많은 폴란드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더 이상 폴란드의 피를 흘려서는 안된다고 불르짖습니다. 독일-폴란드 역사 앞에서 모든 독일 정치가는 이러한 호소에 공감해야 합니다. 폴란드 국민의 깊은 고통에 새로운 상처를 더 하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유럽 공동체 구성 국가의 외무장관들이 주초에 런던에 모여 정부들과 국민들이 폴란드에서의 과정을 어떤 감정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 독일 성명에 아주 완전히 찬성합니다. 본인은 무엇보다도 헬싱키 회의의 모든 조인 국가들이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내적인 문제속의 모든 간섭을 억제하는 기대에 동감합니다.: 폴란드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그리

고 더 이상 폭력의 사용없이 해결하고 폴란드 정부 스스로가 헬싱키 회의에 나온 그 의무를 진지하게 실현한다면, 개혁과 재건의 중단된 과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황처럼 발전이 폴란드를 위해서—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또한—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도움을 주려는 편에 서 있습니다.

폴란드 인민공화국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치는 이 국가의 국제적 무관함에 앞선 강한 경외의 정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폴란드 국민에 대해 갖는 우리의 깊은 동정심을 표현하는 정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폴란드에 식량 보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수천만 우리 시민의 많은 자발적인 도움이 연방 정부에게 이러한 방향에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폴란드 국민과의 활발한 연대 책임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연대 책임은 또한 우리 독일의 평화의지의 표현이며 우리의 평화 준비의 표현입니다.

그러한 평화의지는 본인이 오늘 보고해야 하는 담화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12월 3일에 열린 의회에서 소련 서기장과 함께 나눈 우리 대화의 경과와 성과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본인은 그와 관련해서 겐프에서 개최된 미국-소련 협상의 시작과 함께 유럽과 세계의 평화를 더욱 안전하게 하는 진행에의 방

법을 시작하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인은 제3차 담변을 위한 의회에서 위커마크에 있는 베르벨린 호수와 뮐른 호수에서 12월 11,12,13일에 개최된 동독의 국가평의회 의장이며 당서기장인 에리히 호네커와의 만남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모두 세가지 사건들이 연방 정부의 평화적인 정치의 공동 구상에 적합했습니다.

호네커 서기장과 본인과의 만남—그 만남은 10년도 훨씬 전인 에어프르트와 카셀에서의 빌리브란트와 빌리 스토프와의 만남 이래로 독일 땅에서 처음있는 일입니다.—겐프 협상의 시작을 위해 어떤 것이 부여되었었는가 하는 점에 비슷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두가지 점에서, 그 만남은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유지로 가는 독일 대 독일의 이바지를 전수하고 동시에 양 독일국가와 그 국민들 사이가 좋은 관계로 가는 어려운 길에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한다는 것에 비슷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조직적인 연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호네커의장과 본인은 오랫동안 이 만남을 계획했었습니다.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진주때문에, 그리고 지난 여름에의 위협적인 폴란드 진주때문에 그 만남이 두번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독의 사람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만남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희망하였고, 본인은 그들로부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약 20년전에 마리온 그래핀 뉘호프, 테오 줌머 그리고 루돌프 발터 레온하르트 등이 동독을 돌아다니던 기자단 여행에 관한 보고에

<먼 나라로의 여행>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12년 이래로 사회-자유주의 연합정부는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이 <먼곳>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12년 동안 실제로 서로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한계의 장애물이 언제나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독일인들에게 이러한 장애물은 언제나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독일 국가간의 태도는 반전의 국면에 따른 새로운 진보로 가는 도약이 필요합니다. 아주 긴 장장 15시간에 걸친 집중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열린 호네커의장과 본인 사이의 정치적 의견교환은 본인이 연방수상으로서 다른 정부와 더불어 지금까지 해왔던 가장 효과적인 담화 중의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그는 부드러운 음조로 진행했으며 항상 더욱 더 상대적인 태도로서 때로는 그의 목표 수행에서, 그리고 열망에서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더욱 좋은 능력을 가지고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태도는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관계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아주 어려운 동시에 아주 개방적으로 진행된 대화에서 쌍방 관심사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명료함을 얻어 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적어도 더욱 이성적으로 서로를 다루기 위하여 과거를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필요했습니다.

관계의 연결 조직이 강화되고 기초될 수 있다면, 그것은 독일 양쪽 국민을 위해서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추구하였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일에 확신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즉 여기나 저기나 똑같이 사람들이 각 독일연방 수상의 이러한 의무의 실현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이 담화에 의하면 두 독일국가의 현실, 사실성, 존재 간의 긴장관계에 관한 것과 우리 기본법의 서문에 기초로 되어 있는 모든 독일 국민에 대한 요구에 관한 것은 <자유로운 자결속에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문제와 다른 기본적인 문제 속에서의 상반된 견해가 베르켈린호수와 뉘른호수에서 그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환상에 빠지지 않았고 확신을 포기하는 다른 것을 강요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모든 개방 속에서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국제적인 문제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그리고 이것은 본인의 깊은 확신입니다—국가의 사상과 국가의 동일성은 우리 독일인에게 변함없이 살아있고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12월 3일 정부 설명에서 본인은 이 만남의 전제로 양방 독일국가간의 대화와 담화가 있어야 하고, 이 기회에는 새 협정에 대한 어떠한 비준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추측과 기대와 높이 매달린 측량 막대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사실 양측은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명백히 내놓았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의견 교환 규정이 여기에 속합니다.

프랑케와 그라프 램브스도르프 연방 장관들은 인간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여행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데에 이바지했습니다. 내년에 -본인으로부터 근거된 희망으로- 다른 지역에서 동독과 서독간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발전을 위한 만남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담화에서 동독지도부 또한 정체의 극복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본인은 호네커서기장이 수요일에 SED의 동베를린에서 발간하는 신문인 <새로운 독일(Neues Deutschland)>에서 했던 인터뷰에서 호네커서기장 또한 이 만남의 정신에서 대화의 실질적인 정치적 전환에 접근하려고 한다는 것을 추측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미 만남에서 나온 자극을 실생활 속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6개월 동안 열망해온 협정이 금년 12월 31일 이후에 효력을 지닌 연동규정과 만났습니다. 우리와 동독간의 경제관계가 성취되었습니다. 양측은 경제관계를 확장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양독관계의 진지함이 표현되고 더욱 더 촉진시키는 장기적인 구조협상이 자극을 줍니다.

따라서 양측은 그에 대한 대화를 취할 것입니다. 현존하는 협상들은 -또한 더욱이 1951년 베를린 협상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합니다. 더 나아가 상업상의 조약은 완전히 현재의 협상의 영역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TSI는 공업과 상업을 위한 신탁전(Treuhandstelle)으로써 제한없이 지금까지와 똑같이 모든 베를린의 회사들을 포함하여 그 일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재정적 관계들이 그 관계의 종합적 연관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의혹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 만남

에서 독자적인 결정이 아주 절대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교환 여행과 방문 교류의 문제가 양쪽의 방침에 속하며 인간적인 문제가 똑같은 정치적 관계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대하는 바와 같이 동독 지도부는 그의 기본 수행을 고집했습니다. 본인은 여기에서 그것을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연방 정부가 강력하게 기본법과 기본조약의 규정을 지키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을 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독은 기본법을 통해 국적을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독일 국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동독이 1967년 자신의 시민법을 공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본인은 여기서 연방 헌법재판소의 전문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우리에게 오는 동독의 모든 시민들이 모든 독일인의 권한인 법의 권한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본인은 여기에서 한 예로 서독에서 잠시동안 일하는 동독의 학원들과 기업체 또는 광고 매체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로서는 왜 그것들이 일반선거로 선거권을 받거나 또는 군대 보충병, 공무원으로부터 파악되는지 본인에게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동독 국가 시민을 전제한다면, 우리가 헌법과 기본법에서 주장하는 틀은 완전히 훼손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고쳐질 수 없는 차이점과 모순은 양측을 위한 실제의 가능성들과 이성과의 관련을 통하여 부드럽게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만이 나중에 진정한 공동체로 합치기 위해서 좋은 이웃의 관계로 성장될 수 있는 이성적인 이웃의 관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독 지도자측의 훌륭한 손님 대접에 대해 감사할 따르는 바입니다. 물론 만남 끝에서는 요란하게 치장을 한 경찰과 당이 출동을 해서 귀스트로브(Guestrow)에 그림자를 던졌으며, 많은 귀스트로브 시민들이 본인과 본인의 수행자와 직접 접촉을 하는 가능성을 빼앗았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대표단 담화에서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전체 구조제도 에서의 이해관계는 양독 회동이 언제나 마주 보고 있는 어려움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스트로브는 또한 다른 경험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대성당에의 우리 모두의 방문은-하인리히 라트케(Heinrich Rathke) 대주교가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었듯이, <맑스주의자 에리히 호네커와 크리스찬인 헬무트 슈미트씨의> 방문-이 방문과 이 세사람이 합창단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는 TV모습은 동독과 서독의 시민들에게-공동체의 중요한 징표를 던져 주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으며, 테이블 연설, 코뮌니케 결정 또는 다른 사람 담화 중에 지르는 소리등으로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 자신은 귀스트로브 성당에서의 이 경험에 대해 아무런 내적인 동요없이 회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주교는 호네커씨와 본인을

동쪽 호수지역의 상징인 귀스트로브 성당과 백스타인코티크 (Backsteingotik) 즉, 바를라하(Barlach)라고 말했으며, <우리가 공동으로 할 일을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그는 <공동된 과거와 추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본인은 주교님께 <이 유산은 또한 공동된 미래를 암시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프랑케 연방 장관과 호네커 의장은 예전의 강제 수용소인 작센하우젠(Sachsen-Hausen) 및 독일군과 더불어 러시아의 강제 징병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할베(Halbe) 국군 묘지에 본인의 이름으로 헌화했습니다. 또한, 이 일은 의식속에서 공동된 과거를 가까움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처음으로 그 깊은 예리함을 얻는 공동된 역사적 배경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공동된 역사적 배경은 1969년 이후 사회-자유주의 연합이 독일 정치에서 그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와 예전 60년대의 조약 작업과 함께 양 독일 국가관계를 위해 토대와 틀을 서로 만들었을 때와 똑같이 오늘날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그때에는 이 사회자유주의 연합이 양 세계 강대국 사이에서 진행되어 가는 긴장완화의 진행에 활발하게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그 연합은 긴장완화를 진행하는 데에 유익하였고 동시에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오늘날에는 동·서 사이의 위협한 문제가 완전히 다른 기회를 즉 평화정치적인 노력을 통하여 더욱 더 독일 대 독일의 이웃 관계를 이루는 것에 비판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들의 대화는 오늘 그토록 절박하게 필요한 동·서간의 대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유럽의 상황을 신중히 의논

하였고 또한 특히 무기감축과 무기의 조절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때 대립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매우 분명하고 매우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본인은-우리의 대서양 동맹과 유럽공동체의 공통된 본질적인 입장을 토대로 하여-이미 4주 전에 브레즈네프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호네커씨 앞에서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동독에서도 독일인과 서로 유럽의 긴장을 철폐화시키지 않고, 그 대신 가능한 한 완화시켜야 하는 공통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서방에서 우리들의 우방과 또한 동유럽에서는 우리 이웃들은-본인은 이것을 금년 4월 9일 의회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어떤 경우에도 부가적 긴장이 독일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여름의 커뮤니케에서 <양 독일 국가의 관계로부터 동·서 관계에 대한 어떠한 추가되는 부담도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연방정부의 독일 정치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동독 정치지도자들의 사고와 그 정치에서 평화의 유지를 위한 열려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본인은 아무런 의혹이 없습니다. 또한 동독에서 평화에 대한 의지가 우리의 경우처럼 그렇게 강하다는 것에 본인은 아무런 의혹이 없습니다. 유럽에서의 군사적 힘의 고정된 균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일이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제1의 임무라는 데에, 본인과 호네커 서기장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중거리 무기에 대한 중요한 협상이 겐프에서 이미 시작된 시점에서 이러한 의견 일치는 중요한 것이며 본인은 그것이 많은 도움을 주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호네커 서기장과의 최근 만남에서이든, 외무부 장관과의 대화에서이든 이미 여러 차례 있었던 동독과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이러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며 또한 필수불가결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신뢰가 더 많이 생겨야 하며 생길 것입니다.

겐서 외무장관이 <화해와 관심의 맞물림을 통하여 국민들의 안전 유지를 보증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여야 하며, 숙고와 또한 이데올로기적 전도화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을 때, 본인은 그와 완전히 일치하였습니다. 본인은 독일정치에 대한 겐서의 말을 유럽의 평화정책으로서 다시 한 번 반복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더 나은 양독 관계가 유럽에서의 동-서 간의 관계를 더욱 강하고 신빙성있게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이에른 수상과 몇몇 다른 사람들이 본인에게 우리가 폴란드에서의 사태발전에 직면해서 호네커 서기장과 그의 파견위원과의 담화를 일요일 오전에 갑자기 중단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본인은 우리들의 대화가 본질적으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인가? 본인의 폴란드에 대한 말을 가로막는다면 본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겠습니다. "폴란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선도하는 극적인 것은 꼭 우리 독일인을 통하여

일어나지는 않으며 실제로는 폴란드에서도 독일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독일인들은 결코 폴란드에 대한 심판자로서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결코!”

그것은 반대로 오히려 올바르게 그리고 또 오히려 동독의 국제적 상황에 도움을 주었으며, 본인이 일요일 아침 동독의 땅에서 동독의 모든 시민들에게서 들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폴란드의 내부적 갈등을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여기 이곳에서 12월 3일에 평화, 안전유지 정책에서의 CDU와 CSU의 의사표현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은 그때 그들의 계획과 의도의 명확함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명료함은 지금까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무방항성을 체험하였고 새로이 하였습니다.

바이스커 베를린 시장이 CDU가 베를린에서 큰 집회를 열었을 때 많은 갈채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으며, 동독으로의 우리들의 여행이 폴란드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갑자기 중단되었다라면 그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새로운 독일 대 독일의 시작일 것이며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본인은 나머지 것이 바이스재커가 통치하고 있는 국가의 특수한 관심에 상응하다는 그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CSU의 수상인 스트라우스(Strauss)는 동시에 반대의견을 마음을 탁 털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CDU의 수상인 슈페트는 바이스재커의 노선을 다시금 표명하였습니다.

CDU와 CSU의 공통된 부분을 주재하는 코울은 오늘 아침 이 두

전해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코을 박사가 이러한 결정을 확실히 내리게 되지는 않습니다. 네, 기만적인 희망에 빠르게 수상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쉽게 잊혀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지도층의 연설이 단지 분명한 목적수행과 업적 그리고 결단력을 통하여 기초되어진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또한 아무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위험한 중앙 유럽의 상황에서 이웃과의 대화를 거부하거나 대화를 중단하는 자는 우리의 관심에 폭행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자는 인간의 권리에 폭행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외부의 다른 나라를 폭력을 가지고 개입하는 자는 국민의 권리와 평화에 폭행을 가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지난 30년 동안 이미 빈번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독일인과 폴란드인만이 이런 모든 것을 되풀이 할 수 있다는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유럽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화가 위협수위에 이르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대 독일의 대화와 관계 위에 질게 어려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큰 폭풍 상황은 동베를린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본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해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여화되는 것을 피하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연합국가들 내에서의 이해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협조와 방위와 의무이행과 더불어 우리의 연방 방위군을 통해 연합국을 이해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두가지 인식으로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는 독일 땅으로부터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다시는 독일이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해져서는 안된다는 것 두 가지 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네커씨와 본인의 대화가 이러한 목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귀스트로브와 뤼벡, 힐른과 마그다부르그, 드레스덴과 뤼헨 등 도처에서 우리 독일인들은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공통된 독일의 역사속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의무를 말합니다.

출처 : 본에서 발간된 1981년 12월자 연방정부 기관지의 고시

33. 서독 연방수상 헬무트 슈미트의 동독 방문에 대한 동독의 당과 국가지도부의 의견 발표

1981. 12. 23.

SED 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 즉 동독의 평의회 위원과 각 의회들은 1981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베르벨린 호수에서 SED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며 동독 평의회 의장인 에리히 호네커와 서독의 연방 수상인 헬무트 슈미트간의 만남의 성과들을 토론하였다. 그들은 만남의 경과와 성과, 그리고 에리히 호네커를 통하여 이루어진 대화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들은 SED 중앙위원회 서기장이며 동독 평

의회 의장에게 그가 수행한 일에 대해 감사의 말을 하였다.

동독과 서독 정상간 만남은 평화유지, 경쟁의 중지, 군비축소와 긴장완화 진행의 과정에 대한 긴장된 국제적 상황에 직면해서 대단히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것이다.

이 만남과 더불어 동-서의 대화는 복잡해진 국제적 여건하에서 유럽에서의 긴장완화 달성을 보호하고 튼튼히 하며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 개최되었으며 열중하게 되었다. 이 만남은 곧 오늘의 세계상황에서 평화보호를 위한 동·서간의 더 높은 영역에서의 접촉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에리히 호네커와 헬무트 슈미트간의 만남의 경과와 성과는 서로 다른 사회질서를 가진 국가들 사이의 평화적 공존정치의 생활력을 위한 훌륭한 증거가 된다.

현재 양쪽의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 사이의 분리선을 가진 지리적 상황에서 나온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 책임에서 나온 현재 상황과 평화에 대한 양 독일 국가의 큰 책임에서 나온 필요에 상응하여 평화유지와 군비경계와 군비축소가 대화의 중심이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에리히 호네커의 연설과 성명들은 국제적으로 넓은 메아리와 실질적인 반향을 얻었다. 그때의 특히 에리히 호네커를 통하여 유럽에서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브뤼셀회의 협정에서 나왔던 위험이 언급되어졌다.

아주 진지하게 그는 새로운 미국의 핵미사일의 그늘에서 어렵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이며 소련 최고소비에트 의장인 브레즈네프에 대한 독

일의 지지는 그가 동독에 잠깐동안 방문했을 때 제시한 새로운 평화제안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에리히 호네커와 헬무트 슈미트에 의해서 새롭게 표현된 양 독일 국가의 의무는 독일 땅에서 부터 또 다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며, 동독 견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삽입하는 것을 요구한다.

- 효과적인 성과를 가지고 가능한 한 짧은 시일 안에 그리고 유럽에서 신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에 대한 유예를 위한 소련과 미국사이의 핵중거리 무기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자주적인 협상은 브레즈네프 제안에 상응하여;
- SALT 과정의 계속이 지금까지의 성과의 유지와 더불어;
- 핵 무기의 최초의 사용 주위에 대한 선언;
- 군사적 긴장완화와 무기감축을 위한 회의소집에 대한 조약과 더불어 마드리드 회담의 실증적인 협약;
- 비인 협상의 미해결된 문제의 배제하에 첫번째 조약의 완성.

이 만남 동안에 에리히 호네커를 통해 마치 독립적이고, 아무 관련성이 없으며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가들의 관계가 국제적으로 통례인 것처럼 동독과 서독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특히 강조되었다.

<국가의 평화적이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공동작업에는 어떠한 이성적 양자택일도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공동작업은 연합국 헌장에 그리고 헬싱키 최종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목표와 원칙의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는 양측의 공동 커뮤니케에서 정해진 확

정은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양 독일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이것은 양측 관계에서 나온 성과를 보호하고 기본조약에 상응하면서 평화적 공존의 원칙에 일치하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아간다는 점에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근거에서 양 국가사이의 관계형성은 유럽에서의 안정에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이 만남은 마치 우리가 평화와 긴장완화의 의미에서 동독시민과 서독시민의 관심에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공동의 미래를 위한 표현이었다. 베르벨린 호수에서의 만남은 에리히 호네커가 헬무트 슈미트 연방 수상과 공동으로 확장한 것과 같이 양 독일 국가 사이의 관계의 더 넓은 발전을 위한 지고한 정치적 중요함을 유럽의 평화와 긴장완화 고착을 내포하고 있다.

출처 : 1981년 12월 23일자 (동)베를린 외교정치 교환문서

34. 내독 상업에서의 신용 연장에 관한 협정

1984. 12. 17.

주요부서 지도자

칼 카일홀쯔(Karl Keilholz)

해외 무역부

베를린

운더 덴 린더 44-60번지

협정 번호 37/1981

관할 : 베를린 조약 제8장

존경하는 카일홀쯔씨!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한 협약이 있습니다.

1. 베를린 조약의 제8장에 해당하는 협정번호 38/1974의 제1번이 1974년 12월 12일에서 198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2. 위 조약의 제2번 협정은 1982년도 상반기에 장기적인 조약을 목표로써 사용된다.

공업과 상업을 위한

신용의 책임자(TSI)

에란쯔 로쉬박사

베를린 15

쿠어취어텐담32번지

협정 번호 37/1981

관할 : 베를린 조약 제8장

존경하는 로쉬박사님!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한 조약이 있습니다.

1. 베를린 조약의 제8장에 해당하는 협정번호 38/1974의 제1번이 1974년 12월 12일에서 1982년 6월 30일 까지로 연장된다.
2. 위 조약의 제2번 협정은 1982년도 상반기에 장기적인 조약을 목표로써 사용된다.

출처 : 원본(공업과 상업을 위한 신용의 장에서)

35. 경계위원회의 의정서 각서 74번

1982년 1월 28일 경계위원회 의석에서 조인된 33-f 국경철도((헤르레스한젠Herleshansen)/(바르타Wartha)에 고속도로 작업에의 동독과 서독사이의 경계연장의 이정표에 관한 의정서 메모가 인쇄되어졌다.

- 토대와 행동에 관한 기록

출처 : 1985년 Bonn에서 내독성에서 발간됨

36. 질실한 가족문제에서 여행자 왕래에 관한 동독의 규정

1982. 2. 15.

1982년 2월 15일부터 동독시민의 여행자 왕래 법률조항에 관한 규정

비사회주의국가와 서베를린으로 가는 동독시민들의 여행자 왕래에 대한 동독 시의회 결정의 실행에 다음과 같은 것이 규정되어 있다.

\$1

1. 동독 시민들은 친척의 초대 등의 꼭 필요한 가족문제에서 동독에서 비사회주의국가와 서베를린으로 가는 출국이 허가되었다.
2. 제1항에서 꼭 필요한 가족문제란 출산, 성년식, 견신성사, 첫영성체, 결혼, 25, 50, 60, 65 주년 결혼 기념일, 생일(60, 65, 70, 75세 등 생일), 생명이 위독한 병환과 사망 등이다.

3. 제2항 기본의 테두리 안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의 경우〉

- a) 거의 확실하게 예측되는 출산날짜 전의 한달 또는 출산 후 3개월까지
- b) 유아세례로서

〈결혼식의 경우〉

- a) 호적사무소에 의한 결혼식
- b) 교회의 결혼

〈25, 50, 60, 65, 70주년 결혼기념일의 경우〉

- a) 호적사무소에 의한 결혼식의 그때 그때의 결혼기념일
- b) 교회결혼식의 그때 그때의 결혼기념일

〈사망의 경우〉

- a) 사망 이후 3개월까지
- b) 장례로서 3개월 이내

- 4. 앞의 기초들은 증거, 관청의 기록 내지는 관할 의사의 증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 5. 꼭 필요한 가족문제에서 비사회주의국가와 살고 있는 조부모, 부모, 자녀들, 형제자매(이복형제도 포함)에게 주어진다.

\$2

- (1) 법적으로 연금을 받는 연령이나 또는 생활보호대상자인 동독 시민들은 동독에서 비사회주의국가와 서베를린으로 그의 친척들의 방문을 위한 출국이 \$1의 경우에 허가된다.
- (2) 출국은 한번 또는 여러 번 매년 30일까지-유럽 이외의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는 3개월까지-허가된다.

\$3

- (1) 동독에서 비사회주의국가와 서베를린으로 가기 위한 출국신청의 경우 직업이 있는 자는 그의 직장의 문서상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동독에서 비사회주의국가와 서베를린으로 가기 위한 출국은 꼭 필요한 경우 승용차로써 허가된다.

\$4

1. 이 규정은 1982년 2월 15일에 효력을 갖는다.
2. 동시에 그외의 효력이 있다.
 - 1972년 10월 17일 동독 시민들이 여행자 왕래의 법률에 관한 규정(GBI, 2장 61번 653쪽)과
3. 1973년 6월 14일 동독 시민들의 여행자 왕래의 법률에 관한 규정 2번(GBI 1장 28번 269쪽)

베를린 1982년 2월 15일

내무부 장관

독일 국민경찰의 수석 디켈(Dickel)

출처 : GBI 1장 동독 1982년 5월 17일

\$2번 참조

1984년 8월 1일 이래로 동독 관청은 동독에서 공고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개정이 실제로 행해진다.

- 연금대상자와 생활보호대상자는 지인의 방문을 위한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출국허가는 총 60일 동안 유효하다.

출처 : 1982년 5월 17일자 내독성 장관의 통지. 본.

37. 선물휴대를 위한 무제한계 강화

1982. 2. 23.

독일민주공화국은 1982년 2월 15일에 발효되는 선물휴대를 위한 무제한계선을 강화하였다.

독일민주공화국과 동베를린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체재하기 위해 총계 동독의 1,000마르크까지 허가 및 세금없이 특정한 물품들을 휴대할 수 있다. 5일까지 단기간 여행을 할 경우 1일 1사람당 동독의 200마르크까지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조치에서 여행자 왕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조를 맞추며 세관절차완료가 이루어질 경우 이것이 완화될 것을 바라고 있다.

서독과 서베를린 여행자들은 그들이 동독의 수입금지를 주의하며

동독과 동베를린에서 체재하기 위해 특정물품들을 합법적으로 신고함으로써 마찰없는 세관절차완료에 기여할 수 있다.

출처 : 1982년 2월 23일자 본의 내독성 언론통지

38. 긴급한 가정문제로 인한 동독 시민에 대한 여행 완화

1982. 2. 25.

동독의 내무성은 1982년 2월 11일 동독 시민이 장차 또한 지고한 탄생일(60, 65, 70, 75와 모든 지속적인 탄생일)을 기회로 하며, 첫 성찬일, 즉 첫 탄생일과 성년식을 기회로 하여 서독과 서베를린의 가까운 친척들을 방문할 수 있다고 널리 알렸다. 그밖에 긴급한 가정용무로 인한 방문여행이 장차 또한 교회결혼식과 교회결혼식 기념일을 기회로 하여 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호적사무소에 의한 결혼식과 교회결혼식-아울러 이에 상응하는 기념일-은 이러한 결혼식이 시간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 서로 자유로운 여행기회를 가진다. 이러한 규정은 1982년 2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종래와 같이 현재의 이런 이유들은 증명 및 보건소 의사의 증명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다. 교회 축제들(첫성찬식, 첫탄생식, 교회결혼식과 교회결혼식 기념일)의 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목사의 공적인 증명이 제시될 수 있다. 성년식의 경우 장소적 발기인의 증명이 필요하다. 독일 인민경찰의 담당 관청이 이러한 규정에 대한 안내들을 개별적으로 제공한다.

내독성장관은 이러한 동서여행자 왕래를 개선할 동독정부의 결정을

환영하였으며 이 결정을 작년 12월 베르벨린 호수에서 열린 연방정부수상 슈미트와 국가평의회 의장 호네커 간의 첫번째 회담결과로 간주했다.

여전히 긴급한 가정용무로 인한 동독시민의 여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서 발생한다 탄생, 결혼, 결혼기념일(25, 50, 60, 65와 70 기념일)생명이 위협한 질병, 사망, 현재의 이런 이유들은 종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증서와 증명 및 공적인 증명에 의하여 제시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독에서 거주하는 조부모, 부모, 아이들, 형제자매와 외가쪽으로 이부모의 형제자매들은 여행자격을 갖고 있다. 긴급한 가정용무로 인한 방문여행의 규정은 또한 더욱이 추정에 의거하므로 특수한 경우 어떠한 권리주장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동독을 통하여 이러한 규정의 대폭적인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재조정으로 인해 연금 연령 이하의 동독시민에 대한 여행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 지난 10년동안의 평균치를 내볼때 긴급한 가정용무로 인한 동독시민의 입국자 수가 연간 대략 40,000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수가 벌써 지난 수년동안 본질적으로 더 높았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긴급한 가정용무로 인한 모든 여행자 그 자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 : 1982년 2월 25일자 본외 내독성 언론통지

39. 동독의 경계법과 경계규정(발췌)

1982. 3. 25.

1982년 3월 25일 동독의 국경법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들의 엄격한 존중과 엄수, 그중 주권의 존중, 국경선 불가침의 존중, 영토불가침성의 존중, 내정 불간섭의 존중은 좋은 선린관계, 그 국가들간의 보장과 협력의 발전에 대한 본질적인 전제조건과 영원한 평화질서의 토대이다.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여 동독은 국제법에 따라 이웃국가와 상호국경선 인정관계를 수립하며 대기와 영해를 포함하여 국경선보호를 위해 조직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민의회는 동독의 헌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법률을 결정합니다.

I. 동독의 영토와 국경선

1

#1. 영토

동독의 영토는 지구의 내부와 내륙의 수로(강, 운하, 호수, 저수지)를 포함하여 본토영역 내부의 바닷물, 영해와 이 해양바닥과 지하 및 전 대륙영역의 대기와 모든 해양을 포함한다.

#2. 국경선

1. 동독의 국경선은 동독의 영토를 인접내지 마주보고 있는 국가의 영토와 공해를 구분한 선이다.
2. 국경선이 마치 국제조약과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국경선 진행과 표시에 대한 비밀문서 속에 확정되어 있으며, 기술되어 있

는 것처럼 뻗어 있거나 아니면 국제법 규범과 일치해서 한편으로는 공해에 확정되었던 것처럼 뻗어 있다.

3. 국경선이 다음과 같이 뻗어 있다:

- 1) 자연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지 않는한 원칙상 어느 하나를 다른 극한점으로 하는 끝은 부동선-육지 경계선-;
- 2) 국제조약에서 아무것도 다른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는한 항해할 수 있는 경계수로 위 주수로(골짜기길) 중앙에 동선으로 그리고 항해할 수 없는 경계수로 위 경계수로 혹은 경계수로의 주지류 중앙선의 중앙에서 동선으로 하천 경계선
- 3) 그때 그때 국제조약의 확정(결정)에 일치하여 호수와 저수지, 배경저수지와 이와 비슷한 하천 위로;

4. 항해할 수 있는 경계수로 위에서 주수로의 자연적인 변화를 가진 국경선 진로가 변한다. 항해할 수 없는 경계수로 위에서 경계수로 위치의 점차적인 자연변화를 겪은 그 진로가 변한다. 국경선이 바다위 혹은 바닷가를 지나가는 경계수로의 갑작스런 자연변화는 경계기록 작성에 확정되어 있는 국경선의 진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바다경계선은 동독의 영해를 공해 혹은 인접 내지 마주보고 있는 국가의 영해와 구분하는 선이다. 바다국경선은 공해에 대해서 영해를 넓히기 위해 각각의 점에서 기선은 바로 다음의 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선으로 지나간다. 기선은 해안선 혹은 국제법 규범에 일치해서 형성된 끝은 선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안선은 나라와 중앙수위의 바다간에 접선이다. 기선과 바다경

계선의 진로가 공시될 수 있거나 아니면 해도에 기입될 수 있다.

#3. 바닷물

동독의 바닷물은 영해와 바다수로를 포함한 내부의 바닷물로 이루어진다.

#4. 영해

1. 동독의 영해는 3해리의 폭을 갖는다.
2. 영해의 외부 경계선 이외의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있는 정박소들은 영해의 구성요소이다. 정박소들은 공시될 수 있거나 아니면 해도에 기입될 수 있다.
3. 동독의 영해가 인접 내지 마주보고 있는 국가들의 영해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한 바다경계선의 진로가 국제조약에 확정되어 있다. 그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중앙선은 동독의 바다경계선을 형성한다.
4. 내각은 국제법 규범에 일치해서 영해의 넓이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 법을 토대로 하여 바닷물에서 외국선박의 정박에 대한 더 넓은 규정을 만들 수 있다.

#5. 내부의 바닷물

동독 내부의 바닷물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20해리 이상 떨어져 있지 않는 자연적인 해안돌출부를 서로 연결하는 하나의 끝은 선까지 해안이 완전히 동독 영해에 속하는 만의 물;
2. 그들의 해안이 동독 영토에 속하는 한, 해협과 물이 얇은 만

및 해안호:

3. 바다에 가장 넓게 설치되어 있는 영속적인 항만 시설을 서로 연결하는 선까지 항구의 물;
4. 그 강이 내륙의 수로에 속하지 않는 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

#6. 경계선물

이 법의 의미에서 경계선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선이 바다위 혹은 바닷가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국경선에 의해 잘라진 모든 부분
2. 국경선이 바다위 혹은 바닷가를 지나가는 모든 바다와 저수지 (골짜기담, 배경저수지 이와 비슷한 물)

#7. 국경선의 이정표와 표시

1. 국경선이 지나가는 경계점의 이정표는 계표, 필요한 경우 또한 보조계표에 의해 의해 생긴다. 형식 측량 자료 제명과 계표들의 위치 및 정리 유형과 방법이 국제법 조약에 확정되어 있다.
2. 계표들이 동독의 담당기관 동의없이 그리고 인접국가 담당기관과 협의하지 않고 제거되거나 아니면 이전될 수 없다. 계표들은 파괴되기 전, 손상되기 전 혹은 그것의 위치가 변하기 전에 보호되어야 한다.
3. 국제법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국경선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 이와 상응해서 동독의 영토에 표시될 수 있다.
4. 인접국가와 협의된 계표들에 추가해서 그 이상의 표시들이 동

독의 영해에 설정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다경계선의 인상적인 점들이 표시될 수 있다.

5. 토지계표들이 국경선의 선에 삽입될 수 있다.
6. 인접토지의 경계설정은 국경선의 적당한 거리에서 삽입될 수 있는 방향표시에 의해서 표시될 수 있다.
7. 경계선 진행의 명확성과 관련해서 높은 식물이 무성하여 파악하게되어 없어져야 하는 선을 설치하는 것은 국경선을 따라 인접국가와 협의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

#8. 경계지역

1. 국경선을 따라 해안가에 경계지역이 있다.
2. 경계지역 내부에서 필요에 따라 그리고 강조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보호선, 특별한 질서가 있는 폐쇄지대 내지 경계점령지대가 확정될 수 있으며 국경방위시설이 설치될 수 있다.
3. 법규를 토대로 법규에 따라 경계지역에서 폐쇄·차단지역을 설치하는 것은 2항의 규정과는 무관하다.

II. 국경선의 통과

#9. 일반규정

1. 동독의 국경선은 원칙적으로 국경통과장소들 초월해서만 문서에 의해 통과된다.
2. 국경을 통과하는 철도교통, 해상교통, 내륙선박(해상)교통, 항공교통, 자동차교통, 여객운송, 국제우편교통, 전신·전화(통신)교통,

가스같이 유통하는 물질과 전기에너지를 국경선으로 넘겨주는 것 및 전축·주의선와 국경선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과 설비의 수리는 국제법조약과 법규에 따라 이루어진다.

3. 국경선을 넘어서 부당한 상품교환 및 부당한 다른 교역은 금지되어 있다.

#10. 월경초소

1. 동독내각은 월경초소의 개방 및 폐쇄에 대해 결정하며, 월경초소에서 허용될 수 있는 교통에 대해 결정한다.
2. 국방성장관은 동독 방위와 관련하여 일시적인 월경초소의 결정을 명령할 권리를 갖고 있다.
3. 월경초소에서 담당기관을 통과하여 경계선을 통과하는 교통의 여권검사, 세관검사, 의학상- 위생상.수의위생상 그리고 식물위생상 검사가 발생한다.
4. 국제법조약에 따라 경계선을 통과하는 교통의 검사가 인접국가의 담당기관과 함께, 한쪽 혹은 양쪽의 영토에서 공통적으로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1. 통과교통

통과교통에 대해서 결정되어 있는 월경초소를 거쳐서 영토로 향하는 통과교통·법규 및 국제법조약에 따라 허용된다.

#12. 바다경계선을 넘는 교통

1. 국제법조약에서 전혀 다른 것이 협의되지 않는 한 바다경계선을 넘는 모든 교통이 항구에 설치되어 있는 월경초소 내지 해상에 있는 검문소를 거쳐서 생긴다.

2. 항구와 정박소로 입항 내지 항구와 정박소에서 출항이 키를 돌리는 데에서만 그대로 공시될 수 있는 결정된 항로에서만 일어나야 한다.
3. 국방성장관은 동독의 안전 혹은 바다물을 항해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훈련을 할 경우 해상교통의 안전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

#14. 평화적인 통과

1. 영해를 통한 평화적인 통과는 그 통과가 평화·안전과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아울러 법규와 이에 상응하는 국제법조약이 엄수된다.
2. 통과는 내부의 바다물에 관계없이 국제적으로 통례적인 수로 혹은 교통분리지역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공해에서 혹은 공해 배후에서 내부의 바다물로 입항 내지 내부의 바다물에서 출항을 의미한다. 그 통과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외국어선은 영해를 통하여 통과할 경우 갑판 밑의 포획기구를 압수해야 한다.

#17. 경계선 침범

이 법의 의미에서 경계선 침범은 국경선의 불가침 혹은 동독의 영토 불가침성에 대항하고 있는 모든 행위 및 동독의 영토 혹은 국경선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여기에 속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경선을 넘어서 물품들을 발사하거나 아니면 투사하는 행위

2. 국경선을 불법적으로 통과하는 행위
3. 바닷물을 혹은 경계물속을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아니면 바닷물 혹은 경계선물을 불법적으로 버리는 행위
4. 입항 혹은 출항, 정박 혹은 바닷물과 경계선물의 통과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5. 영토에 체류할 목적으로 선박 혹은 항공기로 위급한 경우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6. 지정된 항공로와 비행고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항공교통 관계자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7. 국경선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손상하고 파괴하는 행위
8. 경계선 이정표 혹은 다른 국경선 표시를 불법적으로 제거하거나 아니면 이전하거나,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혹은
9. 이에 상응하는 국제법조약을 어기고 농사, 산림, 수리, 혹은 다른 일을 행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는 행위

Ⅲ. 국경선 보호에 대한 책임

#18. 국가기관의 책임

1. 보호기관과 안전보장기관과 다른 담당국가기관은 긴밀한 협력속에서 경계지역과 바닷물, 경계선을 추월하는 교통의 안전과 질서보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법규이행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동독의 경계병은 국경선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필

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른 보호기관과 안전보장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속에서 동독의 대기와 영해를 포함하여 동독의 영토불가침성과 동독국경선과의 불가침을 보장해야 한다.

3. 국경선을 보호할 경우 보호기관과 안전보장기관의 책임설정은 동독의 국방회의에서 결정한다.

#19. 정보책임

동독의 경계병 사령관은 담당지방인민의회와 인민의회기관에 보고하고 거기에 제안들을 제출하여 국경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의회기관의 책임에 관계되는 문제들에 대한 정보들을 요구하며 제공한다.

#20. 주민의 협력

1. 동독시민들은 국경선의 보호를 위해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경계지역에 확정된 법규를 관철시킬 경우 권리 책임, 보호기관과 안전보장기관 및 다른 국가기관을 지원해야 한다. 보호기관과 안전보장기관을 후원할 경우 손해를 입는 시민들은 그 법규들에 따라 생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2. 18세가 되었으며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할 경우 경계병을 지지(후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들은 사회기관들 혹은 단체들의 제안으로 혹은 인간적인 지원을 토대로 동독경계병의 자발적인 협력자로 증명될 수 있으며 책임질 수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분증명을 위해 하나의 증명서를 받는다. 의무해제는 동독경계병을 통한 증명의 취소 혹은 취소제안으로 생길 수 있다.

IV. 동독경계병의 자격

#22. 위험 혹은 장애의 제거

경계지역의 안전과 질서가 어떤 사물과 어떤 상태에 의해 위태롭게 되거나 방해받는다면 동독경계병의 구성원들은 권리소유자, 즉 사물의 소유권자 혹은 그외의 이용자에게 또는 상태를 야기시킨 자에게 위험과 방해의 제거를 적당한 시기에 요구할 권리를 갖거나 아니면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할 권리를 갖는다.

#23. 신상명세서 확인과 사태의 해결

1. 동독 경계병의 구성원들은 국경선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경계지역의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상명세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숨겨줄 권리를 갖는다.
2. 만약 사람들이 경계지역에서 필요한 문서들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것이 경계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상당히 위태롭게 하는 사태를 해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특히 경계선 침범에 근거가 되는 혐의가 주어진 경우 그 연행은 또한 허용된다.
3. 경계침범 혹은 경계지역의 질서침범에 근거가 되는 혐의가 주어진다면 동독 경계병의 자발적인 협력자들은 독자적으로 증명서를 확인하거나 숨겨줄 권리를 갖는다 경계침범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근거가 있다고 추측될 경우 그들은 동독의 경계병에 가장 가까운 본부에 사람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동독 경계병의 한 구성원 내지 독일 인민경찰의 한 본부 혹은 한 구성원에

게 양도할 수 있다.

#24. 수색(검사)와 보관

1. 자기 몸에 물건을 소지하였다는 혐의가 유력하게 있고 그 물건의 이용으로 인해 경계지역의 질서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아니면 방해하는 사람들 혹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휴대한 물건을 포함하여 이 물건의 보관과 조사를 위해 동독경계병의 구성원들에 의해 수색되어질 수 있다.
2. 만약 물건들이 1항에 따라 확정된다면, 이 물건들은 보관되어야 하며 담당국가기관에 양도되어야 한다.

#25. 유치감금

1. 사람들에게 의해 경계지역의 안전과 질서가 상당히 위태롭게 되거나 아니면 방해받는다면, 특히 경계침범에 근거가 되는 혐의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 위험 혹은 방해가 제거될 수 없는 한 동독 경계병의 구성원들에 의해 유치될 수 있다.
2. 그 유치는 근거가 없다면,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유치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6. 동독 경계병의 조치의 관철

1. 만약 자기들의 권한 저항을 행사할 경우 동독 경계병의 구성원들에 대립되거나, 아니면 이 법률 혹은 이 법률의 통과에 공포된 법규를 토대로 자기들이 명령한 조치들이 방해받거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육체적인 작용은 경계지역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진지한 성취를 막기 위하여 다른 수단이 충당되지 않는

경우 허용된다.

2. 보조수단의 사용은 폭행을 막는데만 즉 도주의 기도를 막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작용이 실패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 경우 권리침해와 저항의 유형과 강도에 비례하는 그런 수단이 사용되어야 한다. 육체적인 작용과 보조수단의 사용은 조처의 목적에 도달될 때까지만 허용된다.

#27. 총포의 사용

1. 총포의 사용은 인간에 대한 폭력 행사의 가장 극단적인 조처이다. 총포는 육체적인 작용이 보조수단 없이 혹은 가지고 실패하거나 아니면 명백하게 아무런 성공도 약속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인간을 향한 총포의 사용은 사물과 동물을 향한 무기사용을 통해서 그 목적에 도달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2. 총포의 사용은 상황에 따라 범죄라고 하는 범행은 즉시 면전에서 수행하거나 아니면 지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화된다. 총기의 사용은 또한 범죄의 혐의가 유력하게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는데 정당화된다.
3. 즉시 목전에 닥친 위험은 총포의 고의적인 사용을 통해서만 막아질 수 없거나, 아니면 제거할 수 없는 한 총포의 사용은 원칙상 경고사격을 외치거나 아니면 발사하기전 통고되어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총포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1) 국외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 2) 외관상 아직 어린 사람들인 경우
- 3) 인접국가의 영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청소년과 여성을 향하여 총포가 가능한 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5. 총포를 사용할 경우 인간의 생명이 가능한 한 보호받아야 한다. 부상은 필요한 예방책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가 증명되어야 한다.

#28. 대기침범에 대한 조치

1. 대기침범은 17 항5) 혹은 6)에 의한 행위이다.
2. 대기침범자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대기침범자는 이에 상응하는 신호와 표시의 도움으로 착륙을 요청받을 수 있다. 신호 혹은 표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장한 폭력사용이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다.

#29. 선박에 대한 검사권

동독의 경계병은 바닷물에서 다음과 같이 할 권리를 갖는다.

1. 모든 선박이 국기 내지 소속깃발을 게양할 것을 요구할 권리
2. 바닷물로의 입항의 시작을 요구할 권리
3. 항로표시와 속도표시를 해 줄 권리
4. 모든 선박을 정지시킬 권리, 그리고 인원·기록물·선박서류·일기장과 항해에 관계되는 다른 자료들을 검사할 권리, 적재서류를 검열할 권리, 배에 있는 모든 사람 및 적재물을 검사할 권리와 선박공간을 검사할 권리 혹은
5. 동독 형법의 지방적이며 개인적인 통용에 토대가 되는 범행의 혐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외국선박의 선장이 원조를 청할 경우

사람을 선박의 내부에서 체포할 권리

#30. 선박의 입항

동독의 경계병은 바다물에서 모든 선박을 정지시킬 권리와 어떤 특정한 항구로 들어오게 할 권리를 갖는데 선박이 다음과 같이 한 경우이다.

1. 1)에서 3)까지에 의해 공포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29문항 4와 5에 의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2. 거기에 정해져 있는 자리 이외에서 짐을 실거나 내리는 경우
3. 법규를 어기고 사람들을 배에 태우거나, 아니면 배에서 내리게 하는 경우
4. 위법적으로 대륙지역과 혹은 다른 선박과 연결을 시작하는 경우
5. 법규를 어기고 고기잡이를 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바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조사활동 혹은 측량을 하는 경우
6. 관세 규정 혹은 외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7. 바닷물의 차단된 부분으로 입항하는 경우
8. 경계기관, 여권기관 내지 관세기관의 허가 없이 내부의 영해를 떠나는 경우 통행허가 없이 항구에서 출항하거나 아니면 정지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혹은
9. 평화적인 통과의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31. 추격의 권리

1.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위반의 혐의가 유력하게 있

는 외국 선박들을 추격할 수 있고, 정지시킬 수 있으며, 입항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추격은 또한 바닷물에서 시작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영해를 벗어나서 속행될 수는 없다. 추격은 외국선박이 자기 자신의 국가 혹은 제3국가의 영해에 도착하였을 경우 끝난다. 선박이 동독의 고기잡이 지대에 혹은 대륙붕 지역에 있는 경우 선박이 고기잡이 지대에서 혹은 대륙붕을 벗어나서 동독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한 추격은 또한 시작될 수 있다.

2. 영해를 벗어나서 선박을 추격할 경우 27, 29와 30에 제시된 권한이 행사될 수 있다.

#32. 의정서 의무

29문항 4와 5, 30과 31에 제시된 조치보다는 각각의 경우에 두개의 견본으로 양측이 독일어로 서명한 의정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외국선박의 선장은 자기의 조건을 그 의정서에 끼워 넣을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조건이 어떤 다른 부록에 임의의 언어로 기록될 수 있다.

#33. 예외규정

#29에서 #30까지의 규정들에 의해 외국군함, 군함과 대등한 선박과 외국의 국가원수 혹은 어떤 다른 국가의 수상이 타고 있는 선박은 제외된다.

#34. 인접국가의 영토에서의 추격

동독 경계병의 구성원들은 국제법조약에 확정된 조건을 고려하여 동독과 폴란드인민공화국 혹은 체코슬로바키아사회주의공화국과의 국경

선을 불법적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을 이들 국가의 영토에서 추격할 권리를 갖는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사회주의공화국의 경계선 보호기관 구성원들은 똑같은 조으로 동독의 영토에서 추격할 권리를 갖는다.

#35. 다른 보호기관과 안전보장기관의 권한

동독의 다른 보호기관과 안전보장기관은 국경선 보호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 #27에서 #31까지에 제시된 권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관들이 다른 법규로 양도한 권한은 이 절의 규정과는 무관하다.

V. 경계선 용무가 있을 적에 인접국가와 협력

#36. 경계선 대표자

1. 국경선에서 경계선 용무가 있을 적에 인접국가와의 상호 협력과 도움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계급의 경계선 대표자가 임명될 수 있다.
2. 동독의 주경계선 대표자는 경계선 용무가 있을 때 국가의 전권위임자이며 경계선 용무가 있을 때 협력보다는 국제법조약에 포함된 책임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내각수상에 의해 임명되며 국방성장관에 예속된다.
3. 경계표시와 국경선의 진행을 공동적, 정기적으로 재검사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이 주 경계선 전권위임자를 통해서 인접국가와 협의될 수 있다.
4. 경계선 대표자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세목은 국제법조약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37. 경계위원회

경계선 대표자의 임명을 인접국가와 협의하지 않는 한 경계선 용무가 있을 때 협력하기 위해 경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경계위원회의 임무에 대한 세목을 국제법조약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38. 국경선의 보존

1. 국경선 병화는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 경계선과 경계선의 해안 및 이 해안의 시설과 설비가 담당기관에 의해 잘 정돈되어 국경선의 특성과 진로의 보존이 영구적으로 보장받는다.
3. 경계수로에서 위치의 갑작스런 자연변화가 생긴다면 담당기관은 인접국가의 담당기관과 함께 본래의 진로 재전이 경계문서에 일치해서 가능한지 조사한다. 본래의 진로재전이 기술적으로 부적당하거나 아니면 협의될 수 없게 높은 비용과 관계가 있다면 국경선의 본래 진로가 지속되는지, 혹은 국경선이 새로운 수면으로 이전되는지 제시될 수 있다. 국경선 진로의 변화가 생기는 수리적인 조절조치인 경우 똑같이 처리될 수 있다. 국경선진로의 변화에 대한 제안들은 내각을 통해 인가가 요구된다.
4. 국경선진로의 변화는 국경법조약을 토대로 해서만 생길 수 있다. 국경선진로의 변화는 영토조성이 보장되어 있어 원칙상 국가간의 어떠한 요구도 생기지 않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5. 국경선진로의 보존과 관련하여 조처를 이행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 및 그 사용의 재정관계 혹은 보상은 법규에 따라 생긴다.

6. 제4부 #2에 따라 국경선진로의 변화 및 국경선 특성의 변화에 대한 경계문서는 내각수상을 통해서 인가를 필요로 한다.

VI. 최종규정

#39. 사용규정

이 법률규정은 국경선에서 서베를린에 동등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베를린에서의 권리와 관할권이 관련되지 않는다.

#40. 최종결정사항

#41. 시행

1. 본 법률은 1982년 5월 1일에 발효된다.

1982년 3월 25일 베를린

동독국가평의회 의장 호네커

1982년 3월 25일자 동독 국경선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1982년 3월 25일자 경계법규 #40(GBLI 제11호 197면)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것이 규정된다.

제 1 부 경계지역에 대한 규정

#1. 경계지역

1. 경계지역이 경계법규의 #8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서독과는 보호선과 폐쇄지대로 이루어진다.

2) 해안부분을 따라서는 보호선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해안을 따라서는 경계점령지대로 이루어진다.

- 3) 서베를린과는 보호선으로 이루어진다.
2. 제1부에서 언급한 경계지역의 깊이와 진로는 내무성장관과 독일 인민경찰서장의 동의하에 국방성장관을 통해 결정된다.
3. 동독의 국경선에서 폴란드인민공화국과의 경계지역에는 보호선 즉 차단지대 혹은 경계점령지대가 없으며 아울러 특별한 보고 규정 등록규정, 입국규정과 제휴규정이 없다. 이 경계지역에서는 동독경계병과 동독경계지원병은 대략 5km의 깊이까지 경계범에서 자기들이 받은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4. 언급한 경계지역의 깊이와 진로변화의 필연성이 부득이한 이유에서 생긴다면 이것은 지방협의회 담당의장에 의해 동독경계병 담당사령관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안되어야 한다.

#2. 여행입국과 체류

1. 보호선 내지 차단지대로의 여행입국과 거기에서의 체류는 허가가 있어야만 허용된다.
2. 보호선 내지 차단지대로의 여행입국을 위해 교통에 자유로운 진입로와 통행로 혹은 통행길이 이용되어야 하며 여행목적이 엄수되어야 한다.

#3. 거주지소유

1. 보호선 혹은 차단지대에서 거주지 소유를 위해 이주허가가 필요하다.
2. 이주허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제안은 시, 구 혹은 동의 미래 주택 담당협의회에서 문서로 해야 한다.

#4. 천막과 숙박

1. 보호선과 차단지대에서 천막과 교통수단 거주용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에서의 숙박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차단지대의 촌락내에서 거주용 자동차에서의 숙박은 담당인민경찰군청 지도자를 통해 노동자에게 허용될 수 있다.
2. 경계점령지역에서 천막과 거주용 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서의 체류는 로스톡(Rostock) 지방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되며 통용되는 천막사용증을 소지한 시민에게만 허용한다.
3. 경계점령지역에서 시 내지 동 담당협의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혹은 숙박소가 휴가객에게 임차될 수 있다.

#5. 공공시설

군 내지 구 협의회 의장은 동독경계병 담당사령관의 동의에 따라 보호선에서 공공시설 오락휴양센터와 휴가야영지 개방에 대한 허가의 허용을 결정한다#6. 신축과 증축건물

1. 경계지역에서 건물, 시설과 설비의 증축과 건립은 그로 인해 안정과 질서가 침해받지 않는 경우에 허용된다.
2. 보호선에서 차단지대 혹은 직접 개방해안에서 주민의 건축투자에 대한 위치허가 내지 위치허용 및 건축조처에 대한 동의를 담당지방협의회 의장이 한다. 동독경계병 담당사령관의 동의에 따라 보호선에서 주민의 건축조처와 건축투자에 대한 동의를 한다. 다른 법규에 따라 입장표명의 요구는 그와 무관하게 된다.

#7. 국민경제적인 작업

1. 작업의 성취 및 시설과 설비의 보호와 보수는 국제법조약 혹은

은 법규에서 다른 것을 확정하지 않는 한 국경선까지만 허용된다.

2. 보호선에서 경작, 산일과 다른 국민경제적인 작업은 허용될 의무가 있다.
3. 농업, 임업과 다른 기업체의 지도자는 국경선에서의 질서와 안전의 요구에 따라 보호선에서의 작업을 장기간동안 계획하며 그리고 완전하고 활기찬 성취가 보장되고 농업과 임업의 이용면적이 가능한 좋은 이용이 보장될 정도로 준비할 의무가 있다.

#8. 작업규칙

1. 시설과 설치는 차단지대의 보호선에서 혹은 개방해안에서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협동조합의 의장들이 취업규칙에 있어서 경계지역에서의 질서완성에 대한 조치를 확정해야 하며 그 조치의 엄수를 통제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보호기관과 안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2. 제1부에서 언급한 지도자들은 경계지역에 파견된 종사자들에게 반년마다 그리고 노동조치가 재조정될 경우 이 지역의 질서를 알려야 한다.

#9. 토지의 양도

국경선 보호조치에 더이상 필요하지 않는 토지들은 권리소유자들 토지소유자 혹은 그 외의 이용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이 토지가 보호기관과 안전기관의 법규에 존재하는 한 담당지역 협회회의 양도가 발생해야 한다.

#10. 수렵구역의 설치

경계지역에서 토지권 소유자, 토지소유자 혹은 그 외의 이용자는 국경선을 초월해서 물건이 인접국가의 영토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지적할 의무가 있다. 짐승은 국경선을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보호되어야 한다.

제 2 부 경계이정표

#12. 국경선 측량과 이정표와 문서작성

1. 국방성장관은 국경선 진로와 이정표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
2. 측량작업, 이정표작업, 문서작성작업의 인간적, 물리적, 재정적인 보호는 다음과 같은 기관의 책임이다:
 - 1) 국경선 내무성
 - 2) 특정한 경계물의 바다경계선과 국경선 동독의 치안의무
3. 경계표시 제작 및 국경선에서 특정한 장소로의 경계표시 운반은 바닷물과 특정한 중계물에 대한 해상에 떠 있는 보조경계 표시를 제외하고는 담당지역협의회를 통해 안전하게 되어야 한다.
4. 경계표시의 수선이 보장되어야 한다:
 - 1) 폴란드인민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사회주의공화국과의 국경선에서 담당지방협의회를 통해
 - 2) 국경선의 그외의 지역에서 내무성을 통해
 - 3) 바다 경계선과 특정한 경계물에서 동독의 해양치안의무를 통해 이러한 책임을 주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국제법조약의 결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5. 경계선문서작성의 지속성과 관리는 내무성의 책임이다.

#13. 경계표시의 보호

1. 경계표시 혹은 국경선 진로의 표시를 위해 설치된 다른 표시가 손상되는 것, 파괴되는 것, 위치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허가없이 제거되는 것을 금지한다.
2. 거리, 길, 경계수역에서 건축조치를 통해 혹은 제1부에서 언급한 표시들 가운데 하나의 다른 필요한 조치를 통해 위태롭게 되어 표시의 이전 혹은 표시의 일시적인 제거가 필요하게 된다면 건축담당 기업 또는 시설 지도자는 동독경계명 담당사령관에게 이에 상응하는 제안을 해야 한다.
3. 작업을 수행할 적에 경계표시 혹은 국경선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된 다른 표시가 생기고 손상되거나 아니면 제거된다면 동독경계명 담당사령관은 즉시 그것을 알려야 한다.

#14. 경계표시의 보호

1. 폴란드인민공화국 내지 체코슬로바키아사회주의공화국과의 동독 국경선에서 토지권소유자 즉 토지소유자 혹은 그외의 이용자는 책임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1) 폴란드인민공화국과의 동독 국경선의 마른 진로를 따라 5미터 넓이의 선과 경계물흐름의 해안을 따라 2미터 넓이의 선
 - 2) 체코슬로바키아사회주의공화국과의 동독 국경선의 마른 진로를 따라 1미터 넓이의 선과 국경선의 선 밖에 반입된 모든 경계표시 주위에 반지름이 1미터인 원의 면적은 너무 식물

이 무성하여 뒤덮음으로 인해 비어 있다. 그와 달리 호안공사
를 위한 식물재배 및 보호받은 나무와 관목이 있다.

2. 1항에서 언급한 조처의 엄수에 대한 검사는 동독경계병 담당사령관과 협력해서 지방협의회의 책임이다.

제 3 부 지방국가기관 기업과 조직의 책임

#15. 지방 국가기관의 책임

1. 지방협의회 의장은 경계지역에서 동독경계병과의 긴밀한 협력과 다른 보호기관과 안전보장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보장되어 사회적 조직과 단체와 시민이 안전과 질서보장을 위해 조처관철에 포함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2. 지방협의회는 경계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고려하여 정신적 문화적 생활의 발전과 시민의 주택조건과 생활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3. 지방협의회는 동독경계병 요구 내지 다른 보호기관과 안전보장기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을 걱정(염려)할 의무가 있다.
 - 1) 차단지대와 확정된 보호선의 진로가 확실히 표시되어 보호선에서 공공교통을 하는데 있어 자유롭지 않은 거리와 길이 차단되는 것
 - 2) 보호선에서 확정된 거리와 길이 정돈 내지 확정되는 것
 - 3) 국경선에서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농업 이용면적 재경작을 위해서 및 잡초제거와 해충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처가 수행되는 것

#16. 정보(안내)책임

국가의 경제를 주도하는 기관, 기업 조직의 지도자 및 협동조합의 의장은 확정된 다른 신고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인접국가의 영토에 공공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발생 혹은 일어날 수 있는 발생에 대해 동독 인민경찰 혹은 동독경제병의 가까운 초소에 알릴 의무가 있다. 특히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에 관계한다.

1. 인간과 동물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전염병
2. 많은 식물해충과 동물해충의 출현
3. 화재
4. 대기오염과 해양오염
5. 홍수, 빙상위험

#17. 공시

국가와 경제를 주도하는 기관, 기업, 조직의 지도자 및 협동조합의 의장과 보호기관과 안전보장기관의 담당사령관 내지 지도자는 지방 조건에 따라 국경선의 질서에 대한 규정을 적절하게 공시해야 한다.

제 4부 월경교통

#18. 월경초소

1. 월경교통은 부록에 표시된 월경초소를 경유한다.
2. 교통성장관은 월경초소의 시설, 정비, 장비의 책임이 있다.

제 5부 최종규정

#19. 최종규정

본 규정에 대한 법규 혹은 군사적 내지 내정적인 규정은 담당 중앙국가기관의 지도자가 공포한다.

#20. 시행

본 규정은 1982년 5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1982년 3월 25일 베를린

동독내각

슈토프 의장

부록

18에서 언급한 서류

동독 경계경비초소표시

1982년 3월 25일자 동독의 바닷물과 경계지역 질서-경계질서-에 대한 규정

1982년 3월 25일자 경계법 #40(GBI I 제11호 197면)과 1982년 3월 25일자 경계법규 #19(GBI I 제11호 203면)을 토대로 하여 해당 중앙국가기관 지도자와의 동의로 다음과 같은 것이 규정된다.

제 1 부 일반규정

#1. 보호선에서 작업

1. 경계법규의 7에 따른 보호선에서의 경작, 산림, 다른 국민경제적 작업수행에 대한 허가를 동독경계병 '담당사령관이 해준다. 일반적으로 그 허가는 작업수행이 이루어지는 주의 시작 4일 전에 요청되어야 한다.
2. 폐쇄촌락 이외에는 원칙상 보호선에서의 작업수행이 일출에서

월경초소의 장소와 종류

허용된 교통

I. 폴란드인민공화국에 대해

II. 체코슬로바키아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해

III. 서독에 대해

1. 도로월경초소

1.1 Selmsdorf

Kr. Grevesmuehlen

1.2 Horst

Kr. Hagenow

1.3 Salzwedel

1.4 Marienborn

(고속도로)

1.5 Worbis

1.6 Wardtha

Kr. Eisenach

1.7 Meiningen

1.8 Eisfeld

Kr. Hildburghausen

1.9 Hirschberg

서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가 아
닌 사람과 물품의 상호왕래와 통
과 교통사람과 물품의 상호 왕래
와 통과 교통사람과 물품의 상호
왕래와 통과 교통사람의 상호왕래

사람과 물품의 상호왕래와 통과
교통

사람의 상호왕래

사람과 물품의 상호왕래와 통과
교통

사람의 상호왕래

사람과 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
과교통

사람의 상호왕래

사람의 상호왕래

사람과 물품의 상호왕래

월경초소의 장소와 종류

(고속도로)

2. 고속도로 월경초소

2.1 Herrnburg

Kr. Grevesmuehlen

2.2 Schwanheide

Kr. Hagenow

2.3 Oebisfelde

Kr. Klotze

2.4 Marienborn

Kr. Oscherselben

2.5 Ellrich

Kr. Nordhausen

2.6 Gerstungen

Kr. Eisenach

2.7 Probstzella

Kr. Saalfeld

2.8 Gutenfuerst

Kr. Plauen

3. 물월경초소

3.1 Cumlosen

허용된 교통

통과교통

서베를린 시내에서 외부로 나가는 사람과 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

사람과 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

서베를린시내에서 서베를린 외부로 나가는 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 무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

사람과 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

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

사람과 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

사람과 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

사람과 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

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

월경초소의 장소와 종류

허용된 교통

Kr. Perleberg

3.2 Buchhorst

Kr. Kloze

IV. 항구(Seehaefen)

1. Wismar

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

물품의 상호왕래와 통과교통 및
해상무역선의 승무원구성원과 승객
의 월경

2. Stralsund

물품의 상호왕래와 통과교통 및
해상무역선의 승무원과 승객의 월
경 동독과 VRP의 여객선과 함께
동독 VRP소련, VRB UVR, 체코
스토바키아 SRR, MVR 시민을
위한 여객선운행

3. Sassnitz

스웨덴과 덴마크와의 선박교통에
의한 사람과 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 동독과 BRP의 여객선과
함께 동독 VRP 소련 VRB,
UVR 체코스토바키아, SRR,
MVR 시민을 위한 여객선 운행

4. Rostock

Warnemuende

덴마크와의 선박교통에서 사람과
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 그리
고 해상여객선 승객과 승무원의

월경초소의 장소와 종류

허용된 교통

5. Rostock
ueberseehaefen

월경
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
그리고 해상무역선 승객과 승무원
구성원의 월경

V. 공항

- 1. Berlin
Schoenefeld
- 2. Dresden
Klotzsche
- 3. Erfurt
- 4. Heringsdorf
- 5. Leipzig
Srkeuditz

사람과 항공화물을 운반하기 위
한 영구적인 국제항공교통과 통과
교통 사람과 항공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영구적인 국제항공교통과 통
과교통 세계항공의 항공기와의 일
시적인 국제항공교통
사람과 항공화물을 운반하기 위
한 영구적인 국제항공교통과 통과
교통

VI. 서베를린에 대해

- 1. 도로 월경초소
 - 1.1 베를린
Bornholmer Strasse
 - 1.2 베를린
Crausseestrasse
 - 1.3 베를린

동독, 서독국민 서베를린 거주자
그리고 동독에 파견된 외교관의
상호왕래
동독국민 및 서베를린 거주자의
상호왕래
동독국민, 서베를린 거주자 그리

월경초소의 장소와 종류

Invalidenstrasse

1.4 베를린

Friedrich-1-Zimmerstrasse

1.5 베를린

Heinrich-Heine-strasse

1.6 베를린

Ueberbaumbruecke

1.7 베를린

Sonnenallee

1.8 Schoenefeld

Rudower strasse

1.9 Mahlow

Kr. Zosse

허용된 교통

고 동독에 파견된 외교관의 상호 왕래 동독여행사에 의해 조직된 도시순회를 위해서만 KOM과 더불어 여행자일행의 상호왕래

사람의 상호왕래(동독에 파견된 외교관에게 관계되지 않는 한 서독 국민 및 서베를린 거주자는 제외)

동독 서독국민 및 동독에 파견된 외교관의 상호왕래 물품의 상호왕래

동독국민 및 서베를린 거주자의 상호 왕래 보행자만.

동독국민 및 서베를린 거주자의 상호왕래

서베를린 거주자 및 세계항공 국내 항로 이용자의 상호왕래 Berlin-Schoenefeld공항과 서베를린간의 항공화물 및 사람의 통과교통

서베를린에서 동독으로의 쓰레기 수송 및 동독에서 서베를린으로 건축자재 수송

월경초소의 장소와 종류

허용된 교통

<p>1.1 Drewitz · 고속도로</p> <p>1.1 Staaken Kr. Nauen</p> <p>2. 고속도로 월경초소</p> <p>2.1 베를린 Friedrichstrabe</p> <p>2.2 Staaken Kr. Nauen</p> <p>2.3 Griebnitzsee Kr. potsdam</p> <p>2.4 Drewitz Kr. Pstsdam</p> <p>3. 물월경초소</p> <p>3.1 베를린 Marschallbuecke</p> <p>3.2 베를린 Britzer-Zwigkanal</p> <p>3.3 베를린</p>	<p>사람과 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Berlin-Schoenfeld 공항에서 Berlin-Schoenfeld 공항으로가 아님)</p> <p>사람과 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Berlin-Schoenfeld 공항에서 Berlin-s-Schoenfeld 공항으로가 아님)</p> <p>사람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 SBahn 및 U-Bahn 교통에 의한 사람의 상호왕래</p> <p>사람과 통과교통 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p> <p>사람의 통과교통(특별 임시열차가 운행될 경우에만 사람의 상호왕래)</p> <p>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p> <p>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서독에서 서독으로가 아님)</p> <p>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서독에서 서독으로가 아님)</p> <p>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p>
--	---

월당초소의 장소와 종류

허용된 교통

Osthafen	(서독에서 서독으로가 아님)
3.4 Hennigsdorf Kr. Oranienburg	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서독에서 서독으로가 아님)
3.5 Nedlitz Kr. Potsdam	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
3.6 Babelsberger Enge Kr. Pstsdam	물품의 상호왕래
3.7 Dreilinden Kr. Potsdam	물품과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
3.8 Kleinmachnow Kr. Potsdam	물품의 상호왕래 및 통과교통

일몰까지 허용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동독경계별 담당사령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보호선에서 모든 종류의 교통수단, 열차수단, 그리고 작업도구 휴대는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범위까지 허용된다. 교통수단과 자동작업도구는 작업종결 내지 작업완성 후에 동독경계별 담당사령관의 동의로 기업과 조직의 지도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일반적으로는 보호선 밖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이용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4. 보호선에서 높이 성장한 농업및 산림경작지 개간 목장조성 및

짚진초더미 설치는 동독경계병 담당사령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보호선에서 동물의 사육을 위해 탈출을 막는 울타리를 친 목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잠수와 수중작업

1. 보호선의 경계물속에서 모든 종류의 잠수도구를 휴대한 잠수와 물속에서 사진 및 영화촬영이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 경계점령지대 밖의 바닷물속에서 잠수복을 포함하여 잠수도구를 휴대한 잠수는 독일인민경찰 당해 지방관청장은 1항과 그 규정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3. 1항과 규정은 국가기관과 그 자격이 있는 기업이 수행한 수중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이 수중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독경계병 담당사령관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인명구출, 파멸 방지와 극복, 다른 위협과 장애 제거를 위한 필요한 긴급조치는 동독경계병 담당사령관의 이런 동의와 무관하게 강구될 수 있다. 이 조치는 동독경계병 담당사령관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3. 사진·영화촬영과 TV녹화

1. 보호선에서의 사진·영화촬영, 다른 상징적인 표현, 라디오방송녹음 및 경계지역에서 군사적 목표물, 월경초소, 다른 검사시설 가운데에는 국방성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원칙상 이 허가는 늦어도 14일전에 요청되어야 한다.
2. 촌락 내부의 보호선에서 개인적인 사진·영화촬영이 허용된다. 그때 군사적인 목표물 월경초소 경계안전시설이 촬영되어서는

안된다.

#4. 측량작업과 지형측량작업

보호선에서의 측량작업, 지형측량작업 수행 및 스케치작업은 동독경계명 담당사령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5. 사냥과 스포츠사격

1. 보호선에서 원형 탄약을 넣은 스포츠사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차단점령지대에서 원형탄약을 넣은 스포츠사격과 사냥행위는 당해 인민경찰군청장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안들은 늦어도 사냥내지 스포츠사격 시작 14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3. 보호선과 차단점령지대에서 사냥, 스포츠무기 및 원형탄약의 보관과 저장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 허가를 해줄 경우, 차단점령지대에서 사냥, 스포츠무기 및 원형탄약의 단기간 보존이 허용될 수 있다.
4. 사냥을 할 경우 보호선 내지 국경선 방향으로 사격해서는 안된다. 보호선 안에서 또는 인접국가 영토에서 야수추격은 허용되지 않는다.

#6. 폭약

보호선과 차단점령지대에서 폭약보관과 저장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독일인민경찰 당해 지방관청장이 예외를 결정한다.

#7. 행사

1. 보호선과 차단점령지대와 동독의 바닷물속에서 행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2. 그 허가는 적어도 행사 개최 14일전에 주최자 또는 주최자가

임명한 책임자를 통해 서면상으로 요청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을 위해서이다.

- 1) 독일인민경찰의 당해 지방관청에 보호선과 차단점령지대에서의 행사를 위해
- 2) 독일인민경찰 로스투크의 지방관청에 바닷물속에서의 행사를 위해
- 3) 다른 법규에 허가의무가 제외된 행사는 1항에 따른 허가의 무가 없다.

#8. 대기오염시 조치

경계법 28항에 따라 대기오염시 조치를 강구할 경우 부록문서에 기록된 신호와 표시가 주어진다.

제 2 부 서독과의 경계지역 질서 체류허가

#9

경계법규 3항에 따른 이주허가를 받은 시민은 자신의 신분증명서에 경찰의 고지가 있을 경우 보호선 내지 차단점령지대에서 체류할 권리가 있는 등록된 하나의 허가를 받는다. 그 허가는 공간적으로 제한되며 시간적으로 기한이 정해진다.

#10

1. 경계지역밖에 자기 거주지를 갖고 있고, 경계지역에 자기의 영구직장을 갖고 있는 시민 혹은 차단점령지대에 자기 거주지를 갖고 있고, 보호선에 자기의 영구직장을 갖고 있는 시민은 직장을 찾기 위해 기업과 조직 지도자 및 협동조합 조합장 제안으로 직장담당 인민경찰군청으로부터 신분증명서에 등록된 하

나의 허가를 받는다. 본 규정은 14년부터의 학생에게 똑같이 적용다. 이 허가는 공간적으로 제한받으며 시간적으로 기한이 정해진다.

2. 1항에서 언급한 지도자 내지 조합장은 노동관계가 종료되거나 아니면 신분증명서에 허가받을 이유가 없는 경우, 담당인민경찰 군청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11

1. 경계지역 밖에 자기 거주지를 갖고 있고 직업적 혹은 개인적 이유에서 당분간 경계지역으로 여행입국하고자 하는 시민 및 차단점령지대에 자기 거주지를 갖고 있고 당분간 직업적 혹은 개인적 이유에서 보호선으로 여행입국하고자 하는 시민은 이에 상응하는 통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2. 직업적 이유에서 경계지역으로 여행입국하기 위한 여권은 그들의 종업원을 위해 기업과 조직 지도자 및 협동조합과 사회조직 지도자에 의해 독일인민경찰의 조직본부 담당관청에 서면으로 신청되어야 한다. 지도자 내지 지도자는 작업수행 시간에만 유권자에게 여권을 넘겨 주어야한다.
3. 개인적 이유에서 경계지역으로 여행입국하기 위한 여권은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 의해 독일인민경찰의 시민거주지 담당관청에 서면으로 신청되어야 한다.
4. 요양소와 오락휴양센터에 체류하기 위해 혹은 동독여행사 호텔에 체류하기 위해 경계지역으로 여행입국하기 위한 여권은 내지 여행자수표를 제시하여 독일인민경찰의 여행입국자 거주지

담당관청에 신청되어야 한다.

#12. 신고의무

1. 경계지역으로 여행입국한 시민은
 - 1) 보호선에서 12시간 이상 체류할 경우 입국후 즉시
 - 2) 체류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차단점령지대에서 12시간 이내에 독일인민경찰의 담당신고소(Meldestelle) 내지 담당 부대사령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2. 가옥대장의 등기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발생해야 한다. 등기를 낼 경우 경계지역에서 체류하는데 필요한 허가가 나와한다.
3. 집주인은 자기 집에 체류하는 시민과 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시민을 위해 신고법규의 규정에 따른 부차적 신고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13. 보호선에서의 체류

1. 보호선에서 촌락, 모퉁이, 고립된 농가 밖에서의 체류는 일출에서 일몰까지만 시민에게 허용된다.
2. 보호선에서 자기 거주지를 갖고 있는 시민은 1항에서 언급한 시간을 제외하고도 또한 교통이 자유로운 거리와 길을 이용할 수 있다.
3. 1항에서 언급한 시간 이외에 보호선에서 영구적 직업교육은 기업과 조직 지도자및 협동조합 조합장을 통해 동독경계병 담당 사령관에게 신청되어야 한다.

#14. 경계물 법규(Ordnung)

1. 경계법 6항에 따른 경계물속에서 동독경계병 담당사령관이 지정

한 장소에서의 낚시질과 수영이 허용된다.

2. 선박 이용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어선 내륙-수운선박, 수로정비선박, 동독수로관리국 선박, 수리관리선박 및 국제법조약을 토대로 그리고 규정된 문서에 의해 선박교통은 예외이다.
3. 어업행위는 동독경계병 담당사령관을 통한 동의에 따라 당해 지역인민의회 의장의 내정 대리인이 교부한 경계어업증서에 의해 허용된다. 경계어업증서 교부는 부과금의 허용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4. 동독경계병 담당사령관은 보호선에서 어선, 수로정비선박, 동독수로관리관청선박, 수리관리선박의 정박소를 결정한다. 그 선박은 무자격이용이 있을 수 없게 하기위해 법적 소유자, 소유자, 그 밖의 이용자에 의해 안전하게 되어야 한다.
5. 어업을 위해 지정된 선박은 당해 지역인민의회를 통해 등록되어야 하며 번호표를 받는다.

#15. 국가간에 협의된 작업과 조치의 수행

1. 국경선에서 작업과 조치의 수행 특히
 - 1) 국경선진로와 이정표의 관리 및 그것의 정비와 수리
 - 2) 경계물의 수리와 확장
 - 3) 수리적 시설과 설비의 운영·관리·수리 및 경계물에서의 불방출
 - 4) 교통시설과 설비의 건설과 수리
 - 5) 산림작업 수행
 - 6) 손해극복

7) 고기잡이 및 그와 관련된 동독과 서독시민의 월경은 이에 상응하는 국제법조약과 거기에서 체결된 협정을 토대로 발생한다.

2. 동독당해기관 내지 그 기관 대리인은 1항에서 언급한 작업과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적시에 동독경계병 담당사령관과 필요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 3부 서베를린과의 경계지역 법규 체류허가

#16

경계법 13항에 따른 이주허가를 받은 시민은 자기들의 신분증에 경찰의 신고가 있을 경우 경계지역에서 체류할 권리가 있는 하나의 등록된 허가를 받는다 그 허가는 공간적으로 제한받으며 시간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

#17

1. 경계지역 밖에 자기 거주지를 갖고 있고 경계지역에 자기 영구직장을 갖고 있는 시민은 기업과 지역 지도자 및 협동조합 조합장의 제안으로 해당 지방의회, 시구역의회 혹은 해당부대의 내부조정국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확정된 연락도로를 경유하는 경계지역 내에서 기업입사를 하기 위한 허가와 일치하는 하나의 신분증을 받는다. 그와 똑같은 것이 경계지역 밖에 자기 거주지를 갖고 있고 경계지역 내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기업내에서 수업을 받는 14세부터의 학생에게 적용된다.
2. 그 신분증은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 혹은 노동법관계의

종료 내지 학업을 끝낼 경우 그 신분증의 효력을 잃는다.

3. 기업과 조직 지도자 및 협동조합 조합장은 무효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 해당 지방의회 및 시구역의회의 내부문제 조정국 혹은 해당부대에 넘겨줄 의무가 있다. 담당인민경찰군청 인민경찰 감독관청은 내부조정국에 노동법관계(등교)의 종료를 알려야 한다.

#18

경계지역 밖에 자기 거주지를 갖고 있고 직업적 혹은 개인적 이유에서 당분간 경계지역으로 들어오거나 하는 시민에게 11조가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19. 신고의무

1. 포츠담 구역 내의 경계지역으로 여행입국하는 시민은 12시간 이상 체류할 경우 여행입국후 즉시 독일인민경찰의 담당신고소 내지 담당 부대사령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출발전에 출발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2. 가옥대장의 등기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발생해야 한다. 등기를 낼 경우 경계지역에서 체류하는데 필요한 허가가 나와야 한다.
3. 집주인은 자기집에 체류하는 시민과 1항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시민을 위해 신고법규의 규정에 따라 부차적 신고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20. 경계물 법규

1. 낚시행위와 수영은 경계법 6항에 따른 경계물속에서 금지되어

있다. 선박이용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어선, 내륙수운 선박, 수르정비선박, 동독수르관리국선박, 수리관리선박및 필요한 문서가 존재하는 한 월경교통의 선박은 예외이다.

2. 경계지역에서 수리적 수리기술상의 작업 수행은 동독경계병 담당사령관의 동의에 따라 허용된다.
3. 포츠담구역 내의 경계물속에서 어업은 동독경계병 담당사령관을 통한 동의에 따라 구역인민의회 의장의 내정대리인이 교부한 경계어업증서에 의해 허용된다. 경계어업증서 교부는 부과금의 허용과 관련될 수 있다.
4. 어업과 여객선항해는 동독수도인 베를린 도시지역내의 경계물속에서 금지되어 있다.
5. 경계물로의 선박입항, 경계물에서 선박출항, 경계물의 선박통과는 원칙상 일출에서 일몰전 1시간 전까지만 허용되며, 다른 교통규정에 따른다. 경계물 항구에서 선박활동은 일출에서 일몰까지의 시간에만 허용된다.

제4부 동독해안과 바닷물의 경계지역법규

#21. 기선

경계법 2항 5절에 따른 기선병렬은 부록문서 2에 확정되어 있다.

#22. 보호선

1. 보호선은 동독과 서독과의 국경선에서 슈타인백(Steinbeck) 구역까지 뻗어 있다.(이어진다)
2. 9항에서 13항까지의 규정은 보호선에서 영구적 혹은 일시적 채류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23. 경계점령지대

해안의 경계점령지대(부록문서 3)는 해안을 따라 보이그츠생겐(Voigtshagen) 구역까지 포엘(Poel)섬·뤼겐(Ruegen)섬·히덴제(Hiddensee)섬·우제돔(Usedom)섬, 부스트로우(Wustrow)반도, 다쓰(Darss)반도 및 부록문서 4에 따른 내부의 바닷물을 포함하여 알트바프(Altwarf)구역까지 이어진다.

#24. 신고의무

1. 토지에서 2일 이상 경계점령지대의 수상주택 내지 수상가옥에서 잠시동안 체류하는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독일인민경찰의 담당 신고소에 신고해야 하며, 떠날 경우 다시 떠난다고 신고해야 한다. FDGB, 국가기관, 기업, 협동조합 혹은 사회기관의 휴가 휴양소와 여관에서 체류하는 사람은 신고의무가 제외된다.
2. 집주인은 자기 토지에서 체류하는 사람과 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을 위해 신고법규규정에 따른 부차적 신고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25. 바닷물에서의 선박교통(Fahrzeugverkehr)

1. 해안어선과 동독의 독일적십자 수상구조선박 및 선박 및 스포츠 보트 본규정의 의미에서의 스포츠보트는 산업성 여객선을 제외하고 스포츠 혹은 휴양목적만을 위해서만 지정되어 있는 선박 내지 이용되는 선박 의미)가 기술적으로 허락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 선박들은 경계점령지대 밖에 있는 바닷물을 항해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에 탄 인원은 항해일지에 기입되어야 한다. 독일인민경찰에 의해 제작된 서식 용지가

항해일지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서식용지는 독일인민경찰의 선박정박소담당관청에 신청 한다.

2. 국가감독기관과 조직은 및 기술적 선박을 가지고 경계점령지대 밖에서 바닷물의 항행은 서면상의 항해명령서에 의해 허용된다. 항해명령서의 교부는 관계기관, 기업 내지 조직의 담당 배치책임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승무원이 모르는 사람의 동행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가 있는 특례의 경우에 관계기관 기업내지 조직의 지도자는 이 선박에 동승의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 인원은 항해명령서에 기입되어야 한다.
3. MITROPA직원을 포함하여 VEB 여객선 구조선박의 승무원은 경계점령지대 밖에서 항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스포츠보트에 의한 바닷물의 항해는 원칙상 일출에서 일몰까지의 시간에만 허용된다. 예외는 독일인민경찰의 지방관청장이 결정한다.
5. 그 밖의 부유물체(예를 들자면 수영튜브, 공기매트리스, 수영보트 등 헤엄칠 수 있는 다른 물체를 가지고 일출에서 일몰까지의 시간에 해안에서 150m이상 떨어진 곳에서의 체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22조 1항에 따른 보호선 앞의 물에서 그 밖의 부유물체를 소지한 체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6. 연안국경경비대 사령관은 스포츠보트와 그외의 부유물체를 소지한 특정한 바닷물영역에서의 항해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7. 경계점령지대 밖의 바닷물에서 VEB 여객선 선박의 루트와 코스 는 연 안국경경비대사령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8. VEB 여객선은 경계점령지대 밖의 바닷물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제3자를 통해 용선된다면 용선자는 1항에 따른 승무원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신고와 취소는 29조 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9. 그로스-크뤼츠-호벨까지 서독과의 바다경계영역의 영해에서 동독선박의 체류는 연안국경경비대 사령관의 동의에 따라 허용된다.

#26. 허가수여

1. 25조 1항에 따른 스포츠보트로의 항해허가는 담당사회기관 내지 담당사회기관의 추천으로 소유자를 통해 독일인민경찰의 스포츠보트 정박소 담당관청에 신청되어야 한다.
2. 25조 1항에 따른 해안어선과 수상구조선박의 승무원 및 25조 3항에 따른 MITROPH직원을 포함하여 VEB 여객선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허가는 기업내지 조직의 지도자를 통해 그 지역 항만청의 지역 담당관에게 신청되어야 한다.
3. 기관기업 내지 조직의 지도자는 그 지역 항만청의 지역 담당관의 동의에 따라 25조에 따른 허가를 준다. 이 허가는 단 체명의으로도 받을 수 있다.
4. 1항과 3항에 따라 받은 허가는 유효기간의 만료내지 노동법관계의 종료후 기관기업 내지 조직의 지도자를 통해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2절에 따라 받은 허가는 지역 담당관 본인에 반환되어야 한다; 3항에 따라 받은 허가의 취소는 내무성 지역 담당관이 통지해야 한다.

27. 보트정박소

해안어선과 수상구조선박 및 스포츠보트는 경계경비대를 책임자의를 통한 동의에 따라 로스톡지역위원회의 협의에 의해 지정된 개방 해안가의 정박소에 정박할 수 있다. 이 선박과 스포츠보트는 법적소유자, 소유자혹은 그외의 이용자에 의해 정박소에 너무나 안전하게 있어 불법 이용이 있을 수 없다.

28. 선박등록

1. 경계점령지대 밖의 바닷물로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해안어선과 수상구조선박 및 스포츠보트는 독일인민경찰의 선박정박소 담당관청에 신청되어야 한다.
2. 독일인민경찰에 의해 받은 등록번호와 정박표시는 아주 명확하게 선박에 부착되어야 한다.

#29. 선박의 신고상법

1. 선박조종사 혹은 개방해안가의 정박소에 정박되어 있는 어업 및 스포츠보트의 사공은 출항 12시간 전과 귀항후 즉시 여권 검사기관의 담당관청에 전화로 출항 또는 귀항을 신고해야 한다. 출항을 알릴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이 신고되어야 한다.
 - 선박이름 내지 등록번호
 - 출항시각
 - 항해목적과 준비된 정박소
 - 배(Bord)에 있는 사람의 인원과 허가번호
 - 계획된 귀항시각
2. 개방해안가의 정박소에 정박되어 있지 않는 25조 1항에서 3항

까지에 다른 선박의 보트선장은 허가제시로 경제점령지대 영역에서 내부의 바닷물에서 출항 내지 내부의 바닷물로 입항할 경우 담당검문소에 출항 내지 입항을 신고해야한다.

제 5부 동독과 폴란드인민공화국과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과의 국경선의 경계지역법규

#30. 어획과 낚시스포츠

#31. 오더강에서의 스포츠보트교통

#32. 어선과 스포츠보트

#32. 인접국가영토에서의 직무수행과 작업

제 6부 동독의 바닷물에서 외국군함의 체류

제 7부 군사적으로 중요한 운송화물을 실은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의 이륙과 착륙

제 8부 질서형 규정

#45.

1. 고의적으로 혹은 경솔하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징계와 법규정에 의해 10개월에서 10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다.
 - 1) 국경선과 경계지역의 이정표 표시, 안전보장을 위해 설치된 표시 혹은 시설을 손상시키고 파괴하고 변화시키고 불법적으로 제거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의 위치변경을 시키는자
 - 2) 경계지역을 위해 확정된 신고규정, 등록규정, 입국규정과 체류규정을 엄수하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허가를 얻기위해 부정확하게 신고하거나 아니면 받은 허가를 남용하는 자
 - 3) 보호선 내부에서 불법적으로 사진 및 영화촬영하고 TV 녹

확내지 라디오녹음 혹은 스케치를 하거나 아니면 측량작업 및 지형측량작업을 수행하는 자 혹은 경계지역에서 군사적인 목표물, 경계안전보장시설, 월경초소 혹은 다른 검사시설물을 불법적으로 사진 및 영화촬영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구상적으로 표현하는 자

- 4) 선박의 입항과 의무가 있는 작업을 허가없이 수행하거나 아니면 수행하게 하는 자
- 5) 선박의 입항과 출항에 대한 신고 의무를 어기는 자
- 6) 잠수도구를 가지고 허가없이 잠수하거나 아니면 자유지역 밖에서 잠수하는 자
- 7) 선박의 등록의무를 위반하고 지정된 정박소에서 스포츠보트의 정박과 스포츠보트의 이용규정을 엄수하지 않는 자
- 8) 경계지역의 질서와 안전보장을 위해 받은 보호기관과 안전기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
- 9) 불법적 이용을 방지하지 않고 경계지역에서 자동운행도구와 차량을 세워두는 자
- 10) 경계지역에서 행사에 대한 허가외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
- 11) 담당국가기관의 허가없이 경계지역에서 휴가손님들에게 방과 숙박소를 양도하는 자
- 12) 보호선 혹은 차단지대에서 허가없이 천막에서 밤을 새우고 교통수단주거용차량, 캠핑차량에서 숙박하는자, 혹은 지정된 장소 이외의 경계점령지대내지 유효한 천막설치허가없이 주거용차량 혹은 캠핑카를 세워두거나 아니면 천막에서 밤을

새는 자

- 13) 어업금지, 낚시금지 혹은 수영금지 내지 그밖의 부유물체의 이용규정을 엄수하지 않는 자
- 14) 경계지역에서 사냥과 스포츠사격 규정 및 사냥무기와 스포츠 무기과 저장규정을 엄수하지 않는 자.
- 15) 경계표시 요금지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2. 1항에 따른 고위적 행위가

- 1) 되풀이 하여 2번 이내에 시작되어 질서형에 의해 벌을 받았다면
- 2) 비교적 큰 손해를 입었다면 혹은
- 3) 경계지역의 질서와 안전을 상당히 침해(방해)했다면 질서형은 1000개월까지 언도될 수 있다.

3. 1항에 따른 사소한 질서위반인 경우 거기에 대해 전권을 위임 받은 지방위원회 협력자는 1개월에서 20개월까지 액수의 경고를 언도할 자격이 있다.

4. 질서위반을 저지르는데 사용되었던 물체는 다른 질서형 조치이외에 혹은 독립적으로 소유관계 혹은 제3자 소유를 고려하지 않고 무상으로 회수될 수 있으며, 받은 허가는 취소될 수 있다.

5. 질서형방법의 수행은 그때 그때의 관할권에 따라 독일인민경찰의 관청지도자 혹은 지역위원회의장이 그때 그때 전문분야 담당대리인의 책임이다.

6. 질서형방법 수행과 질서형조치 언도에는 질서위반을 막기 위한

1968년 1월 12일자 법률이 적용된다.

-OWG- (법령집 I 제3호 101면)

제 8 부 최종규정

#46. 시행

본 규정은 1982년 5월 1일에 발효된다.

1982년 3월 25일 베를린

국방성장관 호프만 장군

내무성장관겸 독일인민경찰서장

덕적

출처 : 1982년 3월 29일자 동독의 법령집I 197면

40. 내륙교역에서 무이자의 속행과 증대에 관한 신용무역(TSI) 및 동독 대외협력성간의 협정

산업 및 무역의 신용교역처(TSI)

처장

1982년 6월 18일 베를린

대외협력성

수석차 칼 카일홀즈귀하

베를린

운터 텐 린덴 44-60

베를린협정 조항 VIII

존경하는 카일홀즈씨!

하기사항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1. 베를린협정 조항 Ⅷ에 따른 액수가 새로이 책정된다. 즉
1982. 7. 1에서 1982. 12. 31까지 8억 5천만 VE로
1983. 1. 1에서 1983. 12. 31까지 7억 7천만 VE로
1984. 1. 1에서 1984. 12. 31까지 6억 9천만 VE로
1985. 1. 1에서 1985. 12. 31까지 6억 VE로
2. 1985년에 그외의 신용한도규정이 협의된다.
3. 베를린협정 조항 Ⅷ에 따른 1967년 8월 9일에 이루어진 협정
효력이 연장된다.

높은 경의를 표하면서

로쉬박사 서명

동독내각

대외협력성

1982. 6. 18 베를린

산업 및 무역 신용교역처장

프란츠 로쉬박사 귀하

베를린 15

쿠어 휘스텐담 32

베를린협정 조항 Ⅷ

존경하는 로쉬박사!

하기사항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1. 베를린협정 조항 Ⅷ에 따른 액수가 새로이 책정된다. 즉
1982. 7. 1에서 1982. 12. 31까지 8억 5천만 VE로

1983. 1. 1 에서 1983. 12. 31까지 7억 7천만 VE로

1984. 1. 1에서 1984. 12. 31까지 6억 9천만 VE로

1985. 1. 1 에서 1985. 12. 31까지 6억 VE로

2. 1985년에 그외의 신용한도규정이 협의된다.

3. 베를린협정 조항 Ⅷ에 따른 1967년 8월 9일에 이루어진 협정
효력이 연장된다.

높은 경의를 표하면서

카일홀츠서명

출처 : 1982년 6월 23일자 본의 연방정부 공보

41. 비상업성 지불거래와 청산거래에서 동독의 계약속행과 증대를 위한 서독상임대표지도자와 동독재무성차관간의 서한교환

서독상임대표지도자

차관 한스 오슬 브로이티감박사

1982. 6. 18 베를린

동독내각

재무성

차관 지게르트박사 귀하

베를린

존경하는 지게르트박사,

본인은 귀하에게 동의한 하기사항을 통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1. 특정한 경우에 자산에서 대체하기 위한 서독재무성장관과 동독재무성장관간의 1974년 4월 25일자 협정에 대해 1978년 11월 16일자 의정서 1항에서 3항까지 이루어진 규정이 특정한 경우에 동독이 자산에서 대체하기 위해 매 4분기 초기에 4개의 같은 높이의 액수로 6천만 마르크를 매년 기존의 청산계정에 불입하여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대체가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대체를 매년 6천만 서독마르크 내지 동독마르크를 초과하는 것에 비례해서 1983년에서 1985년까지 속행된다.
2. 또한 1985년에 기존규정 속행에 관한 회답이 이루어진다.

높은 경의를 표하면서

브로이티감 박사 서명

동독내각

재무성장관

1982. 6. 18베를린

서독상임대표지도자

한스 오토 브로이티감박사 귀하

베를린

존경하는 브로이티감박사!

본인은 귀하에게 동의한 하기사항을 통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특정한 경우에 자산에서 대체하기 위한 서독재무성장관과 동독재무성장관간의 1974년 4월 25일자 협정에 관한 1978년 11월

16일자 의정서 1항에서 3항까지 이루어진 규정이 특정한 경우에 동독이 자산에서 대체하기 위해 매 4분기 초기에 4개의 같은 높이의 액수로 6천만 마르크를 매년 기존 청산계정에 불입하여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대체가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대체를 매년 6천만 서독마르크 내지 동독마르크를 초과하는 것에 비례해서 1983년에서 1985년까지 수행된다.

2. 아울러 1985년에 기존 규정수행에 관한 회답이 주도된다.

높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게르트박사 서명

출처 : 1983년 6월 23일자 본의 연방정부 공보

42. 1981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없이 떠났던 사람의 사면에 관해 동독이 서독연방정부에게 보낸 통지

1982. 6. 18.

1. 탈영병을 제외하고 1981년 1월 1일 이전에 동독을 불법적으로 떠났던 모든 사람에게 1982년 7월 1일 발효와 함께 동독국적이 박탈된다. 게다가 동독 법령집에 공시된 동독내각 규정도 폐기된다.

2. 이러한 사람들의 동독으로의 여행입국도 동독법규에 따라 신청될 수 있으며, 허용될 수 있다.

그밖에도 그 규정에 다음과 같은 것이 확정된다.

- 이 사람들의 경우 불법적으로 동독을 떠났기 때문에 형사상의 책임조치가 도외시 된다.

- 이 사람들이 동독국가기관의 승인없이 동독 밖에서 자기들의 거주지를 갖고 있는 한, 이 규정은 이 사람들의 자손들에게도 또한 관련된다.

참고 : 본 규정(Regelung)은 1982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출처 : 1982년 6월 23일자 본의 연방정부 공보

43. 1일 입국할 경우 서베를린인을 위한 체류기간 변경에 관해 동독이 베를린시 의회에 보내 통지

1982. 6. 18

동독정부대리인(Beauftragte) 발터 뮐러(Walter Mueller)박사가 의회(Senat)대리인에게 보낸 통지

1971년 12월 20일자 서베를린에 영구적 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여행자및 방문객왕래 시행에 관한 동독정부의 성명을 참고로 인용해서 본인은 귀하에게 1일 입국할 경우 체류기간이 다음날 2.00시까지 연장된다는 것을 통지합니다.

참고 : 본 규정은 베를린 여행자및 방문객 왕래의 테두리안에서만 적용되며 1982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출처 : 1982년 1월 23일자 본의 연방정부 공보

44. 통과지점 슈틀페도르프에 관한 동독외무성과 베를린시 의회와의 서한 교환

1982. 1. 18.

동독내각

외무성

1982. 6. 18 베를린

의회대리인

베를린시의회 게르하르트 쿤체귀하

쉴네베르크시청

존경하는 쿤체씨!

1978년 11월 16일자 본인의 서한과 관련하여 본인은 귀하에게 1971년 12월 20일자 협정을 토대로 동독이 여행자 및 방문객 왕래에서 보행자로서 여행입국하기 위해서, 또한 개통후 통과지점 슈톨페도르프를 허용할 것이라는 것을 통지합니다.

그 때문에 버스교통이 통과지점 슈톨페도르프의 개통과 관련해서 허용됩니다.

거기에 계획된 교통관계연결에 관한 필요한 협상이 해당관계지점에서 진행됩니다.

그 경우 이와 비슷한 규정이 통과지점 드레비쯔(Drewitz)에 고려(참작)됩니다.

높은 경의를 표하면서

필러박사 서명

베를린 현직시장

상임위원회의장

1982. 6. 18 베를린

여행자 및 방문객 왕래를 위한 동독정부대리인

국장 발터 뮐러박사 귀하

베를린

존경하는 뮐러씨!

본인은 1982년 6월 18일자 귀하의 서한을 정히 배수하였습니다.

본인은 동독이 하기사항을 허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1971. 12. 20의 협정을 토대로 여행자 및 방문객왕래에서 보
행자로서 여행입국하기 위해서도 또한 개통후 통과지점 슈돌페
도르을 허용할 것이다.

— 그때문에 통과지점 슈돌페도르개통과 관련하여 버스교통을 허용
할 것이다.

거기에 준비된 교통관계연결에 관한 필요한 협상이 해당지점에서
진행됩니다. 그 경우 이와 비슷한 규정이 통과지점 드레비쯔에 고려
됩니다.

높은 경의를 표하면서

위임으로

쿤제서명

출처 : 1982년 6월 23일자 연방정부 공보

45. 본의 신문·발표에 앞서 동독정부와의 회담에 관한 에 곤 프랑케 내독성장관의 성명

1982. 6. 21.

내독성장관의 성명

본인은 귀하에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통지하였던 규정을 설명하

고 싶습니다.

신용한도로부터 시작한다면, 그 경우 청산통과단위로 청산된 내독교역의 테두리안에서 무이자 문제가 됩니다. 신용한도는 30년 전부터 어느 누구도 문제로 삼고자 하지 않는 내독교역의 토대에 필요합니다.

정치적 상황은 우리에게 신용한도를 지금까지의 액수로 유지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용한도는 1985년까지 60억VE에서 2억 5천만VE가 인하겠습니다. 본 결정은 지금 정해진 거래규정을 위해 환원을 주시하는 1974년 협정에 일치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독과 관련해서 경제적·재정적 관계 여행자왕래와 방문객왕래 및 인도주의 문제가 하나의 정치적·심리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본 결정은 정선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연방정부 견해를 유효하게 합니다.

인하는 1983년 초에야 비로소 시작합니다. 연방정부는 6월 18일자 그외의 규정에 직면하여 이 지불유예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독은 이에 상응하는 1974년과 1978년 협정에 관한 거래규정의 테두리안에서 외환지불을 통해 실제로 비 상업성 지불거래를 마찰없이 속행하여 개선하기조차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연금생활자 연금수혜자, 빈민구제자, 미성년 고아—이 그후에도 동독의 개인적 은행예금에서 서독마르크로 환산하여 3개월마다 6,000마르크까지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독은 이 목적을 위해 1983년에서 1985년까지 매년 6억 서독마르크를 포함시킬것입니다. 이 포함은 대체가능성이 우리의 유권자에 의해서보다 동독시민에 의해서 훨씬 덜 요구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금년 12월 31일에 시작하는 규정에 따라 동독은 매년 5억 서독마르크를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말한 규정은 별도로 이야기하는데 1978년 보다 큰 거래계획 (베를린-함부르크간의 고속도로)에 대한 협정과 관련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자와 양독국가간의 관계에 똑같이 중요한 동독의 조치는 1971년 12월 31일 이후와 1981년 1월 1일 이전에 동독관청의 허가없이 동독을 떠났던 수만의 사람들의 국적박탈을 나타냅니다.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동독을 탈출하였다거나, 아니면 승인받은 여행에서 다시 동독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동독인은 지금까지 동독에 의해 더욱더 동독국민으로 요구되어 동독에서 형사소추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동독내에서 동독을 통과하여 다른 나라로의 여행은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동독과 체결된 조약에서 나온 많은 특전이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1982년 7월 1일부터 이 사람들과 여기에서 사는 이 사람들의 자손들은 또한 동독이 보는 가운데 연방시민의 신분과 권리를 소유합니다. 그들은 허가받지 않고 동독을 떠났기 때문에 동독에서 형사소추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동독으로의 여행 입국신청과 동독을 통과하는 다른 여행 입국신청과 동독을 통과하여 다른 나라로의 통과여행신청등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동독 법규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동독시민이 서독의 친척을 방문하는 여행은 일반적으로 친척이 동

독을 허가없이 떠났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독이 탈주를 비난한 이전의 동독시민은 모든 국적박탈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동독의 이 예외는 해당자를 실망시킴에 틀림없습니다. 동독은 이러한 점에서 인도주의 관점을 안전이해관계의 뒤로 갖다 놓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재조정은 충돌을 배제한 동서독관계 영역에서 권리보장을 만들며 많은 동독인과 그들의 친척의 정신적 압박과 개인적 구속을 없애줍니다.

2개의 개선이 서베를린인을 위해 있습니다. 이 2개의 개선은 베를린시의회에 보고하였던 것과 같은 희망에 일치합니다. 즉 하나는 1일체류를 저녁 2시까지 연장하며, 또 다른 하나는 노선버스교통의 경계선을 통과하는 보행자를 위해 베를린 북쪽의 새로운 통행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신용한도협정을 결정할 적에 지난해 12월 베르벨린호수에서 개최된 회담이후의 발전도 고려하였습니다.

가족재회는 그후 범위와 기간에 따라 아주 긍정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행자 왕래의 영역에서 완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긴급한 가정용무가 있는 동독시민의 여행에서 확대된 규정은 이제 4개월 동안 시행됩니다. 우리는 동서왕래의 상당한 증가 즉 약30%의 증가를 관찰합니다.

마침내 2개의 전시회에 관한 협약도 베르벨린 호수회담이후의 발전에 특징적인 것입니다. 동독은 11월 중순부터 함부르크에서 선켈전

시회를 개최합니다. 서독은 동베를린의 칼탐스슈타트 재건도시와 마그데부르크에서 전시회를 9월 중순부터 개최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총괄해 본다면, 사실 1981년 12월경에 우리에게 중요하였던 많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명백한 것은 대체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에 -외무교환액이 경우- 아직도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의사일정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연방정부에 의해 더욱 더 전 관계속에서 추구됩니다.

출처 : 1982년 6월 23일자 본의공보

46. 전시회 교환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에 대한 내독성의 통지

1982. 6. 23.

요즘 연방정부와 동독은 전시회교환을 협의하였습니다. 1982년 8월 13일에 동베를린의 TV송신탑의 전시회중심지에서 뮌헨사람인 건축가 호프만 그룹이 구성한 독일 재건도시 박람회 "Erholungsraum Stadt-Eine Ausstellung aus der Bundesrepublik Deut Schland" 전시회가 시작됩니다.

그후 뮌헨市와 뉘른베르크를 본보기로 하여 주거공간 시도, 도시계획, 도시내 휴식공간의 구체적 계획을 명확하게 세운 발표회들이 칼탐스슈타트와 마그데부르크에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사무소 그룹의 건축학교입니다.

함부르크 미술관에서 1982년 11월 18일에서 1983년 1월 16일까지

“독일의 칼 프리드리히 쉰켈” 전시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베를린의 고발물관에서 열리는 대규모의 쉰켈 발표회와 관계하는 이 전시회는 19세기의 위대한 인물의 예술가적·건축가적 창작에 대한 것입니다. 함부르크의 주최자는 함부르크의 건축가협회입니다.

지난해 12월 베르벨린호수에서 연방수상 헬무트슈미트가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중앙위원회 서기장겸 동독의 국가평의회 의장 에리히 호네커와 회담에 즈음하여 양측은 보다 좋은 상호간의 인식을 위해 문화적인 교류를 강화하려는 자기들의 의향을 강조하였습니다. 연방정부의 견해는 두개의 전시회가 이 목적에 특별하게 도움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출처 : 1982년 6월 23일자 본의 연방정부 공보

47. 1982년 6월 21일자 동독국적문제에 관한 규정

1982. 6. 12.

1

1. 1981년 1월 1일 이전에 동독을 허가없이 떠나 자기 거주지를 다시 동독에서 소유하지 않았던 동독시민은 본 규정 시행과 함께 동독국적에 관한 1967년 2월 20일자 법률 13항에 따른 동독국적(동독국적법법령집 I 제2호 3면)이 박탈된다.

2. 1항에 따른 사람들의 자손의 경우 이 사람들이 동독국가기관의 허가없이 동독의 밖에서 자기들의 거주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똑같이 동독국적이 변한다.

#2

1항에 따른 사람들의 경우 불법적으로 동독을 떠났기 때문에 형법상 책임조치가 도외시된다.

#3

본 규정은 1982년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1982. 6. 21 베를린

동독내각

슈토프 외장

출처 : 1982년 6월 22일자 동독의 법령집 418면

48. 독일연방의회에 앞서 정상회담과 세계정치적 지위에 관한 연방수상 헬무트 슈미트의 정부성명

1982. 6. 24

발췌

연방정부는 -1980년 11월의 정부성명에서도 그러했듯이- 연방정부가 유럽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그리고 양독국가 주민의 안녕을 위해 양독국가간의 지속적인 관계발전에 높은 비중을 둔다고 재삼재사 표현하였습니다(나타냈습니다). 개선의 소지가 동독과 관련해서 베르벨린 호수의 회담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걸음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독의 우리 국민들에게 조그만 걸음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훨씬 강한 무역조정외 환원이 독일국내교역 특히 베를린

노동자들의 일이 상당히 유용한 무역의 계속적 발전에 대한 쌍방의 관계에 적합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에 좌우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근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던 인간의 완화도 고려하였습니다. 그 완화는 베를린과 동독에서 우리에게로 왔던 그런 우리의 동족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확인하고자 합니다. 연방 정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동독이 1980년 10월에 2배로 하였던 의무교환액원칙의 실질적인 수정을 통해 여행자왕래의 강력한 쇠퇴를 막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관계의 전관계를 척도로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출처 : 1982년 6월 22일자 독일연방의회 제 108차 회의 의정서

49. 동독국적 해제규정에 관한 내독성의 통지

1982. 6. 30.

1982년 6월 18일자 서독정부의 통지에 따라 동독정부는 1982년 6월 21일에 하나의 규정을 해제했다(동독의 법령집 I권 제22호-간행날짜 1982년 6월 22일).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1) 1981년 1월 1일 이전에 동독을 허가없이 떠나 자기의 거주지를 다시 동독에서 소유하지 않았던 동독시민은 본 규정시행과 함께 동독국적에 관한 1967년 2월 20일자 법률 13항에 따른 동독국적(동독국적법) (법령집 I 제2호 3면)이 박탈된다.

(2) 1항에 따른 사람들의 자손의 경우 이 사람들이 동독국가기관의 허가없이 동독의 밖에서 자기들의 거주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똑같이 동독국적이 변한다.

2.

1항에 따른 사람들의 경우 불법적으로 동독을 떠났기 때문에 형법상 책임조치가 도외시된다.

3.

본 규정은 1982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연방정부가 이미 전에 통지하였듯이 연방정부는 1982년 6월 18일에 끝난 동독정부의 회담을 통해 1982년 7월 1일에 발효되는 규정이 탈주병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첨가해서 통지했다.

동독정부는 회담의 테두리안에서 연방정부에게 그 규정에 해당된 사람이 동독으로의 여행입국이 동독법규에 따라 신청되어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했다.

내독성은 1982년 7월 1일에 규정시행을 첨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언급할 기회로 이용한다:

위에서 언급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허가없이 동독을 떠났기 때문에 장차 동독에서 더 이상 형사상으로 기소당하지 않는다. 그들이 동독에서 저질렀던 다른 범행 때문에 물론 형사소추가 계속해서 가능하다. 그러한 범행은 용의자가 동독밖에서 체류하고 있는 한 역시 시효가 지나지 않는다. 동독이 탈주를 비난한 사람들은 1982년 7월 1일에 발효되는 규정이 제외된다. 그들은 동독에 의해 계속해서 국민으로 요구되며 동독에서 형사소추를 기대해야 한다. 병역관계,

보충병직 혹은 예비병직동안에 탈주하였던 동독군사연맹의 이전 구성원은 탈영병으로 간주된다. 1980년 12월 31일 이후 동독에서 도주했거나 아니면 허가받은 여행에서 동독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자는 동독에 의해 또한 계속해서 국민으로 요구되며 동독을 허가없이 떠났기 때문에 형사소추를 기대해야 한다.

그 규정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는 동독으로의 여행입국을 신청하여 허용받을 수 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 여행입국허용에 대한 권리주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행입국신청 허용에 대한 결정은 동독의 담당관청이 한다. 개인적인 이유에서 무사히 동독으로 여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여행자는 전독문제연구소 : 5300 본 우편사서함1640, 전화번호:(0228)2071 혹은 그들이 동등하게 조언받을 수 있기 위해 동서왕래 중앙신고소와 상담소; 1000 베를린 31 쾰플 베를거너플랏쯔 2, 전화번호:(030) 86 76 742에 문의해야 한다. 지난해 동독을 허가없이 떠났던 사람에게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행을 할 경우 동독의 허가절차과정에서 1982년 7월 1일 이후 지속 영향이 생기지는 기다려보아야 알 수 있다.

출처 : 1982년 6월 30일자 본의 내독성 언론통지

50. 독일연방의회에 앞서 연방수상 헬무트 슈미트의 국가 지위에 관한 연방정부 성명

1982. 9. 9.

(발췌)

지난해 4월 국가지위에 관한 최근의 보고 이후 동서관계의 긴장이 보다 커졌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긴장의 그림자속에서 독일정책을 촉진시킬 어려움도 보다 더 커졌습니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과 동독의 정치지도부는 여기 우리에게, 서독민중에게 동독의 정치적 견해를 납득시키려고 크게 노력합니다. 이 명성은 의무교환액원칙의 2배를 통해 매우 심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실질적인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밖에도 -우리가 한번 공산주의 선전원들의 역할을 한다면- 선전원들은 자기자신의 이익때문에 최소한 해야 하는 것을 적어도 연금생활자, 사회적으로 약한계층, 청소년을 위해 인하하는 것입니다.

동베를린 지도부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실질 수준으로 인하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이것은 또한 동독에게 전혀 재정적 손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여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독에서 지금까지 그러한 결심이 여전히 서지 않았다면 아마도 양독민족간의 접촉면을 제한하는 이유 및 동기가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관료주의 독선을 동기로써 그 경우 또한 제외하지 않겠습니다. 이 2개의 동기는 또한 현재의 여행자왕래 예를들자면 이전에 한번 합법적으로 동독을 떠났던 동독시민의 여행자왕래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양독관계가 베를린시내와 베를린시주위의 지위가 조용히 유지되었습니다.

본인과 호네커 서기장과의 회담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며 공동적으로 평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양독국가가 헬싱키협정의 최종문서를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여 진지해 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회동은 연방정부의 확신에 따라 규칙적 간격으로 개최되어야 했습니다. 이 회동은 양독국가간의 정상적 교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연방정부는 연방공화국과 협의된 호네커의 답례방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한을 넘었으며 협의가 없습니다. 이러한 답례방문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같이- 효과적이 되려면 물론 양국가간의 전관계에 걸쳐 정치적 분위기가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연방대통령과 본인은 호네커의 70번째 생신을 축하했습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가 회상하는 날일 것입니다. 호네커는 자란트에서 태어나 때때로 그곳을 생각하는데, 헤어버트 베너(Herbert Wehner) 혹은 볼프강미식(Wolfgang Mischick)이 자기들의 고향을 생각하고 라이너 바르젤(Rainer Barzel)이 동프로이센을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독일의 운명은 서로 비슷합니다.

본인은 또한 호네커가 브란덴부르크 교도소에서 민족사회주의 권력자의 적수로서 10년간의 자기의 삶을 잃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교도소생활을 참아야 했던 그러한 독일시대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쿠어트 슈마허는 죽은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인이 독일인과 얘기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양독국가 시민의 희망이, 더 많은 회동과 친밀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집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시대와 긴장을 초월해서 공동

체와 die 공동인식에 대한 의지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본인은 금년 여름휴가 때 라젤부르크성당을 방문했습니다. 라젤부르크는 슈베린의 지역교구의 속하며 또한 귀스트로브가 속하는 동일한 교구에 속합니다. 두개의 대성당은 슈레스비히에서 발티쿰까지 독일문화와 유럽문화의 성장된 단일성에 대해 증언하는 북독일의 벽돌고딕 양식입니다.

이 두개의 경험과—먼저 동독의 귀스트로브, 그 다음은 경계선 이쪽의 라젤부르크—또한 이 두개의 교회인들과의 대화는 내적으로 본인을 매우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속하고자 하지만 그들이 서로 할 수 없는 것에 깊이 감명을 받은 양측의 1백만의 독일인이 있습니다.

만약 동독국가평의회 의장과 마찬가지로 연방수상이 독일땅에서 결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이 옳다면—그리고 그것은 옳다— 양 행정수반이 서로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인 전체가 서로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평화와 모든 유럽시민에게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은 폴란드인, 헝가리인, 체코인에게 중요하지만 스칸디나비아인, 오스트리아인, 그리스인 등에게도 또한 중요합니다: 자기의 이웃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이웃에게 귀를 기울이고자 하지 않는 자는 이웃과의 평화를 유지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은 독일인사이에서—지금도 많은 다른 이유에서—훨씬 더 중요합니다.

본인은 양독국가가 서로 다른 동맹체제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평화토론과 군비축소 토론에 본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기대해야 한다는 동료겐서의무장관의 견해를 강조합니다.

평화에 대한 걱정은 물론 독일의 특성이 아닙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 평화의 위협에 대한 걱정과 공포가 전파됩니다. 군비축소의 요구와 평화세계의 동경은 바로 금년에 도처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표현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동경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은 낮은 군비수준으로 조약상 협의된 군사적 평형을 통해 연방정부의 평화정책의 주요요소가 됩니다. 무기만이 평화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는 결코 안전보장만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장은 단순히 수확방정식이 결과가 아닙니다.

평화는 정직과 신뢰에서 기인하며 회담과 협상에서 기인합니다. 조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조약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군비축소에 대한 조약없이 동서간의 안전보장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연방의회에서 오랜 항의와 오랜 논쟁끝에 연방공화국은 핵무기확산 금지조약을 승인했으며 그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우리의 독일인은 최종적으로 핵무기의 사용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의 조약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연방정부가 독일의 이름으로 또한 원자의 힘이 마침내 조약의 일부를 실현할 것을 재삼 재삼 요구한다면, 연방정부는 그 만큼 더 많이 정당화됩니다. 내적 정열을 가지고 본인은 국제연합 앞에서

두번 표명한 핵의 초강대국에 대한 호소를 반복합니다: 「너희들은 똑같은 조약에서 핵의 준비축소에 책임을 갖고 있다. 이 책임을 완수하라!」

다수의 새로운 소련의 중거리미사일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나라로서 연방공화국은 제네바에서 진행된 중거리 핵무기에 대한 미·소협상을 특히 중요시 합니다. 연방정부는 또한 이러한 회의성립과 협상목적에 기여했습니다. 본인은 양측이 제네바에서 진지하게 협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양측 자신도 또한 커다란 걱정을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협상은 북대서양동맹이 소련의 대응한 소위 NATO-이중결의를 통해서야 비로소 가능케 되었습니다.

본 결의는 그 밖에도 처음으로 다른 측의 재무장과 함께 자동적으로 한측의 사전무장에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본 결의의 핵심은 오히려 공동협의로 감축하자는 제의에 있습니다. 그 핵심은 4년동안 그러한 협정성립을 준비했습니다. 그 협정은-군비확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군비감축을 통해 평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제네바협상이 내년말 이전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효과적 가능성을 우리는 미국과 긴밀한 일치물 통해 봅니다. 우리는 조약상 보장된 평형을 고집함으로써 우리가 미래에도 다른 측의 일방적인 군비확장을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측의 일방적인 군비감축을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이 생깁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이 부연합니다. 자기자신의 폭력사용에 대한 조약

상 포기는 그 포기가 자신의 인간 품위와 자신의 인권을 손상시킨다면, 외국폭력에의 저항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팔크란트, 남아프리카의 경우를 통해를 알고 있습니다: 제삼 제사 국가들은 다른 민족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실제적인 위협을 인식하지만 우리는 그 위협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위협을 막아야 합니다. 북대서양동맹의 군사적 전술에 관해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방어체제속에서 격렬한 토론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북아메리카인, 유럽인 그리고 양쪽 국가인은 -도처에서- 자기의 긴급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것의 불안을 빈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근본이 전부 절멸한 후 슬퍼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빈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습니다:

우리는 화약통 위에 앉아 있습니다(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해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화약을 이 통에 삽으로 퍼 담습니다. 안전보장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우리자신의 안전보장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준비축소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준비축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전보장은 언제나 또한 다른 사람의 안전보장입니다. 그리고 준비축소는 언제나 또한 우리 자신의 준비축소입니다.

본인은 추기경을 수년전부터 알고 있으며 매우 존경합니다.

(기민당 (CDU) / 기사당 (CSU)의 환호)

- 본인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존경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중간

환호소리가 존재하는 것을 경탄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추기경이 말씀하신 것에 다른 생각을 부연합니다. 우리의 병사들은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그들은 이웃이 비평화적 생각을 품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것은 이웃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폭력으로 공격하고자 한다면 아니면 폭력 혹은 위협으로 자신의 정치체계를 우리에게 강요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높은 위협을 무릅써야 합니다. 이것은 위협의 초안입니다.

이제는 또한 상호간의 위협이 역사속에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핵무기위협이 미중유의 파괴력은 새롭습니다. 이 파괴력이 그때그때 적수를 한번만 섬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공할 만합니다. 이 파괴력이 전인류를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롭습니다.

본인은 카톨릭 신도대회에서 콜박사와 함께 얘기하면서 며칠전에 이 딜레마에 빠져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교도가 이 무기의 실제적인 사용을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아니면 적어도 예감한다면 그리스도교도는 위협하기 위한 핵무기배치를 또한 위협해야 합니까?

본인은 또 다른 질문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우리의 그리스도교만이 이 딜레마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까? 무신론자인 소련서기장은 이와 유사한 철저한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며 공산당 정치국의 그의 동료들은 이와 유사한 철저한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까?

양협정간의 접촉점에 있는 우리의 독일인은 다른 문제 이상으로 이 문제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서방전술의 상태와 발전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 들입니다. 본인은 최근 동료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말한 것을 진지하게 받아 들입니다. 본인은 최근 동료 비덴코프(Biedenkopf)가 공공연히 거기에 대해 말한 것도 비록 진지하게 받아 들입니다. 본인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속고를 또한 바덴코프의 속고는 반대이지만— 똑같이 중요하게 받아 들입니다. 본인은 바덴코프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그의 견해를 분류합니다.

지상에서의 생명유지와 인류에 대한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갖고 있습니다. 핵의 위협은 인간과 인간의 민족에게 생존 공동체의 의무를 갖게 했습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이 부연합니다. 생존에 대한 의지는 우리에게만 군사적 위협방지를 보장하기 위해 생기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핵무기에 대한 협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협의된 안전보장은 협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유럽의 NATO 최고사령관은 이것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공식화했습니다.

세계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것을 원하듯이, 본인의 신념에 의하면 형상화된 상태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비축소와 군비관리에 대해 협의해야 하며 모든 유형의 병력과 무기에 대해 협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군비경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로드거스(Rodgers)장군은 인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사들은 교황이 카톨릭 신도대회의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공식화했던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참여합니다:

세계상황이 전체 이데올로기와 놀라운 군비경쟁에 직면하여 언제나 위협적인 형식을 받아들인다면 그대들은 그대 그때의 처지에서 정책적으로 책임이 있는 평화적 갈등해소방법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보장과 평화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 노력은 전전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서양동맹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신은 잘 교육받고 잘 동기를 부여받은 50만의 병사와의 동맹이 기여합니다. 우리는 방위군 숫자를 2배이상 증가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6개의 친밀한 동맹국의 병사가 우리의 영토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많은 동맹국과 동맹국의 공공연한 견해를 때때로 철저하게 상기할 수 있는 사입니다. 본인은 또한 그것을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했습니다 유럽주재 미국최고사령관은 총들 첫날에 육군의 유럽인 90%와 해군과 공군의 4분의 3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사실에서 또한 일시적 견해차이가-본인은 NATO-조약의 본성명을 인용합니다-"지배하는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지배받는 사람이 없는 평등사회"에서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벌써-본인은 그것이 20년전이라고 믿습니다-헨리 키신저는 "동요하는 동맹관계" 유럽, 미국관계에 대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미국인 로버트 대스우드 는 이와 마찬가지로 20년 전에 「뒤엎힌 동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본인은 20년전에 출간된 이 두

권의 책을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기 위해 인용합니다.

동맹내에서의 견해차이는 신이 새로운 것을 모르고 정상적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견해차이가 연속책임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본인이 최근 아메리카 여행중에 몇가지 사물을 올바른 관점과 대질문으로 옮기고자 했던 상투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들은 가족내의 투쟁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은 다른 모든 가족내에서도 또한 그렇듯이, 가족내에서 해결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사가 적절한 것처럼 본인은 7월에 본인이 옛친구, 즉 미국의 새로운 의무부장관 조지 슐츠(George Schiltz)와 함께 이끌었던 효과적인 회담을 기억했습니다. 미국·유럽관계와 미국·독일관계의 모든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유럽 소련 천연가스자원 무역과 관련해 또한 미국의 항내출입금지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또한 일반적으로는 동방의 우리의 이웃과, 특별하게는 동독과의 우리의 독일관계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 속에서 그밖에도 명확한 것은 유럽의 동맹국간의 일치와 또한 얼마나 큰지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관계속에서 특히 프랑스 미테랑대통령과 우리의 관계를 두드러지게 하는, 깊이 신뢰하는 집중적 협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협력은 또한 유럽공동체의 영역에서 그것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현재 이 협력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많은 구성원들은 매 6개월마다 바뀌며 금년에는 1월 1일에 시작되는 독일의 유럽공동체 의장국 지위에 희망을 겁니다.

그들은 최근의 독일 의장국 행사기간중 외환시장에서 근본적불황과 신속하게 변동하는 환시세에 대처하여 그 동안 매우 믿을만 했던 유럽통화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유럽 대서양협력은 또한 11월 초에 재개해야 하는 마드리드의 차기 전유럽안보협력회의(KSZE)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연방정부를 위해 동서관계 수립과 보다 더 많은 유럽의 안전보장과 군비축소를 위한 어떤 본질적 기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금일 이 과정의 중간대차대조표를 끌어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실망과 바로 금일 다시 마음속 깊이 걱정하면서 추구하는 폴란드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긍정적 중간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헬싱키회담의 최종문서가 없다면 동서관계가 보다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유럽인은 그 범위가 결코 자기의 희망을 충만시키지 않았을지라도 이러한 조약작업을 노련하게 이용했습니다.

본인은 두가지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1975년 헬싱키협정 이래 폴란드에서 -그후 6년 이내에- 22만5천명 이상의 독일인, 거의 25만명이 연방공화국으로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6년동안에는 6만8천명만이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루터교회의 세계동맹이 동방과 소련의 코작지방과 멀리 떨어진 루터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공동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속적인 걱정을 무시하고 1975년 이래 Helsinki협정을 토대로 명확한 지위개선을 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헬싱키 협정을 이용하는 방법은 위태로웠습니다 인권, 인간 접촉, 그리고 정보의 영역에서 퇴보가 우려됩니다. 거기에 소련의 사적 시민을 위한 전화교류에서 감정속박이 또한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폴란드정부에게 전시법(Kriegsrecht)의 폐지와 구속자의 석방, 그리고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요구할 권리를 또한 우리에게 부여하는 최종문서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기간의 정책이 반응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목표의 강인한 고집만이 그리고 참을성 있는 용기와 이성의 신뢰만이 우리의 대륙의 모든 참가자에게 평화적 미래를 보장합니다.-동시에 양독국가의 시민에게 평화적 미래를 부여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평화정책은 또한 남북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제3세계의 전쟁가운데 많은 전쟁이 거의 동서대립으로 소급될 수 없고 다른 대립과 다른 필요로 소급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독일인은 이러한 갈등의 사회적 경제적 원인극복이 또한 포괄적 평화정책에 속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발전원조와 제3세계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다른 대륙에서 국제연합현장의 현대 국제법의 핵심부분인 폭력포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세계국가의 비동맹주의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바로 발전정책을 통해 이 비동맹주의를 능동적으로 촉진하고 보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비동맹주의에서 세계의 중요한 안전성요인과 동시에 세계평화에의 기여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만을 경계합니다. 우리는 세계강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세계강국이 아니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단을 국제적 국가사회에서 받았던 큰 비중과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체험하는 세계의 정치적 위기가 또한 양독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적 위기는 우리가 이미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장애물을 증가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양국가의 사람은 자기에게 강요된 분단을 무시하고 한민족으로 느끼는 것을 중지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양국가의 독일인은 자기가 오늘날 내다볼 수 없는 기간동안 서로 다른 사회질서와 서로 다른 기본가치를 지닌 두개의 서로 독립된 국가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최소한 베를린장벽의 설치이래 머지않은 장래의 분단극복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시민의 이익을 위해 양독 국가간의 관계변화가 열망되어야 하며 이것은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만 생길 수 있다는 견해가 깊어졌습니다.

본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며 여기서 장벽설치의 날을 돌아볼 기회로 8월 13일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던 콜박사에게 명확히 동의합니다: "우리의 민족의 단일성에 대한 의지가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면 장벽과 가시철조망이 결국은 영속하지 않습니다" 사회자유주의 정책이 의지의 영속성에 기여합니다. 기본조약은 기본문제가 있는 경우 서로 다른 지위를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조약은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게 해줍니다. 기본조약은 항상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조약이 인간을 위해 또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양독 국가간의 이성적 관계를 위해 노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독정책은 동시에 유럽평화에 관련됩니다. 겐서가 옳았습니다: “독일 정책은 유럽평화문제로서 또한 유럽지위, 유럽안정, 그리고 유럽긴장완화에 대한 연방정부와 동독의 특별한 책임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빌리 브란트는 우리의 양독민족이 그때 그때 자기 자신의 국가에게서—그리고”...특정한 관점에서 볼 때 다른 국가의 지도부에게서도 또한 이러한 분단민족의 아주 특별한 관계에서 생기는 책임완수를 기대한다고 겐서 외무장관에게 그 당시 정당하게 부언했습니다.

하우스지는 우리의 정책이 동맹국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하우스지에 실린 6월 10일자 본성명을 제시합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양독국가간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서독노력의 성공이 유럽평화보장을 위해 중요합니다—이처럼 몇주 전 우리의 모든 동맹국에 의해 여기 본에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군비관리문제와 군비축소문제에 대한 동독과의 협의회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협의회담을 월말에 속행할 것입니다. 양독국가는 동서관계를 위한 추가책임이 양독관계에서 서로 생기지 않기 위해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양독국가는 그밖에도 그때 그때 양독국가의 동맹속에서 유럽평화를 보다 더 안전하게 하는데 양독국가의 영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경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양국가는 서로 다른 동맹에 속하며 그 동맹에 탈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우리의 우방국과의 동맹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동맹을 미래에

맺을 것입니다.

동독과 우리와의 장기간의 관계가 물론 동독의 내적 발전과 동독 국가당, 즉 동독사회주의통일당의 내적 발전에 또한 달려 있습니다. 동독사회주의통일당은 외부로의 선전에서 동독사회주의통일당이 독점체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칭된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사람의 배후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진보에 대한 의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대의 문제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독사회주의통일당 지도부에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이 제안하는 사람이 있으며 오히려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발전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 철저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여전히 계속해서 완성되며 가장 심한 부상과 사망을 야기시키는 경계선 차단시설의 반대자가 또한 동독사회주의통일당에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본질적으로 동독의 정치적 형사재판을 제한하여 인간답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동독사회주의통일당내에도 또한 존재 하길 바랍니다.

베를린을 위한 조약정책이 입증되었습니다. 4강국협정은 8년 남짓 동안에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영향을 미쳤습니다). 긴장완화정책과 갈등극복은 바로 베를린을 위해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연방공화국은 베를린의 생활능력을 강화하는 연방공화국의 구조협력에 의해 남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면밀하게 생성중인 수단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그렇습니다. 현 베를린시장, 바이츠제커씨에 의해 어떤 좋은 협력이 존재

합니다. 우리는 독일정책과 베를린정책의 주요한 문제속에서 미래에도 베를린시의회와 연방정부간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또한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현재 베를린에 관계하는 특이한 경제적 불황에도 또한 해당합니다. 베를린과 전독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현재 경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이미 이전에 매우 심화되고 있는 세계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두번의 석유값 폭동에 있습니다. 우리는 1973~1974년의 첫번째 석유값폭동을 비교적 신속하게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1979년의 두번째 석유값 폭동 이후 모든 국가에서의 경기후퇴는 그동안 세계대전 이후 시대의 모든 경기실패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우리는 경기후퇴가 그렇게 온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왜 이전의 국민경제학이론의 의미에서 볼 때 고전적 경기공황과 함께 경기후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의 경제구조를 변화된 세계경제조건과 지난해의 근본적 변동에 맞추어야 합니다.

연방공화국에서의 우리의 경제는 우리가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용역의 거의 30% - 거의 3분의1- 을 외국에 판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경제공황에 의해 물론 함께 심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2급자동차는 외국시장에서 팔려야 합니다. 하노버와 독일의 도처에서 생산된 10종류의 공작기계 가운데 7종류가 외국에서 팔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보지 않고 이익 보고 팔려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는 다른 나라가 자기나라의 수입제한을 강요받는다면 즉시 영향을 인지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가

너무 많은 부채를 갖고 있어 더 이상 수입에 자금조달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동구공산권 나라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틴아메리카 -예를 들자면 멕시코- 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국제신용시장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것은 연방공화국과 우리의 피고용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은 미슈닉(Mischnick)씨의 말에 동의하는데 그는 며칠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몹시 험난한 시대에 경제적 사회적 이익사회의 안전성 보장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듯이 이 과제가 전세계적 공황현상을 통해 모든 산업국가에게는 더욱 더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수출 토대가 대부분의 다른 나라보다 좋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외국에 대해 상당한 안정성우위를 주장했으며 미래에도 이를 주장할 것입니다. 연방공화국에서는 금일 소비자가격이 1년 전보다 대략 5%만 상승했으며 벨기에에서는 10%, 프랑스에서는 13%이상, 이탈리아에서는 15%이상이 상승했습니다.

실업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대부분의 다른 산업국가보다 사정이 비교적 더 좋습니다. 본인은 일본을 제외합니다. 우리의 경우 현재 모든 소득자의 6.5%가 실업입니다. 프랑스는 8% 이상, 영국은 12% ,이탈리아는 10% 이상, 미국은 모든 소득자의 거의 10%가 실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산업국가보다 비교적 더 좋은 것은 큰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실업

이 지배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보호무역주의를 놀라운 정도로 확대시켰습니다. 세계의 많은 정부는 -일부는 공개적으로 일부는 비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자기의 국민경제로의 상품수입을 막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상황에서 국제적·경제적으로 협력할 준비와 상호간에 고려할 준비가 언제나 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는 지난 10년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졌습니다.

출처 : 1982년 9월 9일자 독일연방의회 제3차회의 의정서

51. 청소년 관광에 관한 FDJ 중앙위원회와 독일연방 청소년연맹 의장의 공동언론성명

1982. 9. 20.

FDJ 중앙위원회의 초대로 1982년 9월 19~20일에 독일연방청소년연맹(DBJR)의장 요셉 홀부르크는 공식방문을 위해 동독에 체류한다.

부의장들인 게하르트 프라쉬, 한스 브라우저, 우베 요힉스 및 올리히 반예스와 독일연방청소년연맹(DBJR)의 업무집행자가 독일연방청소년연맹 대표단의 구성원이다.

FDJ의 측에서 에곤 크란츠 중앙위원회 제1서기, 에버하르트 올리히 제2서기, 군터 렌트너 서기 및 실무관계자 클라우스 아히힐러 그리고 쿠르트 잔이 확증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발전한 양조직관계가 존중되었다.

대표단은 실질적 공개적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던 동독의 사회교육

성 장관 교육성장관 마고트 호네커와의 정보회담을 가졌다.

FDJ와 독일연방청소년연맹(DBJR)은 국제적 긴장의 위협적 강화에 직면해 능동적으로 평화보장에 기여하는 것 이외에 중요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긴장완화정책 과정에서는 이성적 양자택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청소년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그래서 독일연방청소년연맹과 FDJ는 국제적 관계 속에서 대결 대신에 협력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중앙위원회 서기장겸 동독국가평가회의 의장 에티히 호네커와 서독수상 헬무르 슈미트와의 베르벨린호수에서 열린 회담은 조직적평화정책을 통해 유럽과 세계가 결코 다시는 전쟁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기여하는 것이 양독국가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양측대표단은 전세계적, 보편적 완전한 군비축소에 도달할 때까지 군비경쟁중지, 군비축소조치에 목표를 둔 모든 노력을 지지했다.

양측은 위협적 전쟁위험을 막아 상호간의 포괄적 군비축소에 도달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측의 견해에 따라 어떤 조치와 이니셔티브가 취해져야 하는지를 충분한 의견교환 속에서 상론했다.

양측은 신뢰를 형성하는 조치가 확대되고 핵무기보급에 대항한 신뢰할 수 있는 장애물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일치했다.

양측은 핵전쟁의 지역적 위협에 대한 생각이 평화를 전망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한다. 양측은 협상을 통해 대략 군사적 평형을 토대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양측의 안전보장관

계를 고려하는 준비축소에 대한 포괄적 협의(Ubereinkunft)가 천천히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

양측은 소련과 미국간의 중거리핵무기 제한과 축소에 대한 제네바 협상이 명료한 조약상 결과를 이끌어 내기를 기대한다.

7년전의 헬싱키회의 결과에 따라 양측은 전체로서 최종문서(schlussakte)의 증가하고 있는 중요성 및 최종문서의 목적과 원칙의 포괄적 실현의 신뢰와 안전을 형성하는 조치와 준비축소에 대한 회의소집과 함께 마드리드에서 열린 회담의 성공적 종결을 기대한다.

동독과 서독간의 지속적인 관계정상화는 또한 양국가의 청소년조직의 협력을 위해 본질적이다. 양측은 양독국가의 선린적 관계를 발전시킬 경우 청소년의 역할과 청소년의 협력형태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계속에서 청소년 -관광객교류의 발전이 크게 고려된다. 양측대표단은 청소년관광이 FDJ와 독일연방청소년연맹의 협력을 깊게 할거라는 점에서 청소년관광이 확대되며 그때 그때의 국가상황에 따른 신청자에 따라 관심이 있는 모든 청소년에게 개방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관광은 기존접촉을 위해 중요한 보완을 나타내야 하며 중요한 보완확대를 도와 그때 그때 초대국의 모든 층의 청소년과 만남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 양측대표단은 최근 동독의 청소년여행사 "Jugendtourist"와 서독의 여행기업, 즉 독일청소년유스호텔, 「한자여행사」, 「국제접촉사」, 독일대학생협회의 여행서비스, CVJM-여행사간의 조약협상을 환영한다.

양측은 정규적으로 청소년관광의 체험을 교류할 것이고 청소년관광

의 촉진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 양국가 참가자의 적절한 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출처 : 1982년 9월 22일자 본의 독일연방청소년연맹회지 "aktuelle Nachrichten und Informationen"

52. 동독과 환경보호영역에서의 규정에 관한 내독성의 통지

1982. 9. 29.

베를린 하수의 정화를 위해 1982년 9월 28일에 결정적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동독은, 팔켄베르크, 뮌헨호페, 북쪽에 제3지역 하수 정화수역을 건설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서독은 액수 6억8천만 DM으로 전투자에 참가할 것입니다. 모든 3개의 하수정화단계는 1986년까지 운영될 것입니다.

베를린 하수, 특히 슈프레강, 하벨강, 하벨강의 호수는 수년전부터 폐수정화를 통해 상당히 오염되었습니다. 물론 폐수가 기계적 생물학적으로 정화되지만 그 물은 동베를린의에서 나온 대규모의 인산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수의 불안정한 정수시설입니다. 상수도 보호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베를린의 주요휴양지역과 음료수획득 지역인 하벨수원지가 몇년동안에 파괴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생태학적 손해가 정화장치의 3단계 정화장치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방지됩니다. 이러한 화학적-기계적 생물학적 이외에 정화장치는 폐수에서 침전제를 사용해 인산염을 없애줍니다: 인산염 함량이 정수장치에서 최고 6mg/IPO, 내지 2mg/IPO로 줄어듭니다. 이 수치의 염수는 정기적으로 측정치의 전달을 통해 확인되고

통제됩니다.

도시의 생활능력을 위해 베를린 상수도의 정화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투자비용에 재정적으로 참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협의를 위한 조치는 환경보호영역에서의 첫번째 보다 큰 내륙 규정입니다. 본회담이 1980년 3월까지 협상개시로 이끌지 않았다면 1973년 기본조약에 대한 부록의정서에 따라 회담은 환경보호영역에서 그때 그때의 다른 측을 위해 손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은 1980년 4월 30일에 개개문제를 지금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관계속에서 또한 베를린 상수원 보호문제의 해결을 위해 즉각 전문가 회담 개최에 동의했습니다(참조 1980년 4월 30일자 공보 제46호 385면).

동독이 1982년 9월 28일 베를린시의회에게(부록문서 1)보낸 서한에 의해 수행할 의무가 있었던 현 규정의 기술적 규범이 본 전문가회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시행목록이 동봉되어 있는 서한은 동시에 어떤 특정한 상수도보종과 상·하수도 시설 및 정화시설에 대한 그의 기술적 세부사항을 포함합니다. 같은 날짜 서독상임대표 지도자가 동독의 보건환경처 차관에게 보낸 통지에서 (부록문서 2) 연방정부는 손해방지를 위한 개개의 상수도 문제해결에의 귀중한 기여로서 계획된 규범을 환영했으며 고정금액으로 투자비용에 참가할 것을 수락했습니다.

본 통지는 동독정부가 베를린시의회에게 보낸 서한과 관련되며 연방

정부의 지불약속을 1980년 4월 30일자 양측의 성명과 명확하게 관
련시킵니다.

위임된 지불의무는 입법 단체를 통해 재정상의 전환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부록문서 1

동독내각

보건환경처 장관

1982년 9월 28일 베를린

환경보호 및 도시발전 상임위원회

의장 델샤이머 박사 귀하

서베를린

존경하는 델샤이머박사!

본인은 귀하에게 하기사항을 통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동독은 활켄베르크 정수장 뮌헤호프 북부에 인산염제거시설의
건설을 위해 동봉한 시설목록에 따른 건축규범을 제정할 것입니다.

이 시설의 건설은 이미 양도한 기술적 건축공정자료를 바탕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언급한 정수장의 가동시설의 인산염함량이 -비여
과실험에서 측정됨- 1986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함량 최고 6mg/
1Po₄(2mg/1P)로 감소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정화시설에서 규정된 인
산염감소는 일주일 중 5일을 가동하여 그중 하루를 선택하여 측정
되어 집니다.

측정결과는 베를린 하수감찰관에게 매달 한번 서신으로 통보됩니
다. 활켄베르크와 뮌헤호프의 배수는 슈프레강으로 이어집니다

(ableiten).

정수장 북부가동장치에 관해 북부지역의 오염물질이 170,000m³/d까지 생길 것입니다.

유출관계가 규정되어 북부지역의 정화과정물질 유출이 1986년부터 3m³/s를 초과하지 않을 때 잔여물질이 하수조를 경유하여 배수됩니다.

2. 그것은 건축규범을 위해 6억8천만DM상당의 자본참가가 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6억8천만DM 상당이 전액수가 다음과 같은 분할불입금으로 지불됩니다:

- 1983년 4월 1일에 2억DM 상당의 1983년 연부금이 지불되고 1983년 11월 1일에 1억6천만DM 상당의 1983년 연부금이 지불됩니다.
- 1984년 6월 30일에 1억6천만DM 상당의 1984년 연부금이 지불됩니다.
- 정수장 활켄베르크, 뮌헨호프, 북부의 3단계 정화시설 설치, 개시와 건축규범의 제정 후 1억6천만DM 상당의 1985년 연부금이 지불됩니다.

언급된 총계는 고정가격으로 이해됩니다.

높은 경의를 표하면서

보이크트 서명

부록문서 2

서독상임대표 지도자 한스 오토 브로이티감이 동독 보건환경처 차

관 히틀러에게 보낸 통지

본인은 귀하에게 하기사항을 통보하는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1980년 4월 30일자 성명에 관련하여 서독정부는 손해방지를 위한 개개의 상수문제 해결을 이해 동독 보전환경처의 서한에 준비된 규범을 환영합니다.

서독정부는 상론되고 유효하다고 평가되는 규범을 손해방지를 위한 개개의 상수문제 해결에의 귀중한 기여로 간주합니다.

서독정부는 양도된 시설목록에 따른 액수 6억8천만DM으로 정수장 활켄베르크, 뤼헤호프, 북부의 인산염제거시설 건설에 참가할 것입니다. 건축규범에 대한 언급된 총계는 고정가격으로 이해됩니다.

6억8천만DM상당의 전액수가 다음과 같은 분할불입금으로 지불됩니다:

— 1983년 4월 1일에 2억DM상당의 1983년 연부금과 1983년 11월 1일에 1억6천만DM상당의 1983년 연부금이 지불됩니다.

— 1984년 6월 30일에 1억6천만DM상당의 연부금이 지불됩니다.

1 개시와 건축규범의 제정후 1억 6천만DM상당의 1985년 연부금이 지불됩니다.

서독정부는 건축진보가 이에 상응하는 리듬속에서 생긴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협의된 분할불입금은 독일해외무역은행 AG를 위해 동독이 결정해야 하는 서독 은행구좌로 입금됩니다.

출처: 1982년 9월 29일자 본의 연방정부 공보

53. 베를린 통과 도로상의 상업상 탈출원조에 대한 성명

1982. 9. 29.

공적인 성명에서 서독과 베를린지방의 공적인 기관이 베를린으로 가는 통과도로상의 조직화된 탈출원조를 지지했으며, 그로인해 통과교통의 악용에 조력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이 비난은 동독의 독일인이 그것을 원한다면 동독을 떠나는 불법행위를 금지한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물론 몇몇의 구금이 최근에 서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의 통과교통에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야기시킨다:

우리에게는 감명을 일으키려고 공공연히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직화된 탈출원조가-조직화된탈출원조는 금일 거의 항상 상업적인 이유에서 운영된다-신뢰할 수 있고 비교적 위태롭지 않기 때문에 동독을 떠나는 명확한 방법이라고 한다.

이 표현은 거짓이고 나쁜 길로 인도한다 모험의 유혹과 방법의 변명이 이 영업에서 탈출을 영업의 일 부분이다. 따라서 무지하고 사회적 궁핍 속에서 생활하는 동시민이 교류되어야 하며 협력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직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 놓았던 많은 사람이 그 때문에 동독에서 높은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수년간 형무소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얼마나 경박하게 자기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 의해 내기에 걸려 있었는지 너무나 늦게 인식했다.

조직화된 탈출원조는 금일 일반적으로 탈출자와 탈출자의 조력자에게 있어 무책임한 모험을 의미한다. 그와 동시에 자기의 영업을 하는 그러한 조직의 배후인물은 반면에 스스로 대부분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

조직화된 탈출원조는 매우 종종 불확실한 책략과 관련되어 있으며 드물지 않게 형사상 책략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너무나 자주 거짓된 약속을 신뢰하고 이 방법을 선택했던 원조를 구하는 자는 전보다 더 큰 곤경에 빠져 있다.

유감스럽게도 상업적 사업이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다. 상업적 탈출원조의 영역에서 형사상 부정이 역할을 할 때 종래와 같이 담당관청의 불법행위가 생긴다. 불법행위는 우리의 법질서를 통해 규제되며 합법성에 대한 의무가 있다.

출처 : 1982년 9월 29일자 본의 내독성 언론통지

54. 독일연방의회에 앞서 연방수상 헬무트 콜박사의 정부성명

1982. 10. 13.

(발췌)

대통령,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독일역사의 상기는 개혁에 속합니다.

독일인의 민족국가는 분단되어 있으나, 독일민족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민족은 존속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분단극복이 역사적 시점에서만 생각될 수 있습니다.

1983년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역사의 지고함과 깊이를 생각나게

합니다:

500년전에 마틴 루터가 태어났습니다. 50년 전에 독일독재정치가 시작되었으며, 독재정치에 의해 파멸의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동베를린의 노동자가 공산주의 전제정치에 대항해 쫓기 했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에게 우리자신의 역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독일연방공화국은 파국의 그림자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그동안 자기자신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국가의 역사와 분단민족에 몸을 바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연방수도 본에서 1945년이래 독일역사에 대한 수집활동이 시작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민족의 단일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기본법의 전문이 적용 됩니다.

전독일민족은 독일의 자유와 단일성을 자결권으로 이룩(완성)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벽, 가시철조망 그리고 사격명령이 존재하며 독일에서, 유럽과 세계속에서 동서간의 최근의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성과 이성 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사고는 자유로우며 인간은 생명의 위험없이 독일에서 독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법의 의지는 우리의 서방우방과의 조약상 협정을 받아들였지만 또한 동방인접국과의 조약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4강대국의 책임과 권리를 전체로서 독일과 베를린과 관련

하여 고려합니다. 서유럽3강대국은 우리의 독일정책을 지지합니다.

동방과의 잠정협정이 협의됩니다. 우리는 이 조약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조약을 능동적 평화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가 위임된 책임을 진다는 사실에 기대를 걸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독이 또한 이 조약의 정신과 내용에 집착하기를 기대합니다. 즉 정치적 목적을 추구할 경우 폭력제외와 서로 헤어진 사람의 지위개선을 통해서 또한 중유럽평화를 보장하길 기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한스 디트리히 겐셔외무장관의 말이 중요합니다: "독일 정책은 유럽평화정책입니다."

조약작업에 속하는 1970년 8월 12일자 독일의 단일성에 관한 서한이 우리의 정치목적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우리의 정치목적은 독일민족이 자결권으로 독일민족의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독일국가의 협력은 독일인과 유럽의 독일인 이웃을 위해 개선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협상과 회담을 속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현행협정을 토대로 포괄적 장기간의 협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조약체결에서 양방간의 의견일치가 존재했던 것에 대해 나중에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연방정부는 조약신뢰하에서 이해합니다. 또한 그 일치는 기본조약과 관련해 특정한 원칙상 문제가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는 것에 속합니다. 이 문제는 금일도 또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문제해결이 지속적 관계발전에 대한 전제조건이 된다면 조약신뢰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동독과 서독간의 내독 무역은 협력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1951년 베를린협정과 베를린협정의 추가협정을 토대로 서독은 또한 베를린변영을 위해서 무역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베를린방문객과 동독방문객을 위해 의무교환액 인상 주장합니다.

동독은 관계개선의 준비와 의지를 쉽게 밝힐 수 있습니다. 동독 정부는 무엇보다도 베를린을 위해 여행자왕래와 방문객왕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알고 있습니다. 동독은 금년에 이 방향에서 전혀 보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린관계 정상화와 기본조약에서 열망된 선린관계를 우리는 지금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독일지위는 중심적인 베를린에서 움직입니다. 연방정부는 정치적 과제와 전 독일인의 기회로서 베를린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베를린에 대한 4강대국협정의 완전한 사용과 엄격한 준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우리는 연방의 베를린과의 관계발전과 견고화를 보증하며 연방을 통해 베를린의 대외관계의 보존을 보증합니다.

연방정부는 베를린의 고립된 지위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노력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동·서 베를린 양측의 연결에 유효한 것과 마찬가지로 베를린원조와 베를린 발전에 유효합니다.

연방정부는 베를린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목적은 여러 해동안 평균치를 훨씬 넘는 산업적 작업장수의 축소를 종결시키는

것과 미래가 확실하고 경쟁가능성이 있는 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전임자가 진행했던 협상에 따라 독일경제의 대표자들과 함께 강화된 베를린계약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그들을 베를린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생활능력으로 인해 베를린은 바로 모든 독일인의 과제를 인지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베를린은 동서관계의 축정기로 남아 있습니다.

베를린은 독일문제의 미해결의 상징입니다.

장벽의 이쪽과 저쪽의 전 독일인은 다음과 같은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인하고 끈기있게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조국 독일에게 봉사할 것입니다.

출처 : 1982년 10월 13일자 독일연방의회 제121차 회의 의정서

55. 신연방정부의 독일정책에 관한 내독성장관 라이너 바르젤 (Rainer Barzel)의 논문

1982. 11. 5.

금주에 우연히 독일정책에서 신연방정부가 추구한다고 하는 연속성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받았습니다. 본인은 연속성이라는 개념에서 본인에게 문제인 것이 무엇인지를 귀하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20년 전에, 즉 본인이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에 의해 내독성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보다 좋은 인간지위가 문제인 경우 우선 인간적인 것이 우리를 책임지며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이해

가 바르다는 것을 본인은 아데나워의 말을 빌어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아데나워의 명철한 이성으로, 아주 조용히 가장 나쁜 인도주의 사건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또한 그 당시 무엇보다도 독일정책적 이유에서 점령지대 주변지역의 문제를 특별히 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은 지금도 다시 할 것입니다.

1966년 에어하르트정부는 이미-수년간의 모스크바와의 협의가 수년간의 헛된 시도로 되었던 무력포기신청이 포함되어 있었던 획기적인 평화각서를 모스크바에 보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하멜보고서는 그후 1968년에 이 방향으로 속행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1967년 동독수상과 연방수상 키싱어 (Kiesinger)의 첫번째 서한교환을 생각합니다.

연속성은 이전 정부의 작업을 포함하지만 우리를 위해 훨씬 더 지속적으로- 대개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기본법 전문으로 소급되며 국민의회임기가 지나서 지속적으로 속행된 운명에 의해 거절당한 우리의 조국과 민족의 일을 바 꾸려는 가장 훌륭한 우리 의회인들의 노력으로 소급됩니다.

서독의 서방통합을 위한 노력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 동맹은 통일독일을 위한 모든 노력의 포기할 수 없는 전제조건으로서 우리의 정치적 스펙트럼의 매우 중요한 힘과 관련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연속성은 붉은 가는 실 이 아닙니다. 연속성은 민주주의 독일전통의 고백입니다 독일정책에서 연속성은 모든 독일민족이 자유 속에

서 민족의 단일성을 이룩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기본법전문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연속성은 서유럽의 여러 강국과의 우리의 독일조약의 지속적 효과를 포함합니다. 연속성은 독일민족이 자결권으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는 유럽평화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연속성은 또한 우리가 기본법에서 의지의 영속적 표현을 발견했던 독일민족의 의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지는 항상 살아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목표에 중점을 둔 하나의 힘으로 감지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역사가 생긴 우리민족의 단일성 현재의 분단속에서 유지되며 또한 민족의 미래를 뚜렷하게 해야 하는 우리 민족의 단일성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연속성은 독일정책에서 우리가 조약상 규정된 협조양식을 고집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데, 협조양식은 명확하게 서로 독립된 자주국가가 중요할 때 독일땅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공동의 한지붕을 만드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전한 독일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민족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승전국의 뚜렷한 의지에 따라서도 - 또한 지금도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독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독을 다른 독일국가로 생각하는 통례적 국제법상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특별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명확성이 지배합니다 -특히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그리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문제의 서로 다른 양측견해가 기본조약에서 명확하게 무관한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

러나 선린적 관계가 협의되었으며 많은 다른 것보다도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이 협의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속성에 속합니다.

본인이 연방정부의 독일정책이라는 용어(표현 Darstellung)를 사용하기 전에 이것을 미리 말해 두고자 했습니다.

중도연립정부의 독일정책은 1982년 10월 3일자 연방수상 헬무트 콜박사의 정부성명에서 구속력있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독일정책은 아주 의식적으로 독일역사에 관련시킵니다.

우리는 독일인의 조국감정을 어떻게 남용했으며, 독일의 이름으로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독일역사에 관련시킨다면 동시에 우리는 소위 「제 3제국 Drirren Reiches」에 반대합니다.

독일역사는 이러한 고난의 12년이상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서독의 33년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모든 독일과 함께 우리 조국의 긴 역사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동독의 독일인을 고려해서 또한 이것을 생각합니다.

독일은 분단되어 있습니다. 독일 땅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동독의 독일인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경우, 우리는 기본법전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민족의 삶의 의지가 어떤 불가침표현을 기본법 전문에서 발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쓸모없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낱말은 기본법의 창시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때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서독기본법의 의지는 우리의 서방친구와의 조약상 협정에서 발견했

지만 또한 동방이웃과의 조약상 협정에서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전체로서 독일에 관해서 4강대국의 권리를 존경합니다. 서유럽3강대국은 우리의 독일정책을 지지합니다. 생산력 있는 협조양식은 동방과 협의됩니다.

비록 우리가 동독이 이 조약의 의미와 목적을 고집하기를 기대할 지라도 우리가 위임받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에 동독은 기대를 걸어도 좋습니다. 이 조약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가 정치적 목적을 추구할 경우, 무력포기의무와 이산가족간의 관계개선을 통해 또한 중유럽 평화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약을 능동적 평화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논쟁이 아닌 회담을 찾습니다: 큰 표제가 아닌 결과.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양독국가의 책임을 넘어서 유럽인과 유럽평화에 대한정보, 전해 그리고 인간을 위해 보다 많은 자유이전 실현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된, 소련의 군비강화에 의해 위협받는 유럽문제를 훨씬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이웃에게 우리의 대립을 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약에 무엇이 명기되었는지를 알고 있으며, 또한 상대방 역시 조약을 정확하게 엄수하라고 재촉할 것입니다. 본인은 그 예로서 인상된 의무교환액을 듭니다, 또한 우리는 기본조약에서 행해진 그외의조약목적, 예를 들자면 문화협정 및 학문·기술협정의 목적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양국가의 존재를 고려함에 따라 동독정부는 우리가 민족의 단일성에 집착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분단결과

를 완화하고 협력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독일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동독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연방정부의 가능성의 테두리 안에서 동독과 서독간의 관계에서 추가적 긴장이 생기지 않기를 염려할 양측의 책임을 파생시킵니다.

연방정부의 이해속에서 특히 이것은 이산독일인을 위해 양독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방정부는 그러한 정책을 보다 높은 중유럽 안정성에의 기여로 간주합니다.

조약작업이 속하는 독일의 단일성에 대한 서한은 “독일민족이 자결권으로 민족의 단일성을 다시 되찾는 유럽평화상태에 영향을 미치려는” 우리의 정책목적을 확실하게 공식화 합니다. 유럽평화정책으로서의 독일정책이라는 한스디트리히 겐셔외무장관의 말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이전의 연방수상 헬무트 슈미트는 동독지도부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며, 우리민족의 단일성에 대한 의식을 강하게 하고자 하지 않았다고 적절하게 확인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바로 여기가 우리민족이 입증해야 하는 평화적 정치적 논쟁의 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은 전독일인이 지지, 특히 독일 연방의회의 모든 정파의 지지도 또한 발견하길 희망합니다. 메클렌부르크의 루터교파 지방감독 하인리히 라트케(Heirich Rathke)는 이것을 얼마 전에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과제를 집중적으로 인식한다면 재통일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조만간에 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통일문제는 경계선위의 다리에서

저멀리 영향을 미치는데 있습니다.”

양독국가의 협력은 독일과 독일인을 위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진퇴하는 협상과 회담은 속행되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새롭거나 아니면 속행하는 제안으로 여기 저기에서 정제하는 회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현행협정을 토대로 포괄적 장기간의 협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과 우리 이웃앞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우리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우리는 동독정부가 정권교체에 관해 어떻게 발표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동베를린이 콜겐서정부에게 대담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았습니 다. 우리는 그것을 때에 따라서 몹시 더 불쾌한 태도를 자기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욕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실제로 아주 포괄적 복종을 반박하는 논쟁에 참가하지 않았습니 다.

동독은 -본인 자신이 그것을 기대하였듯이- 협력정책의 속행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상황을 어떤 특정한 관찰과 기대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현재의 협상, 회담 그리고 접촉을 목표지향적으로 속행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11월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우편배상총액의 신규정에 대한 2번째 협상회의
- 교통위원회의 제35차 회의
- 주택성장관 슈나이더(Schneider)를 통해 마그데부르크에서 전시

회 「자유공간도시」의 개최

- 교통성장관 돌링거(Dollinger)를 통해 직선 고속도로 베를린-함부르크간 개통
- 함부르크에서 동독주최의 선셀 전시회의 개최
- 학문과 기술분야의 협정에 대한 27번째

우리는 베라(Werra)의 오염때문에 환경협정과 문화협정에 대한 협상을 준비합니다.

본인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의 단계에 따라 중기간, 장기간 계획에 대한 보다 더 집중적인 회담과 정탐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장애가 많은 길”과 “의무적 반동”이라는 스테레오판의 관용어를 본인은 특히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협력수행에 대한 우리의 준비를 선언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동독의 태도를 주의깊게 관찰합니다.

헬싱키의 최종문서는 우리에게 동독과 서독간의 관계수립을 위해 추가조치를 취합니다.

- 우리는 순간이 방해하는 많은 것을 시간이 가능하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금일 이미 그것을 그렇게 많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듯이 독일인이 이주자유를 갖고 서로 왕래하는 유럽평화상태가 될 때까지 점차적인 전진, 지체없이 한걸음씩 해결해 나가는 지불과 보상이 문제입니다. 요근래에 금주 금일에 마드리드를 관찰한 사람은 바르샤바와 카불을 생각할 것입니다. 즉, 소련의 준비확장을 생각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커다란 낙천주의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방정부는 동독과 서독의 경계선에서 인간을 경멸하는 봉쇄시설체를 인권침해와 인간품위 손상으로 간주하며 동독과의 관계에 대한 무거운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연방정부는 신체와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이주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끝까지 주장할 것입니다.

조약신뢰하에서 연방정부는 양측간의 조약체결에서 의견일치가 있었던 것을 나중에 문제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약체결에서 조약파트너에 의해 의견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원칙상 문제해결이 지속적인 관계발전의 전제조건으로 되지 않는다면 조약신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상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약과 협정에서 합의된 것이 통용됩니다. 더 많이 원하고 다른 것을 원하는 자는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아주 명백해야 합니다: 동독이 새로운 요구를 가지고 원칙상 범위에서 이탈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또한 수행 할 것입니다. 가령 진지하게, 무분별하게, 예를 들자면 한 대사관에서 동독상임대표의 승격요구를 통한 자는 이와 마찬가지로 원칙상 우리가 쉽게 상세히 그럴 수 있는 요구를 할 경우 놀래서는 안됩니다.

연방정부는 중단된 문화협정에 대한 협상을 다시 재개할 동독의 준비를 환영합니다. 규칙적인 문화교류강화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고수하며 그리고 미래를 예상하기 위해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합니다. 그러한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양정부는 특정한 교류계획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보다 더 좋은 관계를 수립하고 긴장완화에 기여하려는 의지와 준

비가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본인은 우리의 국민에 대한 그러한 행정상 냉혹이 여행자와래와 방문객와래의 개선에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의 소망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경우 연방정부는 동독이 금년에 이 방향에서 약간의 진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묵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금도 실제적 정상 상태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동독은 양국가간의 관계가 미국중거리미사일 배치를 통해 침해받을지 모른다고 암시했습니다. 본인은 우리가 유럽의 중거리미사일 지역에서의 소련의 준비강화 준비의 단계에서 실제적 동서독정책의 속행을 저지하고 현행조약의 엄수를 저지한다고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소련의 준비강화가 양독관계의 토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독일인과 함께 생각하는 자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독은 이러한 우리의 견해를 알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베를린에 대한 4강대국협정의 완전한 이용과 엄격한 엄수를 책임지며 동맹국의 베를린관계 발전과 전고화와 베를린대의 대표권의 안정을 보증합니다.

누가 독일의 옛 수도이며 유럽의 중심적인 베를린이 장벽을 통해 나뉘어져 있는 것을 유럽에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상태라고 간주하고자 했습니까? 베를린에서 유럽은 분단되어 있습니다. 베를린은 동서관계의 축척기입니다. 동시에 그 도시는 미래에 목표를 둔 이성적 협력에 대한 요구와 제공입니다. 만약 우리가 특히 서베를린인의 여행가능성 때문에 또한 동베를린과 동독의 방문객을 위한

의무교환액 인상의 호복을 변함없이 주장한다면.

자연적 주변국가에 의해 갈라진 도시의 심한 어려움으로 인해 지 금도 이러한 부당한 책임이 베를린인을 압박합니다.

독일의 수도가 다시 독일의 옛 수도에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집중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옛 수도는 우리의 법률체제, 경제체제, 그리고 금융체제의 부분입니다. 독일의 옛 수도는 우리의 문화적 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베를린인으로 간주한 존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의 결심뒤에 무엇이 존재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금년 6월에 그 도시의 자유부분에 대한 미국의 보장을 강화했던 레이전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또한 대처 영국수 상의 방문에서 협의되어진 두개의 다른 보호강대국의 확실한 태도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방정부는 또한 베를린이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고려(참작)되는 모든 예방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또한 점령지대주변지역의 발전을 확실하게 속행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수단강화를 통해 1983년에 이미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주에 호네커 서기장이 여기로 초대되어야 하는지가 때때로 의 문(문제)시 되었습니다. 우리는 금일 원칙적으로만 이 질문에 Ja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질문이 아직도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접촉상의 불안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의 연방수

상은 “양국가가 너무나 다른 동맹체제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평화토론과 군비축소토론에 본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여해야 한다”고 정당하게 말했습니다(슈미트는 여기서 겐서를 인용했습니다). 평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다음과 같이 부연합니다: 그러한 회담이 많은 결실을 거둬야 한다면 “물론 양국가간의 전관계의 정치적 분위기가 정상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헬무트 슈미트는 일주일 전에 국가지위에 관한 최근 자신의 보고에서 그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아무도 베르벨린 호수에서 열린 회담이후 적중하지 않은 우리민족의 기대에서 생겼던 실망을 우리민족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고자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1982년 12월 21일- 이전의 연방수상은 독일연방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년에 -나의 근거가 있는 희망이 그렇습니다- 서독과 동독간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그 다음에 있었던 적은 변화가 자극받은 희망에 상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론을 제기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커다란 각성이 그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똑같이 진실입니다. 지속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는 재고할 수 있는 가망이 인간을 위해 이주권을 통한 평화에 대한 그러한 회담을 통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답례방문을 열망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협조양식에의 우리의 정치적 기여이다- 고 봅니다, 우리는 이것 대신에 유럽전체가 분할을 극복하여 완전한 평화상태를 이룩했어야 했기 때

문에 독일국가 단일성이 내일 모레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합니다. 그 경우 우리가 더 이상 독일문제를 책임지지 않을 경우(비로소 우리는 유럽평화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독은,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리고 거기에는 협조양식에 동독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독일인의 단일성, 독일민족의 단일성이 현재의 힘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동독이 공동의 독일역사를 부인하는 것 이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괴테의 150번째 사망일(기일)을 추모한 후에 우리는 내년에 마틴 루터의 500번째 생일을 축하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분단에서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는 독일역사 가운데 하나의 표식으로 양독인은 그때 그때 다른 국가에서의 행사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회담으로 유지됩니다. 우리는 실제적 독일지위와 실제적 독일문제에 대한 회담을 원하며 우리의 정책목적에 대한 회담을 원합니다. 아무것도 폭넓고 공공연한 설명과 같은 활력을 정책에 주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환상 앞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민족의 단일성 요구와 자유롭게 공공연한 사회에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세상과 동떨어집니다. 본인은 잡지 "Deutschland Archiv"에 실린 본인의 선배 에곤 프란케장관의 문장을 한번 인용합니다.

"우리가 독일의 단일성에 대한 서한에서 의정서에 대해 바로 동방에서 명료하게 하였던 우리의 독일정책의 목적표상이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또한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본인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은 통치자의 행위와 명령, 동독에서 올바르게 도덕적인 기준으로 명확하게 재기 전에는 결코 되돌아 보지 않습니다.”

우리민족의 운명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에서 때때로 관찰되어야 하는 근심은 당치도 않습니다. 그때 동독은 그렇게 비꼬거나 하지 않습니다. 동독은 "소위 국가문제"에 대한 동독의 견해표명이 이를테면 서독과의 관계책임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개토론과 논쟁적인 의견교환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독일연방의회의 내독관계위원회의 회의를 경청하고 이에 따라 민족의 단일성문제를 깊게 상론되어야 합니다. 더많은 학급들이 동독과 베를린과 점령지대 주변지역으로 여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성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주정부와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시민이 독일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은 무엇보다도 또한 불가분의 독일에 대한 후결문제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허사가 됩니다. 우리의 공공매체를 통해 중요한 정보가 없다면 그리고 그 매체에서 분단국가문제를 생생하게 상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민주주의의 의지형성과정에 기여하고 특별하게는 국가문제를 다루는데 기여하는 모든 매체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여기서 특히 우리조국의 다른 부분, 동베를린과 동독에서 보고하는 수고를 맡은 그러한 통신원에 관해 언급합니다. 전 연방정

부의 독일정책의 테두리안에서 본인이 이끄는 내독성의 과제는 연방 예산법에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써어 있습니다

내독성은 민족통일에 공헌하고 독일민족의 협력을 강화하며 양독국가의 관계를 촉진하고 연방과제의 독일정책의 책임을 인지할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입법과 행정에서 내독성은 이에 상응하는 관할구역의 계획을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내독성의 공공작업은 객관적 정보를 통해 양독국가의 관계문제를 서로 제시해야 하며 연방정부의 독일정책을 설명해야 합니다. 내독성은 동독과의 경계지역과 다른 경계지역에서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촉진하며 경제적 진흥과 이 지역의 교통개발에 협력합니다.

내독성은 본인의 지도하에서 입법자의 지시에 따 것입니다.

출처 : 1982년 11월 15일자 본의 연방정부 공보

56. 베를린-함부르크간의 통과 고속도로

1982. 11. 20

교통성장관 베르너 돌링거(Werner Dollinger)박사는 1982년 11월 20일 정각 10시에 함부르크-베를린간의 고속도로 구간을 개통할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동독지역의 마지막 구간이 또한 월경 초소 자렌틴(Zarrentin)까지 개통됩니다. 따라서 함부르크에서 베를린으로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교통을 위해 마음대로 이용될 것입니다.

연방지역을 개통한 후에 교통성장관 돌링거 박사는 동독교통성장관

오트 아른트와 함께 회담할 것입니다. 그 회담에 이어 서독교통성 장관은 새로운 북부고속도로를 통해 베를린으로 여행할 것입니다.

간선도로 F5를 대신하는 새로운 통과고속도로에 통과협정의 규정, 특히 우수한 발송이 충분히 적용됩니다. 월경초소 자렌틴(Zarrentin)은 1982년 11월 20일 10시부터 교통을 위해 개통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베를린통과교통 Z.Z는 동독에 의해 새로이 건설된 벨텐 부근의 베를린 링과 스톨페도르트간의 운반도로를 지금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서베를린지역에서 이러한 운반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건설작업(Bauarbeit)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베를린 통과교통이 이미 동독의 새로운 교차점 스톨레드르드 내지 서베를린의 하이리겐호수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은 접속지점 나우젠과 간선도로 F5의 한 부분 및 교차점 슈타겐 서베를린을 통과하기 위해 종래와 같이 오랫동안 고속도로변의 로스톡에서 베를린 정의 서쪽부분으로 구부러져야 합니다.

접속지점 나우엔과 나우엔부르크간의 베를린 정간의 횡단도로(Fernstrasse) F5는 1982년 11월 20일에 더 이상 베를린통과교통을 위해 자유로이 이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차점 하이리겐호수와 스톨페도르프는 1982년 11월 20일 정각 10시에 베를린 여행자와방문객와 방문객와방문객 및 제3국왕래를 위해서만 개통될 것입니다.

출처 : 1985년 11월 12일자 본의 교통성통지

57. 기본조약 10주년 기념일에 즈음한 연방정부의 성명

1982. 12. 22.

이 조약은 동서독관계의 틀과 토대를 형성한다 이 조약의 의와 목적은 유럽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추구할 경우 폭력배척을 통해 그리고 서로 떨어진 독일인의 지위개선을 통해, 기본조약의 테두리안에서 일련의 실제적 인도주의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으며 몇몇 지역의 협력이 발전되고 촉진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양독인을 위해 긍정적 발전도 있었다. 그러나 심한 퇴보도 있었다. 여전히 많은 예상이 빛나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관계정상화와 선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계선에서 인간을 무시하는 동독의 차단시설에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독일의 단일성에 관한 서한속에서 공식화된 목적, 즉 "독일민족은 자결권으로 민족의 단일성을 다시 되찾는 것으로 유럽 평화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집한다. 우리는 분단독일의 단일성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일성은 독일정책의 목적이다.

금일 독일땅에 서로 독립된 두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기본조약은 국가문제를 미해결인 채 남겨놓는다. 기본조약은 전체로서 독일과 베를린에 관련해 4강대국의 권리와 책임을 고려하며 선의로서 생산력 있는 잠정협정을 체결한다.

동독은 우리가 기본조약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진다는 것에 기대를 걸어도 좋다 우리는 장차 또한 동독이 그 조약의 내용과 정신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 동독이 협의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정확한 엄수를 추구할 것이다.

서독은 동독과의 이성적 협력관계를 열망한다. 서독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독과의 포괄적 장기간의 협정에 관심이 있다. 기본조약은 그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낸다.

연방정부는 분단독일의 결과를 완화하는것, 독일인의 협력과 독일민족의 단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연방정부의 과제로 생각한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또한 유럽평화에 기여한다고 확신한다.

출처 : 1982년 12월 22일자 본의 연방정부 공보

58.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중앙위원회 서기장 겸 동독국가평의회 의장 에리히 호네커가 연방수상 헬무트 콜박사에게 보낸 서한

1983. 2. 4.

존경하는 연방수상!

죄송합니다만 귀하에게 스웨덴정부가 동독정부에게 "중유럽에서 양동맹의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의 프란켄까지 배치되어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 없는 지대의 제안에 대한 스웨덴정부의 견해를 들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알려 드립니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동독내각과 동독국가평의회는 스웨덴의 제안을 철저하게 검토했습니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동독내각과 동독국가평의회는 그러한 지대형성이 유럽평화를 유지하고 긴장완화를 지속하기 위해 하나의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스웨덴의 의견을 지지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 사실이 스웨덴정부는 동독이 -스웨덴의 제안을 앞질러서- 평등원칙과 그와 똑같은 안전원칙을 주의할 경우 그러한 지대형성을 위해 동독의 전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았습니다.

스웨덴 의견의 중요성과 양독국가의 평화에 대한 책임과 그와 관련된 핵파멸을 막는데 능동적으로 기여할 책임에서 출발한다면 비록 서독정부가 이 의견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연방수상, 본인은 귀하에게 서독의 결정을 통보해 주신데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첨부하여 본인은 스웨덴정부의 각서와 동독정부의 회신을 동봉합니다.

높은 경의를 표하면서

에리히 호네커

출처 : 1983년 2월 9일자 동베를린의 노이에스 도이취란트

59. 연방수상 헬무트 콜박사가 독일사회주의 통일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겸 동독국가평의회 의장 에리히 호네커에게 보낸 회신

1983. 2. 16.

존경하는 서기장!

본인은 귀하에게 1983년 2월 4일자 귀하의 서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니다. 본인은 서독과 동독이 유럽평화보장과 세계평화보장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관해 귀하와 의견이 일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지위를 위해 긍정적 자극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대화, 협력, 기존조약의 실행, 그리고 더 많은 인간 간의 접촉은 본인의 확실한 신념에 의하면 평화에의 중요한 기여입니다.

서기장, 연방정부와 전대서양동맹의 모든 군비관리정책적 노력은 평화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네바, 비인, 마드리드, 그리고 국제연합에서 우리는 언제나 적은 무기로 평화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낮은 군비수준으로 동서간의 안정된 군사적 평형을 원합니다.

우리의 특별한 기대가 지금 제네바의 중거리핵미사일에 대한 협상으로 향합니다. 국제연합은 그 협상에서 국제연합의 동맹파트너에 의해 미국과 소련이 지역보호 중거리미사일을 포기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동서간의 실제적 군비축소수단이 협의될 수 있으며 유럽 핵위협을 막는데 철저히 기여할 것입니다.

어떤 지역의 핵위협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거기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느냐가 아니고 핵무기가 이 지역으로 조준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유럽핵병기고를 제거하기만 하면 협상은 안정성을 증가시키지 않고 보다 큰 안전의 환상만을 만들 것입니다. 그 협상은 핵무기축소에 대한 진행하는 협상에서 벗어나 빠른 결과를 저해할 것입니다.

모든 군비관리정책적 제안에 대한 우리의 최상의 척도는 그 제안이 유럽의 인습적 갈등을 포함해 모든 군사적 논쟁을 막는데 어

때한 기여를 하느냐 입니다. 중유럽의 중거리 핵 미사일이 없는 지대 의견은 이 요구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견을 지지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유럽의 바르샤바조약의 인습적 속고에 직면해 그러한 점령지대는 대결의 모험을 증가시키기 조차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샤바조약이 상호간의 정선된 군대축소에 대한 비인협정에 의해 파악되는 장소에서만 북대서양조약기구보다 2 배이상 많은 사단, 전차, 대포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간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우리가 군비축소와 군비관리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정선된 입증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그러한 노력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행하는 협상에서 진보에 가장 큰 의미를 줍니다.

서독대표자와 동독대표자는 일현의 그러한 협상에 참가합니다. 본인은 이 협상에 관계하는 원칙문제에 대해 하나의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귀하에게 이미 양측의 의견교환의 목적이었던 그 테마에 대한 회담을 속행하기 위해 우리의 국비축소대리인이 서로 만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그 회담은 4월이나 아니면 5월에 본에서 열렸으면 합니다.

높은 경의를 표하면서

헬무트 콜

출처 : 1983년 2월 23일자 본의 연방 정부 공보

60. 소련의 천연가스를 서베를린에 공급하는데 관한 연방정부의 성명

1983. 3. 30.

연방정부는 루르가스 주식회사와 소련 해외무역기구 소속 소유즈 수출회사 사이에 서베를린을 위해 규정된 천연가스 공급계약과, 또 루르가스 주식회사와 동독의 에너지 결합당 인민경영기업결합(VE Kombinat Verbundnis Energie) 사이의 운송조약에 서명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연방정부는 에너지정책상, 또 환경정책상 높은 등급의 천연가스가 베를린에 공급되어야 하리라는 점에서 베를린시당국과의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루르가스주식회사와 V/O소유즈수출회사 간의 조약과 더불어 독-소 천연가스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실현되었다. 조약당사자들은 이미 1981년 11월에 이것을 예견했었다.

소련의 천연가스를 동독을 관통하여 서베를린으로 보내는 것에 관한 협정은 서베를린에 충분한 창고를 준비하는 것이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좋은 에너지를 베를린에 공급하기 위한 본질적인 전제를 조성한다. 이 협정은 모든 연방정부의 연속적인 노력에 적합하며 내독관계의 테두리내에서 서베를린의 상황을 완화하고 개선시키는데 적합하다. 동독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문제에 관한 강도있는 논의에 따라 얻어진 규정들은 모든 관련국가들의 이해를 고려한 것이다.

출처 : 연방정부의 연료 및 정보청 공보 본, 1983년 3월 30일

61. 국경을 넘어가다 사망하는 경우

1983. 4. 10.

월요일에 동독의 의무성 서독분과 위원장인 베르너 바움게르텔은 1983년 4월 10일 드레비쯔(Drewitz)의 국경통과지역에서 급성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한 서독시민 루돌프 부커르트(Rudolf Burkert)의 문제에 관련하여 동독상주 대표인 한스 오토 브로이티감 박사의 외교조치를 거부했다.

베르너 바움게르텔은 그러한 맥락에서 번지고 있던 비방하는 주장들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거론된 그 서독시민 죽음의 원인 및 사정에 대해서 서독의 해당기관은 동독의 해당기관을 통해 통상적인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았다.

출처 : "신독일"(Nenes Deutschland) 동베를린, 1983년 4월 10일

서독정부 대변인 슈톨체(Stolze)가 월요일에 기자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과여행자 루돌프 부커르트의 죽음에 관한 동독측의 설명은 연방정부에게는 충분치가 못하다는 것이다. 더우기 동독의 세관당국은 다음과 같이 통고해 왔다. 즉 한 유감스런 돌발적 사건이 동서독간 관계에 부담을 지우려는 이해집단에 의해 동독의 공개적인 설명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공표되었다고 통고해 왔다.

동독의 관세청, 즉 드레비쯔 국경세관의 증언에 따르면, 1983년 4월 10일 13시 30분경 둘다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아젠도르프(Asendorf)에 살고 있는 통과여행자 루돌프 부커르트와 헬무트 볼프(Helmut Wulf)는 세관원들에 의해 그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뷔르테

(Boerde)에서 만나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물건을 넘겨 주었는지에 대해 조사받고 나서 그것이 통행협정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해 심문을 받았다. 세관조사결과, 부커르트는 볼프와 들어서 동독의 세관법 및 외환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채 동독인 만프레드 뱌쉬(Manfred Bansch)에게 물품을 넘겨 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여기에서는 특히 3쌍의 자동차바퀴체인과 부속이 딸린 1쌍의 스테레오 전축, 그리고 1개의 여자손목시계가 문제가 된다. 세관기관에 의하면 전체시가는 3000마르크로 평가된다.

심문은 두명의 세관원들에 의해 동독에서 보통 하는 것처럼 정상으로 진행되었는데 14시 40분경 루돌프 부커르트는 갑자기 의자에서 쓰러져 온수난방기 앞부분 기둥에 왼쪽 머리를 부딪혔다. 즉시 연락을 받고 온 포츠담지역병원의 상주 여의사는 다만 루돌프 부커르트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앞서 말한 사망확인서와 병원측의 검시기록에서 드러나듯이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로 확인되었다.

동독 외무성 주무영사관측은 이러한 사실을 1983년 4월 10일 20시경 동독상주 서독대표부에 통고했다. 1983년 4월 13일 8시 30분경 기존의 조약상의 규정에 상응하여 시체의 인도는 헬름슈테르트 국경 통과지점에서 수행되었다.

출처 : "신독일"(Nenes Deutschland) 동베를린, 1983년 4월 19일

루돌프 부커르트씨의 죽음에 관련하여 1983년 4월 10일 드레비츠의 동독검문소에서 벌어진 상황은 벨덴 상주 검찰청의 사망조사처리 대상이 되었다. 상주 사법관청은 이러한 처리의 테두리내에서 독자적

인 책임을 지고 모든 사전지식을 참작하여 사건경위를 조사했고 법적으로 책임있는 결론을 내렸다. 상주 사법관청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루돌프 부커르트씨는 급성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로 사망했다. 후에 그의 시체에서 확인된 상처는 사망의 원인에 의미를 갖지 못한다. 오히려 이 상처가 급성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동안 머리를 부딪혀서 생긴 것이지 다른 행위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수긍이 간다. 사건처리과정에서는 다른 어떤 사건경과에 대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다. 부커르트씨의 머리와 목에서 확인된 상처가 다른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사실적 근거는 특별히 없다. 그래서 통과여행자 루돌프 부커르트의 비극적 죽음에 관한 사건은 주어진 가능성의 테두리내에서 해명되었다. 연방정부는 사건에 대한 재조사할 하지 못했다.

출처 : 의회담당 차관의 의회질문에 대한 연방내독성 장관의 답변, 오프리트 헤니히 박사 1983년 6월 20일. 연방의회인쇄 10/211.

62. 연방정부 대변인 디터 슈틀체 차관의 성명:호네커 방문의 거부에 관하여

1983. 4. 29.

연방정부는 호네커서기장이 올해 연방공화국을 방문해 달라는 초대에 응하지 않겠다는 동독측의 통고를 알게 되었다.

이런 결정에 대한 이유는 이해할 수가 없다. 독일연방공화국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동독정부의 결정은 장애를 제거하고 관계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무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정책목표는 독일인을 위한 진보를 성취하는 것이며 또 거기에 머물고 있다.

출처 : 연방정부 언론 및 정보청 공보, 본. 1983년 5월 3일

63. “신독일” 양독간의 관계에 대하여

1983. 5. 3.

1983년 4월 28일 독일통일사회당 중앙 위원회 서기장이자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인 에리히 호네커는 연방수상 헬무트 콜에게 다음과 같이 통고했다: “동서독간의 관계 있어 최근의 발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들에게 있어 그가 올해도 역시 연방공화국을 방문할 수 있으리라고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침해화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양독 대표자들간의 정기적인 만남을 모범적인 경우로 만드려는 의도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 물론 이 모범적인 경우란 동독과 서독간의 관계에 호의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그럼으로써 유럽 중심부의 상황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사건들 이후 연방수상 콜에 대한 이러한 통고는 아무도 놀라게 하지 못했다. 결국 슈트라우쓰나 슈프링거를 비롯한 다른 의식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상황을 침해화시키는 이들에 의해 하나의 상황이 야기되었다는 점에 대해선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그 상황이란 적대행위란 측면에서 거의 동독을 능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도르트문트의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선수단에 대한 난동사

건, 즉 “살인자”나 “돼지”라고 모욕하는 행위, 트레이너와 선수들에 대한 폭행사건만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서독의 어느 도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 통과여행자의 사망과 같은 그 자체 유감스러운 사건은 “민족 정신”을 격양시키기 위해 조작되었다. 이것은—우리가 통행이외에도 동독과 서베를린간 뿐만, 아니라 동독과 서독간의 여행교류를 포함시킨다면—해마다 3000만명의 규모에 달하는 그런 강력한 방문자교류 및 여행교류에 있어서 유감스럽게도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지난 1981년 1월 1일부터 1983년 4월 26일까지의 기간에 520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그중 서독시민이 397명, 서베를린시민이 123명이다. 동시에 260명의 동독시민이 서독방문도중에 사망했다.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동서독간의 국제적인 실천규정이 협정되었다. 그 규정이 최근까지 적용되어 왔다.

한 통과여행자의 비극적 죽음이 무엇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문제시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슈트라우쓰의 손에 달려있다. 슈트라우쓰, 슈프링거 및 그들의 연방정부 대표자들을 포함한 여타 사람들은—슈트라우쓰의 소속당은 연방정부에 다섯명의 각료를 보유하고 있다—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연속성이란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경기장에서 황소에게 있어서의 투우사의 붉은 망토와 같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통과여행자의 죽음은 동방정책에 있어서의 연속성을 파괴하고 동독 및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정책상에 하

나의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이용되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동방 정책을 위해서 새 연방정부가 들어섰고 또 클정부는 선거전에서 동독의 대표자들에 대한 그 동방정책을 옹호할 것임을 표명했었다.

이제 사물을 거꾸로 세우려 시도한다면 그것은 허위의 공세 중의 일부이다. 이것은 상황을 침예하게 만드려는 자들이 연방공화국의 시민들을 기만하고, 1983년에는 시민 대다수의 공공연한 의지에 대립하여 미국제 신형 중거리미사일을 전략배치 했을 때 더욱 더 그러하였다.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예전에는 유대인이나 자전거타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동독의 통과경로에 있어 거의 10년전부터 마찰없는 통행교류가 되도록 책임을 지고 있는 세관원이나 인민경찰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 마차 악마가 성수를 중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서독간의 선린관계를 중요하는 그런 자들의 무책임한 행동때문에 책임은 세관원이나 인민경찰들 및 동독측에 전가되고 있다. 동독시민들은 그 모든 것을 좋게 이해하고 있다. 그 점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위를 둘러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또한 많은 언급들과 입장표면이 생겨나게 된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즉, 연방수상 콜이 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가 그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조약체계를 근거로 하여 연방공화국을 서방동맹속에 보다 확고히 결속시키고 동시에 지금까지의 동방정책을 계속 수행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다. 이것을 확인하자 일반적으로 환영을 했었다. 그래서 3월 6일, 새로운 선거일 전야에, 콜에 의해 발표된 서독경제의 발전상, 대량실업의 해소, 더 많은 교육기회의

마련 등과 더불어 동시에 독일연방공화국 관계의 폭넓은 구축에 대한 최상의 조건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인상은, 전임 정부에 의해서 다 수행되었고 새 연방정부에 의해서는 계속 수행중인 활발한 상호 각료들의 노력에 의해 한층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달라져 버렸다. 비록 지난 시간동안 동독이 본과 선린관계를 위해 분명히 노력했고 그점에서 동독의 가능성한계까지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라인강변은 봄날인데도 서독측에서는 동도경계를 넘어 찬바람이 불어왔다. 즉 그 바람은 갖은 억측과 졸렬한 비방, 또 날카로운 음조와 진리에 역행하는 주장을 지닌 채 동독과의 관계방향으로 불어왔다. 좋은 관계로의 방향은 어떤가? 그것은 문제 밖이다. 최근 잊혀졌던 위대한 독일의 꿈이 갖는 전체적인 균형이 양독의 현실을 새로이 침몰시키고 있다. 이 말은 적대사상에서, 그리고 냉혹한 전쟁에서 새로이 야기되었다. 남김 없이 해명된, 국경에서의 통과여행자의 죽음은—이점에 대해 동독은 서독의 상주대표부가 알고 있고 또 실증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주 세심하고 극도로 폭넓게 근심하고 있는데—분위기를 의식적으로 가열하는 동기가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권의 문제가 될 때 그 인권에 대해 충분히 떠들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유감스런 사망사건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정치적인 목적에 오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가장 고려할 만한 일은 연합의 한 영향력 있는 정치가와 연합을 지지하는 기관지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낡은 편견들이 들어 있는 전체 상자를 열어 놓고 양절복을 칼로 긁는

정신분열증세가 나타났다. 동독과의 관계에 대해 중상비방하는 것이 오늘날 CSU(기독교 사회주의 동맹)의 모토이다. 그들은 낡은 전형에 따라 정치를 했다. 즉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업과 사회의 황폐화에 대한 내부에서의 환멸 및 불만족을 외부의 적에게로 방향을 틀리는 것이다. 독-독 관계로써 세심하게 비판적인 세계정치상황으로 우회하는 대신에 세력을 확장하고 위협하는 것이 일상적 규범이 되었다. 독일통일사회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에 대한 서독방문예의 초대는 값어치없는 성찰의 대상이 되었다. 이미 과거에는 애석하게도 거부되었던 고위급 정치가들의 만남을 마련하라는 그런 동독측에 대한 요구에 관련하여 거의 날마다 여론이 일어났다. 만남이 과거에 거부되었던 것은 그것이 주권존중의 기본원칙과 절대 합일될 수 없으며 또한 본질적으로는 양국의 공존이라는 가장 단순한 규칙과도 합일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의 사람들이 일을 추진시켰을 때 상황을 침예하게 만드려는 자들은 그것을 파괴하려고 했었다. 그들은 동독이 남의 죄를 대신 짐으로써 긴장완화의 적을 위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또한 본에 있는 동맹내부의 각 계파들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분명하게 실증되는 것이다.

고려해 보면 영향 또한 해외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미 1982년 가을에 레이진 행정부의 한 특사가 본의 콘라드-아데나우어 재단 회의에서 요구했으며 1983년 3월 연방의회 선거이후 연방공화국의 동방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만 했다.

이런 적대적이고 중오에 가득찬, 반동독캠페인의 결과가 나타나는

지금 본에서는 아직 구원할 수 있는 것을 구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연방수상 콜이 설명하기를 뻔뻔스럽고 모욕적이며 기본법의 정신 및 조문에 배치되는 동독에 대한 공격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거리를 두려는 말한마디만을 안한다면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게된다는 것이다. 이런 언론출판의 자유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문제는 제쳐 두기로 하자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표지 속에서 “성좌”와 같은 대중 잡지는 히틀러를 순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사태는 자신이나 세계에 대해 속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궁색한 핑계들은 사안의 진지함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가 못하다. 양독 중의 어느 한쪽 진영에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점을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그 문제는 1969년 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누구도 그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냉혹한 전쟁의 방공호로 물러서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누구나가 다음의 사실을 알고 있다. 즉 슈프링거 기업의 매체들에 의해 시작되어 계속 수행된 캠페인은 건설적인 동방정책의 적들에 의해 구실로, 그러니까 서독 정부권에서 오랫동안 추구된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실로 내세워졌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오랫동안 추구된 그 목표란 동독과의 선린관계 및 협조정책, 그리고 긴장완화 정책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 사회당 당수 슈트라우스의 발언은 거론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연속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정책상의 전환을 원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은 집권장 당수에 의해서도 말로써 문자로써 이것은 설명되지 않았다. 이제 연방공화국 주민들의 마음을 미국산 미사일의

전략배치로 돌리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우리는 이러한 연관관계를 간과할 수 없다. 서독의 대표자들조차도 반 동독 선동캠페인이 서독주민들에게 미약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하며 탄식한다. 도르트문트에서 아이스하키가 열리는 동안,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선수들에게 발생한 불상사는 경중을 일으킨 사건이다. 그 점에 관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살인이나 치사라는 표어로써 증오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그로부터 전략배치의 분위기는 조성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런 슬로전이 누구에 의해 전파되었는지는 누가나가 다 안다.

분명한 것은 본의 누가 정치방향노선을 규정하느냐 하는 것과 또 그것이 어느 도시에서 부터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이다. 즉 서독의 내부적인 관심사이다. 그러나 동독은 연방공화국의 이웃이자 조약상대국으로서 본의 정책이 여전히 평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연방수상 콜이 통고했던 유쾌하지 못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동서독간의 정상적인 관계발전에 한층 더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것은 동독의 정책 및 평가가능성에서 나타나는 선견지명에서 입증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동서독간의 조약들, 무엇보다도 기본조약에 속하는 기존의 조약체계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의 한 부분을 동조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점에서 그런 기능들은 조약체계의 다른 부분마저 의문시하게 되는 것이다. 동독의 대외정책은 소련 및 소련의 다른 동맹

국들과 밀접한 동조 속에서 평화와 협력에 방향을 맞추어 왔다. 동독땅에서는 그들의 서방 이웃들의 어떠한 위협도 일어나선 안된다. 그리고 우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협상의 과정에서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우리의 모든 인민계층은 UN 헌장, 헬싱키협정, 기본조약, 그리고 베르벨린호수에서의 만남의 의결, 코뮈니케 등에 일치하는 이러한 과정을 확고히 하고 있다. 동독과 서독간의 통행협정 역시 유럽의 제 조약체계의 일부이며 1971년 9월의 4자 협정과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독과 서독은 그 통행협정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공동 영향을 끼쳐 왔으며 그것이 보존되고, 또 유럽중앙부의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드높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도 서베를린의 상황은 그 조약체계에 의해 보다 안정되었으며 모든 측에 특히 서베를린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서베를린 하원을 대표하는 모든 정당, 즉 기독교민주당, 사민당, 자유민주당의 대변인들이 날카로운 어조와 강한 바이에른 말로 비난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될 수 있으며 또한 '방향전환'의 정책이 대화의 거부, 합리적인 경제관계의 거부를 의미하며 서베를린의 이익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기 저기서 나타났던 모든 부족한 점들은 여행교류 및 방문자교류, 그리고 그간의 동서독간 관광여행에서 긍정적으로 발전해 왔다. 어쨌든 매년 600만에서 700만명의 연방시민과 서베를린 거주자들이 동독을 방문한다. 반대로 대략 150만에서 200만명의 동독시민들이 매년 서독 및 서베를린을 여행한다. 여행의 경향

은 절박한 가족문제나 관광여행의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

서독과 서베를린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동서독간의 의사소통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여기서는 급부 및 반대급부의 원리에 상응하여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다. 고속도로의 건설 및 확장, 전화 교류 및 우편교류, 동독으로의 면세품 수입의 증가, 서베를린사람들에 대한 일시체류기간을 밤 2시까지로 연장된 것, 이런 것만을 봐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그 규모면에서 볼 때 동서독간의 통행교류는 직접 밀수꾼이나 범죄조직에 의해 통행로가 잘못 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마찰없이 이루어 졌다. 사람들은 동독이 자기 이익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떠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마찰없는 통행교류는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통행로를 잘못 악용하는 일을 줄이게 되면 적은 의혹조정이 한층 더 줄어들 것이다.

동서독간의 교역 역시 잘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연방정부도 알고 있다. 이 교역은 서독측에서 제한조치들을 철폐함으로써 한층 더 포괄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제3세계 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 대기업들간의 협력을 제외하더라도 제3세계 시장에는 약 6000개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독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한층 더 많은 기업들을 포함시키려는 희망이 계속해서 동독측에 전달되고 있다. 교역이 급부 및 반대급부의 원리에 따라 수행된다는 것은 관계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분명한 사실이다. 뭔가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는.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양독간의 교역은 기본조약 및 베르벨린 호수의 협정에 상응하여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같은 경시되는 연방공화국의 경제잡지가 다음 사실, 즉 바이에른의 스토르만베버가 연방공화국의 대외무역을 위한 외관조건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양측관계의 발전에 있어 장애물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그것은 협상 경로에서 해결이 필요한 일련의 문제들이 지금까지 명시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그것은 엘베강 경계에 관련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경제문제를 규정화한 이후 얼마 안되는 거리의 하천경계가 무엇 때문에 국제원칙에 상응하여 규정화될 수 없는지에 관한 확실한 이 유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한번 공동의정서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여행교류의 방문자교류 및 법률조력 등등과 같은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들이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동독의 양보할 수 없는 국 적존중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것은 잘쓰기터에 조약에 위배되는 시설 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대사관에 있어 양국의 대표들을 교체하는 문제에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테마들은 동독에 의해 대화의 협상에 로 이끌어 졌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주장된 것처럼 최대의 요구로서 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양국인들의 생활에 관련된 많은 실천적 사항들이 그 최대의 요구를 규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 이다.

서독 및 서베를린의 환율시장에서 동독 마르크화를 가지고 투기하 는 것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1대 4, 1대 5인 환율관계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조작되었다고는 누구도 논박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동독마크를 가지고 밀매를 하도록 유혹함으로써 동독경제와 우리 국민에게 해가 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비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동독 마르크의 유입 및 반출은 금지되어 왔다. 현재까지는 마찰의 조정만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통행교류 및 방문자교류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동독은 지금까지 그점을 문제삼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가끔 장난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에서가 아니라 마찰없는 방문자교류에 대한 관심에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최저교환원칙의 확정을 통해 접근하고 있는 실제 교환관계를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그밖에 동독과 서독사이에만 최저교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국가들 역시 그러한 규정을 채택해 왔다.

스포츠교류나 문화교류에 관련된 것들은 동독의 대표단이 서독에 체류할 때 겪었던 모욕이나 월권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청소년 관광여행 및 청소년교류에서도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다만 본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성실함을 가지고 존중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거론된 사항들이 제시하는 모든 것은 기본조약의 실현 및 그 정신과 조문에 따른 여타 조약의 실현을 통해서 동독과 서베를린, 동독과 서독간의 관계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경계상황-우리가 이점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즉, 나토의 권력과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권력간 경계상황에 있어서도, 베르벨린호수에서의

회합이후 이미 착수된 이런저런 조치들의 실현 등,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긴장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현재의 적대적 분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동독은 책임이 없다- 어렵게 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 자체는 이해된다. 동독에 있어서는 베르베린호수의 공동회담을 포함하여 정신 및 조문에 따른 체결된 조약체계가 말과는 반대로 뭔가 다른 것을 원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한다.

모든 것을 포괄 할 있는 문제는 평화를 보장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핵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4월 18일 서독수상 헬무트 콜과 독일통일사회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사이의 전화회담의 핵심이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독의 몇몇 일간지에도 실렸었고 국경에서의 사건들이 우선적인 것은 아니었다. 현재에 있어서는 평화보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양독이 누구도 배제할 수 없는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 등, 이런 사실에 대한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마드리드 회담에서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필연성과 같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의 프라하선언 및 소련의 제안들이 화제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레이건행정부가 중무장정책 및 대결정책을 통해서 핵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킬 때 그만큼 더욱 더 영향이 커진다. 미국에서는 이익을 줄 수 있는 핵전쟁에 대해 얘기한다. 또한 서유럽에서 새로운 미사일체제의 전략배치로 인해 최초의 도발능력이 만들어지고 그럼으로써 군사전략상의 세력균형에 변화가 온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핵무기를 가지고 수행되고 전쟁이란 상호 자살행위에 닮아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서독시민도 그렇고 동독시민도 그렇고 어느 쪽도 첫도발이나 반격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따라서 평화에의 의무, 즉 신형 미국산 미사일 포기의 포기, 핵무기로 부터의 유럽의 해방은 곧바로 이루어 져야 한다. 동독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유리 안드로포프의 성명을 완전히 지지하고 있는데 그는 그런 견해를 한 서독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간단히 밝혔으며 미국의 학자들에 대한 자신의 답변에서 표명했었다.

동독의 목표는 서독의 나토동맹에 계속되는 것을 방해하자는 것이 아니다. 물론 본의 사람들도 동독 역시 그들의 동맹속에 확고하게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된다. 그래서 미국산 신형 핵미사일, 예를 들어 퍼싱 II 미사일이나 크루즈 미사일의 전략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독과의 정상관계, 아주 조용한 선린관계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전적으로 마찬가지이다.

1971년 이후 동서독간 관계발전을 결산해 보면 그 성과는 특히 우리가 극복될 수 있는 많은 모순들을 청산할 때 전적으로 인상적이다. 그런데 현재는 동독에 대한 적대감이라는 표지 속에서 하나의 전화를 추구하는 장난이 많이 있다. 기본조약이 실체 및 조문에 위배되는 제한이나 제약들을 호홉을 맞추어 공식화하기 위해 조약에의 충실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수용이다. 본에서 제시된 어떠한 생각이나 결정해야될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 즉 동독은 강요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모든 시도는 동독에 있어서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주지

하는 바와 같이 서독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서독에 의해 통제되
선 안되는 서베를린에 있어서도 손해이다. 독일민주공화국은 동방동맹
에 확고히 결속되어 있는 주권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들의 활동공
간은 평화에 대한 기여와 국가들간의 협력은구가 다루어 지는 곳이
면 어디나 주어진다.

동독의 태도는 연속성, 불변성, 신뢰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우리는
그와 같이 기본개념을 여태껏 가져 왔으며 지금도 가지고 있고 미
래에도 그것을 대변할 것이다. 우리는 체결된 조약의 토대 위에서
유럽의 평화보장과 양독간 선린관계의 발전을 위해 평화공존의 원칙
에 상등하여 영향을 행사하고자 하며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이것은
동독인과 서독인들의 이익에 관한 문제이다. 동시에 그것은 어떠한
대결정책도 원치않는 모든 인민들에 대한 중요한 공헌이며, 그렇지만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나토간의 분할선에 대한 기여는 절대로 아니
다. 핵전쟁의 방지, 균형 및 동등안보원칙에 따른 동서군축, 지속적
인 평화 등이 중요한 문제이다. 요약한다면 평화속에서 자신의 노동
을 영위할 수 있고 그들의 자식과 손자를 위한 좋은 미래가 확실
히 될 수 있는 인권이 중요한 문제이다.

64. 국경위원회의 75번 의정서각서

1983. 6. 9.

두더슈타트(Duderstadt)로 유입되는 배수관의 독일민주공화국 소유지
역정화작업에 관한 의정서각서(1983년 6월 9일 킬(Kiel)의 국경위원회

석상에서 비준됨)가 토대와 활동에 관한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국경 위원회에서 인쇄되었다.

출처 : 연방내독성 발행, 본. 1985년

65. 1953년의 6월봉기 30주년을 기념하는 연방대통령 칼 카르스텐스박사의 경축사

1983. 7. 17.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독일통일의 날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베를린과 동독의 많은 도시의 독일노동자들의 자유와 통일을 요구하기 위해 봉기하여 시가행진을 벌였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통일,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똑같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면 그들은 자유속에서 통일을 추구했을 것이며 동시에 통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오로지 자유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연방수상 아데나우어는 1953년 6월 17일 여기 이 총회장에서 그 성과를 “독일민족의 자유의지에 대한 위대한 공물”라고 특정지었으며 그는 자유속에서의 독일통일의 재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주후 헤르베르트 웨너(Herbert Wehner)가 6월 17일을 독일이 국경일로 공포하자는 사민당의 제안을 확증했을 때 그는 독일의 동인을 6월 17일의 봉기로 인해 기사화 된 “기본적 관심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해마다 그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

니다. 수천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용기, 그들의 자유의지 그리고 그들의 희생으로써 1832년, 1848년, 1919년의 바이마르제국헌법, 1944년 7월 20일 등과 더불어 이 날을(1953년 6월 17일) 독일의 자유사의 위대한 날들 중의 한 계열위에 올려놓았으며 우리는 이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6월 17일의 그 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독일민족이 자유로운 자결속에서 자신의 통일을 재달성하는 유럽의 평화정세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고 새로이 하는 것입니다.

6월 17일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독일민족은 30년이 지난 후에도 자유속에서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인내심을 갖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에게 있어 전혀 민족을 위한 국가의 자결권의 오늘날까지도 거부되었기 때문에 독일인은 한민족이라는 생생한 통일감이 감정과 의지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동방에 있어서의 다양한 상반적 노력들과 서방에 있어서의 많은 포기에도 불구하고 그점에 대해서는 삼백년 동안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공속감의 역사적 효력을 과소평가 해선 안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독일인들이 오늘날 민족의식이 부족하다고 얘기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국가사회주의 및 그로부터 결과된 파국의 시대에 있어 그 민족감정의 무분별한 지나침과 왜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단절, 이러한 결과가 다른 모든 것들 이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

의 정상적이고 평온하며 자명한 민족의식을 표명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서 부터도 우리 독일인은 그 문제를 가볍게 다루어오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점차적으로 민족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독일민족국가라고는 표상이 제국사상이나 황제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세계지배에 깃들어 있는 평화의 질서라는 표상이 제국사상 및 황제권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영토의 분할 및 소국주의는 몇백년 동안 독일에 있어 특징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더우기 그 강력한 영향으로 인해 종교의 분열이 있게 되었는데, 이런 분열 가운데에서 우리 나라만큼 그렇게 고통받은 다른 유럽국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일인들은 국가통일이란 이념을 가진 국가사상에 결부된 그런 발전 이후에야 비로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늦게—그리고 매우 빨리—우리의 체험들을 모았고 우리는 이것을 급격히 진행되는 산업화가 다양한 각각의 문제들을 수반하는 시대에 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빌헬름제국시대에 있어서의 민족적 자부심의 표면 또한 이러한 연관속에, 다시 말해서 뒤늦게 “회복된” 민족의식은 독일의 학문적, 기술적, 경제적 잠재력의 무력적 팽창과 더불어 성장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자세를 분명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즉, 역사적 명예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고, 또한 무엇보다도 오늘날에 결여되어 있는 국가적 통일에도 불구하고 -독일민족은 생생한 현실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독일인들과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인들은 연방공화국이나 동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국으로서의 독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독일문화 및 독일역사의 상속자로서 느끼며 자신을 독일민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인 호네커는 최근에 와서는 비로소 루터를 독일민족의 위대한 아들중의 한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우리 독일인들을 서로 결속시키는 이러한 감정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지나간 세기에 발전해 왔던 것처럼 전승된 우리 민족의식의 내용들에 있어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직 많은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 자신을 하나로 생각합니다. 즉 알프스, 중부산맥, 거대한 북독의 저지대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우리 언어로 된 가장 아름다운 시나 노래에서 불러워져 왔던 지역풍경과 우리 자신을 하나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독일어와 우리 자신을 하나로 생각합니다. 독일에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언어에 속합니다. 독일의 작가들과 철학자들은 독일어로 쓴 그들의 작품으로써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포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및 우리의 관계를 독일어로 나타냅니다. 독일어는 우리 문화의 생명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1954년 망명했다가 독일로 돌아온 한 독일의 여류작가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일어나 그 말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러나 그 말은 독일말이었다.

그 때문에 나는 바다를 넘어 다시 돌아왔다.

말이 살고 있는 곳으로

우리는 독일음악과 조형예술, 즉 바하(Bach), 베토벤(Beethoven), 브라암스(Brahms), 리멘슈나이더(Riemenschneider), 뒤러(Duerer), 크라나흐(Cranach), 홀바인(Holbein),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링게(Ringe), 클레(Klee), 키르호너(Kirchner), 바르락호(Barlach) 그리고 램부르크(Lehmbruck) 등과 우리 자신을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확실히 전체 세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에는 국가적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시 독일의 감정과 행동이 반영되는 음악이자 예술인 것입니다.

이름들을 자기 거론하는 것은 불충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몇몇의 이름들은 우리 정신사의 풍부함을 보여 줍니다. 라이프니츠(Leibniz), 칸트(Kant), 헤겔(Hegi), 훔볼트 형제(Die Bruder Humboldt), 니체(Nietzsche), 막스 베버(Max Weber), 마틴 부버(Martin Buber) 등이 그들입니다. 우리는 문학에서는 그리피우스(Gryphius), 레싱(Lessing), 괴테(Goethe), 쉴러(Schiller), 쾰덜린(Hoelderlin), 하이네(Heine), 아이헨도르프(Eichendorf), 릴케(Rilke), 토마스 만(Thomas Mann),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로부터는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 마틴 루터(Martin Luther), 프리드리히 폰 슈페(Friedrich von Spee) 그리고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간략한 열거를 해볼 때 독일의 문화사 및 정신사에 대한 동부지방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유산을 키우고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단순히 고향을 잃고 쫓겨난 자들의 과제가 아닙니다. 동프로이센(Ostpreuben), 폼머른(Pommern), 슐레지엔(Schlesien), 쾨니히스베르크(Konigsberg) 및 브레슬라우(Breslau) 등은 우리 민족의 정치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정신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물론 폴란드 민족과의 화해를 향한 우리의 노력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폴란드 민족의 자유에 대한 사랑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오늘날 좋은 희망을 가지고 폴란드를 바라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중세처럼 독일인들이 서양의 유산을 보존, 계승발전시켰던 그 시대, 또 19C에 처럼 독일인들이 자유와 권리의 이념을 위해 투쟁했던 우리 역사의 그 시대와 우리 자신을 하나로 생각합니다. 1848년에 완성된 바울교회 헌법은 바이마르제국헌법 및 우리의 기본법에서 계승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수세기 전부터, 특히 150년 전부터 가져온 자연과학, 기술, 경제등의 분야에서의 놀라운 성과와 우리 자신을 하나로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들어 독일연방공화국과 동독은 다시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국가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과들을 이전 세대들과 똑같이 솔직하게 보는 것은 더이상 아

나라는 점을 확실합니다. 우리의 진보에의 믿음은 약화되었으며 우리는 지금까지의 발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부수영향들도 언제나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어떤 정체상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시대나 미래에 있어서의 전세계에 걸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기술적진보를 이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기술과 학문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민족의식-풍경, 언어, 문화, 역사, 학문, 기술-의 전승내용들을 열거해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최근 역사에서는 국가사회주의 독재의 체험 및 1945년의 공동파멸의 체험이 덧붙여질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의 이런 통절한 체험은 더 이상 그들의 기억으로 부터 지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독일의 운명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 그들의 개인적 체험이자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은 그것을 넘어 우리의 전 역사의 일부이며 양독의 청년세대의 역사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1933년 부터 1945년 까지의 그 사건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다가오는 세대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심화된 기반과 중요, 폭력이 모든 미래에 우리 나라에서 불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의 발전으로 이끌어 진 원인을 열린채로 놓아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성, 용기, 헌신, 자유의지를 이 시대로 부터 보

장하는 것 역시 완전히 갖추어야 될 표상입니다. 독일에서, 망명지에서 독일인들이 국가사회주의의 무력지배에 저항하는 것도 거기에 속합니다. 전쟁에서의 독일군인 및 일반시민들의 희생과 고통도 거기에 속합니다.

또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천이백만 독일인들의 고향으로 부터의 추방, 동부지역의 분리, 두개 국가로의 독일의 분할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분단을 통해 우리의 민족의식은 다른 민족의 그것과 구분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처를 안고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도 훨씬 더 오래 그렇게 살아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독일인들의 공통감은 분단의식만큼이나 강력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단된 양쪽의 독일인들을 서로 묶어주는 고리입니다. 이쪽에서도 그렇고 저쪽에서도 그렇고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분단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것과 결부된 책임을 여기저기에서 의식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독일연방의회는 모두 다 우리가 평화의 노정위에서만 재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거듭 천명합니다. 왜냐하면 평화에의 의지 역시 우리의 민족의식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전정부나 신정부, 모든 정당들, 연방군대의 군인들, 또 평화시위 참가자들 등 모두가 그러한 목표를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래에도 무엇이 평화보존을 위한 최선의 길인가에 대해 논의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화에 대한 사랑속에서 유럽이나 북아메

리카의 민족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다른 영역-즉 동독에서-에서도 공공연히 표출되고 중오의 감정이 아니라 평화에의 동경과 평화에의 사랑이 깊은 고착되어 있다고 확신해 왔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등과 우리 자신을 하나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방공화국의 34년 역사를 통해 이러한 기본원리가 그동안 우리의 의식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었던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969년과 1983년 두차례에 걸쳐 자유선거 및 비밀선거를 통해 한 정부의 교체가 실현되거나 뒷받침되었고 이러한 과정의 정당성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양대 선거에서 패배한 자들은 권력을 넘겨주었고 책임있는 야당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방의회 동의하에 가결된 법안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중지당했을 때 연방헌법재판소의 그러한 결정에 다르리라는 것에 대해 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진술된 의미에서 지금까지 서독에서는 자유와 법치국가적 민주주의가 제한받고 있음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1953년 6월 17일은 우리의 동독 동포들도 자유와 권리를 멸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한 동경이 없다면 장벽과 가시철조망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의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영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오랜 공동의 역사는 살아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계속해서 분단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독일인의 행로는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유럽의 평화질서

라는 틀 안에서 새로운 결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독일의 정책은 이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언제나 계속해서 그것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독일연방공화국의 책임은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국가적 민주주의를 실천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것이 우리의식의 일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독일인을 위해 그것의 매력을 보존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정의에 대한 요구가 법치국가적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표상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점에 관해 많은 것을 실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우리는 높은 실업률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엄숙하고도 어려운 검증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이곳 독일연방공화국의 우리들은 옛 전통에 기초하여 연방의 구조를 결정해 왔습니다. 그러한 연방구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국가상황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민족감정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연방의 이념은 동시에 유럽에 대한 우리의 개방감정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의 통합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독일 민족은 우리에게 있어 통합된 자유로운 유럽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독일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훌륭한 유럽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배려되지 않습니다.

개개 민족의 민족의식은 상징속에서 표출되며 우리 독일인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상징은 존재합니다.

검은색, 빨간색, 금색은 모든 독일인들의 색입니다. 나폴레옹

(Napoleon)에 대한 자유의 투쟁에서 그 세가지 색깔은 자유와 통일을 향한 독일인의 노력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1832년과 1948년에 소중하게 여겨졌던 색깔입니다. 따라서 바이마르 민주주의가 그 색깔을 선호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은 우리의 상징색입니다. 1953년 6월 17일에 그 색깔은 브란덴부르크문 위에 게양되었습니다.

1953년 6월 17일과 마찬가지로 1944년 7월 20일 같은 기념일 역시 민족의식의 상징입니다.

무엇보다도 베를린이 그 상징인데 그곳에서 독일의 민족의식이 표명되었습니다. 독일인들의 이산, 우리 조국의 분단은 이 도시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를린은 분단을 극복하려는 독일인들 의지를 가장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곳입니다.

또한 베를린은 지난 12년간, 사실상 동서진영의 열강들이 경계를 이루고, 그러면서도 인간의 안녕을 위한 중요한 합의가 가능한 곳이라는 데 대한 증거가 되는 도시입니다. 그럼으로써 베를린은 상호협조에 대한 상징이 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민족의식의 다른 상징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독일연방공화국의 상징이며 그렇지만 우리의 표상에 따라 전체민족의 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본법에서 들어 맞습니다.

기본법의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 속에서—당시 서방 점령국들이 열거됩니다—독일민족은 신과 인간앞에서 그 자신의 책임을 의식하고, 또 민족적, 국가적

통일을 보존하여 통일유럽의 동등한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의지에 고무되어 이러한 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전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전체 독일민족은 자유를 완성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 연방의회 의사당 역시 통일의 상징입니다. 1949년 이후의 모든 중요한 민주주의 논의와 말은 위대한 정치적 의식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자주 민족통일이 맹세되었습니까! 통일이라는 상징은 결국 민족의 찬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노래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전통에 속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그러나 연방대통령 호이쓰(Heuss)와 연방수상 아데나우어(Adenauer), 이 두 확고한 민주주의자들은 30년 전에 이러한 찬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축제행사에서 그 세번째 소절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덧붙이자면 자기의 조국에 바랄 수 있는 것으로서 화합, 권리, 자유에 대한 형제간의 노력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모든 동포들—특히 부모님들,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독일인들이, 무엇보다도 젊은 독일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연혼속에 깊이 내재해 있는 감정을 우리의 민족찬가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실존은, 우리로 부터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조국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더욱더 표현할 수 있도록 기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독일통일이라는 상징을 후원하는 것, 이것은 모든 독일인들의 공속감을 강화시키기 위해 우리들 각자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공헌입니다. 그러나 더우기 우리의 분단조국의 양독일인들간의 인간적 결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면 누가나가 동독의 친척, 친구에게로 여행해야 하며 아니면 단순히 그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이나 역사적인 도시들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와 동독인들간에 계속 존재하는 공통성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 결속을 제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리 독일정책이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그것때문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동독을 폭넓게 맞아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3년 전 동독이 갑자기 강제교환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있어 동독으로의 여행이 어려워 졌을 때 물러서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일이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대화가 이곳에서 더 쉬워지리라고 희망합니다.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국가질서 및 정치질서의 기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 양국이 상이한 동맹체계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양국이 상이한 동맹체계에 소속되어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개선에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동시에 우리는 유럽의 평화에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국가평의회 의장 호네커와 가진 두차례의 오랜 회담에서 아주 상이한 견해들 이외에도 공통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독일통일의 날 30주년 기념은 우리 민족실존의 근본문제들을 꼼꼼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독일인들이 오로지 하나의 공통적인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전체 민족은 포괄적인 민족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분단국가가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전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즉, 이곳의 독일인도, 또 동독의 독일인들도 자신은 분단국가의 소속국민으로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생겨나는 내적인 긴장감을 가지고서 보다 오랜 시간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폴란드 민족도 그것을 가지고 거의 150년을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속성을 방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통일의 의지만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자체를 경축하게 될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연방정부 언론-및 정보청 공보, 본, 1983년 6월 21일

66. 베를린에서의 문화유산 교환

1983. 6. 21.

베를린 시당국은 1987년 베를린 750주년 기념에 대한 기여로서, 또 "개방의 표시"로서 옛 에프라임(Ephraim)궁전의 정면부문을 동베를린측에 선물했다. 그와 더불어 베를린은 공동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베를린시 현직 시장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Richard von Weizsacker)가 말한 내용도 문서로써 명시되었다고 한다. 동독에

서는 원래의 도시 중심부 동부지역을 재건한다는 테두리 내에서 1987년까지 그 궁전을 새로 보수할 것이다. 정면부분은 화요일에 동독으로 보내어 질 것이라고 한다.

에프라임궁전은 1860년대에 뮌쯔페히터 프리드리히 2세를 위하여, 유대인 은행가 하이네 에프라임 4세를 위하여 오늘날의 동베를린 지역에 세워졌었다. 이 궁전은 국가사회주의시대에 들어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로확장에 따라 옮겨졌었다. 그때 옮겨진 정면부분은 2차 세계대전속에 살아남아 그때 이후로 서베를린에 놓여 있다.

출처 : 남독신문(Suddeutsche Zeitung)에 대변인 발표. 뮌헨. 1983년 6월 21일

67. 분단 독일의 국가 정세에 관한 연방정부의 보고, 연방수상 헬무트 콜박사

1983. 6. 23.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신사 숙녀 여러분! 연방정부는 국가정세에 대한 이러한 보고로써 균열되고 분단된 독일내의 국가정세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라는 독일연방의회의 본래의 지시로 되돌아 오게 되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보고서에는 여전히 "국가정세에 대한 보고"라는 제목만 붙여져 있었으며 분단독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보고와 더불어 토론의 중점은 점차적으로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치상황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보고실행의 본래 목적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즉 독일이 중요하며 자결과 인권이 중요하며 또한 분단된 우리 조국의 통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연방의 국민들에게

인권이 주어지지 않고 또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독일인은 우리 조국의 분단에 대해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자결권을 지닌 가운데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하라"는 기본법의 지시를 목적에 맞추어 끊임없이 계속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단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쪽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평화와 자유속에서의 독일의 재건은 오로지 전유럽의 평화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독일의 분단은 동시에 언제나 유럽의 분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정책은 언제나 유럽통합작업에 대한 기여로도, 동시에 유럽의 평화정책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아래 처음으로 행동으로, 보인 사람들은 제2차 세계 대전이 결과로 자신들의 고향을 잃어버린 추방자들과 망명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은 커다란 삶의 용기를 가지고 독일연방공화국을 자신들의 새로운 고향으로 받아들여 공화국재건에 함께 참여해 왔습니다.

우리는 독일분단의 극복을 위해서 대서양동맹과 유럽공동체내의 뒷받침을 필요로 합니다. 이 동맹과 하나된 유럽, 이것이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독일에는 두개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독일민족은 하나만이 존재합니다. 독일민족의 생존은 정부와 다수의 결정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독일민족은 역사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대륙의 중심부에 위

치한 관계로 기독교문화인 유럽문화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독일민족은 민족국가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또한 민족국가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또한 민족국가 이후에도 계속 존재해 오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장래에도 중요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독일연방공화국은 서방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서방세계에 전해에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1949년 이후 실시된 모든 의회선거에서 우리 연방시민들은 자유유럽과 유럽통합작업을 위한 기본결정을 승인해 왔습니다. 우리는 동독정부가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있는 그러한 독일상과 합치될 수 없는 독일민족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시민들의 국가, 즉 계급간의 대립을 극복하고 상치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모든 독일인들이 소유의식과 의무감을 느끼고 있는 역사적 유산·가치·미덕들을 표방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국가를 원합니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의 자유로운 인간상에 의해서 독일인들은-제 생각으로는 모든 독일인들이-서로를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1983년은 다시 우리의 현재에 끼치는 의미면에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아주 중요한 기념해로 남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6월 25일에 우리는 크레펠트(Krefeld)에서 300년전 미국으로 이주한 첫 독일인 가족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후 300년 동안 역사의 등락속에서 사람들간의 거대한 유대 및 강력한 결속이 이루어져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옛새전 이곳에서 올해가 1953년 6월 17일로 부터

30주년되는 해라고 평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기회에 독일민족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인내심있게 지켜오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독일인들과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인들은 연방공화국과 동독이 아닌 독일을 자신들의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6월 17일은 정치적으로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이날을 독일통일의 날로, 독일민족의 국가적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나는 이날이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우리가 1953년의 봉기를 기념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독일인들을 위해서, 또한 동독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인간이기를 원한다”라고 이미 6월 16일 오전에 스탈린가의 목수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인간이기를 원한다.” 국민여러분 전체주의적인 나찌의 독재를 함께 겪고난 이후 민족의 의지가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 민주주의, 자결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는 영구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우리 민족을 위한—우리 기본법 전문의 의미에서—커다란 희망이 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그러나 올해 우리는 50년전의 히틀러 집권에 의한 독일독재정치의 비약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또한 독일역사의 목표가 아니었으며 또한 독일역사의 마지막 단어도 아니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는 그 행위들 때문에 반박당했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위한 독일인들의 결정을 통해 극복된 과거입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인과 이 세계에 남긴 사상 및 신앙이 역사앞에선 더욱 진가를 발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에 대한 기억과 그가 이 시대 및 미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역사와 세계정신사의 한 인물입니다. 500년전 아이스레벤에서 태어난 그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살았었습니다. 그는 르네상스시대의 사람이 아니었으며 그리고 그에게는 혁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성서번역과 수많은 저술들은 독일어로 씌어졌으며 우리의 언어를 생동감 있고 힘차게 만들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마틴 루터는 근대 독일문화의 초기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가 없이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 독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독과 서독에서는 수많은 주요 행사들이 개최됩니다. 우리 서독에서는 주로 교회에서 이런 행사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동독의 루터기념일은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당파적으로 역사를 선정하려는 노력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루터에 대한 동독정부의 시각은 이 종교개혁가를 사회주의사회의 선구자로 내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동독개신교의 루터위원회는 매우 간단하게 교회없이 루터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 사후 100주년 기념일을 비롯해서 올해의 큰 기념일들은 다의적인 모든 역사속에서 이 민족이 통일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일통일사회당은 창당이래 줄곧 사회주의 독일을 자랑삼아 왔

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동독은 당파적으로 선정한 우리 역사의 시대와 인물들만을 그들 자신과 동일시 했습니다. 그들 동독인들은 프로이센이 프리드리히 대제에 다름 아니고 시민계급의 비약이 마틴 루터에 다름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비난했습니다.

동독처럼 민족적 요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독일의 역사를 장악하려고 하는 자는 독일의 전 역사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견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과거 역사와 함께 살아야 하며 그 역사로부터 배우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현재 양독에서 다시금 공동의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언어, 가치관 면에서는 이 민족의 통일성이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장벽과 가시철조망에 둘러 쌓인 정권은 역사를 왜곡하려고 할런지도 모릅니다. 이런 정권은 역사앞에서 견디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정권은 역사가 보여 주듯이 인간과 민중의 자유의지에 의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과 베를린 자유지대의 사람들이 지닌 삶의 용기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는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상황은 베를린이라는 도시의 운명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분단된 이래 이 도시는 극히 좁은 공간위에서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경계를 이루고 있는 두개의 상이한 정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두개의 상이한 정치체계에 속해 있습니다. 베를린장벽은 폭압적인 독일분단에

대한,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1987년은 베를린시 7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기념일은 한 도시의 장구한 역사속에서 자라온 독일중심부의 구심점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베를린에 독일역사박물관을 설립하려는 우리의 공동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베를린은 동서관계의 척도이며 또한 미해결의 독일문제에 대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도시의 생활능력을 보장해 주고 이 도시의 매력을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촉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방에 속해있는 베를린의 안정과 지속적 성장은 민족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관심사는 베를린 내부와 그 주위의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특히 통행로에서의 교통의 자유왕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베를린에 관한 사대국협정의 엄수와 적용이 동서독관계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6월 9일과 10일에, 그러니까 며칠전 파리에서 개최된 NATO 의 상회의 의결회담에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동맹국들의 태도가 어떤 유보조항도 없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걱정거리를 안겨주던 베를린의 경제상황이 처음으로 다시 호자를 보였습니다. 연방정부와 베를린 시당국은-저의 전임자가 일구어 온 이러한 고무적 사업들을 여기에서도 이어나갈 것임을 힘주어 말씀드립니다-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관계속에서 주위의 여건들을 개선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나는 독일의 경제가 또 외국의 경제

역시 베를린을 매력적으로 산업의 거점으로 생각하고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속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의 재임중 첫번째가 되는 1982년 말 베를린 경제회담은 이런 기대들을 이미 확증시켜 주었으며 독일산업의 투자계획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실행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사 숙녀 여러분, 또 한가지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베를린의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의 과도한 고용감소, 독일연방의 평균 실업률을 웃도는 11.6%(5월)의 높은 실업률, 서독 노동자들의 베를린에로의 역행적 유입들이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연방정부와 베를린시당국은 미래지향적인 새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베를린시의 생활능력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일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나는 1983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베를린발전촉진법과 베를린의회가 결의한 구조 및 교육프로그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베를린경제의 쇄신과 현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베를린에 있어서 한가지 중요한 사건은 소련의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교역계약들의 체결이었습니다. 이 계약들은 베를린경제가 장기간동안 싼 값으로 연료를 수급할 수 있는 또하나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협정들은 내독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베를린의 상황을 호전시키고 개선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인접교통체계속에 고속열차를 편입시킨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연방정부 내각은 베를린 시당국과 협조하여 6월 1일에 이것에 대한 계획안에 동의했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각하! 신사 숙녀 여러분 연방정부는 미래에도 베를린에 대한 원조의 테두리 안에서 베를린의 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원조는 지리적인 면에서 독일분단의 특별한 영향을 받고 있는 한 도시의 시민들과 우리들 사이의 유대를 나타내는 자연스런 행동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동독과 체결한 기본협정이 발효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양국은 협정에 명시된 규범적인 선린관계라는 목표에서 예나 지금이나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독일의 중앙을 관통하는 경계선에 장벽, 가시철조망, 발표명령, 술책 등이 존재하는 한 이 규범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할 수도 없고 침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이 침해받는 곳에서는 평화가 싹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유럽안보협력회의의 폐막과 다른 모든 영역에서의 인권문서도 이런 맥락을 분명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인의 동질감은 우리 조국의 38년간에 걸친 분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살아 있습니다. 민간단체들이 그들 차원에서 동독측과 쌓고 유지해 온 다양한 교류들이 이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특별히 독일교회들의 경계를 넘어서는 동반관계에 감사하면서 이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교화의 교구에 한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기까지 접촉을 잘 유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동작업과 활발한 원조활동을 펴 왔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실천적인 통일정책은 단지 대화, 균형, 협력의 정착할때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태를 단지 관망하는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분단상황을 호전시키고 특히 위협을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 이상의 동포인 동독인들에게 대한 동포적 책임감속에서 이것을 실행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규정화된 공존을 넘어서서 성숙된 관계가 이루어지고 계속 깊어져 가는 독일내에 공생상태, 즉 양측이 균등하게 주고 받는 가운데 사람들에 의한 책임감을 갖는 상태,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의무감을 갖는 상태를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공통적인 독일역사의 유산을 물려받았음을 표방 하는 사람이 그러한 유산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유 산 또한 역사적인 연속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1982년 10월 및 1983년 5월 정부성명에서 우리 독일정책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들을 천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동족과의조약을, 분단독일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는 적극적 평화정책의 도구 로 이용할 것입니다. 독일정책은 현재의 실제적인 힘의 상황을 출발 점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사 숙녀 여러분, 실제적인 힘에 속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무기의 우수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민족의 통일외지도 있습니다. 법률적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이 지닌 통일외지의 역사적 힘도 독일문제를 현실적 관심사로 부각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방의 우리 우방이나 동방의 우리 이웃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1983년 라이프찌히 봄미사에서 호네커서기장은 지금 해결가능한 그런 문제들은 지금 다루고 다른 문제들은 유보해 두자는 데에 동의한다

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 나는 우리가 우리의 기본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협력은—언제나 그것이 가능한 곳에서는—양쪽의 관심사에 대한 깊은 상호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동독의 정치지도부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연방정부는 기본법과 기본조약의 정신 및 조문, 그리고 여타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들을 확고하게 지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동독에게서도 조약에 대한 성실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세에 관한 지난번 보고이후 지속적인 부담감과 분위기의 새로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지상황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산가족상봉을 활발히 추진할 것입니다. 동독당국은 동독내에서 평화운동에 참여해 온 사람들의 국적을 박탈하여 강제로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추방하는 짓을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에 대한 우리측의 견해를 동독측에게 언제든지 명명백백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동독을 방문한 서독인의 숫자는 작년에 다시 줄었습니다. 과거에 8백만명이었던 데 비해 1982년에는 단지 5백만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여전히 1980년 10월 최저교환액의 인상과 확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수입이 적고 자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최저교환액의 인하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금년에는 베를린 통과여행교류중에, 또한 동독여행교류중에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두사람의 사망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망사건으로 인해 엄격한 국경검문의 문제점이 다시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동독여행교류의 진전이 우리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작년에 동독측이 몇가지 작은 문제들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여행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데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동독여행에 있어서 슬책과 얼마전부터는 높은 관세차별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현저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최근의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동독측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점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런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았던 개선의 첫 징조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베를린 통과여행에 있어서 특히 까다로운 검문의 현저한 증가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통과여행위원회에서, 또 동독정부측을 상대로 한 정치적 차원에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이런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통과여행의 부담감은 이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검문을 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로운 베를린 출입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과거의 정부들이 결의한 베를린 출입여행에 대한 보조금철회를 취소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1983년 정부예산에서 9천5백만 마르크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의 여행자는 70년대 초이래로 본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여행자는 노인들이었으며 대부분 연금생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진심어린 환영을 받고 있습

니다. 우리는 절박한 이산가족상봉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여행할 수 있게 되리라고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독측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젊은 사람의 여행을 전보다 더 대범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중의 젊은 여행자의 수는 1982년 같은 해보다 두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전체 여행자가 4만6천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동서독 상호방문교류에 있어서 우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젊은이들을 위한 여행기회의 확대입니다.

분단독일사람들의 개인적인 만남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동안은 독일내의 우편물 및 전신전화교류가 독일을 가로지르는 국경선을 보다 더 쉽게 넘어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가지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마찰없는 전화교류를 위해서는 아직도 전화선의 수가 충분치 못합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이 부문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속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동유럽이든 서유럽이든 유럽의 모든국가들은 점차로, 어느 나라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보호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문제는 국경에 얽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대한 공간의 대기오염과 경종을 울리는 삼림훼손을 단지 우리에게만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양독이 선의를 가지고 환경보호문제에 대한 협력이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 예를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기본조약에서 체결된 동독과의 환경협정이 결국엔 발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까지 연방정부는 동독정부와 공동으로 특별히 절박한 문제만이라도 구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입니다. 나는 우선 엘베강과 베저강의 오염문제에 관한 회담을 제안합니다.

어제는 라이프찌히에서 연소가스의 유황제거문제에 대한 제1차 전문가회담이 열렸습니다. 1983년 7월 중에 본에서 또한번의 회담이 열릴 계획입니다. 저는 이 회담이 독일 양측의 대기청정상태를 개선시키는데 기여하게 되리라는 희망과 특별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각하, 신사 숙녀 여러분, 장기간의 협정에 대한 우리의 준비자세는 에너지분야에서 환경문제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계속해서 핵기술시설의 안전성과 방사선 및 대파국방지에 대한 회담을 추진중입니다.

문화, 교육, 학문, 기술분야, 특히 스포츠분야에서의 가능한 다양한 접촉은 양측 사람들간의 이해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독은 1982년 9월에 이미 1975년에 중단되었던 문화협정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담에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이 지금이라도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독일스포츠연맹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만—스포츠분야에서의 양측관계가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양독 운동선수들

이, 가능한 한 많은 젊은이들이 스포츠경기를 통해서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범공조협상에 있어서도 연방정부는 현재 실현가능한 문제에 집중된, 그러면서 양측이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자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독일 국내의 무역은 양측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무역은 대동독관계의 중요한 한 요소이며 동독측에게도 다양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1982년 140억 이상의 무역수지로 1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밝은 전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현행 협정의 토대위에서 독일국내의 경제관계를 설립하여 이 경제관계가 양측 모두 유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장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독일국내의 모든 상황변화에 관계없이 양국의 지속성과 타산성의 한 요소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동독이 서독과의 협력에서 우리와는 다른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거주이전자유와 신장에 제한이 있으므로 우리는 인간을 위한, 정부를 위한, 생각을 위한, 의견을 위한 거주이전 자유의 신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포괄적 의미로 이해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결국 평화에 이바지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알면 알수록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유대감은 더욱 더 커지고 적대감에 의해서 사람들을 조작하는 일은 더욱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독일현실의 또다른 부분인 동독을 당각의 장벽위로 넘겨버

리는 데에는 우리 연방공화국의 책임도 있습니다. 동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는지—이 모든 것이 오늘의 독일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동독당국의 많은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동독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 독일연방공화국이 특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팔맞추어 연방정부는 앞으로도 언론인들의 작업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청장년세대와의 만남에서 그들이 동독의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육, 대중매체, 특히 정당과 정치가들이 이러한 정보부족을 메꾸는 데 그들의 역량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와 교사들은 학생들의 동독여행기회와 동독청소년들과의 개인적 접촉기회를 지금보다 더 많이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밝혀두기 위해 저는 여기서 선생님, 부모님,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특히 독일연방 각 주의 문교부 및 문교부장관에게 당부합니다. 젊은이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것, 즉 파리나 로마로 진출하고 스톡홀름과 런던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시절에 한번쯤은 드레스덴, 라이프찌히, 바르트부르크에 가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확신이 위와 같은 각 계층에서 싹튼다면 우리는 민족통일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 동포들의 일상적인 생활현실로서의 동독의 현실에 대해, 즉 그곳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일상의 근심거리

와, 우리들에 대한 그들의 견해나 판단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당연히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전 독일인의 의식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독의 우리 동포들도 우리와 똑같이 독일인입니다. 그들의 운명, 그들의 삶, 그들의 생각은 우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기본조약이 마련해 준 협력의 가능성들은 아직도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5월의 정부성명에서 모든 차원에서의 대화가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동독정부를 상대로 한 대화의 모든 가능성을 인지했습니다. 나는 이런 맥락에서 독일연방공화국 방문연기를 전후한 호네커 서기장과 나의 접촉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방정부의 각료들과 동독지도부의 고위급 대화상대자들간의 만남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일정책은 유럽의 평화정책입니다. 독일정책은 독일인의 자결권을 위한, 독일분단과 유럽분열의 극복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의 공포에 대한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무력포기와 평화보장이라는 엄격한 정책을 지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역사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목표는 현재나 미래에나 평화와 자유의 수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양독의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평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종파와 국경을 초월하여 아주 원칙적으로 이 주제에 접근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의 근심과 걱정을 표현해 준데 대해 사의를 포함합니다. 이것 역시 독일을 위한

한가지 중요한 기여인 것입니다.

자유속에서의 평화는 모든 분야에서의 전진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폭력과 억압과 협박이 더 이상 독일정책의 한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정책수단으로서 폭력을 포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전쟁은 정책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독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정신속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동독의 "계급의 적"에 대해 중요하도록 젊은이들을 교육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즉, 양독은 유럽과 세계의 평화유지에 대한 커다란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유럽내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그러나 또한 분단독일의 상황은 정치적 형태가 현실로부터 유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역사적 통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단독일의 상황은 독일의 통일이 유럽의 평화질서속에서 완성될 때까지 그 험난한 길을 위한 믿을만한 나침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국민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이념들도 있고 이상들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공동의 가치들로부터 힘을 창조해 내고 있습니다. 독일은 언제나 중심부의 나라였으며 수백년동안 모든 외부의 영향에 대해 개방적이었고 모든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항상 보다 큰 유럽의 테두리 안에 매어져 있었습니다. 독일문제는 그 어느때나 유럽균형의 실존적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것입니다. 이점을 오관하는 사람은, 유럽의 중심부에서 중점적인 독일의 특별한 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사의 경험으로부터 일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매우 불행한 국수주의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대통령각하!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세대는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필요로 합니다. 훗날 우리 세대의 역사적 업적은 유럽의 정치적 통합과 독일연방공화국 사람들의 자유, 그리고 독일민족의 존속을 한데 묶어서 생각하고 우리 민족의 정치적 현실로 전환시키는 작업의 성패여부에 의해 평가될 것입니다.

출처 : 독일연방의회 16차 회의 의정서, 1983년 6월 23일

68. 연방이 동독측에 10억 마르크의 대출을 보증해 주다

1983. 6. 29.

6월 28일 본의 연방정부는 동독측에 대해 10억마르크 상당의 은행대출을 주선해 주고 보증을 서기로 결정했다. 동독지도부는 일주일 전에 그에 따른 구속력있는 동의를 받아냈다. 회계법에 따라 이러한 신용장의 수여를 위한 전제조건인 연방정부 내각의 동의가 우선 이번 수요일에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계약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짧았던 까닭에 이것은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내각은 이제 연방 수상이 모스크바에서 귀국한 후인 차기회의에서나 동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주일 전 재무상과 기사당 당수를 참석시킨 가운데 연방 정부 수뇌부가 신용공여를 위한 결정을 내릴 이후 인지라 이런 회의는 단지 요식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채권자는 라인란트팔츠 지

방은행과 헤센 지방은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관단위 대표는 바이에른 지방은행이다.

동독은 10억마르크 전액을 두차례에 나눠서 받게 되는데 대출계약이 발효되면서 절반을 받고 3개월 후에 나머지 절반을 받게된다. 은행측에 대해서 이러한 대출을 보증해 준 연방정부는 동독으로부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다는 보증을 받아냈다. 이런 맥락에서 동독정부의 예산은 담보설정에서 제외된다. 은행은 통한 대출공여는 통상적인 사업조건에 따랐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엄밀히 관찰했을 때 연방정부가 이 대출사업에 관여한 의미는 연방정부가 서독은행을 통한 10억마르크의 대출공여에 동의하고 또 동독이 설정한 담보를 토대로 받아냈다는 데에 있다. 동독이 설정한 담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담보가 잘못 되었을 때에 동독이 과연 일정한 금액을 연방정부에 양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답변이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의 정치적 측면이 재정적 측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과거에 연방정부가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던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연방정부가 단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동독에게 이러한 대부를 성사시켜 준데 대한 정치적 반대급부를 주장하지 않은듯 하다. 이런 맥락에서 "반대급부"를 토대로 한 협정이 화제에 오르지 않고 있다.

오히려 10억의 대출금 속에서 상호 관계개선의 중요한 일보를 본다는 식의 평가로 제한하고 있다. 확실한 협정과 반대급부에 대해서

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관계당국에서는 선의의 행동과 신뢰
대 신뢰를 쌓은 준비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독일국민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 문제에서 반대급부
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독의 반대급부 문제는 가까운 장
래에 거주이전의 자유분야에서 제기될 것이다. 아울러 최저교환원칙과
서독여행상의 나이제한, 그리고 국경검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바이에른 지방은행이 연합차관단의 대표로 등장했다는 것은 바이에
른주 주지사인 슈트라우쓰가 이번 사업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동의하고 어쩌면 이 사업의 성사에 적극적
으로 개입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지난주 사민당의 경우 야당지도
자인 포겔(Vogel)이 「분단독일의 국가정세에 관한 보고」에 대한 논
평에서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장부상의 관점에 따라 대동독정책을 세
우려고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대출협상에 대해
정치적으로 중요한 비판은 기대할 수 없다.

출처 :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지 특파원보도, 프랑크푸르트, 1983년 6월 29일

69. 베를린 시장과 독일통일사회당 서기장의 대담

1983. 9. 15.

독일통일사회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이자 동독국가평의회 의장인 에리
히 호네커는 목요일에 베를린의 니더쉴하우젠성에서 현직 서베를린
시장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와 회담하기 위해 만났다.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이 회담의 핵심은 국제발전에 있어서의 현실적

인 문제, 특히 평화보장과 군비경쟁의 제한등에 관한 문제이다. 아울러 독일민주공화국과 서베를린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었다.

독일땅에서 두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핵참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정치책임자들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었음이 강조되었다.

에리히 호네커는 이와는 달리 서독영토를 의도적으로 미국의 전초기지로 변형시키는 것은 서독을 위해서도, 서베를린을 위해서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형은 국제상황의 복잡화 및 양독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며 틀림없이 서베를린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에리히 호네커가 말했듯이 그는 서독을 아직도 더 많은 핵무기로 가득 채우려는 의도에서는 어떠한 의미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한 의도는 군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임 미국방장관 맥나마라조차도 퍼싱 II 미사일의 서독배치는 위협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에리히 호네커는 동독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군비축소에 대한 소련의 건설적 제안에 대해 언급했다. 제네바협상에서 전 인류를 위해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를 이 제안이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신형 중거리핵미사일의 유럽배치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게 현실의 의미를 입증할 차례는 미국이라는 것이다.

계속해서 에리히 호네커는 동독이 서로 다른 사회체제의 평화공존이라는 원칙의 토대 위에서 대 서베를린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달리 이성적인 대안이 없다.

국제정세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독일민주공화국과 서베를린간 관계의 지속적인 개선은 여기서부터 유럽과 세계의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절실하다고 했다.

두 회담상대자들은 1971년 9월 3일 네페이지분량의 협정체결이후 서베를린 문제중에서 많은 부분이 호전되었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의 안정은 유럽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특히 서베를린과 그곳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독일통일사회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이자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은, 이미 이루어 낸 것은 강화하고, 관계는 맺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측의 합법적 권리와 관심사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한 평화와 선린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많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양측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련의 문제들은-들리는 바에 의하면-이미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뒤이온 만찬동안 해명될 수 있었다고 한다.

출처 : 신독일(Neues Deutschland)지. 동베를린. 1983년 9월 16일

70.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동독의 규정

1983. 9. 15.

이산가족 상봉문제 및 독일민주공화국 국민과 외국인간의 결혼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1983년 9월 15일자 규정

이산가족 상봉문제 및 독일민주공화국 국민과 외국인간의 결혼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1. 적용범위

(1)의 규정은 가족상봉을 목적으로 독일민주공화국내에 거주지를 얻고자 하는 외국인들 및 가족상봉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거주지를 얻고자 하는 독일민주공화국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또한 이 규정은 외국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독일민주공화국 내에서의 거주지 획득을 위한 허가의무와 신청절차.

§2.

독일민주공화국 내에서 외국인의 거주지 획득은 독일민주공화국 해당 국가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3.

(1) 독일민주공화국 내에서의 거주지 획득 신청서는 서면으로 독일민주공화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또는 독일민주공화국 해당 국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2) 가족이 독일민주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신청자격이 있다.

\$4.

독일민주공화국 내에서 거주지획득의 허가는 특히 공중질서와 안전의 보호를 위해서 독일민주공화국의 이해관계에 상치되지 않을 때 취득할 수 있다.

외국으로의 거주지변경을 위한 허가의무와 신청절차

\$5.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의 외국으로의 거주지변경은 독일민주공화국의 해당 국가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6.

(1) 외국으로의 거주지변경 신청서는 서면으로 독일민주공화국 내의 해당 국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2) 7조항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고 만18세 이상된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은 신청자격이 있다. 부모는 18세 미만의 자녀들을 위해 신청할 자격이 있다. 부모들이 만 14세 이상의 자녀들을 위해 신청서를 낼 경우 자녀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외국으로의 거주지변경 허가를 내주기 위한 전제조건

(1) 외국으로의 거주지변경을 위한 허가는 해당 국가기관을 통해서 부모와 그들의 미성년 자녀들과의 상봉을 위해서 부모나 혹은 그들의 미성년 자녀들이 외국인이고 외국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취득할 수 있다.

(2) 위(1)항은 정신적 혹은 육체적 상태를 토대로 부모와 혹은 그들의 자녀들의 거주지에서 양육과 보호를 원하는 독립한 성인자녀들과 부모에게 적용된다.

(3) 외국으로의 거주지변경을 위한 허가는 해당 국가기관을 통한 부부의 상봉을 위하여 결혼이 1975년 12월 5일 (GBI.Nr.46 S.748) 자 권리적용법의 18조에 따라 해당국가기관의 동의와 함께 성립되었거나, 한 남편이 독일민주공화국 해당 국가기관의 허가과 함께 외국에 거주를 갖고 있는 경우에 날 수 있다.

74. 자동발사 총기시설의 철거통고

1983. 10. 9.

동독의 국가원수이며 당의장인 에리히 호네커는 수요일에 서유럽 내에 미국의 신형미사일 배치에 대한 바르샤바협정의 가능한 대책을 정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동시에 서독의 국경선에 배치된 자동발사총기 시설의 완전한 철거를 통고하였다.

호네커는 동베를린에서의 오스트리아 언론인들과의 한 회견에서 나토-재 무장(NATO)의 실행이 바르샤바 조약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도록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세계는 정치상황의 복잡화와 새로운 세계대전의 위험을 초래할지도 모를 나토-재무장의 실행을 이전과는 다르게 감시해야될 것이다. 이번 경우에 바르샤바조약은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때 동독과 체코슬라바키아내의 보다 넓은 영토가 사정거리가 될 전략미사일이 배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르샤바조약의 지향점은 유럽(INF)내의 중거리포의 경계설정에 관한 겐프협정의 실패를 저지하는 데 있다. 예나 지금이나 화해로 가

는 기회는 있었을 것이다. 소비에트의 국가원수이며 당의장인 유리 안드로포프는 그의 가장 최근의 성명에서 겐프에서 성과를 얻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배치하는 것보다 협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호네커는 말하고 있다. 그는 퍼싱Ⅱ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배치에 의해 야기될지도 모를 손해를 한정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대통령 레이건의 근래의 제안에 대하여 호네커는 이런 생각들이 겐프의 회담에서 바라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그자신은 “매우 회의적”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모든 제안처럼 동구측의 이런 제안 역시 “진지하게 검토되었다” 미국은 겐프의 회담장에서는 결혼을 이끌어내려 하지 않은채, 많은 제안들을 선전용으로 세계에 내놓고 있다.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 긴장정책의 포기를 이끌었으면서도 공동작업의 정책을 대결의 정책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독일의 두 국가는 호네커의 언급에 따라 평화의 유지를 위한 책임과, 무엇보다도 독일의 영토에서부터 다시는 결코 전쟁이 발발하지는 말아야한다는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서독과 동독의 책임공동체같은 그 무엇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본(Bonn)이 “나토-미사일협정”을 고수하고 있는 한, “안보동반관계”에 도달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호네커는 본정부가 이런 입장을 숙고하게 되리라고 말했으며 그것을 희망했을 것이다.

지난날 부분적인 철거가 목격되었던 서독 국경에 배치된 동독의 자발총은 “전국경선”에서 치워질 것이다. 이런 시설들이 철거되기는

하지만 동독내에 다른 현대식 요격시설을 해놓게 될 것이라는 서방 소식통의 보도를 호네커는 직접 협력할 준비도 하지 않는 공론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밖에 우리는 서유럽에 설치된 동독-자발총 시설과 미국-자동미사일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해야만 한다.

호네커는 동서독의 동맹체제의 자주적인 평화운동의 평가에 관계하여 동독에서의 평화운동은 서독 내에서의 평화운동 및 바르샤바조약국가내에서의 평화운동과 서방국가내에서의 평화운동과 마찬가지로 자주적인 것이라는 의견이다. 차이점은 동독-평화운동이 원핵자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유럽을 조건없이 지지하는 정부의 정책과 일치하는 데, 이에 반해 서독에서는 경우에 따라 신탁미사일을 배치하는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호네커는 서독대통령 키르히슈타거의 동독방문에 호의를 표명하였고 오스트리아의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서독대통령의 동독방문은 “쌍방관계의 보다 폭넓은 발전과 깊이”를 위한 틀을 세울 가능성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호네커는 피력하고 있다. 동시에 이 체류가 국제관계에 대한 의견교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경우 평화유지와 “원핵자지옥” 방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동독은 탈긴장화의 과정의 전개와 서로 다른 사회질서를 가진 국가들의 평화적인 공존의 발전을 위한 중립국 오스트리아의 기여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 양국사이의 쌍방의 관계는 우리가 상이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와 평화의 이용을 위한 쌍방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의 원칙에 대한 특정한 문제에서 어떻게 공동작업을 할

수 있을까하는 하나의 예일 것이다. 마드리드의 KSZE-후속회담의 결과는 모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탈진장화의 과정을 진행시킬 가능성을 얻어놓았다. 오스트리아와 동독 사이의 긍정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계획역시 이런 조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 대통령의 방문은 유럽내의 탈진장화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호네커는 결론 지었다.

출처 : 오스트리아 통신사 APA의 보도의 복사 신독일, 베를린(동). 1983년 10월 6일

75. 하천정화 범위의 내독규정

1983. 10. 12.

서독의 내무부는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다. 바이에른과 튀링겐의 경계하천 뢰텐의 정화를 위하여 1983년 10월 12일 결정적인 일보가 내딛어졌다. 동독은 그들의 영토에 쏬네베르크(Sonneberg) 도시를 위한 정수설비를 포함하여 광대한 폐수처리시스템을 만들게 될 것이고 작동시킬 것이다. 이런 시설은 가장 최근의 기술에 맞게 설비된다. 이 정수설비는 1987년 말, 작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독은 이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경비를 함께 지불하게 된다. 그 총비용은 동독의 보고에 따르면 18만 마르크의 축제비용을 포함하여 50만마르크 내지 80만마르크까지 소요된다. 이제부터 연방과 자유도시인 바이에른(Bayern)은 각각 9만마르크씩 부담한다. 일상의 작동비용은 동독이 독자적으로 지불하게 한다.

해당 도시의 표준에 맞는 작동을 확실하게 할 우리 측의 수많은

상승하는 경비의 요청을 계산한 가장 좋은 기술적 해결모델의 빠른 현실화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조건의 개선에 대한 절박한 관심은 서독의 재정적 협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관점이었다. 수년전 이래 뢰텐강은 동독으로부터의 깨끗하지 않은 폐수의 유입에 의해 완전히 오염되었다. 이것은 특히 국경선에 인접한 신도시 코부르크(Coburg)의 경우 대단히 골치아픈 일이 되었으며 건강을 해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을 점증시키고 있다. 바이에른 지역의 하천정화시설의 작동은 이 불안한 상황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었다. 현재 동독이 준비하고 협정에 의해 국경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현재의 전될 수 없는 상태를 가능한 빨리 종결시키기 위한 조건들이 산출되었다. 현재 동독이 준비하고 있는 협정에 의해 국경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현재의 전될 수 없는 상태를 가능한 빨리 종결시키기 위한 조건들이 산출되었다. 이 협정으로 동독은 1984년부터 1987년까지 하수관과 하수처리시설을 쾨네베르크에 설치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동독은 우천시를 고려한 우리측의 생각에 충분히 상응하는 하수관을 보증하고 있다. 또한 동독을 정화용 하수구의 특별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정화시설의 현행의 작동에 책임을 진다.

동독은 협정의 서명 시 정화시설의 설비기간 동안과 작동 후에 계획된 시설의 시찰을 우리측 대표자에게 가능하도록 늘 준비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연방정부는 동독과의 '화합이 국민들을 위한 이익과 실제적 이득을 가져와야만 한다는 기본 입장 안에서 이 협정을 인정하고 있다. 중

요한 전진은 국경을 넘어 흘러드는 폐수의 점점 진박해지는 문제성을 동독과 함께 조정하는 최선의 수리적 해결로 이루어진다. 이런 협정의 체결을 자유도시 바이에른과 공동작업에 의해 장려되고 있다.

로덴강의 오염도를 개선하기 위한 갈네베르크(동독의 도시)에 맞는 하수관과 하수처리와 관련있는 문제의 규정에 관한 동독과 서독 정부의 협정

1.

동독정부는 존네베르크의 하천의 하수관과 하수처리에 대한 조항2에 기술된 규정의 실행을 보증한다.

2.

(1) 다음의 규정들은 1987년 말까지 하천의 하수관과 하수처리를 위하여 관철된다.

-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수장치의 신축과 재건설
- 정화시설을 위한 유도관과 그것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 주요탱크의 건설
- 총 100,000명의 거주자와 스타인아흐(Steinach)으로 통하는 배수관을 포함한 그 거주자들의 소유인 역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정화시설의 건설

(2) 유도관시스템과 폐수처리시설의 작동범위는 서독정부의 인가에 달려있다. (플랜트1)

(3) 집수구역, 정화시설의 위치, 그외의 건축물의 위치는 지형도에 표시되어있다(플랜트 2)

(4) 이런 집수구역에 유입되고 있는 폐수가 전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3.

우천시 폐수유도관을 플랜트1의 1절 5항에 상용하여 보증된다.

(2) 우천시 구정물은 정화시설의 생물학적인 단계에서 건조한 날씨의 하수처리보다 두배정도로 처리된다.

(3) 늦어도 일년 후의 정화시설의 작동은 건조한 날씨뿐만 아니라 구정물의 유입시에도 다음의 효능을 유지한다.

제기된 재료들 0.5ml/l

생화학의 산소충수속 30mg/l

화학적 산소의 소모(CSV) 100mg/l

위 효능의 감독은 동독 측에 의해 전달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플랜트3)

(4) 정화시설로 부터 유도된 폐수량은 건조한 날씨의 경우 하루당 10500m³가 넘어서지 않는다.

4.

(1) 서독의 정부는 다음의 건축에 18,000,000DM 상당하는 건축비용으로 참여한다.

- 정화시설을 위한 유도관과 그것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 주요 탱크의 건축
- 총 100,000명의 거주자와 그 거주자들의 소유인 역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정화시설의 건축

(2) 비용의 지불은 다음과 같이 4차례에 걸쳐 행해진다.

- 1984년 4월 5일 4,500,000 DM
- 1985년 7월 5일 4,500,000 DM
- 1986년 7월 4일 4,500,000 DM
- 1987년 정화시설의 작동시 4,500,000 DM

(3) (1)에 기재된 조치의 실행의 발전은 리듬감 있게 진행된다.

(4) 협정된 분할금은 독일외환은행, 베를린을 위한 서독내의 특정 은행으로 동독정부의 계산으로 입금된다.

5.

(1) 이런 분할지불의 실행시 발생하는 문제는 국경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2) 동독측은 프로젝트의 계약체결 시 빗물로 인해 유입된 오물의 방지와 다른 곳으로의 유도를 위한 계획은 조치와 관철된 건축 규정 및 내년을 위해 계획된 건축규정의 유지와 작동 6주전에 정화시설의 작동을 통고하고 정화용 배수관에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될 변화가 제외된 프랜트 3에 맞는 방법의 변화를 통고한다.

(3) 그외에 동독측은 조항3의 (3)번과 (4)번의 효능을 매달 통고하고 정화시설의 작동고장과 퇴먼 혹은 스타인아흐의 하천상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폐수유도관의 피해를 통고한다.

양측은 이상의 사항에 맞는 직책을 국경위원회에 지정한다.

6.

(1) 협정은 50년 동안 유효하도록 체결된다. 협정을 동서독 중 한측이 협정의 유효기간 전 5년동안 해약을 중지하지 않는 한 그때 그때 5년동안이 연장된다.

(2) 협정을 1983년 10월 12일에 효력을 발한다.

펜즈라인(Fenzlein)박사 서명의 동독정부, 로텐부르크(Rottenburg) 서명의 서독정부의 1983년 10월 12일 뉘른에서 일어난 사건

(발제)

(5). 빗물의 유출과 빗물 저수지

① 뉘른의 집수구역

빗물유출량의 계측과 빗물을 받기위한 저수지의 시설같은 적당한 조치에 의해 정화시설에 맞는 일분당 그리고 헥타르당 15리터의 빗물을 유도하는 하천보호시설의 효과를 보증하게 된다(플랜트)

② 스타인아호의 집수구역

예를 들어 운하 및 제방의 이용같은 적당한 조치에 의해 우천시 오물의 유입의 방지를 보증한다.

스타인아호 방향의 빗물 배출구는 우천시 하수망 내에서 적어도 건조한 날씨의 배수의 1+4배로 유지될 정도로 잘 계산된다.

③ 빗물의 배출구는 그때 그때 계속 유입되는 구정물이 정화시설에 완전하게 도달한 만큼 운하망 내에서 철저하게 조절된다.

④ 대안내서

남튀링엔의 육류콤비나트 VEB, 쉬라호토프 존네베르크와 낙농업소, 방목장소, 존네베르크의 VEB콤비나트의 폐수는 빗물 배출구 및 빗물저수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요탱크로 유입된다.

서명시의 설명

동독의 대표단의 지도자인 프렌즈라인 박사는 뉘른에서의 1983년 10월 12일의 협정체결시 다음의 설명을 추가하였다.

동독정부는 “뢰덴의 하천의 수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존네베르크시에 맞는 하수관과 하수처리관과 연결된 문제의 규정에 대한 동서독 정부의 협정”의 서명을 환영한다.

이런 협정의 체결을 동서독 양정부에 있어 상호이해와 균등한 이익의 조정에 대한 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협정으로 인해 존네베르크와 코부르크(Coburg) 지역의 동독과 서독 사이의 국경선의 거주자들이 직접 이익을 보게 된다.

동독정부는 양도시 사이의 공동작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협정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좌우되고 있다. 이런 협정은 주변환경과 관계하는 다른 영역들내에서 쌍방에 이익을 주는 실제적인 공동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주변환경의 유지와 개선을 도시들의 평화와 합의된 공동작업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의문시될 수 없을 것이다.

동독정부는 이 협정으로부터 그들에게 부여된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실행할 의도가 있다. 동독정부는 협정으로 기초가 된 공동작업이 계속 발전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때 서독측의 대표자가 적당한 동기에 의해 계획된 시설의 건축기간 동안과 그 시설의 작동 후에 시찰한 기회를 갖는다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일 것이다.

나는 이 협정의 실현에 기여하였던 모든 사람들에 진심으로 감사한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 우선 당담의 대표자들과 특히 바이에른 정부에게 감사할 표하는 바이다.

서독대표단의 지도자인 로텐부르크 여사는 서명시 다음의 설명을 부가했다.

이 협정의 서명으로 국경에 인접한 지역, 코부르크 근교의 신도시 주변과 신도시의 주민들의 생활조건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었던 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일보를 내딛게 되었다.

가장 최근의 기술적 상황에 일치하는 한 시설의 건축에 대한 의 견일치는 국경위원회의 격렬한 토론을 통해 성취되었다. 다음 달에 상세한 프로젝트자료의 마무리 후에 1984년에는 총 4년을 끌게 될 건축작업으로 시작될 것이다.

건축기간 동안과 작동 후의 시설에 대한 시찰을 우리 측 대표자 들에게 적당한 시간에 가능하도록 하는 동독정부의 준비를 우리는 알고 있는 바이다.

이 협정을 선린관계 구축의 목표에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해 접근하려는 노력의 표현이다.

우리는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 이런 범위내에서 즉시에 착 수되기를 바라고 있다.

양측대표단의 모든 구성원들과 이 협정의 완수에 함께 노력 했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덧붙여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출처 : 서독정부의 공보실과 정보실의 공고, 1983년 10월 13일. 본

76. 미사일 배치에 관한 독일통일사회당(SED)의 중앙위원회의
당의장인 에리히 호네커의 서신에 대한 연방수상 헬
무트 콜박사의 답신

1983. 10. 24.

존경하옵는 당의장님께

본인 1983년 10월 5일의 귀하의 서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평화를 보증하고 확고히 하는 것이 전독일인의 관심사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독일인은 역사로부터 평화의 교훈을 터득하였습니다. 독일내의 양국가인 서독과 동독은 독일영토가 이제는 결코 전쟁의 시발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독일국민인 까닭에 평화의 수호에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서독정부는 이런 특별한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독의 정책을 무기와 힘의 배치가 정치적 목적의 관철을 위한 수단일 수는 결코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연합은 1982년 6월 10일의 본의 성명에서 다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침략에 대응하는 무기 사용의에는 우리의 무기 중 그 어느 무기도 배치되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국민은 그러나 자유로운 자격 안에서 통일을 완성할 수 있는 유럽의 평화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리들 정부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평화는 독일의 분단을 약화시키고 유럽적인 평화의 틀 안에서 분단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때문에 본인은 귀하에 의해 선택된 이성의 불가결한 연합의 개

념에 가까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의 모든 노력과 노력의 경주는 모든 영역에 걸쳐 이런 이성의 실현에 마땅히 기여할 것입니다.

중거리핵미사일에 관한 겐프의 미소회담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본인은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인이 수상으로 있는 서독정부는 겐프의 회담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발전시키는 일에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독정부는 모든 도시의 합법적인 안정의 이해관계가 보증되어야 만하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문제에 서유럽과 또한 서독이 소비에트의 중거리핵우산의 그늘 하에서 부동하는 정치적 전략적인 결과로 인해 안정기반이 보다 약화된 지역이 된다는 것은 서독정부에 있어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수상으로 있는 서독정부는 귀하께서 직접 출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평화를 위해 불가결한 힘의 균등의 유지와 안정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힘의 균등은 소련이 지난 10년이래 엄청난 긴장감을 초래하면서 군사적인 힘의 관계를 핵반응의 범위 뿐만 아니라 인습적인 범위에서 바다의 무장을 포함하여 무기의 증대와 개선에 의해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변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방해받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연맹은 이런 도발적인 행위에 맞서 원핵자무기의 무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균등을 군비무장조정회담에 의해 될 수 있는 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확고히 하는 작업에 우리가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확신 안에서 회담준비정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북대서양연맹은 소련의 중거리핵미사일의 지속적인 확

장애도 불구하고 이중체결로 그리고 다른 범위내에서 4년의 모라토리움(법률에 의한 지불유예)의 형식으로 단독으로 슬선하였습니다. 동시에 서방세계는 중거리핵무기의 확장에 의해 대륙간의 전략적 범위 안에서 협정된 동등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련의 지도부의 이성에 항의하였습니다. 나토는 회담의 실패로 인해 실제로 필요하게 된 조치를 처음부터 질적 양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런 제한에 동구세계는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소련은 SS-20미사일의 배치시 최대한계를 얻고자 노력한 것을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중체결은 핵배치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토의 핵무기의 중요한 제한으로 이끌어집니다. 수천의 핵탄두는 이미 1980년 유럽에서부터 단독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본인은 나토의 핵무기의 비상비축은 연맹의 안정의 보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나토는 1980년의 감축보다 더 폭넓은 핵탄두의 감축을 다시한번 머지않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서방의 방위연맹의 일방적인 조치는 대체로 중거리시스템에 관한 겐프의 회담의 결말과는 관계없이 행해졌습니다. 겐프의 최근 회담에서 나온 제안은 겐프회담에서 서방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미국측은 지형적으로 협정이 유효한 지역과 핵반응의 첫영향 내의 비행기의 함유물 같은 소련측의 중요한 관심사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나의 견해로는 이제부터 공정하고 정선된 회담에 맞는 모든 요인들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습니다. 소련측이 상호이해에 상응하는 의지를 가진다면 회담의 결과를 달성하는 것은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련은 이렇게 하는 대신에 유감스럽게도 서방측의 제안을 비난하였으며 의미없는 일로 치부하였습니다. 소련의 이런 행위는 서방사회에 환멸과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련은 겐프의 IFN-회담으로의 영국과 프랑스적 시스템의 편입을 위해 고정된, 사실상 옳지않은 이전의 그들의 태도를 포기함으로써 어떤 성과를 위한 길을 개방시키는 것은 오로지 소련의 문제입니다.

겐프 회담의 해결은 모든 면에서 시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타협 준비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배치 연기의 열망은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상호 이해의 의지가 배치 연기에 의해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하에서 볼 때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소련측이 그들에 대한 최근의 미국의 환대를 어떤 성과를 위한 길을 개방할 목적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서방세계는 단독적으로 4년간 협정을 실행한 후에 합의 군등의 재정비와 안정의 보증을 위해 필요한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북대서양연맹측의 자동제어장치에 대해서는 서방세계가 핵무기등의 배치를 강요받게 될지의 여부가 소련측에 달려있기 때문에 언급될 수 있습니다. 1983년 말까지 구체적인 회담의 결과가 보여졌을 경우 현재의 계획표에 따라 북대서양연맹을 무기배치를 위해 계획된 소련의 572 시스템에 곧 경쟁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하게 된 미국의 중거리시스템의 배치는 현재의 계획에 의하면 1988년 말까지의 시간여유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서방측은 1983년 말을 지나서도 계속 회담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 경우 지금까지처럼 일련의 회담안에서 전나토의 현대화 장비배치를 정리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북대서양연맹은 가령 그동안 배치된 시스템을 다시 제거하는 것을 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토의 현대화시스템의 능력에 관계하여 본인은 매우 진지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는 그 사정범위에 의해서도 그리고 그 숫자에 의해서도 공격무기로서도 증명될 수 없습니다. 이 체계는 공격무기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고 그 제한된 숫자 때문에 소련의 실질적인 위협으로써 가치를 지닐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의 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것이 결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거리무기의 범위 안에 있어 힘의 균등과 안정화를 다시 이루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요컨대 본인은 유럽내의 전쟁의 위협은 동서독관계의 현재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거의 실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그 때문에 본인은 그러한 위협을 발설하면서 동구와 서방세계의 국민들의 걱정을 부채질하는 시도들 또한 유죄임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동구세계의 이익에도 서방세계의 이익에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까닭에 우리는 소련이 중거리용 무기에 있어서 그들의 우세를 공격을 위해서나 혹은 핵무기의 포기를 위해 사용하게 되지는 않으리라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련이 핵무기를 정치적 영향의 도구로 사용할 생각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서방세계 배치의 경우에 소위 대책의 통지에 의해 표명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적

정을 주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소련에 의해 고지된 신핵무기무장계획은 이미 확실한 현실이라는 사실에 대해 본인은 우려를 금치 못하며 확인하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알고 있듯이 이미 오래 전에 SS-21형 단거리 핵미사일이 독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SS-22미사일은 소련의 서쪽에 배치되어 있고 SS-23의 배치는 임박해 있습니다. 겐프의 INF회담은 이상의 가능성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무장의 태업을 새롭게 감는 것을 피하고 이미 동독에 배치된 현대식 신핵미사일을 철수하고 이제 더 이상의 핵무기가 배치되지 않도록 귀하의 영향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의장인 귀하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필요한 양보의 상황은 불러일으킬 회담의 가능성과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본인은 전고한 평화상태로 우리를 이끌 모든 일들을 지지할 준비를 귀하께서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서방세계의 조직적인 제안이 소련에 의해 철저히 검토되고 너무 성급하게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귀하의 모든 영향력을 소련에 끼쳐줄 것을 청합니다.

귀하는 본인이 수상으로 있는 서독정부가 이전처럼 이후에도 회담의 모든 가능성을 전부 이용하여 독일 민족과 각각의 민족의 삶에 필요한 평화와 공동작업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귀하의 의무를 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동독정부나 서독정부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제적 상황이 점점 힘들어진다면 독일의 양국가는 관계의 망과 공

동작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독일의 양국가는 그들의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유럽내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고무시키도록 진지하게 노력하기 때문에 독일민족과 평화에 대한 공동책임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독정부는 이런 의미의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서독정부는 정상적인 선린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기본조약에 기록된 계획을 추진하는 정책과 국제적 상황의 배경 앞에서 유럽내의 상황을 견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그러한 정책만이 동서독 양국가의 국민에 헌신하는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부를 전하며

헬무트 콜

출처 : 서독정부의 공보실과 언론실의 공보. 1983년 10월 28일, 본.

77. 우편교류의 개선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

1983. 11. 15.

서독의 우편국과 통신국은 다음을 통고한다.

1983년 11월 15일 동베를린에서 서독의 우편국과 통신국의 국가비서 빈프리트 프로리안 박사와 동독의 우편국과 통신국의 국가비서 반프레트 카로브 박사간의 서신교환은 쌍방의 우편교류와 통신교류에 있어 동독의 능률의 증대를 위한 총계의 새로운 확정에 대한 협정과 이런 교류의 개선을 위한 규정에 대해 서명되었다.

서신교환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서독 우편국과 통신국장관

1983년 11월 15일 본

동독의 우편국과 통신국의 국가비서 반프레드 카르브 박사.

동독-1066 베를린

존경하는 국가비서관께!

1. 1970년 4월 29일 동독과 서독의 우편교류와 통신교류에서 쌍방이 이룬 성과의 산출과 결산을 수용했던 1976년 3월 30일의 우체국과 통신국에 대한 동독과 서독 정부사이의 협정의 11개 조항안에서 다음 사항을 협정한 것을 우리 대표단 간에 행해진 회담의 결과로서 동의함을 귀하께 확인하는 바입니다.
 - 1) 서독의 연방우편으로부터 동독의 독일우편으로 보상된 총액은 1983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동안 매년 200,000,000마르크로 확정되었습니다.
 - 2) 서독연방우편을 매년 6월 30일에 100,000,000마르크와 12월 31일에 100,000,000마르크를 은행구좌에 입금시키게 됩니다.
 - 3) 서독연방우편은 1983년분 총액의 은행입금과 함께 다음해 분의 총액의 지불에 대한 선불로서 100,000,000마르크의 금액을 동독의 독일우편에 입금시키게 됩니다. 이 금액은 1987년 12월 31일에 50,000,000마르크 그리고 나머지 50,000,000마르크는 1990년 12월에 1987년 및 1990년의 총액의 입금 때 지불됩니다.
2. 서독의 우편과 동독의 독일우편은 쌍방의 우편교류에서 다음의 유효기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발송 후 2번째 평일, 가능한한 오전에 목적지로의 편지와 우편엽서의 인도
- 발송 후 3번째 평일에 목적지로 소포와 소화물의 인도
- 목적지인 지역에 도착한 후 2번째 평일에 편지와 우편엽서의 인도
- 목적지인 지역의 도착 후 3번째 평일에 소포와 소화물의 인도

이상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는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1984/1985년 (1984년 6월 3일)의 연중기차계획표의 변경때까지 유효합니다.

3. 서독 우편과 동독의 독일우편은 우편배달의 피해를 가능한 방지하기 위해 효력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서독우편과 동독의 독일 우편은 책임 소재도 없이 우편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경우, 우편물의 행방을 즉시 서로 통고하는 의무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4. 동독의 독일 우편은 1983년 12월 20일에 동독의 지역인 지방도시 로스톡(Rostock), 슈베린(Schwerin), 칼-맑스(Karl Marx), 슐(Suhl) 및 그외의 240개의 지역망을 온종일 자동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서독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1984년 2월말까지 서독과 동독간의 교류를 위해 96개의 보충 전화선이 가설될 것입니다.
5. 동독의 독일우편은 1983년 12월 20일에 동독으로의 서독의 텔렉스통신을 위해 텔렉스연맹 함부르크 DVSE-베를린 텔렉스 IVST에 4개 이상의 텔렉스선을 접속할 것입니다.

6. 동독의 독일우편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신교류물 위해 접속된 선의 작동을 보증합니다.
7. 서독 연방 우편과 동독의 독일 우편은 현행의 협정의 토대 위에서 그때 그때 다른 도시의 적절한 규정을 침해하는 보도와 주제의 전달을 위한 우편교통과 통신교통의 남용을 저지하고 합법적으로 포장되고 표기된 그러한 우편물만이 양도되는 것을-수신인에로의 비난의 여지없는 배달과 인도가 가능한-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극한 존경을 표하며

프로리안 박사, 국가비서

동독의 내각의

체신국과 통신국

동독1066 베를린

1983년 11월 15일 서독의 연방 체신국과 통신국의 국가비서

빈프리트 프로리안 박사

D-5300. 본

존경하는 국가비서관께!

1. 1970년 4월 29일 동독과 서독의 우편교류와 통신교류에서 쌍방이 이룬 성과의 산출과 결산을 수용했던 1976년 3월 30일의 우체국과 통신국에 대한 동독과 서독 정부사이의 협정의 11개 조항의 응용 안에서 다음 사항을 협정한 것을 우리 대표단간에 행해진 회담의 결과로서 동의함을 귀하께 확인하는 바입니다.

- 1) 동독의 독일우편으로부터 보상된 총액은 1983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동안 매년 200,000,000마르크로 확정되었습니다.
- 2) 서독연방우편을 매년 6월 30일에 100,000,000마르크와 12월 31일에 100,000,000마르크를 은행구좌에 입금시키게 됩니다.
- 3) 서독연방우편은 1983년분 총액의 은행입금과 함께 다음해분의 총액의 지불에 대한 선불로서 100,000,000마르크의 금액을 동독의 독일우편에 입금시키게 됩니다. 이 금액은 1987년 12월 31일에 50,000,000마르크 그리고 나머지 50,000,000마르크는 1990년 12월에 31일에 1987년 및 1990년의 총액의 입금 때 지불됩니다.

2. 서독의 우편과 동독의 독일우편은 쌍방의 우편교류에서 다음의 유효기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발송 후 2번째 평일, 가능한 한 오전에 목적지로의 편지와 우편엽서의 인도
- 발송 후 3번째 평일에 목적지로 소포와 소화물의 인도
- 목적지인 지역에 도착한 후 2번째 평일에 편지와 우편엽서의 인도
- 목적지인 지역의 도착 후 3번째 평일에 소포와 소화물의 인도

이상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는 단계적으로 실생되고 1984/1985년(1984년 6월 3일)의 연중기차계획표의 변경때까지 유효합니다.

3. 서독 우편과 동독의 독일우편은 우편배달의 피해를 가능한 방지하기 위해 효력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서독우편과 동독

의 독일 우편은 책임 소재도 없이 우편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경우, 우편물의 행방을 즉시 서로 통고하는 의무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4. 동독의 독일우편은 1983년 12월 20일에 동독의 지역인 지방도시 로스톡(Rostock), 슈베린(Schwerin), 칼-마르크스(Karl Marx), 슴(Suhl) 및 그외의 240개의 지역망을 온종일 자동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서독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1984년 2월말까지 서독과 동독간의 교류를 위해 96개의 보충 전화선이 가설될 것입니다.
5. 동독의 독일우편은 1983년 12월 20일에 동독으로의 서독의 텔렉스통신을 위해 텔렉스연맹 함부르크DVSE-베를린 텔렉스 IVST에 4개 이상의 텔렉스선을 접속할 것입니다.
6. 동독의 독일우편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신교류를 위해 접속된 선의 작동을 보증합니다.
7. 서독 연방 우편과 동독의 독일 우편은 현행의 협정의 토대 위에서 그때 그때 다른 도시의 적법한 규정을 침해하는 보도와 주제의 전달을 위한 우편교통과 통신교통의 남용을 저지하고 합법적으로 포장되고 표기된 그러한 우편물만이 양도되는 것을-수신인에로의 비난의 여지없는 배달과 인도가 가능한-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극한 존경을 표하며

칼로브박사 국가비서

서신교환의 서명에 즈음하여 다음의 설명이 추가되었다.

동독의 우편국과 체신국의 국가비서 만프레드 카로브 박사에게 서독의 우편국과 체신국의 국가비서 빈프리트 프로리안 박사의 설명.

1983년 11월 15일

1983년 11월 15일의 편지교환에서 이루어진 동서독의 우편교류와 통신교류의 결과 생겨난 지불의 변제를 위한 추후의 동등한 배상총액에 관한 협정은 서독 우편측에서 볼 때 서독 우편의 재정에 맞는 조건들일 때만이 비토소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이 이루어지는 즉시 서독의 우편국과 통신국은 동독의 우편국과 통신국과 이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서독의 우편국과 체신국의 국가비서 빈프리트 프로리안 박사에게 동독의 우편국과 체신국의 국가비서의 우편교류의 실행의 문제에 관한 설명.

1983년 11월 15일

나는 동독정부의 이름으로 다음의 사항을 설명할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동독은 선물용 소포와 소화물의 교류에서 이미 합의된 규정 이상으로 보다 완화된 규정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개인당 12번으로 현재 제한되어 있는 선물용 소포의 발송에 대한 규정의 폐지
- 발송이 인정된 의약품 목록의 실제적인 확대에 의한 의약품의 발송 때보다 완화된 규정, 동독내의 수취인에게 간단한 형식으로

로 필요한 물건의 증명과 이런 의약품의 발송을 가능하게 할
규정들의 제정

서독의 우편국과 체신국의 국가비서 빈프리트 프로리안 박사에게
동독의 우편국과 체신국의 국가비서의 만프레드 카로브 박사의 서독
과 서베를린 간의 통신 교통교류의 문제에 관한 설명

1983년 11월 15일

동독은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통신교통교류를 위해 전적으로 이용된
광선케이블의 동독지역에의 설치와 작업에 동의합니다.

동독에서 발생한 광선케이블의 설치비용은 서독에 의해 지불되고
광선케이블의 이용을 위한 상응하는 보수는 합의될 것입니다.

동독은 이상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에 회답을 개최하고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출처 : 서독정부의 공보실과 언론실의 공보. 1983년 11월 29일 본.

78. 동독과의 선물교류에 있어 지불에 대한 동독의 보고

1983. 11. 22.

1950년 7월 15일(화물교역의 관리와 외환관리)1983년 11월 22일
베를린의 미국, 영국, 프랑스 지역의 지회관들의 500번 규정과 외환
관리법규에 관한 일반 비준.

상술한 법규를 근거로 하여 서독의 연방은행은 서독의 경제부장관
과 재무부장관의 동의로 다음의 일반 비준을 승낙하였다.

1.

서독과 서베를린의 금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동독마르크구좌로의 총 20,000마르크까지의 지불을 동베를린에서 일용품과 소모품 및 서비스 물품의 수입을 위해 매년 그리고 각 구좌 소유자마다-부담을 진다는 것은

- 외국의 경제지역에 파견된 제넥스 선물용역 합자회사(Genex-Geschenkdierst GmbH)의 실제 회사를 위한 서독과 서베를린의 금융기관의 담당하고 있는 구좌로의 임금의 방법으로 지불이 행해질 때
- 일용품과 소모품 혹은 서비스업이 무역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필요를 위한 것이거나 동독이나 동베를린에 일상적으로 체류하는 자연인에게 그들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무료로 공급되어야만할 때

동독과 동베를린에 일상적으로 체류하는 자연인에게 재가된다.

2.

구조

일반 비준을 근거로한 1/4분기에 행하는 지불의 총액은 다음달 20일까지 지불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그지역 담당지방은행으로-서독 연방은행의 중앙 관리본부-통고해야 한다. 베를린의 미국, 영국, 프랑스 지역의 지휘부의 500번규정의 양식8과 외환관리에 대한 1950년 8월 2일의 연합최고지휘관의 33번규정의 양식5과 연관된 외환관리법규의 VIII양식에 다른 이런 법규의 비합적인 실행 규정500번의 보충을 위한 지휘관의 500번 규정의 양식 5와의 연결하여 비난 받게 될 수 있는 것이 언급된다.

첫부분, BI절 3번과 둘째 부분 봉고 6005/83번의 E절(1983년 6월 15일의 109번 관보)E절에서 지시된다.

3.

이런 봉고는 1984년 1월 1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서독연방은행 6003183번의 봉고는 동시에 폐지된다. 봉고 6004183번은 전술한 일반 기준을 위해 필요하다.

1983년 11월 22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 M.)

서독연방은행

괴텔교수

프라스만박사

출처 : 관보 본 1983년 11월 26일

79. 서독의 미사일 배치에 대한 독일통일사회당 중앙위원회의 당서기장인 에리히 호네커의 연설

1983. 11. 25.

(독일통일사회당 중앙위원회 제7차 회담에 토론연설에서 발췌)

동독은 여타의 사회주의사회국가처럼 미국의 제1의 공격무기의 배치에 대하여 소련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동시에 동독은 세계정세를 안정시키고 최악의 사태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 동독의 활동력을 넓히고 국제연합과 그의 연합에서 동독의 국제적 가능성을 이용하였습니다. 우리는 군비경쟁의 예방을 위한 긴급계획으로써 형제국의 주요 대표자들의 모스크바선언과 사회주의 평화정책의 장기계획으로써 프라하선언의 실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대결과 중무장의 정책에 단연코 반대하는 동독과 사회주의 사회의 평화에 대한 열렬한 추구의 입장에 동조했던 최고의 지위에 있는 서방국가와 정당경제 사회의 대표자들과 민변한 접촉과 대화를 갖고자 합니다. 주지하듯이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동독의 정치가들과 다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서독정부와 본의 연합당 혹은 야당의 인물들과의 대화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의무임을 진지하게 고백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제1의 사회주의 국가, 독일이 이제 결코 다시는 전쟁의 발생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서독의 지도부에게 미국의 신형 미사일의 배치에 대한 입장을 숙고해서 양독일 국가 뿐만 아니라 유럽의 평화를 보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동독은 유럽내의 주요구기의 감축과 제한에 관한 소련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실질적인 기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웨덴 정부의 잘 알려진 제안과 관계하여 우리 국토의 전역을 핵 공격무기로 부터 자유로운 지역으로 만드려는 준비작업을 선언했습니다. 폭넓은 국제간의 협력 하에서 우리 정당에 의하여 베를린에서 개최될 칼-말스회담이 가장 중요한 정점으로서 증명되었습니다.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 정치세력의 공동작업에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계급과 계층의 시민들이 세계관적 신념과 종교적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평화의

의지를 표명했던 그와 같은 강력한 집단행동은 이전의 동독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대가 이런 집단행동에 동조했고 자유독일청년단(FDJ)이 최선봉에 섰습니다. 인류가 핵전쟁의 위협없이 계속 살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떤 입장에 서든지 항상 진력하는 공동관심사를 투터틀-존경하는 마음과 관련하여 진실하게 뒷받침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지여러분! 서유럽내에 퍼싱Ⅱ와 크루즈미사일의 배치의 시작은 유럽의 국민이 전후의 가장 어려운 시험 중의 하나를 체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주의 사회는 모든 국가의 국민의 나름의 이익과 안정에 관련하여 미국과 나토가 군사전략적인 우월을 존중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라나다의 예에서 우리는 워싱턴의 지배층들이 핵전쟁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무의미한 생각에 항상 몰두하고 있을 때 미국이 그라나다의 국민을 얼마나 마음대로 다루게 들지 볼 수 있습니다.

나토 배치의 시작에 의해 변화된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무엇에 좌우될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핵전쟁을 막기 위한 투쟁과 군비무장의 종결을 위한 투쟁은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평화의 보장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의무는 점점 더 과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동독의 외교정책과 안전보장정책의 우월한 목표는 핵지옥을 방지하고 세계의 평화를 보증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처럼 이후에도 상이한 사회질서의 국가의 평화적 공존의 정책을 위한 양자택일이란 없습니다. 평화정책의 관철을 위하여 온 힘

을 다 기울이는 작업은 더욱 긴급합니다. 세계에 넓게 퍼진 평화운동은 그 운동의 강화를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실질적인 추종자로서 우리는 한번 총을 쏘는 것보다 10번 토의하는 것이 어쨌든 더 좋은 방법이라는 선인들의 지혜에 항상 좌우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미국의 중거리무기의 배치가 즉시 제한되고 이미 배치된 시스템은 철수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핵무기의 태엽은 정지되어야만 합니다.

국민과 인류의 숙명에 책임을 깨닫고 이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세력과 정치적 대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군비확장경쟁의 중지와 군비감축의 방법에 대한 핵지역에서의 모든 회담의 가능성을 이용하는 것에 적극 지지합니다. 이때 서유럽내의 소련의 신 제1타격무기의 배치가 회담의 원칙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동등성과 동일한 안정이 중요한 원칙으로 남음에 틀림없습니다.

6월의 스톡홀름(Stockholm)의 회담은 신뢰와 안정을 구축하는 규정 및 유럽내의 군비감축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륙에서 무력충돌의 위협을 완화시키고 국가들간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다시 요구할 수 있기 위해 스톡홀름의 회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작업은 중요합니다.

무력 사용의 포기과 평화관계의 유지에 관한 나토와 바르샤바조약사이의 협정은 바로 이런 상황하에서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토와 바르샤바조약의 협정은 핵무기와 구무기의 긴급배치의 포기

를 국제법으로 확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협정을 즉각 체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호간에 수용할 수 있는 협정이 군비확장경쟁의 새로운 장물 시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일들이 행해져야만 합니다.

동지여러분! 서독의 연방의회가 미국미사일의 배치에 푸른 신호등을 켜주었던 동안 서독의 연방의회는 내렸었던 정치적 결정으로 끌 정부는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으로 인해 동독과 서독 간의 관계에 대한 기본협정을 포함한 유럽의 협정시스템은 중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음을 목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가능한 줄이는 데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달성된 일이 유지되고 그일의 규정들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일이 마무리지어진다면 현행의 협정시스템은 국가간의 평화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계속 고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보증과 국제상황의 회복을 최고의 과제로 우리 정책에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박한 세계상황에서 동독과 관련하여 그 모험적인 꿈에 한걸음 더 접근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국가 특히 서독의 길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여기서 미해결 상태에 있는 독일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 일요연설과 그외의 다른 방식의 연설에서 과장되었는지 하나하나 인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상을 이미 30년 훨씬 전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위협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현실과 동독의 훌륭한 발전으로 인해 아무것도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은 추후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차대전과 전후의 발전의 결과에서 생겨나게 되었던 상황을 우리가 고수해야만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아무도 궤변에 빠지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만이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독일영토 내의 노동자와 농민의 제1의 사회국가인 동독은 바르샤바 협정의 동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소련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동독은 바야흐로 동맹의 의무를 실행할 준비를 할 때입니다.

서독내에 미사일배치가 시작되고 연방의회가 이런 배치에 동의한 후 미사 일등의 무기의 배치가 이전에 어떠했었는지 더이상 아무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전이나 이후에도 무기감축에 관한 회담의 긍정적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탈긴장화가 추구되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협정시스템에 상응하는 양 독일사이의 관계를 모범적으로 만들고자하는 서독의 차후의 모든 제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독의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관력은 앞으로도 철저히 배격될 것입니다. 믿고 있는 사람은 퍼싱II와 동독의 크루즈미사일의 배치에 직면하여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는 다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믿고 있는 사람은 기본조약 내의 각 조항을 무효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서독과 동독 양국가가 그들의 내부분제와 외부분제에 대해 직접 결정한다고 말함으로써 오류에 빠지고 있습니다.

출처 : 신독일 베를린. 1983년 11월 26, 27일

80. 선물용 소포와 소화물 교류에 관한 동독 규정의 변경

1983. 11. 29.

1983년 11월 29일 관세법의 32번째 실행규정 -우편도로를 이용하여 국경을 넘어가는 선물용소포와 소화물교류에 있어 대상물건의 수출과 수입 방법의 변경.

1962년 3월 28일(GBLI Nr. 3 S.42)의 관세법 §§9와 §§19에 근거하여 해당국가중앙기관장과 합의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규정되었다.

\$1

1973년 6월 14일의 20번째 관세법 시행령의 \$8의 1절에 적합한 -우편도로를 이용하여 국경을 통과하는 선물용소포와 소화물교류에 있어 대상물건의 수출입 방법-(GBL I Nr. 28S. 271) 동독의 국민들과 동독과 거주지를 가진 모든 다른 사람들에 있어 매년 12번까지로 제한된 선물교류는 폐지된다.

\$2

이 시행령은 공고를 통해 효력을 발한다.

1983년 11월 29일 베를린

외국무역담당장관 국가비서이며 제1장관인 바일박사

출처 : GBI 동독 1983년 11월 29일 S.331

81. 베를린의 시가전철(S-Bahn)에 관한 규정

1983. 12. 30.

그 의장에 의해 위임된 평의회 힌케푸스와 최고분과의장이며 국유 철도국장인 마이스너 박사는 서베를린 내에서 시가전철교통의 향후의 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합의하였다.

1. 독일국유철도-국유철도관리국 베를린-는 1984년 1월 9일 3시를 기해 서베를린에서 시가전철의 운행을 개시한다. 시간전철에 관계된 시설과 운행방법 그리고 모든 시가전철 선로의 보존과 교통안전 혹은 이용을 포함한 시가전철의 운행실시는 평의회에 의해 결정된 장소인 서베를린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시가전철의 운행구역은 이 협정의 구성부분인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다.

독일국유철도의 열차승무원이 승차한 시가전철은 레르트지역과 프리드리히(Friedrich) 거리 사이의 선로구역을 운행한다. 그 상황의 문제들은 이 협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2.

1) 평의회에 의해 결정된 장소인 서베를린은 독일 국유철도의 운행실시의 변경 때 시가전철에 종사하고 서베를린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시가전철 노동력을 책임지게 된다.

2) 여타의 시가전철의 운행을 위해 필요한 한 시가전철의 운행구간의 시설들은 다른 시가전철의 필요에 상응하게 유지되거나 작동된

다.

이 시설들은 1.1)에서 명시된 계획들이다.

변경과 보충은 위임자에 의해 5에 맞게 협정된다.

3) 이 시설의 유지와 수리를 포함한 상호간의 작업은 의견서 4
번에 의기하여 이루어진다.

3.

평의회에 의해 결정된 장소 서베를린은 1984년 1,100,000마르크의
금액으로 퀘르트지역과 프리드리히 거리 간의 시가전철 교통의 독일
국유철도에서 지불하는 비용에 참여한다. 이 금액은 전년 비교하여
서베를린에서 공적으로 공개된 "모든 개인의 가계의 생활기준에 맞
는 물가지수"의 변화에 상응하여 매년 지불될 수 있다.

4.

2.3)의 작업에 대한 독일국유철도의 지불은 서베를린내의 독일국유
철도의 마르크구좌를 행해진다.

3.에 맞는 독일국유철도의 지불은 베를린의 협정의 틀안에서 행해
진다.

지불은 매년 4월 15일까지 첫지불은 1984년 4월 15일까지 이루어
져야 한다.

5.

서독과 동독은 위임자들을 정하게 된다. 위임자들의 임무는 이 협
정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일치시키고 각각에 분명한 의견의
상이성과 어려움을 해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가전철과 독일국유철도

간의 공동작업을 확실히 보증하며 동시에 1.1에 맞는 계획들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위임자들은 한 측의 청원에 의해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들은 기술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자를 지정하게 된다. 협력자들은 서베를린 내의 서독과 동독의 근무처의 정규 협정을 행한다. 정보와 자료의 교환은 협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6.

협정은 1984년 1월 9일 3시를 기해 효력을 발한다.

의정서 제1번

1. 독일국유철도에 의해 프리드리히거리역에서 판매된 시가전철표는 서베를린의 전체 시가전철망에서 유효하다.

소기의 수입은 3.에 맞는 사용료의 계산시 참작된다.

서베를린의 시가전철기관사의 승차증은 프리드리히거리역에서의 첫 운행 때 인정된다.

의정서 제2번

1. 상대방의 운행권내에 있는 시설은 그것을 치워버릴 때까지 무료로 허용되며 추가시설은 보증받는다. 교통보험 의무유지비(수선과 가격유지) 그 시설의 수선이나 제거는 사용자에게 일임한다.

2. 쌍방은 1항에서 빠뜨린 시설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은 의정서 7항에 따른다.

3. 쌍방은 상대측에게 -표결에 따라- 교통시설 건축계획의 실현을 위해 또 교차점이나 기존의 교차로를 위해 플랫폼의 사용을 무

료로 그리고 보상금 없이 가능하게 해주며 교차로의 연결로와 합쳐진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시한부인 조치에도 적용된다.

4. 상대측의 운행권에 영향을 끼치는 건축규정은 서면으로 통고되며 설명과 설계도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그 규정은 표결에 부쳐진다.

5. 쌍방은 그들이 야기한 건축상의 규정을 그것이 무효화되지 않는 한 상대측 자체의 운행권에도 관철시킨다. 설치될 조립품목은 운전자와 철도기술 상의 확신이 그때그때마다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야만한다. 이 요구가 모순없이 들어맞는다는 고려하에 이행된다면 제품선택은 자유롭다. 쌍방은 상대측에 접한 영역간의 경계에서 건축규정을 세울 때 만일 이것이 -표결에 따라-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 확장되고 기술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현상태를 능가하는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

6. 독일국유철도에서 건립되거나 수선된 시설은 12일의 작업내에 끝났다는 통지에 따라 인수된다. 인수인계는 철도의 최종기술검사에 따라 본질적이고 확충된 결함이 있을 때 철거를 통고 받을 수 있다.

보증기한은 서면으로 전달된다. 보증요청의 이유가 되는 결함통고는 기한만료 한달전에 서면으로 상대측에 제출해야만 한다.

7. 의견된 건축상의 조치에 들 비용은 그 제기자가 지불한다. 오른 유지비에 대한 상호간의 배상은 있을 수 없다. 이 시점부터 가능하지 않거나 가동될 수 없는 시설이 철거되어야 할 경우 비용지

불은 철거비만 포함한다.

8. 상대측의 시설이 바뀔 경우 표결에 따라 해체된 시설물에서 다른 적당한 재료를 골라내어 더 사용할 수 있다. 사용불가능한 재료는 규정의 비용지불자의 권한에 달려있다. 다른 기술적인 가공이라는 조처에 동조함으로써 그리고 건축보험과 운전보험에 대한 조처와 방지책에서 발생하는 비용배상을 유효화시키는 것을 쌍방은 포기한다.

운전장애는 쌍방에 의히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한다. 불가피한 운전장애에 드는 비용은 야기자가 지불한다.

9. 쌍방은 그들 각자의 소속인 중 한사람이 고의적이거나 또는 거의 부주의로 인해 일으킨 손해에 보증을 선다. 그것은 다른 측이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함이 분명한 손해의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을 한측이 게을리했을 경우 또는 한측이 손해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을 게을리했을 경우도, 그 과실이 한정된 때도 역시 적용된다.

10. 1항에서 9항에 이른 조항들은 단지 협정대상에 대해서만 관계가 있다.

11. 종착역 뒤의 플랫폼을 위한 유지와 교통보험을 관할하는 해당 위원회가 있다.

의정서 제3번

1. 프리드리히거리 역을 포함한 0.9+61km와 4.0+24km간의 북남 철도터널 및 2.7km간의 북쪽열차지역은 서베를린의 시가전철기관사에

게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블란크 거리역을 포함하여 2.9+0km에서 3.2+4.6km까지 그리고 1.6+39.9km에서 3.1+95km까지 사이에 있는 북쪽열차의 시가전철플랫폼은 여전하다.

2. 서베를린의 시가전철기관사의 요청에 따라 수입자들간의 협상에 의해 여전히 운전이 가능하도록 보존된 철도를 운행할 수 있다.

보존된 선로를 운행이 가능하도록 고치는데 드는 비용은 서베를린의 시가전철기관사가 지불한다.

그외에 사용 또는 운행이 가능한 부분의 보존은 전체적으로 무효화되거나 부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다. 그 무효화는 6월 30일까지 공표되어야만 한다.

3. 1984년 1월 1일의 상황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했던 모든 지역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일년에 4,700,000 DM이라는 금액이, 운전가능한 보존을 위해선 연간 2,000,000 DM이 보존을 위해선 연간 1,100,000 DM가 지급되어야 한다. 위에 언급했던 지역을 부분적으로 이용하거나 운행가능하게 보존하거나, 보존할 경우 독일국유철도에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은 지불비용에 따라 계산된다. 1에 따른 금액은 연간 1,800,000 DM에 달한다. 계산방법으로는 협정의 3과 4가 유효하다.

의정서 제4번

1. 구역에 있는 독일국유철도의 전철장치를 시가전철차량과 함께 사용

시가전철 차량을 위한 독일국유철도의 전철에서 제출된 작업의 성

과는 이 의정서에 따른 배당금과 산출시간 원칙에 의해 첨부된 시설에서 공제된다. 똑같은 배당금과 똑같은 산출시간 원칙에 따라 위에 언급한 전철의 유지와 수선조치에 드는 비용도 배상된다. 수선조치는 그 전에 표결에 붙여질 수 있다. 시가전철차량에 사용하는 전철장치의 정비시 고장난 물품을 철거할 경우 그 계산은 시설이 요구하는 작업시간에 따라 특별계산을 원칙으로 하여 사용된 값을 가산하여 산출된다.

2. 선로의 공동사용

선로공동사용에 대한 계산은—일정한 시간내의 주파거리를 0.4DM로 할 때— 주파거리로 산출된다.

의정서 제5번

1. 구역간의 경계는 지점들에 의해 결정되는 차선으로 정한다. 지정은 공간적으로 표시된다. 이것은 대략 바닥에서 10cm정도 뚫고 나와 밝은 청색으로 표시된 기둥에 의해 생긴다.

2. 장소표시의 확정은 표결된 계획안을 토대로 한 공동의 행위에서 일치하여 생긴다. 그 장소로 옮길 때 생길 수 있는 이상은 장소표시와 관련한 공동행위에서 해결된다. 건축터와 집터에 대한 위원회는, 그에 따라 기둥관을 조달하고 배치하고 번호를 붙이고 치수를 재고 측량기술적으로 독일국유철도의 위치설정지점에서 그리고 서베를린의 위치설정지점에서 셈하여 일반계획에 집어넣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 독일국유철도는 계산원칙, 구역설계도 등과 같은 그들의 측량기술적인 원칙을 마음대로 한다.

독일국유철도는 측량기술상의 기입과 협동명세서를 지닌 일반계획을 가공발전에 상응하여 수입자 간의 표결에 따라 지닌다.

3. 부호표시의 변화 및 부가적인 중간지점 배정은 한 측이 이것을 원하는 한 행하여진다. 2번도 마찬가지이다.

4. 재수선을 포함해 부호표시의 유지는 건축지와 집터에 대한 위원회에 일임한다.

5. 쌍방은 1-4의 비용보상을 포기한다. 여기에 개인적 현물급여 및 건축보험과 운전보험을 위한 방지책이 속해 있다.

교통박물관과 건축박물관에 관한 의정서 심리의 목표는 이하와 같다.

1) 교통박물관과 건축박물관은 1984년 12월 1일부터 서베를린의 한 관직에서 관리한다.

2) 교통박물관과 건축박물관의 정선된 진열품은 프레스텐에 있는 동독의 교통박물관에 장기 대출품으로 양도된다.

3) 위원회는 3,000,000마르크에 달하는 총액을 갖고 박물관의 유지를 위해 독일국유철도의 비용에 협력한다. 그 총액은 서베를린에 있는 독일국유철도의 자유구좌에 불입되어 있다.

4) 규약문제는 이런 규칙에 의해 변동없이 남아 있다.

마이스너의 구두해명

1) 소위 672 시가전철 노동력을 넘어서 이 협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시점에서는 2이상의 시가전철협력자가 없다.

2) 서베를린에서 운영되는 시가전철시설과 정비는 독일국유철도의 규정에 상응하여 이 협약의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서 운행이 안전하다.

3) 지하철과 시가전철 구간 및 시가전철선 구간에서 갈아탈 때 프리드리히 거리역에서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다.

프리드리히거리 역에서 독일국유철도에 의해 팔린 시가전철표에는 서베를린의 시가전철구역에서 사용하는 운임료가 적용된다.

출처 : 1983년 12월 29일 베를린지역의 신문과 정보기관의 신문발표

82. 동독으로의 약제운송

1984. 1. 1.

1. 동독이나 동베를린 출신의 환자는 허가받은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야만 한다. 그는 이 처방전을 약제를 조달하는 사람에게 보내야만 한다. 건강을 위한 해당관청의 협약에 상응하여 동독과 동베를린의 의사가 발송한 처방전은 서독과 서베를린 약국에서 두말없이 승인받는다. 그럼으로써 처방전의 의무가 있는 약제를 다시 또 여기서 허가받은 의사가 처방을 해야하는 기존의 규칙이 사라진다.

2. 여기서 선물발송의 발송자에 의해 구입된 약제는 제조자의 미 개봉된 최초의 포장상태로 있어야만 한다. 어떤 의사도 있어선 안된다.

3. 발송자는 약제를 환자에게 보내는 선물포장이나 소포로 보낸

다. 그 선물꾸러미나 소포는 합법적으로 포장되어야 하며 아주 잘 읽을 수 있는 수신인의 주소 성명 외엔 수신자에게 정확히 운송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선물송달, 상품이 아님”이라는 지시를 써야 한다.

선물소포 안에서 오직 동독의사의 처방전과 약제품만 넣어야 한다. 이 약품의 비용은 발송인이 지불한다. 합법적이 의료보험 소지자 또는 관공직을 통한 비용지불은 제외된다.

출처 : 원전인용

83. 독일문제에 대한 내독성 장관 하인리히 빈델렌의 성명

1984. 2. 7.

우리가 이 세미나에서 논하려는 테마는 이삼년 전 여기, 미국의 수도인 이곳에선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던 것일 겁니다. 지금에 와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서독에서의 공개토론이 약 1980년 이후로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독일문제를 다시금 중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독일의 엘베강 동쪽지역에도 적용됩니다. 작년 12월 23일에 “노이도이칠란트”지의 독자들은 2가지 시사를 원문 그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nternational Herald Tribune)”에 실렸던 것으로 하나는 “로스엔젤레스 타임즈(Los Angeles Times)의 찰스 맥클링(Chales Maechling)이 썼고 또 하나는

윌리엄 파프(William Pfaff)가 쓴 것입니다.

두 저자는 파프가 표현했던 “서독의 모순들”을 다루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서독의 재통일 목적이 서구 동맹국가들에서, 그리고 소련에서 전혀 “진지한 관심사”로 대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노이 도이칠란트”에겐, SED에겐 지당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한편 호네커는 1983년 10월 5일자 연방수상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독일 국민의 이름 하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경고를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다.

그것은 반-군비확장의 틀 안에서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동독의 자기선전 노력에 대한 가장 극명한 표현에 지나지 않았습다.

배치의 관철은 처음부터 역시 독일의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일찌기 동베를린으로부터의 권고와 경고 그리고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들은 1980년 이후 변화하기 쉬운 높은 음조로 양독의 사회분위기를 동요시켰습다. 주제는 항상 동일하였습니다.: 만일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내륙관계에서 얻어진 성과를 훼손하고 위협하게 하며 위협할 것이다. 그리고 전혀 불가능하게 만들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진전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밖에도 미사일에 관한 논의는 사회적 측면에서 대대적인 국민적, 국제적 반항을 불러 일으키면서 원칙적인 문제로 나가기 때문에 독일의 정치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토전략에 대한 의문으로, 비핵강대국인 서독의 주권에 대한 의문으로, 핵의 위협에 대한 도덕적인 허용으로, 결론에 가선

파시즘과 중립주의로, 이 토론은 제가 평가하기엔 아직도 한동안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인내와 의연함, 그들의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감수성, 그리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말과 행위에 있어 확신에 찬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도전에 지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의미에선 1982년 가을에 이루어진 정권교체 역시도 이미 정치적인 현상내의 위치변동에 대한 우리 정치체제의 반응이요 답변이었습니다. 이 변동들은 1980년도 연방의회선거 이후에 점차적으로 당내에서의 헬무트 슈미트의 위치를 곤란하게 만들었고 결국엔 그로 하여금 그의 당을 안보정책—그 당시 반대당에 의해 운영되던—에 찬성하게 하였습니다. 작년 3월 6일에 거행된 연방 의회선거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 관점에서 볼 땐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나라엔, 그들이 소련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과소평가하며, 독일연방공화국을 중립주의라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 있다는 의심에 기초한 서구 동맹국 및 미국에 대한 간격유지로 보이는 정책을 지지하는 다수가 없습니다. 좌파 또는 우파의 주변그룹에 이르기까지 서독시민의 절대다수는 독일 연방공화국이 자유민주 산업국으로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동·서간의 패권정책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에 직면하여 무엇을 고수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서구 민주국가들과의 동맹을 고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서독시민들은 이러한 결단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동

독에 있는 독일인들에게도 결정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서독시민 역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에서 민족국가 통일을 희생시키면서 결정하는 것, 다른 한편으로 그와 동시에 무한한 기간동안 자기 민족의 4분의 1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비록 다수의 자유와 통일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자유의 우위를 차지해야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청하는 바이지만- 불안의 잔여, 나쁜 양심의 잔여가 사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죄의식의 잔여가 그래도 남아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자유가 있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사는 동시에 전쟁후 독일인의 삶의 양지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독사람들에게는 모든 점에서 볼 때 독일 전후사의 더 나은 부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동독에 있는 주민과 이야기물 나누게 된다면 동독도처에서도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거기선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독의 상상이나 거만함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나날의 체험인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서독인들은 생활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해시키고 싶은 것은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이 왜 “독일 문제”라는 테마를 포기할 수도 또 포기해서도 안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독의 정책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가적이고 사회정치적인 분단에도 불구하고 민족통일예의 확신은 그 핵심에 있

어 자명한 것이며 훼손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라고 표현합니다. 이 때, 이말은 정말이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유럽국가권 안에서 수백년이란 역사에 뿌리박고 있는 국민의식에 있어 40년은 긴 세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20세기 최근의 독일역사는 그러한 파멸적인 타격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결과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 개인들에게, 전 민족에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그 타격에 대한 기억은 모두 의식억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양국의 독일인들을 서로 결속시키며 그들의 통일에 대한 확신을 뚜렷이 활성화시키는 가까운 과거의 운명, 책임, 의무공동체의 공동체험입니다. 게다가 개인적이며, 장애물을 넘어선 지속적이고 폭넓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제한, SED의 모든 방어막설치 계획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들이 동독의 정보개방 및 서독으로부터의 영향으로 이해하는 “세계개방”을 조전삼아 사회주의 사회는 그들에게서 발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결국엔 SED가 옳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독국민들의 생각과 입장은 서베를린과 서독으로 향한 무수한 운하를 통해 이리로 흘러와 여기서 수용되며 사회적으로 반영됩니다. 누군가가 오늘날의 민족통일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의사소통의 영역이 빠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언급된 그 이유들 때문에 왜 독일연방정부의 정책이 독일문제라는 테마를 포기해서는 안되는지가 저절로 밝혀집니다. 그 테마는 조정될

수 없는 상황에선 비도덕적이며 무분별할 것이며 두 부분으로 갈라진 우리국민의 민족의식에 역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 품위와 민족적 단결심의 기본적인 법칙에 대한 위반일 겁니다. 그것은 독일 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목적을 위해 “국수주의적” 방식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힘들에게 이 영역을 넘겨줄런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국수주의적”이라는 개념에 대한 소견을 집어넣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미국에서 발행된 인쇄물을 읽을 때면 언제나 제게 드는 생각은 이들이 “국수주의적”이란 형용사를 너무 빨리,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내독적이거나 전체독일적인 관점이 동독정책의 범위내에서 효력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그것을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동독에 대한 우리의 민족적인 특별관심은 그 관심이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수호의 중대함을 훼손시키기 보다 오히려 봉사하는 한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며 적법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독정부의 협조에 따라 독일정책은 동독과의 관계로 축되지 않으며 또한 우리의 동독정책과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독일정책은 합법적인 원칙을 포함하여 대외정책 및 내독적인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의 정책, 그것의 목적은 “독일국민이 자유로운 자기결정으로 민족통일을 다시 열망하는 유럽의 평화적인 정세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970년도 모스크바 조약과 1972년도 동독과의 기

본조약시에 독일통일에 관한 편지에서 따로 이 인용문을 알아보실 겁니다.

서독 연방수상 콜은 1983년 5월 4일자 정부성명에서 우리 독일정책의 본질적이며 합법적인 원칙들을 열거한 바 있습니다. 그 원칙들은 헌법과 서독헌법의 당해 판결서부터 원칙협정에까지 이릅니다. 그 원칙들에 1954년도의 독일조약이 포함되어 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독일조약 제7항을 보면 “조약국들은 평화조약의 규정을 체결할 때까지 평화적인 수단으로 그들의 공동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공동작업할 것입니다; 그것은 서독처럼 자유롭고-민주적인 헌법을 갖고 있으며 유럽 공동체에 통합되어 있는 재결합된 독일”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30년이 경과했고 그 시간은 그냥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50년대 후반기에서 60년대에 이르기까지 서독 정부는 동맹국들이 재통일 문제에 있어 서로 같은 성장을 요구하는 일 없이 동독측과의 보안 및 긴장완화 조정에 다다르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당시의 연방정부의 근심스런 태도에는 무엇보다도 내독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무장을 포함한 서방국가들과의 동맹에는 바로 사람들이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재무장에 기대하고 있던 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두려워했음이 분명합니다.

역사가 어떻게 전진하는지를 여기서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방정부와 여론은 60년대 중반에서 부터 독일문제 해결에 대한 결론을 포함하여 군사적인 능력 상태에 대한, 안보상태 일반에 대한 정치적 결론에서 그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독일문제 해결에 대한 결론은 먼 정치적 미래로 밀쳐졌습니다. 협조방식정책의 가능성을 이용하므로써 적어도 사람들이 분단의 결과를 좀 더 참을 수 있게 하고 그러므로써 동독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감정을 주는 것, 요컨대 통일의 끈을 적어도 이런 제한된 의미에서나마 장려할 과제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70년대 양 독일 진영에서 이 정책이 그 성과와 함께 받았던 찬동의 정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동독에 관계해서는 말입니다. 여기서 동독국민의 심리적인 자신에 대한 내독적인 특별관리가, 즉 어떤 기대에 대한, 그 관계 자체가 이익이 되므로 그 관계가 이 정권을 전혀 원할 수 없다는 점은 완전히 제쳐놓고라도, 이 관계에 환멸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하는 그런 정권에의 요구에 대한 특별관리가 발전되었습니다.

자기네 사령부에 대한 내독적인 특별관계를 동독인들이 소망과 기대로서 요구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그것은 연방정부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정부는 그것을 가벼운 마음으로 소홀히 여길 수 없으며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도 그곳의 주민들간에 그들이 더 크고 더 유복하고 더 행복하며 활동적인 국민의 일부로 부터 버림받았다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독분야에 대한 우리의 언동은 항상 동독에 있는 독일인들에게 보내는 보고로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연방정부가 보증을 서서 지난 해 여름에 10억 마르크를 서독 은

행에서 발행했던 재정보증은 최초의 가장 떠들썩했던 실례를 제공합니다. 새 연방정부의 사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연방정부는 배치문제에서 자신의 우선권을 드러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연방정부로 하여금 내독관계와 서구 동맹국에서의 연방공화국의 안보간에 선택할 것을 강요한다면 정부는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군비확장을 반대하는 측이 어떻게 이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지는 쉽게 상상이 됩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동독의 국민들이 동구측의 공포선전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마찬가지로 내독관계에 관해서도 두려워함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독의 신용대부요청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증을 섬으로써 새 연방정부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안보 및 동맹의 중요성을 철저히 유지하는 데 있어 동독과 협력할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항에 비추어 볼 때 그 신호 역시 제대로 이해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신용대부를 승인한 점에서 세계가 11월 이후에 끝나진 않을 것이라는 동독의 자백이 반군비확장 선전의 정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독간 특수관계의 다중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동독에 대한 관계를 특별관계로, 비국외적관계로 규정지으며 그것은 합법적인 이유 및 민족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상호관계의 원칙에 대한 동독과의 조약과 그것에 내려진 헌법판결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경험은 다른

측인 동독과 소련이 내륙간 특수관계의 정치적이고 감저적인 중요성을 연방독일의 안보 및 동맹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발점으로 보고 있음을 밝혀줍니다.

다른 한편, 이에 대한 최초의 실례는 매우 교훈적입니다. 그것은 내륙관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유럽에의 일반적인 동서 관계에 기초가 되고 있는 소위 관심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전에 항시 계속해서 희망한 암시로 채색되던 정치적인 대응은 중단되었습니다. 독일 통일사회당 서기장 호네커는 피해경제설정에 관해 말했고 또 평화공존을 위해선 어떤 이성적인 양자택일도 없기 때문에 달성된 것은 보존되고 더우기 확장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호네커 자신의 관점과 동방블록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에 관해 절대로 틀리지 않다 생각합니다. 동독만을 고찰해 보면 서구가 추진한 협력과 공동작업을 그만두는 것은 동독의 내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상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일일 겁니다. 아마 그 밖의 바르샤바 조약국들에게도, 또한 서유럽 내외에서 물건을 다시 구입할 때 사용하는 외국환의 대부분을 서구와의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소련에게도 똑 같은 점이 작용될 겁니다.

통틀어 저는 준비확장의 예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끌어내고 싶습니다. 소비에트블록의 경제적이고 주둔정책적 관심은 마음대로 평화공존이나 냉전의 선택 사이에서 이리 저리 생각을 바꾸는 것을 분명 거부합니다.

소련의 시각에서는 일종의 강제상태가 문제시 될런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그것은 소련이 70년대에 비도발적으로 서유럽을 향해 그 무거운 SS 20미사일을 설치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공존의 "시민적" 부분과 군사적인 부분 사이에는 70년대 중반부터 동방측의 선전이 제시하려고 시도했던 해소되지 않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체험은 내독간 특별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안보문제를 내독 관계와 동시에 결합의식과 화합시키려는 시도는 당연히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운동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마도 점차 DKP의 행동주의자들 및 그들과 친밀한 조직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짐작컨대 핵무기 중 하나에 대한 요구가 동독과 독일 연방공화국을 포함한 자유진영에서 선전의 중심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호네커는 이미 지난 해 2월 연방수상에게 보낸 한 공개 서한에서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불안을—왜냐하면 "전장"이란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전드리고 하나의 독일 전체적인 특색을 지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동독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동독에 있는 복음 교회 연맹의 종교회의는 그것을 지지합니다. "내독간의 안보동반관계"라는 표제 하에 안보문제에서 특별한 내독간의 공동작업에 관해 SED는 물론 작년 초여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비난은 연방공화국에서 뿐만 아니라 동독에서도 역시 1983년 초에 일어났습니다. 에곤 바르와 SPD는 지금까지 동서간의 안보동반관계에 대해 보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내독간 조약정책의 진행을 특히
어지럽히거나 방해하진 않을 겁니다. 양측들은 이제 그들이 무엇에
의해 다른 측과 결탁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그들이 내독
관계를 오직 내독간의 이해원칙 위에서만 진행시키며 그들의 주요한
안보와 동맹세력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오해의 여지없이 명백히 제시하였습니다. 반대로 주둔착수에 대한 동
독의 태도는 내독간의 특별관계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그들에게 손
해가 생길 정도로 편협하게 군사적인 안보문제와 연관시킬 의도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해명은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연방정부가 연방공화국에서 자신의 노선을 지지하는 다수를 배후에
갖고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발견했던 조약
들에 기초하여 동독과의 조약정책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우리는 거
기서 현재 상태로 우리의 민족적인 특수관계를 인식하고 우리의 국
민적 의무를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하게 책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책임질 수 있는”이란 말이 의미하는 점은 우리 자신의
자유와 우리 동맹국들의 자유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것 유럽의 중
대한 안정성을 동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고한 반대정책, 그리고 희망상실과 절망의 정책을 동독과 동유럽
국가에 세우는 것이 책임성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판단에 결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소련체제의 본성
에 직면하여 그것은 우리와 나머지 모든 유럽국들에겐 유럽의 분열
과 더불어 독일의 분열을 극복한다는 목적에서 멀어지는 일일 겁니

다. 어쨌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소련 지도층의 형태가 변하고 있는 점차적인 발전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변화는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 나라의 상황을 이 삼십년 전의 상황과 비교합니다. 그들은 그에 대한 가장 극명한 표현을 소련이 직면하고 있는 평화공존에 대한 사실상의 양자택일의 실상에서 발견합니다. 분명히 소련은 이 국가들이 냉전으로 되돌아가리라고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철의 장막을 내리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건 왜일까요? 그들이 안전과 안정을 제외하곤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 곳에서 냉전에서 비롯하는 그 이상의 불안과 불안정을 두려워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엘베강에 이르기까지 유럽내의 안전과 안정에 대한 소련의 요구는 우리의 내독관계를 정돈하는 유럽공동작업이라는 정책을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 생각으로는—형성합니다. 그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 여기서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동독에게 손해를 주거나 그들의 안정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실제적인 해결에 이르길 원하며 그것을 위해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동독도 역시 토론의 여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사실들은 강권정책상 명백합니다. 것처럼 우리는 독일인이자 유럽인으로서 독일과 유럽에서 동서 갈등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하고 미래에 변화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오늘날 가능한 것과 책임질 수 있는 것을 행하는 데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내독 조약

정책은 이렇게 저절로 재통일과 독일문제의 해결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정책은 혼자서 독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독일문제의 고립된 해결을, 유럽에서의 여차한 발전과정과 떨어진 해결을 우리는 위험한 것으로, 더우기 가망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가망 없다는 건 특히 소련이 자신의 존립을 안전하게 하는 충분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 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네 동유럽 제국의 서쪽 기둥인 동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독의 반환은 소련의 강력한 권력상실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그들의 이데올로기적인 원칙의 동요를 전제로 합니다. 현재의 조건으로 보면 그것은 군사적인 패배의 결과에서만 생각할 수 있어서 그에 관한 추측은 단지 그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독일문제를 고립적으로 해결하려는 서독측의 시도는 진정한 조망의 그늘만이 성과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연방공화국에 있어 감당할 수 없는 모험과 결부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독일의 재통일은 오로지 전 유럽이 그 분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만 가능합니다. 독일정책은 우리에게서 실제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유럽의 재결합 정책입니다. 또는 우리 외무성 장관이 말하듯이, 유럽의 평화 정책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원칙적인 소견을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히 보면 유럽의 분열은 결과적인 현상입니다. 중부 유럽에 이르기까지, 엘베에 이르기까지 소련의 침공과 소련이 자신의 사회적 체제와 지배 체제를 종속국들에게 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열의 원인이

있습니다. 소련의 체제는 유럽적, 서구적인 문화권에 속해 있는 이 나라들의 정치적 문화에 반대하며 그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독재입니다. 그러나 독재, 그것은 각 개인에게 처럼 전 사회를 압박하고 괴롭히며 외부세계와의 교류에 운하를 파서 제한시킵니다. 한 마디로 거기에 결연되어 있는 것은 자유이며 인권과 시민권은 유럽의, 서구 문명의 주요사상이요 근본사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미국혁명의 덕을 입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독일 문제를 우리는 달리 규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자유와 자결의 거부라는 문제로서밖에는 자유와 자결은 개인적인 개념입니다. 개인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우위를 차지합니다. 비록 우리가 국제법 상으로 이 측면을 고집한다 할지라도 영토적인 측면은 뒤로 후퇴합니다. 이것을 외국에 이해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일종의 곤혹감을 준다는 것을 저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독일인의 절대다수에게 통일에 대한 소망은 일차적으로 자유가 거부되어 있는 동독국민들을 위한 자유에의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강국이라는 지나친 강조와 그 과도함은 독일내의 국수주의를 매우 비난했습니다.

제겐 1953년 6월 16일 베를린 중심부로 행군하던 그 전설노동자들의 외침 밖엔 아무 것도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드높은 노동규범의 회복을 요구하면서 그들은 스탈린거리에 있는 건축 현장에서 출발했었습니다. 200미터를 계속 전진하는 동안 그들은 자

기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고 싶다! 그 때문에 그들은 결국 자유롭고 통일된 새 독일을 위한 자유선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대독일국이 문제되는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독일인들처럼, 20세기가 대단원을 내린 이후 독일 문제에 대한 해결은 도대체 어떻게 보일 것인지 또는 보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생각도 오래전부터 일었습니다. 만일 모든 독일인의 자유와 존엄성이 더욱 잘 보장될 수 있다면 일차적으로 통일된 민족국가의 재현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콜 수상이 인터뷰에서(1984년 1월 15일에 있었던 스위스 TV와의) 간략히 설명하기를:“.....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민족의 통일이...요컨대 유럽의 지붕 밑에서 생각될 수 있을 뿐이며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내세웠던 민족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도 역시 19세기로 되돌아 갈 수 없습니다. 유럽적인 위대한 질서를 지닌 주권 민족국가로의 이상은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 국가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독일인이요 유럽인으로서, 저는 유럽 국가들이 일찌기 유례가 없는 붕괴로 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능력이 없다고 믿고 싶진 않습니다. 민족의 동일성을 유럽의 통일이란 즉 속에서 휘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럽의 정기를 손안에 쥐고 있다면 우리 독일인들이 우리의 역사적인 책임으로부터 자기자신을 빼내 오려는 것도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족통일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집착은 유럽에 대해 책임이 있

다는 우리의 인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와 동맹국들이 독일 민족통일에 대한 우리의 고집을 퇴보적이며 복구적인 것으로 오해한다면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통일을 향한 독일의 노력 안에서 분열된 유럽이 유럽 자신의 갱신과 통일에 봉사하는 힘을 얻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출처 : 워싱턴 주제 콘라드-아데나우어재단의 독미 세미나에서의 담화문; 하인리히 뢰셀렌: 독일정책에 대한 기고, 본, 1984년 에서 복제.

84. 독일정책과 국제정세 보고에 대한 독일 연방의회의 의결

I. 독일연방의회는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 우리의 조국은 분단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민족은 계속 존재한다. 우리 독일인은 우리의 독자적인 힘으로 분단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분단상황을 보다 전덜만 하고 덜 위협스럽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독일 분단상황은 유럽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평화 질서의 범위안에서 만이 변화될 것이다. 독일민족이 자유로운 자결상태에서 자신의 통일을 다시 얻게되는 유럽의 평화정세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

독일연방의회는 그들의 자결권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독일민

족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강화한다. 그래서 독일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의해 규정된다.

-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
 - 독일조약
 - 동방조약들, 1972년 5월 17일 독일연방의회의 의결과 같은 “독일의 통일”을 위한 서한들,
 - 기본조약 및 다른 내독간의 조약들, 그리고 1973년 7월 31일, 1975년 7월 7일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의 결정과 같은 협정들
- 독일연방의회 형평을 유지하고 조약에 충실하며 잘 평가하여 선택한다는 기초하에, 또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익한 성과를 심화시키고 더욱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갖고서 보다 실천적으로 동독과의 관계에 입할 준비를 강화한다. 내독간의 조약정책은 독일국민들이 분단의 결과를 좀더 견딜만한게 해야하고 또한 민족의 통일을 보존해야만 한다.

독일연방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즉, 유럽에서는 하멜의 보고와 조화시켜 계속해서 긴장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해조정과 평화화가 가능해지는 상황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기본 조약에 체결 이후로 수많은 분야에서 동독과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예를 들면 우편제도, 통신제도, 체육분야, 수의학분야, 비상업적 분야의 지불거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협정 및 전 영역에 걸친 수리학적 조치 등에 있어서는 교류가 그것이다.)

- 양독국민들 사이에 접촉이 현저하게 증가되었고,
- 가족상봉이 긍정적으로,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는 만족하지는 못할 정도로 발전되었으며,
- 1971년 9월 3일의 4대국협정 이후로 서베를린의 상황이 현저하게 호전되었는데 이것은 특히 서베를린으로 부터 오고, 서베를린으로 가는 출입자들과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베를린의 결속을 위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결속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이런 결속이 동맹관계를 통한 외면상 대표인 4대국협정과의 일치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 몇가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동독과의 경계의 뚜렷이 그어지고 확정되었다.

1번에서 명시된 권리상황은 이러한 조약정책을 통해서 언급되지 않고 있다.

3. 정치적인 협력의 영역에서 볼 때 과거에 있어 양독 사이의 접촉은 상주대표부를 통해서 정치외적 문제(전유럽 안보협력회의(KSZE), 군비 축소, 영해권)에 있어서의 협의를 통해서, 각 전문분야의 장관들의 반문을 통해서 강화되었다. 거기에 한정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4. 동독의 국경감시, 테러지시, 여행교통에 있어서 동독의 제한조치(무엇보다도 동서독여행의 허가 및 증가된 최저교환언칙의 실현에서)와 같은 구체적인 장애들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조약에서 요구된 동서독 사이의 친밀한 관계설정은 지금까지 실

패했다. 우리는 동독과 서독 사이엔 서로간에 이질적인, 다른 나라들과 같은 국제법상의 관계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5. 독일의 독일적 관치는 양대강국인 미국과 소련의 관계에 의해 특별한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 서독과 동독의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대해 공동의 책임이 있다. 양국은 국제상황의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독일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
6. 독일연방의회는 독일정책이 동시에 유럽의 평화정책임을 단언한다. 그러므로 유럽의 평화정책은 우리의 국제적 이해관계에 있다. 독일인들은 평화속에서 공존하고 유럽의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7. 독일연방의회는 베를린이 동서간 관계의 시금석이 된다고 단언한다. 이러한 시금석은 베를린에 관한 4대국협정의 엄격한 엄수와 철저한 작용에서 나타난다. 4대국의 책임하에 있는 이 분단된 베를린을 볼 때 분단의 결과는 아직 극복되지 않았고 독일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베를린의 생존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다. 다른 어떤 도시 이상으로 베를린은 동서간의 실제적 긴장상태에 의존하고 있다.

II. 연방정부는 양독사이에 관계를 보다 더 향상시키도록 요구할 것이다.

출처 : 독일연방의회 의정서, 인쇄물 10/914, 1984년 2월 9일의 의결

85. 경계위원회의 78~80번 의정서 각서

1984. 2. 29

이쯔(Itz)지역에 한 홍수방지용 저수지를 건설하여 운영하려는 것과
연관된 문제들에 대한 의정서 각서가 1984년 2월 29일 베를린의
경계선위원회 석상에서 비준되어 인쇄되었다.

경계선위원회-토대와 활동에 관한 기록, 내독성 발행, 본 1985.

86. 경계위원회의 81번 의정서 각서

1984. 3. 1.

58번 경계선근처에 173번 연방국도를 건설하는 사업에 관한 의정
서 각서가 1984년 3월 1일 베를린의 경계선 위원회 석상에서 비준
되어 인쇄되었다.

경계선위원회-토대와 활동에 관한 기록, 내독성 발행, 본 1985.

87. 분단독일에 있어서의 국가정세에 대한 연방수상 헬무트 콜박사의 보고

1984. 3. 15.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친애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국가정세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로는 독일의 분단이 독일인들에게 있어 비통한 현실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날의 국가정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한 이러한 분단을 극복하려는 희망도 되는 것입니다. 조국의 통일은 살아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양독사이에는 강도있는 대화가 진행중이며 수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접촉과 조직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분단독일의 국가정세를 보고한 이후로 양독관계의 결속은 더욱 더 굳건해졌습니다. 우리가 협력을 위한 우리의 모든 가능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양국은 동서관계의 이 어려운 시대속에서 평화를 보존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독관계상황은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펴온 결과입니다. 이러한 정책이념, 정책성과, 정책시점은 6개항에 걸친 분단독일의 국가정세에 관한 보고에서 표명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유가 독일인들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연합속에 자유로운 자결상태에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한다는 국가적 명령은 타당하며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법적, 도덕적 입장은 모든 독일인들이 자유와 자결을 요구하는데 있습니다. 국가의 통일은 무엇보다도 그 국민들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의 보존은 모든 다른 목표들 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독일년반공화국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적 토대입니다. 유럽공동체와 대서양연

합의 결속이 이러한 정책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자유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법치국가라는 점에서 우리의 기본가치와 정치문화, 즉 적대시 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는 가운데 수백년 동안 생겨난 유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서방세계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꼭 내적으로는 전체주의의 지배, 밖으로는 전쟁이라는 쓰라린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 인권, 그리고 인권과 자유가 실현시키는 평화가 우리의 첫번째 국가목표임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서방 우방국은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체험과 공동의 가치이해에서 볼 때, 그리고 특히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자기이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들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30년 전의 파리조약과 더불어 우리는 자유서방연합에 대해 믿음울 꾸준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자유로운 가운데 지속적으로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은 3대 강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문제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 관점에 있어서 만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1983년 5월 4일 정부 성명에서 개별적으로 거론했던 그런 법률적 토대들은 연방정부의 정책에 있어 표준이 되고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대 강국과 맺고 있는 관계는 베를린의 존재 의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서방동맹국들과의 '유대관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방조하는 사람, 특히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사람은 베를린 시민들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를린에서 자유의 문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관제를 갖고 있습니다. 베를린은 자유서방국민들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상징입니다. 또한 베를린은 동서간의 관계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베를린 사람들의 활력과 자유의지, 그리고 3대 강국들의 결연한 수호로 인해서 베를린은 1945년 이후로 자유를 보존해 왔습니다.

프랑스, 영국 및 미합중국은 베를린에서 자신들의 독자적 권리를 수행합니다. 그들이 베를린에 있음으로 해서 그들은 지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서양 가치공동체에 있어서의 우리의 동반자이며 우방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선 베를린에서 공동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또한 베를린은 언제나 서방측의 자기주장-의지를 위한 시험무대가 됩니다. 베를린의 상황 및 베를린 주변의 상황은 안정되어야만 합니다. 베를린에 관한 4대국협정을 엄수하고 철저히 적용하는 것은 동서간의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의미로 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베를린이 동맹과의 결속을 공고히 하고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 이해의 차원을 갖습니다.

또한 내독관계는 베를린의 상황을 완화시키고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발기를 통해서 베를린 사람들에게

전차를 되돌려 준 것, 말하자면 동서 베를린간에 전차가 다닐 수 있게 된 것을 베를린 시민들 및 베를린 당국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방정부는 계속해서 베를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베를린이 발하는 매력을 장려하고 빛나게 할 것입니다. 베를린은 창조적인 연구와 중심지로서와 같은 미래산업의 기점으로서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새롭고 미래에도 확실한 직업분야가 오래도록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를린 경제회담(Berliner Wirtschaftskonferenz)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15개월 전에 현 시장과 공동으로 이 경제회담을 주최했었습니다. 그동안에 대부분의 약속사항은 구체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올해 6월의 후속회담에서 결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새로운 발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베를린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오늘날에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자본은 증가하고 기업들은 주문과 우량품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국민총생산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은 다시 개화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은 그 본래의 도약을 다시 얻게 되었으며 베를린은 그 소유의 실체, 완전히 독자적인 자신의 생명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3년 후면 750년에 역사를 되돌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념축제는 이 평화롭고 세계에 개방된 도시, 베를린의 자유로운 생활감정, 베

를린의 역사, 베를린의 전통에 대한 하나의 선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를린이 하나의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를린을 위한 이 축제가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독일민족은 독일인들의 의식속에 있는 실체입니다. 유럽심장 부에서의 수백년간에 걸친 공동의 역사적 체험으로 부터 우리 독일인들은 특징적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완전히 자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독일적 토대 위에서의 역사적, 정치적 변화 때문에 민족통일의 의식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조국에서 우리의 전체 역사를 찬란하면서도 끔찍하고 어두운 역사적 주제들로 규정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역사적 주제들이 바로 이 현세기에 있어서는 교만과 죄악, 고난과 고통의 공동체험이며, 이러한 것들이 독일인들을 서로 연관짓게 하고 그들의 통일 의식 또한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는 1933년 1월 30일에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가 권력을 계승한지 51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부터 독일의 진로는 파국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온 민족이 슈타우펜베르크(Stauffenberg) 백작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1944년 7월 20일 폭력 지배에 저항하여 거기에 맞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모든 독일인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치스 독일정권을 다른 정권으로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절대권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좀 더 다른, 다시 말해 보다 발전된

독일에 대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원칙에의 충실, 그들의 용기, 그들의 행동은 독일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부분이 됩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이 지니고 있는 토대의 하나인 히틀러에 대한 독일인이 저항이라는 유산은 독일인들의 의식 속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은 이제 잘못 이끌어져서도 안되고 당파적인 목적에 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동독정부는 독일의 역사를 고쳐서 해석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동독의 독일통일사회당 선전자들이 계속 되풀이해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독일역사의 방향은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독일쪽으로 나아간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기는 분명합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현존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현실이 국민들의 마음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국가적으로 자기를 발전하고 통일된 시각을 가짐으로써 무시당하게 된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대중화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동독국민들을 기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동독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적 전체독일의 이념이 동독의 전체독일에 대한 역사상의 배후에 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하에서 지속적인 민족통일과 미래의 국가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함으로써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은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민족의식이 동독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독사회의 이론과 실천이 절대로 자

유로운 선택에 의해 동독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선 공동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의 분단이라는 공동의 짐을 떠맡고 있습니다. 양독 사이의 특별한 관계는 이 양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양독중 어느 쪽 정부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 독일현실의 단면입니다. 우리는 분단현실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독 동포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민족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동포인 동독인들에게 접근해야 하며 그들에게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점점 더 동독과의 관계 이상의 것을 체험하려고 하고 그 곳에서 우리 동포들이 일상생활과 삶의 현실을 배우려고 한다는 사실에 대해 저는 좋은 징조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사이를 좁혀야하며 서로 왕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서 민족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해 주도록 부모님들께, 또 특별히 문교성과 문교성장관에게 호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학교수업에 있어서 독일인들의 문제처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언론매체에서, 또한 학문적인 보고에서 분단된 독일에 대해 보다 많은것을 계속 배워야만 합니다. 즉 분단독일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배워야 하며 더우기 중요한 것은 동독인들의 행동, 그들의 근심, 그들의 희망에 대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역사, 언어, 예술, 문학 및 가치와 윤리의 공통성이 있다고 해서 통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정보와 의견들이 끊임 없이 쏟아져 나오므로써 여러가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교환수단인 대화와 접촉을 통해 국경을 넘어선 지속적인 관계가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론매체는 그들이 공표를 할 때 그 자신이 양쪽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그때 그때 상대측 국가 국민들의 생활에 관한 유일한 정보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지난 해는 마틴 루터에 대한 추모의 정이 가장 강렬했던 해입니다. 이렇게 그를 추모함으로써 독일인들은 서로 화합하며 독일의 어디에서든 만남에 대한 희망적인 기운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쪽에 대한 교회의 공헌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저는 마틴 루터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세계, 분단이 낳은 결과를 사람들로 하여금 견딜만한 것으로 만들고 덜 위험스럽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기여하는 실질적인 해결을 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국가적 의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이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독관계가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독관계는 지난날의 정치적 결정에서 볼 때도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측에서 이익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서방동

맹국들에게서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점을 흐뭇한 마음으로 확실히 해 두고자 합니다.

작년에 제가 분단독일의 국가정세에 관해 보고드린 이후로 내독관계는 전체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연방정부는 인도주의적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집약적인 노력을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1983년 동독은 많은 수의 정치범들을 서둘러 석방했고 그들이 서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주목할 만큼 넓은 범위에서,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주신청을 낸 동독의 국민들이 어떤 부담을 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주허가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독일연방공화국에 이주하기를 바라고 동독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환영합니다. 여행왕래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반길만한 발전이 있습니다. 최근에 동독으로의 여행자 수는 다시 어느 정도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1980년 8월에 있었던 최저교환원칙을 높이는데 있어서의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결정적인 개선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국경감시에 있어서는 전에 비해 확실한 구체적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동독은 6세에서 14세까지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작년 9월 제한했던 교류를 풀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가족교류에 있어서까지 확실히 완화되었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결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첫걸음 이상은 아닙니다. 최저교환원칙을 철폐하라는 것이 연방정부의 중요하

고도 중심적인 요구입니다.

동독으로 부터 서독으로의 여행왕래에 있어서는 유감스럽게도 커다란 움직임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급한 이산가족문제에 있어서 여행을 허가받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작년에는 1982년보다 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동독의 젊은이들이 아주 엄격한 전제하에서만 서방으로의 여행이 허용된다는 사실에 계속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거부당한 많은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를 여전히 듣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냉혹한 경우에 대해 우리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인도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기를 동독정부에 호수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내독간의 우편교류에 있어서 백여만명의 사람들을 위한, 그들이 느낄 수 있을만한 완화조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우편협정에 관한 합의가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적절한 관계에 대한 하나의 좋은 예가 됩니다.

8년간에 걸친 공백기가 지난후 1983년 가을에 문화협정에 관한 협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우리는 문화교류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대화가 실현될 수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는 학문교류에 있어서와 같은 개별적인 계획들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분야의 관계는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체육분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드물지만 최고 수준의 선수들의 관측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한 한 많은 청년들과 운동선수들이 국경근처에서 서로간의 정정당당한 시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법률상의 공동보조협정에 있어서 우리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당사자의 이해가 결린 문제를 쉽게 처리하고 통일시키며 또한 이것을 추진시키자는데 대한 합의를 얻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내륙간의 무역은 모든 경제정세의 변화를 초월하여 양측에게 있어 견고하고 이해 가능한 요소입니다. 내륙간의 무역은 동독에서는 여러가지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연방공화국에게 또한 무엇보다도 베를린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1983년 성장율이 8%에 이르렀었습니다. 동독은 무엇보다도 우편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전력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무역균형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연방정부는 현존의 협정이 토대위에 경제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양자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요구하려 합니다. 연방정부는 새로운 자극이 있음으로써 협력이 확대되고 이러한 협력이 상품무역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저는 이 자리에서 폭스파젠생산기업과 동독의 관계기관 사이에 약속된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연방정부는 작년 여름 100만마르크에 달하는 서독은행의 신용대부에 동의함으로써 동독정부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

러한 결정은 동독국민들에게 알려짐과 동시에 그들로 부터 좋게 이해되어 받아들여 졌습니다. 우리는 안전보장에 대한 관심과 동맹국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들의 관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내독관계에서 이성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작하! 신사, 숙녀 여러분! 독일을 가르고 있는 이 전디기 어려운 경계선을 보게 되면 이것을 물론 내독관계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정상상태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선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기회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이 국경을 관리하는 당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연방국경수비대와 바이에른 국경경찰, 그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운용하는데 대해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럽의 분단이라는 끔찍한 모습이 독일을 중앙으로 가르고 있는 이 경계선보다, 더 명백하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히 국경변경의 주민들이 동정을 사고 있습니다. 중앙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변방으로 밀려난 듯이 보입니다. 때론 친족문제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관계들이 여기서는 비인간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중앙지역을 다시금 좀더 강력하게 지원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표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국경변경의 주민들은 분단이라는 가장 가슴 아픈 결과를 양국이 협력함으로써 완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 인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째, 유럽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는 동독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체결된 조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 우리는 관계결속을 계속해서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독일사회민주당(SPD)과 그들의 정치분파들이 이러한 정책에 동의한다는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은 1984년 2월 9일의 독일연방의회의 의결에 폭넓게 동의함으로써 표명되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엇때문에 우려를 나타내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로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연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것들을 보존하고 넓혀 나가려 합니다. 우리는 기본조약이나 다른 내독간의 조약들 및 합의사항들과 같은 기회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동독과의 관계에 있어 균형과 조약에의 충실, 충분한 검토의 토대 위에서 실천적인 목표를 갖고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용한 성과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독과 동독은 유럽의 평화와 안분에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은 국제정세의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서독과 동

독은 위기를 막고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 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대해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군비조절이나 군비 축소와 같은, 일반적으로 나온 동서 관계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 9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전유럽안보협력회의(KSZE)의 축소회담은 한편의 의정서로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단독일의 국민들은 마드리드에서 나온 의결사항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피부로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월 이후로 유럽에 있어 신뢰를 조성하고 안보를 조성하는 조치들 및 군비축소에 관한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스톡홀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대화와 협력에 대한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가능한 것으로 여겼던 것보다도 더 강하다는 사실이 표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회담에서 오랜 시간에 걸친 안정된 토대위에 동서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한 중요한 기구의 발족을 보게 됩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저와 호네커 서기장과의 회담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 동독이 우리와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동서간에 보다 나은 신뢰관계를 진행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에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는 우리가 얻고자 애쓰는 유럽의 평화질서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며 이러한 유럽의 평화질서속에서 우리 독일인들은 우리 자신의 자결권을 자유로이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무력사용금지에 주목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기본조건입니다. 우리의 평화정책은 처음부터 무력의 포기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오로지 평화적인 방법으로써 독일의 분단을 극복할거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무력의 포기, 인권의 존중, 자유가 없다면 어떠한 유럽의 지속적인 평화질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진지한 사람이라면 장벽과 가시철조망을 허물어야 하고 중오와 적대감을 가르치는 교육을 중단해야만 하며 인권의 요구가 폭력으로 위협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에서도 인권이 경시되는데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유럽에 있어서 긴장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해조정과 평화가 가능해지는 상태를 얻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하멜보고의 양대 기본 요소에 대해 변함없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군사안보와 긴장정책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지워지고 보충되는 것입니다. 내일 비인에서는 중부유럽에 있어서 쌍방간에 신중한 군대축소에 관한 MBFR회담이 재개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담을 계속해 나가고자 할 뿐만 아니라 군비축소와 군비조정에 관한 다른 회담들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세계적인 화학무기 사용금지에 대해서도 합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동서협력관계의 구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독정부에 대해 그들이 늘 행사할

수 있는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주기를 바라며 그럼으로써 평화에 대한 책임속에 대화와 협력의 정책이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독일의 정책은 유럽의 평화를 위한 정책인 것입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평화의 보존을 위해 근심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본원적 삶의 토대를 수호하는데 있어서도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세계를 살만한 가치가 있도록 보존하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협력해야만 합니다. 장벽이나 가시철조망, 국경통행금지 등과 같은 것들은 아황산가스와 같이 주위환경에 부담을 주는 것들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증가하는 대기오염 및 우려를 불러 일으키는 삼림훼손은 양독에게 공동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하여 국제적인 협력의 가능성이 개진되고 이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6월에 이 문제에 관한 국제회담을 개최키 위해 동서양국드러울 뮌헨으로 초청했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유럽에서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삼림이 훼손되고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원인과 가능성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조직적이고도 집약적인 협력은 무엇보다 내독관계에도 있어야 합니다. 즉 삼림훼손을 막고 아황산가스를 제거하는데 있어서, 도 핵시설이나 방사선오염방지, 핵전쟁방지등의 중요한 안보문제에 있어서 조직적이고도 강력한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현재의 접촉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중국에는 -협리에 따라- 이

현재의 접촉이 구체적으로 합의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경을 지나가는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어서는 협력이 부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최초의 고무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장관차원의 접촉은 주위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어,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여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불구하고 전체독일의 공동생활의 이해가 문제가 됩니다. 독일인들-동독과 서독의 국민들-은 독자적으로 생활의 이해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우리민족의 이웃나라들-동서간에-과 연대해야만이 우리의 주위환경을 효과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독일의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유럽을 단결시켜야 합니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로서, 독일은 유럽의 세력체제의 중심부에 있음으로 해서 언제나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이해를 서로 겨루는 곳이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 다음과 같은 국면도 있습니다. 즉 독일이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함으로 해서 야기되는 위험을 제거했다는 국면도 있습니다. 그 후 독일인들은 국가적인 독자노선을 추구했고 그 당시엔 패권정책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우리나라가 좌초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독자노선도 우리 나라를 유럽의 중앙부로부터 이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테두리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만•어야만 하고 그러기를 바라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가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고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독일의 분단이 유럽적인 차원의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유럽의 이웃나라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아야만 독일의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유럽의 중심부에 있어서의 안정을 위해 요소로서 바로 우리나라가 그것에 대해 얼마나 커다란 책임을 지고 있는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독일인들이 유럽에서 지고있는 책임을 다시 무시하리라고는 생각해선 안될 것입니다. 평화는 독일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 유럽간의 결속을 저버리고 전체유럽의 세력균형을 무시하며 또 우리의 이웃나라들과는 따로 떨어져서 분단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연대는 하나의 또 다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즉 독일인들이 자유로운 자결을 요구함으로써, 분열되었던 유럽은 그들의 부흥과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을 얻게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유럽인들은 독일에 대한 유럽분열의 극복이 전체 독일국민이 자유로운 자결 속에서 받아들여야 될 하나의 평화질서를 견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독일인들의 국가관이 유럽의 이상과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럽의 정책과 독일의 정책은 한 동전의 앞뒤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유럽이 화합해야 된다는 모토, 이것이 구가적인 명령의 일부이며 원래부

터 독일연방공화국의 국시입니다. 우리의 자유정치문화는 유럽 공동의 기본적 가치지평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공동체를 공동 창설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적 이해관계에서 볼 때 그 점을 그렇게 원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안보와 정치적 협상가능성에 이해를 갖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역동적인 공동체와 이 공동체의 강력한 영향력 만이 앞으로 전체 유럽에 있어서의 변화의 기회를 열어 줄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가 유럽공동체의 창설에 기여한 공헌과 그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가져 왔다는 사실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또 무시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사 숙녀 여러분, 재정적으로 드는 비용과 정치적으로 얻는 이익 등은 함께 고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즉 유럽에 대한 모든 의미있는 투자는 또한 언제나 독일인들의 자유로운 미래를 위해 분할하여 지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럽의 통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양·택일마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에게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요즈음 유럽은 경제공동체의 시급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 보다 더 큰 문제에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공동체가 궁극적으로 통이러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은 발전이 위축될 것이며 그런 점에서 거대한 세계정치의 문제에 있어 자신이 차지하는 비중을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유럽은 정치적으로 통

일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의 평화질서속에서 독일인들의 통일을 실현시킨다는 우리의 희망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조약에서 제시된 항로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유럽인들의 보다 밀접한 결속을 위해 로마조약에서 만들어진 토대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유럽합중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갖는 정치적 연합체를 결성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독일과 프랑스간의 협력 및 우호관계는 유럽의 이념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다른 파트너국들과도 공동으로 이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첫 회담이 열릴 것이며 또 분명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애쓰는 유럽의 정치연합은 대서양권을 벗어나 나아갈 수 있는 교량을 떠받치는, 유럽에서의 버팀대를 더욱 튼튼히 해 줄 것입니다.

여섯째, 독일민족은 서방에 속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자유를 위해 연합한다는데 있고 또한 그러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법치국가, 정치적 자결과 같은 서구민주주의 정치질서는 내적으로는 그것을 보존하고 외적으로는 수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미래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의사표현 독립적인 노동조합, 자유이주권, 그리고 그외의 많은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과 동맹과

트너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유로운 인간이기를 원하며 자유 속에서 살고 그들의 공동체와 그 정치적 의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독일의 분단 및 유럽분단의 참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부유럽과 동부유럽의 국민들에 있어서 자유와 자결이 거부당하고 있다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조지 슐츠는 1984년 1월 17일 스톡홀름 회담의 개회석상에서, 또한 몇주 전에 이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1945년 이후로 하나의 인공적인 경계선이 이 유럽대륙을 무자비하게 갈라 놓았고 독일인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무자비하게 갈라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인공적으로 그어진 유럽의 분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단은 유럽의 안보문제와 인권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슐츠는 계속 말했습니다.

“인권은 유럽의 안보에 관한 모든 논의의 핵심적인 문제를 이룹니다.(...) 유럽을 분단시키는 모든 시도는 필연적으로 긴장과 불안정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렇게 자유진영에 속하는 나라가 동사간의 경계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독일의 문제가 유럽역사의 중심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는 독일문제의 핵심입니다. 자유는 통일의 조건입니다. 통일을 위해 자유를 회

생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유와 안보가 통일에 대한 우리의 희망에 역행하는 짓을 할 수도 있으리라는 모든 환상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나라들도 생각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폴란드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어 그렇듯이 우리 자신이 미래와 같을 수 없는 폴란드국민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민족은 우리들 고유의 유산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미래를 기대합니다만- 중부유럽 및 동유럽민족들과 더불어 하나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이러한 전통을 쫓아야만 하고 또 그럴 것이며 우리 또한 이러한 전통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이 역사를 통해 중부유럽 및 동유럽민족들과 함께 나아간다는 그런 부분에 관한 유산이 없다면 전 독일민족은 더 가난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럼으로 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곳에서 살고있는 독일인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결속시키고 보호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론 그들의 의지와는 상반되게 말할 수 없는 고통하에서 자신들이 태어난 본래의 고향을 떠났던 모든 독일인들을 위해서 여기, 우리조국이 자유로운 땅에서 하나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야 된다는 책임과 동정을 느낍니다.

쫓겨간 사람들과 달아난 사람들의 그 비통한 운명을 바라볼 때 이미 1950년에 그들이 주장한 무력포기는 언제나 계속해서 역사앞에 두드러지게 만든 하나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보복과 복수를 거부하고 화해를 준비하는 것이 평화의 임무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평화사업은 우리시대에 있어서도 근심으로 압박 받는 우리 독일출신의 폴란드국민과 또한 바로 쫓겨간 독일인들 및 그들의 후손 출신의 폴란드국민이 결핍하는 하나의 단결의 표시입니다. 쫓겨간 사람들과 박해를 피해 달아난 사람들은 우리의 감사와 인정을 받을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을 국가적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생활형식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적 문제에 관한 우리정책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렇게 자유로운 생활 형식을 보존하는 것이 그 많은 유럽인들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자유로운 생활 형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자유질서에 대해 세계에 공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고 또 그 자유질서를 모범적으로 형성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법치주의적 민주주의는 그 자유로운 정치적 의지를 형성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며 내적인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자유를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정신적인 활력, 다양한 의사표현, 문화적인 창조력이 있어야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긴장과 세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경제질서는 연구와 기술분야에 있어, 즉 학문과 경제분야에 있어 독창력과 사업정신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또한 경쟁과 사회적 타협을 함으로써 확실한 매력있는 것임을 실증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가 시민들의 개인적 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만이 우리는 모든 독일인들과 유럽인들을 위해 신뢰할 만한 자유로운 국가적 자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독일

과 유럽의 분단이라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답인 것입니다.

독일민족은 민족국가보다 우선하는 것이며 민족국가보다 영원한 것입니다. 20세기의 전례없는 2차대전의 대참사 이후에도 우리 공동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독일연방공화국은 유럽과 세계의 평화에 대한 책임과 같은 국가적 요청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가회국가는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공동체의 존중받는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화정책은 신뢰와 명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스럽게 뒤돌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과 지구전체 정책의 조건에 진지한 의미를 두고 우리의 국가적 명령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번영 속에도, 독자적 자유속에도 단지 편안하게 안주하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선택을 최종적인 말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세계와 우리 우방에 의 의존이라는 밀접한 연관속에 독일의 문제가 개진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헌법 전문에 나와 있듯이 전 독일민족은 자유로운 자결상태에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된 유럽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구성원으로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모든 독일인들의 명령은 이러한 공동의 자유라는 목표에 있는 것입니다.

출처 : 1984년 3월 15일, 제59차 독일연방의회 의정서

88. 청소년 관광여행을 위한 자유독일청년단(FDJ) - 관광조사

1984. 4. 25

베를린발 ADN(Allgemeiner Deutscher Nachrichtendienst)통신. 지난 목요일 자유독일청년단 “청년관광여행”-관광공사 총재 클라우스 아이홀러는 자유독일청년단의 발기로 시작되어 동독과 서독간에 진행중인, 청년관광여행에 대한 자유독일청년단의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다음 사실을 지적했다. 즉 바로 서독의 내무성에서 펴낸 “헌법수호보고(1983)”에서 동독으로 부터 청년여행단을 보내는 것이 “혁명활동”이라고 비방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로부터 청년관광여행이 서독첩보기관으로 부터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분명한 것은 서독의 경찰기관이 동독으로 부터의 청년관광여행단을 계속해서 방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클라우스 아이홀러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청년여행단은 서독에서의 젊은 동독시민의 안전문제라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독으로서의 여행계획을 예정했던 대로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ADN통신, 「신독일(Neues Deutschland)」에서 인용. 동베를린, 1984. 4. 25

89. 슈타켄(Staaken)을 국경통과지점으로 개방하는데 관한 동독의 통고

1984. 6. 25

1984년 6월 25일 독일민주공화국정부는 연방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고했다. 즉, 베를린과 함부르크간의 고속도로 건설에 관해 다룬 1978년 11월 6일자 편지교환에 관한 1번 의정서각서에서 확정된 슈타켄을 국경통과지역으로 개발하는 시기는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 사이의 통행교류를 위해서 1984년 11월 31일을 넘어 1987년 11월 31일로 연장될 것이라고 통고했다.

출처:분데스안짜이거(Bundesanzeiger)誌, 본

90. 내독관계의 발전에 대한 국무장관 필립 예닝거박사의 성명

1984. 6. 25

헬무트 콜 수상이 이끄는 연방정부는 처음부터 독일정책에 특별한 비중을 두어 왔습니다.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기본원칙은 1982년 10월과 1983년 5월의 시정연설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독일연방공화국과 동독 사이에는 불식될 수 없는 원칙적인 차이가 있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특별히 분단독일의 국

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진보가 문제시되는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상을 갖고서 유연한 자세로 원칙에 충실하고 확고한 근본원칙을 가지면서 법적 상황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호네커 서기장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단지 독일의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양국 사이에 안정되고 분별력 있는 관계정립이 중요한 것입니다. 양국은 유럽의 안정에 결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동독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포괄적인, 즉 소련과 여타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에 관계된 전체적인 정책의 일부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동독에게 있어서는 영구적인, 독일의 “특별한 길”이란 없습니다. 양국은 그때 그때마다 그들의 동맹관계의 신뢰할 수 있는 구성원이며 계속 그래야 합니다.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하면서 동서간의 경계선에 있는 양국 사이의 관계개선은 동시에 모든 유럽인들의 이해와 일치합니다.

연방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즉 평화정책은 서방측과의 우호관계 및 동방측과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와 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의 “책임의 공동체”에 관해, 또한 하나의 “이성의 동맹관계”에 관해 얘기할 때—여기서 이러한 개념은 분명히 전쟁준비의 문제에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위한 폭넓은 완화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

면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독일국민들에게 있어 분단이라는 장애를 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방정부가 취해온 독일정책의 성과는 모든 분야의 발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82년에 정부가 바뀐 이후로 내독관계는 긍정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작년 여름, 은행이 동독에 대해 100만 마르크의 신용대출을 해주고 연방정부가 거기에 대한 보증을 썼을 때 우리는 아무런 이유없이 “신뢰에 대해선 신뢰로”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거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말해 왔습니다. 대출의 “철학”이란 또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내독관계를 폭넓은 전면에서 가동시키기 위한 하나의 자극이었으며 또한 제가 우리의 동독과의 관계를 재활성화시킨다는 것으로서 특징지어려 하는 하나의 과정을 진행시키기 위한 자극이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용대출로서 보낸 우리의 신호는 전체적인 부문에서 긍정적인 대응 신호의 반응을 얻게 됩니다. 동독은 그들이 이산가족의 상봉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연방정부는 올해가 경과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더 많은 수천 명의 독일인들이 동독으로 부터 우리에게로 이주해 올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구조적인 협력의 표시입니다. 저는 독일은행(Deutsche Bank)이 룩셈부르크(Luxemburg)에 있는 그들의 지정은행으로 하여금 동베를린에 있는 AG주식회사측의

독일해의 무역은행(Deutsche Aussenhandelsbank)에 대해 일반적인 시장 조건으로 최고 9억 5천만 마르크(어음 유효기간 5년)의 돈을 유용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은행은 유럽시장에 진출해 있는 그들의 지점은행에 대해 이러한 신용대출에 참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독일은행과 독일해의무역은행 사이의 이러한 계약에 동의했고 신용대출에 대한 보증을 설 것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연방예산이나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독편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는 오늘날의 그들의 결정이 대화와 협력을 심화시키고 지속시키면서 동독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결정이 양국의 동맹들의 충분한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동독은 그들이 일련의 조치들을 결정했고 거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왔습니다. 동독은 독자적인 주권을 갖고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1. 모든 연금생활자, 원호대상자, 재해연금수혜자들을 위해 최저교환액을 15마르크로 낮춘다.(1980년 10월 이후는 25마르크였다).
2. 독일연방공화국 시민과 서베를린 시민을 위해 가능한 체류기간을 1년에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한다.
3. 동독의 연금생활자들이나 원호대상자들을 위해 서독이나 서베를린

으로의 여행기회를 넓히며 단지 친척뿐만 아니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에도 여행기회를 넓힌다.

4. 서독이나 서베를린으로 여행하려는 동독의 연금생활자나 원호대상자들을 위해 가까운 체류기간을 1년에 60일까지 그베로 연장한다(종전까지는 30일이었다)
5. 동독으로부터 서독 및 서베를린으로의 여행교통에 있어 하루 체류하는데 100마르크(종전까지는 20마르크)상당의 상품을 휴대할 수 있도록 면세점을 늘린다. 이를이상 체류할 때는 4일에 200마르크이다.
6. 동독의 국경부근지역을 한번 여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갖가지 허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두배 연장한다.
7. 국경근처의 교류에 있어서 동독에서는 한번 여행하는데 3구역 이상으로 허가를 연장한다.
8. 동독의 국경근처 지역을 한번 여행하는데 있어 체류기간을 이틀로 연장한다(그 다음날까지 여행할 땐 24시간까지 연장)
9. 문학작품 및 여타 인쇄물의 휴대량을 대규모로 늘린다.
10. 레코드판의 우송량을 대규모로 늘린다.
11. 동독으로의 여행교통에 있어 자가용을 몰고 오는 사람들에게 1톤이상 탑재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동독측에서는 자신들이 내린 이러한 결정을 널리 알리고 다음 주에 효력이 발생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동독정부는 히르슈트라쎄에서 슈타겐에 이르는 국경통과지역을 서베

틀린과의 통과무역을 위해 1987년 11월 31일까지 개방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1984년 6월말에 연방정부에게 통고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넘어서 동독정부는 그들이 내륙간의 경계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려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또 철저히 불식시켜 결말을 지으려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고 또한 "오해된 시설"이 새로운 시설이나 현대적인 시설을 통해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확신을 갖고서 우리에게 알립니다.

이러한 두가지 조치 또한 제가 방금 말했던 개선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관계개선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이런 노력이 결과적으로 양국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 온다는 사실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동독이 결정한 현금의 조치들은 국경 근처의 교류 및 베를린 시민들의 교류, 방문교류를 포함한 양측으로의 여행교류를 완화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특히 동독의 현금생활자들을 위해 최저교환액을 15마르크로 경감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동독은 최소한 이런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위해 최저교환액을 다시 낮춘다는 우리의 관심에 부응했습니다. 과거의 구조로 볼 때 이것은 서베를린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동독의 국경근처 지역을 한번 여행하는데 있어서의 체류기간을 이틀로 연장하자는, 다시 말해 한번 여행에 그 다음날까지

24시간을 연장하자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동독의 국경근처의 왕래에 있어 한번 여행하는데 3구역 이상을 갈 수 있도록 허가를 연장하는 문제의 조정에서, 앞으로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간의 접촉을 연결시켜 주고 심화시켜 줄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모든 여행자들을 위해 최저교환액을 경감시키는 것이 연방정부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국경근처의 왕래나 동독으로의 일반적인 여행왕래, 또한 베를린 사람들간의 왕래나 방문자 교류에 있어서도, 그리고 동독주민의 여행가능성 및 자유이주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희망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내심을 갖고 여행교류의 완화 및 개선에 힘쓸 것이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히 여행교류에 있어서 자유이주의 숫자를 더 많이 늘린다는 것이 결국은 동독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해와도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동독국민들은 무조건 여행을 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압을 제쳐 놓고 여행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는 지금까지의 향토를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즉 양자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고 또한 현재의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 특히 양국이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동서정책에 대해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독일정책이 동시에 유럽의 평화정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입니다.

기본조약에서 목표로서 내세운 것도 양독사이에 “친밀한”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 들이고 있으며 또한 계속해서 전력을 기울여 그런 요구의 실현을 목표로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해 네달 동안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방향에서 한편의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국가의 통일에 찬성하고 이러한 역사적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들을 해야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국민들은 서로 보고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연방정부의 언론 및 정보처 공보 본, 1984년 7월 25일

-해설-

동독의 규정에 따르면 노인생활보호대상자(연금수혜자)는 남자인 경우 65세 이상, 여자의 경우는 60세 이상으로 서로 다르다. 이것을 증명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오로지 생년월일이다.

원호대상자나 재해연금수혜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병이나 재해사고로 인해 최소한 66.2%의 육체적인 상해를 당한 사람들이다. 이것의 증명을 위해서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원호청이 발급한,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집세를 받아 생활하는 다른 일군의 사람들은 동독당국으로부터 연금수혜자로 간주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나 미망인 연금, 또

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여기에 포함된다. 국경 부근 왕래의 범위내에서 동독에 이틀 동안 체류하는 여행자들은 그곳에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최저교환액도 이틀치를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비자에 대한 수수료는 15마르크에 달한다. 언제나 더 많은 활동을 하며 체류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의 신고나 하가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숙박을 하며 체류할 때에는 먼저 등기부에 등록하거나 숙박업소의 신고증에 기입해야만 한다.

91. 소련의 시각에서 본 미사일기지의 전략배치와 독일정책

최근에 서독정책에 관하여 소련언론에 실린 기사에 대해 서독의 주요 일간지들과 본의 공식소식통들은 그것이 날조된 것이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사람들은 무엇때문에 소련언론이 서독에 있어서의 군사적인 복구주의 현상(영토회복주의)에 대해 불안해하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제가 갑자기 일간지와 외교문서에 “다시 새로이” 떠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놀라와 하고 갖은 억측을 하게 되었다.

“우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보복하려는 생각은 없다”라고 최근 서독의 외상 한스 디트리히 젠서는 주장했다. “우리 민족은 역사로 부터 교훈을 얻었다”라고 또한 얘기한다. 실제로 그런 태도를 취했다면 그것은 반가운 일일 것이다. 과거의 비극적 체

협으로 부터 분별있는 결론을 도출해 낸 사회적 힘과 정치적 흐름이 서독에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서독에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과거의 경험으로 부터 아무런 교훈도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

소위 자국민들의 모임에서 1937년을 경계로 한 독일제국의 재탄생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교과서를 보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소련의 영토에 예전의 제국을 표시하는 색깔이 칠해져 있다. 실제로 지금은 이차대전의 결과를 수정하고 알타협정 및 포츠담협정을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선언하자고 의치는 호소들이 들려오는 실정이다. 서독의 정치가들로 하여금 이점에 주목하게 했을 때 그들은 거기에 의미를 들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다. 다만 사라져가고 있는 소그룹의 사람들이 벌이는 활동이 문제가 된다. 확실히, 새로이 떠오른 “백주전략”이라는 수사학적 전쟁용어를 통해 유럽의 경계가 흔들릴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렇지만 바로 다음 사실, 즉 그 백주전략의 활동이 서독의 지배층쪽에서 볼 때는 지원군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더우기 겐서장관이 말한 바,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들에 속한다고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의 말에서는 아마도 비록 뭔가 형태는 위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동일한 복구주의적인 동기의 음조가 울려나온다.

우리는 다시금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 즉 단지 위대했던 제국에 대한 향수가 울려나오는 듯한 그런 말을 통해서만 유럽의 평화가 파괴되지는 않을 것이며 현존의 유럽질서의 토대가 전복되지

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딸들이나 신호, 호소들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과 더불어 하나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며 복수주의적 범주에서 생각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뿐만 아니라 이 딸이 전적으로 구체적 행동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독일적 토대에 의해서는 평화에 어떤 위험도 올 수 없을 것이라는 연방정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방정부는 미국산 중거리 핵미사일의 유럽배치에 관한 나토협정의 장본인임이 드러났다. 본시민들이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여기서 “퍼싱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배치계획을 가장 공손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자랑한다는 것은 충분한 사실이 아니다. 나토계획의 실현과 복수주의자들의 소생 사이에 하나의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미국 미사일의 그늘 속에서 그들의 안전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들은 더욱 더 대담하게 행동할 것이다.

평판이 좋지않던 나토의 “이중결의”가 표명되자 다음과 같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있었다. 즉 미국산 미사일의 배치는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이 품고 있는 적의에 찬 계획들 앞에서 서유럽, 그 중에서도 서독의 안보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있었다. 미사일은 계속해서 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지도적 정치가들과 군부의 견해에 따르면 지금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철저히 군국주의 논리에 맞추어 서독은

그들의 동맹파트너들의 동의를 얻어 강력한 공격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핵무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내세워 세계여론을 “다시 진정시킨다” 우리가 현재의 단계에서는 그런 야망을 미리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내일, 즉 다음 단계에서도 다르지 않으리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이 무엇때문에 소련을 비롯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여론이 -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만 그런 것이다 - 현재 서독 정책의 경향에 대해 진정으로 우려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도 설명해 준다. 다른 유럽국가의 국민들도 우려할 만한 이유를 적잖이 갖고 있다. 그들은 독일군국주의 자체가 갖고있는 배반성과 잔혹성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로 불안감을 주며 군사집단의 핵대결 상황하에서 특히 위협에 처해있는 대륙에서의 전쟁광의 불씨를 일으키는데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대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도적인 서독정치가들은 본의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본질적인 변화도 없었으며 현재의 정부로선 서독이 소련이나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맺은 - 이미 언급했던 - 조약과 같은 헬싱키의결의 기본강령을 계속 지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 실제로 어떠한 소모도 꺼리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사실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조약이 세계에 서독의 자주성을 드높이고 국제연합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가능성을 그들에게 열어 주는 국제적

긴장완화에로 가는 길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단계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동독을 비준했던 정치가들의 명예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들은 편견을 없애는 한편 평화공존, 동등한 권리, 실질적인 협력의 이념에 기초한, 유망하고도 현실적인 정책중 가능하고도 유일한 길을 열기 위해 만족할 만한 건강한 인간오성을 가졌다고 얘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초위에서 서독과 다른 사회주의국가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관계가 형성된다.

1982년에 Bonn에서 기독교민주동맹(CDU)과 기독교사회주의동맹(CSU)이 집권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국가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약속이 없었다. 우리는 1984년 현재에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은 그 반대 주장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있어 왔다. 얼마 전 서독정부가 소련정부로부터 받은 협조기록에는 그들의 현재정책이 갖고 있는 위험한 방향이 언급되어 왔다.

이러한 기록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또한 2차 대전과 전쟁시대 이전의 비참한 교훈을 잊지 않고 있는 서방의 사회주의권에서 커다란 공감을 느꼈다.

콜과 쟈셔정부가 집권하게 되자 동독에 대한 “동방정책”에 있어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1982년 11월 25일 헬무트 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독은 우리가 넘겨받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믿어도 좋다” 과거에 실천했던 것들을 볼 때 이러한 설명을 “믿을 수 있다”는 점은 뒷받침되지 못한다.

예전에 독일통일사회당(SED) 중앙위원회 서기장이자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인 에리히 호네커는 계략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동서독간의 현재관계에 대한 본질을 다음과 같이 규정지었다; “물론 동독과 서독 사이에는 더욱 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우리가 여전히 포괄적인 정상화와는 현저하게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요원인은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에 있어 기본조약을 무시한 채 우리 동독주권의 결정적인 원리들을 계속해서 경시하려고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고 또 서로 다른 사회질서를 갖고 있는 두개의 서로 독립적인 주권국가의 실존으로부터 출발할 때만이 진전될 수 있습니다”

물론서 정부는 이러한 진전을 용이하게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어렵게 만들었다. 동등권과 주권의 원리가 더욱 더 무시되는 일이 빈번했다. 그 대신에 “모든 독일인”의 이름으로 “권리”를 얘기하자는 불합리한 요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우리는 동독정부가 이미 1980년에 서독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일련의 문제들을 거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본정부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동독의 시민계급을 고려한 것이다. 그 문제는 서독의 도시 잘쯔기터에 있는 관청을 철폐한 것인데 이 관청은 불법적으로 동독시민들 및 각 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던 기구였다. 또한 서독과 동독의 상주대표부를 대사관으로 바꾼 것과 국경통과규정에 관한 조약을 체

결한 문제가 있다. 거론되었던 이런 문제들은 과거에는 해결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본정부가 더욱 고집스럽게 동독의 주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팔목할 만한 것은 국경문제이다. 헬싱키에서 있었던 전유럽회담의 의결내용에 들어 있는 일련의 기록들을 보면 유럽의 전후국경의 불가침성이 확정되어있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본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형식상으로는 용인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 본에서는 양독사이의 국경을 “군사분계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오늘날까지 동독의 잘못으로 인해 엘베강을 경계로 하는 규정이 체결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상의 규정에 대한 강력한 반발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독일문제”에 대한 본정부 정치가들의 확고한 설명 속에서 하나의 특별하고도 완전히 특정한 의미를 요구하고 있다.

하나의 다른 예는 서독이 동독의 국민권과 같은 한 나라가 갖는 주권의 그런 속성을 존중하기를 완고하게 거부한다는 것이다. 서독은 국제법상의 원칙, 다시 말해 헬싱키의결의 정신과 조문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면서 더우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소위 “독일의 국민권은 하나”가 존재하며 이 권리가 동독의 시민들도 후원한다고 주장한다. 서독의 베를린상주대표부는 동독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조차 동독시민에게 “온신처”를 제공해 주려고까지 했다. 서독을 방문하는 젊은 동독시민들은 연방방어를 위한 서독당국의 소집명령에 의

해 내쫓겨진다…….

본정부는 이러한 법률위반의 입장을 완고하게 고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언제나 새롭고도, 도전적인 요구를 제기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동독의 내부문제들과 직접적으로 뒤섞인다. 1983년 5월 3일 독일통일사회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신독일(Neues Deutschland)”은 다음과 같이 썼다. “기본조약의 실체와 조문에 역행하는 조건들과 제한들을 동일한 목소리로 공식화하기 위해 조약에 충실하라고 표명하는 것은 부적합한 지시이다.”

클겐서정부 자신이 동독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토대를 설명함에 있어 어떤 주목할 만한 변화를 실행해 왔는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1983년 5월 시정연설에서 클수상은 다른 것들 중에서도 이 기본 토대를 열거하면서 서독의 일방적인 기록을 거명했다. 물론 예를 들어 1973년과 1975년의 서독연방헌법 재판소의 결정처럼 서독은 동독에 대해 어떤 법률적 힘도 갖고 있지 않다. 이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그 문구나 정신이 직접적으로 맞서고 있는 동서독간 관계의 토대에 관한 조약이 설명되고 있다.

나아가 서독과 서방열강 사이에 체결된 1945년의 소위 “독일조약”도 이 기본 토대에 속한다. 그러나 독일조약에서는 “미래의 독일국가”에 대해 일곱가지 항목에 걸쳐 하나의 사회질서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질서는 서독에 있어서의 현재의 질서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포어로 무장하는 것은 현재 유럽의 정치·사회적

양상을 바꾸겠다는 노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984년 2월 9일자 연방의회 의결을 평가해 보아도 마찬가지인데 이 연방의회 의결에서 “분단독일”에 관한 주제가 다시 새로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동독과의 조약은 이미 언급된 서독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의 지평위에 서 있다. 국가정책의 형식이 복수주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그건 어떻게 된 일인가?

서독의 지도적 정치가들 뿐만 아니라 서독의 시민적 언론들 또한 인접해 있는 동독과 선린관계를 갖기 위한 노력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콜 수상은 여러 번에 걸쳐 “공동의 이해”에 대해 얘기해 왔고 심지어 안보문제에 있어서 서독과 동독의 동반자관계에 대해서까지 얘기해 왔다.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은 미국의 “퍼싱 미사일”이 서독에 배치되었을 때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그런 동반자관계에서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미 1981년 12월에 콜 수상의 전임자인 헬무트 슈미트 수상은 동독정부로부터 “미국의 신형 핵미사일의 그늘에서는 그 속에 있는 한, 친밀한 이웃관계는 생길 수 없다”고 경고를 받았다. 또한 클젠서정부는 여러번에 걸쳐 다음과 같이 경고를 받았다. 즉, 소련, 동독을 비롯한 여타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은 그들의 안보방위를 위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본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듣지 않았다. 본정부의 정책은 계속 수행되었고, 아무런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온갖 어조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즉 미사일 장벽을 통해, 보기만 하더라도

도 관계는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관계발전을 민족주의개념으로 포함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개념이란 결국 동독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질서의 파괴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본의 정치가들이 양대 주권국가(동독과 서독)들 사이의 관계를 “내독적”인 것으로 설명할 때 이것은 단순히 용어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본정부가 “인간적인 접촉” “관계기반의 밀접한 연관”, “민족통일”의 보존,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을 옹호하는 것을 보면 본정부는 거기에 대한 후견을 강요하고 국수주의적 분위기를 가열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공화국의 국가주권과 관계가 있는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 승인을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사람들은 경제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접촉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복수주의단체의 주도적 우두머리중 한사람인 하인리히 빈델렌(Heinrich Windeln)이 이끌고 있는 내독성은 “내독관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많은 수단들이 계속해서 준비되었다. 즉, 그들은 1982년에 4억 3천 3백만 마르크, 1983년에는 4억 5천 8백만 마르크의 신용보증을 썼고 1984년에는 5억 9천 5백만 마르크의 신용보증을 설 것이다. 우리는 60년대에 바로 이 내독성의 배후에서 동독을 서독에 “합병”시킬 것을 고려한, 그 악의에 찬 “끔찍한 계획”이 수행되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오늘날 빈델렌

은 새로이 모든 사안에 대해 독일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지 잊혀진 것이 아니라고 천명한다.

서독의 정치가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한 동독의 입장을 잘 알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동독의 독일통일사회당 11차 전당대회
석상에서 호네커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독일민주공화국
은 독일문제의 보류라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전망도 없는 명제를 고
집하고 있는 서독의 반동적인 복구주의 세력들의 모든 시도를 계속
거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열려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역사는 오래 전부터 이것을 말해왔다.” 이러한 입장은 독
일통일사회당의 12차 전당대회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양독 사이에 관계는 전체적인 국제관계와 분리시켜서 고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관계를 보면 나토의 공격권이 더 넓어져
긴장완화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사회주의에 대항하
는 일종의 “십자군”으로 특징지워진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볼 때 당
시의 서독정부의 의도는 무엇보다 동독에 대해 적대적인 이 “십자
군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다.

본정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동독에 대해
적대적인 이러한 정책방향은 미국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입장
에서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측면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정부는 “독일분단 극복”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선언한다. 동시에 스
톡홀름회담에서 미국의 국무장관 술츠는 소위 1945년의 알타회담에서
비준되었던 “유럽의 분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얘기했

다. 5월에 워싱턴(Washington)에서 열린 나토회담에서 “독일통일의 회복”을 요구하는 본정부의 입장이 강화되었고, 동시에 서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동독과의 국경으로 이동배치시키는데 관한 계획이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 덧붙인다면, “십자군”의 전략에 있어 서독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위험한 장난이다! 이렇게 심술궂은 장난을 하는 이들은 다음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유럽정세의 수정을 목표로 설정했던 아데나우어의 정책이 어떻게 실패해서 종말을 맞게 되었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독일민주공화국은 35회 건국기념일에 사회주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독일통일사회당의 문서나 당의 지도층 인사들의 언급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듯이 독일의 통일은 그들의 지속적인 성과가 소련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과의 깨어질 수 없는 우호관계, 동맹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안보를 확고히 하고 긴장완화 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걸음 한걸음은 무력, 독재, 대결, 갈등의 자극, 군비경쟁, 내부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등과 같은 제국주의정책에 대해 결연히 투쟁하는 데서 성취된다”고 콘스탄틴 체르넨코(Konstantin Tschernenko)는 강조했다.

사회주의 공동체국가들은 공동의 전략을 갖고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재의 십자군 기사들의 모든 공격을 방어하고 있고 또한 자

기 국민들의 혁명적인 업적과 평화적인 노동을 확고하게 보호하고 있다.

출처 : 프라우다, 모스크바, 1984.7.27 신독일(Neues Deutschland)에서 인용, 동베를린.
1984. 7. 28 / 29

92. 동독의 시각에서의 미사일기지화와 독일정책

1984. 8. 1

9년전 오늘 헬싱키에서는 유럽의 안보와 협력에 관한 회담의 협정이 비준되었다. 이 협정에는 35개 국가의 지도적 대표들이 서명을 했고 그 중에는 미국과 캐나다도 끼어있다. 전문에서 입증되듯이 이 협정의 의미는 국민들이 진정하고도 지속적인 평화속에서 그들의 안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 부터 자유로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서로간에 보다 나은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미 그 당시에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세력들이 헬싱키협정을 실현하는데 반대하고 세계를 핵의 지옥권으로 몰아 넣는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헬싱키협정의 체결과 더불어 보다 많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위협때문에 헬싱키협정은 서로 다른 사회질서를 가진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정책에서 대결정책으로의 유일한 양자택일을 보았던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처음부터 사회주의 국가공동체의 불가분의 구성요
소로서 이러한 평화공존정책에 의존해왔다.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이
헬싱키회담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동독은 유럽에서의 조약의 실현에
동참해왔다. 모순을 지닌 채 경과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의 각 단
계에서 동독은 그들의 행동이 평화와 긴장완화에 대한 관심으로 특
징지워지며 또 그들이 안정을 가져 오는 요인으로서 유럽의 평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왔다.

그 사이에 9년이 흘렀다. 헬싱키협정은 실효를 거두어 왔다. 서로
다른 사회체제를 가진 유럽국가들 사이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관
계가 발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브뤼셀의 미사일협정
이후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 졌다. 즉, 제국주의세계, 특히 미
국의 세력들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협력의 자리에 대
결을, 긴장완화의 자리에 국제상황의 첨예화를 갖다 놓는다는 사실
이 분명해졌다. 1979년의 솔트Ⅱ 협정이 미국에 의해 승인되지 않음
으로 인해서 (1978년) 나토의 오랜 계획에서 확정된 준비확장이 각
도시들에 커다란 기상상황의 변화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 졌다. 그러는 사이에 브뤼셀협정이 이루어 졌다. 국민들의
의지를 무시한 채 전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와 서독을 포함한 나토동맹국들에 의해 시작되
었다. 이미 시작된 “동쪽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비방캠페인의 연
막뒤에서 투쟁이 시작되었는데 미행정부측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그들을 위해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조하던 군사전략상의 세력균형을

뒤집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오늘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듯이 미국은 소련이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회주의국가들은 신흥 민족주의국가나 민족해방운동에 강력한 정책을 펼 수 있으며 무력 위협을 통해 역사적 수레바퀴를 역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미국의 신형 미사일을 서유럽에 배치함으로써 2차대전이후 위기상황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보다 명확해진다.

1983년 11월 독일통일사회당 중앙위원회는 그들의 7차 회의에서 미국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함으로써 생겨난데 대한 새로운 상황설정을 했다. 독일통일사회당 중앙위원회는 소비에트연방 공산당 (KPDSU) 중앙위원회에서 나온 성명을 환영했는데 이 성명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제시되었다. 즉 사회주의 공동체국가들의 철저한 평화정책의 도움으로, 또 평화를 사랑하는 대륙의 제세력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그러나 또한 실제적인 상황의 도움으로 해서, 사려깊게 생각하는 서유럽의 정치가들은 일찌기 현대사 보다 더 긴, 거의 50여년간을 평화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 총회에서는 미사일이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으며 그래서 군사적인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이해관계에서 볼 때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소련과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정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동독 및 체코슬로바키아 당국에서는 사정거리가 보다 먼 전략전술 미사일의 배치를 위해 이

미 시작된 준비작업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대응조치는 나토국가들이 먼저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취해진 범위내에서 엄밀히 이행될 것이라는 점이 표명되었다. 이것은 다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며 군사적인 세력균형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7차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강조되었다. 즉, 긴장완화과정은 국민들의 생활에 깊고도 긍정적인 흔적을 남겼으며 국민들의 생활에 가해지는 해로움은 평화투쟁을 폭 넓게 전개하고 모든 면에서 동독을 강력하게 만듦으로써 가능한 한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장을 완화하고 군비경쟁을 줄인다는 이해에 따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사실이 표명되었다. 즉 서로 다른 사회체제를 가진 국가들 사이에, 또한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과 나토회원국들 사이에 대화가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라는 사실이 표명되었다.

독일통일사회당 중앙위원회 7차 회의에서 당서기장이자 동독의 국가원수인 에리히 호네커는 우리 공화국의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설명했다: “나토가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함으로써 변화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또 무엇에 의해 좌우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세계의 핵전쟁을 막고 군비경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이 지금에야 비로소 제대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의무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의무를 실천할 것입니다.” 에리히 호네커는 “자신들의 국민과 인류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세력들과 정치적 회담을 계속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특히 핵무기분야에서 군비경쟁을 억제하여 군비축소로 넘어가기 위한 모든 협상가능성을 이용할 것에 대해 지지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위원회 7차 회의의 이러한 노선위에서, 즉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라고 하는 노선위에 설 때 동독은 전 국민들로 부터 만장일치로 지지를 얻게될 것이고 그들의 정책을 견고하고 확실하게 계속 수행할 것이다. 우리는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제안들, 즉 프라하선언, 모스크바성명, 부다페스트 외무장관회담, 동구경제공동체(RGW COMECON)회원국들의 선언등의 제안들을 관철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들의 제안들은 현재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핵전쟁을 억제하며, 군비를 건설적으로 제한하고 경감하여 평화를 정착시키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많은 서유럽 국가들에서도 미국으로 인해 고무된 진전을 통해 책임을 의식하고 있는 서로 다른 정치진영의 정치가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들은 이미 헬싱키에서 천명했듯이 군비경쟁으로의 과정 및 대결을 억제하고 긴장완화와 평화적인 협력의 길로 되돌아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추구한다. 그 결과로써 모든 문제들이 협상의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다시 말해서 핵시대에 군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이성적 양자택일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이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는 다는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진다.

서독에 대한 동독의 정책 역시 사회주의 공동체의 공동의 평화이해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독일사회주의 국가는 그 과제를 무엇보다도 다시는 독일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는데 대해 협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동독은 이런 사실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과거로부터 언제나 계속해서 표명해 왔다. 이점에 대해 우리는 서독에 핵무기 기지가 계속해서 늘어 난다는 측면에서 유감스럽게도 서독에 대해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럼으로써 평화의 정책이 동서독간 관계의 핵심 문제이며 그들의 내외문제에 있어 양측이 독립적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제기된다.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나토 회원국들과 세계의 국민들에게 제시한 제안이 평화를 위해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강력한 무기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의 건설적인 평화계획의 실천에 적대적인 적들의 고조되고 있는 도발들로 인해 그와 같은 평화계획을 세계에 널리 선전하고, 사회주의 진영에서 발의한 내용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콘스탄틴 유스티노비치 체르넨코동지가 얘기했듯이 협상이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이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진보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려면 소련, 동독, 체코슬로바키아는 미국산 신형 중거리 핵미사일의 출현으로 인해 취해야 했던 대응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헬싱키협정의 체결 9주년 기념일에 즈음하여 우리는 또한 다음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즉, 체결

된 조약들, 서베를린에 관한 4대국협정, 특히 동독과 서독간의 기본 조약등 이러한 체결된 조약들은 언제나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성취해야만 할 것이다. 안보동반관계의 결성을 위해서 유럽의 영토상황을 승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서양 이쪽, 저쪽에 있는 특정한 제국주의 세력들이 평화공존정책에 배치되는 방해물 한다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상황은 복잡하다. 핵무기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세계의 모든 인류를 위협하고 있으며 더욱이 중요한 점은 우리 유럽대륙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평화에 대한 책임은 매우 크다.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발전에로의 방향을 바꾸어 긴장완화의 길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이나 어떠한 유일한 기회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현존하고 있는 위협이 전쟁으로써 해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인류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독일민주공화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헬싱키협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출처 : 신독일 논설 동베를린, 1984.8.1. 헬싱키협정 체결 9주년 기념일.

93. 소련의 시각에서의 군비증감 및 독일정책

1984. 8. 2

7월 27일자 프라우다지에 공개된 “미국 미사일의 그늘에서”라는 기사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여론에서 폭넓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본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심각한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수도인 본의 공식 답변에서는 그 기사에서 제기된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회적으로 얘기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서독 수상인 콜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서독의 복구주의(경향)에 반대한다는 소련의 캠페인은 오로지 서독의 국제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선전자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또한 콜 수장은 자기네 나라에서 어떠한 복수주의적인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모든 캠페인이 저를 흥분시키지는 않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헛된 것이다. 그 기사에서는 바로 복구주의현상도 문제시되었는데 이것은 확실히 중대한 문제여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적인 여론의 우려를 불러 일으켰고 더구나 중요한 점은 냉정하게 생각할 줄 아는 서독 정치권 대표들 자체에서도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소련이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대결노선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면서 유럽의 군비경쟁에 공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본의 지도자들은 독일 노동자 농민국가를 위태롭게 하기 위한 그들의 계획을 전에 없이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이때 이러한 정책에 들어 있는 복수주의적 내용은 “전체독일의 이해”를 이유로 내세워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관계에서 볼 때 에리히 호네커 동지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다시 한번 기억해 볼만 하다: “불과 얼음을 합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과 자본주의 국가인 서독이 합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서독의 외무장관 매르테스는 프라우다지 기사에 대한 자신의 코멘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모스크바는 자결권과 평화의 조건을 얻으려는 독일의 희망을 파괴하려 한다” 양독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이러한 요구가 정치적 권리를 무시하고 주권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 즉 현재 라인강가에서는 독일민주공화국에 대해 복수주의라는 무리한 요구를 실행하는 시대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무리한 요구는 그들이 공화국의 주권문제에 간섭하고 동독의 사회주의적 질서토대를 점차적으로 전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은 부분에서 동독과의 경제관계를 이용하려는 계산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경제에 중점을 두는 정책은 전후 유럽의 평화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특히 동독의 안정을 파괴하기 위해 이미 여러번 동원되었다. 오늘날에 그 구체적인 동기로서 서독의 “독일은행”과 동독의

해의무역은행 사이에, 동독에 대한 신용대출을 승인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서독의 독일신문협회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즉, 연방내각이 신용대출을 승인한 것이 일련의 정치적 요구들과 관련이 있는데, 이 정치적 요구에는 서독이나 서베를린으로 부터 들어오는 방문자의 수를 더욱 크게 늘리고 동독으로의 인쇄물의 유입을 자유화하기 위한 전제들을 만든다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서독사람들은 기꺼이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즉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목적에서 관계물 더 넓히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새로운 통로를 갖기 위한 시도라고 얘기한다. 올바른 기준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몇몇 서독의 언론매체들은 이미 언급된 신용대출의 승인과 “정치적 이익”사이의 직접적인 상호 연관관계에 대해 쓰기 시작했는데 이 정치적 이익은 동독으로서는 서독과의 경제관계 발전에 관심을 두는 한 공식적으로 치루어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본의 정치가들은 동독의 승인을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주권국가로서의 동독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지는 않는다. 동독의 요구란 동독의 국적을 인정하고 동서독 사이의 경계에 대한 국제법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상주대표부를 대사관으로 바꾸는 것, 동독의 단체들이나 시민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권리를 불법적으로 갖고 있는 소위 잘쓰기터의 중앙등록처를 철폐하는 것 등이다.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것의 없습니다.”라고 수상은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또한 “제가 국적 등의 문

제에 관해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문제들은 제게 있어선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한다.

본의 정치가들은 유럽이 새로운 군비경쟁의 단계로 들어섬으로써 생겨난 “손실”의 “경계 설정”에 대해 양득이 분명하고도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함으로써 현재 동독에 대해 압력을 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정말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논리가 아닌가! 무엇보다도 서독의 정치권은 미국이나 다른 나토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미국산 미사일을 전략배치함으로써 이러한 군비경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옮겨 놓았고,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관계 및 긴장완화 과정에 엄청난 손상을 가해 왔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손상의 경계설정”이란 구실 하에 유럽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들의 오랜 복구주의적 계획을 실현하려고 추구하고 있다.

오늘날 서독의 대중매체들은 수상 자신의 직접적인 후원을 받아 민족주의적인 민족감의 전달자가 되어 버렸다. 왜냐하면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즉 “독일이 다시 합쳐지지 않는 한 유럽은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본의 지시에 따르면 이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표어를 내세워 무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동독의 사회주의 질서 전복을 위해 전력부구하는 것이 평화로 향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국제적인 긴장완화로 향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바로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치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더우기 서독의 군비무장의 강화가 유럽에 현존하고 있는 경계선에 대한 노력과 평행하다는 조건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유럽에서 집중하고 있는 긴장상태에 대해 진심으로 우려를 나타내는 서독 내외의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본에서는 유럽에 있어 그 속에 있는 서독과 동독사이에 “냉각관계”란 없다고 주장한다. 마치 우리가 사회주의 공동체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는 미국의 “퍼싱미사일”에 대해 눈을 가릴 수 있을 것처럼! 마치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에 대한 적대적 조치가 없다는 것처럼 말이다!

프라우다지 기사에 대한 서독의 반응에서 볼 때 우리는 서독이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면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들의 희망에 대해 언급한 것을 많이 보게 된다. 그를 위해 사회주의 국가들 또한 평화적 생존의 원리에 근거를 두는 관계를 옹호한다. 그러나 동독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여 복수주의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특히 동독과의 관계를 국수주의적 토대위에 설정하려는 서독의 시도는 여기에 분명히 모순된다. 이런 종류의 정책은 서독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유럽의 평화라는 이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출처 : 프라우다, 모스크바, 1984. 8. 2, 1984. 8. 1 타스통신에서 인용

94. 동독의 시각에서 군비증감 및 독일정책

1984. 8. 2

질문: 호네커 동지, 동지 자신과 당 및 정부의 많은 관료들은 최근에 수많은 외국의 정치지도자들과 대화를 해왔습니다. 동지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대답: 공산당, 노동당, 진보당, 민족해방, 운동진영, 제3세계 민족민주주의 정당대표자들, 또한 캐나다, 스웨덴,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연방공화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인도, 시리아, 이집트, 니카라구아, 멕시코, 말타의 정부수반들, 또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의 의회대표들과의 모든 만남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들의 계획문서에 대해 해명해 왔습니다. 즉 미국이 평화를 거론하는 것은 그들의 실제 의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인데, 그 의도란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대결정책인 "십자군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서유럽의 몇몇 국가들, 그중에서도 서독에 있어서의 미사일 무기 잠재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쟁준비, 중앙 아메리카, 중동, 남아프리카에서의 그들의 중개무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다음 사실을 고려해 왔습니다. 즉 미국은 실제로는 군사적 균형과 안보균형의 원칙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

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군사적인 우위를 추구하고 무엇보다도 세계공간의 군대화 및 미사일 방어체제, 위성방어체제의 생산과 연관된 새롭고도 위험한 군비경쟁의 단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비록 소련측에서는 이미 철회할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했던 미국은 오늘날에도 그들의 군대배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공간의 군대화를 막기 위한 협상을 하자고 소련이 새로이 제안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웨덴과 그리이스의 수상들, 그리고 이탈리아의 수상 또한 그들이 동독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성명에서 확실히 이 점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국으로 하여금 소련과의 그러한 타협을 보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군사적인 무력사용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자는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 사이의 제안도 커다란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상응하여 이 문제를 비롯한 다른 문제들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은 핵위험을 막기 위한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질문: 유럽은 이러한 대결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서방측에는 이곳에서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답: 언제나 우리는 이차대전과 전후발전의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서방측의 시도, 특히 서독의 시도를 광범위하게 저지해 왔고 그들의 국수주의적 경향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과격파 및 그들의 추종자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서독의 국가적인 정치 위기상황에서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오랫동안 바로 이러한 문제에 커다란 비중을 두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차 대전 및 전후발전의 성과가 세계평화의 확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해결에 있어 결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독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투쟁은 국수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독일통일사회당은 동맹관계에 있는 정당들이나 대중단체들, 즉 이백삼십만 명의 회원을 가진 자유독일청년단(FDJ), 백사십만명의 회원을 가진 독일민주여성동맹(DFD), 동독의 평화협의회, 육백만 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독·소 우호협회, 사십사만 명의 회원을 가진 상호농민후원연합, 만칠백팔십 명의 회원을 가진 예술가동맹, 삼백사십만 명의 회원을 가진 독일체육연맹, 이십오만명의 회원을 가진 예술동맹, 영세원예업자, 이주자, 동물조련사연맹들에 의한 활발한 지지를 받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본에서 기독교민주당(CDU)과 기독교 사회주의당(CSU) 및 자유민주당(FDP)의 연합이 정부이양을 받은 직후 연방수상 콜은 첫

시정연설을 위해 “신독일지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 즉 동독과 서독간 관계의 지속을 위해서는 주권, 세력균형, 그리고 내정문제에의 불간섭과 같은 양국간 동등권에 관한 근본원칙들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서독의 언급이나 발언은 현실에 어긋나고 또 유럽의 조약들의 규정에 어긋나고 있으며 특히 동서독간 기본조약이나, 전체적으로 헬싱키협정에 어긋난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당은 1984년 2월 9일의 연방의회 의결 속에 들어있는 복수주의적인 월권조항을 분명히 거부했습니다. “신독일”지를 내면서 우리는 동독에 관련하여 긴장된 세계정세를 이용함으로써 모험적이고 복수주의적인 꿈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얼마전에 독일사회민주당 연방의회 소위원회 대리 의장인 한스 아펠은 기본조약의 체결 이후 당연히 독일에는 어떤 미해결의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나토가 미사일을 전략배치하기 시작한 이후로 동독과 서독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대답: 첨예화된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동독은 더우기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특히 양독에 있어서, 또 양독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간에 중요합니다. 또한 나토가 미사일을 전략배치하기 시작한 직후 나는 이점을 연방수상 헬무트 콜에게 분명히 강

조했습니다. 나는 바로 다가 올 시기는 유럽의 평화와 안보와 협력을 위해서, 또 양독간의 관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책임공동체” 또는 “안보동반 관계”는 미국이 서유럽에, 특히 독일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함으로써 변화된 정세를 다시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국가들간의 협력이 발전될 수 있는 유럽의 평화정세를 위해 힘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토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또 소위 서유럽에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이 배치된데 대해 소련이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첨예화되고 복잡해진 국제정세는 본질적으로 핵전쟁의 위협을 높이고 있으며 전후시대에 가장 어려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위험한 핵준비 경쟁을 새로이 야기시킬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미사일 전략배치계획이 계속 실현된다면 바로 다음과 같은 역설이 생깁니다. 즉 연방수상 콜이 “무기를 감축해서 평화를 이룩하자”는 기치아래 반복해서 서독정부의 목표로서 설명했던 것의 역설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핵무기 배치는 기본조약을 포함한 유럽의 조약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더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조약은 70년대에 좋은 의지를 갖고 많은 노력하에 만들어졌으며 서방 만큼이나 동방에게도 중요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평화정착은 핵심적인 문제에 관한 조약들에서 천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양쪽의 책임있는 정치가들이 그런 일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오랫동안 의견을 같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영토에서, 말하자면 독일연방공화국 영토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서독이나 서유럽을 위협하는 이는 없습니다. 미국의 신형 미사일을 서유럽에 전략배치하는 것은 서독과 서독국민의 안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미국의 신형 미사일 전략배치에 동의함으로써 서독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근접하여 지속되고 있는 군사전략적 세력균형은 평화의 보존을 위함에 있어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력균형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만 불안정한 발전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유럽은 "악에 대항하는 십자군"이라는 표어아래 결국 핵시대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경계를 이미 넘어서려는 정치의 불모가 되어서는 더우기 안됩니다. 책임을 자각하고 있는 정치가라면 누구든지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날 워싱턴에서 소리높여 얘기되고 있는 이런 사악하고 위협적인 말들은 전세계를 분개시켜 왔습니다. 전세계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성적으로 단결하여 지구상에서 핵전쟁을 없애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독은 재앙을 초래하는 상황의 흐름을 저지하고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독은 서독의 책임있는 정치세력들과의 대화에 커다란 의미를 두어 왔습니다. 동독은 양자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바람직한 의지를 실증해 왔으며, 또 동독이 유럽대륙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양독관계에 높은 비중을 두고 왔다는 점을 진지하게, 평화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소련, 동독을 비롯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늘 반복해서 미사일 전력배치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내가 예전에 연방수상 콜에게 설명했듯이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결론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그점에 관해 아무도 놀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정부는 유독 그들만이 갖고 있는, 군사적 우위를 목표로 하는 파괴적 태도 때문에 제네바조약의 기본토대를 거부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규정들이 가져야 할 부동의 근본원칙은 오로지 동등권과 모든 관련 국가들의 동등한 안보를 엄격히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방정부에 대해 동독은 군사전략상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필히 바르샤바조약기구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통고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필요한 대응조치는 미국과 나토가 먼저 조치함으로써

요구되는 만큼의 범위에 한정시켜 취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진 않을 것입니다. 동독은 오로지 핵무기에 의한 세계대전을 막고 군비경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귀하는 서독과 관련하여 우리가 취해 온 상황의 모순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답: 독일통일사회당 7차 중앙위원회 석상에서 독일통일사회당 베를린 지방대표회의 및 동독의 모든 독일통일사회당 지방대표회의는 다음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즉 현재의 서독정부는 서독영토에 미국의 신형 핵미사일 배치를 승인함으로써 스스로 무거운 책임과 죄과를 떠맡게 되었으며 연방정부는 이로부터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정부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평화적 관계를 위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신형 미사일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서독주민들의 근본적 여론을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평화운동은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고 그 투쟁을 계속해서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독의 모든 정치세력들과 정부는 이 평화운동을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보수파가 집권하고 있는 콜겐서 정부는 슈미트겐서 정부가 소위 나토 - 이종조약에 가입하여 지지함으로써 이미 콜·겐서

정부에 앞서 했던 것 보다 더 강력하게 미국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같은 사실은 인지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미국의 핵미사일 배치로 인해 제국주의 세력들이 발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군사적 우위의 입장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정치적으로 강요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서독 전략폭격기나 장거리 미사일의 생산제한을 지양하기 위한 서유럽연합의 결의를 이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방정부는 그들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조약정책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길 바란다는 점을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체결된 조약을 본질적으로 엄수해야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백히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들 공동의 평화정책의 실현뿐만 아니라 또한 서독의 주요 독점자본주의 세력들의 완고한 정치, 경제적 이해와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제 미사일 배치에 대한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태도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노동조합총동맹(서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 배치는 거부되어야 할 것이며,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제시한 일련의 제안들에 지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는 독일연방공화국이 미국의 핵미사일 기지가 되는데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무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과 대화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견해차이에도 불구하고

고 이성적인 공동의 입장에 이르러 미국의 대결노선에 반대할 수 있는 희망이 그 대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일 대신 일터를, 미사일은 가고 돈이여 오라!” 라는 표어아래 다른 모든 사람들과 공동으로 행동하고 있는 독일공산당의 투쟁이 우리 자신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느낍니다. 어두웠던 과거에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공산당원에 대해 서독우편당국의 편의를 받지 못하게 하고 모든 평화세력들을 위협하는 현행의 확정된 판결을 내렸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1984년 6월 1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콘스탄틴 체르넨코와 귀하와의 회담에 대한 보고서 나토의 전쟁준비강화가 서독의 극우파 국수주의자들의 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점이 표명되었습니다.

대답: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매일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독의 발전에 대한 우려도 정당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계의 양심이 깨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5천만명의 사람들이 독일 군국주의와 국수주의가 만들어 낸 희생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는 1945년에 우리가 했던 서약을 성실하게 지킬 의무가 있으며 또한 서독에는 군비경쟁을 멈추는 방향으로의 긍정적인 발전과 또한 희망있는 국제관계에 역행하는 영향력 있는 세력이 공존하고 있음을 그 어느 때라도 간과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이러한 세력들이

세계정치의 긴장상황을 국수주의적인 여론의 환기를 재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들이 탈 수 있는 일종의 상승기류로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는 “1937년을 경계로 한 독일제국의 존속”을 입증하는 것이고 소위 미해결된 독일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또한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소련 등의 주권을 희생시켜 자신을 위한 이익을 얻으려는, 전혀 비전이 없는 무기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은 주권 국가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서독의 과격파들은 언제나 계속해서 국수주의의 녹슨 트럼펫을 불어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서독이 전국될 때 이미 그 속에 들어 있던 것입니다. 서독의 전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의 히틀러 파시즘에 대한 소련의 승리의 결과 및 소련의 도움으로 인한 전후발전의 결과를 교정하기 위한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목표설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규정들, 즉 서독의 헌법, 나아가 모스크바, 바르샤바, 베를린의 조약체결에서, “독일의 통일”에 대한 서독 외무장관의 제한과 같은 여타 규정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수주의가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역사적 원인은 35년전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이 창건되었고 공화국이 소련과의 확고한 동맹 속에 노동자·농민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성공적인 발전을 했으며, 사회주의 국가공동체에 확고한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동독에 있어서 사회주의는 변경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회주

의와 자본주의가 합친다는 것은 불과 물을 합치는 것 만큼이나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독일통일사회당의 입장이며 동독정부의 입장입니다. 우리 동독의 시민들은 이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본적 신념으로 부터 동독을 강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전사회주의 공동체와 우리의 방위태세를 강력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준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현재의 위험한 정세를 전환시키고 긴장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세력들을 조직할 때 필수적으로 국수주의에 대한 투쟁이 보다 더 성공적으로 수행되라라는 사실에 대해 지난 35년간의 체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독일 민주공화국은 안정된 사회주의 국가로서, 전시대에 걸친 유럽평화의 기둥으로서 소련 및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상황을 침체화시키는데 관심있는 사람은 과격파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서독으로 하여금 그들이 사회주의 국가들과 맺은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시작된 의무를 저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쌍방관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지도자들과의 대화나 서독의 중요한 사회세력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독일사회민주당(SPD), 노동조합, 청년단체, 평화운동단체 그리고 여타 세력들과 같은 그런 중요한 사회세력

들과의 관계를 보다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여기에 기여할
것입니다.....

출처 : 독일통일사회당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의 신독일지 인터뷰, 동베를린,
1984. 8, 18/19

95. 동독국가평의회 의장의 방문연기

1984. 9. 4

연방정부는 동독의 결정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결정을 유감으로 생각했다. 연방정부는 올해 가을 다른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몇몇 정치가들이 예견한 그런 희망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연방정부로서는 동독의 방문에 대한 공개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방문이 연기되어야 할 것이라는 동독의 이유를 수긍할 수 없다.

독일연방공화국은 누구나 자유로이 자기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나라이다. 연방정부는 최근에 연기이유에 관해 반복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호네커 서기장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환영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모든 주제에 관해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방문에 걸림돌이 될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연방수상 헬무트 콜 박사는 1981년 12월 베르벨린 호수에서 거른 했던 동독국가평의회 의장이자 당총서기인 호네커의 초대를 실현시키

기로 승인하고 계속해서 이를 후원해왔다.

연방정부쪽에서 제안한 방문계획에는 연방대통령 각하의 영접을 포함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을 공식 방문하는데 있어서의 모든 제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동독이 제안하고 우리측이 받아들인 방문기간이 아주 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또 이러한 토대위에서 방문이 마찰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까지 방문준비가 이루어졌다. 공동회담에 관한 대화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중요한 어려움은 없었으며 일련의 원칙적인 공동선언이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준다.

연방정부는 동독의 결정이 양독간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양측이 바라는 대화나 평화라는 이해분야에서의 협력이 유럽과 분단독일의 국민들에게서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연방정부의 언론 - 공보청 관보에서, 연방수상청 국무장관 필립 예닝거 박사의 성명, 본, 1984. 9. 5.

서독주재 동독대사이자 상주대표부 대표인 에발트 몰트는 연방수상청 국무장관 예닝거와 회동후 화요일에 기자들 앞에서, 연방정부가 잡고 있는 동독국가평의회 의장의 방문일정은 더이상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고 얘기했다. 몰트 대사는 자신이 연방수상청에서 회담 및 다른 문제들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했다. 그는 아직 많은 문제들이 미해결인 채로 있다고 얘기했다. 그리하여 본래 파악했던 방문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양태나 여론의 대립

은 극도로 폭위를 손상시키고 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런 점에서 이 방문은 주권국가들 사이의 교류를 위해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일종의 장애요인으로 생각한다.

출처 : 신독일, 동베를린 1984. 9. 5.

96. 국민권 문제에 대해

1984. 9. 19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법상의 규정을 존중하여 적용하는 것은 국가들 사이의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관계를 위해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특히 국가의 주권, 자주, 영토불가침성을 상호 존중하고 또 다른 나라의 국내외 문제에 내정간섭을 않는다는데 있어 중요하다. 1975년 헬싱키에서 개최되어 국제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해 온 전유럽안보협력회의의 의결에서 국제법상의 주요 명제들이 중요문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10개의 원칙속에 수용되었다.

국제생활에서의 체험을 통해 우리는 다음 사실, 즉 국가들 사이의 협력은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질서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국제법의 기본규약들을 따르면 따를수록 더욱 더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의 위험한 국제정세의 철회는 무엇보다도 중무장정책이나 대결정책을 추구하는 자들이 국제법의 기본규정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세를 중무장에서 무장해제로, 대결에서 협력으로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모든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주권, 자주, 영토불가침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국내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제적인 정치적실천에 있어서는 국민권의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관계는 한 국가나 다른 국가들의 국민인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권의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규정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한 국가의 국민권은 그 국가 자신과 더불어 생겨나는 것이며 그 국가라는 존재의 양도할 수 없는 속성이다. 그것은 국가가 국경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시민들을 위해 구속력이 있는 법률을 결정하며 그 토대 위에 국경내에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모든 국가는 자기의 국민을 가지고 있다. 즉 자기 국민이 없는 국가는 국가 없는 국민권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주권국가를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국제법상의 주체로 특징짓는다는 이러한 모든 속성은 다른 모든 나라도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이며 제3세계 국가들과의 국제교류에 있어서처럼 상호간에 존중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연합현장의 첫귀절에 있는 국제법상 의무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면, 한 국가를 인정할 때나 외교관계를 수립할 때 다른 나라쪽에서 특별한 외교적 활동이나 조약상의 합의를 통해 한 국가의 국민권을 다만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법이나 국제관계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다른 한 국가가 국제법상으로 인정되든 안되든 간에, 또 그 국가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든

안팎든 간에 상관없이 그 국가의 국민권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존중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국가가 다른 한 국가를 외교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다만 이러한 정세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에 관해 중요한 국민권과 국제법 사이에는 모든 그외의 차이나 대립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통일된 견해가 있다. 그래서 서독의 프라이브르크대학 교수인 뵈켄포르데는 모든 국적을 갖는다는 것은 “특정한 국가와 분리되지 않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그 구성요소 속에 제한될 수 있다”고 확정 짓는다. 또한 “모든 국적은 이런 구체적인 국가로 부터 법률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규범적인 자기 존재를 넘어서서도 안되는 것이다. 모든 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국가가 생겨날 때, 그리고 생겨나자마자 발생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가 소멸되면 그 국적도 소멸되게 된다”고 얘기한다.

서독 연방의회 자유민주당 당의장서리인 호페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현존하는 국가가 자신의 국민을 위해 고유의 주권을 부여할 수 있고 또 부여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불림없이 실천적인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는 국제법에 따르면 다른 한 국가의 실질적 존재를 존중하는 것은 그 국경의 존중, 그 영토의 불가침성의 존중, 그 주권 및 국민권의 존중과 관계가 있다. 모든 국가들은 국제법과 조화시켜서 그 국가의 국민권의 문제, 다시

말해 국민권의 획득 및 파기의 문제에 대해 주권에 관계하여 규칙을 세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국민권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다른 나라의 국민권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국제관계의 모범적 기능화를 위해서 분명하고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남아 있다. 즉 다른 모든 국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이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며 헬싱키조약에 서명한 국가라는 사실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증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사람들은 국제법상의 기회를 무시하여 동독의 국민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독의 책임있는 정치가들이 국제적인 법률규정을 자의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국제법의 명령에, 또한 정치적 현실주의의 명령에 반항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지 못한다면 관계는 정상화될 수 없다. 물론 그런 불합리한 태도는 현실에 있어 가장 사소한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계속 존재할 것이다. 다시 말해 현실에 반하여 나타날 수 있을 모든 지나친 조심성, 자기조작적인 문서, 고루한 공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럴 것이다.

서독의 기관들이 이런 국제법에 반항하는 입장에 따라 무엇을 위해 극단적으로 호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소름끼치는 불합리한 간섭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간섭은 연방군대에 소집명령을 내리거나,

직무상 서독에 체류하고 있는 동독시민들에 대해 연방의회선거에 투표하라고 요구하는데서 부터, 동독의 국가 영토에서 죄를 짓고 그 후 서독으로 도주한 동독시민의 신병인도를 거부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을 분노시킨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서독이 한 무두장이 살인범을 마음대로 석방한 것이다. 잘쓰기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위 “중앙등록처”는 동독영토에서의 무역을 핑계로 20년이 넘도록 동독시민들을 조사하고 그와 더불어 국제법을 위반한 채 서독의 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위를 동독영토와 동독시민들에게 까지 연장하는 짓을 저질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전에 법무장관이었고 오늘날엔 서독 연방의회 독일사회민주당(SPD) 당의장인 슈무데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기본조약 6항에 따라 동독의 독립과 자주성을, 그리고 그와 더불어 동독의 국민권문제에 있어 그들의 인격적 고귀성과 그들의 조정능력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사람들은 생각해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결에 따르면 “다양하게 표출된 주장들은 그릇된 것이며 단지 독일국적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민권문제에 있어 혼자서 대표권을 가지려는 본정부의 법률 침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제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과 현정부는 국제법이나 일반적인 국가관계와는 대조적으로 “1937년을 경계로 하는 독일제국”의 존속과 “독일 국민권”의 존속이라는 허구를 고수하고 있으며 또한 서독과 “독일제

국"을 동일시 하는 신조를 고수하고 있다. 서독에서는 동독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국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한다. 서독은 입법이나 판결, 행정관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동독의 내부문제에 간섭하고 있다. 서독편에서 본다면 국민권 문제에 대해 그들의 의제인 국제법에 반항하는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 제3세계 국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서독의 많은 정치가들은 심지어 "동독시민을 위한 보호의무"라고 까지 얘기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시민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방시민을 실업으로 부터 보호하고 또 사회적 파괴행위, 범죄, 약물오용(마약)으로 부터 확실히 보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의 핵미사일 전략배치나, 서독영토에다가 시민들의 생명과 생활에 지장을 주는 미국의 유독가스 배출공장을 건설하는데서 생기는 위험 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동독과 협력하고 그들과 합리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현실의 토대위에, 조약정책의 토대위에 있어야 한다. 결정적인 것은 동독과 서독이 두개의 주권국가로서, 그들 관계의 토대에 관한 조약에서 대내외 문제에 있어서의 양국의 독립과 자주성을 존중할 의무를 가졌다는 점이다. 기본조약에 따르면 양국 중에 어느 한 국가도 다른 국가를 국제적으로 대리할 수 없으며 또한 그 국가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그들의 국내법률을 변경한다는 점을 양자관계

나 복합적인 양자의 국제관계의 전제로 삼지는 않는다. 한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그 자신의 문제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동독의 헌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관계의 실현을 방해하고 망치게 된다.

35년에 걸쳐 노동자 농민의 사회주의 독일국가가 존속해 온 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문제시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도 여전히 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가 정치적 현실에 대한 모든 감각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출처 : 신독일지에 실린 볼프강 파이켈트 박사의 머릿기사. 동베를린 1984. 9.

19

97. 경계위원회의 82, 83, 56번 의정서 각서

1984. 9. 27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선 설정을 처음으로 재검토하고, 또 이 경계영역 안에 있는 하천들의 명부를 작성하고 수리시설을 건설하는데 관한 의정서각서들이 1984년 9월 27일 드레스덴(Dresden)에서 열린 국경위원회 석상에서 비준되었는데 이 의정서각서가 국경위원회에서 인쇄되었다.

토대와 활동에 관한 기록, 내독성발행, 본, 1985.

98. 내독간의 무역 - 자동차 지사

1984. 11. 12

동독의 “파르트부르크”나 “트라반트”회사 자동차들은 가까운 장래에 폴로(Polo)나 골프(Golf) 같은 폭스바겐(VW)모델 모터를 달고 국토를 달릴 것이다.

이것은 월요일에 동베를린에서 체결된 동독과 AG폭스바겐회사 사이의 조약에서 예견할 수 있다. 이 조약은 그 공급범위 및 공정범위가 오백만 마르크에 달하며, 무엇보다도 1993년까지는 자동차공급과 제조를 위해 동독과 다른 독일연방 회사들간의 계약이 약 삼백만 마르크 정도가 더 이루어질 것이다.

AG폭스바겐회사의 대변인이 화요일에 볼프스부르크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그 조약에서 다음 사실이 예견된다. 즉 폭스바겐사가 내년에 동독에 대해 모터제조를 위한 시설 및 계획을 제공하며 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생산공정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되리라는 점이 예견된다. 이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폭스바겐에서는 폴로/더비(Polo/Derby)와 골프/예타(Golf/Jetta) 같은 생산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동전화, 디젤회전방식의 1.05ℓ모터 및 1.3ℓ모터의 제작이 증가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파르트부르크”와 “트라반트”에서 제작되고

있다고 한다. 이 두가지 모델을 2사이클 모터로 바꾸는 것이 윤택
유를 현저하게 절감시키는 시도가 될 것이다.

생산지에서 만들어진 모터들은 받침공이 같은 현대적인 통풍판기술
로써 갖추어 졌다. 삼십만대의 모터의 대량체계라는 이 생산지 용량
을 볼 때 - 아마도 1989년 부터는 - 매년 십만대의 선체모터를 볼프
스부르크에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폭스바겐사는 내
년 6월 30일까지 사천오백만 마르크에 달하는 2400대의 대형 수송
화물차를 공급할 것인데, 하노버에서의 폭스바겐사의 지원이 이를 의
미한다. 반대로 동독은 AG폭스바겐사에 대해 기계산업 및 전자산업
생산품을 공급한다. 1989년에서 1993년 사이에는 1억 마르크 상당의
더 많은 대형 수송화물차들이 공급될 것인데 이에 대해 동독은 골
프사의 선체모터를 제공함으로써 그 가액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
다.

개별적으로 볼 때 폭스바겐사와 동독간의 사업은 후속되는 거래로
부터 성립된다. 즉 그 후속거래란 대형 수송화물차 사업에 일억사천
오백만 마르크, 모터생산시설에 삼억오천만 마르크, 폭스바겐사가 직
접 조치할 수 있는 허가량에 이천오백만 마르크 등이다. 계속해서
삼억 마르크가 폭스바겐에 이익이 되는 허가 및 다른 회사의 공급
에 쓰여질 예정인데 그 소유자는 다른 회사들이고 동독과 직접 계
약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연방독일회사들의 새로운 자동차사
업은 그 거래규모가 8억 마르크에 이른다.

출처 : 한델스블라트, 뒤셀도르프, 1984.11.13

연방산업성 장관은 AG폭스바겐사와 동독의 공업시설 - 수입 해외무역기업(IAI)이 PKW모터제조를 위한 모터생산시설의 공급이나 다른 차량의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데 대해 환영한다. 반대로 AG폭스바겐사는 동독으로 부터 그들이 직접 제작한 생산품이나, 1989년에서 1993년 사이에 이 모터생산지에서 제작된 선체모터를 공급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AG폭스바겐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다.

이 계약은 1993년까지 유효하며 상호 성숙한 관계에서의 공급과 구입이 예견된다. 작년에 후퇴했던 동독에로의 투자화물 및 장비화물의 공급은 이러한 계약체결로 인해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동시에 동독은 기업들과 연방공화국의 기업들 사이의 협력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계속해서 양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출처 : -라디오 뉴스(Tagesnachrichten), 본, 1984.11.15

99. 동서정책의 긴장지역에서의 독일정책 - 연방장관 하인리히 빈델렌의 성명

저는 저의 제안이 의제로 설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제 설정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있거나 진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독일정책이 하나의 정치적인 진공상태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서관계의 긴장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언제나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정책의 가능성이나 한계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정책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연속과 한계가 절대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문제”는 절대로 독일사람들에 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주변국가들은 이미 계속해서 독일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생존의 문제에 있어 끊임없이 독일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명백한 예로서 프랑스나 폴란드를 듭니다. 우리는 주변국가들이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독일인들의 거주공간이 바로 그들이 있는 곳, 말하자면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거주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인들은 수백년 동안 하나의 통일국가에서 함께 살아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소국가에서 부분적으로는 소수의 다른 국적을 가진 국가로서 살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일의 군소국가들은 확실히 서로 다른 일련의 역사적 토대를 지녀 왔습니다. 그 토대중의 하나를 전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토대 중의 하나란 독일의 주변국가들이 그들의 이해 상황때문에 중부유럽에서의 어떤 통일된 독일국가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럼으로 해서 독일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토상으로 합치려는 그들의 노력을 오랫동안 유보해 두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독일민족이 자체적으로 통합하려는 과정은 비스마르크의 단일 민족국가에서 일시적인 성립을 보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 당시에 “소독일”의 말살이라고 비판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국가적 분열에 반해 상대적으로 하나의 결정적인 진보였습니다. 이러한 단일민족국가는 거의 30년 동안 존속했고 이것은 두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연관이 됩니다. 즉 1차대전은 그들이 원해서 일으킨 것이며 그 반대로 2차대전은 히틀러가 원해서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국가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독일의 단일민족국가는 1945년에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민족은 계속 존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독일민족은 독일영토 안에서 두개의 국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독일문제에 대한 역사의 최종답안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호네커씨는 그 반대를 바라고 싶겠지만 말이죠. 왜냐하면 물론 그는 박학다식한 맑시스트로서 다음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적유물론”의 교리에 따르면 국가들을 계속적으로 합병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며, 그러나 이미 존속하고 있는 통일국가는 분할하는 것은 영속될 수 없는 역사적 후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네커씨는 1981년 2월 15일 독일통일사회당 당원 앞에서 많은 박수를 받은 가운데, 역사적 시각에서의 “양독의 통일”에 대해 얘기했는데 물론 그가 이 통일이 공산주의의 전조하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한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것은 호네커씨가 바라는 시각이니까 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미래에 우리 헌법의 가치 표상에 일치하는 재통일된 독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신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적 유물론”으로 후퇴함이 없이 민족의 통일에 대한 많은 희망이 계속 무시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역사적 체험위에서 그 공식적인 정당성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미 언급된 호네커씨의 발언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본다면 호네커씨가 “양독의 통합”에 대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독일의 통일에 대해 얘기하려면 우리의 “국수주의”나 “합병론”에 대해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동독측에 대해 벌이고 있는 국수주의 캠페인이 얼마나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자신들의 이해에만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점이 나타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제 제안의 서두에서 철저히 의식적으로 하나의 역사적인 부설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정책이 단지 동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 유럽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확실히 오늘날에는 동서대립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동서대립은 독일의 분단에서 가장 명확하게 - 우리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게 -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러한 대립을 일단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조차도 독일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길은 없습니다.

오히려 독일문제는 서방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동방에서도 우리의

모든 이웃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이것은 독일의 통일이 우리의 이웃나라들로 부터 위협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것 - 그들의 안보, 그들의 영토존속, 그들의 독립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이해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져서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독일의 분단을 하루 아침에 극복하고자 할 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실효성있는 후원에 의지한다는 것보다도 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독자적인 힘으로는 이것을 얻을 수가 없으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정책은 동방정책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서방정책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적 이해를 우리의 서방 우방국들에게 구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것과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 우리의 서방 우방국들에게 설명해야 하며 오해를 피하고 이해를 야기시키며 우리의 후원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별있는 정책을 수행할 때만이, 다시 말해 우려에 대한 모든 원인을 피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서방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결정을 함으로써, 또 독일연방공화국이 유럽공동체(EC)나 서방안보동맹과 확고한 연대를 가짐으로써 - 또한 특히 모범적인 독일·프랑스간의 협정을 통해서 - 우리는 독일의 무분별성 및 "독일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서방 이웃나라들의 우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떤 상황하에서도 내기에 결

어져서는 안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조국에 있어서의 많은 사상적 놀음을 고려하여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이런 많은 사상적 놀음은 우리의 동맹국들의 의무를 느슨하게 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내세우게 했으며 짧게 말해서 하나의 독일적인 독자적 길을 걷게 했으며 대부분은 "독일의 자기주장"이라는 슬로건하에 여론에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 절박하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비현실적이며, 그것을 넘어서 명백히 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독일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즉 우리가 동맹파트너로서의 우리의 성실성에 의심을 불러 일으키거나 우리의 정치적 위치에 대해 불신을 조장한다면, 또한 우리가 다시 "독일의 불확실성"이라는 유형을 주문으로 불러 낸다면 우리는 우리의 우방들의 지지를 잃게 되며 더우기 중요한 것은 우리 독일 정책의 실천영역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독일의 독자적 길은 없습니다. 또한 중립으로의 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희망표상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중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중립국이 되기에 맞지 않는 면적을 갖고 있으며, 맞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독일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변방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심

장인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정확히 말해서 오늘날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총체적 현실사회주의의 양대 정치체계가 서로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독일은 축복받은 중립국으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에 대한 모든 것이 명확해 지면 명확해 질수록 더욱 좋습니다. 그런만큼 다음 사실이 명확해 져야 합니다. 즉 더우기 우리는 중립화된 독일을 만들기 위해 거기에 알맞는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 져야 합니다. 독일연방공화국 자체만 해도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중립적인 상태를 갖기에는 이미 너무 큰 영토를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양독을 합친다 하더라도 동서 사이에서 중립적인 세력으로서 유지할 수 있기에 너무 큽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독일이 중립국이 된다면 대륙의 강대국인 소련으로 하여금 자제하지 못하고 강권정책을 쓰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모스크바정부는 이렇게 중립화된 독일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자신의 영향하에 두기 위해서 모든 일을 꾀할 것입니다. 독일이 중립국이 되면 정치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소련이라는 중력에 끌려들게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진단해 보기 위해서는 지도를 한번 들여다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소련이라는 강대국과 제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강대국에 한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질서와 정치질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스스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점을 생각하는데 있어 우리는 많은 상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쪽에 있는 인접국가들이 이점에 대한 명백한 예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주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확정짓습니다. 즉, 독일이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동시에 그는 현실상실과 자만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 것인데 이 두가지 특성으로 인해 우리의 이웃나라들이 독일인을 두려워 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이유로 해서 많진 적건간에 무엇보다도 소위 평화운동의 편에서 목소리를 높일, 노골적인 독일의 중립국적 역할에 대해선 외국에서 커다란 우려를 일으켜 왔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독일의 운명 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독일의 중립국화는 유럽의 세력판도를 변화시킬 것이며 불안정한 상황을 조성하고 새로운 갈등의 위험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저는 독일의 중립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 이 중에는 극좌파의 주장자도 있고 극우파의 주장자도 있습니다만 - 이러한 점을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서방공동체 속에 분명하게 결속되는 것만이 동서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평화적인 사회질서를 손상시키지 않고 존속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가능성인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해야만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서방쪽을 지향하는 것은 지리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서방국가공동체의 가치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나 개인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자결등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이 보다 우수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과 동맹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위에서 말한 그 가치들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가치들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들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방과 결속하는 이런 확고한 요소에 의해서 만이 우리는 성공적으로 독일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통일이라는 우리의 오랜 목표를 고려할 때도 중요한 것이고,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분단의 결과를 견딜 수 있도록 하고 평화를 위해 보다 덜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일상적인 노력을 고려할 때도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의 자유를 포기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독일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있는 기대상황이 아닙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바로 자유를 상실한 상황에서 고통받을 국민을 위해서도 역시 의미있는 비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라도 독일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일의 자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결은 곧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결은 또한 통일을 위한 자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문제의 핵심은 영토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놓여 있다는 사실은 독일의 분단이

바로 유럽분단의 구성요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완전히 분명해 집니다. 유럽을 분할하고 있는 분단선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를, 자유와 부자유 사이를 가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분단선은 동과 서라는 양대 사회체제 사이를, 양대 군사동맹 사이를, 그리고 양대 세력집단 사이를 가르는 선입니다. 이 점을 주시한다면 독일정책이 독일인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걸친 동서대립의 이해노선이 독일정책에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일정책은 -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 동시에 언제나 동서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의식하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책임있고 사안에 적합한, 현실주의적인 독일정책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주의의 예로서 독일의 통일은 당장 내일이나 모레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만큼 독일의 분단은 - 유럽의 분단과 마찬가지로 - 하나의 강권정책적인 무력행사를 통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평화적인 변화의 길속에서 만이 극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발전의 영역속에서 자유의 이념이 부자유한 현실에 대항하여 확고하게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일의 통일이라는 이해관계에 있어 안으로는 모든 위협에 대항하여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고, 밖으로는 개인의 자유 및 민주주의의 자유를 위해, 또 인권과 자결을 위해 꾸준히 애써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전유럽에서 실현된다면 - 우리는 이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 유럽의 분단은 종식될 것이며 독일의 분단도 더 이상 존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보다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만 하며 또한 우리가 독일문제에 대해 환상을 덜 가질수록 우리는 오늘날에 활동하고 있는 정치가로서 우리의 과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분단이라는 조건하에서 독일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단의 결과를 견딜만 하게 하고 민족의 통일을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동독과의 관계를 호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동서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책임을 누구나가 정당하다고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좀더 접근해 볼 때 양독의 관계는 단지 양독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독간의 좁은 범위를 넘어서는 정치적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국은 양독관계를 실질적인 면에서 수행함으로써 동서관계를 위한 사항들을 조성해 내고, 그럼으로써 동서관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좋은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나쁜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내독관계가 일반적인 동서관계의 확고한 구성요소이며 그러므로 해서 일반적인 동서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기상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식이 양독관계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구실이 되어

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양독관계가 동서의 거대한 기상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양독관계는 이러한 기상상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정치적 행동에 대한 요구로서 파악해야만 합니다. 즉, 양독이 긴장완화 및 대화, 신뢰조성의 정책위에서 서로 타협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한다는 양독은 합리적인 실례를 보다 널리 보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국은 그들이 가능한 영역내에서 동서간의 기상상황을 호전시키고 그와 동시에 평화를 정착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독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또한 모든 것들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독일국민들을 비롯해서 동서관계 및 유럽의 평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독은 이러한 적극적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양독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정치·사회적 차이점이나 동맹정책상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독일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일 공동의 책임은 제가 이미 다른 맥락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런 요인들에 의해 규정되는데, 말하자면 독일의 역사에서 비롯하는 교훈에 의해 또한 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독일의 지리상의 중간적 입장에 의해, 그리고 양국이 서로 적대적인 군사동맹(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속에 각각 소속되어 있다는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런 모든 주어진

상황들로 인해 양국은 자신들이 하나의 책임공동체 속에 있음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주어진 상황들로 부터 양국이 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 동서관계를 위해 모범적인 예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요구됩니다. 또한 양국은 동서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동반관계상황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서로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폭넓은 대화를 교환하며 진밀한 접촉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그때 그때 마다의 동맹간의 의무이행을 상호 존중할 때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독관계가 이쪽편 동맹의 이해에 혹은 저쪽편 동맹의 이해에 상반될 수 있다는 의심이 생겨난다면, 그렇게 되자마자 이들의 관계는 동독에 있어서도 그렇고 서독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뢰를 조성하는 대신에 오히려 불신감을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양국이 앞서 얘기했던 그들의 적극적 역할을 특별한 역할로 오인한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불신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독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길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동서관계에 있어 어느 한쪽 독일의 특별한 역할이란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내독관계는 결국 좌초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생기는 오해 역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동독에 대한 우리관계의 전제들이나, 목표, 동기 등을 설명해야만 하며 동방측에 있어서나 서방측에 있어서나

이러한 정책을 위해 진력해야만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이웃인 동독에서도 독일이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만 독점적으로 내독 관계에 전념하기 바란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련과의 우호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소련은 내독관계의 상황조건에 있어 예나 지금이나 “사회주의 진영”의 중주국으로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독·소관계에 문제점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독관계를 위해서는 더 좋은 것입니다.

물론 동독에 대한 관계가 우리의 동구 이웃나라들과의 일반적인 관계속에 파묻혀 버려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 모든 국가들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 들이고, 그때 그때 마다의 그들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한편, 어느 한 국가와 다른 국가를 반목시켜서 어부지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와 친선의 협력을 위해 노력할 때만이, 오로지 그럴 때 만이 우리의 대독관계에 대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별한 관심사들에 대한 이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 마치 우리만이 내독관계를 위해 동구 이웃나라들과의 선린관계에 관심을 보인다는 듯한 오해를 일으키게 하고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수백년간에 걸친 공동의 체험이 이들 국가들 및 그 국민들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와같은 중부유럽의 문화권에 속한다는 것을 인

식하는 한편, 오랜 역사에 걸친 깊은 접촉관계를 뒤돌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독일인들이 전통적으로 서쪽보다는 동쪽에 그들의 시선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독일어의 광범위한 전파 및 동유럽이나 남유럽 국가들에서의 강력한 독일소수 정예주의가 그것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외관상 “철의 장막”이 유럽의 분할을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지은 것처럼 보였던 이후 중유럽의 서방측 국민들에게서는 공동소속에 대한 의식이 점점 더 희미해 졌다. 오늘날의 유럽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들 중의 대부분은 아직은 서유럽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우리의 동구 이웃나라 국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오늘날 공산주의의 지배하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현실에 대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 동구 이웃나라의 국민들이 바로 오늘날에는 전보다도 더 많이 자신들을 중유럽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독일인도 중유럽인입니다. 저는 서구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결정이 지리적 이유에서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유럽의 중간위치적 상황을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의 동구 이웃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오랜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 이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분단된 체제경계 위에 협력의 가교를 놓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분단된 체제경제 위에 협력의 가교를 놓게 된다면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특별한 가능성을 의무로서 주어진 과제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 유럽 국민들의 이해 속에 성취시켜야 할 과제로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보다 호전시킴으로써 우리는 유럽에 있어서의 동서관계의 기상상황을 호전시키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정착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기상상황의 호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무기가 실재한다고 해서 위협 받은 것이 아니라 비평화적인 상황이나 의도에 의해서, 또한 상호불신에 의해서 이거나 적대자를 만듦으로써 위협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에게 접근하고 협력을 위해 노력하며, 신뢰를 조성하고 상호간에 협의를 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공평한 이해의 균형을 신중히 고려하는 정도가 된다면 우리는 평화의 정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 물론 이것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 군비축소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보다 긴장이 완화된 기상상황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소 두 강대국이 결정적인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동서관계에 있어서 양대 동맹의 중소국가들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바로 이러한 국가들은 제한된 영역에서, 말하자면 유럽에서 진정으로 긴장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호한 자세로써 대립 대신에 공동의 이해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또 그들이 경계를 굽는 대신에 협력을 실천한다면, 또한 그들이 대화를 군사적인 문제에 한정시키지 않고 폭넓고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 대화를 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다른 나라들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를 그들은 보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소위 군비축소 및 군비조절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미리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그들은 평화보존 및 평화조성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공헌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동방정책 및 독일정책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이해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양대 진영은 서로간에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보완해 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서정책의 긴장지역 속에서 독일정책”이 바로 - 짧게 얘기하자면 - 유럽의 평화정책인 것입니다. 호네커씨가 독일영토에서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그 이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독일영토에서 평화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양쪽의 책임공동체는 이런 까다로운 과제를 실제로 증명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출처 : 내독성 언론공부, 본, 1984. 11. 15. 이날 본 - 바트 고레스베르크에서 열린 국민연합집회(eine Veranstaltung der Staatsbuergerlichen Vereinigung)에서 발표된 성명.

100. 국경근처 가성칼리 채굴에 관한 내독간의 규정

1984. 11. 13

연방경제성 장관은 내독성 장관과의 협조하에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984년 11월 13일 동베를린에서는 수년간에 걸친 협의를 한 후에,

- 산업 및 무역 신탁사무소와 동독의 무역성(MAH) 사이에 협정이 조인되고,
- 연방정부의 통고가 동독정부에 전달되고,
- 동독정부의 성명이 연방정부에 전달됨으로써,

베라에 있는 광구에서의 국경을 넘어서 가성칼리 채굴에 관한 규정이 수립되었다.

헤센과 튀링엔사이의 경계지역에 위치하면서, 전쟁종식때까지 통일되었던 베라 - 칼리 - 레비어선은 내독간의 국경에 의해 갈라진다. 이로써 광산채굴은 양측의 적당한 규정을 통해 그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산업 및 무역 신탁사무소와 동독의 무역성 사이의 협정은 베를린조약의 토대 위에서 체결되었다. 그럼으로써 서베를린은 그 규정 속에 완전히 포함되었다. 연방정부의 통고는 1984년 11월 3일 베라

의 국경지역에 있는 염갱채굴에 관한 기본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연방법률 1장 50조 1430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1984년 11월 7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국경 근처 가성칼리 채굴에 관한 협의는 1980년 5월 30일자 연방정부 성명과 동독정부 성명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 졌고 그렇기 때문에 베라의 염갱채굴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한 노력과 연관이 있다.

국경근처 가성칼리 채굴에 관한 합의는 다음 사실을 새로이 명확하게 해준다. 즉, 원칙상의 문제에 있어 계속적으로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의 이익을 위해 양독간의 협력 속에서의 발전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 준다. 연방정부는 베라지역의 시급한 주위환경문제도 가까운 장래에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산업 및 무역 신탁사무소(TSI)와 동독의 성(MAH)사이의 협정

산업 및 무역 신탁사무소

- 대표 -

베를린, 1984. 11. 13

주요부 대표

볼프강 슈테거

무역성

베를린

운터 덴 린덴가 44 - 60

〈협정 31조 / 1984〉

제목: “베라 - 칼리 - 레비어에 있어서의 국경근처 가성칼리 채굴”

친애하는 슈테거씨!

1980년 5월 30일에 발표된 독일연방공화국의 성명 및 독일민주공화국의 성명 그리고 동봉한 지도(인쇄된 것이 아님)에서, 채굴지역 A(독일연방공화국의 영역)와 채굴지역 B(독일민주공화국의 영역)로 표기된 베라 - 가성칼리 광구지대에 있어 국경을 넘어 그곳에서 암염, 감성칼리염, 마그네시아염, 붕산염, (이후로는 국경을 넘어선 가성칼리 채굴이라고 표기함) 등을 탐사·조사하고 채굴하기 위해서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에서 파견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들의 회담(1982년 6월 28일)에 관한 보고에 관련하여 또한 그것에 필요한 1982년 10월 6일자 부록들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전제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전제란,

- 독일연방공화국 영토와 독일민주공화국 영토에 있어 서로 국경을 넘어가 가성칼리를 채굴할 수 있는 지역의 확정
- 가성칼리 및 암염 채굴을 맡고 있는 AG사와 헤센지방측에서 암염, 가성칼리염, 마그네시아염, 붕산염을 탐사 및 채굴하기 위해 필요한 채굴지역 A에서의 광산채굴권을 가성칼리에 관한 인민경영기업결합(Volkseigener Betrieb Kombinat KALI)이나 쏬더스하우젠(Sondershausen)에 양도할 것
- 독일민주공화국 측에서 채굴지역 B에서의 암염, 가성칼리염, 마그네시아염, 붕산염 등의 탐사, 채굴권을 가성칼리나 소금을 채

글하는 AG사 및 카셀사쪽에 양도할 것

- 다음 사실을 위한 조건을 만들것, 즉 국경을 넘어선 가성칼리 채굴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생겨나는 채광·광산회사의 투자등에 대해 채굴지역에서 적법한 법규의 적용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통해 승인되고 엄수될 것이라는 조건을 만들것: 즉, 어떤 점들을 통해서나 하면

- ① 채굴지역 A에 있어 문제가 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법규와 채굴지역 B에 있어 문제가 되는 독일민주공화국의 법규를 철폐하고,
- ② 상대국가의 영토에서 그 지역에 중요한 규정에 상응하는 법규를 엄수하도록 그때 그때 채굴을 하는데 있어 의무화할 것,
- ③ 베라 - 가성칼리광구에 있는 양측의 지역경계선 및 광구경계선에 안보장벽을 규정할 것,
- ④ 국경을 넘어선 가성칼리 채굴지역에 있는 염갱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다른 조치들을 철폐할 것, 등입니다.

이상에서 얘기한 이런 기대들 속에서 국경을 넘어선 가성칼리 채굴에 관한 베를린협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협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① 채광을 건설하고 채굴을 해서 생산되는 암염, 가성칼리염, 마그네시아염, 봉산염등은 탐사 및 채굴을 담당한 회사나 기업에 의해 그 지역을 소유한 국가의 영토 안에서 정련될 수 있다. 암염채광

을 건설하고 암염채굴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설비, 작업기계, 운송기계, 관암거, 운반설비, 통풍시설, 원자재, 그리고 폭약과 전기를 포함한 보조수단 등, 이런 것들은 채굴을 담당하는 기업 및 공장들에 의해 국경을 넘어선 채굴지역으로 보내질 수 있고 - 이것들이 그곳에서 다 소모되지 않는다면 - 다시 자기네 나라의 영토로 되돌려 보내질 수 있다.

특별히 인가를 받거나 통고할 필요는 없다

② 채굴을 담당하는 기업이나 공장들은 각 지역에서 채광을 건설하기 위한 작업의 개시시점 및 국경을 넘어선 가성칼리 채굴의 재개시에 관해 상호간에 통고한다. 탐사/조사와 채굴이 재개된 후 그들은 매년 허락된 광구경계선으로 부터 작성된, 상대국가 채굴지역의 채광설계도를 새로운 지역에 대한 채굴지점 및 완료지점에 관한 보고와 교환한다.

③ 광산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는 베를린협정에 관한 배상 원칙이 발효될 것이다.

④ 이러한 협정을 수행하는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대리인들에 의해 규정화될 것이다.

⑤ 이 협정은 그 비준과 더불어 효력이 발생된다. 이 협정은 변경하거나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서식을 필요로 한다.

경의를 표하며

호쉬박사

독일민주공화국

무역성장관

베를린, 1984. 11. 13

산업 및 무역 신탁사무소

대표 프란츠 로쉬 박사에게 베를린 15

쿠르튀어스텐담가 32

<협정31조 / 1984>

제목: 베라 - 가성칼리 광구에서의 국경을 넘어선 가성칼리 채굴
친애하는 로쉬박사님!

1980년 5월 30일에 발표된 독일민주공화국의 성명과 독일연방공화국의 성명에서 비롯해 볼 때, 또 다음과 같은 기대 속에서, 즉 동봉한 지도에서 채굴지역 B(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와 채굴지역A(독일연방공화국의 영토)로 표기된 베라가성칼리 광구지대에서 암염, 가성칼리염, 마그네시아염, 붕산염을 탐사·조사하고 채굴(이후로는 가성칼리 채굴이라 표기)하기 위해서는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서 파견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들의 회담에 관한 보고(1982년 6월 28일)에 관련하여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록들(1982년 10월 6일)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전제들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그런데 그 전제란,

-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와 독일연방공화국의 영토에 있어서 서로 경계를 넘어가 채굴할 수 있는 지역의 확정,
- 가성칼리나 암염의 채굴을 맡고 있는 AG사와 헤센지방 측에서 암염, 가성칼리염, 마그네시아염, 붕산염등을 탐사/조사하고 채굴

하기 위해 필요한 채굴지역 A에서의 광산채굴권을 칼리에 관한 인민경영기업결합(VEB Kombinat KALI)이나 존더스하우젠에 양도할 것,

- 독일공화국 측에서 암염, 가성칼리염, 마그네시아염, 붕산염등을 탐사하고 채굴하기 위한 채굴지역 B에서 채굴권을 가성칼리나 소금을 채굴하는 AG사나 카셀사 쪽에 양도할 것
- 국경을 넘어선 가성칼리 채굴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생겨나는 채광/광산회사의 투자등에 대해 채굴을 하는 지역에서의 적법한 법규의 적용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통해 승인되고 엄수될 것이라는 조건을 만들 것.

그런데 이런 점들을 통해서 하면,

- ① 채굴지역 A에서 문제가 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법규와 채굴지역 B에서 문제가 되는 독일민주공화국의 법규를 철폐하고,
- ② 상대국가의 영토에서 그 지역에 중요한 규정에 상응하는 법규 엄수하도록 그때 그때 채굴을 하는데 있어 의무화할 것.
- ③ 베라 - 가성칼리 광구에 있는 양측의 지역경계선 및 광구경계선에 안전기둥을 규정할 것.
- ④ 국경을 넘어선 가성칼리 채굴지역에 있는 염갱에 영향을 미칠 지도 모르는 다른 조건들을 철폐할 것등이다.

이상에서 얘기한 이러한 기대들 속에서 국경을 넘어선 가성칼리 채굴에 대한 베를린협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협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① 채광을 건설하고 채굴을 위해 생산되는 암염, 가성칼리염, 마그네시아염, 붕산염등은 탐사 및 채굴을 담당한 회사나 공장에 의해 그 지역을 소유한 국가의 영토 안에서 정련될 수 있다.

채광을 건설하고 소금을 채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설비, 작업기계, 운송기계, 관암거, 운반시설, 통풍시설, 원자재 그리고 폭약과 전기를 포함한 보조수단등, 이런 것들은 채굴을 담당하는 회사나 공장들에 의해 국경을 넘어선 채굴지역으로 보내질 수 있고 - 이것들이 그곳에서 다 소모되지 않는다면 - 다시 자기네 나라의 영토로 되돌려 보내질 수 있다.

특별히 인가를 받거나 통고할 필요는 없다.

② 채굴을 담당하는 기업이나 공장들은 각 지역에서 채광을 건설하기 위한 작업의 개시시점 및 국경을 넘어선 가성칼리 채굴의 재개시에 관해 상호간에 통고한다. 탐사·조사와 채굴이 재개된 후 그들은 매년 광구경계선으로 부터 작성된, 상대국가 채굴지역의 채광설계도를 새로운 지역에 대한 채굴지점 및 완료지점에 관한 보고와 교환한다.

③ 광산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는 베를린협정에 관한 배상원칙이 발효될 것이다.

④ 이러한 협정을 수행하는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대리인들에 의해 규정화될 것이다.

⑤ 이 협정은 그 비준과 더불어 효력이 발생된다. 이 협정을 변경

하거나 보충하기 위해서는 서식을 필요로 한다.

경의를 표하며

슈테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에 경계를 넘어서는 채굴 및
라베 - 가성칼리 광구에 있어서의 채광안전 문제에 관한 독일연방공
화국 정부의 통고>

연방공화국 정부는 1980년 5월 30일에 발표된 양측의 성명과 관
련하여, 또한 위임받은 전문가들의 보고(1982년 6월 28일)나 거기에
관련된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의 추가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통
고했다. 즉 인민경영기업결합(VEB Kombinat)이 국경을 넘어서 압연,
가성칼리염, 마그네시아염, 봉산염등을 채굴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는
이 통고문에 첨부된 지도(인쇄된 것이 아닌)의 도면에서 채굴지역A
라고 규정된 지역에 있다고 통고한다.

- ① 오늘날 독일연방공화국의 법률규정에 상응하여 채굴지역A에서의
광산채굴권을 독일민주공화국의 기업에서 양도한다.
- ② a) 그때 그때의 자기측 법률을 따르는 가운데, 국경을 넘어서
채굴을 실현시키기 위해 비교할 수 있는 양국간의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규정들은 소위 광산채
굴권, 또 이러한 권리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작업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겨나는 광산회사의 건설등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 b) 이러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유효하다.

- 광산채굴권으로 부터 생기는 권리는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함에 있어 보수를 포함하는 채광건설이나 단지 염갱에만 제한되는 작업활동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거기에 한정된다.

- 채굴을 담당하는 독일민주공화국의 기업은 독일민주공화국에서 적용되는 규정을 엄수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거기에 적용되는 연방공화국의 법률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 독일민주공화국 측에서 볼때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그어진 선을 잇는 광구경계선에는

- 이미 현존하고 있는 안전기둥이 있고,

- 아직 채굴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는 두께가 100m에 달하는 안전 기둥이 있으며,

- 채굴지역A에 있어 지표로 부터 염갱에 이르는 갱구 주변에는 반경 50m의 안전기둥이 있다.

아직 채광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독일민주공화국 안에 있는 지역에서 암연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기업은,

-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그와 같이 채굴할 때 적용되는 권리를 엄수할 의무가 있으며,

- 또, 동봉한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선을 따라 광구경계선의 자국쪽에 있는 안전기둥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독일 민주공화국의 채굴담당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광산감독에 관한 규정은 채굴지A에 있어서는 그곳에서 적용되는 독일민주공화국의 규정에 따른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영토 안에서 발생하는 광산훼손에 대해서는 연방채광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경을 넘어선 채굴에 의해 생겨나는 채광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률은 1번에 적혀있는 광산채굴법으로 부터 이양되지 않을 것이다.

a)와 b)에 명시된 규정들은 "베라 국경지역에서 소금채굴에 관한 법률"(1984년 11월 3일)에 근거를 두고 있다.(BGBI. I kS.1430)

③ 채굴지역A에서는 그곳에 있는 열갱에서 만들어 질지도 모를 어떤 다른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것이다.

④ 개별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채굴하는 것은 1984년 11월 13일에 체결된 산업 및 무역 신탁사무소(TSI)와 독일민주공화국 무역당 사이의 협정에 의해 규정된다.

⑤ 국경을 넘어선 암염, 가성칼리염, 마그네시아염, 봉산염등의 채굴이 법률화되지 않은 재산문제와 관계가 있는 한 이것들은 상이한 법률적 입장들로 인해 언급되지 않고 있다.

⑥ 독일연방공화국의 기업들은 채광상의 안전을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

a) 채굴지역A와 B에 관해 4번에서 거론된 협정에서 고려되는 채광계획은 동봉한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된 선을 따라 500m에 이르는 이 지역중의 한 지역으로 교체된다.

b)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로 부터 파견된 대표자와의 협조 속에서 폭파시기 및 폭파경고시설에 관한 원칙에 맞는, 지면 아래에서의 폭

파관리를 위한 협정이 체결된다. (본, 1984. 11. 13)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사이의 경계를 넘어선 가성칼리 채굴과 베타 - 가성칼리 광구에 있어서의 채광안전문제에 관한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의 통고〉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1980년 4월 30일에 발표된 양측의 성명과, 또한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서 파견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의 회담상황에 관한 보고(1982년 7월 28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추가보고(1982년 10월 6일)등을 참고로 인용한다. 이것들에 따르면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의 국경을 넘어선, 베타 - 가성칼리 광구에서의 가성칼리 채굴은 채광기술에 있어서나 경제적으로나 유익하며 채굴이 이루어 지는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률규정을 쫓아야만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① 국경을 넘어선 가성칼리 채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독일민주공화국 영토안에 있는 지역에서 압연, 가성칼리염, 마그네시아염, 봉산염등을 갱내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탐사 및 채굴을 담당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기업에게 시간상으로 무제한 양도될 것이다. 해당 지역들은 이 성명에 포함된 계획(인쇄된 것이 아닌)에서 지도에 맞추어 구두점으로 확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1969년 4월 12일에 확정된 독일민주공화국 채광법 33항 2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독일민주공화국 법률공보 1부 1969 s.

29)

② 확정된 지역에서 압염, 가성칼리염, 마그네시아염, 봉산염등을 탐사하고 채굴하기 위한 갱작업에 대해서는, 또 채굴된 압염을 독일연방공화국 영토로 운반하는데 대해서는 그리고 이런 작업들과 관련한 지표 아래에서의 광산감독과 같은 작업이나 규정에 대해서는 이것과 관련이 있는 독일민주공화국의 법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민주공화국 영토 안에서 발생하는 광산훼손에 대해서는 독일민주공화국의 법률규정이 적용된다.

③ 1번과 2번에 있는 규정들은 다음 사실들을 전제로 한다 :

- 탐사 및 채굴은 독일연방공화국 영토에서 케는 채광에 대해 이루어 지는데 그 점에 있어 독일민주공화국 영토에서의 보령을 포함한 채광은 다만 열갱에서만 건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탐사와 채굴을 담당하는 독일연방공화국측 기업은 독일민주공화국에서 적용되지 않는 법률규정을 유추하여, 독일민주공화국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규정들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

-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로 나있는 지역경계에는 탐사와 채굴을 담당하는 독일연방공화국측 기업들에 의해 넓이 100m의 안전기둥이 설치될 것이고, 또한 작은 호수 1번의 심부천공 주위에는 반경 50m의 안전기둥이 설치될 것이다.

④ 국경을 넘어선 채굴에 의해 생기는 채광을 추가적으로 이용하

기 위한 권리는 채굴을 담당하는 기업에게 양도되지 않는다.

⑤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있는 염갱에 영향을 미칠 지도 모를 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이다.

⑥ 독일민주공화국측에서는 다음 사실을 보증한다. 즉 독일연방공화국의 영토에 있는 규정된 지역에서 암염, 가성칼리염 마그네시아염, 붕산염등을 탐사하고 채굴하기 위한 갱내작업과 지표아래에서의 채광감독은 여기에 관련된 독일민주공화국의 법률규정에 따라 수행 될 것이라는 점을 보증한다

⑦ 2지역에서 암염, 가성칼리염, 마그네시아염, 붕산염등을 개별적으로 탐사하고 채굴하기 위해서는 이 성명의 기획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1984년 11월 13일에 체결된 독일민주공화국의 무역성과 독일연방공화국의 산업 및 무역 신탁사무소(TSI) 사이의 협정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⑧ 국경을 넘어선 암염, 가성칼리염, 마그네시아염, 붕산염등의 채굴이 법률화되지 않은 재산문제와 관련이 있는 한, 이 문제들은 상이한 법률적 입장들로 인해 언급되지 않고 있다.

⑨ 독일민주공화국 지역에는 그 계획에 명시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표기된 지대를 따라 187번과 336번 경계점 사이에 현존하는 안전기둥이 세워져 있으며 국경을 넘어선 채굴지역을 포함하여 앞으로 도 계속 채굴될 지역에는 넓이 100m의 안전기둥이 설치될 것이다.

⑩ 독일민주공화국은 1982년 6월 28일에 결정된 기본원칙에 관한

보고에 따라 폭파시기 및 폭파경고계획을 고려함으로써, 폭파작업을 지역경계에 따라 500m안에서 할 것을 규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은 이 광산에 있어 압연, 가성칼리염, 마그네시아염, 봉산염등을, 국경을 넘어서 탐사하고 채굴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인민경영기업결합(VEB Kombinat)의 “맑스 - 엥겔스(Marx-Eagels)”광산에 적용된다. 베를린, 1984. 11. 13

〈성명 및 통고틀 교환하는데 있어서의 성명〉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의 성명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사이의 국경지역인 베타의 가성칼리 광구에서의 국경을 넘어서서 미가공 가성칼리염 채굴에 관한 협정이 방금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 협정은 양국간의 관계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의 협정은 양국에서 이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측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가성칼리염은 독일민주공화국이나 독일연방공화국에 절대적인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광산기술면에서도 유용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로서는 이 협정이 체결되는데 공헌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양국의 협상대표단에 감사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국경을 넘어서서 가성칼리 채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베타의 가성칼리 탈수량 및 소금적재량을 축소하고 낮추는 것을 규정화하는데 관한 우리의 관심과 준비상황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양국이 상호이익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문제에 접근하고 성공적으로 이해조정에 도달한다면 여기에서도 하나의 규정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기여할 의지가 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성명〉

연방정부는 베타 - 가성칼리 광구에서의 국경을 넘어선 가성칼리 채굴에 관해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이 체결한 오늘의 협정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협정은 양국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협정은 실질적인 문제의 점진적 해결을 통해 양국 사이에 선린관계를 수립한다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의 표명인 것입니다.

가성칼리 채굴에 관한 협정은 베가·베저 열강화문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안에 속하는데, 1980년 4월 30일에 발표된 성명에 기초하여 공동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베타·베저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전문가들의 사전작업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해결가능성이 논의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이런 절박한 주위환경문제를 위해서도 가까운 장래에 효과적인 해결에 관한 협의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합니다.

출처 : 연방정부의 언론 및 공보청 공보, 본, 1984. 11. 14

101. 베를린의 교량복구

1984. 11. 20

1984년 11월 20일 오늘, 동독에 속하는 글리에니커(Glienicker) 다리 일부를 복구하는데 관해 베를린 시당국과 동독정부간의 회담이 종결되었습니다. 1984년 10월 26일 이후로 연합국들의 기대 속에서 열린 이 회담의 성과로서 동독은 1985년 4월 1일부터 1985년 11월 20일 까지의 시기에 포츠담지역에 있는 그 교량의 절반가량에 대한 기초 수리공사를 할 것입니다. 전체 공사기간 동안 다리 위를 통과하는 왕래는 -역시 제한된 범위에서-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베를린 시당국은 이미 이 기초공사에 필요한 이백만 마르크의 비용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비용을 떠맡는 것은 베를린과 포츠담 사이에 놓인 이 극히 짧은 연결 다리가 다시금 베를린 사람들과 포츠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서 현재의 이 "통일의 다리" 위를 지나다니는 왕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긴 것입니다.

출처 : 베를린지방 언론 및 공보청의 기자회견 1984. 11. 20.

102. 동독의 통행규정

1985. 1. 8.

독일민주공화국 영토를 통한 통행교통에 있어 교통로의 이용에 관한 규정. 통행규정 1985. 1. 8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를 통한 통행교통을 마찰없이 안전하게 실현시키기 위해 해당 중앙국가기구 대표와의 협의 속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규정된다:

§1

- (1) 독일민주공화국을 통한 통행교통에 있어서는(이후로는 통행이라고 부른다) 통행이 허용된 국경통과지점을 이용할 수 있다.
- (2) 통행은 단지 한 국가나 서베를린으로 부터 독일민주공화국 영토를 통해 다른 국가로 가는 경우나, 한 국가로 부터 서베를린으로 가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2

- (1) 시가교통에 있어서의 통행은 가장 짧은 통행지역을 이용함으로써, 다음의 부칙에서의 그 규정에 제시된 도로에 대해 이루어진다.
- (2) 서독과 서베를린간 시가교통에 있어서의 통행은 오로지 2항에서 규정된 도로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3

철도교통에 있어서의 통행은 가장 짧은 통행지역을 이용할 수 있

다. 독일민주공화국의 공항으로 부터 나오거나 또 그리로 갈 때는 그때 그때 공항근처에 있는 장거리 철도역을 이용할 수 있다.

24

통행교통을 위해 내륙수로를 이용할 때에는 거기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게 된다.

25

통행에 있어 선박의 왕래는 다만 독일민주공화국 측 해당기관의 승인에 따라 허용된다.

26

이 규정은 국가들간의 협정에서 결정된 통행규정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27

(1) 이 규정은 1985년 2월 15일자로 효력이 발생된다.

(2) 동시에 다음의 규정들은 무효가 된다:

- a) 통과여행교통에 있어 통행로의 이용에 관한 1966년 12월 16일자 규정 (GBI II Nr. 156 s.1217).
- b) 통과여행교통에 있어 통행로의 이용에 관한 1968년 3월 22일자 2번 규정 (GBI II Nr. 33 s.197).
- c) 통과여행교통에 있어 통행로의 이용에 관한 1970년 3월 9일자 3번 규정 (GBI II Nr. 24 s.179).
- d) 통과여행교통에 있어 통행로의 이용에 관한 1971년 9월 23일자 4번 규정 (GBI II Nr. 68 s.587).

- e) 통과여행교통에 있어 통행로의 이용에 관한 1972년 7월 14일자 5번 규정 (GBI II Nr. 46 s.535).
- f) 통과여행교통에 있어 통행로의 이용에 관한 1972년 10월 17일자 6번 규정 (GBI II Nr. 61 s.659).
- g) 통과여행교통에 있어 통행로의 이용에 관한 1974년 6월 18일자 7번 규정 (GBI I Nr. 33 s.324).
- h) 통과여행교통에 있어 통행로의 이용에 관한 1974년 7월 24일자 8번 규정 (GBI I Nr. 39 s.366).
- i) 통과여행교통에 있어 통행로의 이용에 관한 1976년 11월 25일자 9번 규정 (GBI I Nr. 45 s.517).
- j) 통과여행교통에 있어 통행로의 이용에 관한 1978년 6월 9일자 10번 규정 (GBI I Nr. 18 s.224).
- k) 통과여행교통에 있어 통행로의 이용에 관한 1979년 3월 22일자 11번 규정 (GBI I Nr. 8 s.74).
- l) 통과여행교통에 있어 통행로의 이용에 관한 1981년 6월 24일자 12번 규정 (GBI I Nr. 21 s.271).
- m) 통과여행교통에 있어 통행로의 이용에 관한 1982년 11월 19일자 13번 규정 (GBI I Nr. 38 s.619).
- n) 통과여행교통에 있어 통행로의 이용에 관한 1984년 6월 29일자 14번 규정 (GBI I Nr. 21 s.271).

베를린, 1985년 1월 8일

내무성 장관겸 독일 인민경찰국장

덕켈

<부칙 1>

기존의 규정

‘통행이 허용된 도로’

1. 베를린 - 판코프(Berlin-Pankow)간 고속도로 운송, 그리고 프렌즈라우(Prenzlau)분기점과 프랑크푸르트·오더(Frankfurt / Oder)분기점 사이, 또한 서베를린으로부터 오고 또 그리로 가는 통행에 있어 고속도로 접속지점인 나우엔(Nauen)과 마그데부르크(Magdeburg)사이의 베를린고속도로 순환선, 이런 것들을 제외한 모든 고속도로

2. 장거리 수송도로

1) F5 슈타켈의 국경통과지점으로 부터 고속도로 - 접속지점인 나우엔까지,

프리찌어(Pritzler)에 있는 고속도로 접속지점인 하게노프(Hagenow)의 국도교차점에서부터 보이젠부르크(Boizenburg)를 지나 호르스트(Horst)의 국경통과지점 까지

2) F6 바우젠(Bautzen)의 F156으로 부터 로바우(Loebau)를 지나 괴리츠(Goerlitz)의 국경통과지점 까지 쾨너른(Koennern)의 F71로 부터 할레(Halle)의 F100까지

3) F71 마그데부르크(Magdeburg)의 F189로 부터 베른부르크(Bernburg)를 지나 쾨너른의 F6까지

4) F92 쉰베르크(Schoenberg)국경통과지점으로 부터 일수니츠(Oelsnitz)와 플라우엔(Plauen)을 지나 플라우엔 북부의

F282까지

- 5) F96 비르켄베르더(Birkenwerder) 고속도로 - 접속지점으로 부터 노이스트렐리츠(Neustrelitz), 노이브란덴부르크(Neubrandenburg), 그라이프스왈트(Greifswald), 슈트랄준트(Stralsund)를 지나 자쓰니츠(Sabnitz)의 국경통과지점 까지
- 6) F100 할레(Halle)의 F6으로 부터 할레, 파이센(Peissen)의 고속도로 - 접속지점 까지
- 7) F103 라게(Laage)의 F6에서 뉘머스토르프(Dummerstorf)의 고속도로 - 접속지점까지
로스톡(Rostock)의 F105에서 로스토크 - 바르네뉘데(Warnemuende)구간의 국경통과 지점까지
- 8) F104 볼데크(Woldegk)의 F198으로 부터 노이브란덴부르크와 말킨(Malchin)을 지나 테테로프(Teterow)의 F108까지
젤름스도르프(Selmsdorf)의 F105으로 부터 젤름스도르프의 국경통과지점까지
- 9) F105 슈트랄준트(Stralsund)의 F96으로 부터 로스톡, 바트(Bad), 도버란(Doberan), 비스마르(Wismar), 그레베스뮐렌(Grevesmuehlen)을 지나 젤름스도르프의 F104까지
- 10) F108 테테로프의 F104으로부터 라게의 F103까지
- 11) F109 프란츠라우에 있는 F109
- 12) F156 바우첸(Bautzen) 동쪽의 고속도로 접속지점으로 부터 바우첸의 F6까지

- 13) F169 고트부스(Gottbus) 서쪽 고속도로 접속지점으로 부터 쾨프텐베르크(Senftenberg)를 지나 루란트(Ruhrland)의 고속도로 접속지점까지
- 14) F170 드레스덴(Dresden) 북쪽 고속도로 접속지점으로 부터 드레스덴, 딥폴디스발데(Dippoldiswalde), 알텐베르크(Altenberg)를 지나 친바트(Zinnwald)의 국경통과지점 까지
- 15) F172 드레스덴의 F170으로 부터 프르나를 지나 쉬밀카(Schmilka)의 국경통과지점 까지
- 16) F189 마그데부르크(Magdeburg)의 고속도로 - 접속지점으로 부터 마그데부르크의 F71까지
- 17) F198 프렌츠라우의 고속도로 접속지점으로 부터 프렌츠라우를 지나 블데크의 F104까지
- 18) F282 플라우엔 북쪽 F92으로 부터 슬라이쯔(Schleiz)의 고속도로 접속지점까지

3. 왕래가 허용된 공항들

- 1) 베를린 - 쇠네펠트(schoenefeld)공항
 - a) 쇠네펠트의 교차점 - 쇠네펠트 고속도로 운송로 - 쇠네펠트 고속도로 - 베를린 - 쇠네펠트간 국경통과지점 공항
 - b) 쇠네펠트의 국경통과지점 루도버(Rudower) 국도 - 왈터스도르프(Waltersdorf) 국도 - 본스 도르프(Bahnsdorf)국도 - 베를린 - 쇠네펠트 국경통과지점 공항

2) 드레스덴 - 클로체(Klotzsche)공항

드레스덴 북쪽 고속도로 접속지점 - 드레스덴지역(헬레라우(Hellerau), 클로체) - 드레스덴 - 클로체 국경통과지점 공항

3) 에어푸르트공항

드레스덴 고속도로 - 아이제나흐(Eisenach) - 에어푸르트 서쪽 고속도로 접속지점 - 에어푸르트의 4번 장거리 수송도로 - 에어푸르트의 국경통과지점 공항

4) 라이프찌히(Leipzig) - 슈코이디츠(Schkeuditz) 공항

드레스덴 고속도로 - 할레 - 슈코이디츠 고속도로 접속지점 - 공항으로 향하는 국도 - 라이프찌히 - 슈코이디츠 국경통과지점 공항

4. 그밖의 도로들

독일민주공화국을 통하는 통행에 있어서는 다른 도로들, 즉 도로표지판(도로교통법 부칙2(2항) 321면(절))에 명시된 도로들이나 그 도로의 일부가 허용된다.

<부칙 2>

기존의 규정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 사이에 통행이 확정된 도로

1. 히르쉬베르크에서 드레뷔츠까지 또는 드레뷔츠에서 히르쉬베르크까지 히르쉬베르크의 국경통과 지점으로 부터 히르쉬베르크 - 베를린간 고속도로 순환선을 따라 헬름스도르프 교차점과 슈코이디츠 교차점을 지나 베를린 고속도로 순환선의 라이프찌히 접속지점까지

계속해서 드레뷔츠의 고속운송도로를 따라 드레뷔츠의 국경통과지점

까지

2. 콰르타에서 드레뷔츠까지 또는 드레뷔츠에서 콰르타까지
콰르타의 국경통과지점으로 부터 드레스덴 - 아이제나호간 고속도로
를 따라 헬름스도르프 교차점까지

계속해서 1번에서와 같이 드레뷔츠의 국경통과지점까지

3. 마리엔보른에서 드레뷔츠까지 또는 드레뷔츠에서 마리엔보른까지
마리엔보른의 국경통과지점으로 부터 베를린 고속도로 순환선 - 마
리엔보른간을 지나 베를린 고속도로 순환선, 마그데부르크 접속지점까
지

계속해서 베를린 고속도로 순환선을 따라 동쪽방향으로 라이프찌히
접속지점까지

계속해서 1번에서와 같이 드레뷔츠의 국경통과지점까지

4. 차렌틴에서 슈타겐까지 또는 슈타겐에서 차렌틴까지
차렌틴의 국경통과지점으로 부터 뷔트스톡 - 차렌틴간 고속도로를
지나 뷔트스톡 접속지점까지

계속해서 로스토크까지의 베를린 고속도로 순환선을 따라 베를린
고속도로 순환선, 로스토크 접속지점까지

계속해서 베를린 고속도로 순환선을 따라 남쪽방향으로 나우엔의
고속도로 - 접속지점까지

계속해서 5번 장거리 수송도로를 따라 동쪽 방향으로 슈타겐의
국경통과지점까지

출처 : GBI 동독 I, 1985년 1월 30일, S. 11.

103. 베를린의 쓰레기 처리

1985. 1. 10

1974년 12월, 독일민주공화국과 서베를린은 일년여의 협의 끝에 20여년간에 걸쳐 유효하도록 체결된 “폐기물처리 협정”의 개정에 합의하였다. 독일민주공화국과 서베를린 회사간의 협정내용은 1975년 1월부터 1984년 12월 31일 사이에 18,000,000㎡의 흙더미와 33,000,000㎡의 건축공사쓰레기, 35,000,000톤의 신개발 주택지의 쓰레기(가정의 쓰레기 산업의 특수 쓰레기와 파손된 모든 종류의 쓰레기)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고 서베를린에서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보낸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지난 10여년 동안에 서베를린이 협정된 양의 공급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계약에서는, 협정된 양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급이 행해질 경우 - 이 경우 각 쓰레기 종류는 조정될 수 있었다 - 에는 독일민주공화국에 대한 계약의 본이행을 이유로 추가지불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서베를린의 계산에 따르면 이 계약이 1994년까지 변함없이 유효할 시에는 독일연방공화국이 독일민주공화국에 수백 만 마르크를 지불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1985년부터 1994년까지 기간동안에는 24,800,000톤의 신개발 주택지 쓰레기의 - 매년 2,480,000톤씩 - 독일민주공화국으로의 공급이 예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서베를린의 쓰레기 양이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서 베를린은 위의 양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양만을 독일민주공화국에 공급하였다. 베를린의 시

당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의 위탁으로 협상을 벌이는 회사들은 - 시당국 소유의 "Berlim Consult GmbH" 와 동베를린의 "Intrac-GesellschaftmbH" - 동베를린에서 목요일에 서명된 합의에서 1985년부터 1944년까지 매년, 처음 합의된 양의 특수 쓰레기를 포함한 신개 발주택지 쓰레기 1/3가량만을 다시 말해 매년 평균적으로 8,000,000 톤을 독일민주공화국에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10년동안의 흙더미양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반면, 건축공사 쓰레기의 합의된 양은 매년 2,000,000m³로 변함이 없다. 그러나 서베를린 흙더미의 독일민주공화국으로의 인도가능성은 앞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출처 : 1985년 1월 12일자 프랑크푸르트 알제마이네짜이둥)

104. 독일민주공화국의 관점에서 본 국민권의 문제

1985. 1. 30

- "신독일"의 사실 -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방정부측에게 상세한 것을 여기에서 언급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 특히 누군가가 국제법과 대치될 때 - 독일민주공화국이 국민권 존중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당연히 밝혀야만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의 생성과 시민권의 대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와 동시에 개개인이 어떤 국민성을 지니고 있는 지를 고려할 때

이것은 일종의 특이한 질문이라 독일연방공화국을 제외하고는 어느나라도 동독과의 관계 발전에 관련하여 시민권의 문제에 있어서 국제법의 결과인 이러한 사실을 문제삼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의 연방수상 크라이스키는 언젠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언급했다. “오스트리아는 아마도 독일민주공화국이 국민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기본조약을 체결할 때 이런 단순한 진리에 대한 어떤 합의점도 찾을 수 없다. 이는 독일연방공화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도 지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민권을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연방공화국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독일민주공화국 국민권을 인정하며 그 국민권을 무조건 존중해야만 하는 의무에서 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기본조약에 서명한지도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수백만의 독일민주공화국의 방문객들은 독일민주공화국 뿐만아니라 독일민주공화국국민도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다. 게다가 2명의 연방수상과 독일연방공화국의 지도적 인물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시민에게 인사말을 할 때 독일민주공화국의 존재와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의 존재를 종종 고려하였다. 이제 연방정부는 전 독일인에 대한 소위 위탁감독의 의무로 부터 작별을 고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데 기여하게 될지도 모른다.

1. 다른 국가의 국민권을 존중하는 의무는 국제법의 일반규정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국제법의 일반규정에 따르면 국민의 수입, 소유 혹은 손실의 조건 등등을 그 국가내의 입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개개국가의 주권의 일부이다

국제연합헌장과 1979년 10월 24일의 원칙선언에 포함된 주권의 동등성 원칙 및 내부문제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는 이런 규정에 있어 여타 국가들과 국제조직에 의해 인정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존중의 개념은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로부터 그 자체로서 보여지고 다루어져야만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16조, 1절, 이것과 관련된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 대한 권리의 주장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2. 독일연방공화국과의 관계하에서 독일민주공화국 국민권 존중의 문제는 다음 원칙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어떤 국가의 개인적 주권의 실행은 그 국가 고유의 국민에게 제한된다. 이것을 근거로 할 때 국가는 보호법(저작권, 특허권, 상표권)과 그것에 상응하는 보호의 의무를 오직 그 국가 고유의 국민을 위해서도 유효하게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므로 독일연방공화국은 다음의 의무를 지고 있다.

- 독일을 연고로 하는 자로서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의 권리 주장을 포기할 것.
- 독일민주공화국민을 위한 개인기록문서의 발행 및 취소를 중단

할 것

- 독일민주공화국민을 위한 보호법의 찬탈과 집행을 중지할 것
- 조국 독일민주공화국에 대한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의 충성의 의무를 존중할 것

타 국가 국민에 관련한 어떤 국가의 입법과 재판 행정실무도 국제법과의 조화내에서만 실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일연방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독일민주공화국국민에 대한 사법통치권에 있어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을 중단할 것
- 독일민주공화국, 즉 독일민주공화국의 법과 그 국민에 위배되는 범죄를 행한 독일민주공화국국민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독일민주공화국의 담당기관의 책임하에 두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 독일민주공화국의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유로 해서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 대해 조사를 하지 말 것이며, 동시에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민에 대해, 또한 독일민주공화국의 관할지역에 대해 독일연방공화국자체의 처벌가능성을 신장시키지 말 것
- 친족법과 민법상의 관계에 대한 판단 시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민권을 적용법규의 규정을 위한 결합점으로 간주할 것

국가는 시민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그 법규틀(Rechtsordnung) 국제법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야만 하고 국제관계에서 타국가의 국민주권의 침해는 삼가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독일연방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고 있다.

- 독일민주공화국 국민권의 존중의 문제와 대립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파기할 것
- 국민권의 문제에 있어서 국제법에 위반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독일민주공화국에 대한 간섭을 압력을 가하여 제3제국으로 하여금 동조하도록 하지 말 것
- 향후의 규범적인 규정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의 영토를 벗어난 내국개념을 포기할 것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의 경시에 대한 예중>

- 독일연방공화국의 국적소유자로서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 대한 권리주장 -
1. 독일연방공화국의 입법 제116항, 1절 및 1913년 7월 22일의 제국 국적법과 국적법에 따르면 독일민주공화국의 전국민 역시 “독일국적자”로서 간주된다.
 2. 1975년 9월 1일의 연방선거법에 따르면 입법 제116항, 1절에 의거하여 전 독일인은 선거의 권리가 있다.
 - 1983년 3월 6일의 연방선거 때 직무상 독일연방공화국에 살고 있는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게 제44차 선거의 통지가 발송되었다.
 - 뒤셀도르프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일하고 있는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게 선거통지를 보냈다.
 3. 1978년 6월 21일의 유럽선거법(유럽공동체)에 따르면 독일연방공화

국대사관으로 부터 EG국가내에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이 명백히 포함 된 선거권이 공시되어 있다.

4. 1977년 11월 7일의 병역의무법의 개정 : 이 법의 1절 첫 줄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기본법에 의거하여.....전독일일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은 병역의 의무에 관한 그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받았다.

5.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자녀가 있는 독일민주공화국 국민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에 따라 학교의 의사에게 검진할 것을 권유받는다.

6. 직무상 잠정적으로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일하고 있는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을 독일연방공화국의 납세의무에 따르도록 하려는 시도가 있다.

예 : 1983년의 소득세를 신고할 것에 대해 남뉘셀도르프 세무서는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게 권유하고 있다.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을 위한 개인기록문서의 발행과 취소>

1. 1975년 4월 16일의 “국적문서에 대한 일반관리규정”에 따르면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은 독일연방공화국의 국적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다.

2. 독일연방공화국 당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기업의 해외출장소를 통한 독일민주공화국신분증명서의 취소와 독일연방공화국 국민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의 개인기록문서의 교부(이런 실무에 참여했던 독일연방공

화국의 대사관들은 USSR, CSSR, VRP, VRB, SRR, SERJ, 터어키,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콜롬비아, 파키스탄 미국, 캐나다, 요르단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제 독일민주공화국 신분증명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신분증명당국과 주민등록과에 의해 변경되고 무효화되거나 취소된다 :

- 독일연방공화국 당국은 독일연방공화국에 잠정적으로 체류하는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게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 의해 임시 여행증명서가 사용되는 동안은 이들의 개인기록문서를 보관한다.
-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은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독일연방공화국은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의 신분증명기록 문서에 기입하고 그 기록문서를 무효화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예 : 시읍면행정청(타우프키르헤)의 시행정청, 가일도르프, 연합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과 남부의 파인슈트라세, 루르근교 몰하임의 시행정청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신분증명서에 스탬프를 찍거나 구멍을 뚫어 무효로 만든다. 함부르크 지방청의 엘름스뤼텔은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게 신분증명서를 교부받도록 권유한다. 비록 이들이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독일민주공화국의 상주대표부에 등록하고 있고, 독일민주공화국의 합법적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3.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제116항 1절과 1952년의 여권제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기업의 해외출장소를 통한 신분증명서의 교부

〈독일민주공화국국민에 대한 보호법 실행상의 월권〉

1. 독일연방공화국은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 대한 외교상의 영사보호법을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독일민주공화국의 주권을 부정하고 있다 : 독일연방공화국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신분증명주권을 침해한다. 독일민주공화국영사관은 1974년 11월 9일의 영사법으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16항 1절에 의거하여 전 독일인에게 “충고와 원조”를 행할 의무를 진다.
2. 독일민주공화국내의 독일연방공화국 상주대표부 및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의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 대한 조 언행위, 특히 이주의 문제에 대한 조언행위
3. 독일연방공화국 해외대표부의 독일민주공화국국민 채용 및 이주를 강요하는 압력의 행사
4. 독일민주공화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국적자”에 관계되는 동시에 “고유의 국민”에 관계된다는 근거도 독일민주공화국의 법에 저촉됨에도 독일연방공화국에 체류하고 있는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의 인도를 하지 아니한다.
5.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의 독일연방공화국방문여행을 성취시키려는 노력 : 독일연방공화국의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독일민주공화국에 여행목적 으로 입국한 후에 체포되었던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 대한 보호요구

의 제기.

〈자국에 대한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의 충성의무 경시〉

1. 독일연방공화국에 잠정 체류하고 있는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 대한 첩보기관 및 망명원조기관 그리고 그와 유사한 기관에 의한 스퀘아웃 시도
2. 직무상의 이유로 혹은 교환방문을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에 잠시 체류하는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 대한 국경경비대와 BND에 의한 심문
3. 독일연방공화국에 체류하고 있는 독일민주공화국인의 이주를 유발시키고 반독일민주공화국 의식을 고취하려는 독일연방공화국측의 시도
4.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의 국민적 행동의 범죄시화

〈허용될 수 없는 독일민주공화국에 대한 사법권의 신장〉

1. 국제법의 협정에 상치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관청 및 기관에 의한 (여권위조, 법원의 결정) 인신매매 범죄의 묵인 및 장려
2. 독일연방공화국은 그 법에 근거하여 망명원조조약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동시에 인신매매조직에게 독일민주공화국의 주권법을 침해할 목적으로 여권을 교부한다.
3. 독일민주공화국국민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처벌가능성의 신장 : 1984년 3월 7일의 독일연방공화국의 BGH의 판결에서 독일연방공화국 형법이 독일민주공화국내의 독일민주공화국국민의 사건을 주요시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었다.(1984년 3월 7일 - 3STR 550/83과 1980년 11월 26일 - 3STR 393/80(s)의 BGH - 판결)

4. 법률조력요청에 있어서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은 그 자체로써 지시되지 않으며, 어떤 시점에 이르기까지 문제에 인물이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이었다는 것을 지시되지 않는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원칙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 반하는 범죄를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이 범했을 때에 독일민주공화국의 담당기관에 의한 적절한 처벌을 방해하는 행위)

1. 독일민주공화국에서 망명한 형사상의 범죄자의 인도거부(예를들어 와인홀트, 회네, 바이스게르버)

(독일민주공화국의 관할 영토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유로 한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 배치되는 조사 및 독일민주공화국 국민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관할 영역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처벌가능성의 신장)

1. 잘즈기터의 "중앙등록처"활동. (독일민주공화국의 지역에서 자국의 헌법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행한 판사와 변호사에 대립되는 조사, 국경부대의 소속자와 조사기관의 소속자에 대립되는 조사)

잘즈기터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법원의 "중앙등록처"는 1961년부터 1984년까지 31,000건 이상의 법률상의 조사방법을 독일연방공화국신문사에 준비시켰다. 중앙등록처의 장인 레테와이어는 독일민주공화국내의 범죄행위는 기본법에 따라 외국에서는 어떤 범죄행위도 되지 못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2. 독일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규에 상응하고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독일민주공화국내의 사건을 이유로 한 독일민주공화국국민에 대립되는
형사판결

(친족법과 민법 그리고 행정법상 관계내에서 독일민주공화국 국민
권의 불이행)

1. 필요한 독일민주공화국법의 동의를 이루어진 독일연방공화국국민과 독
일민주공화국국민의 혼인 : 예를 들어 1984년 4월 5일에 튀빙겐의 호적사
무소는 독일민주공화국인 R.H.W 크뇌델과 G.I. 미하엘의 혼인을 독일민주
공화국 당국의 동의없이 처리하였다. 독일연방공화국의 법률에 따르면
독일민주공화국법을 참작하는 일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독일연방공
화국 측의 논거이다. 이는 “독일인”간의 혼인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2. 1980년 4월 30일의 “성과 이름”의 변경 법규에 대한 일반관리규
정 : 예를 들어 상부의 방침은 금후로는 브라힘(Brahim)이라는 이름을
쓴 독일민주공화국의 미성년자 스테베 하이드라(Steve Heidra)의 이름
의 변경을 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관철시켰다.

3.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민권을 무시한 채, 보호법의 문제에 대한 간
섭과 부양의 문제에 대해 간섭한다.

4.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정식 사법공조관계와 영사관계
를 방해한다.

5. 독일연방공화국내의 독일민주공화국 상주대표부가 독일민주공화국 국
민에 대해 행하는 영사보호를 방해한다.

6. 1978년 6월 24일의 신분법에 대한 일반관리규정

7. 동의없이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이루어 졌고 독일민주공화국 미성년자 소환의 거절과 방해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민권의 존중에 대립되는 국가내 규정에 변경 혹은 파기)

- 1913년 루스회의와 결합되는 기본법 제116항 1절

- 기본법 제116항 1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의미내에서 "전독일"인을 요구하는 국가내의 모든 법률규정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민권의 문제에 있어서 독일민주공화국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의 국제법에 어긋난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제3제국에 대해 가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압력의 실행)

1. 국민권을 다루는 문제에 관한 타국가와 독일민주공화국간의 조약관계외의 간섭(예를 들어 영사조약의 체결의 경우) 1983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독일민주공화국과 그리이스 양국간에 이미 성립된 사법공조협정을 비준하지말 것을 그리이스 정부에 요구했다.

그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의 외무장관 젠셔와 연방내독성 차관의 대 그리이스 활동이 활발하였다. 이와 같은 조약의 체결 후에 독일연방공화국은 독일민주공화국과의 조약대상국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는 독일민주공화국과의 조약대상국이 독일민주공화국에게 그들의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독일연방공화국과 조약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 또는 국제법에 상치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입장을 여타의 방법으로 묵인하거나 지지하는 국가들을 확고히 하려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슬책(예를 들어 영사

조약과 사법공조조약에 있어서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제116항 1절을 증거로 할 수 있다)

- 지난 해에 독일연방공화국과 다른 국가간의 조약에서 다음의 약관이 수용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면 - 독일연방공화국에 관련하여 볼 때 - "국적"이라는 표현은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 제116항 1절에 의거하여 모든 독일인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권이 정의되어 있는 영사조약과 사법 공조조약 및 그의 조약에 관계된다.
- 독일민주공화국의 시민권을 존중할 것을 거부하는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양국간의 사법공조협정 체결의 중단 예를 들어 독일연방공화국에 거주하는 독일민주공화국인이 독일민주공화국인으로서는 일컬어지려는 청원을 독일연방공화국이 받아 들이지 않음으로써 독일연방공화국은 현재의 협정이 체결되어있지 않은 사법공조 교류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출처 : 1985년 1월 30일자 동베를린 발행의 노이에서도이취란트, 신독일

105. 베를린의 폐수처리

1985. 2. 15.

1980년 3월 18일의 변경협정의 초안 위에서 1974년 12월 12일 서베를린 폐수처리에 대해 독일민주공화국 교통부와 건축제도 및 주

택제도위원회간에 협정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1. 협정 제2항 1절에 상응하는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985년 1월 1일 - 1985년 12월 31일 : 1000m² 감소된 폐수/
300DM (마르크)

1986년 1월 1일 - 1986년 12월 31일 : 1000m² 감소된 폐수/330
DM (마르크)

1987년 1월 1일 - 1987년 12월 31일 : 1000m² 감소된 폐수/370
DM (마르크)

1988년 1월 1일 - 1988년 12월 31일 : 1000m² 감소된 폐수/390
DM (마르크)

1989년 1월 1일 - 1989년 12월 31일 : 1000m² 감소된 폐수/390
DM (마르크)

2. 제2항 3단락에 따라 보증된 최소의 양은 다음과 같다.

1985년 1월 1일 - 1985년 12월 31일 : 90 Mio m³

1986년 1월 1일 - 1986년 12월 31일 : 70 Mio m³

1987년 1월 1일 - 1987년 12월 31일 : 50 Mio m³

1988년 1월 1일 - 1988년 12월 31일 : 45 Mio m³

1989년 1월 1일 - 1989년 12월 31일 : 45 Mio m³

1985년 2월 15일 베를린

도시발전과 환경보호 위원회

대표 펠스하이머박사

독일민주공화국의 환경보호청 및 수리청

대표 보이크트박사

출처 : 원전에서 인용되었음

106. 경계위원회 84, 85번 및 62/85번 의정서각서

1985. 2. 27

1985년 1월 27일에 게라의 국경위원회에서 서명된 국경통과지점에 대한 의정서각서, 년 되돌아 오는 수리상의 표준설정과 1985년 수리상의 표준설정은 국경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 토대와 활동에 관한 기록, 내독성발행 : 1985년 본

107. 독일연방공화국 수상 헬무트 콜 : 분단 독일의 국가정세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보고

1985년 봄에 행해질 분단 독일의 국가정세에 대한 보고는 정치적 역사적 순간에 행해질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1945년을 즉 제3제국 나치가 종말을 고했으며 동시에 조국통일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 된 자유가 짝튼 바로 그 40년전을 회고합니다.

독일은 분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독일인의 의지는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40년전이나 오늘날이나 혹은 미래에도 자유는 변함없이 독일인의 핵심문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독일의 정책, 이런 독일연방공화국정부의 독일정책은, 약간의 도전에 부담을 진 목표설정, 요컨대 플랜트와 방법론에 의거한 분단 독일의 국가정세에 대한 지난번 저의 보고이래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두가지 사건이 이런 정책 수행의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몇달전 12월 16일에 별반 주목을 끌지 못한 채, 바르타와 아이제나흐 구간에 있는 베라탈횡단 고속도로 다리가 개통되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독일민주공화국에서 가장 거대한 다리 건축공사인 이 다리의 건설을 결정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이 다리가 튀링겐과 헤센 그리고 괴테의 바이마르, 괴테의 프랑크푸르트, 또한 독일민주공화국의 라이프찌히 전본시 및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제중심지를 연결하리라는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독일인들이 양쪽 방향에서 이 다리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교량의 건설, 한달 후에 독일민주공화국 장벽 앞에 있는 베를린 중심가 베르나우 거리 근처에서 새로운 고터식의 벽돌건물 교회가 폭파되었습니다. 이는 국경을 더욱 잘 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화해의 교회"라 불렀다는 사실이 슬픔을 더 가중시킵니다. 동서 양진영을 연결하는 다리건설 그리고 동서양진영을 분리시키는 교회의 폭파. 바로 이 두사건이 1984년과 1985년의 길목에서 벌어진 독일의 현실입니다.

이 두사건의 독일의 상황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의 정치적, 인간적으로 동요시키는 상징이며

경험입니다.

다리건설은 우리가 건너가야만 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폭파는 우리의 분열과 독일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 얼마나 멀고 불확실하며 험난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단독일의 국가정세에 대한 이런 보고에서 나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5가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1. 국민과 자유를 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독일정책이 추구하고 실행해야할 규범입니다. 유럽의 역사에서 볼 때 계몽주의시대 이래로 국민과 자유는 열렬히 기대된 이념상의 통일입니다. 처음부터 국민의 이와 같은 이념에는 창조력과 폭발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혁명 이래로 이런 긴장의 결과 생겨 났던 정치적, 경제적, 화해의 유럽역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자유가 억압받을 때 결국 인간도 파멸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줍니다.

1945년 3월 8일의 제40차 기념일은 우리 독일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유라는 지고의 선과 평화, 자유의 수호에 대한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기념일은 자각의 날이며 회상과 슬픔 그리고 감사와 희망의 날입니다. 초대 독일연방공화국수상인 테오도르 호이스(Theodor Heuss)는 선거 후에 1945년 3월 8일은 한층 그 의미가 깊은, 역설의 날 일 것이라고 간단히 자신의 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과 파멸은 하나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전제정치로 인한 희생과 세계대전으로 인한 희생을 슬퍼합니다. 독일의 이름으로 범죄가 행해졌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이런 슬픔에 뒤섞여 있습니다. 회상 또한, 제3제국의 잔악무도한 행위에 대한 끝없는 우리의 책임에 직면할 때 필연적인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3월 8일은 감사의 날입니다. - 독일인은 전쟁에 공포로 부터 그리고 나찌치하에서 생겨 났던 무수한 고통으로 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3월 8일은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이 모두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조국 독일은 분단되었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게 또 우리 이웃 동유럽의 국민에게 3월 8일은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당시를 지배하던 독재에서 다른 독재로 바뀐 날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또한 희망의 날입니다 즉 자유로운 유럽에서 자유독일을 추구했던 1932년의 합바흐 축제 애국자의 희망과 1848년 파울스키르헤(Paulskirche)의 희망이 오늘날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독일 역사의 가능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희망의 날입니다.

이런 희망으로 인해 독일역사의 가장 심각한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을 한데 모았습니다. 감히 히틀러에 반대했었던 바로 그 독일인에 의해 세워졌던 토대에, 다시 말해 우리의 민주질서와 사회법치 국가의 토대에 그들은 근거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과 독재가 종말을 고한지 단 4년만에 우리 조국의 자유지역

인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신자유주의 공화국의 탄생을 경험하였습니다.

의회의 의원들은 1949년 5월 8일에 기본법에 대한 결정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 카를로 쉬미트는 - 전후 독일역사의 위인중의 한사람인 - 점령국과 신독일공화국의 국민에게 인상적인 연설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연대책임법에 따라 양측에서 행동한다면, 파멸의 통지가 붕괴되면서 피로 맺은 굳은 약속이 확증되었던 1945년 5월 8일의 제4차 기념일에 더 나은 미래의 독일로, 유럽의 미래로, 모든 유럽 민족의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문을 힘껏 열었던 그 무엇인가가 여기 본에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젠가 말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사, 숙녀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1949년의 자유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 독일의 민주주의의 확립을 가능하게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파괴된 국가로부터 우리자신과 우리의 이웃을 평화 안에서 공존하게 하는 사회체제가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기본법은 헌법의 이름으로 침략을 추방합니다. 전쟁과 폭력이 우리에게 있어 결코 다시는 정책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국가로서 모든 독일인을 위한 자유를 추구합니다.

1945년 5월 8일이 우리에게 전쟁과 폭력의 지배로 인간 파멸을 상기시키고, 자각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1949년 5월 8일은 우리가

조국의 자유로운 지역인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유지했던 새로운 기회를 보장합니다.

1945년 5월 8일과 1949년 5월 8일이 오늘날의 우리 조국의 상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분단에 히틀러에 의해 야기된 전쟁의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 독일인과 전 유럽을 위하여 행하여야 할 과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 우리 독일연방공화국은 서방세계에 속합니다. 단지 이 이유로 하여 독일인의 자유는 그 기회를 가집니다. 30년 전에 독일연방공화국은 국제법상의 주권을 획득하였고, 동시에 로카르노 조약에서 그 사상적 기초를 닦아, 유럽의 자유민족과 독일의 결합을 계속 진행시켜 왔습니다. 60년 전에 로카르노조약으로서 오스텐 챔벌라인과 구스타브 슈트레세만 그리고 아티스티테 브리안트는 이런 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때 영국, 프랑스, 독일의 외무장관들은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영속하는 합의가 갖는 유럽적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베르둔전투의 시작은 - 영원히 전쟁의 무의미성의 상징이며, 오늘날은 결국, 화해의 상징이기도 한 - 십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60년전 로카르노조약은 국가주의의 근시안과 소위 극복할 수 없는 숙적관계의 계승에 부딪혀 실패하였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과 파리조약에서 - 그당시 새로이 만들어진 독일조약을 포함하여 - 우리는 유럽 통일의 이념에 우리를 확고히 고정시켰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틀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이룩하고자

하며 독일의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파리조약으로서 독일연방공화국은 주권 국가로서 영원히 자유서방국가 연합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유럽에 대한 우리의 신조는 역사적 결정이며 정치적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의 유럽 계몽주의의 유럽 그리고 사회의 정의와 법치국가의 유럽에 대한 가치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자유의 편입니다. 서방연합의 공동가치와 우리민주주의의 국가법규는 서로 일치합니다. 이런 일치 내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의 국가이성이 표출됩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독재사이의 타협이란 없습니다. 세번째 길은 타협의 길을 모색하는 자는 우리의 자유를 위협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서방연합과 자유민주주의 연합에 대한 콘라드 아데나우어의 명확한 결정은 국가의 독자노선을 찾는 노력에 대한 혐오였습니다. 이런 기본 결정은 역행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3. 우리 대강국 프랑스, 영국, 미국이 독일조약에서 작성했던 특히 독일의 목적과 이익에 대한 3대강국의 책임은 오늘날은 물론이고 추후에도 유효할 것입니다.

자유가 독일인의 핵심문제이기 때문에 서방에 있는 우리의 동맹국 및 우방국과 우리는 나란히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방국들은 전체 독일인이 우리를 통해서 자결에 대한 요구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자결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우리의 연합은 유럽의 책임 안에서 선견지명있는 결정의 결과였습니다. 서유럽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독일내에 확고한 자유주의 국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우리 독일의 자유의 영속을 위해 동맹국의 보호가 절대적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을 위하여 '자유'라는 댓가를 지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생활양식의 보존이 우리 독일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에 있어서도 모든 다른 목표를 차지한 우선의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의 분단선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서방에 있는 우리 독일의 자유주의 법규에 매력과 그 방위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독일과 유럽의 자유의 문제는 유럽을 평화롭게 개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4. 우리 독일의 정책은 유럽을 위한 정책입니다. 유럽의 일부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분단되었습니다. 독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독일인의 문제는 우선 독일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이 지리상, 지리정치학상 유럽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독일의 문제는 항상 유럽의 이익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지리상 황과 독일의 힘에 의해 항상 유럽의 중심 위치에 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을 가르는 분단선에 마주 보고 살고 있는 유럽인을 위해서 자유는 오늘날 그 중점 문제입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자유로운 통일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열쇠는 자결입니다. 자유는 인간의 권리입니다. 국경선이나

영토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고전적 민족국가의 의미에 따른 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주권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민이 유럽의 건설을 완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날 운명에 체념적으로 순응하면서 독일인의 문제에 최저선을 긋기 원하는 자는 자결권과 인권의 실현을 거부하는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미래의 모든 유럽의 자유를 위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역사를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럽의 중심부인 독일에서 일어난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여 너무 짧은 역사의 연속성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인의 문제가 완결된 문제로 설명될 수 있으리라는 성질로 인해 그리고 정치가나 역사가로 인해 독일인의 문제가 유럽의 중심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독일인의 문제는 유럽에서 수세기 전, 힘의 체계가 세워진 이래 우리 대륙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습니다. 독일인의 문제는 항상 문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독일이 유럽에 어떻게 접목되고 독일인이 유럽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그리고 독일이 유럽적인 책임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거절하는가도 여전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방세계에서 시작했었던 유럽인의 자발적인 결속은 어려운 작업이면서도 희망찬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이야기할 것이며 나 스스로는 1988년을 유럽 결속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의 결속을 계속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늦었지만 우리 대륙의 분열을 타파해 나가는 길을 역사의 관점에서 준비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의 사적 업적은 우리가 국민과 자유를 보존하는 동시에 유럽에서 더욱 더 위대한 조국을 발견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독자적으로 찾는 것도 아니고, 혹은 적대심을 갖고 찾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서방세계와 동구권 이웃나라에 대적하면서 찾는 것도 아닙니다. 독일인의 국가는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를 그 기초로 하며, 또 유럽연합의 지붕아래서만 건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럽분열의 극복은 단지 서유럽의 과제만이 아니라 전유럽에 위임된 과제인 것입니다.

5. 우리 독일정책은 동서관계를 항구화하고 진지하게 합니다. 우리 독일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리 헤아려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이며 유럽내의 실제적인 평화작업의 요소입니다.

독일연방정부의 독일정책은 다음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 독일조약
- 1970년의 모스크바조약과 바르샤바조약
- 1971년의 4대국협정
- 독일의 통일 및 1972년 5월 17일의 독일연방의회의 공동결정

- 독일민주공화국과의 기본조약 및 1973년 7월과 1975년 7월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신사 숙녀 여러분, 이런 기록문서는 독일법의 입장과 평화조약 유
보의 고수 및 우리 동구 이웃나라들과의 화해와 상호이해를 위한
준비를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화해와 합의를
뜻합니다. 연방의회 선거 후인 1985년 5월 4일의 나의 대정부 발표
는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었고 독일연방공화국정부의 입
장을 공식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평화정책의 틀 안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과
의 공동작업 및 상호이해, 신뢰형성의 작업을 현재의 대립적 상황과
혼돈함이 없이 단호하게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폴란드에게 한 요청을 오늘날도 역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화해와 상호이해를 원합니다.

“우리는 작금에도, 추후에도 바르샤바조약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
고 독일연방공화국과 폴란드간에 맺어진 국경불가침조약과 영토불가침
조약을, 또한 현재의 국경에서 유럽내의 모든 국가의 영토 불가침과
주권의 존중을 평화를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 독일연방공화국과 폴란드민주공화국은 상호간에 어떤 종류의
영토 주장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계속 고수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폴란드의 서부국경지대와 마주하고 있는 지역,
즉 오늘날 폴란드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은 이제 폴란드

계 사람들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존중할 것이고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인 폴란드계 사람들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존중할 것이고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인 폴란드인에 대한 이와같은 발언은 분단독일의 국가 정세에 관한 보고에 나타난 군사사령관의 명령의 일부입니다.

나는 1985년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 40년 전을 회고할때 - 전쟁의 종말의 고향의 상실을 의미하는 수백만 우리 동포의 운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보다도 고향과 연계되어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망명과 추방으로 2백만 이상의 동포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추방자와 망명자를 신독일 사회의 폭발적인 존재로 간주하였던 바로 그런자들의 평가가 다행스럽게도 독일과 유럽에서는 그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방자와 망명자들이 자신들의 뼈아픈 과거에도 불구하고 전쟁후 5년이 흘렀을 때, 슈루트가르트현장에 폭력을 추방하고 동유럽과의 화해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명백히 기록했던 바로 그 때가 바로 독일 전후역사의 위대한 시기였습니다.

이와같은 행동은 일종의 복구주의에 대한 결연한 단념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향에서 추방당한 우리 동포들은 우리 조국의 평화로운 발전과 우리 이웃국가와의 상호협조를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

추방자들과 그 자손들 또한 이 평화의 길을 계속 걷고 있다고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조약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는 독일내의 동서독 양국관계에 있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주고 신뢰를 기대합니다. 독일국적의 문제가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독일국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국적도 박탈할 권리가 없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1972년에 국적문제는 이런 조약에 의해 조정되지 않았음을 기본법 조약체결 시에 뚜렷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본법과 여타의 법에 의해 주장된 이런 입장을 대변할 때 독일민주공화국법이 실제 간여하지 못합니다. 그 밖에 실무상의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의 국적을 보호하는 법률로 독일민주공화국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독일인을 보호할 법률을 우리가 그 누구로부터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일독일국적을 고수하면서 우리 공동의 과거와 독일국민의 과거, 독일인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 유념하고 있습니다.

4대국의 법과 4대국의 책임이 단일 독일국적의 고수를 위한 국제법상의 실재요소입니다.

독일민주공화국과 우리 독일연방공화국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다. 독일민주공화국 측에서 볼 때 우리는 여타와 국가들과 같은 독립된 하나의 국가가 아니며 독일민주공화국도 우리 측에서 볼 때는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게다가 독일민주공화국은 결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가질 수 없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을 독일의 역사를 마치 불순한 유산이나 되는 듯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3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양국의 관계는 다변하였습니다. 양국의 관계가 다변하는 동안 한 가지 사실이 명백해 졌고 또한 명백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관계를 지속하게 합니다. 그것은 관계가 형태로 생각되고, 실제로 간주됩니다. 공통언어, 공통문화, 인간관계의 엄격한 연대 및 공통역사 이런 요소들의 성과와 그 의무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관계는 동서 양관계의 힘의 배분을 이유로하여 악화될 수 없습니다.

독일 내의 양국가의 관계개선은 유럽의 이익과 상충합니다.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 관계의 개선은 보다 포괄적인 공동 관계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분단독일의 국민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2주일 후에 겐프에서 개최될 준비조정회담에 아주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준비조정회담은 평화의 유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기호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독일내의 양국가 관계의 진전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

유로 인해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대화에서 특히 우리 동맹국 그 어느 국가보다도 미국과의 협의에서 이런 회담의 수용을 목표로 노력하였습니다.

회담은 오래 지속될 것이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서 관계의 중추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확연히 개선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는 바이며, 다른 사람들도 이점에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겐프의 준비조정회담이 우리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 독일민주공화국과의 대화와 협력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세계강국들의 대화에 상대한 보완역할로서 이해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그런 양측의 가능성과 독일민주공화국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제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측의 가능성과 독일민주공화국과의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구 이웃인 소련과의 세계정책상의 전체 회담에서 거론될 때 이제 4대국의 동의로서 - 소련을 포함한 - 독일민족은 자유로운 자결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과 소련 사이의 관계를 위한 회담에 대한 요구는 꽤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소련의 지도부는 우리와 외교상의 관계를 서로 유지한 이래 항상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30년전 1955년 7월에 소련측이 콘라트 아데나우어를 초청하여 "전체 독일국민의 주요문제 해결"을 우선 테마로 삼았다는 사실

을 상기시키는 일은 타당한 일입니다. 15년전 모스크바조약의 체결 때 독일연방공화국정부는 독일의 통일을 조약의 일부로 맹세하였습니다.

소련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볼 때 처음부터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문제만이 늘 중요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중요한 관심사는 인도주의였습니다. 콘라드 아데나우어는 1955년 9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그리고 그때까지 소련에 억류되어 있던 독일 전범의 석방을 위해 진력하였을 때, 그는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인도주의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나는 수많은 독일인과 독일계 소련인의 소망을, 즉 소련으로부터 독일로 이주할 수 있는 소망을 생각해 봅니다. 1983년 7월 소련을 방문하였을 때, 이것이 우리 상호관계의 결정적인 요소이며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는 사실을 소련의 지도층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우리의 동맹국 및 여타 유럽의 제국가들과 공동으로 우리는 인도주의의 문제를 전유럽안보협력회의의 과정(KSZE-Prozess)에서 확고하게 보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럽내의 안전보장을 국가기관을 위하여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녕과 인류의 안녕을 위해 추구하고 있습니다.

10년전 9월 1일의 헬싱키의 최종의결에서 자결과 자유와 인간의 권리를 통해 다수국이 참여하는 독일정책과 독일민주공화국정책에 부

수적인 자극을 준 동서의 대체적 강령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의 첫 원칙은 모든 민족의 권리입니다. 본인은 헬싱키의 최종의결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인용합니다. “모든 각 민족들은 외부의 개입 없는 완전한 자유 안에서 국내정책과 국외정책을 결정 하고자하는 절대적인 소망을 가진다.”

5. 우리는 양독의 관계를 확고히 하였고 밀착시켰습니다. 독일정책의 범위를 보다 확대시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 독일정책을 지탱하고 있고 보장하고 있는 양독과 그외의 다수국이 참여하는 관계의 망이 엮어집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이 필요한 국가가 되리라는 점이 우리 독일연방공화국에 지장을 초래하리라는 견해와 독일민주공화국이 해로운 국가가 되리라는 점이 우리에게 유용하리라는 견해는 아마도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이해의 얽힘이 가능한 영역을 확대하는 일은 유럽과 독일을 위한 우리의 책임의 일부이며, 우리 자신에 대한 요구의 일부입니다.

이익의 얽힘이 가능할 때, 마땅히 이익의 얽힘 또한 생겨나야만 합니다. 양국가 사이의 관계는 대립과 연대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긴장을 제거하고 신뢰를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민들 간의 더욱 빈번한 접촉으로, 더 많은 자유가 주권으로 개개인을 위해 더 확대된 개인의 자유로 인해 한층 수월해진 여행의 가능성 등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독일의 분단과 유럽의 분단도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을 때
인권의 문제는 항상 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우리는 침묵
할 수도 없고 침묵당해서도 안됩니다. 분단된 국가 안의 자유국가인
우리는 전독일인의 인권을 책임질 의무를 여전히 지고 있습니다. 다
름 아닌 분단된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 독일인을 위해 동서독의
국경을 쉽게 오갈 수 있는, 독일과 유럽의 분단을 완화시키는 여건
들을 만들어 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민들 서로가 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경선을 옮길
것이 아니라, 그 국경선을 우리의 모든 이웃 국민들과의 상호이해와
인간성을 바탕으로 하여 극복하는 것이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독일
정책 및 동방정책의 골자입니다.

유럽과 독일내의 분단선을 뛰어 넘는 인간적 편익은 우리에게 있
어 유럽내의 평화의 보장을 위해 더욱 강력한 확고성을 위해 불가
결한 전제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과는 대화정책 및 가능한 협력관
계 정책을 신용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본조약은 관계의 발전을
위한 근거이며 틀입니다. 양독사이의 우호관계를 가능한 한 발전시키
는 이런 조약의 목표가 규범입니다. 그 때문에 양국은 모든 영역에
서 대화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이 대화정책을 확대시키도록 노력해야
만 합니다.

군비축소 문제에 관한 겐프에서의 두 강대국간의 회담의 속행과
경제관계의 강화 및 종교관계에 관한 그들의 최초의 의견교환은 직

접적이고 개인적인 회담을 최선으로 진행시키는 것을 우리 동유럽 이웃에게 가능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세계 강대국간의 관계개선은 동서의 유럽연합우방에 의한 후원과 지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현재의 원칙적인 차이점은 제거될 수도 없고 제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이 실질적인 문제, 특히 인도주의적인 문제의 해결에 대립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실행가능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양측은 이런 과정에서 부담한 댓가를 요구받아서 안됩니다.

양측 각각은 성과를 얻어야 합니다. 성과는 신뢰를 전제로 하며, 새로운 신뢰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무엇보다도 독일민주공화국과의 대화와 협력에 대한 그들의 소망과 각오를 양국의 은행대출에 대한 보증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대사관을 양해하였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은 양정부 사이의 관계를 전고히 하였으며 관계의 불변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관계에서 부정할 수 없는 현저한 긴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의 독일정책은 분명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새로운 냉전시대를 겪으면서 독일연방공화국 내의 거주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400,000명이 넘는 독일민주공화국 동포가 1984년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부터의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들 중의 대다수는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부터의 이주를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했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의 책임은 독일연방공화국의 방문여행 시 실제적인 완화조치를 통해 독일민주공화국에 거주하는 수 많은 우리 동족들이 뚜렷히 느끼고 있는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으로 하여금 우리 대표부 특히 프라하에 있는 대사관 내의 망명 사건에 대해 얘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연방공화국정부는 독일민주공화국으로부터 이주를 강요하는 이런 통로는 부당하다는 것을 항상 반복하여 천명했습니다. 그러한 시도의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사건은 우리가 독일의 이쪽에서 저쪽 부분으로 방해받지 않고 여행할 수 없고,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떤 출구도 찾을 수 없을 때, 어떤 성과도 이룰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긴급한 가족문제를 이유로 한 여행은 관대하게 인가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3년 긴급한 가족문제로 하여 우리를 방문할 수 있었던 방문자의 수가 1984년에는 오히려 줄었다는 사실은 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독일민주공화국 내의 관광여행은 기쁘게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독일민주공화국이 최소한의 어린이들의 교류를 다시 유입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연금생활자를 위한 교류의 글을 보냈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모든 여행자에 대한 최소교류의 제한은 앞으로도 중요한 목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관광여행과 방문여행의 거절은 1983년 중반이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나는 다시 한번 우리국민들의 원기를 북돋우고자 합니다. 즉 당신은 기회를 이용하십시오. 당신은 독일민주공화국으로 가시오. 당신은 그곳에서 우리의 독일민주공화국과의 만남을 시도하십시오. 당신은 무엇보다 그곳에서 개인적 감명을 느끼도록 하는 가능성을 이용하십시오.

청소년의 교류문제는 1984년 독일연방공화국정부측에서 만족스럽게 발전하였습니다. 대략 30,000명의 청소년들이 그룹과 학급단위로 독일민주공화국으로 여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전보다 많은 수입입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수에도 불구하고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바로 지금 독일학교의 선생님과 무엇보다도 연방 각주의 문화성장관에게 이런 과제를 독일의 과제로 삼을 것과 독일민주공화국으로 여행할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은 젊은 이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한편 독일민주공화국이 지난 봄 이래로 우리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여행을 중지시킨 일은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이 제시한 여행중지 이유를 본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연방정부는 청소년 교류를 계속 후원할 것이며 또한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지도부가 청소년 교류 등의 문제에 다시 협력해주기를 희망합니다.

1984년 11월 30일에 - 국가평의회 의장인 호네커의 성명에 상응하여 - 독일내의 양국가 사이의 국경선에 설치된 독일민주공화국의 차

단시설 결의 자동발사장치는 철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 인해 국경선을 쉽게 드나들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이 독일연방공화국을 관통하는 국경 한가운데 설치한, 인간을 경시하는 차단시설이야말로 독일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국가인지를 어느 다른 국가 보다도 훨씬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뢰와 발포명령이 독일에서 독일로 가는 행위를 막는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며 앞으로도 참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폭력은 내국의 국경에서 어떤 수단이나 정책도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난해에 환경보호운동의 분야에서 내국관계는 성공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환경의 부담이 국경선에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국경을 초월한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작업은 독일 내의 좋은 선린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일부분입니다. 지난해에 베라와 베저강의 소금 감소문제에 대해 긴급하고도 어려운 토의가 속행되었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뮌헨의 환경회담과 관련하여 그 정도가 점점 심해가는 대기오염의 절박한 문제 해결에 대한 용기있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백히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는 양국가의 중요한 공동 관심분야를 발견했습니다. 본인은 1984년 8월 말에 산림훼손의 문제에 대한 양측 산림전문가들의 첫회담이 이루어졌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구체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 집중적인 회담을 위해 독일민주공화국과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양측 전문가의 대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엘베 강의 청결상

대우지의 문제, 핵시설의 안전성 및 산림훼손의 방지와 극복에 대한 조처 등에 유효합니다. 문화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문화회담은 분명 활기있게 조직적으로 끝났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정부는 과학협정과 법률공조 협정에 대한 협의가 곧 종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일내의 양측관계의 본질적이고 확고한 요소는 내독무역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정부는 이런 경제관계를 현 협정의 토대 위에서 계속 확대시킬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1984년에 내독무역은 1983년에 이룩한 최고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때 독일민주공화국은 물론 그들의 우리에게로의 공급량을 대략 10% 가량 늘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 그들의 주문량은 1983년보다 뚜렷히 감소하였습니다.

1985년 현재에는 독일민주공화국에 있어 특히 생산재분야에서의 점진적 활발해지는 구매활동에 대한 전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보내는 우리는 공급품이 다시 증가할 수 있고 공급의 구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용역업무 협정의 수정은 양측에서 볼 때 경제관계에 추가적인 긍정적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독일문제의 초점인, 동시에 동서독 관계의 상황에 대한 측정기는 베를린이고 앞으로도 베를린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도시가 다시 문제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베를린은 1984년도 만큼의 그렇게 많은 방문객을

결코 맞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는 1971년의 통과 협정의 효력발생 이래로 가장 많은 수의 여행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베를린 정책은 도시의 생활력의 보장을 목표로 하며 도시가 그들의 가능성과 능력을 방해받지 않고 전개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게다가 독일연방공화국과 베를린간 연결의 발전에 그리고 동맹을 통한 그 관심이 대변의 발전에 대해 외부에서 볼 때는 상위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베를린 정책은 - 다시 한번 반복하건데 중요한 정책입니다 - 모든 우리 동맹국의 분열되지 않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1971년 9월 3일 4대국협정의 정확한 엄수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안전보장은 3대국의 보증과 베를린에 있는 강국들의 주둔에 의해 보증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베를린 시민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책임사항을 이행하는 동맹국의 단호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뒷받침하였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베를린 통과에 관한 교섭에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이젠아흐와 바르타 사이의 새로운 고속도로의 연결 및 바르타내의 경계선을 통과하는 시설의 건축은 통과무역의 완화에 실제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베를린과 히르쉬베르크 구간의 고속도로 경계선에 인접한 부분의 근본적인 복구문제가 현재 독일민주공화국과 논의되고 있습니다. 슈타겐의 국경을 통과하는 다리 1987

년 말까지 통과무역을 위해 개방하는 문제를 독일민주공화국이 지난해에 벌써 자각하고 있었다는 점은 베를린과의 통과무역에 있어 특히 중요합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베를린으로의 광섬유케이블의 이전에 관한 독일민주공화국과의 협정체결을 가까운 시일내에 추진할 것이며 추가로 장거리 통신선로의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베를린시당국의 밀착된 공동작업은 베를린의 경제위기와 경제상황의 본질적인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실제 자극은 1984년 6월의 베를린의 두번째 회담에서 부터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 회담에 시장을 함께 초대하였습니다.

기업체의 수는 1945년 이래 1984년에 처음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독일 기업 간부들의 관심이 다시 베를린으로 옮겨졌습니다. 가공업에 종사하는 인원에 있어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숫적 감소는 중단되었습니다. 우선 10년전 이래로 산업체의 일자리 수는 증가 하였습니다. 베를린의 경제 전망은 전체적으로 분명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경제가 베를린을 무엇보다도 연구와 발전의 영역에서 눈에 띄게 하는 그 위치적 장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베를린은 국제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도시의 생활력 향상을 위해 기여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동시에 베를린의 매력을 개발하는 일을 포기하여서는 안됩니다. 도시탄생 750주년을 위한 다음의 행사가 이런 의미

있고 매력적인 독일의 수도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새로이 강력히 후원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탄생을 기념하여 우리는 베를린에 독일의 역사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박물관은 베를린 즉 독일인의 옛 수도의 소유입니다.

계획자체는 유럽전체의 국제적인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게 될지에 대해 결국 느낄 수 없을 때, 자각과 자기인식의 소재설정이 중요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다른 정책들은 독일정책처럼 모든 민주주의자의 그런 선량한 의지와 신중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정책에는 우리의 민족적 일치성과 유럽 및 우리의 목적이 그 핵심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될 때, 처음부터 이 공화국을 구축했던 정당들을 우선 공동체로 본다는 것은 분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합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독일정책이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국가의 분단의 결과를 수용하여 참을 수 있게 함으로써 독일의 통일을 수호하는 것에 성공한다면 그 결과로써 임의 선택된 독일연방의회와 가능한 한 많은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특히 CDU/CSU(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주의도맹)의 분파와 SPD(독일사회민주당)와 FDP(자유민

주당)의 분파가 1984년 2월 9일에 분단 독일의 국가정세에 관한 공동결정안에 서로 합의할 수 있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현재 뿐 아니라 앞으로도 독일연방의회가 1년전 당시에 성명의 서두에서 제시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은 분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단의 상황을 극복해야 만하고 분단의 상황에서 초래될 위험물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독일의 상황은 유럽내에 영속하고 있는 평화적 질서의 틀 안에서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유럽내의 평화무드의 조성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와 같은 유럽내의 평화적 정세 안에서 독일국민은 자력으로 다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자결권의 평화적 실현 위에서 독일국민에 귀속하고 있는 권리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이런 역사의 명령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처 : 1985년 2월 28일. 언론 및 정보청 공보, 분.

108. 연방수상 헬무트 콜 박사와 SED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의 공동성명

독일연방공화국수상 헬무트 콜과 SED 중앙위원이며 독일민주공화국 국가평의회 의장인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는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1985년

3월 12일에 만났다. 이 회담에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의 관계발전가능성과 입장이 중요문제로 상정되었다. 회담은 객관적이고 거리낌없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헬무트 콜과 에리히 호네커는 동서독 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미국과 소련의 군비조정회담의 재개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동서독 관계의 개선을 위한 일반적 자극이 겐프의 군비조정회담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동서의 정치적 회담과 협력에 현재의 중요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양측관계에서 국민의 복지를 생각하는 진보주의는 동서관계의 신뢰조성과 정치적 분위기의 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국경불가침과 영토불가침의 존중 및 유럽내의 모든 국가의 주권존중은 평화유지의 기본 조건임이 언급되었다. 다시는 독일이 전쟁의 시발점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제 독일은 평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서독은 기본조약의 토대 위에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정상적인 선린관계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하면서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리라는 내용에 주력하였다.

출처 : 소련연방공산당의 중앙위원인 체르넨코 서기장을 위한 추도식의 말미에 행한 회담에 관한 1983년 3월 14일 연방정부의 언론 및 정보청 공보본.

109. 서베를린쪽의 새로운 통신망에 대한 협정

1985. 3. 15

연방우편·전신청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연방 우편·전신청과 독일민주공화국 우편·전신청은 1985년 3월 15일 본에서 서베를린쪽의 새로운 통신수송협정을 조인하였다.

이것에 이어 광파양도체 케이블시설(유리섬유케이블)의 설치와 서베를린쪽의 디지털방송국의 설치를 계획하였다. 이미 1983년 11월 15일의 우편협정과 관련하여 독일민주공화국은 오로지 베를린교역의 목적을 위해 광파양도체-케이블 시설의 설치에 동의했었다. (이 책의 77번과 비교하시오)

그 사이 동서독의 우편관리국의 전문가들은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설치와 작동에 대한, 또 추가적으로 디지털방송망의 설치와 작동에 대한 상세한 목록들을 확정할 수 있었다. 통신망의 급격한 디지털화와 통신업무의 왕성한 수요에 직면하여 서베를린과 알력없이 교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결이 필요하다.

니더자센의 가르토브를 기점으로 하여 독일민주공화국내 3개의 방송탑을 거쳐 베를린으로 연결되는 방송망은 1986년 6월 30일에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우엘첸에서 부터 독일민주공화국을 거쳐 서베를린에 이르기까지 설치되어야만 하는 유리섬유케이블은 1년 후에 작동하게 될 것이다. 서독정부는 소기의 결과를 환영한다. 이는 소기의 결과가 독일민주공화국과 함께 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양국가에 유리한 이익의 조정에 성

공했기 때문이다.

협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독일민주공화국 영토내의 서베를린과 연방공화국 간의 통신수송을 위한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설치와 작동에 관한 독일민주공화국 우편 전신청과 연방 우편 전신청의 협정.

1976년 3월 20일의(1976년 2월 27일의 23번 공고와 1976년 3월 13일의 36번 공고를 비교하시오) 우편제도와 통신제도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의 협정 제9항 3절과 제13항 2.3절에 의거하여, 연방우편 전신청과 독일민주공화국 우편 전신청의 대표단사이에 행해졌던 회담의 결과에서부터 다음의 사항들이 합의되었다.

1. 광파양도체-케이블설치

- 1)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우편국은 독일연방공화국과 잘스베델곶에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의 경계선에서 부터 독일민주공화국과 슈타켄곶에 서베를린까지의 독일민주공화국 영토에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서베를린 사이의 통신통과무역을 위한 총 211km에 달하는 광파양도체와 케이블 시설을 설치한다. (설계도 진로 플랜트1).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은 독일연방우편국에 의해 계획된 파손없고 기일이 엄수된 독일우편의 배달물을 공급한다는 전제 하에 1987년 6월 30일에 이루어진다.

- 2) 140 Mbit / s의 Bit-Rate를 지닌 1300mm의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되는 60다발의 구배광파양도체 - 케이블이 설치된다.

독일민주공화국 우편국은 작동에 필요한 4줄의 구리를 포함한 케이블의

구조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우편의 기술규정을 표준으로 삼는 것에 동의한다.

3) 케이블플랜트는 간발전기가 대략 18km의 최대거리를 유지할 것과 그것이 지상의 독일우체국 건물에 설치되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영토에서 설계도의 진로에 상응하여 간발전소의 설치에 적당한 지역은 총 13곳이다. 간발전소는 직류로 작동된다.

4)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구상과 케이블의 설치 및 독일민주공화국 영토내의 케이블 시설의 표정은 독일민주공화국 우편국에 의해 생겨난다. 이것을 위한 비용 및 독일우편의 2가지 플랜트에서 제시된 공급은 독일연방공화국에 의해 3,500,000마르크의 금액으로 배상된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지불된다 :

- 협정의 서명시 총금액의 25%인 8,750,000마르크를 지불
- 1985년 6월 30일 총금액의 25%인 8,750,000마르크 지불
- 1986년 6월 30일 총금액의 25%인 8,750,000마르크 지불
- 광파양도체와 케이블시설의 개통 시 총금액의 25%인 8,750,000 마르크 지불

5) 독일연방우편국은 광파양도체와 케이블시설을 위한 광파양도체케이블 및 모든 필요한 기술적 장비와 통신망 건축도구와 측량기계를 독일우편국의 공급에 있어 예외로 무보수로 공급한다. 배달은 3개의 플랜트에 제시된 기간에 맞춰 부분배달로 행해진다.

독일연방우편국은 독일민주공화국 우편국에 상대하여 기술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없는 실행과 그 배달의 수행능력에 대하여 보증한다. 배달에 실수가 생겼을 때 보충배달이 즉시 이루어진다. 독일우편국은 비난의 여지가 없는 기간에 맞춘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설치를 보증한다.

6) 독일민주공화국 영토내의 광파양도체와 케이블시설의 설치는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우편규정의 통신망 시설에 유효한 법규에 따라 이루어진다.

광파양도체-케이블시설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소유이다.

2.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가동

1)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은 서독과 서베를린사이의 전신통과무역의 전개를 위해서만 전적으로 사용된다.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작동은 독일우편의 전신시설의 작동에 대한 규정에 상응하는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에서 이루어진다. 독일우편은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작동능력과 가동능력의 평균수명기간을 보증한다.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작동능력과 가동능력이 더이상 유지되지 않은 때를 위하여 독일민주공화국의 우편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의 우편물 간에 보상과 정비의 규정이 합의되었다.

2)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가동시 우선 30개의 섬유 즉 15개의 기본양도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15PCM-1920 - 시스템과 각 위치에 상응하는 중간발전기를 제대로 갖춘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이 생겨난다. 독일민주공화국우편국은 독일연방공화국우편국의 소망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섬유를 작동시킨다. 작동의 전제는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이 2년마다

의도된 작동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1.5번에 상응하여 의도된 필요한 시설을 작동전 6개월동안 공급한다.

독일우편국은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필요한 작동, 기능 측정을 행하게 된다. 그와 같은 측정이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작동 시에 생겨나는 방해요소를 즉각 제거시킨다.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개통과 작동을 위하여 플랜트4에 맞는 원칙이 중요시 된다.

4)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에 있어 필요한 손실방책과 수선방책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우편국은 무료로 광파양도체 - 케이블, 기술적 장비, 측정기계 그리고 전선 설비장비에 필요한 보충수요를 행한다.

독일연방공화국우편국은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개통의 시점에서 독일민주공화국우편국에게 플랜트5 손실방책과 수선방책을 위한 예비물품을 넘겨준다. 고장난 간발전기, 특수기구와 측정기계는 독일민주공화국우편국으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우편국으로 넘겨진다. 독일연방공화국우편국은 이것 대신 동일한 방식의 기능을 하는 기계들 공급한다.

5) 독일연방공화국우편국은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정비와 수선에 대한 비용을 독일민주공화국우편국에 매년 6,200,000마르크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불한다. 이 금액은 4번에 나뉘어 4분기말에 동일하게 지불된다.

보다 광범위한 점유의 개통시에는 이런 금액은 개통의 시점에서 10개의 점유당 10%씩 상승한다. 독일연방공화국우편국에 의해 지불되고 있는 이 금액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전년 "개개 예산재정의 생활기준 물가지수"의 변화에 상응한다.

6) 그 원인이 오로지 독일민주공화국 영토내의 방해 때문에 이틀이상

(00.00시부터 24시까지) 기본양도체의 작동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기본양도체를 위해 독일연방공화국우편국이 제때에 지불하는 금액의 지불이 지체된다.

제한은 2.5번에서부터 생겨난 연금액과 작동하는 기본양도체수의 토대 위에서 조사되어 진다. 이때 일년 365일이 기초가 된다.

3. 일반규정

1) 광파양도체-케이블시설의 계획과 설치, 조립 그리고 개통이 행해지는 동안 필요한 기술상의 정보를 독일민주공화국우편국의 자유에 맡기고 독일우편국의 조립능력과 작동능력을 교육시키고 지시한다.

2) 1.40에서 협정된 불입금액은 독일해외무역은행 A.G베를린을 위하여 독일민주공화국이 지정하는 독일연방공화국 은행의 계좌에 입금시킨다.

2.5)에서 협정된 금액은 독일연방은행에 개설된 독일민주공화국 국립은행의 "S"구좌로 지불된다.

3) 1971년 9월 3일의 4대국협정에 상응하여 이런 협정은 서베를린에서 확정된 협정과 일치하는 안에서 연장된다.

체신업무에 관련된 서베를린의 주무관청과 동독의 해당기관 사이의 규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4) 번호1의 5가지의 플랜트가 이런 협정의 분리할 수 없는 구성 요소이다.

5) 이런 협정은 그 비준과 더불어 효력을 발한다.

1985년 3월 15일 :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

독일민주공화국 우편국

독일어로 된 2개의 원본으로 작성.

주: 다음에 언급된 플랜트들이 협정에 속한다.

플랜트1: 독일민주공화국영토내에 있는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설계
과정

플랜트2: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설계, 조립, 표정과 개통을 위한
독일우편국의 비용 원조

플랜트3: 광파양도체-케이블시설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의 공급

플랜트4: 광파양도체-케이블시설의 개통과 작동에 대한 원칙

플랜트5: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에 의해 제공된 정비조치와 수선조치에
대한 예비품목

- 협정 -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에서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 사이의 전신통과
무역을 위한 전파연결의 작동과 설치에 대한 독일민주공화국 우편국과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의 협정

1976년 3월 30일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협정 제9항 3절
과 제13항 2, 3절에 근거하여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대표
단에서 행하여 졌던 회담결과, 다음의 사항들이 협정되었다.

1. 전파연결시설

1)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우편국은 데쿠에테, 리히노우와 페르베니쯔전
파탑을 이용하여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의 전신통과무역을 위한 전
파연결을 행한다.

전파연결의 국경을 넘어선 시그널전송은 전파지역인 가르토브-테쿠베테

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에서, 또 전파지역인 페르베니츠 - 슈탄트오르트 쉘펠베르크에 있는 독일민주공화국과 서베를린 사이에서 일어난다.

전파연결은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우편국에 의해 이루어진 공급이 독일민주공화국 독일우편국에 제 날짜에 우편물의 훼손없이 넘겨 진다는 전제하에 1986년 6월 30일 개통되었다.

2) 전파연결은 3,850 GHz부터 4170 GHz의 주파범위를 이용함으로써 PCM - 1920 - 시스템(140Mbit/s의 Bit-Rate(비율)를 가진 디지털 송전기술 장비가 갖추어 진다. (플랜트1 독일의 영토에서 전파연결의 주파).

3) 전파연결계획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에서 전파연결의 작동에 필요한 기술적 시설의 조립 및 독일의 영토내에서 전파연결의 표정은 독일우편국에 의해 행해진다.

그것을 위한 비용 및 독일우편국의 플랜트2에서 실행된 예비품은 독일연방우편국에 의해 4,500,000마르크에 달하는 금액으로 상환한다.

이런 금액은 다음과 같은 할부액으로 지불된다.

협정의 서명시 2,250,000마르크에 달하는 전체 금액의 50%를 지불한다.

전파연결시설이 개통될 때 전체 금액의 50%인 2,250,000마르크를 지불한다.

4)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우편국은 전파연결을 위하여 독일우편국의 공급을 제외한 모든 필요한 기술상의 장비와 측량기계(플랜트3)를 무료로 공급한다. 공급은 플랜트3에서 제시된 기간동안 부분공급으로 이루어

진다.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우편국은 독일민주공화국 우편국에 상대하여 기술상 하자가 없는 공급의 수행능력에 대해 보증한다. 잘못이 생겼을 때 즉시 보충 공급이 이루어 진다.

독일우편국은 비난의 여지가 없고 기간을 엄수하는 전파연결에 설치를 보증한다.

5)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에서 전파연결의 시설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전신시설에 중요한 합법적 규정에 따라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 우편국의 규정에 따라 생겨난다.

독일우편국의 전파탑에 있는 전파연결의 기술적인 시설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소유이다.

2. 전파연결의 작동

1) 전파연결은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사이의 전신통과무역의 전개에 한해서만 이용된다.

전파연결의 작동은 전신시설의 작동에 대한 독일우편국의 규정에 상응하는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에서 이루어 진다.

독일우편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술적 시설의 수명기간 동안의 전파연결의 작동능력과 기능능력을 보장한다.

전파연결의 작동능력과 기능능력, 혹은 이런 시설의 어떤 부분의 작동과 기능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독일연방공화국의 우편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우편국간에 보충조치와 검사조치가 협의된다.

2) 독일우편국은 전파연결의 필요한 작동의 측량과 기능의 측량을 행

한다. 독일우편국은 전파연결의 작동시 생겨나는 방해물 즉각 제거할 것이다. 전파연결의 작동과 개통을 위해서는 플랜트4에 맞는 원칙이 중요하다.

3) 독일연방우편국은 필요한 수선조치에 있어 무료로 기술적 장비와 측량기계에 필요한 보충수요를 공급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우편국은 전파연결의 개통시 독일우편국의 플랜트5에 맞는 정비조치와 수선조치를 위한 예비품을 양도한다. 고장난 기술상의 장비와 측량기계는 독일민주공화국으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우편국으로 양도된다. 연방우편국은 이를 위하여 동일한 방식의 기능을 갖춘 기계를 무료로 공급한다.

4) 독일연방공화국연방우체국은 독일 우편국에 전파연결의 정비와 수리비용으로 매년 300,000마르크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이 금액은 4번에 나눠 동일한 금액으로 4분기말에 지불된다.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우편국에 의해 지불되고 있는 금액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공식발표한 전년의 일개 가정재정의 생활기준을 위한 물가지수의 변화에 상응한다.

5) 단지 동독의 영토내의 장애 때문에 전파연결이 이틀이상(0.00시-24시) 작동되지 않는다면,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우편국으로부터 금액의 지불이 지연된다.

제한은 2.4)의 연금액의 근거 위에서 조사된다. 그때 일년 365일이 기본이 되어 있다.

3. 일반규정

1) 전파연결의 계획, 조립 그리고 개통이 행해지는 동안의 필요한 투표의 실행과 기술적인 각각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대리자들이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우편국에 의해 임명되었다.

2)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우편국은 설치, 작동, 정비에 필요한 기술상의 정보를 독일우편국의 자유에 맡기고 독일우편국에게 조립능력과 작동을 무보수로 교육시킨다.

3) 1.3)에서 협정된 할부액은 독일 해외무역은행 AG 베를린을 위해 독일민주공화국이 지정한 독일연방공화국 은행의 구좌에 입금시킨다.

2.4)에서 협정된 금액은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은행에 개설된 독일민주공화국 국립은행의 "S"구좌에 입금시킨다.

4) 1971년 9월 3일의 4대국 협정에 상응하여 서베를린에서 확정된 조항과 일치하는 안에서 이 협정은 연장된다.

우편 문제에 관계하는 서베를린의 주무관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해당기관 사이의 규정은 언급되지 않는다.

5) 1번에서 5번까지의 플랜트는 이런 협정의 분리할 수 없는 구성요소이다.

6) 이 협정은 서명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 1985년 3월 15일 본에서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 조혜와 독일민주공화국의 우편국 쾰펠박사는 독일어로 된 2개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주) 다음에 언급된 플랜트들이 협정 요소이다.

플랜트1: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에서 전파연결주파수

플랜트2: 전파연결의 계획, 조립 및 표정을 위한 독일우편국의 비용과 준비

플랜트3: 전파연결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우편국의 공급

플랜트4: 전파연결의 개통과 작동을 위한 원칙

플랜트5: 정비조치와 수선조치를 위한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의 공급

출처: 1985년 3월 20일 연방정부 언론 및 정보청 공보, 본.

110. 독일민주공화국과 동베를린 여행시의 신용카드

1985. 5. 6

외환관리법규에 대한 일반 재가와 1985년 5월 6일자, 1950년 7월 15일자 베를린의 미국, 영국, 프랑스지역의 지휘관들의 500번 법규(외환관리와 화물운송의 점열)에 대한 일반재가.

I

미국 국제화물회사, 프랑스지사, 미국은행 NT & SA., 프랑스지사, 비자카드서비스, 디너스클럽 독일 GmbH는 독일민주공화국과 동베를린을 여행할 때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다룬, 독일민주공화국 및 동베를린 체류협정을 체결한 외환법을 재가 받았다. 상술한 법규에 근거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은행은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위에 언급된 회사의 신용카드 소유자에게 독일민주공화국과 동베를린의 여행시 다음의 사항내에서 사용할 것을 재가한다.

1. 독일민주공화국 동베를린 내에서의 여행비용과 체류비용의 지불을 위하여, 개인적 필요에 따른 이용품목과 소비품목의 구입을 위하여

2. 총액 2000마르크까지의 상품구입을 위하여-이것 대신에 현금이 사용되지 않는 한에서 독일민주공화국과 동베를린에 이 금액은 기부된다.

3. 상업상의 향응과 접대를 위하여

II

이런 일반 재가는 그것을 공포하는 날 효력을 발한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1985년 5월 6일 독일연방은행

박사 퀴레교수

프라쓰만박사

출처 : 1985년 5월 9일 본의 연방통신

독일민주공화국과 동베를린에서의 신용카드의 사용. 1985년 5월 6일의 6001/85번 보고에 의하면 독일연방은행은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의 거주자에게 독일민주공화국과 동베를린의 여행시 그들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신용카드, 디너클럽신용카드, 오이로 카드, 그리고 비자신용카드를 여행비용과 체류비용지불을 위해 사용하도록 일반적으로 재가하였다. 이것은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립은행과 독일해외무역은행간에 지불청산에 대한 의견이 일치된 후에야 가능하여 졌다. 신용카드연합은 동독과의 필요한 계약에 따른 협정을 맺었고 여전히 이에 상응하는 협정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출처 : 1985년 5월 18일. 본의 연방통신

III

1985년 5월 10일

독일내의 청소년 관광여행을 위한 연방청소년연맹

1984년 헌법수호보고의 독일민주공화국 청소년관광여행에 대한 새로운 평가에서 독일연방청소년연맹은 독일민주공화국으로부터 독일연합공화국으로의 청소년 여행의 재개를 위한 좋은 조건을 견지하고 있다.

보고의 제출 때 연방장관 집머단에 의해 표명된 연방정부의 견해는 - 청소년관광여행을 더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는 견해 - 독일연방청소년연맹(DBJR)에 의해 환영받았다.

DBJR의장인 루돌프 헬프리흐(Rudolf Helfrich)는 재개된 청소년 관광여행을 다른 사항들에 의해 방해받아 어렵게 만들지 않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역시 필연적이라고 본에서 강조하였다.

그는 1982년 시작되어 1984년에 중단된 관광여행을 재개하기 위하여 독일민주공화국도 이제는 모든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출처 : 1985년 5월 10일. 독일연방청소년 연맹신문, 본

112. 독일내의 청소년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청년단(FDJ) (연설의 발췌문)

1985. 5. 21.

우리는 1983년 헌법수호보고에서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청소년관광여행에 관한 상이한 입장에 대해 기울이고 있는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청소년연맹의 노력과 여타 독일연방공화국청소년 단체의 노력을 예들들어 독일사회민주당(SPD)의 청년단- 알게되었다. 우리는 1984년 헌법수호보고에서 청소년관광여행의 재개에 관한 협회가 연방청년연맹과 독일연방공화국의 다른 청년단체에서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기뻐한다. 이제 우리는 1982년 연방청년연맹과 맺은 협정을 처음처럼 현실화할 가능성을 감지한다. 우리는 앞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수호가 청소년관광여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터 출발한다.

출처 :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청년단(FDJ)의 12차 회의에서의 FDJ중앙협의회회의 보고서

보고자 에비하르트 아무리히(Eberhard Aurich) 독일청년단(FDJ) 중앙협의회 제1비서관 - 1985년 5월 21일자 동베를린의 '신독일(Neues Deutschland)'에 게재되었음

113. 경계위원회의 85번, 32a 의정서각서

1985. 6. 12.

1985년 6월 12일 라제부르크의 국경위원회 석상에서 서명된,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를 관통하는 수도시설의 안전장치작업에 관한 의정서각서와 홍수의 위험시 정보교환에 관한 의정서각서가 "국경위원회"에서 인쇄되었다-1985년, 토대와 활동에 관한 기록(문서), 연방내독성 발행 본.

114. 비상업적인 지불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신용한도 규정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

1985. 7. 5.

독일연방공화국정부의 대변인인 프리트헬름 오스트차관은 1985년 7월 5일에 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985년 7월 5일에 산업 및 무역 신탁사무소는 1986년부터 199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신용한도를 8,500,000마르크결제단위에서 확정하는 새로운 신용한도 규정을 독일민주공화국의 외무성과 협정, 체결했다. 1982년 협정되었던 그 당시의 규정은 1985년말에 단기되었다.

신용한도에 있어서는 내독무역의 범위내에서 이자없이 잔고이상의 돈을 대출하는 신용이 문제이다.

이 신용한도는 30년 이상 내독무역의 원칙이 되고 있고, 과거에는 독일민주공화국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경제관계의 연속적인 확장을 관찰하면서 항상 재검토 되어 확정되었다.

새로운 신용한도규정과 관련하여 독일민주공화국과 무역에 있어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 즉, 무역은 15,000,000마르크의 불입금의 용량을 이루었고 전년에 비해 1985년에 이르러서는 1/4분기에 10%가량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90년까지 무역은 계속 증가일로에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공급구조가 생산재의 경우 - 80년 초이래 현저히 쇠퇴한 후 - 독일민주공화국의 구매증가로 계속 개선되고 있다. 고대하던 무역의 상승발전이 직면하여 신용한도는 이런 무역의 상승에 상응하여 책정되었다.

신용한도가 1986년에서 1990년까지 아마 수입의 10%보다 적은 액수일 것이다. 신용한도가 이런 무역에 특별히 강한 흥미를 가지는 우리의 기업을 위하여 내독무역에서 생산재 공업의 경우에만 안전보장이 된 가능한 손실의 위험을 줄이는 일도 일어났다. 어쨌든 1985년 7월 5일에, 동독이 1986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70,000,000마르크의 불입금을 폐쇄계 정대체로 제공하는 문제가 비상업적인 지불거래의 범위에서 독일민주공화국의 재무성과 체결되었다. 1979년 이래 독일민주공화국은 이를 위해 매년 50,000,000마르크를, 1983년 이래 매년 60,000,000마르크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불입금은 대체지불이 양쪽 방향에서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필연적이다. 이 때문에 마르크구좌를 가지고 독일민주공화국의 마르크를 지불한 독일민주공화국 거주자의 대체가능성은 우리의 경우에 권리자에 의해서 보다 훨씬 적게 요구받는다라는 것이 이에 대한 원인이다. 도중에 대체가능성은 독일민주공화국내의 마르크 구좌로부터 대체하여 마르크로 지불할 수 있다.

70,000,000마르크의 불입금은 독일민주공화국에게는 외환지불을 의미한다. 이 외환지불이 우리의 시민들에게(연금생활자, 원호대상자, 빈민구제혜택자 그리고 미성년자, 고아) 차후 5년동안 3개월마다 600마르크씩 독일민주공화국내의 그들의 예금으로부터 대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까지 매년 대략 300,000명이 이런 가능성을 이용했다.

과거에 차감계산량에 부족액이 생겼었기 때문에 독일민주공화국으로부터의 대체에 대한 법안들이 지금까지 6개월에 이르도록까지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독에 의한 불입금의 상승은 이런 "대기실"을 차후에

없애고, 그것으로 해당인적범위를 위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올해 말에 원유와 석탄·역청탄의 공급 및 광유산출물의 구입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략의 협정이 완료된다. 그 때문에 산업 및 무역 신탁사 무소(TSI)와 독일민주공화국 무역 성간에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 동안 새로운 원칙 위주의 외곽협정이 체결된다.

이런 새로운 외곽조약은 공급과 구입을 위한 기본량을 매년 계획한다. 이런 기본량을 능가한 양에 대해서는 매년 - 또한 생산재의 범위에서 독일민주공화국의 구입을 고려하여 - 4월 30일까지 토의된다.

독일민주공화국은 이미 석탄·역청탄, 코르크스에 대한 추가적인 필요량의 수입을 우선적으로 연방정부의 소득에 의해 지불할 것을 선언했다.

출처 : 1985년 7월 9일 연방정부 언론 및 정보처 공보, 본.

-신용한도-

베를린 협정의 VIII조항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베를린 협정의 VIII조항에 맞는 금액은 1986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매년 850,000,000마르크의 불입금으로 확정되었다.

1990년 신용한도 속행에 대하여 토의될 것이다.

출처 : 1985년 12월 18일자 본의 연방통신. 연방경제성장관의 성명에서 발췌.

1985년 8월 12일의 특정 경우에 있어서 연금대체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재무장관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재무장관간의 1974년 4월 25일자

협정을 위한 1978년 11월 16일자외정서의 1985년 7월 5일의 문서교환
고시 -

1985년 7월 5일 베를린에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위임자
간의 문서교환에 의해 특정의 경우에 있어서(BGBI. 1974. II.S.621)예금의
대체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재무장관사이의 1974년 4
월 25일자 협정을 위해 1978년 11월 16일자 외정서각서의 속행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정은 1985년 7월 5일에 그 효력을 발하게 된다.
협정은 다음에 공개된다.

이런 고시는 1982년 8월 13일(BGBI. II.S.776)의 고시와 연결된다.

1985년 8월 12일 본.

재무장관 한스 티트마이어박사

발신인:독일연방공화국의 상주대표부 대표

국무장관 한스 오토 브로이터 감박사.

베를린 1985년 7월 5일

수신인:독일민주공화국 재무부

국무장관 발터 지게르트박사.

베를린

친애하는 지게르트박사께

본인은 귀하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삼가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1. 특정 경우에 있어 예금 대체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재무장관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재무장관간의(1974년 4월 25일) 협정을 위한 1978년 11월 16일의 의정서각서의 1번에서 3번까지의 해당규정을 1986년부터 1990년의 기간동안 속행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1986년부터 1990년 동안의 기간동안 독일민주공화국이 매년 70,000,000마르크를 특정경우에 있어 예금의 대체를 위하여 매년 1/4분기 초에 동일한 비율의 금액으로 현 손익청산제정에 불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으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대체는 독일연방공화국으로부터 독일민주공화국으로의 대체를 매년 대략 70,000,000마르크 가량 초과하는 것을 계속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 규정의 속행에 대한 회담은 1990년에 속행될 것입니다.

경의를 표하며

브로이티감박사.

답신

독일민주공화국 재무성차관

베를린 1985년 7월 5일

독일연방공화국의 상주대표부 대표

한스 오토 브로이티감박사

베를린

친애하는 브로이티감박사님

본인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삼가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1. 특정의 경우에 있어 예금의 대체에 대한 독일민주공화국재무장관과 독일연방공화국 재무장관간의(1974년 4월 25일) 협정을 위한 1978년 11월 16일의 의정서 각서의 1번에서 3번까지의 해당규정을 1986년부터 1990년 기간동안 수행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 1986년부터 1990년 기간동안 독일민주공화국이 매년 70,000,000마르크를 특정의 경우에 있어 예금의 대체를 위하여 현 손익청산계정에 불입하게 될 것입니다. -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으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대체는 독일연방공화국으로부터 독일민주공화국으로의 대체를 매년 대략 70,000,000마르크 가량 초과하는 것을 계속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 규정의 수행에 대한 회담은 1990년에 수행될 것입니다.

경의를 표하며

지게르트 박사

출처 : 1985년 8월 29일 BGBLII, S.1079

115. 통과무역의 개선에 관한 협정

1985. 8. 15.

독일연방공화국의 교통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베를린과 히르쉬베르크간 남쪽의 경유고속도로에서의 그리고 드라이런데의 국경통과지점으로 가는 베를린 순환도로의, 부분적으로 위험을 내재한

막대한 교통으로 인한 손해는 독일민주공화국에 의해, 1986년에서 1987년 사이에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선되었다. 이것은 독일민주공화국의 교통부와 독일연방공화국의 교통부간의 협정으로 비로소 해결될 수 있었다. 1985년 8월 15일 알프레트 바이어차판과 하인츠 슈미트에 의해 본에서 서명된 문서교환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협정되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베를린 순환도로의 압츠바이크 드레비쯔지점과 드라이린데의 국경통과지점 사이의 약 5km에 걸친 부분구역을 포함한 히르쉬베르크의 국경통과지점과 트리프티스사이의 유통고속도로의 약 41km에 달하는, 또한 훨씬 짧은 구간의 근본적인 복구를 실행한다.

통과무역을 지금까지보다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독일민주공화국은 그밖에 히르쉬베르크의 국경통과지점 전 지역에 있는 교통망을 확장시킨다.

협정에서 독일민주공화국의 지역에 우세하게 걸쳐 있는 잘레강 다리의 차도에 대한 근본적인 복구는 독일연방공화국의 회사에서 행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체결될 수 있었다. 이때 도로공사에 의해 청부가 이루어진다.

막대한 손해와 지방의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독일민주공화국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토목공사에 독일연방공화국은 148,000,000마르크의 공정가격으로 참여한다. 청구된 지불의 외무는 입법단체에 의한 예산법상의 전권위임의 유보하에 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채굴기계와 장비를 30,000,000마르크의 가격으로 사들일 것이다. 내국무역은 이런 금액으로 확대되었다.

서독지역과 서베를린 간의 통과무역지역은 베를린 - 히르쉬베르크의 이용으로 불충분하다. 1985년 8월 15일의 협정에서 근본적인 복구와 개선이 계획된 선로구역은 베를린 통과무역에 의해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해진 건축규범이 베를린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우리의 경제와 노동시장은 존넨란트지역에서 이익을 얻는다. 근본적인 복구로 남독과 베를린 사이의 무역에서 증가되고 있는 손해는 제거된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여기에 제시된 특별한 상황에 근거하여 안전보장에 대한 관심으로써, 그리고 무역을 수월하게 하고자 근본적인 복구에 비용을 지불하는 데 참가할 것을 확정하였다. 그렇지만 독일민주공화국이 통과협정에 근거한 그 의무의 실행에 상응하여 통과통로를 독일민주공화국의 비용을 들여 정비하여 줄 것을 독일연방공화국은 요구하였다.

1985년 8월 15일의 협정은 독일민주공화국과의 공동작업의 여타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1985년 8월 15일의 협정은 모스크바에서 1985년 3월 12일에 독일연방공화국 수상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서기장 호네커와 대화에 의해 동독일연방공화국 관계를 진행시켰던 활동에 관련되며 그리고 인간의 복지를 위해보다 광범위한 결과를 자아냈던 활동에 관련된다.

건축상의 규정과 재정상의 업무에 관한 문서교환

1985년 8월 15일 베를린

독일민주공화국 교통부장관

독일연방공화국 교통부 차관. 알프레트 바이어씨

친애하는 바이어씨!

독일민주공화국정부의 위임에 따라 본인은 귀하에게 다음의 사항을 삼가 알리는 바입니다.

1. 독일민주공화국정부는 - 통과무역의 개선을 위하여 - 다음의 건축상의 규정은 귀하에게 오늘 넘겨진 업무명세서에 맞게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 히르쉬베르크 근교의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정부의 국경 243.4km와 225.0km지점 근방에 있는 연결지점 쉬라이프 사이 고속도로의 부분적인 복구
- 225.0km지점 근방에 있는 연결지점 쉬라이프와 202.3km지점 근방에 있는 트리프티스 연결지점 사이 고속도로의 부분적인 복구.
- 히르쉬베르크의 국경통과지점 교통망의 확대
- 압츠바이크 드레비츠와 베를린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경계 사이에 위치한 고속도로 부분차도의 근본복구. (0.2-4.0km와 0.2-5.8km까지)
- 드레비츠의 국경통과지점 근방의 16.0km와 16.2km지점 근방에 있는 서베를린과 동독의 국경 사이의 근본 복구.

2년 4개월의 준비기간과 건축기간이 계획되었다.

1985년 9월 15일에 준비되었던 건설작업은 1986년 1월 15일에 시작된다.

2. 독일민주공화국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가 148,000,000마르크의 비용으로 1번에서 언급된 건설시행에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언급된 금액은 공정가격으로써 이해된다.

3. 히르쉬베르크 근방의 잘레강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차도의 근본 복

구는 양도한 업무명세서에 맞게 독일민주공화국 교통부의 발송과 부담의 원칙 위에서 그리고 독일연방공화국의 자국회사들 통한 독일연방공화국 교통부의 지불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다. 계획과 건설의 실행은 독일민주공화국 교통부와 위임자와 국가시공관리에 의해 재가, 관리, 검사를 받는다.

독일민주공화국정부는 위에 언급된 사업의 실행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행지역중의 한 부분을 상황에 맞도록 일시적으로 이용할 것을 허락한다.

기술적인 세목 및 무역실행의 필요한 조치는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이 교통부의 위임자에 의해 그 의견의 일치에 이루어진다. 경의를 표하며,

슈미트박사.

교통부장관, 국방장관

독일민주공화국의 교통부차관

하인쯔 슈미트박사

베를린

친애하는 슈미트씨!

본인은 어제의 귀하의 서신에 관련하여 독일민주공화국정부의 위임을 받고서, 독일연방공화국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정부간의 1971년 11월 17일의 협정을 참조로 하여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 사이의 시민 및 양질의 물건의 통과교역에 관해 귀하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정부는 다음의 건설사업의 실행을 위한 오늘의 귀하에 서신에 상응하여 통과무역의 개선을 고려한 148,000,000마르크의 금액을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당국에 지불할 것입니다. 건설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쉬라이프와 히르쉬베르크 225.0km 근방에 있는 연결지점 및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경지역에 있는 243.4km지점 사이 고속도로의 부분적인 복구- 쉬라이프의 225.0km 근처의 연결지점 트리프티스의 202.3km 근처의 연결지점사이 고속도로의 부분적인 복구
- 히르쉬베르크의 국경통과지점 교통망의 확대
- 압즈바이크 드레비츠와 독일민주공화국과 서베를린 사이의 고속도로의 부분적인 복구(0.2~4.0km까지, 0.2km~16.2km까지)
- 드레비츠의 국경통과지점 근방의 16.0km와 16.2km지점 근방에 있는 독일민주공화국과 서베를린 국경사이 고속도로의 부분적인 복구.

2. 148,000,000마르크에 달하는 금액이 다음의 할당액으로 지불됩니다.

- 1986년 1월 15일의 건설작업 개시 때 23,000,000마르크 지불한다.
- 1986년 6월 30일과 1987년 6월 30일에 그때마다 각기 50,000,000마르크씩 지불한다.
- 1988년 1월 15일 25,000,000마르크를 지불한다. 그렇지만 건설작업의 종결때는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일연방공화국정부는 1986년부터 건설작업의 진행이 순조롭게 행해지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협정된 할부금액은 독일의 해외무역은행을 위해 독일민주공화국에 의해 정해는 독일연방공화국 은행의 구좌에 입금된 것입니다.

3. 히르쉬베르크 근처의 잘레강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다리의 근본적인 복구는 귀하의 오늘 서신에 언급된 전제 조건하에서 우리측의 회사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의를 표하며

바이어

<서명에 즈음한 성명>

구두를 통한 성명에서 독일민주공화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했다:

- 독일민주공화국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30,000,000마르크의 가격으로 건설기계와 건설장비를 독일연방공화국으로부터 추가로 사들일 것이다. 지불은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 국립은행 "S"구좌로 이루어진다.
- 실행명세서의 입장에 의해 뜻밖의 변화가 필요해진 경우에는 양측의 위임자간의 대화가 선행된다.
- 이것은 계획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변화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의 실행時 뜻밖의 필요한 것으로서 증명된 정확한 규범을 위하여 필요하다.
- 연방교통부에 건설사업에서 건설의 진행에 대하여 알린다.

<실행명세서>

히르쉬베르크와 트리트티스 연결지점 근처 국경선 사이의 근본적으로

잘 복구된 고속도로는 연장 41.1km이다. 고속도로는 24m너비의 횡단면을 유지하며 24cm두께의 시멘트로 되어 있다. 근본 복구는 내부에서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다. 전체 두께는 대략 70cm정도이다. 부분적으로 위험이 있는 재료는 교환할 수 있다.

고속도로 구역에서 47개의 고속도로 다리가 있다. 이 47개의 고속도로 다리 중 36개가 기본적으로 정비될 수 있고 대략 11개의 부분적으로 복구될 수 있다. 고속도로 양쪽에 있는 3개의 현 공원자리는 새로운 차도를 내기 위해 보존되고 있고 새롭게 조성된다. 공원자리는 새로 설계된 5개의 연결자리는 새로운 차도수준과 동등하게 할 수 있다.

고속도로 차도에는 두꺼운 방어용 판자와 2~3km거리마다 비상호출기 등이 세워질 것이다.

히르쉬베르크의 국경통과지점에서 베를린 방향의 교통망은 550m 길이로, 3.50~10.00m 너비의 구간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서 4~7m의 제방을 쌓는 일이 필요하다.

드레비츠와 드라이린데 사이의 국경통과지점 그리고 베를린 순환도로 압즈바이크 드레비츠지점 및 드레비츠의 국경통과지점 사이의 지역 내에서 10.6km의 방향차도가 근본적으로 복구된다. 고속도로는 어쨌든 24m의 폭이며 시멘트 콘크리트차도는 26cm의 두께를 유지한다. 정해진 구역에서 역청모양의 건설방법이 예견된다. 압즈바이크와 드레비츠의 국경통과지점 사이에 7개의 고속도로 다리가 정리된다. 2개의 다리건설에서 교량구축부분은 부분적으로 복구된다. 현행의 좁은 통로는 어쨌든 정리

할 수 있다. 고속도로 양쪽에 위치한 공원자리는 확장된다. 일치하는 도로구간은 보호벽이 설치되어 있고 측면지역에 있는 2~3km의 구간에는 비상호출기등이 설치되어 있다.

히르쉬베르크 근교의 잘레강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다리의 경우 교량 각을 포함한 현 콘크리트 다리가 축량되면서 복구될 수 있다. 동시에 강철로 된 보호벽이 설치된다.

각각의 부분지역에서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매 방향마다 차량통행은 계속된다.

출처: 1985년 8월 16일 연방정부 언론 및 정보청 공보, 본.

116. 화학무기 방지지역에 관한 연방수상 헬무트 콜과 독일 민주공화국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의 서신

1985. 9. 12

친애하는 연방수상께!

중부유럽 내의 평화와 긴장에 대한 책임과 우리의 국민 및 유럽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책임을 올바르게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게 무기감축과 군비의 제한에 공동으로 기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화학무기의 금지와 폐지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적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가입국 및 여타 국가들은 이

를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과 소련 정부는 이런 문제에 상응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고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다음사항들을 의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과 소련정부는 화학무기 제거를 위한 실제가능성, 특히 화학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유럽내 지역의 조성에 관한 실제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역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의 폐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또한 유럽지역에 더 높은 위험도를 지닌 신형무기, 무엇보다도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SED(독일민주공화국 통일사회당)와 SPD(독일연방공화국의 사회 민주당) 간에 이루어진 회담에서 화학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의 조성의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담화는 귀하가 숙지하고 있는 정치적 발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화학무기는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험한 대량인명 살상무기입니다. 이런 화학무기의 폐기와 완전한 제거가 외면상으로 볼 때 절박합니다. 전 세계의 힘을 합친 긴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독일민주공화국과 소련정부가 화학무기의 개발 및 제조 그리고 배치의 금지와 그 폐기에 대한 포괄적인 회담을 주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두 정부는 화학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의 조성에 관한 지역적인 협정이 신뢰구축의 구체적인 단계이며 이런 종류의 무기의 세계적인 금지를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단계들의

미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부터 독일민주공화국과 소련정부는 우리 두 군사 정책상의 동맹국 사이의 국경선에 접해 있는 국가들에 대한 화학무기의 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해 독일연방공화국정부와 협정을 맺을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으로써 독일민주공화국과 소련은 - 서독의 이웃 국가들보다 - 중부유럽내의 무기 감축으로 인해 평화와 안보의 보증에 구체적인 일보를 내딛게 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양쪽 정부에 의해서 제기된 제안이 적절한 협정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협정은 화학무기 배치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자유롭게 할 목표를 가진 공동긴장을 위해, 그리고 유럽내의 안전보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더욱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독일민주공화국정부와 소련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해 우리 세 국가를 포함하여 화학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의 조성에 대한 협정에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독일민주공화국과 소련은 이 협정에서 우리의 생각을 이런 문제권에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과 소련은 독일연방공화국이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제안과 숙고된 사항을 제기하게 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고, 화학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의 조성에 대한 협정에 관심을 가진 여타 국가의 동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며 이런 문제에 관한 토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 필요한 협상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117. 국경위원회의 82 a번 의정서각서

1985. 9. 26

1985년 9월 26일 가르미쉬 - 파르텐키르헤의 국경위원회 회의에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사이에 있는 국경이정표의 관례적인 검사에 관한 의정서각서는 1985년 본의 내독성의 출판으로 - 토대와 활동에 관한 국경위원회 - 문서로서 인쇄되었다.

118. 독일통일사회당 서기장인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의 서신에 대한 연방수상 헬무트 콜의 답신.

1985. 9. 27

독일민주공화국정부와 체코정부가 화학무기에 대한 회담을 개최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제안한 1985년 9월 12일자 귀하의 서신을 본인은 관심을 가지고 받아 보았습니다. 서독정부가 "젠프 무기 감축회담"의 광범위한 무기금지협정에 찬성한다는 것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던 구체적 제안들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귀하는 숙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본정부는 1982년 포괄적

인 검증 모델을 회담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서독정부는 1979년과 1984년 전문가와 외교관들이 참석했던 “겐프 무기 감축회담”의 검증문제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정부는 또한 1985년에 전세계적인 화학무기금지협정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 기울였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정부는 이런 노력의 계속적인 수행에 있어 양자택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무기감축과 무기조정 교섭에서 공동의 해결책을 찾는 서독정부의 정책에 동의하면서 본인은 우리 대표단이 전세계적인 화학무기금지협정의 미해결 문제들 여전히 대상으로 하는 “겐프의 무기감축회담”에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런 중심문제의 해결을 공동으로 지지하는 동안은 독일연방공화국정부는 현행의 “겐프회담”의 요구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1985년 10월 1일 정부의 언론, 및 정보청 공보, 본.

119. 평화를 위한 독일의 공동작업

1985. 11. 3

연방장관 하인리히 쾨넬렌은 독일인의 영토에서 부터 평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내의 양국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이런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에 대한 우리의 공동소망을 느끼고 있다.”

연방대통령 리하르트 폰 바이츠게커(Richard von Weizsacker)는 5월 8일의 회담에서 평화를 공식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

“독일인은 모든 국민을 위한 인권과 정의를 내포하고 있는 평화를 공동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독일국민 보다도 평화의 보존과 그 보장에 더 강한 관심을 가진 국민은 없다. 이는 독일내 양국가 사이의 국경선에 양국의 군대들이 서로 직접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내에 무장충돌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우리의 국토가 그 첫 싸움터가 될지도 모를 일이며, 아마도 독일국민은 자신들의 존립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특별한 역사의 경험 때문에 독일인들은 평화에 대한 공동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

독일인이 오늘날 비록 정치적 차이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차이가 존재하는 대치적인 입장이 두국가, 즉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나뉘어 살고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책임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정치적 이성은 이런 책임공동체의 의미 안에서 평화를 이룩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정부에게 요청하고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이를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연방정부는 모든 각각의 독일정책을 오래 전부터 전체 유럽의 평화정책에 대한 기여로써 이해하고 있다. “하나로 된 유럽의, 동등한 권리의 구성원으로써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독일국민의 의지를 강조하는 우리의 기본법 전문의 범위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독일민주공화국과의 기본조약은 평화를 위한 독일인의 공동작업의 사상을 지지하는 공식화를 포함하고 있다. 평화유지를 위한 공동책임은 전문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제5항에서는 유럽 국가간의 평화적 관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과 유럽 내의 안전과 공동작업을 위하여 기여할 것을 동 서독 양국의 의무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양국은 현실적으로 이런 사명을 분명히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실현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평화를 위한 독일책임공동체는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독일인임을 과시하는 인상이나, 독일인은 믿을 수 없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행동은 동서방의 국가들에게 의심과 불신을 일으키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틀안에서 독일인의 기여는 가능하고 실현될 수 있을까?

고인이 된 국방장관 알로이스 메르테스(Alois Mertes)가 착수했던 현명하고 타당한 방식을 생각해 보자.

그에 따르면 평화정책은 항시 2가지 범위, 다시 말해 평화의 유지와 평화의 조성이라는 범위가 있다. 토론에서 어떤 기여가 행해졌느냐에 따라 평화를 위한 독일인의 기여가 상이한 결과가 된다는 것은 틀림없다.

평화유지는 우선적으로 군사적인 균형의 유지와 방어능력의 유지를 준비해야 하는 군사·정치적인 과제이다.

이런 과제는 연합의 틀 안에서 해결되어야만 한다. 독일 내의 양 국가는 연합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라는 사실때문에 모든 독일

인의 특별한 역할은 숙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독에 있어서 이것은 어쨌든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동독이 안전보장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련의 원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연방공화국 또한 안전보장 정책상의 독자노선을 걸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안전보장 정책상의 독자노선은 명백히 우리 국가의 이익에 - 게다가 안전보장 정책상의 관점하에서 뿐만 아니라, 독일정책상의 관점하에서도 - 상치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유와 안전보장의 유지가 다른 무엇보다도 뚜렷한 우위성을 지니며, 다른 한편으로는 활력있는 독일정책이 우리 서방연합의 확고한 원칙에서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방국들의 충실한 실행이 필요하다.

의심할 바 없이 확실한 우리 연합국들의 충실한 실행이 분열상태에 빠지면, 독일민주공화국과 우리 독일연방공화국의 관계는 극단적인 불신의 눈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이런 정책과 우리의 행동 반경을 위한 우리의 우방국들의 원조를 잃게 될 것이다. 어느 국가도 - 자국의 이익을 제대로 고려한다면 독일민주공화국 또한 -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갈등을 느끼면서도 서독의 자유와 안전보장의 유지를 우위에 두고, 또한 동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독일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독관계와 우리 연합국의 충실한 실천에서 야기되는 갈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만 할 것이다. 모든 사항들을 확실히

규정하는 것은 내독관계에 대한 우리의 안전보장정책과 연방정책이 영향을 받기 쉬울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이르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의 안전보장정책과 내독관계를 반목시키려는 노력들은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저해하고, 우리 독일정책에 후퇴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생산적이라 할 수 있다.

역으로 위와 같은 것은 독일민주공화국을 위하여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정책에서 동맹국으로써 독일민주공화국의 충실도를 시험하거나 의문시하는 모든 시도들도 중단한다.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이 우리의 일치하는 행동을 취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내독관계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한 활동공간은 양국, 즉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쌍방에 있어 동맹국으로서의 충실한 태도에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 유지될 수 있다. 군사장비를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상호간의 안전보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군비감축과 군비조정을 동맹체 속에서 동서독이 지지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며 필요한 일이다.

동서독이 국제군비조정회담에 활동적이고 조직적인 기여를 하는 것 역시 옳은 일이며 필요한 일이다. 모든 이런 문제에 관한 독일 내의 의견교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또한 당연히 의미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독일 내의 의견교환은 이해를 전달하고 자극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직접적인 독일의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 성과없는 토론과 주제로 내독간의 대화를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것은 쓸데없고 필요없는 일이다. 나는 그 예로서 화학무기와 핵무기 지역에 대한 진전없는 회담과, 혹은 전략적인 중거리 무기를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겐프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회담의 대상은 미국의 전략방위계획(SDI)이다.

이런 모든 문제는 미국과 소련 양대 강국 사이에서 그리고 양국의 군사적인 동맹국들 사이에서 결정된다. 이런 모든 문제는 독일 내의 양국가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것을 말하는 자는 현실적인 손해를 당할 것이며 이것은 위험한 정책에 관련된다.

미·소 양국은 평화에 도움을 주지 않을 뿐더러 내독관계에 불이익을 초래한다.

그렇지만 평화의 유지는 동맹의 틀 안에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하나의 과제이다. 평화의 유지는 연합국의 도움을 벗어나서는 특별한 길을 찾을 수 없다 서방연합의 우리 동맹국과 함께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위협에 대항하는 공동자유가치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보 동반자관계에 있다.

우리는 서로의 안전보장기구에 대한 동구국가와의 회담을 이런 동반자 관계의원칙과 틀 안에서 지지한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이런 입장은 독일민주공화국에 의해서도 고려되어야 만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맹국 독일민주공화국의 입장을 고려해야만 한다.

동반자관계의 평화유지가 연합국 내에서 유지된다면, 평화유지체제의

한계와 동맹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리를 건설할 수 있고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더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평화상태는 대화, 상호이해,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로 이루어진다. - 간단히 말하자면 긴장의 원인을 제거하고 신뢰관계가 회복될 때 평화상태가 조성된다. 동서유럽의 양측 관계를 보다 진전시키고 평화상태를 동서관계의 개선을 위한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평화상태가 보다 굳건해지는 것은 중요하다.

양국은 이와같은 많은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과제에 협력할 것은 특별히 요구받았다. 왜냐하면 동서국은 평화상태의 조성을 위해 유리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나름의 구체적 상황에서 평화를 굳건히 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역사적 상황과 책임은 독일인에게, 평화를 위한 공동작업의 범위에서 주어진 가능성을 이용할 의무를 지운다. 독일내의 양국가는 모범적으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당연히 행해야만한다. 전유럽안보협력회의의 최종법령 및 기본조약의 정신과 조문에 상응하는 동서국 관계의 형성에 의하여 해야한다. 그러한 공동작업이 믿음만 하다면, 그 공동작업은 우리에게 있어 명백해야만 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평화의 조성에 도움을 준다. 이것이 우리 노력의 주요동기가 되어야만한다.

스스로 직접 평화를 확고히 한 사람만이 평화의 유지에 틀림없이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평화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것들이 완전한 평화의 정치적 정신적 원칙을 강하

게 뒷받침하고 있다. 평화의 유지란 특히 젊은이들에게 있어 친구와 적의 사상 대신에 관용성을 받아들이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고와 생활의 군사화의 포기를 의미한다. 인간에게 중오를 가지도록 교육하고 적대심을 품도록 교육시키는 행위가 이념상의 적대관계를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오심과 적대감을 가지거나, 가지도록 교육시키는 자가 평화에 대한 진지한 열망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현행의 이념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을 부정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현행의 이념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곡해하는 것이다. 갈등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갈등은 제거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일은 이념과 의견의 평화적인 논쟁으로, 그리고 전쟁의 갈등 해결에 관한 모든 사상을 존중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평화를 굳건히 하려는 이런 의식적인 태도가 아마도 독일인에게 적합할 것이다. 또 이것은 독일인의 명성을 세계에 떨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어떠한 국가의 평화유지를 위한 테스트는 특히 한 국가가 자국의 국민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는지, 그 국가가 어떤 개인적인 평화의 공간을 국민 개개인에게 남겨 놓았는지, 그들 국민에게 이주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지, 어떤 정치상의 협력관계가 유지되는지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상을 토대로 볼 때 유엔인권협정과 헬싱키의 최종 의결의 요구를 존중하여 현실화시키는 작업은 중요한 일이다.

이런 작업은 양국가들 가르지르고 있는 국경의 주변 상황을 위해 서로 물론 필요하다. 국경 근처의 평화롭지 못한 상황들은 평화를 위한 공동작업 및 이웃 국가들로 선린관계와는 상치되고 있다. 이 국경에서는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군사동맹이 서로 부딪힐 수도 있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런 국경 근처에서의 분쟁은 더이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간의 교류와 정보, 의견의 교환에 대한 평화적인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서로를 더 잘 알면 알수록, 또 서로에 대하여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서로 대화를 자주 나누면 나눌수록 상호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는 양국의 정치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국민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어느 곳에서나 장소를 초월한 인간들의 폭넓은 만남과 극히 다양한 동기와 목적을 위한 인간들의 폭넓은 만남은 평화를 추구하는 독일의 공동작업을 위한 하나의 절대적인 전제이다. 이런 전제는 인간들 스스로에 의해 실행될 때만 꽃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정치가들의 자신에 찬 대화와 모든 전문분야 전문가의 경험의 교류 외에도 인간들의 개인적인 만남이 필연코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만남은 완화되어야만 하고 의도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학급, 단체 그리고 여타 그룹들은 서로 만나야만 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각각의 연령층을 위한 관광객 자격으로의 여행이 가능해져야만 하고 양국의 동반자관계가 연결되어야만 한다.

인간들의 서로 만남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면, 환상에는 하등의 경계도 당연히 없어야 한다. 인간들은 서로 더 잘 알게 되면 될 수록 그리고 서로가 이해하게 되고, 서로 우정을 맺게 되면 될 수록 그들이 상호간에 상대를 향해 충부리를 겨누고자 하는 일은 더욱 더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평화를 추구하는 독일의 공동작업의 궁극적인 성과일 것이다.

국가들은 평화조성에 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들간의 상호교류를 쌍방에서 완전하게 해야 한다. 이때 양국관계를 전고히 하는 작업과 그 관계를 확대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며 최대한으로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경제, 환경보호, 문화, 학문, 과학기술, 등등- 쌍방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작업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내의 양국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목표는 점점 긴밀해지는 내국 공동작업의 조직을 통해 국경의 군사적 갈등이 더 이상 없도록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면 질수록 이런 조직을 강력하게 해체하려는 경향과 그런 능력도 점점 사그러들게 된다.

어쨌든 평화는 비군사적 방법으로, 즉 현존하는 무기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공동작업에 의해 굳건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다. 공동작업은 동시에 군사적인 탈진장을 위한 -무기감축과 군비조정같은- 유리한 전제도 만들어 낸다.

무기는 동서의 긴장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적인 불신과 당

면한 긴장의 표현이며 결과일 뿐이다. 긴장을 제거하는 사람, 대결을 공동작업으로 대치하는 사람, 신뢰를 조성하는 태도에 의해 불신을 극복하는 사람, 그리고 적어도 제한된 믿음만이라도 만들어내는 사람이 무기감축회의를 성공시킬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것이 독일 내의 양국가에서 실제로 독자적인 직속권능으로 행할 수 있는 무기감축정책에 기여이다. 우리 독일인은 바르샤바조약과 NATO의 무기감축 위에 존재하는 직권도 가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바르샤바와 NATO) 전략적인 결정 안에 있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및 NATO의 핵무기를 후견하는 직속권능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모든 국가들을 위한 하나의 예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동서의 분위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체 정세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향이 점점 활동적이 되면 될수록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은 동서관계에 점점 모범적이 된다.

평화를 위한 독일의 공동작업에 관한 제안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이 제안이 동독에 의해 긍정적으로 수용되기를 희망한다.

출처 : 1985년 12월 6일 연방정부의 언론 및 정보청 공보, 본.

120. 문화재의 교류: 법률수행인법 - 청산법의 변경과 논증

1985. 12. 19

1985년 12월 19일의 배상금 변경과 법률수행인법 및 청산법의 변경에 관한 연방법률

2

법률수행인법-청산법의 변경

1965년 9월 6일의 법률수행인법-청산법에 27절 4항2이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BGB1.IS.1065)

“규정이 개인과 장소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 내무장관의 결정의 토대 위에서 실행될 때, 각각의 문화재의 신탁관리가 끝난다는 점에 상응하여 1절과 3절의 규정이 유효하다”

출처: BGB1. 1985년 12월 24일 s.2460.

배상금변경법과 법률수행인법 청산법에 관한 연방법률초안 논증
2항 (27절 4항2)

독일내의 양국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에는 전쟁과 전후의 사건과 관계된 오래된 문화재가 있다. 이 문화재는 지금까지 그때 그때의 다른 독일 도시 내에 있는 원래의 소재지로 환원될 수 없었다. 1975년 7월 25일의 “프로이센의 문화유산관리 재단설립에 관한 법률(BGB1. IS.84)과 1971년 9월 3일의 공고 96, 연방판매법률 i. d. f.(BBGB1. IS.1565)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다. 한자도시인 뤼벡, 함부르크, 브레멘 그리고 마인츠의 기록물들 중 가치있는 보관물은 반송되어야만 한다.”

이 문서들은 현재 독일민주공화국내의 문서함에 있는 코플렌츠 내의 연방문서에 신탁으로 보증되어 있는 쉬베린과 오라니엔바움내의 문서로 된 기록물들은 독일연방공화국에 있다.

법률수행인법과 청산법의 27절 4항은 -문화재가 1937년 12월 31일 독일제국의 국경내에 소재하고 있던 때, 지역단체의 경우- 법률수행인법과 청산법이 유효한 지역 밖에 있는 공공법률단체와 기관, 재단에 의하여, 법률수행인법과 변경법의 유효지역에 1965년 10월 31일 까지 맡겨진 문화재의 유지와 보존에 관해 프로이센의 문화유산관리 재단을 통하여 그 신탁통치를 규정한다. 27절 4항은 독일의 재통일의 틀안에서 법률에 의거하여 궁극적인 규정을 정하거나 1952년 3월 26일의 독일조약의 7항의 의미에서 평화적인 규정을 정한다.

이런 법률상황에서 연방정부는 문화재 환원의 규정에 관한 제안을 상세하게 독일민주공화국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다. 상호의 원칙에 대한 조치가 절박하게 요청된다. 상호의 원칙에 대한 조치는 오래전에, 그리고 현재도 독일민주공화국에 보존되어 있는 문화재를 다시 기대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지역단체 및 기관에 의하여 특별히 요구된다.

법률수행인법과 청산법의 27절 4항 2의 개정은 연방 내무장관이 독일민주공화국으로의 인도를 동의할 때, 지금까지의 결과를 넘어서

각각의 문화재에 대한 신탁관리를 결정짓는 길을 열어 준다. 문제의 문화재의 반환 가능성은 분단 독일 내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다. 반환에 있어서는 쌍방의 이해 안에서 조치가 가능하다. 이때 쌍방의 원칙이 중요시 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교환에 필요한 비용은 보잘 것 없다. 연방지역에 근거를 둔 지역단체와 기관들은 철저하게 비용의 지불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변경 내용은 단일가격과 가격의 수준 특히 소비가격의 수준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출처 : 독일연방의회. 1985년 7월 15일의 인쇄물 10/3651.

121. 국경위원회의 86번에서 88번까지의 의정서각서와 66a 의정서각서.

1985년 12월 5일

1985년 12월 5일 국경위원회의 회의에서 서명된 “검은 연못”의 비데 안슈타우에 관한 의정서각서, 에커페른 수도사업의 총점점 수리에 관한 의정서각서 구조계표로써 튀백의 만곡에 있는 등부표와 표본의 변화로 인해 이츠 지역에 건설된 홍수방지댐 등, 이런 것들에 관한 동서독 사이의 한계설정을 다룬 의정서 등이 토대와 활동에 관한

기록문서로서 인쇄되었다

출처 : 내독성 발행 1985. 본.

122. 양독관계에 대한 독일통일사회당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와의 인터뷰

1986. 1. 30

짜이트지 : 소련의 서기장과 미국의 대통령 간의 제네바 회담은 양독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호네커 : 우리가 고무적이며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 들이는 제네바 회담과 이 회담의 결과들은 인류 전체에 대해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핵파멸을 막고, 지구상에서의 군비경쟁을 종식시키며, 세계 도처로 군비경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려는, 주요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유럽,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등의 평화적 미래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잃는 것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볼 것입니다. 제네바 정상회담의 결과에 해당되는, 군비축소를 위한 첫걸음은 독일 땅에서의 군비확장을 정지시키고, 보다 큰 안전을 확보하며, 훨씬 적은 무기로 평화를 일구어 내는데 알맞는 것 같습니다. 좀더써, 아시다시피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2000년 까지 핵무기로 부터 세계를 해방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완

전히 동조함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서 역사적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받은 깊은 인상을 비전의 대담성뿐만 아니라, 특히 이 프로그램이 양측에서 일치되는 그런 접근을 할 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표상이 진지하게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우는 그들이 이 큰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일에 기여하겠다고 결심할 때 뿐입니다.

소련은 지금 제안된 프로그램으로써, 이것을 우리세기의 프로그램이라 부를 수 있는데, -평화보장의 길에 나서려는 그들의 확고한 의지를 새로이 증명한 것입니다. 유엔 세계평화의 해가 시작될 때 공표된, 군비축소를 위한 이 세계적 구상을 이용해서, 다가오는 모든 시대를 평화의 해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인류와 인류의 진보를 위해 폭력수단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인민들은 사실상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네바 정상회담으로 부터, 국제정세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생겼습니다. 이 회담의 결과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국가, 정부, 정당, 및 사회세력들이 핵군축의 길을 닦는데 도움을 주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양독에 대해서도 역시 평화를 위한 양독의 책임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양독의 국민 및 전체 인류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활동적으로 일할 가능성들이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짜이르지 :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은 서로 다른 동맹에

확고히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독이 양 사회체제와 군사동맹의 경계선을 형성함으로써 인해서 특별한 책임과 특수한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책임, 이 관심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요?

호네커 : 사실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이의 민감한 경계선에 위치한 양독의 처지로 인해 전보다 더욱 커진, 특별한 책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로부터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민의 삶에 있어서 끔찍스러운 양차대전이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제3차 대전, 즉 핵지옥은 인류의 자기말살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살상용 무기가 중부 유럽에서와 같이 많이 집중된 곳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양독의 경우엔 재래식 무기든 핵무기든 간에 모든 군사적 대처가 위협스러운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은 최우선적인 관심을 평화정책, 군비축소와 긴장해소, 동서독에서의 안전 등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찾지 않으면 안됩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그러한 입장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연방공화국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양독관계가 유럽의 정세에 결코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며, 우리의 대륙에 있는 국가와 인민들의 평화적이고 신뢰로 가득찬 공동의 삶이라는 열매를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별들의 전쟁” - 프로그램이 전세계를 군사화할 위험을 야기시키고, 이로 인해 인민들이 핵파멸의 상황으로 이끌려지게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우리의 태도가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여하튼 하늘이 지옥의 문턱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우리는 지구와 우주의 평화를 원합니다.

짜이트지 :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의 특별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양국은 그때 그때의 상호 활동영역에서 어떤 활동공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활동공간이 제네바 정상회담 이후 더욱 커졌습니까? 이 활동공간이 군소 이웃국가들의 지울 수 없는 역사적 기억으로 인해 제한될까요?

호네커 : 활동공간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활동공간이 무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독일민주공화국의 정책은 군비제한과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를 보다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셔도 됩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의 입장에서 본인이 확실히 해명드릴 수 있는 것은 독일 땅, 독일 영토에서는 결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만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평화보전을 모든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당신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의 정치무대에서 -바로 제네바 정상회담 이후에도 역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5년 11월 21일 프라하에서 있었던 바르샤바동맹국의 최고대표자회의에서도 표명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동맹국가들과 서방진영, 특히 국가들의 지도급 정치인들과의 대화에서, 국제관계에서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촉진시키고 평화와 안전을 정착시키기 위해 해야 할 몫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

백히 이성과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일에 착수하고, 또 국제정세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장차 당신들 스스로가 틀림없이 확인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이웃과 친구들의 경우와 똑같이, 우리의 가장 독특한 관심사이며 우리국민들의 평화의지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짜이트지 : 콜 정부는 1982년 10월 정권교체 이후에 동방정책에서 실제적으로 일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귀하는 같은 의견입니까? 혹은 새로운 연정의 출범 이후에 본의 독일정책과 동방정책에서 다른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본이 귀하와 독일연방 수상이 1985년 3월 12일 모스크바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승인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네커 : 사실 콜수상이 이끄는 연방정부는 1982년 정권교체 이후에 그들의 합법적인 유럽의 제 조약에 관련해 동방정책에서 일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서 지켜보고 있으며, 아시다시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과 연방수상 콜 사이에, 1985년 3월 12일 모스크바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 성명은 현 국경선의 불가침성과 영토불가침성의 존중 및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국경 안에서 갖는, 주권의 존중이 평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상 콜은 이 모스크바 성명을 명백히 고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방대통령 바이츠제커가 본의

신년만찬회석상에서 행한 국경선의 불가침성과 모든 유럽국가들의 영토불가침성 존중에 대한 가장 최근의 성명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어떤 방향과도 어울리지 않는 세력들의 위협스러운 모험을 간과할 정도로 순박하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반론들이 제기됩니다. 대독일적 발언들을 하는 것과 복구주의적 망상에 골몰하는 것들이 우리의 관계에 장애가 되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반대되는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짜이트지 : 냉전이란 참호 속으로의 귀환은 아무에게도 유용하지 않다고 귀하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귀하는 냉전으로의 귀환대신에 양독 관계를 보다 폭넓게 수립하는 것에 찬성함을 표명하셨지요. 그러한 폭넓은 관계수립은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보다 확대된 협력을 위해 귀하는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호네커 : 양독관계가 현실주의와 선의 및 주권과 불간섭에 대한 아주 분명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질 수 있다면, 양측은 여러 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큰 진전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관계 수립에 특별한 의미를 둡니다. 예를 들면 양독의 외무장관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독일민주공화국이나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만나는 것이 도대체 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반복해서, 뉴욕의 유엔총회 혹은 마드리드, 스톡홀름 그리고 헬싱키에서 서로 대화하는 것은 동·서독과 같이 인접해 있는 두 국가의 경우엔 아주 기묘한 일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

은 유럽의 심장부에 항구적인 안전지대를 만들고 핵파멸의 위험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한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환경보호, 문화, 교통,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관계수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짜이트지 : 문화영역, 과학·기술분야, 환경보호분야에 있어서의 장래의 협력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환경보호협정의 토대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포착되어 다루어 질 수 있겠습니까?

호네커 : 동·서독 간에는 이미 몇 년전부터 쌍방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문안이 다루어져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계정상화를 위해 중요한 조치이며, 문화교류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게다가 그밖에 앞으로의 2년을 대비한 구체적인 생각들이 이미 있습니다. 과학·기술영역에서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협상하고 있는 환경보호협정은 환경조성과 환경보호 및 양독에 있는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대기와 하천의 청정유지와 산림의 유지 및 보호에 있어서의 경험과 기술적 해결방안들을 교환하는 것 역시 물론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짜이트지 : 우리는 일반적인 협력에 결하여 특히 베라와 베저를 정화하는데 있어서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베강 정화사업에서의 협력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요?

호네커 : 베라와 베저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하고 있습니다. 엘베강 경계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이 협의는 체결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엘베강의 정화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베강 지역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일인것 같습니다. 경계가 확정되면 여러 문제들의 해결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짜이트지 : 환경보호의 문제가 독일민주공화국 국민들에 있어서도 독일연방공화국의 국민들에서와 똑같이 절실합니까?

호네커 :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환경보호 분야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유독물질제거를 위한 특별조치를 확정했고, 우리 국민들과 일치해서 이 문제를 보다 더 강력하게 처리하려고 일반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어가는 산림"이란 개념을 우리의 경우에 쓸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이번 주 언젠가 환경청장관의 지도를 가져오도록 해서 보았는데, 피히텔 산맥과 체코로 뻗어있는 전 지역의 숲이 심하게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산림이 다시 형성될 수 있고, 여기서 건강한 나무가 다시 자라도록 하는 여건들을 만들코자 하는 협정들이 독일민주공화국과 체코슬로바키아 간에 있습니다. 그외에 우리의 숲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성비"의 경우도 우리에게 "죽어가는 숲"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본인은 스웨덴 수상 팔메와 함께 슈트랄준트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 여행은 숲에서 숲을 거쳐 간 것이었습니다. 팔메 수상이 물었습니다: "산성비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까? “이에 대해 본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수상 각하, 본인은 우리가 산성비로 인해 아무런 경험도 하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짜이트지 : 대기오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 사이클 엔진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폭스바겐-모터를 장착한 최초의 “트라반트”는 언제 운행되니까? 이는 폭스바겐-모터가 숲에 더 유익한가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호네커 : 몇몇 사람들은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차는 아마도 1988년에 다니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물론 “트라비”, “봐르트부르크”와 같은 아주 많은 그 사이클 엔진모터의 자매 제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주차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차를 주차시킬 수 있고, 겨울에도 크게 신경을 써서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할 것입니다.

짜이트지 : 장차 믿음만하게 다져진 협력에 서베를린을 실제적으로 편입시키고자 할 때 지긋지긋한 해석상의 싸움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호네커 : 우선 본인은 1971년 9월 3일 4대국 협정으로써 각 당사자들의 이해에 일치하는 해결책이 제시되었다는 점에 당신의 주의를 돌리고 싶습니다. 서베를린을 실제적으로 편입시킬 때에 생기는 지긋지긋한 해석상의 다툼을 피하는 길은 협정의 정신과 조문에 비추

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격히 협정을 엄수하고, 완전히 적용하는데 찬성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서베를린이 독일연방공화국에 속해 있지 않고, 독일연방공화국에 의해 통치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짜이트지 : 문화교류에도 이것이 적용될까요?

호네커 :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많이 토의된 서베를린을 문화협정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우리에게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베를린은 1971년 9월 3일 4대국 협정에 따르면 전 규정에 함께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짜이트지 : 이 협정의 원칙에 포함됩니까?

호네커 : 그러한 약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짜이트지 : 협정이 성사되었을 때, 서베를린으로 부터 많은 회의가 있었는데요.

호네커지 : 예, 그때 의심이 있었지요. 협정이 체결되며는 기뻐할 것입니다.

짜이트 : 지금까지 독일민주공화국 청년들이 독일연방공화국을 여행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청년들이 독일민주공화국을 여행했습니다. 어떤 전제 하에서 이것이 바뀔 수 있을까요?

호네커 : 독일민주공화국의 청년들이 독일연방공화국을 여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청년들이 독일민주공화국을 여행한 것에 대해서 본인은 결코 비정상적인 점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이미 국민수에서 나타납니다. 그외에 동·서독의 물가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원인도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물가를 근거로 해서 음식과 운송에 대한 아주 작은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여행에 필요한 재정적 비용을 계산해 보면 독일민주공화국에서 훨씬 더 많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년들의 여행이 양호하게 발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은 동·서독 청년단체간에 존재하는 협정 가능성을 완전히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것이 마찰없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짜이트지 : 동·서독인들에게 편의를 주고, 이들이 보다 더 많이 교류하도록 해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치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함부르크와 같이 국경에 가까운 독일연방공화국의 대도시가 단기간의 월경지역에 편입되는 것,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이 긴급한 가족문제가려는 독일연방공화국 여행을 보다 많이 허용하는 것, 최종적으로 독일민주공화국 국적을 포기한 이유로 독일민주공화국의 옛고향 방문이 현재 금지되어 있는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탈출한 독일민주공화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독일민주공화국을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귀하는 가능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호네커 : 아시다시피, 많은 것을 가능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

화국의 여행교류는 몇몇 서방(서독)대중매체가 표현한 것과 같이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큼니다. 연간 6백만명에서 구백만명의 독일연방공화국 사람들이 독일민주공화국을 방문하고, 1백50만이상의 독일민주공화국사람들이 독일연방공화국을 방문합니다. 동·서독 국민들간의 아주 높은 친밀도를 고려해 보면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동·서독간의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독일연방공화국 사람들이 때때로 과소평가하는 사실, 즉 이 여행교류가 상이한 사회질서뿐만 아니라 서로 구별되는 통화체계를 가진 두 국가간의 교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서독간의 무역거래에서는 1마르크가 바로 1마르크가 되지만, 여행교류에 있어서는 독일민주공화국의 7마르크가 그 가치보다 훨씬 낮게 취급됩니다. 게다가 여기서 개별적으로 다를 생각은 없습니다만, 예컨대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찰과 비밀정보원간의 접촉과 같은 일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최상의 의미로 고려한다면, 여행교류를 발전시키려는데 있어서 독일민주공화국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정은 그 반대입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여행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냉전시대의 유물을 제거하겠다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의지입니다. 한편에선 기대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우리국민을 독일당 최초의 노동자·농민국가의 국민들로 대우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적당치 못한 일입니다. 이 도시는 저 도시들간에 어떤

도시를 국경교류에 편입시키는 것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독일연방공화국이 독일민주공화국의 시민권을 존중한다면 여행교류에 대한 보다 더 유리한 조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짜이트지 : 서기장 각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베르벨린호 수에서 귀하와 연방수상 슈미트간에 최종결정이 났으며, 이에 따라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민권은 우리들로 부터 사실상 존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행정상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존중하는 것 그 자체는 우리에게서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호네커 : 그렇습니다. 좀더써. 그 협정은 당시 본인과 독일연방수상 슈미트간에 체결되었고, 이것은 어쩌다가 국경을 침범한 미성년자들의 귀환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협정을 통과시켰지만,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사회보호법 등으로 인해- 법원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여섯살 먹은 소년이 국경을 침범하는 경우, 우리는 국가기관에 대해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는 점을 콜 수상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예로 들고 싶군요.

헬무트 슈미트 독일연방수상과 본인이 체결한 협정의 두번째 문제는 독일연방공화국에 당분간 체류하고 있는 독일민주공화국 시민들에 대한(서독의) 연방방위군정집 명령이었습니다. 이 문제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짜이트지 : 징집명령은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호네커 : 아닙니다. 여전히 보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몰트대사가 최근에 그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는 여러 나라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활동입니다. 서독 정부가 모든 독일인에 대해 보호의무를 지고 있다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주장이 요즘 더 확대되고 있고,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민통치권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짜이트지 : 첫번째 문제에 대해 간단명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물론 있습니다. 귀하가 한 슈미트 독일연방수상과의 최종결정이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았을지 없겠지요? 우리에게 불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게라에서 "인정"이라 하고, 후에는 "존중"이라고 한 것이지요. 거기엔 차이가 있습니까?

호네커 : 이 문제에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존중이라 할 수도 있고 승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2/3의 찬성을 얻어 개정될 수 있다하더라도, 기본법의 개정은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은 이 점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이 있다는 것과 독일민주공화국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헬름 2세 시대의 법률에 의거해서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민은 동시에 독일연방공화국 국민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독일연방공화국의 법률은 헌법원리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의 통치 영역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짜이트지 : 문제는 독일연방공화국이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민권을 인정 혹은 승인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이 독일연방공화국으로, 독일연방공화국 법률의 통치영역으로 와서 독일연방공화국의 국민권을 갖고자 할 때, 독일연방공화국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호네커 : 이 문제에서 우리는 국제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 현재의 정부도 역시 공식성명에서는 - 라이프찌히, 드레스덴, 그밖의 도시시민들과 직접 관계한다는 데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연방공화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독일민주공화국이 세워지기 5개월전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다른 독일국가가 생겼다는 점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물론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처리해야만 합니다. 즉,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국민에 속하는 것이고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보호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독관계의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짜이트지 : 긴급한 가족문제로의 여행이 대규모로 이루어 지도록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2천간의 친척들은 여행허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가족의 일외의 다른 동기로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인민의회 의장 호르스트 진더만의 의정서협상에 관한 본의 논쟁과 같은 문제들이

이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호네커 : 그 문제는 그 동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 방문이 머지 않아 실현될 것입니다. - 하지만 이는 독일민주공화국 인민의회 의장이 독일민주공화국을 대표하고 그가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존중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긴급한 가족의 일로 인한 여행은 당연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애물은 언제나 국가제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관료주의가 있으며 독일연방공화국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 문제를 관료주의에 떠넘겨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긴급한 가족의 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첩보기관의 장은 여행할 수 없습니다.

짜이트지 : 아마 그도 원치 않겠죠.

호네커 : 모르겠습니다.

짜이트지 : 아이젠취텐슈타트에서 자아르루이스트로의 방문, 도시자매결연 협정, 이러한 방법으로 집단여행의 교환이 이루어 진다는 견해 - 이 모든 것에 우리는 큰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귀하는 이 계획을 "모범적인 경우"로 보십니까? 이것은 유사한 즉, 많은 파트너관계에 대한 시작이겠습니까?

호네커 : 이 문제에는 모순투성이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 자매결연은 당연히 하나의 도시 자매결연일 뿐이며, 사람들은 이 자매결연의 내용에 관해 합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젠취텐슈

타트와 자아르루이스의 시의회는 그들이 도시 자매결연이라는 것에서 이해하고, 관철시킨 것을 합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뭇튼 본인은 모든 캠페인을 똑같이 이 최초의 도시 자매결연과 관련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짜이트지 : 귀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다른 도시들 - 즉, 자아르루이스 이외의 도시들 - 과의 다른 도시 자매결연의 성립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호네커 : 이 일에서는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이 일을 함과 동시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당신들간에도 올바른 주장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다른 주장들도 있습니다.

짜이트지 : 도대체 그 올바른 것이란 무엇입니까?

호네커 : 올바른 것이란 세계 모든 곳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도시 자매결연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 자매결연은 당연히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의 정부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 자매결연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데 아주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짜이트지 :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귀국 국민들이 더 많이 우리쪽으로 여행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 독일민주공화국 국민들의 서방여행이 본질적으로 아주 당연한듯이 연금생활자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왜 이 범주를 연령면에서 점차 낮추거나 혹은 완전히 철폐할 수 없습니까? 우리들 중 적지 않은 사

사람들이 이와 연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본질적으로 무엇이 독일민주공화국에 있어서 안정적인 것 혹은 불안정적인 것 - 개방정책 혹은 폐쇄정책인가요?

호네커 : 우리는 개방정책도 폐쇄정책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행의 문제는 매우 다면적입니다. 양독간의 기본적 관계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특히 헬무트 슈미트 당시 연방수상의 첫 독일민주공화국 방문을 통하여 긍정적 발전을 했습니다. 현재 활동중인 자유민주당과 함께하는 독일기독교민주동맹 / 기독교사회주의동맹은 소위 이 방문의 결실을 수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함부르크행 고속도로의 개통, 건설부장관과의 만남, 함부르크에서의 선켈 - 전람회, 긴급한 가족의 일로 인한 방문의 확대를 그 결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연방정부는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한 후 이 정책은 우리에게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새연방정부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협정에 깔린 정신의 토대에 맞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쉴레지엔은 우리의 땅이다" 라는 모토와 관련된 독일연방공화국과 폴란드간의 관계가 험악하게 첨예화되어 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이 동맹에 속해있는 바와 똑같이 우리도 동맹에 속해 있고, 우리는 당연히 이 문제에 있어서 폴란드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밖에 "쉴레지엔은 우리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폴란드와 연방공화국 사이에는 독일민주공화국이 있습니다. 그 주장은 비현실

적일 뿐만 아니라 소란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후 아주 빨리 그 구호로 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로, 이목을 자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부터 본인은 많은 것이 잘 진행되고 있으나, 어떤 것은 잘 진행되지 않고, 따라서 양독간에 협력이 정상적인 것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데 당연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민의회 의장이 가도 되는지 혹은 갈 수 없는지에 대한 논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일은 어떤 나라에도 없습니다. 인민회의의장은 프랑스 대통령, 스페인 왕, 오스트리아 연방대통령, 핀란드 대통령의 손님이었으며, 그는 세계 어느 곳이라도 갔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커다란 논쟁이 있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의 관계가 동등한 기초위에서 발전한다면 이는 양독에 대해서 그리고 유럽에서의 분위기를 위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같은 소위 파상운동이 있다면, 다른 여러 일도 변화된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요.

짜이트지 : 몇년전 당신은 게라에서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해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 시민권의 인정, 쌍방의 상주대표부를 대사관급으로 전환하는것, 엘베강 중양으로의 국경확정, 그리고 잘쯔기터의 중양등록처 폐쇄, 귀하는 이 요구들이 얼마나 긴급하다고 보십니까? 이 요구들을 장기간의 목표로 두고 계십니까? 혹은 조만간에 실현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호네커 :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 관계의 기본문제입니다. 관계정상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는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기본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확실히 기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는 현재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보여주듯이 역시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정부가 독일민주공화국의 시민권을 존중하는 것을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본인이 이미 언급했습니다. 엘베강의 중앙으로 국경을 확정하는 것 역시 이에 대해 트집을 잡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40년 이상의 실제경험이 있습니다. 양측은 어떠한 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국경선이 확정되면 여러 관계들에 대한 분위기 및 이 중요한 수로상의 선박교통, 강 수질의 개선에 같은 문제들과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도 그 동안 소위 잘쓰기터 중앙등록처를 냉전의 유물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일민주공화국의 주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관으로, 또한 우리의 내정을 간섭하는 도구로 보고, 그래서 이 기구의 폐쇄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상주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짜이트지 : 1985년 양국교역은 150억 마르크 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사이의 경제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네커 :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교역은 임시자료에 의

하면 170억 마르크나 되는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교역은 잘 발전했으며, 우리는 쌍방에게 유익하도록 이 교역을 성취시키는데 찬성합니다. 우리는 이 교역을 전체 관계에 있어 중요한 안정을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교역관계와 경제관계는 양측의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쌍방은 이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외 본인이 첨언하고 싶은 것은 독일민주공화국이 전 세계에서 존중되는 교역파트너라는 점입니다. 국민총생산이 4.8퍼센트 증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도 주목할만한 것으로 평가된 발전을 한 1985년의 결과 역시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은 과학, 기술, 생산에서의 명백한 성과를 가지고서 생산과 기술에 있어서의 새로운 질적 요구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짜이트지 : 4월 전당대회에서 독일민주공화국 국민들을 위해 어떤 새로운 것이 제시되었습니까?

호네커 : 전당대회의 초점은 당연히 첫째로 평화보장에 대한 우리의 기여이고, 둘째는 독일민주공화국국민경제의 힘찬 발전이며, 셋째는 1986년 부터 1990년 까지의 사회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서 우리는 연간 4~5퍼센트의 국민총생산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결정적인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4~5퍼센트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동생산을 통하여 90퍼센트의 증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새로운 기술적 과정의 도입, 마이크로전자공학, 광전자공학, 센서공학 등을 통해서만 이러한 노동생산성을 매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어느 정도 생산력의 개혁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미 연간 거의 5천만 노동시간을 절약한 정도입니다. 이는 약 30만 노동자의 작업량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가 제11차 전당대회에서 심의하게 될 1986~1990년도의 차기 5개년 계획중에 1조 3천억 마르크의 국민소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액수입니다. 우리의 산업과 농업은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사회정책이 확대 발전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계획의 초안에서 소매업 매상의 약 80%를 차지하는 생필품의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매년 4%의 순소득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71년 이후 이미 240만호의 새로운 주택을 짓거나 현대화시킨 이후, 계속해서 1986~1990년도에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현대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990년까지 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집세가 지금까지와 같이 여전히 저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집세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바로 어제 본인이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평방 미터당 80페니히에서 1마르크 20페니히 까지 지불합니다 - 라이프찌히가

에서는 실제로 1마르크 20페니히를 냅니다. 이는 수입과 비교해보면 아주 싼 가격입니다.

짜이트지 : 양독간의 교역은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네커 : 우리의 대외교역의 70%를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련과 하는 대외교역의 연간 거래액은 150억 루블에 달합니다. 비사회주의 국가와의 대외교역은 총 30%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율에 머무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체적인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짜이트지 : 어떤 영역에서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까?

호네커 : 경제협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교역구조의 개선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부분적으로 점령기간으로 인해 야기된 장애가 제거된다면, 이 역시 교역에 기여할 것입니다.

짜이트지 : 어떤 장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네커 : 첫째로는 우리가 독일연방공화국에 공급하는 물품의 할당량이 있습니다. 세금이 부가됩니다. 자유교역은 전혀 없고 할당량만 있습니다. 석유생산물 역시 그렇고, 소비재 물품 역시 그렇고, 그밖의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두번째로는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자유지불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1949년 11월 1일 군사통치법을 제 53번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은행에는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의 수십억의 자산이 동결된 채로 있습니다.

짜이트지 : 제 3국에서의 협력양식을 생각하실 수 있는지요?

호네커 : 제 3시장에서 장가적으로 계획된 효과적인 협력의 형식을 발전시키는데 찬성합니다. 에디오피아, 알제리에서의 개별적인 프로젝트가 이미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회사들이 이미 좋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짜이트지 : 귀하의 생각에 따르면 유럽에서의 준비, 특히 두 동맹체제간의 준비가 어떻게 제한되어야 하고, 제한될 수 있겠습니까?

호네커 : 가장 좋은 것은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2000년까지 핵무기로부터 세계를 해방시키려는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제안에 대해 논의하는 일입니다. 그에 의해 명시된 3단계 계획은 접근가능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제1단계에서는, 소련과 미국이 핵무기 감축을 시작하고, 제2단계에서는 늦어도 1990년까지 기타 핵무기 보유국들이 군축과정에 동참하고, 1999년 말까지의 제3단계에서 모든 핵무기제거가 완수됩니다. 상호 수용가능하고, 엄격히 검사할 수 있는 협정은 핵무기가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핵무기가없이 2천년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우선적으로 준비증강을 정지시키는 일이 긴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무엇보다 핵무기 실험의 중단을 통해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핵무기의 질적 확대발전이 "고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이상의 길에 제 일보를 내딛는 시작일 것입니다. 소련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예고하고 현재 1986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있는 모든 핵실험을 유예시킴으로써 실제적으로 이러한 제일

보를 이미 내딛었습니다. 미국이 이를 경원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군사적 대립을 축소하고 병력과 군비를 감소하기 위한 다른 가능성들을 스톡홀름회의와 비인협정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르바초프의 프로그램에도 똑같이, 서방의 생각들도 지니고 있는, 아주 광범위한 제안이 있습니다.

소련의 새로운 제안은 서방언론에서 거센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전에 군축문제와 안전문제에 대한 팔메위원회는 델리에서의 회의에서 고르바초프의 3단계 계획을 광범위하고 건설적인 것으로 존중했습니다. 이 기록은 아주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핵실험의 포괄적 금지 및 협상을 쉽게 하기 위해, 핵실험에 관한 통제가능한 공동의 모노토리움에 대한 소련과 미국의 신속한 협정이 추천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위원회는 우주공간무기와 우주공간의 대상을 위협하는 무기를 발전시키고 실험하고 배치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에 관한 소련과 미국의 조약에 대해 찬성을 표명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알려진 바와 같이 17개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들의 전문지식과 판단은 비중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분 호명에 보면 독일사회민주당 - 정치인 에곤 바르, 소련의 학자 게오르기 알바토프, 미국의 전국무장관 시루스 반스, 네덜란드 노동당 의장 올단월, 전 노르웨이 여수상 그린할렘 브룬트란트가 있습니다. 핵의 시대에서는 협력과 협상을 대신할 어떠한 이성적 대안도 없다고 그 위원회는 강조합니다. 군사적 우위의 확보는 거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날 크건 작건간에 모든 국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위협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독자적인 노력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모든 인민이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 계획되었던 생각들은 새로이 검증되어야만 하고, 새로운 것 역시 시도되어야만 합니다. 핵전쟁에서 함께 몰락하는 것 대신 우리는 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사이 좋게 잘 지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짜이트지 : 귀하는 유럽에서의 비화학무기지대를 옹호하며, 동시에 팔메가 제기한 비핵무기지대를 옹호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는 이들의 검증과 확인을 가능하게 할 방안을 마련해 두고 계신지요?

호네커 : 군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조정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화학무기지대에 대한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프로그램 및 우리의 제안에서는 장소의 조정까지 고려되어 있습니다. 군축을 위한 조약의 의무를 엄수케 하는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수용할 것입니다. 당연히 조정의 방법과 범위는 조약의 목적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조약 상대국들이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검증들을 수용할 것입니다. 균등성과 동일한 안전이라는 원칙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독일연방정부가 독일민주공화국과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의 제안에 동의한다면, 독일연방정부는 비화학무기지대에 대한 협상을 받아 들이려는 우리의 일반적인 준비상태를 상세히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짜이트지 : 검증조치에 대한 귀국의 준비는 "장소"에 대해서도 근본

적으로 새로운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호네커 : 검증문제는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방의 제안에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핵실험 실시여부에 관해 현장에서도 검증할 수 있다는 서방측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비화학무기지대의 검증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우리는 어떤 공장이 화학무기를 생산하는지 혹은 화학무기가 파괴되는지 등등의 문제에 대한 현장검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커다란 발전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우리의 입장이 약간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비인에서 건, 스톡홀름에서 건 제네바에서 건 간에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 지도록 기회를 개방하기 위해 서방이 제안을 받아 들였습니다.

짜이트지 : 이 문제에 대한 독일통일사회당과 독일사회민주당의 협상에 대해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귀국이 하는 협상의 대상은 독일연방 정부가 아닐까요?

호네커 : 독일민주공화국은 이미 3년전에 독일연방정부에게 스웨덴의 제안에 기초해서 비핵전쟁무기회담을 형성하기 위한 협상을 받아들이라고 제안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시는 "협상의 대상"은 그것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본인은 이 제안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스웨덴의 "회담제안"을 고려할 가치가 있고 또 실현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측의 관심사에 속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신뢰조성과 군비제한으로서 중요한 진보일지도 모릅니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다른 정

치세력들이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비핵무기지대의 경우에서와 비슷하게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문제에서 공동의 해결방안을 찾고 국가적 협상에 대해 정치적 자극을 주고, 결국에 비핵무기지대의 조성을 위한 협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독일사회민주당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짜이트지 : 양독은 - 여러 다른 측면에서 - 군비증강, 군비재증강이라 불리우는 현상의 주요 피해당사국입니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을 움직여 그들 지역에서 중거리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하기 위해 귀하는 단독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호네커 : 브뤼셀 미사일협정을 통해 야기된 변화의 피해자들은 원칙적으로 유럽의 모든 인민들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보다 많은 무기가 의미하는 바는 보다 많은 안전이 아니라, 보다 적은 안전이라는 점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역시 브뤼셀협정을 통해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소련 역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지상에서의 군비종식의 필요성과 우주공간에서의 군비억제의 필요성에 대해 그들을 납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서부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독일민주공화국에 배치된 전략미사일의 폐기에도 이것을 적용됩니다. 이 미사일의 배치에 대한 원인이 제거되면 이 미사일이 철수된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환언하면, 독일연방공화국이 미국을 움직여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시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전략미사일도 폐기될 것입니다. 소련은 이미 그들의 군축 프로그램의 첫단계를 위

해 유럽대륙을 해무기로 부터 해방시키는 제 일보로서 유럽지역에 있는 소련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즉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양국은 시급히 군비제한을 위한 적법한 조약들을 엄수하고, 군비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짜이르지 : 미국과 소련이 중거리 무기에서 "O- 옵션"에 합의한다면, 군비증강 이후 귀국의 영토에 배치된 미사일 역시 철수됩니까?

호네커 : 일소됩니다.

짜이르지 : 따라서 SS-20미사일 뿐만 아니라 독일민주공화국에 배치된 단거리 미사일도 역시 일소될 것입니까?

호네커 : 그들이 배치되도록 한 원인이 사라지면 그들은 일소될 것입니다.

짜이르지 : 이 무기의 폐기를 고르바초프제안의 무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호네커 :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짜이르지 : 귀하는 미국의 전략방위계획연구와 서독기업 참여가 지닌 위협을 언제나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련 역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미국의 우주계획에 대해 갖는 적대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귀하는 NATO의 방위개념의 변화를 두려워 하십니까?

호네커 : 소련이 유사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미국의 "별들의 전쟁" 프로그램에 대한 알리바이를 이끌어 내려는 명백한

목적을 추구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소련의 제안을 그것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지상에서 군축을 시작하고 우주공간상의 군비확장을 거부할 때 독일연방공화국 사람들은 물론 인류가 최상의 상태로 나아간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전략방위계획은 오늘날 이미 우주가 핵으로 파멸된다는 무시무시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최근에는 모든 방면에서 군비경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직 대통령, 국방장관, 다만 미국의 국회의원들 및 학자들도 진지하게 경고를 했으며,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서독인이, 군사적 우위의 환상을 추구하는 수단이며 세계를 핵지옥의 언저리로 더 가깝게 이끌어 간, 이 어리석은 군비계획에의 참여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우주군비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집착은 이미 오늘날 군축협상의 진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무기의 산을 더욱 높이 쌓아 올리는 군비경쟁이 고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방법으로는 보다 큰 안전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 반대로 세계는 더욱 불확실해지고, 국제상황은 더욱 예측할 수 없어 집니다. 경제적 그리고 과학·기술적 동서 협력에 대한 부정적 작용을 이미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불행한 진행이 중단되지 않으면 상황은 그만큼 더 악화될 것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이 그러한 발전에 한몫 거들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미국의 “별들

의 전쟁” 프로그램에 독일연방공화국이 참가하게 됨을 확정해 주는 문서에 대한 어떠한 비준도 아직은 없습니다.

NATO의 어떤 세력이 미국의 위험한 행보를 함께 짚어지는 것, 방어라는 가면을 쓰고 새로운 무기잠재력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 당연히 우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더 현실적으로 사고하는 세력들이 이 광기에 반대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들 역시 이성과 현실이 우위를 점하도록 광범위하게 힘쓸 것입니다.

짜이르지 : 귀하는 미국 “별들의 전쟁” 프로그램에 독일연방공화국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 독일연방정부나 혹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까. 이러한 경고는 6년간의 기간동안 250~2천500만 달러의 경비가 드는 24개 연구분과에 몇몇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에도 적용됩니까? 이는 결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별들의 전쟁”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것에 대해 배울 수 있을 지도 모를 기술 공학적 모형에 참여하려는 시도인것 같은데요.

호네커 : 독일연방공화국이 전략방위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에서 긴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조시키는 것이라는 점에 관해 본인은 독일연방수상 콜과 시의적절하게 대화했습니다.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연구에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연구에는 보다 더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전략방위계획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말기를 독일연방공화국에 제의했습니다. 이 전략방위계획 프로그램은 레이전에 의해서도 “별들의 전쟁” 프로그램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악의 제국”을 멸망시키기를 원했고, 그 악의 제국은 소련이었습니다. 그다음엔 이로서 “파멸의 일격”을 가하고자 했습니다. 나중에 “전략방위계획”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모험적으로 선제공격을 가하려는 계획이고, 이 선제공격은 전 인류를 살상시키는 결과를 낳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관해서 보면 다국적 기업연합이 있다는 것과 여러 다른 기업들이 이런 저런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물론 아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서 연구가 진행되는냐 하는 것입니다. 평화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입니까? 혹은 전쟁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이레카와의 협력 혹은 세계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연구의 가능성이 있는 때에, 예를 들면 아메리카에서는 왜 무제한적으로 전쟁의 사전준비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물론 우리는 레이저 연구를 포함한 우주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권위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짜이트지 : 우리의 견해로는 그것은 당연히 전쟁의 준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서유럽에, 특히 독일연방공화국에 새로운 중거리 무기들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 무척 우려하고 있었음을 대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네커 : 특히 그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를 우리의 지역에서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짜이트지 : 그러나 전략방위계획에의 참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7개 회사가 어떤 연구프로그램에 참가한다고 할 때, 동일한 비중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네커 : 우리는 소위 “별들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 에 반대합니다. 소·미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군축문제입니다. 지금은 우선적으로 협상을 성사시키고, 그 다음에 독일연방공화국의 참여 혹은 불참여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 즉 독일연방공화국의 전당국 및 독일민주공화국의 당국으로 하여금 협상의 결실을 맺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유도 모르고 부화뇌동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짜이트지 : 전략방위계획 연구에 참여한 독일연방공화국의 기업들을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교역으로 부터 배제시키고자 하십니까?

호네커 : 우리는 현실에 따릅니다. 사람들은 여러 다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며, 다국적 기업연합들이 아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연합에 관해 보자면, 본인은 다음의 예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자아르루이스 금속노동자 대표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자아르루이스에서는 포드자동차가 생산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1만대의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의 영업부가 쾰른에 있고 자아르루이스에 없었기 때문에 그 구매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를 경영협의회에 알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독일연방공화국이 갖는 경제상황의 여건하에서는

독일의 자본인지 혹은 미국의 자본인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본인의 생각엔 2차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략방위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의 태도이며, 대다수의 서유럽 국가들 특히 NATO국가들까지 전략방위계획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과 소련간에 제네바 회담이 비로소 적용되게끔 하려는 반면,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현재 이 프로그램을 긍정하는 몇 안되는 국가들에 속해 있습니다. 본인은 작년 독일연방수상 콜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우리는 현상황에 부담을 주는 일은 결코 하지 않고, 반대로 대립을 철폐하고 협력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을 촉진시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짜이트지 : 귀하의 전기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을 귀하가 청년시절에 반파시즘적 통일전선을 실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통일전선의 기초방향은 반파시즘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핵전쟁에 반대하기 때문에, 귀하가 이 젊은 시절의 동경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당시 귀하가 추구했던 이 행동통일체에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는 물론 기독교도들도 있었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에 있는 기독교도들은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귀하에게는 동맹자들입니까?

호네커 : 물론입니다. 특히 독일민주공화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는 동경, 이 동경에는 오성이 감성과 함께 한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어서는 물

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칼리닌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실적인 일에도 열광해야 합니다. 설득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역시 열광해야 합니다.

평화의 확보를 위한 전투에서 우리는 이성과 현실의 연합에 찬성합니다.

짜이트지 : “블록의 해체”는 언제나 당신들의 구호였습니다. 귀하는 그러한 군사동맹의 해체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십니까? - 혹은 30년 전에 폴란드인 라파키와 미국인 커년이 제의한 블록의 이탈 역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십니까?

호네커 : 바르샤바 동맹은 집단안전보장이라는 전 유럽의 체계가 형성되는 경우에 해체된다는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조약은 작년에 개정없이 연장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르샤바 동맹과 NATO의 동시적 해체 및 제1조치로서 그들의 군사조직을 동시에 해체하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동시에 우리는 보다 작은 조치도 강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화학무기지대의 조성은 이에 기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선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정치적 의지입니다. 균등성과 동일한 안전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란 결코 없습니다.

짜이트지 : 귀하는 분단이전에 서독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년전에 귀하는 “독일인민의 이름으로”란 서신에서 서독수상 콜에게 호소했습니다. 귀하는 “독일인민”이란 말을 할 때, 귀하가 “독일”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귀하가 “민족”이란 개념을 사용할 때 귀하의 사고에서는

무엇을 함께 느끼시는 겁니까?

호네커 : 당연히 본인은 그런 것들을 당신들의 스포츠 리포터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해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둘러 본다면, 우리가 역사의식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본질적으로 “제정시대”의 역사교육과 구별되고, 또한 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역사교육과도 구별됩니다. 전에는 특정한 날자를 암기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본질에 속했습니다. 시대구분은 대체적으로 한 전쟁에서 다른 전쟁까지의 시간에 비추어 행해졌습니다. 우리들의 경우엔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들에게 독일 역사를 위한 박물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가들이 독일인민의 역사를 연구하고 새로운 인식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독일땅에 2개의 국가, 즉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로 부터 다른 모든 것이 생겨납니다.

자이트지 : 독일민주공화국은 독일혁명운동의 역사를 넘어 서서 독일의 역사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2세의 기념물이 베를린의 중심가 운터 덴 린덴에 다시 세워지고, 루터기념해에는 종교개혁가 루터가 크게 평가를 받았고,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새로운 전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귀하는 750년 축제를 위한 동 서베를린의 모든 협력을 배제시키십니까?

호네커 : “재발견하다”란 말은 취소하시지요. 당신들의 여러 매체에 결집되어 있는 역사의식에 대한 책임을 독일민주공화국에 지을 수는 없습니다. 1945년과 그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 사상적

으로 압축한 파시즘의 유산을 극복하는 것, 불행한 과거의 철저한 청산, 본인은 특히 나찌전범자와 전쟁범죄자들의 소유물 몰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에서 우리는 독일인민의 혁명적, 진보적 전통에 의지했고, 동시에 전체 역사적 유산에 의거했습니다. 당신은 이를 1945년 6월 11일 독일공산당중앙위원회의 성명과 이 위원회에 의해 지지를 받았던 1945년 6월 15일의 독일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의 성명에서 추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베를린 750년 축제의 모든 협력을 배제시킨다는 말씀은 의아스럽군요. 당신이 여기 베를린의 중심지를 둘러 보신다면,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와 서베를린 당국과의 회담결과에 따라 옛날의 성곽 다리에 있던 인물상들이 옛날의 장소에 되돌려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독일민주공화국에 의해 프로이센황실 도자기공장의 기록문서들이, 이들이 이전에 있었던, 서베를린 당국에 되돌려졌습니다.

이전에 독일민주공화국 수도지역이나 혹은 서베를린의 지역에 있었던 유물들을 상호 되돌려 주는 노력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프로이센 문화유산 관리 재단에 부당하게 귀속되어 있는 우리의 국립미술관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회화작품들과 조각품들이 750년 축제를 위해 독일민주공화국 수도의 이전에 그들이 있었던 장소로 되돌려 진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750년 축제의 준비를 위한 대

포워위원회를 설립했으며, 본인이 여기서 의장으로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들은 750년 축제에 대한 주제들을 완성했으며, 이는 공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부터 우리는 베를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당연히 서베를린에 상주하는 주민들은 750년 축제 때에 독일민주공화국의 수도에 와서 여러가지 행사에 참여하고 여러가지 전람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은 전 세계의 방문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750년 축제에 즈음하여 현실이 어떻게 발전되었으며, 오늘날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점을 은폐시킬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의 수도인 베를린이 있고, 서베를린이 있으며, 1971. 9. 3의 베를린에 관한 4대국 협정과 관련하여 취해진 문제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서베를린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수도와는 달리 점령법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짜이트지 : 최근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독일문제의 개방”에 대해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논의에 대해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호네커 : 본인은 그 논의를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와 관련된 문제에 편견없이 접근한다면, 본인은 2개의 독일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류에게는 바로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게르만주의는 언제나 유럽의 제 민족에게 불행이었습니다. 또 그들 뿐만 아니라였지요.

짜이트지 : 귀하는 독일의 통일을 역사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십니까?

가? 통일은 귀하가 사회주의적 토대에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단계입니까? 혹은 분단은 우리 조국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보십니까?

호네커 : 당신의 문제설정은 모호합니다. 우리는 1945년과 그 이후 하나의 통일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지지해왔음을 당신은 매우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포츠담 협정에 반해서, 서방연합국의 명령에 따라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이 성립된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에 독일민주공화국이 전국되었습니다. 그때 미래의 문제덩어리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 양독의 존재는 유럽에서의 안전과 국제세력균형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이를 뒤흔들려는 자는 평화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자이트지 : 귀하가 보기에 평화조약은 독일인들에게 있어 여전히 힘써 노력할 가치가 있는 목표입니까? 이 평화조약은 국경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호네커 : 동·서진영의 진지한 정치가라면 평화조약을 여전히 중요한 주제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련은 50년대에 평화조약을 위한 제안을 수차례 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및 서방 3대국은, 오늘날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기회라고 간주하는, 이 제안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평화조약은 무엇을 규정해야 합니까? 중요한 일들은 모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서베를린에 대해 4대국협정을 포함하여 유럽의 제 조약이 생겼습니다. 이 제 조약은 유럽의 안전과 평화질서의 근본요건들입니다. 헬싱키협정은 영토문제를 다각적으로 뒷받침

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구속력 있고 지속적인 법률상의 근거와 행동 규범이 마련되었습니다. 국경문제는, 독일제국의 1937년 국경이 제2차 대전의 화염속에서 붕괴되었다는 점을 완전히 도외시 하고서,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소위 평화조약을 언급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복구주의적꿈을 조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짜이트지 :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귀하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놀라울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호네커 : 본인은 그것을 독일민주공화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일어난 특정한 사고의 변화가 표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것을 여행에서, 예컨대 이탈리아, 그리스 여행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짜이트지 : 독일연방공화국의 관광객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네커 : 오스나브뤼크, 프랑크푸르트, 뮌헨, 슈투트가르트 출신의 독일연방공화국 관광객들과의 만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우리가 바닷가에 잠시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후에 2시간 동안 땀별아래서 기다렸다는 것은 크레타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군중들이었습니다. 본인은 그들과 환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다른 당에 속해 있는 마음이 굉장히 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짜이트지 : 이는 우리가 2개의 국가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동체적 감정이 여전히 존재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는 귀하의 신년인사에서 슈투트가르트, 만하

임, 비벨스키르텐과 도르트문트의 주민들에게 인사말을 할 권리를 귀하게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요?

호네커 : 이 점은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국민들 내에서 점차 강하게 확산되고 있는 확신 즉, 독일땅에 확실히 2개의 국가가 있다는 것과 사람들이 독일민주공화국의 존재를 그대로 수용하고, 협력을 지향하는 우리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짜이트지 : 귀하가 그곳에서 느꼈던 인간적 친밀감이 귀하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그리고 귀하는 독일민주공화국에서는 점차로 명령의 대열로 끼여 들어간 바로 다음 세대들보다 그들에 의해 더 크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호네커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생지는 정치적 신념에 있어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족 역시 정치적 신념에 결정적인 것이 아니지요. 이에 대해 가장 좋은 예가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습니다. 독일사회민주당에 포겔이란 분이 있고 기독교민주동맹에 또 포겔이란 분이 있는데, 한분은 지방 정부의 장이고, 다른 한 분은 원내 교섭단체의 의장입니다. 본인의 의견은 출생지는 정치적 신념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여기서 꼭 참언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은 언제나 공산주의적이었고, 이는 오늘날 독일연방공화국에도 여전히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요? 이 모든 만남에서 본인의 마음을 끈 것은 독일연방공화국의 국민들에게서 그들이 독일민주공화국의 존재를 수용

한다는 특정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독일땅 최초의 사회주의국가 입니다. 당신이 독일민주공화국을 둘러 본다면 독일민주공화국의 당지도부, 국가지도부, 그리고 국민간에 커다란 신뢰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짜이트 : 분단이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러면 이 분단은 보다 더 참을 수 있게, 인간적으로 협력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귀하의 생각엔 지난 2년간 이미 자동화기시설과 지뢰지역이 제거된 바와 같이, 어느날엔간 장벽과 차단시설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호네커 : 본인은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에 관계를 더욱 협력하도록 만드는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는 독일연방공화국에 보낸 여러가지 우리의 제안들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독간의 관계가 국제법의 규범에 의해 이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유용한 일 입니다. 본인이 최근에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말한 장벽과 차단시설은 이들을 필요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속할 것입니다.

짜이트지 : 국가평의회 의장님,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귀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을 방문하실 것입니까?

호네커 : 그 점에 대해 본인은 반복적으로 이미 언급한 것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은 양측이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시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언제나 다시 가능한 모든 생각을 해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출처 : (짜이트지) 함부르크 1986. 1. 30.

123. 동독인민의회 의장의 본 방문

1986. 2. 19

연방수상은 1986년 2월 19일 연방의회 사회민주주의원내교섭단체의 초청으로 독일연방공화국에 체류하고 있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이며, 국가평의회 의장대리이자,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의회 의장인 호르스트 진더만을 수상집무실에서 영접해서 환담을 나누었다.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행해진 충분한 의견교환에서 연방수상과 진더만은 양독관계의 상황과 발전가능성, 그리고 특히 제네바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국제적인 현안 문제들을 토의했다.

연방수상과 진더만은 의견의 일치를 보이면서 양독간의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이 발전을 계속 발전시키고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양국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연방수상의 초청으로 독일민주공화국의 서기장 호네커의 독일연방공화국 방문이 이루어져야 함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출처 : 독일연방언론정보청 언론공보, 본, 1986. 2. 19

124. 연방수상 헬무트 콜박사에 의해 행해진 분단 독일의 국제정세에 관한 연방정부의 보고

1986. 3. 14

우리나라의 상황은 독일의 분단을 통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여기 독일연방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토의했고, 오늘은 본 입법회기 중 4번째 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독일 정책의 목표와 원칙에 대한 성찰과 결산 및 각성의 기회를 부여해 줍니다.

본 연방정부의 독일정책은 성공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사람들이 좀 더 가깝게 모여졌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곳 연방의회 앞에서 이전에 연방정부가 분단 독일의 보고에서 해명했던 원칙을 재삼 확인시켜 드리는 바 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심사상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독일정책에 대한, 자주 반복되는 법률적 기초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통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독일인의 자유 속에서 성취되어야만 하며, 또 성취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자유가 독일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1986년 8월에 들어서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지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무렵 독일땅에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업신여김을 받아 온 비인간성의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이 장벽은 인간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것은 독일인을 독일인으로 부터 갈라 놓았고,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갈라 놓았습니다. 하나에 속하며 서로 함께 하려는 사람들을 서로 격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그 장벽을 세웠고 계속해서 존속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재삼 재사 확인하는 바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는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정상화에 관해 언급할 수 없습니다. 엘베강의 차단시설 앞에는 여전히 하일란트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오늘날 분단의 무의미함에 대한, 동시에 필수적인 협력을 위한 상징입니다. 이 고딕건물은-1961년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 쓸쓸히 버려져 있었는데-지난 해에 독일민주공화국에 의해 개축되어 붕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든 경비는 서독의 공공기관과 개인들에 의해 충당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당은 계속해서 기도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출입이 여전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2분적인 경험이 1986년 봄의 독일현실입니다. 지난 해에 있었던 장벽 앞의 화해집회를 독일 민주공화국이 강제해산시킨 것을 우리는 비난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일란트 성당이 구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을 맞이하여 포용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만 하는 방향이라고 본인은 믿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여기에 다음 사실을 덧붙입니다. 인간은 교회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의입니다. 따라서 하일란트 성당은 그 예로써 우선적으로 우리의 인간적 감정과 관계합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은 정도로 이 성당은 독일인의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독일문제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권, 자결, 그리고 국민주권입니다. 인간이 자기자신의 침해될 수 없는 권리를 인식하고,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상화는 시작됩니다.

모든 독일인과 유럽인이 끝없이 자유롭게,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때에야 비로소 독일과 유럽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독일연방공화국에 자유의 실체를 유지시키고, 가능한 한 매력적으로 이루어 놓음으로 해서 우리의 국가적 책무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바로 이 입법회기에서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자유의 지역으로, 삶과 노동에 대해 보담하는 지역으로, 외부로 역동성과 창조력을 발산하는 지역으로 증명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경제·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로 간주되고 존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정책의 신중함과 예측능력, 힘과 활동력을 우리의 우방국들로 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로 향한 평화와 자유의 보호에서만이 원칙에 충실한 확고한 국가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독일 내에서도 혁신에 대한 우리의 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 국민들의 창조적인 힘에, 자유로운 발전과 형성을 위해 필요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우리의 자유질서가 갖는 매력울 한층 강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자유로이 자신들의 정부를 선거합니다. 유럽의 많은 우방국국민들은 자신들에게 이와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럽은 서로 연대하는 자유이념의 생생한 모델을 유럽의 중앙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유럽은 자유를 가지고서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독일연방정부에 안정적인 평화질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우리 독일인은 우리자신과 우리 이웃에게 대하여 우리의 신념에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독일문제는 민주주의적 원칙, 인간의 품위 그리고 법치국가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의 유산이며, 이것은 우리가 진 짐에 대한 책임에서 유래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유럽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국가적 관심사에 대한 우방국의 참여도 얻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장래에도 우리는 유럽의 평화질서와 자유질서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비교적 커다란 틀에서 - 그리고 이를 안에서만 - 우리의 조국은 통일을 바라볼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만이 공동의 자유로 나아갈 모든 유럽인의 기회 역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독일정책은 우리의 전체정책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도이념에 속하는 것은 다음의 것들입니다.

- 대서양 동맹과 유럽공동체에서의 뒷받침. •
- 동구 이웃나라들과의 타협과 화해를 위한 노력
- 독일정책을 유럽의 평화정책으로 이해 연방정부는 정책을 통하여 다음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 역사적으로 성숙된 유럽의 국가통합을 위한 독일인의 의식강화
- ;
- 독일의 현상태가 역사적으로 지속되고 평화를 해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으리라는 위험스런 망상을 저지시킴
- 독일문제가 정치적, 법적으로 해결되었고 따라서 더 이상 미해결의 문제가 아니라는 잘못을 부정.

우리는 독일문제가 미치는 유럽적, 세계적 작용범위로 인해 우리에게 부과되는 책임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법에 국제법의 폭력금지사항을 못박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조직을 구속하고 우리 나라의 모든 시민들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은 결코 독일정책의 수단이 될 수 없고,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서 본인이 새로이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일련의 나치 폭력지배 때문에 값비싼 댓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우리나라의 사람들, 즉 고향을 빼앗긴 수백만의 추방을 당한 사람들과 망명을 한 사람들도 전쟁이 끝난 후 불과 얼마되지 않아서 바로 이점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공포와 억압을 받지않고 살 수 있는, 자유롭고 하나로 일치된 유럽이라는 이상에 대한 엄숙한 신조를 지니고서 1950년에 제정된 슈투트가르트헌장은 무엇보다 앞서서 폭력과 복수라는 악마의 소굴을 쳐부수었습니다.

독일문제는 역사적, 법률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매우 자명하게 우리 헌법의 전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에서는 하나로 일치된 유럽을 원하고, 전체 독일인들에게 자유로이 스스로 결정해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심을 품거나, 더듬어 확인코자 하는 사람은 역사에 무감각한 사람이며, 그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자유의 한 부분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움직여 가는 힘이라는 점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럽의 틀 내에서 우리는 독일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며,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웃나라들과의 이해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영역 내에서 살려고 하는 것은 모든 유럽인들의 절실한 관심사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국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일체의 것을 배제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경을 넘나들게 하는 것과 국경의 분단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경선의 불가침성과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현재의 국경선 내에서 갖는 영토불가침성 및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자유를 위한 본질적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가 없이는 어떠한 실제적 평화도 없다는 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유럽의 평화질서와 이를 통한 독일문제의 해결은 독일국민들에 의해 자유로이 스스로

결정되는 가운데 받아들여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문화, 동질성 추구와 그 다음의 국가조직은 독일의 국가의 식이라는 요람에서 생성되었습니다.

독일문화는 그리고 하나의 독일문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독일인들의 공동연대감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중요한 사태와 결과들이 이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독일인은 1983년에 루터의 해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이 종교개혁가의 영향은 우리나라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르틴 루터를 상기함으로써 우리 독일인은 공통의 정신적 뿌리를 다시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파괴된 이후 40년만에 드레스덴에서 젤퍼-오페라가 재개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엘베슈타트가 독일문화사에서 차지하는 우뚝 솟은 위치를 상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인리히 쉬츠가 최초의 독일오페라를 썼고, 칼 마리아 폰 베버가 우리나라의 음악문화에 강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프리드리히 셴켈과 고트프리트 젤퍼는 독일건축사에서 유명한 이름입니다. 파괴와 황폐화의 단계 이후 독일민주공화국에서 다른 기념물들이 재건된 것은 우리들 모두의 공동문화유산에 대한 기여입니다. 두가지 예를 언급한다면, 700년 된 로코코풍의 수도원 "성스러운 십자가를 향하여" (Zum heiligen kreater)에 대한 작업과 베를린의 "독일극장"의 재개관이 있습니다.

양독인들은 공동의 문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이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대한 독일의 작곡가

이자 동시에 유럽의 작곡가인 하인리히 쉬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을 경모하는 최근의 많은 행사들이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괴테학회의 100주년 역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과 이 유산 속에 들어있는 공통성에 대한 가능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교량기능에 있어서 괴테학회는 괴테라는 이름만을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 가치는 1848년 독일국민입법회의 의장직을 맡았던, 괴테학회의 초대회장 에루아르트 폰 짐손의 전통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학회에서 지난 시대의 아주 오래된 유물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회를 문화적 공통성에 대한 모델로서, 국경을 넘어서서 파악해야 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문화적 협력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협정” 역시 공동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줍니다.

연방정부는 이 협정에 대한 합의를 환영합니다. 이에 대한 작업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 사람들과의 다양한 문화적 접촉을 원합니다. 바람직한 모든 것이 다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보다 많은 공통성을 얻을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 협정은 많은 영역에 있는, 기존의 문화적 접촉을 보호 및 촉진시키고, 협력을 확대시키는 일을 용이하게 해줄 것입니다.

동시에 조형예술, 극예술로 부터 문학, 음악, 교육과 학문을 거쳐 기념물 보호에 까지 이르는 가장 여러가지의 영역들이 고려되고 있

습니다. 연방정부는 협정을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파악합니다.

협정의 모든 규정들은 베를린에도 적용됩니다. 이것은 연방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의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실행결과는 무엇보다 협정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가시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독일민주공화국의 전시회 때 프로이센 문화유산관리재단이 더 이상 제외되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본인은 이 협정의 작업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독일연방공화국의 여러 주에서 협상 중에 보내주신 협력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문화영역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이 협정에 생명을 가득 채우는데 기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비준 자체는 모든 주에서 찬성을 얻기만 하면 바로, 본인이 바라는 대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공동의 문화유산을 뒷세대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핵심적인 교육과제입니다. 본인은 새로이 우리의 주정부들에게 젊은이들의 역사교육에 대한 책임을 올바르게 평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실상 이것이 실제적인 독일정책에 대한 기여인 것입니다. 독일민주공화국도 얼마전부터 다시 전보다 더욱 강하게 독일역사에 주의할 기울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유한 사회주의의 토대를 고유한 역사에서 세우려는 것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서술과 해석에서 인간이 재인식되는 경우에만, 역사는 공동체 의식과의 동질성 확인을 가능케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문화, 법률과 종교, 가치와 전통은 한 민족의 기억에 대한 결코 변질되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루터를 찬미하는 사람은 결국 기독교의 양심에 대해 침묵할 수 없습니다. 피테를 본받으려는 사람은 계몽주의 유산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사람들이 찾고 있는 역사적 위치규정은, 이 규정이 잘못된 전원시에 머무르지 않거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오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내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역사로 부터 무엇인가를 배울수 있는 능력의 여부에 따라서도 우리는 독일인으로서 측정됩니다. 최근에 우리는 다시 얼마전의 독일의 과거를 상기했습니다. 1983년은 히틀러가 집권한 지 5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는 그당시 얼마나 많은 독일인이 전체주의적 유혹에 빠져 있었는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1934년 7월 20일은 히틀러가 암살당한지 40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독재에 저항하다가 희생당한 분들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분들의 유산은 독일의 역사와 현재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부분에 속합니다. 1985년 5월 8일 결국 우리는 전쟁과 독재를 종식시켰고, 우리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향유할 수 있었던 민주주의를 새로이 탄생시켰습니다. 이 기억이 동·서독의 독일인들을 얼마나 많이 감동시켰는가 하는 것은 다양하게 가시화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번 기념해에 한정하여 예를 든다면, 독일민주공화국의 프로테스탄트교회와 독일연방공화국의 프로테스탄트교회 재휴에 대한 공동의 입장표명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독일인은 역사를 멀리 할 수 없으며, 우리들 중 누구도 좋은 것만을 기억하고 나쁜 것을 이웃에게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양독살람들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독일연방의 수상으로서 본인은 1985년 4월 옛날의 나치 강제수용소 베르겐-벨젠에서 박해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에 가해졌던 것에 관해 우리가 느끼는 수치와 비애라는 말을 했습니다. 독일 역사의 이 부분을 쫓아내어 없애 버릴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이런 독일의 역사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전체주의적 유혹에 영원히 저항하는 것이 독일인으로서, 유럽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바울교회에 서려 있는 - 혹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위해, 독일의 통일을 위해 투쟁한 함바허 슬로쓰에 서려 있는 - 이념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관찰되리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지난 해에 이 자리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독일의 청년들에게 연설했다는 것은 이 목표를 통해 우리가 오늘날 세계의 우방국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성취하려면, 우리는 우리 역사의 유산을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도 독일 역사에 대한 관심이 성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독일인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가 역사의 과정에서 어디에 있는가 등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우리는 공동으로 미래의 모습을 위한 방향을 찾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에서도 분출되어 나오는 우리의 기원에 대한 들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두개의 광범

위한 구상을, 즉 본에서의 연방공화국 역사관 설립과 베를린에서의 독일역사박물관의 설립을 시작했습니다. 독일땅에 박물관이 무척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다양성에 대한 총체적 조망, 그리고 정치·사회·경제기술적, 문화적인 발전의 연관성에 대한 총체적인 조망이 없었습니다.

베를린과 본에서의 계획은 1945년 이후의 발전이란 면에서 보더라도 서로 보완적입니다. 이들은 학문적 토대에서도 그리고 동시에 특히 청년 방문객들에게 흥미를 일으키는 형태로도 독일의 '역사를 배워 익히게 하고, 이 역사를 이해시키며, 이 역사의 긍정적인 경험 및 괴로운 경험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유익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관 주도의 역사기술 혹은 관의 역사교육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박물관의 내적 형성을 이해집단의 비올배석결정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박물관의 초안 작성을 위해 연방정부는 저명한 역사가와 박물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들은 형식과 내용에 대한 지침이 없이 자유스럽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그들은 국내외의 유명하고 성공적인 박물관에서의 경험도 고려합니다.

본과 베를린에서 독일의 역사는 -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견해들과 다양한 발전의 가능성에 대해 개방된 채로 - 우리의 시민들이 그 역사 속에서 재인식 되도록 서술되어야 합니다.

이 개방성은 우리가 역사의 목적지를 모른다는 우리의 통찰에서

나옵니다. 역사의 의미와 목적지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언제나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가 있고 그리고 때때로 아주 새로운 것이기도 하다는 점은 바로 우리의 정신적, 정치적 자유의 조건인 것입니다. 특히 이 점에서 -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 본의 역사관과 베를린의 박물관은 베를린 장벽 저편에 있는 독일민주공화국 역사박물관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이 세워진지 40년이 흐른 지금이야말로 연방공화국의 역사를 정리해서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전달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에 역사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독일인이 20세기에 우리 역사의 파괴이후에 원했던 나라입니다. 비록 독일의 한 부분이 오늘날까지 법치국가적, 의회주의적 질서 속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은 국가의 통일과 민주주의라는 오래된, 영원히 지속될 이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전 역사는 베를린의 박물관에 진열될 것입니다. 우리가 1987년에 기공식을 갖고자 하는 이 독일역사박물관은 내년의 750년 축제에 대한 연방의 생일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있을 전시회, 축제, 회의들은 베를린을 그 본래의 모습으로 표현해 줄 것입니다. 즉, 유럽의 대도시이며 자유의 상징으로 표현해 줄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베를린시 당국의 준비를 후원합니다. 기념축제에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기념축제를 베를린의 통합을 생

생하게 그려내는 기회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분단이 심화되어서는 안됩니다. 750년 축제를 즈음하여 베를린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전 도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 분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를린 750년 축제는 회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도시에 속하는 본질적인 것은 혁신의 의지가 능력입니다. 회상, 혁신, 위치규정과 전망-이들은 베를린 축제에 대한 특징들입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연방정부가 축제일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정책은 3개국의 보호국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자유 베를린의 생명력을 확보하고, 강화하며, 베를린과 연방과의 결속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지속적인 노력으로서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5년 전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다는 것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15년 전에는 베를린에 대한 4대국-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협정을 엄격히 유지·보존시키고, 철저하게 적용시킬 것을 보증합니다.

4대국 협정이후 분단도시 베를린은 더 이상 위험한 변화의 초점이 아닙니다. 베를린은 자유 서방에 속해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오늘날에도 보호3개국과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 및 수상들이 베를린 방문을 통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재임기간 중에 프랑스 대통령과 영국 수상을 그곳으로 초청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이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국들이 독일민족에 대한 "신탁통치"로서 베를린에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재직했던, 독일의 진실한 친구인 미국 대사 아더 번즈씨가 그렇게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베를린으로 들어가는 길이 최근에 개선되었습니다. 제3국간 통과무역이 재개되었습니다. 8월에는 그의 통과도로상의 교류에 위험을 주는 도로장애를 제거하는데 관해 독일민주공화국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베를린 시당국은 고속열차를 다시 매력적인 교통수단으로 삼으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1985년 3월에 현대적인 교통·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내용에 대한 독일민주공화국과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을 관통하는 지상파이프라인이 가동되었고, 소련의 천연가스가 처음으로 공급됨에 따라 베를린에 대한 에너지 공급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의 만족스러운 베를린 경제의 발전은 1985년에도 분명하고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원조의존성향을 타파하고, 미래에 유용한 기술혁신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는 시당국의 노력은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연구와 발전을 향한 노력으로 해서 원하는 구조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첨단공학들이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오래된 경제와 대학간의 침체된 교류는 그 동안 만족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본인이 당시 베를린 시장과 공동으로 피했던 1982년과 1984년의 두차례의 경제회담과, 연방경제장관의 관장하에 진행되는 독일산업의 베를린시 담당자들의 정례회의는 베를린 경제에 상당한 정도의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베를린은 다시 발산력이 넓게 미치는 유럽의 대도시로 파악되며, 우리 모두에겐 여전히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독일정책은 베를린을 빠뜨릴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압됩니다. “인류의 복지를 위한 전진” 이렇게 서기장 호네커와 본인은 1985년 3월 12일 모스크바 성명에서 공동으로 명시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독일민주공화국의 지도부가 대화정치 및 독일연방공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 덧붙여 우리는 여행가능성의 확대를 원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여행이 더욱 확대되고 긴급한 가족의 일로 인한 여행에서 허가가 보다 많아지게 되고, - 최소한 한걸음씩이나마 - 모든 독일인에 대한 여행의 자유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 우리는 최저교환액을 상당한 정도 철폐하기를 더욱 촉구합니다.
- 우리는 국경교류에 관한 규정의 확대를 원하며, 베를린에 대해서도 방문 조건의 단순화와 확대를 원합니다.
- 우리는 100만 이상의 독일민주공화국 국민들에게 관계되는, 접촉금지의 제한조치를 약속된 것에 따라 행하길 바랍니다.

- 여행 및 방문에 있어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복잡
잡한 사무처리가 불쾌한 일로 남아 있는데, 이는 언제나 매번
관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교류에 있어서 정상화는 확실히 독일민주공화국의 관심
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작더라도 진전이 아주 중요한 것이며,
물론 1982년 가을 이후 벌써 몇몇의 구체적인 개선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경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 지도부가 약속했듯이, 이 경향은 올해 강화될 것입니
다.

독일연방공화국 지역으로 부터 독일민주공화국 쪽으로 다시 많은
시민들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간의 경우 여행기간은 최저교환
액을 높이기 이전보다 짧아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방문들
은 독일에서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생명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갖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독일민주공화국에 있는 친척, 친지
들을 방문한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일상
생활에서 결속과 신뢰를 보여준 것이며, 이 동족성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공고히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힘과 정력을
바쳐서 오랜 결속들을 보호 육성하고, 새로이 매듭짓는 일에 전념
해야 합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젊은이들의 교류를 다시 받아 들였습니다. 1985년
말까지 우리는 1000명 이상의 독일민주공화국 젊은이를 독일연방공화

국에서 맞이하여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3,000명 이상의 독일민주공화국 젊은이들이 독일연방공화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과 여러 주에서는 젊은이들의 독일민주공화국 여행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1985년에는 약 68,000여명의 독일연방공화국 젊은이들이 이런 식으로 장려되어 독일민주공화국을 여행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여행을 확대시키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청년단체들의 노력을 크게 후원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가능한 많은 체육교류를 가지려는 체육단체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독일연방공화국 체육연맹과 독일민주공화국 체육연맹 사이의 가장 최근의 협상결과는 약간 개선된 것이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한 바와 같이, 여전히 양측의 체육인들이 원하는 바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사회체육과 청년체육의 경우에 우리는 내륙의 경계선을 극복해서 만남의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독일민주공화국과의 문화협정은 이에 부가적인 자극을 주고 있고, 게다가 이 협정은 독일인들에게 유용한 것이 될 것입니다. 1985년 거의 25,000여명이 독일민주공화국에서 우리에게로 이주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들이, 특별한 동기없이도 친척과 친지들을 규칙적으로 방문할 수 있었다면, 자신들의 친밀한 생활환경에 그대로 머물렀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편의마련 역시 독일민주공화국 지도부의 관심사입니다.

연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접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서기장 호네커는 “아주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데에” 양독의 도시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그 사이에 맺어진 접촉이 개별적인 특수 경우로 남지 않고, 실제로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내독경계지역에서 독일민주공화국은 인간의 육체와 생명에 가해지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줄이는데 여러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아무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 경시적인 차단시설물이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독일의 국경에서 인간의 폭력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결코 침묵할 수 없으며, 침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독일의 중앙을 관통하는 국경선으로 인해 특히 국경선 주변지역(약 40km의 폭)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83년과 1985년 운송수단을 증가시켰습니다. 국경주변지역의 활동력을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독일정책에서 중요한 일에 속함에 틀림없습니다.

연방정부는 환경보호에 있어서의 협력에 특히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자연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은 내독관계가 다루어야 할 영역이며, 이는 내독관계의 표본이 될 수 있고, - 본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데 - 표본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 본 입법회기에서도 우리는 내독점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은 여섯 개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 1983년 여름 라이프찌히와 본에서 연소로가스탈황문제에 관해 최초의 전문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초국경적인 하천보호에 있어서 최초의 고무적인 합의도 있었습니다.

둘째 : 1984년 7월 뮌헨의 환경회담에서 독일민주공화국은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는 점을 선언했습니다.

셋째 : 두달전에 양국의 삼림전문가들이 삼림훼손에 관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5주전 파리에서 있었던 세계삼림보호회의에서 기쁘게도 본인은 독일민주공화국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 : 1985년 여름부터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과 함께 환경보호에 관한 정부간합의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여기서 요점이 되는 것은 경험과 기술의 교환, 특히 구체적 협력을 위한 협상이라는 점입니다. 삼림훼손, 하천보호, 대기정화와 같은 중요한 문제 이외에 폐기물 제거의 문제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자연보호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의견교환을 원합니다. 또한, 특히 양독 사람들의 건강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섯째 : 베라와 베저의 염분적재량을 낮추기 위한 조치에 대한 협의가 강도있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도 문제이지만, 재정 문제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여섯째 : 핵시설물의 안전과 방사능보호문제에 대한 전문가회담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독일민주공화국과 환경분야에서 협정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학문과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의에서도 진척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내독관계에서 안정된 요소 중 하나는 특히 베를린을 완전히 포함시킨 내독간의 교류입니다.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만족할만한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대략 균형이 잡힌 1985년의 거래액은 규모면에서 165억 통합통화 단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82년 이래로 약 25억이 증가한 것입니다.

1985 7월 5일의 새로운 신용한도협정으로 인해 양국의 경제관계들에 대해 보다 확대된 추진력이 주어졌습니다. 연방정부는 또한 거래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도 상당한 정도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공급과 수입을 대략 균형적으로 맞추면서 거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아직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제3시장에서의 협력기회 역시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우리는 구좌대체라는 아주 복잡한 분야에서 - 특히 금리생활자, 연금생활자, 빈민구제수혜자와 고아들을 위해 - 상당한 진척을 보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독일민주공화국을 거쳐서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쇄도해 들어 오는 것은 상당한 정도로 우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도 38,000명이 쇠네펠트공항을 거쳐 독일연방공화국에 왔습니다. 연방정부는 다시 한번 독일민주공화국이 국제관계에 따라 행동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필수적인 목적국가의 입국허가사증이 있는 경우에만 독일민주공화국이 통과비자를 교부해 주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독일민주공화국은 대화와 협력의 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준비성을 명확히 보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우리가 완전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은 관계를 유리하게 발전시키려는 목표와 일치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이 문제로 제기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양측의 공통관심사는 무엇인가? 관심조정은 어느 분야에서 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해 우리는 균형적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원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원칙은 동일한 영역에서 실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은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가를 현실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안됩니다. 초석이 되는 것은 기본협정입니다. 이 기본협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 독일민주공화국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는 실행할 수 없으며, 실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들은 근본적으로 독일의 분단을 확고하게 해놓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헌법이 뒤흔들리도록 해서는 안되며, 또한

똑같이 베를린과 독일전체에 관련한 4대국의 책임도 뒤흔들리도록 해서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협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독일민주공화국이 원하는 바를 결코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서독간의 원칙적인 대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없애고자 하는 사람은 독일의 이해에 해를 끼치고, 인간의 복지에 대한 더 이상의 발전을 어렵게 합니다. 지위 문제와 다른 기본적인 문제에서 이중적인 애매함을 취하며서 인간의 편의를 확보 한다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칙적 입장이 포기된다면 오히려 여행교류의 개선이 있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이야기되어야만 합니다.

경험을 통해 보면 예전대 국적문제와 같은 것에 대한 원칙적 입장이 양독간의 협력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통해 주어진 입장, 즉 독일의 국적은 오직 하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독일민주공화국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1973년 7월 31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판결로서 확정한 것, 즉 독일 연방공화국의 보호영역과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에 속해 있는 모든 독일인들은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권리를 보장받는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독일민주공화국이 이미 1967년에 자신들의 고유한 국민권법을 공포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 발생된 문제

들이 우리 법률의 틀속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민주공화국 기관의 대표로서 공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독일국적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당국은 찾아 온 독일인들을 되돌려 보내지도 않고, 되돌려 보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독일정책은 분명하고도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앞의 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들이 의사일정에서 우선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독일의 중앙을 관통하는 경계지역에서의 인도주의와 평화를 요구합니다. 장벽과 가시철조망, 발포명령이 사라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둘째, 우리는 독일에서 자유민주권을 요구합니다. 인간을 위한 여행자유, 정보와 의견의 방해받지 않은 교류, 이것이 양독간에 끊임 없이 점차적으로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서적, 신문, 영화, 학자들의 논문 및 예술가들의 작품들도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에 있는 독일인들에 대해 인간의 권리와 헌법상의 보호가 유지되길 원합니다. 그들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하고, 신앙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자명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도 있어서는 안되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작더라도 많은 발전을 가져 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개의 요구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두 국가는 머지않아 유럽에 그 형태를 드러낼 동맹체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독일 혼자만 유럽의 분열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정책 역시 이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정책의 변함없는 토대가 동맹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이 유럽의 통합이나 혹은 대서양동맹에서 떨어져 나가면, 독일연방공화국은 그 관심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독일정책과 동방정책을 추구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서양 양안을 잇는 교량을 강화시키고, 유럽의 통합을 위한 커다란 계획을 관철시키는 일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강점은 언제나 자유서방진영에 속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환의 대상이 아니며, 관행처럼 다른 진영이 늘 철회시킬 수 있는 일상에서의 편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연방정부는 민족적 독자노선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거부합니다. 유럽의 중앙에 중립국가를 세우려는 독일의 노력은 - 이것이 우익에서 나왔든 좌익에서 나왔든 - 독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길이 아니고, 우리의 정치적 기본가치에 의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 시민과 정부는 처음부터 독자적인 결정으로 그러한 개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떤 반대세력들이 병존 - 탈병존 - 독일정책으로서 중립주의로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위험스런 잘못입니다. 미국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동맹내의 가치·안전 공동체를 통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련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유럽

의 지형 및 소련의 전체주의적 힘의 행사를 통해 규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이한 방법으로 우리의 관심사를 동맹국내의 우방들에게 관철시키고, 동구의 이웃들에게 주장합니다.

연방정부는 레이전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회담에 대해 독일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특히 강조합니다. 제네바에서의 정상회담으로써 두 세계적 강대국간의 대화가 두드러지게 강화될 수 있었으며, 기본 윤곽이 잡힐 수 있었습니다.

그 정상회담의 고별 공동성명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포괄적인 대화에 대한 신호입니다. 이로서 정상회담은 동 서관계의 새로운 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독일의 양국가는 협력을 이룩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이 길에서 기여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대립은 독일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제네바 정상회담에서 나온 추진력은 동시에 전유럽안보협력회의(KSZE) -과정과 독일민주공화국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인도주의 문제는 전유럽안보협력회의 과정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독일민주공화국이 공언한 것에 대한 신용은 이것이 인간의 권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체포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인간의 접촉과 만남은 신뢰증진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이는 비핵지

대에 대한 추상적 토론보다도 더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것입니다.

전유럽안보협회의 과정의 인간적 차원은 협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입니다. 이에 본인은 중부유럽과 동부유럽에 위치한 우리 독일인들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묶여 있으며, 특별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우리들 앞에 커다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독일정책은 성공적이었고 지금도 성공적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에서 인간을 위한 구체적인 많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유 속에서의 통일에 대한 독일인의 의지가 깨어지지 않고 남아 있게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독일의 모든 민주주의자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유럽에서 평화상태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이 상황에서 독일인이 자유로운 자기결정으로 자신들의 통일을 재성취하는 것입니다.

출처 : 독일연방언론 및 정보청 공보, 본, 1986. 3. 15.

125. 독일민주공화국의 연해 확장

1986. 4. 3.

1986년 4월 3일 독일민주공화국 국경에 대한 제3차 시행령(3차 법령)

1982년 3월 25일 4장. 4항, 12항. 2항, 40항에 의거해서 다음 을 규정 함.

7장

일반규정

1

(1) 이 법령은 다음에 적용된다.

- 독일민주공화국 해운청으로부터(이후 해운청으로 부름)항해하도록 허가된 선박들.
- 국경법 14조에 따라 독일민주공화국의 항구에서 입항 및 출항 하거나 혹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해를 평화적으로 통과할 것을 요청할 외국 선박들.

(2) 이 법령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외국의 전투함과 비상업적 목적에 사용되는 외국의 선박
- 외국의 스포츠 보트

2

원칙

(1) 3조에 해당사항이 없는 한, 선박이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해를 항 해하는 경우 55장~13장에 따른 항로를 사용해야 한다.

(2) 항로는 주어진 중앙측으로 부터 진행방향의 오른쪽으로 가야한 다. 이는 해상충돌을 막기위한 국제규칙 중 제9규칙의 의미에서 좁

은 항로가 아니다.

3

예외규칙

(1) 해운청으로 부터 항해허가권을 받은 선박은 독일민주공화국의 항구 사이를 항해할 때 및 다른 해상활동을 하기 위해 항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1항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주무기관으로부터 독일민주공화국 영해에서 어로작업 혹은 연구임무수행의 승인을 얻은 외국의 어선과 연구선에도 적용된다.

(3) 2항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한, 외국의 선박은 로스톡과 비스마르항 사이의 목적항해시 규정된 항로로 부터의 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해운청의 지방주무교통관리국에 해야한다.

4

신고의무

(1) 선박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1973/78의 국제조약 부칙 I 6절 규칙 I 에 따른 기름, 혹은 부칙 II 6항 규칙 1에 따른 유해유동물질 혹은 핵물질을 운반하는 선박 및 핵추진 선박은 독일민주공화국 영해를 출입할 때 해운청(로스토크 항)의 중앙교통관리국, 해안구조관리국, 쇄빙선관리국에 초단파-무선통신으로 통신로 14 혹은 해안무선국 무선 라디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주어져 있다.

(2) 신고는 선박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

- 선박명 및 식별번호
- 모항과 국적
- 총측량
- 추진시설의 종류
- 길이, 넓이, 흘수
- 화물의 종류와 양
- 승무원과 선박의 상태.

(3) 독일민주공화국 영해로 핵추진 선박이 들어가기 위해 핵에너지 사용과 그 위험으로 부터의 보호에 관한 1983년 12월 8일의 법률 -핵에너지 법률-에 따라 핵안전 및 방사선보호 담당 국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는 이와 관련되지 않는다.

5

독일민주공화국의 항구를 출입하기 위해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해를 통과하는 항로

비스마르 항

(1) 서쪽 방향에서 출입하는 선박은 다음 위치좌표 사이의 연결선을 통해 그 중심축이 결정되는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

- 북위 55° 06' 19", 동경 11° 09' 07"(가까운 위치 부표 3뉘백-게트저 해로.

- 북위 54° 07' 16", 동경 1° 25' 4"

(2) 북쪽 방향으로 출입하는 선박은 중심축이 다음의 위치좌표 사이의 연결선을 통해 결정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

- 북위 54° 12' 06", 동경 11° 23' 40"(가까운 위치부표 5뤼벵-게트저 해로)

- 북위 54° 07' 16", 동경 11° 25' 44"(위치부표 비스마르)

(3) 비스마르 항을 출입하거나 혹은 정박소로 가려는 선박의 운항은 확정된 항해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1,2항에 따른 항로의 전체 폭은 0.8해리이다.

6

로스투크 항

(1) 로스투크 항을 출입하거나 혹은 정박소에 입항하려는 선박은 운항분리지역과 확정된 항해방향을 이용해서 운항해야 한다.

(2) 운항분리지역에 이르거나 그 지역을 떠나기 위해 독일민주공화국 해양경계선 으로의 최단해로가 이용될 수 있다.

7

슈트랄준트항 - 북향항로 -

(Hafen Stralsund-Nordansteuerung)

(1) 선박은 중심축이 다음 위치좌표 사이의 연결선을 통해 결정되는 항로를 이용해서 슈트랄준트 항-북향항로를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북위 54° 43' 34", 동경 12° 49' 54" (가까운 위치등대에선 모
엔)

- 북위 54° 38' 17", 동경 13° 01' 17" (위치부표겔렌).

(2) 1항에 맞는 항로의 전체폭은 0.8해리이다.

(3) 서쪽방향에서 오는 선박은 북위 54° 31' 12", 동경 12° 19' 38" (가
까운 부표E/케트저 남쪽운항분리지역 72)로 부터 슈트랄준트 - 북향
항로의 부표 겔렌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은 반대로 슈트랄
준트 - 북향항로를 떠날 때도 적용된다. 이 해역에서 선박이 운항할
때 쾨스트북쪽의 잠정적 봉쇄구역을 주의해야 한다.

8

슈트랄준트 항 - 동향항로 - 동쪽방향을 출입하는 선박은 12조에
따른 뒤겐 동쪽항로와 연결된 란트티프 방향 혹은 오스트티프 방
향을 이용해서 한다.

9

자쓰니츠 항

(1) 북쪽방향으로 들어오거나 나아가는 선박은 다음의 위치좌표 사
이의 연결선을 통해 그 중심축이 결정되는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

- 북위 54° 35' 10", 동경 13° 43' 53" (위치 슈툼벤캄머).

- 북위 54° 31' 22", 동경 13° 43' 23" (위치부표 자쓰니츠)

- 북위 54° 29' 54.3", 동경 13° 37' 52.8" (위치부표2 자쓰니츠).

(2) 남쪽방향을 출입하는 선박은 중심축이 다음 위치좌표 사이의 연결선을 통해 결정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

- 북위 54° 19' 51", 동경 13° 58' 17" (위치부표),
- 북위 54° 26' 30", 동경 13° 47' 60" (위치부표 무크란).
- 북위 54° 31' 22", 동경 13° 43' 23" (위치부표 자쓰니츠)
- 북위 54° 29' 54.3", 동경 13° 37' 52.8" (위치부표2 자쓰니츠-방향)

(3) 1, 2항에 해당하는 항로의 전체폭은 0.8해리이다.

10

무크란 항

(1) 동쪽방향으로 출입하는 선박은 중심축이 다음 위치좌표 사이의 연결선을 통해 결정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

- 북위 54° 29' 08", 동경 14° 03' 58",
- 북위 54° 26' 03", 동경 13° 47' 00" (위치부표 무크란)

(2) 무크란 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정해진 방향에서 행해져야 한다.

(3) 1항에 해당하는 항로의 전체폭은 0.8해리다.

내해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해를 통과하기 위한 항로

11

튀겐 북쪽항로

(1) 튀겐 북쪽의 독일민주공화국 영해를 통과하려면 중심축이 다음 위치좌표 사이의 연결선을 통해 규정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

- 북위 54° 47' 12", 동경 12° 58' 12" (가까운 위치 등대선 모엔),
- 북위 54° 45' 40", 동경 13° 33' 52" (위치부표 아르코나),
- 북위 54° 45' 00", 동경 13° 50' 26".

(2) 1항에 해당하는 항로의 전체폭은 1해리이다.

12

튀겐 동쪽항로

(1) 튀겐 동쪽의 독일민주공화국 영해를 통과하려면 중심축이 다음 위치좌표 사이의 연결선을 통해 규정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

- 북위 54° 53' 12", 동경 13° 27' 06"
- 북위 54° 45' 40", 동경 13° 33' 52" (위치부표 아르코나),
- 북위 54° 19' 51", 동경 13° 58' 17" (위치부표 슈빈 N),
- 북위 54° 07' 30", 동경 14° 13' 12" (위치부표 N4).

(2) 1항에 해당하는 항로의 전체폭은 1해리이다.

13

슈빈오체크항으로 가는 항로

(1) 독일민주공화국 영해를 통해 슈빈오체크항을 출입하려면 중심축이

다음 위치좌표 사이의 연결선을 통해 규정된 항로를 사용해야 한다.

- 북위 54° 24' 41", 동경 14° 08' 10",
- 북위 54° 14' 43", 동경 14° 11' 03" (위치부표 N2),
- 북위 54° 01' 00", 동경 14° 15' 11".

(2) 1항에 해당하는 항로의 전체폭은 1해리다.

(3) 11항과 12장에 해당하는 항로를 이용해서도 독일민주공화국 영해를 통과할 수 있다.

(4) 독일민주공화국 영해를 통과하기 위해 중심축이 다음 위치좌표 사이의 연결선을 통해 규정된 연결항로도 사용될 수 있다.

- 북위 54° 19' 51", 동경 13° 58' 17" (위치부표 슈빈 N),
- 북위 54° 14' 43", 동경 14° 11' 023" (위치부표 N2).

(5) 4항에 해당하는 연결항로의 전체폭은 1해리다.

최종규정들

14

후속규정

교통부장관은 주무중앙국가기관의 장과 합의해서 법규를 통해 5-13에 해당하는 항로의 변경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5

효력발생

이 법규는 198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86년 4월 3일, 베를린

독일민주공화국 각료회의

W.Stoph(슈토프)

의장

교통부 장관

아른트

출처 : GBI독일민주공화국, 1986. 5. 2, p.253.

126. 베를린에서의 문화재 교환

1986. 4. 3

목요일에 동·서베를린간에는 전쟁중에 베를린의 각처로 잘못 옮겨져 있었던 문화재들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교환되었다. 서베를린으로부터 쉴러 입상이 동베를린으로 인도되었는데, 이 입상은 동베를린에 있었던 옛날의 위치, 겐다르 멘마르크트, 즉, 재건된 신켈극장앞 오늘날의 아카데미 자리에 다시 놓여져야 한다. 카라라대리석으로 된 이 시인상은 베를린 출신의 조각가 라인홀트 베가(1831~1911)에 의해 조각되어, 1881년 제막식이 경사스럽게 거행된 쉴러기념물 중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쉴러입상은 높은 받침대위에 서있었고, 시문학, 회

곡, 역사, 철학을 나타내는, 동그런 좌대의 가장자리에 대각을 이루며 얹혀있었던, 4개의 비유적 형상에 의해 에워싸여 있었다. 받침대에는 물을 끌어내는 사자상과 부조들이 장식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9명의 뮤즈에 둘러싸여 시인으로 봉정되어 올림프스에 오르는 쉴러를 묘사한다. 1935년 겐다르멘마르크트가 개조될 때 쉴러기념물이 옮겨졌다. 이 기념상을 동으로 주조한 것이 1941년 이래 벡팅 구역(오늘날 서 베를린)의 쉴러 공원에 서있다. 원래의 대리석으로 된 쉴러상은 1951년 서베를린의 샤를로텐부르크 구역에 있는 리첸호수공원에 세워졌다. 원래의 받침대와 받침대의 여러 조각상들이 있는 곳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대응하여 베를린 출신 조각가 알렉산더 칼란드렐리(Alexander Calandrelli, 1834~1903)에 의해 1885년 조각된 님페(Nymphe)가 서베를린으로 돌아왔다. 이 조각은 이전에 티어가르텐 구역의 란트베어카날(Landwehrkanal)에 있었던 하이트(Heydt)빌라 앞, 지금은 “프로이센 문화 유산관리”재단 총재의 집무실 앞에 있는 “ним페분수”(Nymphen Brunnen)에 있던 것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있다. “절벽위에 좁은 분수반안에 있는, 목욕 후 놀란 요정의 대리석상”. 이 조각상은 반환되기 앞서 지금 동베를린에서 보수되고 있다. 이제 이 조각상은 다시 서베를린에 세워진다.

그의 조각가 페터 에히터의 부조물 29개를 동베를린이 반환했다. 이 부조물들은 파우엔 섬의 작은 성에 있는 테 - 살롱(Tee-Salon)에 속한 것들이다. 지금까지 이들은 포츠담에 있었다. 끝으로 서베를린

의 보이트 출판사 (Beuth-Verlag)는 그들의 소망에 따라, 오늘날 동베를린의 매르키셰스 박물관의 뜰에 놓여있어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보이트 기념물의 받침대 부조주조상들을 인수한다. 출판사는 이로써 출판가 이름을 딴 사람과의 연관성을 나타 내려고 한다.

동 서베를린간의 '문화재 교류는 1981년 4월 당시 시장 포겔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때 쾰른에 의해 고안되고 여러 조각가들에 의해 조각된, 옛날 성의 다리에 있던 8개의 조각상들이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이양되었다. 이 조각상들은 그 동안에 원래 있던 위치, 지금의 탑 앵겔스 다리에 다시 세워졌다. 당시에 이에 대응해서 동베를린에서는 프로이센 왕실의 귀중한 수공도자기들을 서베를린에 반환했다. 1983년 여름 1761~1765에 건설되었으나 1935년에 파괴된 에프라임궁전의 정면부분들이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에서는 동베를린으로 옮겨졌다. 동베를린에서는 현재 로템시청과 슈프레강사이의 니콜라이 지역에 네프라임궁전이 원형에 충실하게 재건되고 있다. 1985년 1월 말 서베를린의 지방박물관장 앵겔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총박물관장 다이터스(Deiters)사아에서 성의 다리의 교각에 있던 4개의 독수리석고부조와 쾰른이 건축한 서베를린 벅딩구역의 나짜레트교회 성수반의 석고상을 교환했다.

출처 : 프라크푸르터알게마이네 짜이퉁의 자유기고, 프랑크푸르트, 1986. 4. 4.

127. 독일의 통일과 인간의 편의

1986. 4. 17

연방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박사의 본에서의 연설

동 서관계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 독일정책의 기본노선과 기본적인 이해를 특히 우리의 우방국들 앞에서 약간 설명할 수 있고, 아마도 우리 독일의 특수한 상황을 보다 폭넓게 이해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독일의 정책은 이중적이어야만 합니다. 즉 독일정책은 장기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위한 투쟁과 이와 더불어 사람들을 위하여 분단을 보다 덜 고통스럽게 하려는 노력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1945년 이래로 우리 독일정책은 독일의 분단을 극복하고, - 분단이 지속되는 한 - 통일에 대한 주장을 유지시키고, 민족을 단결시키며, 이 분단이 지속되는 한, 사람들을 위해 분단을 덜 고통스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정책은 또한 3대국과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베를린의 평화와 생활력을 보장하고 강화시키는 것 또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연방수상은 -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듯이 - 3월 14일 연방의회에서 행한 분단독일의 국가정세에 관한 정부보고에서 독일정책

프로그램 중 아주 상위에 놓여있는 다음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1. 독일의 중앙을 관통하는 양독 국경지역에서의 인도주의와 평화, 장벽, 가시철조망, 발포명령은 제거되어야만 한다.
2. 독일에서의 자유이주권, 인간을 위한 여행자유, 정보와 의견의 막힘없는 교류, 이들이 양독사이에서도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실행되어야만 한다. 서적, 신문, 영화, 학자들의 논문과 예술가들의 작품들도 자유로이 교환되어야만 한다.
3. 독일민주공화국에 있는 우리의 동포에 대한 인권의 유지 및 기본권 보장. 독일민주공화국 시민들에게 그들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하며,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자명한 권리가 있다.

연방정부는 분단독일에서 인간의 처지가 얼마나 개선되는가에 따라 연방정부가 평가받는다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단지 많고 작은 진보들을 통해서만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거나 혹은 이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과 이 많고 작은 진보들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책임있는 당국자들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협력을 원하고 보호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동서독 관계들이 양독간의 기본적인 대립을 전제하고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본적인 대립들은 잊혀져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잊혀진다면, 곧바로 현실에 맞지않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일은

존중에 바탕을 둔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토대에 대한 협정의 전문에서 양국은

- “역사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 “기본적인 문제들, 특히 국가적인문제에 대한 서로 상이한 견해들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양국간의 “협력의 전제조건들”을 규정하고자 함을 명백히 했습니다.

우리와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에는 체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정치적 지배를 완전히 상이하게 이해함으로써 야기된, 합치될 수 없는 기본입장과 목표설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한,
- 전력분립과 이 명칭에 걸맞는 선거에 대한,
- 정보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여행의 자유에 대한,
- 인간의 권리와 독립적인 법원을 통한 인권의 보장에 대한 원칙적인 견해차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 일련의 본질적인 점으로 인해 대립적 입장과 목표설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인은 이 대립때문에 대화와 협력이 방해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실행력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들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자유를 지지합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자결과 기본권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서독 사람들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서방연합의 가치공동체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반해 동

독사람들에게 이 사회질서에 대해 찬성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소련에서 발전된 사회주의의 규범들이 그들에게 강요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독일민주공화국의 법질서가 개개인의 자유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인권에 대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이해에서 형성됨을 의미합니다.

이 골 깊은 대립에 직면해서 보면 양독간의 관계정상화가 본질적으로 의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결코 분명히 정의될 수 없으며, 이것은 이 대립 사이에서 대화와 협력을 모색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독관계에서 인간들에 유용한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끈질김과 인내, 유연성과 환상이 요구되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본협정이 얻고자 열망하는 바와 같은, 협조방식의 의미에서의 관계들은 적대감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내독관계는 확실히 갈등관리가기도 하고, 그외 - 쌍방으로 부터 - 동 서 관계에서 관심사들을 묶고 협력을 모색하고 좋은 이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독일인들에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하고 있는가 하는 불신에 가득찬 질문이 늘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독일정책에서 그랬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당연히 역사로 인해 기인된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우려를 일소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독일정책은 양독간의 관계를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고서, 동·서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동

서 갈등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양국이 곧 가까운 시일내에 유럽에서 모습을 드러낼 동맹체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 정책의 불편적 토대는 자유서방의 동맹에 뿌리를 내려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맹은 방위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자유화는 가치에 대해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가치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연방수상은 분단독일의 국가정세에 대한 보고에서 독일문제의 영향 범위가 유럽과 세계에 미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부과된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가조직과 모든 독일인들이 독일헌법에 있는 국제법상의 폭력금지 조항을 준수한다는 점을 제시했고, 전쟁과 폭력은 더 이상 결코 독일정책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고,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동구이웃들과 타협하고 화해하려는 노력과, 독일정책을 유럽의 평화정책으로 이해하는 것 역시 우리 독일정책의 중심사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독일정책이 바로 유럽 그리고 세계와 관련을 맺고있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나라들이 우리의 독일정책에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독일정책은 우리의 이웃나라들에게 결코 근심을 끼치지 않을 것이고,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환상에 빠짐이 없이, 또 분명하고도 그 진행방향이 예측될 수 있도록 수행된다는 점입니다.

1983년 5월 -그러므로, 이번 입법회기가 시작할 때의 정부성명에서 상세하게 언급된 우리 독일정책의 법적토대와 정치적 중심사상은 우리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되는 사상을 국가의 통일이 무엇보다도 독일인들의 자유 속에서 성취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독일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유럽의 운명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나라들과 대립해서가 아니라, 유럽인으로서 그들과 함께해서 유럽의 분열을 극복하고 이로써 독일의 분단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통일을 위한 유럽의 지붕이라는 구상은 20세기의 변화 이후 생기게 될 역사의 모습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19세기에 유럽이 고수할 수 있었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세계 정치의 패권주의는 끝났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세계사의 유일한 중심이 아니고, 서로 밀접하게 엮어져 있는 세계의 보다 많은 중심세력 중의 하나입니다. 독일은 유럽의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역사에서 언제나 원심력을 내보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사의 중심에서 독일이 차지한 심장부의 위치를 독일은 20세기가 진행되면서, 유럽이 세계사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변화됨과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독일은 급변하는 세계에서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 일체감을 보존시켜야만 하는 유럽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독일의 분단을 극복하는 것은 동시에 유럽의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며, 따라서 독일에 대해서와 똑같이 유럽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분단된 독일은 지속적으로 안정된 평화질서를 촉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방해하는, 잠재적인 갈등의 중심지입니다.

독일의 분단과 이로 인한 유럽의 분단은 역사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이해가 커지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태연함과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실용적인 정책을 펼치려는 우리의 준비는 이러한 동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기독교와 계몽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통일적인 안전에 대한 이해를 유럽 전체에서 재생시키려는 노력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상화는 인간이 자신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자각하고 실제로 행사할 때 시작됩니다. 자결과 국민주권이 독일문제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독일문제를 민주주의 원리와 인간의 품위 및 법치국가와 결부시켜놓고 있습니다. 모든 독일인과 모든 유럽인이 마침내 자유롭게 되고, 자유의자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어야 비로소 자유와 민주주의는 독일과 유럽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통일과 자유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지는 끊기지 않았습니니다. 우리 헌법의 전문은 모든 독일인들에게 자유스러운 자결로 독일의 통일과 평화를 완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이미 거의 40여년 전에 우리 조국의 민족적·국가적 통일을 재생하려는 목표는, 이제는 누구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말할 수 없는, 정치적 과정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헌법전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역사적 과정에

이해와, 이 과정에 있는 민족의 통일과 자유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독일문제를 비록 오늘은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민족과 자유에 대한 의지가 역사에서 강한 힘으로서 증명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우리 독일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유럽의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국경 안에서 살고자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독일정책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경을 보다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국경으로부터 분리적 성격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제한적으로 헬싱키협정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헬싱키협정에서 모든 참가국들이 승인했던 것, 즉 "국제법에 일치하여 국경선은 평화적 수단과 합의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민족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생생하게 하려면 역사를 깊이 다루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와 문화, 비국가적 조직들은 독일민족의식의 요람에 구속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년동안 분단된 양독에서 눈에 띄게 증가되는 독일인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역사전람회에 아주 많은 독일인들이 방문하는 것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서적시장에서 많은 수의 역사 서적들이, 특히 비교적 현대의 독일역사에 대한 서적들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발간되는 책의 수만큼 수요자가 많으며, 독자의 관심이 크

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는 본인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복잡다난한 유산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려 한다면, 우리 독일인들은 당연히 이 유산에 대해 잘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고유한 역사와 관련된 교육의 과제가 우리의 민족적 동질성(Identität)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Bonn)에 설립예정된 독일연방공화국 역사관과 베를린(Berlin)에 예정된 역사박물관으로서 연방정부는 역사적 관심을 보다 더 일깨우고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독일민주공화국 역시 독일 역사를 새로이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의 토대를 역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독일의 전 역사를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긍정적인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에서 우리의 역사를 경쟁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민족의 결합과 통일에 힘을 주고, 대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공동적인 독일의 역사는 우리와 독일민주공화국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가들이 동시에 출간한 비스마르크 전기의 예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밖에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관 역시 변화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히틀러에 대한 독일인의 저항을 독일민주공화국에서 새롭게 다룬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독일에서 교회라는 특수한 공동체 역시 폭넓은 결합적 요소입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의 개신교 교회지도자(Kirchenleitungen)회의와 KED협의회(Rat)는 부활절 성명 "평화에 대한 희망"에서 평화에 대한 양측의 책임, 전유럽안보협력회의-결의(SchluBakt)에 기록된 기본적 자유

(Grundfreiheiten)와 인권을 굳건히 보장해야하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2차대전이 끝나고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는 물음을 해보았던 지난 해의 심도깊은 토론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지난날이 무척이나 인간다웠으며, 우리는 결코 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해의 이 물음은 전후 25년 혹은 30년동안 있었던 것보다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제기된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 시대의 문학과 영화를 통해 우리는 히틀러와 나찌즘으로 인해 우리 서양문화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들이 얼마나 유린당했는가 하는 점을 늘 새로운 충격과 당혹감을 가지고서 체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의 독일정책은 동서관계의 전체적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동·서 양국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각각의 동맹에서 중요한 구성국입니다. 양국은 다른 동맹정책에 서로 간섭해서는 안됩니다. 양국관계가 동맹관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의 안보동반자관계는 서방동맹에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체제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동서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특별한 위협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만, 특별한 기회와 의무도 부과해 주는 것입니다.

위험은 분명합니다.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로 과도하게 무장한 공격적인 군사노선을 가지고 있는 소련의 군사력이 언제나 우리의 안전

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서방동맹과 미국의 핵우산하에서만 확보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동적 평화보장정책을 위해서는 대서양동맹에 확고하고도 깊이 참여하는 것 외에도, 이를 넘어서서 유럽공동체로의 통합이 불가피합니다. 유럽공동체는 무엇보다도, 비록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긴하지만, "유럽에서 다시는 결코 전쟁이 없도록 하자"라는 사상에서 성숙했습니다. 이 모토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을 뒤덮었던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어떤 고통이 야기되었는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유럽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리 독일인에게 큰 요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유럽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도 바로 우리들에게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우방국들은 분단독일인란 우리의 특수한 상황과 독일인들이 강제적으로 이산된 상황 역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독일문제의 해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독일인에게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독일문제를 유럽의 틀에서 처리하려는 것은 콘라트 아데나우어 이래의 우리 정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럽통합의 과정은 독일문제해결에 대한 전망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적 동질성을 유럽의 틀 내에서 찾는데 성공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우리는 자유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동유럽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유럽의 중앙이라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는 바로 유럽의 장점으로 이용될 수 있습

니다. 독일없이 유럽이 없으며, 유럽이 없다면 독일은 세계정치
의 재체단이 될 것입니다. 독일과 유럽을 분단시킨 원인은 대륙을 지배
하고 있는 체제의 적대감에 있기 때문에 분단의 극복은 바로 유럽
의 필수불가결한 과제입니다. 유럽공동체(Europäische Gemeinschaft) 위
원회의 의장인 자끄 드라는 최근에 인터뷰에서 독일연방공화국과 유
럽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지적했으며, 그는 독일의 통일과 유럽의 통
일 사이에는 어떠한 대립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장점은 우리가 이렇게 유럽의 자유스러운 부분에, 자유서방
진영에 속해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민족적 독자노선(Sonderweg)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이든지
위험스런 나쁜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길은 결코 독일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며, 틀림없이 우리의 정치적 기본가치에 의구심을
일으킬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은 자유유럽을 이룩하는데에 기본적인 전제조
건이 되며, 동시에 원동력이 됩니다. 폴란드, 헝가리, 독일민주공화국
은 도덕적, 심리적으로 한번도 자신들이 유럽 - 서양권에 속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상호의존(Interdependenzen)을 강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유럽의 공통적인 관심입니다. 이것은 동 - 서대립의 점
진적인 극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중요한 정치적 전환점
(Weichenstellung)에 있습니다. 두 강대국이 정상적인 대화관계를 복
귀한 것이자, 두 최강국의 책임있는 정치가들의 만남인 제네바 협상
(Verhandlungen)이 시작되면서 동 - 서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작은 나라든, 중간정도의 나라든 다 포함해서 모든 유럽의 국가들은 여기서 활발하게 협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난 몇주동안 그리고 어느정도는 - 그여세를 몰아 - 오늘 오후에도 독일연방의회에서는 독미 전략방위계획(SDI)외곽협정의 비준과 관련하여 미국의 전략방위계획 외곽협정에 독일의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여기서 연방정부가 오늘 연방의회에서 그것에 대해 언급한 것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략방위계획 외곽협정의 비준이 독일연방공화국과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관계를 복잡하게 한다고 독일민주공화국이 발표한 성명에 대해서만은 언급하고 싶습니다. SDI외곽협정의 비준으로 인해 동베를린과 본의 관계에 불편한 점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직시하고 행동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의 국가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혹은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고 있거나 행했던 것만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군축과 군비조정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가 양독에 주어져 있습니다. 양독은 양독이 알고 있는 평화에 대한 특별한 책임으로 인해, 양독이 속해있는 각각의 동맹이란 틀내에서 - 그리고 그 동맹에서 부여받은 의무를 존중하면서 - 현재 협상 중에 있거나 협상이 기대되어지는 안전문제에 있어서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독은 안전정책이라는 문제에 대해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967년 대서양동맹이 하멜구상(Harmel-Konzeption)을 토대로 세운 원칙이 우리가 동구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방위능력을 토대로 하여 활발한 대화와 협력의 정책을 통해서 전쟁을 없애는 것 이상의 것인 평화질서를 유럽에서 창조하는 목표를 계속해서 추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27차 소비에트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행해진 몇몇의 성명을 통해 소련도 동서 관계의 개선과 군축 및 군비조정에서의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해 줍니다. 우리는 동서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기본입장에 근본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협력, 의사소통, 군비축소에 대한 방해요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소련이 동서 관계의 확대형성에 구조적으로 접근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하는 점은 특히 유럽의 모든 국가들도 소련이 자신들에 대해 요구하는 만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군비조정과 군축에 대한 협상테이블 -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KVAE와 비인에서의 MBFR - 협상이 생각납니다. - 에서 안전과 안정에 대해 구체적인 소득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르샤바 동맹의 모든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 심화시키고 싶습니다. 모스크바와 관계되지 않은 독일정책은 효과적일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복지를 위해 양독간의 노력 및 독일인들이 자유로운 자결을 통해서 독일의 통일을 재현하는

데 토대가 되는 평화적 상황이 유럽에 정착되도록 하는 목표에도 적용됩니다. 유럽의 국민들이 - 재차 말씀드리지만 - 지속적으로 유럽대륙의 분단을 감수한다고 믿는 것은 환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양국은 전유럽안보협력회의 결의를 최선을 다해 실현시킴으로 해서 동서 관계를 전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치적 틀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국이 함께 일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 가능성을 사용해야 하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11월 4일 비인에서 전유럽안보협력회의 후속회담이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된 강대국의 대화라는 배경으로 말미암아 모든 참여국가들에게 이로운 구체적인 발전을 성취시킬 결정적인 기여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헬싱키 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니므로 당연히 1945년 이후 이루어진 우리 대륙의 분열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협정을 비준함과 동시에 나타난 발전은 유럽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서간의 대립을 극복하고 유럽에서 지속적인 평화질서를 이루는 길을 넓히려는, 오랫동안 행해진 노력입니다. 전유럽안보협력회의는 역동적이고, 협력적인 과정으로써 평화적인 변화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변화는 모든 경쟁이란 이 과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전체과정에서 이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평화적 경쟁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유럽안보협력회의과정에서 특출한 발전이란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취급하는 전유럽안보협력회의 전문가회담이 인간의 접촉이라는 문제로 본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담에서 다루어진 것은 가족방문, 가족상봉, 여행, 만남, 청년교류 등에서의 실제적인 규정들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양국은 이 문제들을 매우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다른 해명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접촉과 결합의 땅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도적인 영역에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서 본인은 독일민주공화국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련 폴란드와의 관계에서 가족상봉이 노골적으로 후퇴된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주제로 오타와에서 개최된 전유럽안보협력회의 전문가 회담 역시 우리에게 중요했습니다. 인권 실현에서의 발전은 전유럽안보협력회의 성공에 대한 결정적인 척도입니다. 인권은 연방정부가 취하는 독일정책의 중심적 요소입니다. 인권은 신뢰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동서 국가들 간에 신뢰부족이 계속되는 본질적 원인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통해 국경을 넘어서는 이해를 도모하려는 준비를 동구이웃들이 불충분하게 갖춘데 있습니다. 비자연적인 유럽의 분단을 극복하려고 유럽의 집이라는 말을 진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폭넓은 동·서 유럽인들의 접촉과 만남을 가능케하려고 할 것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의 문화포럼 역시 우리에게 공동의 문화, 양국의

공동문화유산에 대한 의식을 전유럽안보협력회의의 틀 내에서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념과 문화유산을 넘겨받아 가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유럽의 중앙과 독일의 중앙을 관통하는 분단선에서 특별한 고통을 당하는 유럽의 분단국으로서 할 수 있는 기여를 다 했습니다.

우리는 부다페스트에서의 활동결과가 이번 가을에 비인에서 열릴 다음의 전유럽안보협력회의 후속회담에서도 다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하여 특히, 물론 독일민주공화국도 포함해서, 동구 전유럽안보협력회의 참여국들과 문화적 관계를 밀착시키게 되길 희망합니다.

독일인들이 현재 두개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국민들 사이에는 분리되어서는 안되고, 분리되어지지도 않을 아주 많은 연대감이 있는데, 쾰른 주교가 지난 해 12월 뮌헨의 소극장에서 행한 연설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공감대를 위해 많은 정치적 인내와 지혜를 투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매일 베를린의 프리드리히슈트라세 역에서 실제적으로 인간적 관계들이 너무도 밀접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간을 갈라놓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합치될 수 없는 기본입장이 있기를 하지만, 독일의 여러 다른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서 협력하는 것이 우리 정책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 온 바는 우리가 기본원칙과 관심사에서는

확고하진 하지만, 협력의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생의 기술을 잘 다루는 일입니다.

이런 방법에 속하는 것 중의 하나로 관심의 조정이 가능한 영역을 찾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동일한 영역에서 수행될 필요는 없는 잘 선택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의 방법을 고려해 봅니다. 이런 면에서 연방정부는 특히 분단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을 위해 인도주의적인 일부터 시작할 수 있고,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이 그들의 정치적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유로 인해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관계토대에 관한 협정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독일민주공화국이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거의 기대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독일민주공화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거의 들어줄 수 없습니다.

1983년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수십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해 줌으로써 해서 독일민주공화국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했던 협정들에서는 신뢰가 교환되었습니다. 쌍방간의 신뢰는 상호교류의 토대를 개선시켜 줍니다.

연방정부는 동·서독에서 독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느 분야에서든, 독일민주공화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1월달 “짜이트”지와 호네커 서기장의 인터뷰를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이해한 경우라면, 독일민주공화국도 역시 이 협력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습니다. 본인은 그 예로서 호네커 서기장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다음의 분야들, 즉 분단독일 국민들 사이의 여행교류와 방문교류를 용이하게 하는 일, 함부르크와 하노버와 같은 도시들을 국경근처교류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일, 내륙교역을 성사시키는 일, 문화교류를 확대시키고 공동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언급해 봅니다.

연방수상은, 2월에는 진더만썬과 그리고 몇일전 4월에는 미타크박사와 의견의 일치를 보이면서, 많은 분야에서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발전이 지속될 것이라는 데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호네커 서기장이 양측에 적합한 시기에 독일연방공화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습니다. 본인은 오늘 동베를린에서 시작된 독일통일사회당 전당대회에서, 진더만썬가 암시한 바대로, 올해 호네커 서기장이 독일연방공화국을 방문하도록 하는 여건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연방정부는 여행교류의 발전을 독일민주공화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유롭고 마찰없는 여행교류는 독일의 양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와 일치합니다. 독일민주공화국 지도부는 이것을 내적인 일로 공표하고, 국민의 의지를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가적 관심사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근자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년동안 이해조정을 통하여 여행교류에서 일련의 개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히 많은 소망하는 바들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이른바 긴급한 가족의 일로 하는 방

문여행을 보다 더 자유로이 하도록 독일민주공화국이 허가한 사실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우리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여행교류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독일민주공화국에서는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된 사람들만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고, 연금을 받은 나이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서독여행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달 동안에는 - 우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 이 여행의 숫자가 증가되었으며, 이것은 독일민주공화국 지도부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이 증가가 더욱 강화될 것을 보증했습니다.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이 이제까지 이 여행을 매우 제한하는 법적 규정을 변경할 준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과, 법적인 규정 밖에서만 이 여행이 확대되고 있으며, 명백히 개별적인 경우에만 여행이 승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쪽으로 여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6만명 혹은 7만명 이상의 독일민주공화국 젊은이들이 매년 우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각각의 모든 발전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민주공화국에 촉구하는 것을 이 분야에서 보다 많은 의지를 보여주고, 최소한 서독으로의 방문여행을 특별한 동기에 무관하게, 특정한 사정이 있는 자국민들에게 허용하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슷하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광범위한 접촉금지도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접촉금지는 상

반되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있어서는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독일민주공화국으로의 여행교류에 있어서 점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전에 독일민주공화국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는 점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높은 최저교환액이 1980년 이래 점차로 두드러지게 사람들의 접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이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시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베를린의 방문 및 여행에 있어서 독일민주공화국은 중복된 자격서류로 인하여 지나치게 번잡스러운, 여행에 대한 행정처리를 철폐하고, - 국경근처교류에서와 같이 - 2일간의 여행을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함부르크와 하노버가 - 호네커가 "짜이트"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국경근처교류의 편익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주의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연방정부는 정치범들의 조기석방과 가족결합 차원에서 이민을 주선하려고 신중하게, 그러나 효과적인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지난 2년동안 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인도주의적 후원입니다.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의 인구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환경을 - 그리고 보다 많은 자유민주권이 여기에 속합니다 - 독일민주공화국 사람들이 원하는 정도까지 개선하는데 협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직화된 청년교류에 있어서 독일민주공화국은 1974년 초에 시작된

청년들의 독일연방공화국 방문중단을 지난 여름에 철회했고, 그래서 몇몇 독일민주공화국 청년단체가 다시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청년교류나 수학여행과 같은 다른 가능성을 통해서 1985년에는 거꾸로 약 6만 8천명의 독일연방공화국의 청년들이 독일민주공화국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여행을 하려는 청년단체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독일민주공화국에 있는 사람들과 아무런 친척관계도 갖지 않은 청년들이 독일민주공화국에 대해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은 당연히 장기적인 우리의 목표, 즉 민족통일의 사상을 확고히 유지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역시 동·서독의 협력에서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양국은 인간의 자연적인 생활토대를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방정부는 국경을 초월하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환경보호협정에 대해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곧 결말지을 수 있기를 원하며, 올해 환경협정이 비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협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보의 교환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을 위해 - 물론 특별히 베를린 시민을 위해서도 -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데 함께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실현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독일민주공화국은 환경보호 역시 그들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

야만 합니다. 쌍방간의 협력에서 발전을 성취하려면 다방면에 걸친 보완이 필요합니다. 1984년 뮌헨의 환경보호회의와 올해 초에 있었던 파리의 산림보호회의에서 독일민주공화국과 좋은 협력을 보였습니다.

연방정부는 수년 동안 양독 도시간의 자매결연 접촉을 성사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웃국가, 특히 프랑스와 더불어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룩한, 이와 같은 자매결연 접촉이 동·서독인들간에 더 많은 신뢰와 상호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연방정부는 아이젠취텐슈타트와 자아르루이스간에 있었던 최초의 접촉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이 아직도 양독의 도시와 공동체간의 자매결연의 형성에 대해 지금까지 취한 반대의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없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도 앞장서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쓸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폭넓은 만남을 가지려는 체육단체의 노력도 지원합니다. 독일체육협회와 독일체조·체육협회간에 진행된 올해의 현상결과는 작년의 협상결과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증가율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체육인들의 몇몇 분야 - 특히 국민사회체육과 청소년 체육분야 - 에서 더 많이 접촉하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연방내각은 4월 9일 - 따라서 8일 전에 - 독일민주공화국과 문화협정에 동의했는데, 동베를린에서는 5월초에 서명할 것입니다. 이 문화협정은 문화보호와 문화사업의 모든 영역에 걸쳐있는 외곽협정입니다.

다.

연방정부는 공동의 독일역사에 대한 책임과 국가의 통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서 협상에 임했으며, 이에 반대되는 것은 결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의 역사 혹은 공동의 국가와 명백히 관련을 맺은 것은 관철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협상이 좌초되도록 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화협정을 포기했던 사람들은 적지않게, 현재 독일민주공화국과 행하고 있는 문화교환의 종류와 범위가 당연히 안정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이 교환을 자신들의 뜻에 맞추려는 궁리를 충분히 했습니다.

문화협정을 기존하는 여러 영역에서의 문화접촉 및 부가적인 영역에서의 협력에 대한 요구에 맞추어 만들어진 규정으로서, 기존하는 것에 대한 보호 및 원용의 토대 그리고 문화관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많이 제공하려는 목적과는 완전히 달리, 독일민주공화국에서는 문화교환을 제한시킬 수 있는 - 결코 부수적인 것이 아닌 - 계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있게 공존하려면 서로를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협정을 실행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여러 협상을 통해서 베를린이 완전히 협정의 적용을 받고록 했으며,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의 프로이센 문화유산관리재단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내독교역은 양독간의 관계를 위한 확고한 토대이자 그 관계를 지속시켜 주는 요인입니다. 내독교역은 베를린에도 완전히 적용됩니다. 교역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의 교역량은 약165억 공동화폐단위의 규모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희망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하노에서 있었던 대화는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1984년 양독간의 공급과 구입이 크게 불균형을 이룬 상황이 있은 후, 지난해 다시 대략적으로 공급과 구입의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균형적인 공급·구입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속적인 내독교역의 발전에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해 신용한도협정을 연장하고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내독교역의 발전에 아주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교역구조의 개선입니다.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에 더 많은 생산품을 공급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이 매년 증가된 예치금을 구좌대체로 모아두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것은 대체계산가능한 우리의 시민들 - 특히 금리생활자, 연금생활자, 사회보장수혜자, 미성년고아들 - 이 계속적으로 매분기마다 600마르크를 독일민주공화국에 있는 그들의 자산에서 1:1의 환률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과 신청의 청산이 지난해는 지난 달보다 더욱 활발하게 수행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양독 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될 수 있는 큰 문제는 베를린 - 쇠네펠트를 통해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38,000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이 길을 통해 독일연방공화국으로 불법 입국했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을 거쳐 불법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유입을 억제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제관계에 따라 주어진 가능성을 모두 사용하기를 제차 독일민주공화국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목적국의 비자만 있으면 내주던 통과비자에 대해서 독일민주공화국은 1986년 2월 1일부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독일연방공화국에 알려 왔습니다. 우리는 1986년 2월 1일 이후의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해 보았는데, 유감스럽게도 불법입국 외국인의 높은 숫자가 지금까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불법입국자의 유입이 중단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선린관계를 위한 의지와 상처되며, 동·서독 관계에 장애가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록 이 문제의 해결에 포함되는 지위상의 문제, 특히 베를린의 지위상의 문제에 대한 견해가 당연히 다르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독일민주공화국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쇠네펠트를 거쳐 서베를린으로 불법입국하는 외국인의 유입은 베를린 문제에서 변화를 관찰시키는데 적합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양독 관계에 부담을 지우는 위험만을 내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외에 -약간 냉정한 어조로 말씀드려서- 독일민주공화국이 독일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독일연방공화국 유입을 규제할

능력이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그들이 원한다면 망명지원자들도 규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1984년까지 국경차단 시설에서 발포시설을 제거했고, 작년까지 내륙 경계지역에서 지뢰를 제거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육체와 생명에 대한 위험을 없애는데 기여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인명을 가버이 여기고 행한 조치인 차단시설이 여전히 존재하며, 더구나 이 차단시설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독일국경에 여전히 인간에 대한 폭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경차단시설은 내륙관계의 정상화가 우리들이 원하는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상징입니다.

우리의 독일정책은 언제나 베를린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베를린 시민들의 자유와 생활능력은 우리 독일뿐만 아니라 자유세계 전체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986년은 우리가 베를린에 대해 결정적인 2개의 사건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25년 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다는 것과 15년 전에 베를린에 대한 4대국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일민주공화국에 내적 주권이 결핍되어 있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는 베를린 장벽은 사라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에 반해 4대국 협정은 보존되었습니다. 앞으로도 4대국 협정이 계속 엄격하게 유지되고 완전하게 적용되길 우리는 원합니다.

베를린은 전체 동·서 관계에 대한 척도입니다. 내독협력에서 반드시 베를린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베를린은 더 이상 동독으로부터 배척되어서는 안됩니다. 옛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은 자유로운 서방인들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방어에 대한 항구적인 상징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이 베를린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다시금 미해결의 독일문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 누가 모르겠습니까? 누구라도 베를린에서 그 점을 보고 파악할 수 있으며, 그것은 다른 어디에서 보다는 베를린에서 가장 분명할 것입니다.

베를린 시당국은 베를린의 생활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의무를 매우 잔지하게 받아 들이며, 3대국 및 베를린과 우호적인 국가들의 결속을 통한 지원에 감사할 드리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경제를 보면 작년엔 베를린의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를린의 경제는 분명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은 실질전체생산, 고용활동지수, 실질 산업투자, 순생산, 주문수령면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의 평균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와 발전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혁신 성향을 증명해 주는 것은 베를린 시당국에 의해 이루어진 구조변화입니다. 잠재노동력의 질서 개선을 위한 노력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으로의 통과교통량이 대단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베를린 안밖의 정세가 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베를린-히르쉬베르크간 고속도로의 남단과 베를린 순환도로에서부터 국경통과지역 드라이런덴에 이르는 간선도로에서 교통에 위협을 주는

도굴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건설사업에 많은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베를린 통과도로 개선에 효과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베를린 문제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유럽의 대도시로서의 베를린이 차지하는 위치는 다가오는 해에 유럽과 세계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특히 1987년의 750년 축제와 1988년의 세계은행 및 IMF연차 총회 그리고 베를린이 작년에 아테네를 시작으로 한 일련의 유럽의 문화도시 중 4번째가 될 1988년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행사들을 통해 베를린의 자유지역이 갖게 될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일과 유럽의 대도시,
-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
- 현대 기술과 산업의 표준지역의 하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독일정책에서 성공적인 입법회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1986년에도 독일정책은 연방정부의 중심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분단의 지속을 악화시키고자 하며, 국경을 넘어 인간의 편의를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차이, 대립적인 관심사, 제한된 행동공간 등에 대해 착각을 일으키지 않고, 양쪽 관계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게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또한 독일과 베를린의 분단이 전체 독일인과 많은 개개인 및 가족들에게 인간적으로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내력을 요구하는 일을 수행하면서 계속되는 분단이 인간들에게 보다 덜 고통스럽도록 만들어야 하는 임무를 계

속해서 떠 맡을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 역시 평화로 가득
찬 공존을 위한 그들의 책임을 올바르게 평가하길 바랍니다.

출처 : 연방 언론·정보청 공보, 본, 1986. 4. 29.

128. 독일통일사회당 서기장 호네커의: 양독관계에 대하여

1986. 4. 17.

세계정치의 문제에 대한 소련의 주도적 발의, 즉 2000년까지 모든 핵무기로 부터 세계를 해방시키기 위한, 그리고 국제적 안전체제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평화정책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의해 제의되어, 소비에트공산당 제27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이 제안에 우리는 전폭적으로 동의하며, 이 제안을 실현시키는데 동참합니다 (큰 박수가 오랫동안 지속됨). 이 제안은 무기없는 세계, 폭력없는 세계, 모든 개개의 국민들이 자유로이 자신들의 발전방향과 생활방식을 결정하는 세계라는 우리의 이상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세계 도처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핵무기를 감축하고 핵실험과 전략방위계획을 포기하려는 준비를 미국이 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이 파괴적인 정책에 독일연방정부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민주공화국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유럽에서의 안전과 협력이라는 관심사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평화확보는 양독 관계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려깊은 정치가라면 2차대전과 전후의 발전결과로 인해 생성된 현실을 잘못 보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2개의 독립적인 주권국가, 즉 상이한 사회체제를 구현하고 상이한 동

맹에 속해있는 동서 양쪽이 유럽의 심장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1985년 3월 12일 독일연방수상 클과 본인이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현재 국경에서의 국경불가침과 영토불가침 및 주권존중이 평화에 대한 기본조건이라고 발표한 공동성명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조약과 유럽의 여러 조약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와 일치해서 양쪽은 이미 역사의 교훈이란 측면에서 평화를 위한 어떤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양쪽의 국경선이 체코슬로바키아의 국경선과 똑같이 바르샤바동맹과 NATO의 경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바르게 해석됩니다. 양쪽 관계사에 있어 처음으로 우리는 이미 언급한 성명에서 독일지역에서는 결코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되며, 언제나 평화만 계속되리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서베를린에 관해서, 우리는 1971년 9월 3일에 체결된 4대국 협정을 엄격히 엄수하고 철저히 적용하는데 찬성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이 협정에 짐을 지우려 하는 서베를린이, 독일연방공화국에 속하지 않으며 독일연방공화국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핵심규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수년 동안 독일통일사회당은 자본주의국가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주의 정당과의 관계도 발전시켰습니다. 강력히 대두된 전쟁의 위험과 이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연관해서 이 접촉은 신장되었고, 접촉의 질 역시 높은 수준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군비

억제와 군축에 대한 사회주의 국제노동자동맹과 그 구성원들의 점
증된 참여, 즉 1985년 비인회의에서 미국의 “별들의 전쟁” 프로그램
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회주의
정당 및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안정정책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
화하고 있는가를 주의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민당, 공산
주의자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기존하는 이데올로기적, 사회정책적 의
견의 상이한 성과와는 무관하게, 평화라는 관심사에 예측, 이성, 현
실주의 등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투쟁에서 중요한 동반자들이 됩니
다. (힘찬 박수)

작년 9월에 있었던 본인과 사민당 당수 빌리브란트와의 대화에
즈음한 회담과, 중부유럽에서 비화학무기자유지역을 만들기 위한 독일
통일사회당과 사민당의 공동성명이 이러한 유용한 행동의 결과입니
다. 현재 팔메수상의 발의로 구성된 - 이에 대해선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 SED와 SPD의 연구팀이 중부유럽에서 비핵무기자유지역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세
계의 모든 정당 및 진보적 세력들과 평화에 기여하는 건설적인 관
계를 촉진시키고 심화시킬 것입니다.

출처: 노이네스 도이칠란트에 실린 제11차 독일통일사회당 전당대회에서의 중앙
위원회 보고문 발췌, 동베를린, 1986. 4. 18.

129. 독일통일사회당 지도부와 소비에트공산당 대표의 동 베를린에서의 만남

1986. 4. 22

4월 22일 동베를린에서는 소비에트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독일통일사회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이자 독일민주공화국 국가평의회 의장인 에리히 호네커, 그리고 독일통일사회당의 다른 지도적 인사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이 만남에 참석한 사람들은 독일연방공화국과 소련이 긴장완화와 선린관계 조성의 길로 접어 든다면 유럽대륙의 상황이 본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현 독일연방정부의 정책은 유감스럽게도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특히 독일연방공화국은 세계를 군사화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지원함으로써 독일연방공화국의 영토를 퍼싱미사일과 순항미사일기지로 만들어 버리며, 위협스러운 복구주의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

출처 : 노이에스도이칠란트, 동베를린, 1986. 4. 23.

130. 도시 자매결연 : 자아르루이스 - 아이젠취텐슈타트

1986. 4. 25

독일민주공화국의 도시 아이젠취텐슈타트와 독일 연방공화국의 도시 크라이스슈타트 자아르루이스간의 도시 자매결연에 관한 협정

아이젠취텐슈타트와 크라이스슈타트 자아르루이스는 1986년 2월 26일에 있었던 아이젠취텐슈타트 시의회의 결정과 자아르루이스 의회의 결정에 의거해서 양도간에 평화와 정상적 선린관계에 기여하고 양도시 시민들간의 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취지에 따라 도시 자매결연 협정을 맺는다. 양 도시는 평화와 안전, 군비축소, 긴장완화, 협력 등을 위한 시민들이 노력을 가능한 분야에서 지원하고자 한다. 모든 분야에서 군비가 종식 및 저지되어야 한다는 점은 양 도시가 옹호하는 바이다.

양 도시가 의도하는 바는 이런 의미에서 양 도시 시민들간의 정치적 대화를 조장하고, 사회를 상이하게 파악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세력들과 함께 평화적 미래와 인간의 복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일치해서 그리고 안전과 협력에 관한 헬싱키 협정에 들어 있는 평화공존의 원리 정신에 입각해서, 국가주권과 양도관계에 있어서의 동등한 권리 및 비차별에 대한 상호존중을 포함하고 있는 양도 기본조약에 따라서, 그리고 양도 국민간의 상호인지와 평화적 관계조성을 위해서 두 도시는 다음 사항에 대해 협정을 맺

는다.

- 서로 관심이 있는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양 도시민들이 평화와 군축과 긴장완화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상호 조사한다.
- 양 도시 시민들에게 상대도시 시민들의 생활과 활동을 적당한 방법으로 소개한다.
- 양 도시의 발전과 지방자치조직의 일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전달한다.
- 양 도시의 시지방자치기관, 사회조직체, 단체간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이 협정은 아이젠취텐슈타트의 시의회와 크라이스슈타트 자아르루이스의회의 승인 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협력의 구체적 조치, 만남, 대표단과 자료의 교환 및 다른 협력의 형식들에 대해 양 도시는 시간적으로 조망가능한 사업계획에 대해 합의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양 도시는 그 계획의 실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1986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아이젠취텐슈타트와 크라이스슈타트 자아르루이스 공식대표단의 협상결과에 대한 의정서

각각 시장이 주도자인 크라이스슈타트 자아르루이스 의회대표단과 아이젠취텐슈타트 시의회 대표단은 다음의 구상, 즉 독일민주공화국의 도시 아이젠취텐슈타트와 독일연방공화국의 도시 크라이스슈타트 자아르루이스간의 도시 자매결연에 대한 협정,

- 1986년에 위에 언급한 합의를 실행하기위한 연간계획,

- 이후 계속적으로 아이젠취텐슈타트와 크라이스슈타트 자아르루이
즈간의 협력을 더욱 확대조정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가능성
등에 대해 찬성하며, 1986년 9월 아이젠취텐슈타트와 크라이스슈타
트 자아르루이스 의회에 이 구상들을 제출할 것을 공포한다.

아이젠취텐슈타트 1986. 4. 25.

크라이스슈타트 자아르루이스 시장

아이젠취텐슈타트 시장

1986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아이젠취텐슈타트에서 있었던 아이젠취
텐슈타트와 크라이스슈타트 자아르루이스 공식대표단의 협상결과에 관
한 의정서에 대한 부칙. 양 대표단은 다음 사항들에 합의한다.

1. 대표단, 문화사절단, 체육사절단들의 체류비용은 그때 그때의 초청
도시가 부담한다. 대표단, 문화사절단, 체육사절단의 숙박은 호텔 혹
은 공동숙소 에서 한다.
2. 대표단, 문화사절단, 체육사절단 소속원의 여행비용과 일상비용은
스스로 부담한다.

아이젠취텐슈타트, 1986. 4. 25.

크라이스슈타트 자아르루이스 시장

아이젠취텐슈타트 시장.

이후 계속될 아이젠취텐슈타트와 크라이스슈타트 자아르루이스간의
협력을 위한 추천사항들.

- 평화와 군축에 관한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도시는 세

미나와 정보교환대담을 실시: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주변세계에 대한 과학기술적 발전의 의미, 작업조건과 생활조건의 형성, 특히 주택건설, 근거리 교통, 문화, 스포츠, 근거리휴양, 문화, 스포츠, 근거리휴양과 건강관리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의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정치인들의 경험과 입장을 알리기 위한 정보교환여행, 노동조합원, 청년, 여성, 수공업자, 정신, 문화창조자 및 다른 직업군의 일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서로 알게 하기 위한, 주제에 관련한 대표단의 교환:

- 청년여행자 교환:

- 특히 매년 열리는 자아르루이스 주간과 오더축제공연에 참가하기 위한, 문화단체와 예술가들의 교환:

- 조형예술과 사진작품의 전시 및 아마추어 영화 교환:

- 양 도시 박물관간의 협력과 도시역사의 홍보를 위한 자료의 교환, 전시 및 대역전시:

- 스포츠 국제시합과 스포츠 비교에 참가하기 위한 스포츠인의 교환.

독일민주공화국의 도시 아이겐취텐슈타트와 독일연방공화국의 도시 자아르루이스간의 도시자매결연에 대한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1986년 연간계획.

1. 도시자매결연 협정에 대한 구상, 1986년도 계획 및 그이후 연도의 협력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크라이스슈타트 자아르루이스 시장이 이끄는 대표단(9명)의 4월 아이젠취텐슈타트에 체류.
2. 도시자매결연 협정을 결정하기 위해, 아이젠취텐슈타트와 크라이스슈타트 자아르루이스 시의회에 시장이 이끄는 도시대표단이 상호참가. 일정 : 9월
3. 6월초 "자아르루이스 주간"에 아이젠 취텐슈타트 문화사절단(약 30명)의 참가, 및 9월 아이젠취텐슈타트의 오더축제공연에 크라이스슈타트 자아르루이스 문화사절단(약 30명)의 참가
4. 11월 유엔평화의 해에 대한 양 도시 시민의 구상에 관해 정보 교환. 정보매체로 이에 대해 공고하기.

출처 : 자아르브뤼크 신문, 자아르브뤼켄, 1986. 5. 31

131. 의회담당차관 오토 폰 헤니히 박사 : 본의 독일
정책에 대하여

1986. 5. 1

인간과 민족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독일인의 꿈은 서로 결속된 유럽에서 개방되고 자유로운 국경을 가진 재통일된 조국, 즉 인권과 사회적 비물질적인 진보의 요람을 만드는 것이며, 또한 평화라는 결실을 통해서, 문화적, 학문적 업적을 통해서 인류에게 의미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일인의 꿈입니다. 우리는 이 꿈으로 부터 비전이, 그 다음엔 구체적인 이상향이 목표가 되고 결국 한발 한발 역사적 과정에서 전개될 수 있는 현실이 되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특히 어떤 이웃나라들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전전한 유럽의 심장으로서의 통일을 원합니다. 심장부, 패권정책적이 아니라 지리적인 중앙, 아름다운 이 오랜 대륙의 심장부가 이렇게 찢겨져 있어서는 안됩니다. 평화질서가 국경을 극복해야만 하며, 국경을 넘어 서로 다루게 되면 안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평화와 자유이지 세력권과 패권적 사고가 아닙니다. 유럽은 화해의 대륙이자 자유의 대륙이어야만 합니다. 이에 어울리는 것은 해게모니와 세계혁명이 아니며, 계급투쟁과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우리를 서로 묶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으로 이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합니다. 자유보다 더 전염적인 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이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것입니다. 이 꿈이 유럽에서 놀라운 것입니까?

· 그렇다면 큰 일입니다! 독일을 경원하면 어떻게 유럽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독일인에게 공동의 좋은 미래가 없이 어떻게 유럽에 공동의 좋은 미래가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찰력있는 현명한 정치가들에게서는 유럽의 집이라는 계획에서 독일인을 위한 공동의 거실을 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화정책과 유럽정책은 이 희망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독일정책은, 실례인지 모르지만 옹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도덕, 원리, 현실의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도덕”이란 낱말이, 그것도 첫번째로 언급된 것이, 아마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우리 독일연방공화국의 독일인들이 독일문제를 단순하게 방치시켜두고 - 사람들이 말하듯이 - 이 독일문제를 포기해 버릴 수 없는 이유를 달리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인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인은 결격사유가 전혀 없는 독일인입니다. 독일민주공화국 지도부가 선전하는 현실성이 결여된 생각은 이 점에서 국민들의 의지에 정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민족성에 대한 사고는 독일민주공화국 쪽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 민족”이란 없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이란

없고, 결코 한번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우리 국민이 그것을 원치 않으며, 우리는 자결권에 대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자결권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 이것은 자주 간과되는 것인데 - 최근 역사에서 민족적 운명공동체가 겪은 공통의 경험은 독일에 있는 두 국가의 독일인들을 서로 묶어주고,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낳고, 이를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 공통된 역사의 결합수단은 두 국가에 있는 사람들의 민족문제에 관한 사려깊고, 신중하고, 완고한 입장에 대해서 무척 의미있는 것이며,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역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계가 어떠하든지 우리 독일연방공화국의 독일인들은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인들에 대해 특별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차대전 이후 그리고 동서 냉전의 발발이후 서구 민주주의와 결합하게 되는 커다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로 머물고자 했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우리들이 소련의 지배에 예속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방동맹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인들이 그들에게 결정의 자유가 있었다면, 지금과 다르게 결정했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모든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우리 독일연방공화국 독일인들에게는 전후 독일사의 비교적 좋은 부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이 살 수 있고, 끝없는 부족과 소련식의 중앙계획통제경제의 어려움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는 독일의 역대 어느 국가에도 없었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이 이주하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사의 표현과 비종속적이고 비판적인 여론(Offentlichkeit)에 있어서의 기본권이 우리에게서 자명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뿐만 아니라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인도 매우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운과 시민, 노동자, 소비자로서 자신들의 생활환경을 우리의 것과 비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패전에 대한 댓가를 가장 먼저 지불한 사람들이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런 결론은, 본인이 보기엔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에서 약간만이라도 조사해 본 사람이라면 이를 분명하게 인식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적 책임분배로 인해 우리 독일연방공화국의 독일인들에게는 당연한 의무, 즉 끊임없이, 무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운명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들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독정책, 독일민주공화국과의 협상정책, 이해조정정책과 협력정책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인들 중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단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적게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채무이며, 올바른 인간적 태도이고, 민족유대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문제(nationale Frage)를 법률적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혹은 해도되는가 하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완전히 도

의지한 것입니다. 패전 이후 독일의 국제법상의 처지를 본인이 영국의 토대에서 특별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일문제는 법률적으로 미해결인 채로 있다는 것으로 제 얘기는 충분합니다.

이는 가정이 아니라 확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는 이것이 관심, 필요, 실제적 필연성에서 충분히 지지되지 않는다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이해, 이곳 독일과 베를린의 분단으로 인해 생긴 필요나 실제적 필연성과 똑같이 강대국들의 권리와 책임을 끝맺는 독일문제의 종결과 대립하고 있음으로써, 독일문제의 개방을 두려워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본인은 특히 베를린의 분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도 베를린에서와 같이 전후 독일상황의 문제가 현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베를린은 보호받기 위해 최상의 힘을 행사하고 있는 서방 강대국의 주둔에 의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본인은 베를린의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독일의 국제법상의 처지와 우리의 견해는 상호 모순적이지 않고 서로 합치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그 전문에서 독일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자결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주의에 입각한 계획이 아닙니다. 헌법은 민족적, 국가적 통일의 가치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자율, 자결 그리고 평화와 같은 다른 가치들이 통일이란 가치에 우선합니다. 다른 가치들에 짐을 지우면서 통일의 목표를 독립시키는 민족주의적 통일정책은 헌법의 재통일명령에 따라서는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독일정책은 전체적으로 1949년 이래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콜 연방수상이 독일문제를 규정해 놓은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986년 3월 14일 독일연방의회에서 행한 것입니다), “민족의 통일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자유속에서 성취되어야만 하고, 성취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자유는 독일문제의 핵심입니다.”

본인은 이 말의 의미와 배경의 진가를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는 최근 독일사의 교훈입니다. 우리 헌법의 제정자들은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이 분명하게 구속들에서 풀려 나서, 심사숙고되지 않은 국수주의적 정책이 바로 유럽과 독일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점을 직시했습니다.

소위 보다 높은 국가목표를 위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시킨 국가는 다른 나라 국민의 자유에 아무런 보탬을 주지 못한다는 경험을 우리는 절실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독일문제의 핵심을 자유에서 찾음으로써 우리 자신 및 다른나라 국민들의 자유를 댓가로 치르거나 희생시킨다는 해답을 배제합니다.

요컨대, 독일연방공화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존재함으로써 독일문제는 특정한 구속들에 구속되는데, 이 구속들 중 최상위의 것이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우리와 연관해서 이 결합은 최소한 우리의 역사적 경험 및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통찰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우방과 동맹국들 및 유럽의 모든 이웃들은 이를 신뢰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다른 유럽인들의 자유에 대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독일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독자적인 행동들은 본 연방정부로 부터 기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독일연방공화국이 소련의 관심권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소련은 일차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즉 2차 대전 후의 정치적, 영토적 결과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련은 유럽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총 소유량을 공고히 하고, 대외안전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관심은 밖으로 - 서유럽의 방향에서 - 자신들의 소유가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공격받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전 유럽에서 소련이 차지하는 지도적 역할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최근의 서유럽 상황이 인정되도록 요구할 권리를 유럽의 세계적 강대국인 소련이 가지고 있다고 그들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소련당국은 분명히 독일연방공화국에서 평화주의에 장애가 되는 요인과 국수주의적 꿈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는데, 이는 잘못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민주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가치공동체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련은 유럽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마비시킬수도 없을 것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이 NATO에 속해 있고 독일민주공화국이 바르샤바동맹에 속해 있음으로 해서 독일문제가 폐쇄되어 있다는 주장이 때때로 들립니다. 독일문제를 다시 열어놓기 위해서는 군사동맹을 해체하거나 양국이 각각의 동맹에서 탈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위협스럽고 놀라움을 주는 단순화입니다.

동맹은 유럽과 독일을 분단시킨 원인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전적

으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소련의 승리는 소련이 자신들의 안보와 지배권을 중부유럽 깊숙히 밀어 부치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독일 및 유럽의 분단과 이 분단의 극복이라는 문제가 관찰되어야 합니다.

소련이 중부유럽쪽으로 엘베강까지 침투한 사실에서 철저한 현실주의자인 콘라드 아데나우어(Konrad Adenauer)는 획기적인 사건을 통찰했습니다. 그가 이로 부터 독일을 위해 이끌어낸 결과는 평화확보와, 역사와 지형의 은총으로 인해 소련의 개입으로 부터 보호된, 민족의 부분적 독립이었습니다.

독일정책의 이 우선권은 오늘날에도 콜라크 시대와 마찬가지로 현실적 상황에 적당한 것입니다. 세계적 강국인 소련이 대단히 많은 희생을 치루면서 획득한 중부유럽의 주요 전쟁이득을 고수하려 하는 한 이 우선권은 타당합니다.

소련이 이와 같이 행동함에 따라 엘베강 동쪽의 독일은 소련제국주의의 서독빛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는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유럽에서의 사회주의 최전방기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986년 3월 14일 연방수상이 분단독일의 국가정세에 대한 보고에서 말한 바를 깊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프랑크푸르트 파울성당 혹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위해 국가의 통일과 유럽의 통일을 위해 싸운 곳인, 함부르크성에 깃들여 있는 이념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 따라, 현재 독일정책의 전면에는 실용적 차원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편의를 통해 분단의 지속을 약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민족 연대성의 명령입니다. 이에 대해 독일민주공화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관심, 모든 독일인의 관심, 특히 악명처럼 그들에게 붙어있는 이 무시무시한 곤경과 고립을 타파하려는 그들 자신들의 관심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정부를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의 정책은, 독일민주공화국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과 그들이 동구동맹으로 부터 충분히 얻어내지 못하는 것, 즉 경제 재정적 보상과 내륙관계의 개선이란 측면에서 주민들의 정치적 동의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입니다. 이 정책의 토대인 독일민주공화국의 관심이 얼마나 확고한가 하는 것은 특히 1983년 10월 이후의 독일민주공화국의 태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 대한 그들의 정책을 소련의 세계정책에 전략적으로 부응해서 하라는 소련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독일민주공화국은 정치적인 독자의를 분명하게 발전시켰고, 이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오늘날 소련 당국은 우리의 비난하려는 것보다는 동독을 제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우리의 전략방위계획 결정에 대해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민주공화국 지도부는 일차적으로 독일민주공화국의 안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는 다시 최근에 소련의 관심 자체에도 나타납니다. 최전방기둥의 가치는 그것의 안정에 달려있습니다. 서유럽을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고 서유럽의 단결을 방해하려는 모든 노력과 소망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제1대외정책의 우선권은 그들 자신의 동유럽 앞마당을 안정시키고, 조용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소련은 독자적인 수단만으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련은 결국 물고물 뜨거나 처방하는 것과 같이, 동맹국들의 필요에 최소한 부분적이거나 굴복하고 서방유럽과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방정부가 생각하기에 서방은 소련의 목적에 응하지 않은 채로 동구동맹의 처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아주 위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차치 하더라도 전혀 불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소련이 가지고 있는 지배권의 생명력과 다른 한편 독자적 수단의 무능력과 한계성에 대한 소련의 관심은 특히 내독관계에도 작용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과 더 효과적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맹목적인 적대주의 정책은 위험한 것이며, 기껏해야 무를 초래할 뿐입니다.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은 지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민중들입니다.

본인은 이제 독일문제의 개방과 현상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동구로 부터, 그곳에서만은 아닙니다만, 독일문제의 개방을 맹세하는 사람들은 현상을 위태롭게 하며, 이로써 유럽에서의 안정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말이 틀림니

다. 그리고 다른 비판가들은 독일민주공화국과 대화와 협력이라는 정책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정권을 안정시켜 주고, 그럼으로써 분단의 현상을 장기화하는데 보탬을 주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요약해서 보면 이 두 비판은 독일정치권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양극의 병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단 40년이 지난 후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헌법에 주어져 있는 목표, 즉 자유로운 자결로 독일의 통일과 평화를 완수하라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도 이 목표를 단시일내에 성취시킬 수 있는 '사용가능한 처방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독일과 유럽의 분단이 역사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본인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아서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제와 이념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유감이지만 곧바로 눈 앞에 나타나는 성공은 약속해 주는 정치적 해결이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연방정부는 분단을 완화시키고 독일민주공화국과 협상을 통해 독일민주공화국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면, 원칙에 충실한 태도로 헌법을 견지하고, 법률적인 것에 융통성과 새로운 이념을 결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관련해서도, 이와같은 우리의 노력은 그곳의 백만 독일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독일문제는 개방시킨다는 것은 비록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당시 분단상황의 최종결정을 최소한 문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해서 독일문제의 개방이 유럽에서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한다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은 분단을 철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독일정책은 인간에게 지워지는 분단의 고통을 보다 더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독일문제의 해결이 오늘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유럽의 상황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의 역대 모든 정부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문제의 개방은 협조방식정책의 도움을 받아서 인식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독일정책은 민주적원칙, 모든 독일인과의 민족 연대성과 결합성, 그리고 유럽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우리의 책임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사회민주당이 정치가로 1967년에 작고한 프릿츠 에틀러가 1964년에 발표한 논문이 제 수중에 들어 왔습니다. 이 논문에는 본인의 관심을 끄는 그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진술은 1964년 당시 에틀러가 사민당 원내당을 이끌었던 때에 발표된 것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독일민주공화국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투쟁들 사이의 긴장지역과, 양측간의 관계에서 연방정부의 독일정책이 취해야 할 중심선인 것입니다. 프릿츠 에틀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유베를린 지역문제의 전체적 해결과 이 지역의 자유보장을 위한 투쟁에서 독일인의

인장을 약화시키면서 인간의 궁핍을 경감시킬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책에서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계이다. 우리는 인간의 궁핍을 경감시키는 것을 주요문제들의 해결과 동일시하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된다. 이 두가지 일을 주의깊게 구분해서 살펴야만 한다. 인간의 궁핍을 아무리 많이 해결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결이라는 정치적 문제, 공산주의 정권, 배틀린 장벽 자체를 이 세상에서 없앨 수는 없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우리는 도덕적 원리 및 - 비록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 정치적 목적을 부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위해 독일민주공화국 지도부와 협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확실히 동독에서건 서독에서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반대합니다. 즉 독일문제는 더이상 개방되어 있지 않다, 재통일을 견지하는 것은 점점 단순한 고백형식으로 타락하고 있다, 국가 재통일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법률문제는 “허레”이거나 “3류의 신분문제 :”이며, 양독관계 발전의 제 동기이다, 두개의 독일의 존재와 기존의 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이 유럽의 평화정책을 위해 필수적 전제이며, 이는 군비축소와 불력경계를 넘어서는 대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 등입니다.

연방내독성장관은 바로 몇달전에 정치적 목표로서의 재통일을 포기하고 이에 대한 헌법의 명령을 헌법에서 제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자결을 행사하는 독일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명백히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모든 독일인이 국민으로서 함께 살고자 하는 국가형태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국가재통일의 목표를 견지합니다.

오늘날 독일인들이 독일문제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역사에 앞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조급함과 정치적 기회주의는 가당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법무장관은 최근에 헌법전문에 나타나 있는 재통일 명령을 취소하려는 모든 요구는 헌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에 대한 오만불손한 음모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법무장관이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전문은 독일국민의 재통합을 불가침적인 헌법적 명령으로 고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이 명령을 취소시키려는 모든 논의는 그 자체가 결국 모든 독일인의 이해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잘못된 인식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연방정부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동기에서도 양독의 정치질서 간에 존재하는 깊은 차이를 혼합하려 하지 않으며, 분명히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정치면에서 의미하는 바는 독일인들의 이해 속에서 독일민주공화국의 집권자들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협정을 맺을 준비를 하더라도, 반드시 원칙의 고수, 냉정함, 강한 도덕성, 그리고 현실의식이 우리의 독일정책을 규정하는 요인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요인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 대목에서 쿠르트 슈마허를 참고로 거론코자 합니다. 그

는 35년전에 독일정책의 원리로서 다음과 같은 표어를 제시한 사람입니다. “자유독일에 사는 민주주의자들은 용감하고 활동적이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을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현명한 주장과 목표로써, 실행력과 강인함으로써 이 목표를 중단치 않을 힘을 찾아야만 한다.”

18세기부터 우리에게서 하나의 기도문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현명하고 세상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느님 저희에서 저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냉정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부터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본인에게 이 기도문에 하나의 소망을 부가하도록 허락된다면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까 : “하나님 저희에게 지을 수 없는 원칙과 도덕적 명령을 견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커다란 정치적 비전과 역사적 임무를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에게서 아마도 우리 독일정책의 정신과 내용에 대한, 또 현 연방정부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개략적이지만 분명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방 영국의 모든 도움과 우정, 독일문제에 대한 이해와 연대성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위안이 됩니다.

출처 : "국제적 시각에서 본 독일문제"라는 주제로 런던에서 열린 영독 회담
에서 연방내독성 장관 의회(담당)차관 폰 헤니히 박사의 개회사, 내독
성장관 신문보도, 본, 1986. 5. 1.

132. 문화협정

1986. 5. 6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의 문화협정에 관한 협정”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 1972년 12월 21일에 체결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의 관계원칙에 관한 조약의 토대 위에서,
- 상호간에 문화적·사회적 생활에 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보다 나은 상호이해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 그럼으로써 평화정착과 긴장완화에 기여한다는 인식 속에서,
- 전단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체결된 규정들을 마드리드에서 결정된 기록들과 관련시켜, 적절하게 고려함으로써 실행한다는 결심 하에,
- 문화협력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려는 희망에 따라 이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제 1 조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양측의 이해에 기초하여 문화, 예술, 교양, 학문분야에서의 협력이나 이것들과 연관된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협력을 해당기관이나 관청, 단체들 사이에서, 또한 - 이 협력이 그때 그때마다 자국의 법적질서에 비례하고 조약의 실현을 위한 실

현과 관계되며 또 그렇게 각 조직체들, 연합체들 및 문화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협력은 그때 그때마다 자국의 법률규정과 조화시켜서, 또한 쌍방이나 여러 측면의 법률규정과 조화시켜서, 특히 이 협정에서 거론된 협정당사국들의 의무에 관한 전문에서 완성된다.

협정당사국들을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협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전제조건들을 승인한다.

제 2 조

협정당사국들은 학교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 및 고등교육, 전문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분야나 학문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협정당사국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장려한다.

1. 경험의 교환, 학문상의 정보, 그리고 회의나 회담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학자들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한다.
2. 강연이나 연구 및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학자들을 교환한다.
3. 학생들의 교환, 특히 대학원생들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젊은 학자들을 교환한다.
4. 전문문헌, 강의자료, 전시자료 및 교수도구 등을 교환한다.

2항 및 3항에서 애기된 활동들의 실천을 위해서는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

제 3 조

협정당사국들은 조형미술, 연극, 영화, 음악, 문학, 언어육성, 박물관

학 및 기념물보호 등의 분야나 이와 인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협정당사국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장려한다.

1. 문화, 예술 등 상이한 영역에 있어서 가지가지의 동기에 따라, 예술가들 및 문화창조자들로 구성된 대표단들이 서로 접촉하고 교류한다 :
2. 문화나 예술분야에 있어 양측의 행사준비 및 다양한 행사개최에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3. 문화단체나 예술단체들 사이에 있어 출판물이나 정보자료들을 교환한다 :
4. 갖가지 종류의 행사개최를 통한 예술활동 및 문화활동의 교류 :
5. 영화상영, 중요한 영화제나 국제적인 영화제에의 참가, 이런 맥락에서의 영화제작에의 참여, 또한 영화잡지분야에서 해당기관들 사이의 협조등, 이런 활동들을 포함하여 영화분야에 있어서 각 단체들, 기업 및 조직체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 :
6. 박물관분야에서의 협력, 전시회의 교류 및 유물(유물대여)의 허용 :
7. 고고학적인 기념물보호를 포함한 기념물 보호단체들 사이의 협력 :

제 4 조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된 예술가들 및 악단들의 상업적인 초청공연을 장려한다.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영화부문에서의 상업

적 협력 및 제작활동을 포함하여 예술과 문화의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서의 상업적 관계를 촉진시킨다.

제 5 조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내에서 출판분야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협정당사국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장려한다.

1. 상업적인 문헌교류의 테두리 내에서 출판물의 보급 및 수입의 확대 :
2. 어느 한쪽이나, 쌍방간에 있어 중요한 정보상의 이익 및 학문상의 이익이 되는 출판물의 간행 :
3. 인가에 대한 양측의 위탁의 확대 :
4. 서적 박람회 개최에의 참여

제 6 조

협정당사국들은 도서관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다음 내용들에 대한 가능성을 시험한다.

1. 국제적인 출판물 교류의 확대 :
2. 다양한 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독일어권 국가들을 위해 문헌목록을 작성하는 규칙을 세우고 또 그것은 개정하는데 대한 협력의 확대
협정당사국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통한 협력을 촉진시킨다.
 - 1) 대출교류의 확대
 - 2) 참고서목 및 그밖의 정보자료들의 교환:
 - 3) 도서관분야에 있어서 비상업적 전시회의 교류:

4) 정보자료교류, 특히 국제관계의 전문회의에 참여

제 7 조

협정당사국들의 문서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그들은 다음 사항들을 장려한다.

1. 자국의 법률규정에 근거한 “공개적인 문서자료”의 교류
2. 문서담당 행정기관을 통한 문서복사물의 교류:
3. 전문문헌의 교류와 문서자료에 관해 알리는 것에 대한 승인:
4. 우선적으로 복사물의 형태로, 기록문서의 준비를 통한 전시:
5. 정보교류, 특히 국제관계의 중요한 전문회의에 참여

제 8 조

협정당사국들의 해당 국가기관들은 중요한 회의나 회담, 토론회 축제, 기념행사, (기념축제행사) 및 학술회의등에 대해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한다.

협정당사국들은 기존의 이해에 기초하여 학자들, 예술창조자들,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종류의 행사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제 9 조

협정당사국들은 라디오나 텔레비전부분에서 협력을 촉진시킨다.
협정당사국들은 해당기관들에 대해 이러한 목적의 협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천한다.

제 10 조

협정당사국들은 체육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제 11 조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내에서 성인이나 학생들을 포함한 청년들의 교류발전을 장려한다.

제 12 조

협정당사국들은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재정적인 규정들을 포함하여 그때 그때 마다 2년 동안의 사업계획에 합의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협정의 목표에는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문화사업계획속에서 포함되지 않는 다른 조치들에 대한 장려가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 13 조

1971년 9월 3일의 4대국 협정에 대응하여, 문화협정은 결정된 처리규정에 합의함으로써 서베를린까지 연장, 적용된다.

제 14 조

이 협정은 5년 동안 유효하다. 협정당사국들중 어느 한쪽이라도 최소한 협정만기 6개월 전에 문서로 통고하지 않으면 이 협정의 유효성은 그때마다 3년씩 연장된다.

제 15 조

협정을 합의하는 시점에 대해 상호통첩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는 내독간의 전제가 있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1986년 5월 6일 베를린에서 나온 고편의 독일어초안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한스 오토 브로이티감박사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쿠르트 니어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사이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제6조를 위한 일반의정서

협정당사국들은 출판사나 발행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출판물의 보존용 교정쇄를 그때 그때마다 자발적으로 상대측의 중앙수집처에 보내도록 주선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사이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위한 일반의정서 성명

전쟁으로 인해 제 위치가 잘못 옮겨진 문화유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아직은 절충되지 않고 있다.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전쟁으로 인해 위치가 잘못 옮겨진 문화유산분야에 대한 문제해결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천명한다.

서명에 즈음한 브로이티감 장관의 성명

독일연방공화국 협상대표단의 대표인 한스 오토 브로이티감 장관은 1986년 5월 6일 문화협정에 대한 서명을 기념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문화협정은 오랜 세월을 걸쳐 협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몇몇의 문제들은 우리들은 아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양측 모두의 희망이 다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협상할 때면 거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성과는 타협을 통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이면서, 한편으로 세부사항들에 이르기까지 다룬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교류를 위해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음악이나 문학, 연극, 영화, 조형미술과 같은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나 학문, 문서, 도서관, 기념물 보호등에 분야 또한 협력의 중요한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라디오방송이나 TV방송, 또한 청소년교류 및 체육활동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후원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협정을 생활속에 실현시키는 한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고 있는 기대를 충족시켜 주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와 내년에 실현되어야 할 일련의 계획들에 대해 서로 협의를 봄으로써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은 양측이 문화교류상에 있어 완화된어야 할 점과 강화되어야 할 점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더 성공적으로 실천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또한 거기에서 정치적인 이익도 얻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까지도 문화교류가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 왔고 더 많은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야만 하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문화교류는 국가에서 관장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연방정부로서는 이해당사자들간의 접촉을 주선하고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나 단체들간의 교류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제 일선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협정의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협력은 국민들의 복지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교류가 보다 나은 상호이해와 신뢰조성 및 보다 나은 상호 관계정상화에 기여하리라 하고 기대합니다. 그럼으로써 동시에 우리는 유럽 중심부에 있어서의 평화정책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양국 국민들의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생활이 기쁨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협상에서 좋은 내용들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데 대해 여러분과 니어씨, 그리고 대표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문화협정은 선린관계로 나아가는 길에서 보다 많은 결실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서명에 즈음하여 독일민주공화국 외무성 장관 쿠르트 니어의 성명

독일민주공화국 외무성장관이자 독일민주공화국 협상대표단 단장인 쿠르트 니어는 1986년 5월 6일 문화협정에 대한 서명을 기념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방금 서명했고 오늘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협정은 당연히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사이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보다 중요한 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헬싱키회담에서 체결된 조약의 의미에서 평화와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양측은 기본조약에 실려 있는 의무인 문화협력을 조약의 토대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국제적인 실천에 맞추어 문화, 예술, 교육, 학문 등이 분야나 그와 연관이 있는 다른 분야들에 있어서 규정된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전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서 양국간에 문화적, 학술적 성과의 교류, 문화적 관계의 향상, 문화생활 및 사회생활에 대한 상호인식의 심화등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이 협정은 문화전달을 통해 신뢰풍토의 조성과 범세계적인 노력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협정은 양국의 정당한 이해와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협정은 오로지 양국간의 실천에서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독은 이것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독으로서는 이러한 방식의

협력의 양국에 있어 성공을 거두고 그 자치를 인정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를 빌어 이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는데 기여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 연방정부의 언론 및 정보청 공보. 본, 1986. 5. 7 내독성 장관(발행)

문화협정,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사이의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 Bonn 1986.

내독성 장관 하인리히 뵘델린 : 문화협정 체결에 즈음한 성명

1986년 5월 6일 오늘,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의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은 분명히 간단하지만은 않은 과정 속에서도 양독간의 긍정적인 관계발전을 계속 진행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커다란 진전입니다.

이 협정은 1972년 12월 21일에 체결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의 관계토대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양국 사이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진 것입니다. 1985년 3월 12일 연방수상 헬무트 콜과 독일민주공화국 국가평의회 의장 에리히 호네커가 공동으로 강조했다듯이 이 협정으로 부터 정치 풍토를 개선하고 동서관계의 신뢰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국민이 복지를 위한 진보가 양자관계에서" 생겨날 것입니다.

문화협정에 의해 발전되는 협력은 독일국민들에게 기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문화협정은 양독간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들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문화협정은 협정당사자들이 서로간에 합의한 다양한 추진계획들을 가지고서 양독의 교류 및 협력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협정은 양국간의 평화운동과 정보교류가능성의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문화협정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국가간 관계의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합의를 보았습니다. 즉 그것은 교류와 협력이 해당 국가 관청이나 국가기구들을 제외한 일반 조직체나 단체들, 연합체들 및 문화분야에 종사하는 개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개별적인 교류"가 이 문화협정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비국가적 영역을 위한 장려계획들은 우리에서 있어서 부차적인 활동으로서 규정되는, 앞서 얘기한 사업계획들 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 교류와 협력은 국가경쟁이라는 "바늘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 각종 단체, 조직체, 그리고 관심있는 사람들 사이의 교류에서 시작되고 또 그 해결을 볼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문화협정이 때때로 음악이나 연극, 조형미술, 문학, 영화등과 같은 좁은 의미의 예술로서 제한되어 이해되던 종래의 관습적인 문화개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화협정을 그와는 반대로 보다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교육이나 학문분야도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문서업무나 도서관부문 박물관분야, 기념물 보호분야도 문화협정의 대상이 됩니다. 문화협정의 협정

당사자들은 또한 라디오방송이나 TV방송분야에서의 협력이나 청소년 교류, 및 체육분야의 관계도 고려하여 장려계획을 표명합니다.

베를린을 포함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문화적인 잠재력이나 문화분야에서 활동하는 서베를린시민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화협정에 규정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규정은 1971년 9월 3일의 4대국협정에 상응하여 처리규정확정에 합의함으로써 서베를린까지 연장되는 것입니다.

동독으로서는 협정이 체결된 후에 수행될 일련의 기획들을 최초의 구속력있는 약정들로 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 관련된 몇몇 기획들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양측은 프로이센 문화유산관리재단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문화사업에 있어서, 특히 전시회사업분야에 있어 프로이센 문화유산관리재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독일민주공화국에서 더 이상 배척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그 위치가 잘못 옮겨진 문화유산의 문제를 위해서 협정당사자들은 그들은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프로이센문화유산관리재단의 존속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양측이 그것이 원래 위치로 되돌려 보낼 다른 문화유산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는 권리를 가진 자가 정리할 수 있는 법칙에 관한 수정법령을 마련했습니다. 이 수정법령은 독일 연방의회가 의결한 이후 1985년 12월 20일자로 그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니다. 이 수정법령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잘못 옮겨진 문화유산들은 개개의 경우 호혜주의원칙에 입각하여 동독의 원래 장소나 개인에게로 되돌려 보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연관된 협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협상은 무엇보다도 가치가 아주 많은 문서유물들을 되돌려 주는 것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 이 문서유물중에서도 특히 한자동맹도시인 튀벡, 함부르크, 브레멘, 마인쯔의 유물들이 문제가 됩니다.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문화협정은 우리의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양국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심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문화협정은 독일의 공속의식보존을 목표로 해온 우리 독일정책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화협정은 양국이 노력하고 있는 유럽중심부에서의 평화정책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협정은 서로 다른 사회질서, 서로 다른 동맹체계에 속해 있는 두 국가 사이에 대화와 협력 및 호혜균등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문화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이 실제로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자들의 숙선수범에 달려 있으며 또한 확실히 세계정치와 독일정치의 전체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선린관계수립을 위한 길을 계속 나아가고, 그럼으로써 조국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협정당사국들의 다양한 추진계획들은 이것을 위한 좋은 전제입니다. 연방정부로서

는 문화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이 협정에서 주어진 기회가 과제로 여겨져야 하며 거기에 맞추어 이용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출처 : 내독성(발행), 문화협정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사이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본 1986.

133. 국경위원회 89번 및 90번 의정서각서

1986. 6. 3

1986년 6월 3일마 슈타데에서 열린 국경위원회 석상에서 비준된 이 의정서각서는 두더슈타트와 헤링엔의 용수공급을 위한 전적액수를 확정하는데 관한 것인데 국경위원회에서 인쇄되었다-트대와 활동에 관한 기록, 내독성 발행 본 1985.

134. 내득간의 교역 - 용역업무협정의 새 텍스트

연방경제성 장관의 공고와 성명

(발췌)

베를린협정 3조 6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 1 조

하나의 상품을 공급하거나 구입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역업무에 대한 보상은 하부계정 이상으로 계산될 것이다. 또 용역업무가 상품과 함께 계산될 때에도 역시 그 보상은 하부계정 1/2 이상으로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조

1. 아래와 같은 상업적 용역업무에 대한 보상은 그것이 한 상품의 공급이나 구입과 관련이 없을 때에도 역시 하부계정 3이상으로 계산될 것이다.

1) 이 협정의 적용영역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통한 상품이나 화물의 운송, 운송수단의 임대는 제외;

2) 예를 들어, 이 협정의 적용영역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통한 상품이나 화물운송과 관련이 있는 항만업무나 적재공간의 임대, 선적, 하적, 운송업무등과 같은 업무들;

3) 상품교역 및 업무교역에 있어 위탁이나 중개, 대리등의 업무;

4) 건축업무 및 조립업무;

- 5) 광고와 정보:
- 6) 예를 들어 생산시설업무를 제외한 견본시, 박람회, 협의회 등과 같은 각종 행사의 개최;
- 7) 임대 및 임차;
- 8) 상품이동, 보관업무, 고객봉사업무등을 제외한 수선업무;
- 9) 육상운송수단, 해상운송수단, 항공운송수단의 급유 및 보호;
- 10) 이런 내용들을 넘어서 특별히 합의되지 않았거나 그럴 것까지의 포함하는 내용들에 대한 손해보상;
- 11) 학문적·기술적 성과에 관련된 업무, 특히
 - 보호권이 보장되었거나 또는, 보장되지 않은 학문적·기술적 성과에 관한 특허의 획득 및 위탁(예를 들면 특허권, 상표, 기호품권본, 공예품권본, 공예품모델 및 기술적 지식·경험·생산등을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의 특별한 지식, 식물품종 및 동물품종, 또는 이것들의 재배 및 사육)
 - 학문적·기술적 성과의 구매와 판매 및 그것들에 대한 보호권(예를 들면 특허권판매, 상표의 위탁)
 - 학문적·기술적 성과와 관련이 있는 제3의 업무들(예를 들면 특허권의 신고 및 공포, 보존등)
- 12) 모든 영화업무 및 TV방송업무, 라디오 방송업무, 전형적인 출판사업등을 포함하여 저작권이 보호된 제작물에 대한 이용자격 및 수익권의 획득과 위탁; 번역물;

- 13) 상인협의회나 조직협의회등과 같은 전문가들 및 기술자들의 활동(예를 들면 기술자업무나 기획업무; 소프트웨어의 계획작성 업무 및 위탁; 상품의 호용성측정, 시험, 인수, 승인, 분류);
- 14) 공장설비의 확보, 예를 들면 생산시설 확보를 포함한 건축부지와 조립부지;
- 15) 위탁창고 및 송하창고의 설비와 보존;
- 16) 다른 어떤 특별한 협정에 관계되어 있지 않거나 앞으로도 관계되지 않을 것이면서, 배틀린협정의 업무내용에 관계된 직접보충;
- 17) 무역업무영역 내에서의 조약상의 의무에 대한 보증;
- 18) 폐기물의 인수;
- 19) 청소업무 및 세탁업무;
- 20) 도살;
- 21) 기업의 목적을 위해 그밖의 용역업무들, 예를 들어 운송, 재단, 임금향상사업등과 관련한 업무들;
- 22) 배틀린 협정의 계정에 관한 특별한 지불거래협정 속에 고려되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고려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고려될 업무들;
- 23) 예를 들어 소송절차나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법적 조언이나 대리업무, 법률상의 조력, 문서작성 및 은행업무 등과 같은 용역업무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그밖의 업무들

2. 이 협정은 4번에서부터 23번까지에서 거론된 여러 종류의 업무들 중 제3국으로 보내지거나 제3국과의 교역과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양국의 철도국 사이의 지불거래청산으로 부터 남은 잔고를 포함하여 거래수입의 계산 및 거래자의 경영비용에서 나온 잔고는 하부계정 3 이상으로 계산될 것이다.

제 4 조

제 1 조에서부터 제 3 조까지에서 거론되지 않은 용역업무에 대한 보상은 상호 합의속에 베를린협정의 계정을 넘어서도 지불될 수 있다.

5. 6항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정서 주석이 삽입되어 있다:

"1986년 6월 10일자 용역업무의 적절한 계산에 관한 협정을 위항 의정서주석"

제2조 1절과 2절 1항에 대해 선하업무는 이 협정의 적용영역에 소유권을 가진 기업들이 오랜동안 마음대로 이용하는 선창으로써, 운송이 이루어질 때 이런 기업들에 의해 선하업무가 수행된다.

도로운송에 관한 조약들은 그것이 제2조 1절 1항과 2항에서 거론된 종류의 업무들을 이 협정의 적용영역에 있지 않은 기업들을 통해 수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체결된 한 이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다.

제2조 1절 4항에 대해

제2조 1절 4번은 양국 사이에 독일마르크화 지불이 합의되었거나 앞으로 합의될 업무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제4조에 대해

외국무역회사나 용역회사(예를 들면 인터콘트롤, 유한책임회사(GmbH), 라이프찌히 견본시장청(Leipziger Messeamt), 인민경영 도이 트란스(VEB Deutrans), 인민 경영 도이트프라흐트(VE, B Deutfracht)의 사무소 유지를 위한 보상은 하부계정 3 이상으로 계산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으며, 거기에 관련된 허가는 그때 그때마다 적용되는 규정들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6. 각주11은 다음과 같은 양식을 담고 있다:

“1986년 6월 10일자 협정”

본, 1986. 6. 10

연방경제성

뢰쉬박사의 주문에서

주석

1986년 6월 10일 서베를린에서는 산업 및 무역 신탁사무소(TSI)와 동독의 무역성에 의해 “용역업무에 적절한 청산에 관한 협정”이 새로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1951년 2월 3일자 협정은 그 효력을 상실했다.

새로운 틀이 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협정들은 모든 상업적 활동내용들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서로 상이하게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틀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들을 조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기본조약의 명령에 일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용역협정은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제 1 조

한 상품의 “공급”이나 “구입”, 다시 말해서 베를린협정의 상품거래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련이 있고 또 계산에 있어 상품가격에 포함되는 용역업무에 대한 보상은 오로지 협정에 맞게 하부계정 1/2 이상으로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상품의 운송과 관련이 있는 용역업무가 특별히 명시된다면 이것은 상품가치와 더불어 조약상황에 따라 하부계정 1/2 이상으로 또는 하부계정 3 이상으로 분리되어 대체될 것이다. 물론 실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이것은 조약상의 토대가 없이도 가능했다.

제 2 조

1항에서 23항까지 중 하나의 업무에 대해 얘기한다면 베를린협정의 의미에서의 공급이나 구입과 관련이 없고, 그럼으로써 독립적인 업무로서 제공되고 있거나 또는 베를린협정 안에 있지 않은 상품거래에 기초하고 있는 용역업무에 대한 보상은 하부계정 3 이상으로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2절에 따르면 용역업무는 -운송업무 및 운송과 관련이 있는 업무들, 대리업무, 중개업무, 중매업무를 제외하고- 서베를린을 포함한 독일연방공화국이나 동베를린을 포함한 동독에서 제공되어야만 하며 제3국과의 거래에 관련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2조의 개별항목은 다음과 같다.:

1절과 2절:

새로운 규정은-지금까지의 텍스트와 마찬가지로-화물운송이나 이것과 관련이 있는 모든 업무들을 포함한다. 거론된 활동내용들이 궁극적으로 계산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용역업무는 원칙적으로 협정의 적용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것이 내륙간 무역의 성격에 일치한다. 실제로 이원칙을 유지하는데는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적인 소요를 고려하기 위해 1번과 2번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정서 주석이 덧붙여졌다: “선하업무는 이 협정을 적용 영역에 있는 기업들에 의해서만 수행될 것인데, 이것은 운송을 함에 있어 이런 기업들이 오랫동안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선창에서 이루어질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시가운송에 관한 조약들은 이것이 이 협정의 적용영역에 있지 않은 기업들에 의해 제3조 1절 1항 및 2항에서 얘기된 양식의 업무들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체결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가운송에 관한 조약들은 이협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한 합의

가 있다.

3항 :

지금까지 상품교역에 있어서 제한되었던 중매자, 중개자, 대리인들의 업무들은 용역업무교류에서 제외되었다. 하부계정 3 이상의 지급경로는 - 운송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 기본적인 상품거래가 베를린협정 밖에서 이루어 질 때만이 적용된다.

4항 :

건축업무의 계산은 지금까지는 상호 합의 하에 "조립업무"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한다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건축업무"라는 개념은 명백히 용역업무협정에 수용되었다. 한 공동의정서 성명에서 다음 사실이 분명해졌는데, 즉 베를린협정 밖에서 체결되었고 또한 마르크화로 지불할 것이 고려된 이 협정의 테두리에서의 건축업무는 용역업무협정에서는 다루어 지지 않고 있다.

5항과 6항

여기에 기술된 활동내용들은 새로이 편집되었다.

7항 :

지금까지의 텍스트에 있어서는 "이동가능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래과정에 있어서 불충분한 것으로만 기술되었다. 또 그것을 넘어서 이동가능한 상품의 경계설정은 너무 편협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적재창고의 임대도 고려되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특히 획득된 임차업무의 경제적 의미와 분명히

하나의 연관을 맺고 있다.

8항 :

소위 보호업무 및 고객봉사업무에 관한 부가적인 조약들이 양국의 기업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그래서 하루계정 3 이상으로 보상되는 상업적 용역업무의 카탈로그는 이러한 활동내용을 넘어 확장되었다.

9항

상업상의 교통왕래에 있어서 차량의 급유문제는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업무에 있어 도로화물교역에 대해서는 하루계정 3 이상으로 계산되는 가솔린어음을 사용하자는 규칙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하루계정 3 이상의 비용에 대한 지불은 오로지 조약상으로 보장되어 있다.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 이 협정의 적용영역에 있는 한, 이러한 활동내용 중에는 해난구조나 견인업무를 포함하여 9번에서 거론된 운송수단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들어있다.

10항

손해배상지불은 앞으로 단지 법률상이나 조약상의 책임에서의 지불뿐만 아니라 서로 환영을 한다는 이유에서의 지불도 포함한다. 베를린협정의 범위밖에서 체결되는 협정들(예:HUK협정)은 용역업무협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11항

학문적·기술적 분야의 업무는 지금까지의 협정중의 제2조 6번과

는 상반되게 새로이 수용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규정양식은 엄밀하게 규정되었으며 식품품종이나 동물품종의 보호권 및 사육방법 등에 관해 명백히 언급함으로써 보충되었다.

12항 :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보상은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만 "특허지불"이라는 활동요건에 제한되어왔다. 실제로 이러한 업무는 상이한 활동내용의 기술 및 보충을 통해 엄밀하게 규정되었다.

13항 :

전문가들이나 기술자들의 활동은 "상인협의회나 조직협의회"의 활동요건들에 의해 보충되었으며 특정한 업무에 대해 모범이 되었으며 특정한 업무에 대해 모범이 되도록 지불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고려되었다.

14항 :

기계나 시설물의 공급을 받거나 받지않은 채 건축업무 및 조립업무와 관련이 있는 상업적 조약의 실천을 위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다른 조약들이 적용영역에 기업소재지를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종종 요구되며, 또한 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을 잠정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종종 요구된다. 전형적인 업무비용 (예를 들면 건축부지나 조립부지의 마련 및 보존, 재료의 매입, 건축기계의 임대등)의 지불은 앞으로 하부계정 3 이상으로 계산될 것이다. 다른 조약상의 지역에다가 회사사무실이나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대해서는 어떠한 합

의도 보지 못했다. 한 의정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정되었다. 즉 지금까지의 실천들은 계속 유효하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독에 있어서 외국무역상사 사무실의 개설 및 존속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승인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

15항 :

1969년 5월 30일에 체결된 송하창고에 관한 협정(비교: 베를린협정 2번-수년간의 협정들)은 “위탁창고 및 송하창고” 같은 활동내용의 수용을 보충하고 있는데 이 협정은 그 지불정도를 하부계정3으로 규정하고 있다.

16항 :

보험분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다만 운송보험조약의 체결만이 조약상으로 보장되었다. 이제는 베를린협정의 실행을 위한 모든 상업적인 직접적 (다시 말해서 최초의) 보험교류가 규정화되었다. 재보험사업은 이 분야에서 (국가에 관련된 것은 아닌 - 전문분야의 재해보험) 널리 통용되는 관례를 고려해서 청산교류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보험사업은 이미 지금까지의 마찬가지로 베를린 협정의 범위밖에서 이루어졌다.

17항, 18항, 19항

이 구성요건들을 용역업무협정에서 새로이 수용되었다.

하부계정 3 이상으로 한다는 이런 업무에 대한 보상은 이제는 조약상으로 보장되었다.

20항

그 구성요건은 변함없이 지금까지의 용역업무협정에 수용되었다.

21항

여기에서는 하나의 이득이라는 구성요건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는 예로서 거론된 경우들을 넘어서 특별히 거론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상업적인 기업들 사이의 협력이 고려되어 있다.

22항

베를린협정의 계정에 관한 지불(하부계정 3 또는 계정 S)은 부분적으로 산업 및 무역 신탁사무소와 동독의 무역성 사이에 체결되지 않은 협정에도 규정화되어 있다. 아래와 같은 상업적 업무들은 지금도 베를린협정의 계정에 관한 특별지불협정에 고려되어 있다:

- 서베를린에서의 건축토사 및 용수의 수입
- 동베를린에서의 지하철도 및 시가철도의 터널노선의 이용
- 동독과의 우편교류나 장거리 전신교류 및 베를린과의 교류에 관한 동독의 업무

22항을 수용함으로써 이 협정의 지불통로는 베를린협정에 명백하게 수용되었다.

23항

여기에서 거론된 업무들은 상업적인 용역업무의 카탈로그를 발전하게 보충시킨다. 그 업무들이 베를린협정의 상품거래와 관계되는한 제 1조는 유효하다.

제 3 조

이 조항은 앞선 용역업무협정의 제2조 2절 및 제3조를 종합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조항은 소재적으로 어떤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 4 조

이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되어 있다. 즉 베를린협정의 계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용역업무협정의 형식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 예전에 그 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 이 베를린협정의 계정에 관한 보다 폭 넓은 용역업무들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있다.

출처 : 연방공보 본, 1986. 6. 13

135. 연방장관 하인리히 빈델렌 : 내독간 도시자매결연관계에 대해

1986. 6. 11

동독과의 지역간 자매결연에 대해 독일연방공화국의 시당국이나 시의회가 갖고있는 관심이 크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최근에는 연방영토에 있는 300개 이상의 도시들, 시당국, 지방당국이 그들의 관심사에 대한 조연과 원조를 구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 자신의 노력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나에게 문의를 해왔습니다. 시의회에서 애쓰는 여러분들의 활동또한 이 활기찬 관심에 기여해 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연방정부는 동독과는 반대로 그러한 자매결연을 위해 오랫동안 진력해 왔습니다. 수많은 도시의 각종 자치단체들이 간접적으로 동독의 지방도시에 문의를 하거나 그들의 관심사를 동독의 상주대표부에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망은 근래에 이르기까지 동독의 철저한 의면에 부딪쳐 왔습니다. 동독은 지방끼리의 파트너 관계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우선적으로 그들의 인민의회와 독일연방 의회간의 공식적인 접촉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에 동독정부는 내독 관계가 아직은 지역간 자매결연을 승인할 만한 상태에서 이르지 않았다는 문자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을 위한 전제는 특히 동독국민 권의 인정 및 잘쓰기터에 있는 중앙등록처의 철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한 것은 구실을 대는 것 보다는 사안별로 논의를 하는 것이 주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오로지 우리 시당국의 다양한 희망과 노력으로 부터 하나의 작은 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4월에는 자아르루이스와 아이젠취텐슈타트의 두 도시 사이에 최초의 도시자매결연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부퍼탈과 에어랑겐의 두 도시가 희망하는 자매결연은 동독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물론 동독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토대 위에서 그런 자매결연의 증가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다만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최초의 긍정적인 출발을 키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특별한 배려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유약한 식물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그것에 대해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방끼리와 자매결연은 우리의 한 지방도시들, 시자치단체들이 독자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은 동독의 어떤 도시나 시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또한 그런 자매결연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자아르루이스에서 온 대표단들이 그랬는데, 그들은 금년 4월에 아이젠취텐슈타트와의 자매결연 조약의 첫 기획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실행해 왔습니다. 그리

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런 독자적 책임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근본적으로 동독의 지역대표들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독에는 우리의 지방도시 자체단체와 비교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구가 없습니다. 각 지역의 인민대표기구들은 소위 사회주의 국가권력의 기구로서 원칙적으로는 철저히 감시하는 중앙의 행정명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끼리의 자매결연은 동독의 당이나 정부의 지시로 부터 벗어나 무엇보다도 정치외적인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들을 위한 공식적인 경로위에서의 도시들이나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자매결연은 그 도시들의 시민들 사이에 개인적 문화적 접촉 및 시·읍·면간의 연결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것은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결속시키는 연대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있어서 자매결연을 폭넓게 고착화시키고 시민들 스스로가 여기에 맞게끔 참여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대표단에 의한 도시 자매결연 및 담당자들의 만남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공적인 것도, 지속적인 것도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간 자매결연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를 가능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런 자매결연은 사람들간의 이해를 촉진하고 국가간의 협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 아마도 성공적으로 - 동독도시들과의 폭넓은 자매결연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도시들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동독과의 회담이나 협정에 있어 이렇게 시민들에게 촉점을 맞추는 것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양측의 서로 다른 목표설정은 체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협정이나 성명에 있어 정치외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정치적인 종류의 발언을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지역간 자매결연의 실질적인 목표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정치"에 있어서의 그러한 대출은 우리의 법체계나 제도체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권한을 남용하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그러한 대출은 자매결연의 실질적인 수행을 위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 군비축소, 국제협력 등과 같은 정치적 가치개념들은 양측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그것은 정치적 전제나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상이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정치적 가치개념들은 자매결연 상황의 실현에 부담을 주고 있고 심지어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여러가지 오해나 견해차이 및 실망의 근본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시당국들이 특정한 정치적 책임을 질 때 중요한 것인데 상대측의 자매결연 활동이 그 책임의 실현에 종속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자매결연조약은 그런 일반적인 정치적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해서 부담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동유럽국가들과의 경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결국에는 어느 쪽을 위해서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참된 자매결연은 정치적으로 실정에 맞지않게 구성되어져서는 안되며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동독의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자매결연을 위해 자치단체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

1. 지역간 자매결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치적 원칙표명은 삼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치표상에 대한 좋은 의도의 신념도 상황의 실질을 위해서는 장애물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에 기본조약이나 여타 내독간협정 및 국제적인 협정등을 참고로 할 때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이것을 내용상으로 변안해서 해석하거나 각각의 내용들을 연관이 없는 곳에 끌어다 인용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 협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규칙들의 조약체결에 있어 그들의 이해균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적인 요소들이 특별히 두드러지게 강조되면 필요한 균형이 깨지기 쉬우며 정치적인 오해를 조장하기 쉬운 것

입니다.

3. 지방 자치기구들 사이의 자매결연은 사람들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특징지워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특별히 활기를 갖고며 그만큼 계속해서 생활력은 새로이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남이 가능할지, 그렇지 않을지, 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동구 이웃나라들과의 자매결연을 위한 질적인 척도가 될 것입니다. 협상을 하거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는 시민들의 개인적 만남 및 집단적 만남의 가능성에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 자치기구들간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방문여행에 대해 여행허가를 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시민들 차원의 자매결연 설정계획은 가능한 한 많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속력이 있는 사업계획들은 상세하게 기술되고 확정되어 있는데 이때 그 내용들을 주권의 형태로 취사선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단이나, 단체여행단 및 개인적인 여행자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투자를 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직접적인 개인간의 접촉이 이루어 지고 - 이것이 중요한데 - 또한 지속적으로 자금이 조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자매결연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기구나 각 도시당국 및 지방 관구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기꺼이 다음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즉 용이주도하게 이끌고 정확하게 고려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면밀히 숙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모임은 여기에 대해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내독성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치기구들에게 조언을 하는 한편, 가능한 영역내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경로를 통해 양독국민들의 개인적 결속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성숙되리라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기구들 사이의 접촉은 여기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동독이 오래 전부터 희망하고 있는 도시들 및 자치기구들간의 자매결연을 가능케 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책임있는 사람들은 참된 자매결연 관계가 발전되어야만 한다는 범위내에서만 조약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은 그 선택과 승인에 있어 특별한 정치적 목표가 있는 개별적 경우에 다른 지역간 자매결연 관계에 종속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매결연은 그때 그때마다의 시의회의 다수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식과 의지속에 담겨 있어야 신뢰가 조성되며 그것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내독관계에 대한 연방장관의 성명, 하인리히 뢰넬른, 1986. 6. 11 지방대
표들 앞에서, 연방내독성 언론공보, 본, 1986. 6. 20.

136. 비상업적인 지불거래 및 청산거래

1986. 7. 1

서베를린을 포함한 독일연방공화국의 개개 국민들에 해당되는 외환외국인구좌 B(1986. 7. 1)의 영향으로 인해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액수가 인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동독이 통고해 왔다.

즉각적으로 동독이나 동베를린을 여행하는 경우에, 체류하는 구좌소유자 및 그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은 매월 동독화폐 300마르크(지금까지는 일일체류당 15마르크)까지 인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 체류비용은 지불할 수 있다. 달이 바뀔 때 동독에 체류하는 사람을 그에 따라 동독화폐 6000마르크까지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고 남은 액수는 다시 구좌에 예금될 수 있다. 이것은 동독 국가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가능하다.

동독의 규정에는 동독마르크의 유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최소교환액 원칙의 의무조항에는 보다 더 많이 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동독마르크의 이용가능성도 보다 범위가 확장되지 않았다.

출처 : 연방내독성 언론공보, 본 1986. 7. 1

內 獨 關 係 發 展 史

1990年 12月 20日 印刷

1990年 12月 30日 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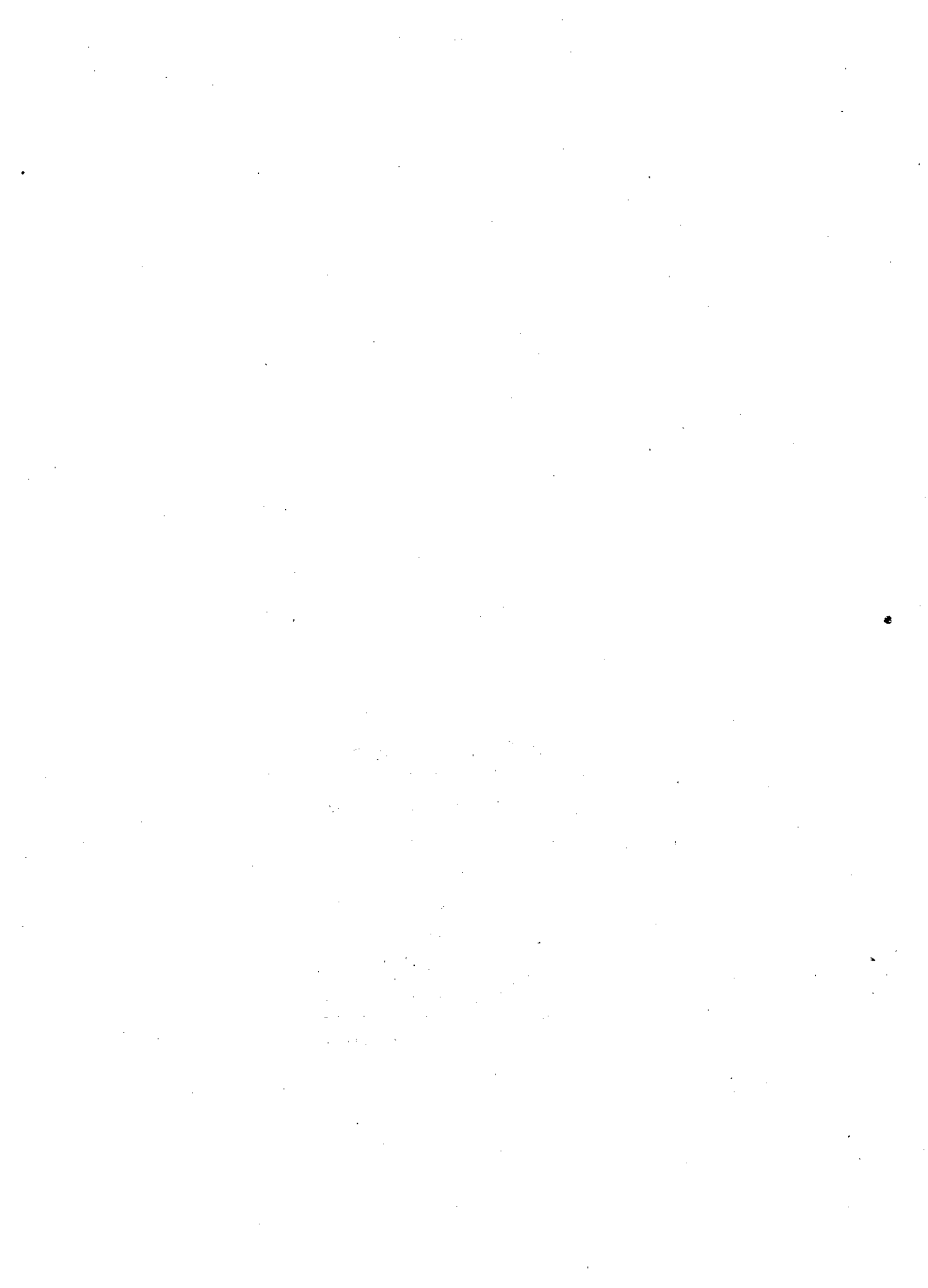
發 行 處 統 一 院

調 查 研 究 室

電 話 720-2145

印 刷 處 陽 東 文 化 社

<非買品>



미나와 정보교환대담을 실시 :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주변세계에 대한 과학기술적 발전의 의미, 작업조건과 생활조건 형성, 특히 주택건설, 근거리 교통, 문화, 스포츠, 근거리휴양, 문화, 스포츠, 근거리휴양과 건강관리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의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정치인들의 경험과 입장을 알리기 위한 정보교환여행, 노동조합원, 청년, 여성, 수공업자, 정신, 문화창조자 및 다른 직업군의 일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서로 알게 하기 위한, 주제에 관련한 대표단의 교환 :

- 청년여행자 교환 :

- 특히 매년 열리는 자아르루이스 주간과 오더축제공연에 참가하기 위한, 문화단체와 예술가들의 교환 :

- 조형예술과 사진작품의 전시 및 아마추어 영화 교환 :

- 양 도시 박물관간의 협력과 도시역사의 홍보를 위한 자료의 교환, 전시 및 대역전시 :

- 스포츠 국제시합과 스포츠 비교에 참가하기 위한 스포츠인의 교환.

독일민주공화국의 도시 아이젠휘텐슈타트와 독일연방공화국의 도시 자아르루이스간의 도시자매결연에 대한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1986년 연간계획.

1. 도시자매결연 협정에 대한 구상, 1986년도 계획 및 그이후 연도의 협력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크라이스슈타트 자아르 루이스 시장이 이끄는 대표단(9명)의 4월 아이젠휘텐슈타트에 체류.
2. 도시자매결연 협정을 결정하기 위해, 아이젠휘텐슈타트와 크라이스 슈타트 자아르루이스 시의회에 시장이 이끄는 도시대표단이 상호참가. 일정 : 9월
3. 6월초 "자아르루이스 주간"에 아이젠 휘텐슈타트 문화사절단(약 30명)의 참가, 및 9월 아이젠휘텐슈타트의 오더축제공연에 크라이스슈타트 자아르루이스 문화사절단(약 30명)의 참가
4. 11월 유엔평화의 해에 대한 양 도시 시민의 구상에 관해 정보 교환. 정보매체로 이에 대해 공고하기.

출처 : 자아르브뤼크 신문, 자아르브뤼켄, 1986. 5. 31